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민희(평택대학교·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 연구보조원 : 전선영·김평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인권상황 진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6개년 연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인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은 열악합니다. 많은 연구조사가 아동과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지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승인통계로서 매년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대분류 영역에 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하여 연구결과가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2011년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받았으며, 이제 2017년까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연구결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지표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공동연구원과 집필진으로 참여하신 많은 현장전문가와 학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를 담당하신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한국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 노력정도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2017년 6월까지 유엔에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6개년 연구(2011~2016)로 기획된 사업의 5차년도 연구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인권환경 변화에 따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폭력 및 학대’ 영역을 추가하여 지표 대분류 영역을 7개로 보완하였다.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2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4개)’, ‘폭력 및 학대(11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6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2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1개)’, ‘특별보호조치(32개)’ 등 7개 대분류 영역에 총 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물은 총 3권으로, ‘총괄보고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를,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인권데이터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논문을 담은 것이다. ‘통계집’에는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전문가 및 청소년 의견수렴, 협약 권고사항 등을 검토하여 7개 대분류 영역별로 총 18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아동인권/권리, 청소년인권/권리, 인권지표, 인권실태, 유엔아동권리협약

연구 요약

-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6개년 연구(2011~2016)로 기획된 사업의 5차년도 연구임.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2015년에는 인권환경 변화에 따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폭력 및 학대’ 영역을 추가하여 지표 대분류 영역을 7개로 보완함.
-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2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4개)’, ‘폭력 및 학대(11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6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2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1개)’, ‘특별보호조치(32개)’ 등 7개 대분류 영역에 총 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결과물은 총 3권으로, ‘총괄보고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를,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인권데이터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논문을 담은 것이다. ‘통계집’에는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함.
- 마지막으로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전문가 및 청소년 의견수렴, 협약 권고사항 등을 검토하여 7개 대분류 영역별로 총 18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제안함.

2.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보완
- 지표결과 생산 : 아동·청소년 인권종합실태 조사 및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 제안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 분석 :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

3. 연구결과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에서는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등 2개 중분류에 총 12개의 지표항목을 살펴보았음. 학교 밖 청소년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 제정,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재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신설 등은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4.4%, 9.7%, 17.1%로 낮게 나타남. 대한민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는 74.2%로 2014년도 70.8% 대비 상승함. 65.3%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70.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일 년에 1회 이상 차별한 경험은 성차별(21.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 차별(20.9%), 연령차별(20.8%), 외모·신체조건 차별(20.3%) 순으로, 차별받은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24.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령차별(21%), 외모·신체조건 차별(19.6%), 성차별(1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는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 하위영역의 24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가정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의견존중도는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학생회의 자율권 보장은 20~30% 내외로 낮게 나타났고 학급회의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4%,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34%나 되었음.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12.6%로 낮은 편이었고 참여기구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는 2.4%로 나타났음.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58.1%였으며,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시간부족이 35.2%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1.3%),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부족(15.8%), 참여방법과 기회부족(14%) 순으로 나타남.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은 62.9%였으며, 종교재단 재학 청소년 중 53.9%가 종교행사 선택권이 없다고 응답함. 사회문제와 관련한 참여활동으로 경고 및 훈계를 받은 경우는 2.1%로 나타남. 용모검사, 복장검사, 소지품검사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학교가 학교규칙

변경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는 83%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정책 홍보자료 제공 22.4%,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 제공 15.1%,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 25.5% 등 인권관련 정보를 받은 경험은 20% 내외로 낮게 나타남.

- 「폭력 및 학대」 영역에서는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은 권리의 하위영역에 4개 세부지표가 구성되었음. 지표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정서적 학대 경험률에서 전체 응답자들은 부모로부터 29.8%, 교사로부터 18.4%,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14.4%의 피해 경험이 있었고,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폭력피해 경험의 세부지표항목에서는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받는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성적 희롱이나 추행에 있어서 피해 경험은 각각 5.5%, 5.2%, 3.2%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체벌 24.8%와 교사로부터의 체벌 18.4%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률에서는 심한 모욕이나 욕설, 따돌림, 사생활 침해에 있어 각각 전체응답자의 15.8%, 1.7%, 5%를 보이고 있어 사이버공간에서는 정서적 학대 피해가 다른 폭력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추이에서는 전반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폭력과 더불어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는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와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구성되었음. 2014년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7,752 건으로 2013년의 13,943건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신고율을 보였음. 정서학대는 전년도에 비해 2.4% 증가하였으며, 신체학대는 6% 증가하여, 신체학대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남자아동의 성학대와 10대 미만 아동의 성학대 비율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음. 방임에 대한 조사결과, 야간 시간 방임률이(최근 1년 1회 이상 경험한 비율) 6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결하지 않은 의복을 입거나 이부자리에 잠을 잔 경험은 15.4%, 아픈 경우에 부모님(보호자)이 그냥 방치한 경험은 7.4%, 식사를 하지 못해도 부모님(보호자)이 신경쓰지 않은 비율은 9%, 학교에 결석한 경우에도 무관심인 비율은 1.7%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정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방임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은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의 세가지 중분류로

구분됨. 먼저, 부모의 지도와 책임과 관련하여 최근 2014년 조사에서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2011년에 비해 늘어났으나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은 감소하였으며, 대화주제별로 월1회 이상 청소년의 고민에 대한 대화는 65%,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는 74.6%로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육시설은 2014년에 43,742개소로 확대·설치되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은 약간 증가하였고, 이용 아동수도 증가하는 추세임.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는 2009년 51.3%에서 2014년 59.3%로 증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전년도와 유사한 4,059개소에 이용아동수도 108,936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4년 200개소에 연인원 2백만명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만족도는 위의 세 개 시설/기관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질적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프로그램 영역별로 제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외입양은 크게 감소하여 2013년 기준으로 국내입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5.6%로 나타났으며, 국내입양은 크게 증가하여 74.4%에 달했음. 그러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2014년 사회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32.6%, ‘잘 모르겠다’는 30.2%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조사대상자가 입양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대안양육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은 2013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가정위탁보호, 특히 조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은 다소 감소하였고, 일반위탁아동은 약간 증가하였음. 가출청소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와의 문제(63.5%)로 보고되었음.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는 중분류로써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영역으로 나누어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였음. 특수교육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숫자는 전체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공립 특수교육 교원 확보율은 61%에 그치고 있지만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연평균 3개 이상의 학교가 증가하였고, 특수학급의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538학급이 증가하여 특수학교수와 특수학급의 수는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음.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의 취업률과 진학률 추이는 2014년까지 증가와 감소추세를 반복하고 있어 장애청소년의 진로지도와 진학지도가 필요함. 0세에서 24세 연령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은 2013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10세에서 19세의 사고사망률은 2013년까지는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4년에는 다소 증가함. 사망의 원인으로 10세에서 19세의

경우 자살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운수 사고임. 청소년의 범죄피해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2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은 거의 두 배에 가까이 범죄피해율이 증가함.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대도시 지역보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함. 보건교사 배치현황은 2014년에 전체적으로 64.6%수준이며, 지역사회의 보건소, 병원, 특수병원 등의 건강관련 시설은 증가추세에 있어 학교를 제외한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건서비스 이용률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원 미치료와 치과 미치료율은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에 비해 3배 이상의 미치료율 차이를 나타냄.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3년까지 흡연예방 교육률이 증가하던 것과 비례하여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였으나 음주율은 감소추세였던 것이 2014년 다소 증가하였으며 관련 교육경험율의 관계를 시사함. 아동·청소년의 85.7%는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 한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높았음. 등교 전 ‘거의’ 또는 ‘보통’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은 73%수준이었으며, 아침 결식 이유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수면시간은 평일 평균 7시간 17분이었으며, 과반수정도가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자율학습 등 학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50.8%로 나타났음.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그동안 다소 상승세였으나, 2013년을 정점으로 하여 2014년에는 그다지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자아존중감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적으로 70%를 훨씬 넘었으며, 우울감은 약 30%내외의 응답자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84.3%의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음. 삶의 수준(삶의 만족도)은 10점 만점에 평균 6.75점으로 나타났으며, 국제비교결과, 대부분의 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조사대상 중 27.9%가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학교성적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23.9%였음. 아동·청소년 빈곤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전체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소득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대분류 영역에 있어서는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중분류에 속해있는 그 아래 영역의 21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학생

취학률에서는 2014년도 초등학교 취학률이 96.4%, 중학교 취학률이 97.7%, 고등학교 취학률은 93.7%로 매우 높은 편이나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이래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음. 학생 진학률에 있어서는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고등학교까지의 진학률이 99%를 넘고 있고, 고등교육과정으로의 진학도 2000년에 62%에서 2014년 70.9%로 증가하였음. 대한민국의 구매력지수에 따른 1인당 GDP는 세계 29위에 해당하고 있고,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12년도 기준으로 한국이 18.4명, 18.1명, 15.4명으로 조사되었음. 학업을 중단하려는 이유에서 학교 규율에의 원인은 비록 6.5%로 크지는 않지만, ‘공부하기 싫어서’가 45.6%,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29.6%로 조사되었음. 또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조사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3.5%로 거의 4명 중 1명이 해당되었음. 대안학교의 수는 100개도 채 되지 않으며, 확산의 정도도 미미함.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과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전체 응답학생의 23.7%와 25.5%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17.5%의 학생들은 학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자신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음.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와 관련된 지표들에 있어서는 혁신학교에 관한 내용을 세부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2014년도 7월 기준 전국의 혁신학교 운영 학교 수는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 6개 시·도교육청에 총 628개교로 조사되었음. 혁신학교는 공동체 수업, 협동학습, 프로젝트 수업, 토론·토의 방식의 수업 등으로 학습의 문화를 혁신하여 일반학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2,266개의 시설들로 2005년에 비해 2배가 증가되었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총 수는 781개로 조사되었음.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및 예술 활동에의 참여율 실태를 보면, 2014년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9~24세의 응답청소년들 4명 중 3명 이상이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을 보면 응답학생 중 84.2%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아리활동 참가율은 72.6%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에 있어서는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2.5%나 되었고, 청소년들의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보면 2~3시간미만 학습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였고, 3~4시간미만은 19%, 5~6시간미만 이 8.6%, 6시간 이상 학습한다는 응답도 6.1%에 달했음. 2013년 13~19세 청소년의 여가활동 만족도는 만족에 40%, 보통에 43.2%, 불만족에 대한 응답이 16.8%로 나타나 2011년에 비해 10% 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불만족한 청소년들의 이유들로는 시간부족에 대한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33.4%, 취미가 없어서가 10.5%,

여가시설의 부족이 4.4% 순으로 나타났음. 청소년들의 여가시설 이용 만족도는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 정도’에서는 대체로 3명 중 2명 정도는 학부모들로부터, 4명 중 3명 정도는 학교로부터 그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평일 여가시간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체활동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5년에만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고, 청소년의 단체활동에 대해서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지지도가 완만하게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사범 운영, 경제적 착취, 성적 특별보호 조치로 구성되어 있음. 2015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3,213명이 난민 신청을 하여 94명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을 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탈북학생의 경우 2014년 4월 기준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 전체 2,183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교육시설에도 283명이 재학하고 있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연도별로 전체 수는 증가하였음. 다문화가족 자녀와 탈북청소년의 고등학교에서의 중도탈락률이 높아 장기적으로 안정된 진로발달에 문제를 가질 수 있음.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중,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는 2013년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평균수용기간은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8호 처분을 받은 경우임.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체계는 현재 3단계로 이루어져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소년사범 프로그램이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적 조사가 필요함.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현황은 내용(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별로 증감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의 근로시간이 더 많음. 그러나 전체 인구 시간당 임금총액의 평균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여러 종류의 피해경험이 지난 5년간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연도별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도 다소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피해의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회복적 처벌이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서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인 발전과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4. 정책제언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분석,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청소년 및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등을 통해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7개 인권영역별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각 정책과제별로 정책제언 배경 및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절차, 법 개정사항, 소요예산 등을 제안하였음.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조직기구 운영 활성화,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시민적 권리와 자유」: 민주적 학칙 제·개정 및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확산, 청소년참여를 통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모니터링 및 한국청소년보고서 작성
- 「폭력 및 학대」: 가정·학교·기타기관에서의 아동폭력 전면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성학대 피해아동 특성에 기반한 대책 마련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아동 맞춤형 위탁가정제도 확충 방안 마련, 대안양육 아동의 친가정 교류 활성화,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양육 지원방안 모색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 아동·청소년 전담 교육지원교사제도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도한 학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평준화특별법 제정, 청소년들이 여가·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 특성화고등학교 확대 정책 도입 및 관련법 개정
- 「특별보호조치」: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에 대한 외국인 등록 및 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소년사법 절차 및 처우에 관한 법·제도 개선, 성매매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농촌지역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 지정 운영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방법	8
II. 2015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구성	23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체계화	25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구성요소	30
3.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63
III.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69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71
1) 인권일반	71
2) 일반원칙	107
3) 소결	14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40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40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71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80
4) 사생활의 보호	185
5) 정보접근권	195
6) 소결	206
3. 폭력 및 학대	207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207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228
3) 소결	246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248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48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263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275
4) 소결	279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282
1) 장애	282
2) 생존 및 발달	284
3) 보건서비스	295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308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347
6) 소결	357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62
1) 교육에의 권리	362
2) 교육의 목표	384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393
4) 소결	415
7. 특별보호조치	419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419
2) 소년사범 아동·청소년	431
3) 경제적 착취	439
4) 성적 착취	460
5) 소결	471
 IV. 요약 및 정책제안	 475
1. 요약	477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489

참고문헌	543

부 록	559

1. 설문지	561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592
3. 정책과제에 대한 청소년 의견조사	602
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604

표 목 차

<표 I-3-1> 학교급 및 학년별 모집단크기와 목표표본 크기	10
<표 I-3-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10
<표 I-3-3>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대상 현황	11
<표 I-3-4>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12
<표 I-3-5>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항목	13
<표 I-3-6> 전문가의견조사의 인권지표항목 및 통계자료원 타당도 검증 내용	16
<표 I-3-7> 전문가의견조사결과 4점미만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표항목①	17
<표 I-3-8> 전문가의견조사결과 4점미만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표항목②	19
<표 I-3-9> 전문가의견조사결과 4점미만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표항목③	20
<표 II-1-1>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기준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26
<표 II-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과 관련 지표영역	28
<표 II-3-1>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63
<표 III-1-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2~2015)	75
<표 III-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아동권리협약	76
<표 III-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78
<표 III-1-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81
<표 III-1-5>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_1) 가정	82
<표 III-1-6>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_2) 학교	84
<표 III-1-7>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_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86
<표 III-1-8>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_4) 대한민국 전체	87
<표 III-1-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5) 사이버 공간	89
<표 III-1-10> 인권인식_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90
<표 III-1-11> 인권인식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92

<표 III-1-12> 인권인식_3) 청소년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94
<표 III-1-13> 인권인식_4)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96
<표 III-1-14> 인권인식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98
<표 III-1-15> 인권인식_6)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99
<표 III-1-16> 인권인식_7)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101
<표 III-1-17> 인권교육 경험여부	102
<표 III-1-18> 인권교육 경험 장소	104
<표 III-1-19> 인권교육 도움 정도	106
<표 III-1-20> 차별해 본 경험_1) 성차별	108
<표 III-1-21> 차별해 본 경험_2)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109
<표 III-1-22> 차별해 본 경험_3) 연령차별	110
<표 III-1-23> 차별해 본 경험_4)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112
<표 III-1-24> 차별해 본 경험_5) 지역차별	113
<표 III-1-25> 차별해 본 경험_6)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115
<표 III-1-26> 차별해 본 경험_7) 종교차별	116
<표 III-1-27> 차별해 본 경험_8)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118
<표 III-1-28> 차별해 본 경험_9) 장애에 따른 차별	119
<표 III-1-29> 차별해 본 경험_10) 다문화가정 차별	121
<표 III-1-30> 차별받은 경험_1) 성차별	123
<표 III-1-31> 차별받은 경험_2)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124
<표 III-1-32> 차별받은 경험_3) 연령차별	125
<표 III-1-33> 차별받은 경험_4) 가정 형편에 따른 차별	127
<표 III-1-34> 차별받은 경험_5) 지역차별	128
<표 III-1-35> 차별받은 경험_6)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130
<표 III-1-36> 차별받은 경험_7) 종교차별	131
<표 III-1-37> 차별받은 경험_8)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133

<표 III-1-38> 차별받은 경험_9) 장애에 따른 차별	134
<표 III-1-39> 차별받은 경험_10) 다문화가정 차별	136
<표 III-1-40>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_전체	137
<표 III-2-1>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1)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141
<표 III-2-2>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주신다	142
<표 III-2-3>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존중해 주신다	144
<표 III-2-4>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4)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146
<표 III-2-5>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147
<표 III-2-6> 학생회 활동	148
<표 III-2-7> 학급회의 운영여부	153
<표 III-2-8> 학급회의 참여정도	154
<표 III-2-9>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156
<표 III-2-10>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157
<표 III-2-11>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159
<표 III-2-12>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4)	160
<표 III-2-13>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4)	160
<표 III-2-14>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5)	161
<표 III-2-15>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164
<표 III-2-16> 투표연령에 대한 의견	165
<표 III-2-17>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	166
<표 III-2-18>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	168
<표 III-2-19>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가정, 학교, 사회)	171
<표 III-2-20>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 가정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172

<표 III-2-21>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173
<표 III-2-22>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 사회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174
<표 III-2-23> 종교재단 학교 재학 여부	176
<표 III-2-24>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177
<표 III-2-25>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178
<표 III-2-26> 결사·집회 경험률	180
<표 III-2-27>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183
<표 III-2-28>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 :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185
<표 III-2-29>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연도별 추이)	188
<표 III-2-30>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교육비를 내지 않는 학생의 이름 공개	190
<표 III-2-31>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 공개	192
<표 III-2-32>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개인의 시험성적 공개	193
<표 III-2-33>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195
<표 III-2-34>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	196
<표 III-2-35>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 현황	197
<표 III-2-36>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시간	197
<표 III-2-37> 학생·성인 독서율	198
<표 III-2-38>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198
<표 III-2-39>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199
<표 III-2-40>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200
<표 III-2-41>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200
<표 III-2-42>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 청소년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침해시 상담기관	202
<표 III-3-1>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 -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8
<표 III-3-2>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 -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9

<표 III-3-3>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 - 선후배,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	211
<표 III-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 - 폭행이나 구타	213
<표 III-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 - 따돌림	214
<표 III-3-6>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 - 성적 희롱이나 추행	216
<표 III-3-7>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피해 경험여부	217
<표 III-3-8> 9~17세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218
<표 III-3-9>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 욕설이나 모욕	219
<표 III-3-10>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 따돌림	221
<표 III-3-11>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알려짐	222
<표 III-3-12> 체벌 경험여부 -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224
<표 III-3-13> 체벌 경험여부 -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225
<표 III-3-14> 체벌 경험여부 -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227
<표 III-3-15> 신고접수 경로유형	230
<표 III-3-16>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230
<표 III-3-17>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 성별, 연령별 구분(2014년)	231
<표 III-3-18>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 2014년, 2015년 성별, 연령별 비교	233
<표 III-3-19> 아동학대 발생빈도	234
<표 III-3-20> 중복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235
<표 III-3-21> 재학대사례 : 성별, 연령별, 유형별(중복학대 미분류) 구분	235
<표 III-3-22>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237
<표 III-3-23>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5년~2014년)	241
<표 III-3-24>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와 신고접수 건수(2014년)	242
<표 III-3-25>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	242
<표 III-3-26> 2014년 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243
<표 III-3-27>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244
<표 III-3-28>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245
<표 III-3-29>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245

<표 III-4-1> 부모와의 대화시간(2011년, 2014년 비교)	249
<표 III-4-2> 부모와의 대화 주제와 정도(2014년)	250
<표 III-4-3> 방과후 아동·청소년이 혼자 있는 정도	251
<표 III-4-4> 어린이집 연도 및 설립주체별 설치·운영 현황	252
<표 III-4-5>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2013, 2014년)	253
<표 III-4-6>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255
<표 III-4-7> 어린이집 1개소 및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256
<표 III-4-8>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256
<표 III-4-9> 방과후학교1) 참여 실태	257
<표 III-4-1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258
<표 III-4-11>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2005년~2014년)	258
<표 III-4-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	259
<표 III-4-13>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263
<표 III-4-14> 입양에 대한 견해	265
<표 III-4-15>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265
<표 III-4-16>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266
<표 III-4-17>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267
<표 III-4-18>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268
<표 III-4-19> 가출인 발생 현황	270
<표 III-4-20>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	270
<표 III-4-21>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271
<표 III-4-22> 가출한 주된 이유	273
<표 III-4-23>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	274
<표 III-4-24>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276
<표 III-4-25> 아동복지시설 평가영역별 배점(2013년, 2016년)	277
<표 III-4-26> 보호양육시설 예산	278
<표 III-5-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282
<표 III-5-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283
<표 III-5-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284

<표 III-5-4> 0세의 기대여명	285
<표 III-5-5> 연도별 영아사망률	285
<표 III-5-6>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86
<표 III-5-7> 사고 사망률	286
<표 III-5-8>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287
<표 III-5-9>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288
<표 III-5-10>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	289
<표 III-5-1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291
<표 III-5-1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292
<표 III-5-1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294
<표 III-5-14> 2014년도 보건교사 배치현황	296
<표 III-5-15>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296
<표 III-5-16>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297
<표 III-5-17>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298
<표 III-5-18>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299
<표 III-5-19>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300
<표 III-5-20>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301
<표 III-5-21> 아동·청소년 연간 병원 미치료율	302
<표 III-5-22>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303
<표 III-5-23> 아동·청소년 2주간 약국이용률	304
<표 III-5-24> 현재 흡연율 추이	305
<표 III-5-25> 현재 음주율 추이	305
<표 III-5-26> 평생 약물 경험률	306
<표 III-5-27>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306
<표 III-5-28>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307
<표 III-5-29>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308
<표 III-5-30>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310
<표 III-5-31>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312

<표 III-5-32> 아침식사 하지 않는 이유	313
<표 III-5-33> 수면시간	315
<표 III-5-34> 평균 수면시간 연도별 추이(학교유형별)	316
<표 III-5-35>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317
<표 III-5-36> 수면부족 이유(1순위)	318
<표 III-5-37> 최근 5년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을	319
<표 III-5-38> 자아존중감	322
<표 III-5-39> 자아존중감 하위척도 신뢰도	323
<표 III-5-40>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324
<표 III-5-41> 우울증 정도	325
<표 III-5-42> 우울증의 하위척도 신뢰도	327
<표 III-5-43> 우울증의 배경변인별 차이	327
<표 III-5-44> 스트레스 인지율	328
<표 III-5-45>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학교유형별)	329
<표 III-5-46>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의 배경변인별 차이	331
<표 III-5-47> 스트레스에 따른 자아존중감, 우울증 차이	333
<표 III-5-48> 현재 행복 정도	334
<표 III-5-49> 행복하지 않은 이유	336
<표 III-5-50>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	337
<표 III-5-51>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한국과 WHO의 HBSC와의 비교)	338
<표 III-5-52>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340
<표 III-5-53>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	342
<표 III-5-54> 스트레스유형에 따른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차이	344
<표 III-5-55> 상관분석: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	344
<표 III-5-56>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345
<표 III-5-57> 아동빈곤율	348
<표 III-5-5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352
<표 III-5-59> 한부모가구 비율	353
<표 III-5-60>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353

<표 III-5-6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354
<표 III-5-62>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355
<표 III-5-63>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356
<표 III-6-1> 각급학교의 연도별 취학률 추이(2000, 2010~2014)	362
<표 III-6-2>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2000, 2010~2014)	363
<표 III-6-3>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2000, 2007~2011)	364
<표 III-6-4> 교원 1인당 학생 수(2000, 2010~2014)	366
<표 III-6-5> 연도별(2000, 2007~2012)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 비교	367
<표 III-6-6> 연도별 학업중단을 추이(2000, 2009~2013)	368
<표 III-6-7> 자퇴 충동여부	369
<표 III-6-8> 자퇴충동 이유 1순위	371
<표 III-6-9>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 - 1) 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	373
<표 III-6-10>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 -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374
<표 III-6-11>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 - 3)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376
<표 III-6-1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378
<표 III-6-13> 각종학교로서의 특성화 대안학교 현황	380
<표 III-6-14>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학생 현황	382
<표 III-6-15>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383
<표 III-6-16> 학교에 대한 생각_1)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384
<표 III-6-17> 학교에 대한 생각_2)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386
<표 III-6-18> 학교에 대한 생각_3)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388
<표 III-6-19> 전국 초·중·고 혁신학교 수(2014년 7월)	389
<표 III-6-20> 전국 혁신학교 수 (2015년 7월 현재)	390
<표 III-6-21> 경기도 혁신공감학교 선정 현황 (2014년 9월 1일 기준)	391
<표 III-6-22>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학생 간의 비교 분석	393
<표 III-6-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394
<표 III-6-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394

<표 III-6-2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3.12.31 기준)	395
<표 III-6-26>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3.12.31 기준)	396
<표 III-6-2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1) 공공도서관	397
<표 III-6-28>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2) 청소년시설	398
<표 III-6-29>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3) 문화예술 공간	400
<표 III-6-30> 청소년의 성별·지역별 체험 활동 참여도	402
<표 III-6-31> 청소년 단체 가입 여부	403
<표 III-6-32> 동아리활동 여부	405
<표 III-6-33> 평일 여가시간	406
<표 III-6-34> 평일 여가시간 : 연도별 추이	407
<표 III-6-35> 정규 수업시간 제외 공부시간	408
<표 III-6-36> 여가활동 만족도	410
<표 III-6-37>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	411
<표 III-6-38>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1) 가정	412
<표 III-6-39>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2) 학교	414
<표 III-7-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421
<표 III-7-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421
<표 III-7-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422
<표 III-7-4> 차별받은 경험_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422
<표 III-7-5>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423
<표 III-7-6>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424
<표 III-7-7>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최근 6년)	424
<표 III-7-8> 2013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425
<표 III-7-9>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425
<표 III-7-10>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14.4)	426
<표 III-7-11>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14.4)	426
<표 III-7-12>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427
<표 III-7-13>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15. 3)	428
<표 III-7-14>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429

<표 III-7-15>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 수	430
<표 III-7-16>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431
<표 III-7-17>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431
<표 III-7-18>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432
<표 III-7-19>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국청 운영 누적 현황(2013.1.1.~12.15.기준)	433
<표 III-7-20>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435
<표 III-7-21>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436
<표 III-7-22>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436
<표 III-7-23>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437
<표 III-7-2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438
<표 III-7-25>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438
<표 III-7-26>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439
<표 III-7-27>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440
<표 III-7-28>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442
<표 III-7-2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444
<표 III-7-3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446
<표 III-7-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47
<표 III-7-3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449
<표 III-7-3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450
<표 III-7-3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452
<표 III-7-3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454
<표 III-7-3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	455
<표 III-7-3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457
<표 III-7-38>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459
<표 III-7-39>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 법 위반 내용	459
<표 III-7-40>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460
<표 III-7-4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 수	460
<표 III-7-42> 연간 성교육 경험률	461

<표 III-7-43>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461
<표 III-7-44> 지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462
<표 III-7-45>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463
<표 III-7-46>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464
<표 III-7-47>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466
<표 III-7-48>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467
<표 III-7-49>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467
<표 III-7-5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468
<표 III-7-5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469
<표 III-7-52>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470
<표 III-7-53>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470
<표 III-7-5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471
<표 IV-2-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490

그림 목차

【그림 I-2-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연도별 추진과정	6
【그림 III-1-1】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유엔아동권리협약(연도별 추이)	77
【그림 III-1-2】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학생인권조례(연도별 추이)	79
【그림 III-1-3】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국가인권위원회(연도별 추이)	81
【그림 III-1-4】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82
【그림 III-1-5】 인권존중 정도_가정(연도별 추이)	84
【그림 III-1-6】 인권존중 정도_학교(연도별 추이)	85
【그림 III-1-7】 인권존중 정도_살고 있는 지역(연도별 추이)	87
【그림 III-1-8】 인권존중 정도_대한민국 전체(연도별 추이)	88
【그림 III-1-9】 인권존중 정도_사이버 공간(연도별 추이)	90
【그림 III-1-10】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연도별 추이)	92
【그림 III-1-11】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추이)	93
【그림 III-1-12】 청소년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도별 추이)	95
【그림 III-1-13】 모든 사람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연도별 추이)	97
【그림 III-1-14】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연도별 추이)	98
【그림 III-1-15】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100
【그림 III-1-16】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도 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연도별 추이)	102
【그림 III-1-17】 인권교육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103
【그림 III-1-18】 인권교육 경험 장소(연도별 추이)	105

【그림 III-1-19】 인권교육 도움 정도(연도별 추이)	107
【그림 III-1-20】 차별해 본 경험_성차별(연도별 추이)	108
【그림 III-1-21】 차별해 본 경험_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연도별 추이)	110
【그림 III-1-22】 차별해 본 경험_연령차별(연도별 추이)	111
【그림 III-1-23】 차별해 본 경험_가정형편(연도별 추이)	113
【그림 III-1-24】 차별해 본 경험_지역(연도별 추이)	114
【그림 III-1-25】 차별해 본 경험_외모, 신체조건(연도별 추이)	116
【그림 III-1-26】 차별해 본 경험_종교(연도별 추이)	117
【그림 III-1-27】 차별해 본 경험_가족유형(연도별 추이)	119
【그림 III-1-28】 차별해 본 경험_장애(연도별 추이)	120
【그림 III-1-29】 차별해 본 경험_다문화가정(연도별 추이)	122
【그림 III-1-30】 차별받은 경험_성차별(연도별 추이)	123
【그림 III-1-31】 차별받은 경험_학업성적(연도별 추이)	125
【그림 III-1-32】 차별받은 경험_연령(연도별 추이)	126
【그림 III-1-33】 차별받은 경험_가정형편(연도별 추이)	128
【그림 III-1-34】 차별받은 경험_지역(연도별 추이)	129
【그림 III-1-35】 차별받은 경험_외모, 신체조건(연도별 추이)	131
【그림 III-1-36】 차별받은 경험_종교(연도별 추이)	132
【그림 III-1-37】 차별받은 경험_가족유형(연도별 추이)	134
【그림 III-1-38】 차별받은 경험_장애(연도별 추이)	135
【그림 III-1-39】 차별받은 경험_다문화가정(연도별 추이)	137
【그림 III-1-40】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일 년에 1회 이상)	138
【그림 III-1-41】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한 달에 1회 이상)	138
【그림 III-2-1】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심 (연도별 추이)	142
【그림 III-2-2】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주심 (연도별 추이)	143

【그림 III-2-3】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존중해 주심 (연도별 추이)	145
【그림 III-2-4】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심 (연도별 추이)	147
【그림 III-2-5】 학생회 활동_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음 (연도별 추이)	150
【그림 III-2-6】 학생회 활동_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함 (연도별 추이)	151
【그림 III-2-7】 학생회 활동_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 함 (연도별 추이)	152
【그림 III-2-8】 학생회 활동_학생회 의견을 존중해 줌 (연도별 추이)	152
【그림 III-2-9】 학급회의 운영여부 (연도별 추이)	154
【그림 III-2-10】 학급회의 참여정도 (연도별 추이)	155
【그림 III-2-11】 학생회 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연도별 추이)	157
【그림 III-2-12】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연도별 추이)	158
【그림 III-2-13】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160
【그림 III-2-14】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연도별 추이)	163
【그림 III-2-15】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참여경험 (연도별 추이)	163
【그림 III-2-16】 투표연령 하향화에 대한 의견 (연도별 추이)	166
【그림 III-2-17】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 참여 권리보장 수준 (연도별 추이)	168
【그림 III-2-18】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 (연도별 추이)	170
【그림 III-2-19】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가정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 (연도별 추이)	172
【그림 III-2-20】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 (연도별 추이)	174

【그림 III-2-21】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사회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 (연도별 추이)	175
【그림 III-2-22】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연도별 추이)	178
【그림 III-2-23】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음 (연도별 추이)	179
【그림 III-2-24】 결사·집회 경험률_모임이나 인터넷카페에 가입 (연도별 추이) ...	182
【그림 III-2-25】 결사·집회 경험률_거리집회나 문화행사등에 참여 (연도별 추이)	183
【그림 III-2-26】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연도별 추이)	184
【그림 III-2-27】 용모, 복장, 소지품검사 경험	187
【그림 III-2-28】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 검사 (연도별 추이)	188
【그림 III-2-29】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복장 검사 (연도별 추이)	189
【그림 III-2-30】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소지품 검사 (연도별 추이)	189
【그림 III-2-31】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교육비를 내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공개함 (연도별 추이)	191
【그림 III-2-32】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함 (연도별 추이)	193
【그림 III-2-33】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 (연도별 추이)	194
【그림 III-2-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줌 (연도별 추이)	201
【그림 III-2-35】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음 (연도별 추이)	204
【그림 III-2-36】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_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음 (연도별 추이)	205
【그림 III-2-37】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_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를 제공받음 (연도별 추이)	206
【그림 III-3-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208
【그림 III-3-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210

【그림 III-3-3】 선후배,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연도별 추이)	212
【그림 III-3-4】 선후배, 친구로부터 폭행이나 구타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214
【그림 III-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215
【그림 III-3-6】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217
【그림 III-3-7】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단위(%)	218
【그림 III-3-8】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이나 모욕 피해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220
【그림 III-3-9】 사이버공간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221
【그림 III-3-10】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 유출 피해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223
【그림 III-3-11】 부모로부터 신체적 별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226
【그림 III-3-12】 교사로부터 신체적 별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228
【그림 III-3-13】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재신고 건수	229
【그림 III-3-14】 성별-연도별 성학대 추이	232
【그림 III-3-15】 성별-연도별 성학대 추이	232
【그림 III-3-16】 2015년 최근 1년간 1회 이상 방임 경험률	236
【그림 III-3-17】 연 1회 이상 방임 경험률_3개년 추이(초등학생)	239
【그림 III-3-18】 연 1회 이상 방임 경험률_3개년 추이(중학생)	240
【그림 III-3-19】 연 1회 이상 방임 경험률_3개년 추이(고등학생)	240
【그림 III-4-1】 아버지와의 대화시간(%)	249
【그림 III-4-2】 어머니와 대화시간(%)	249
【그림 III-4-3】 방과후학교 학생만족도(교급별)	260
【그림 III-4-4】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프로그램별)	261
【그림 III-4-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만족도(프로그램별)	262
【그림 III-4-6】 연도별 국외입양아동 수(2007-2013)	264
【그림 III-4-7】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269
【그림 III-4-8】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4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72
【그림 III-4-9】 가출 시 이용 기관 및 서비스	274
【그림 III-4-10】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278
【그림 III-4-11】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278

【그림 III-5-1】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 (연도별 추이)	290
【그림 III-5-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범죄) (연도별 추이)	291
【그림 III-5-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교통사고) (연도별 추이)	293
【그림 III-5-4】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음식물) (연도별 추이)	295
【그림 III-5-5】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09
【그림 III-5-6】 운동실천율(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11
【그림 III-5-7】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4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12
【그림 III-5-8】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314
【그림 III-5-9】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중학생)	314
【그림 III-5-10】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고등학생)	315
【그림 III-5-11】 비만율 추이(2008년~2014년)	319
【그림 III-5-12】 자아존중감 항목별 비교	320
【그림 III-5-13】 우울정도 항목별 비교	325
【그림 III-5-14】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	329
【그림 III-5-15】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330
【그림 III-5-16】 현재 행복 정도(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35
【그림 III-5-17】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339
【그림 III-5-18】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4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341
【그림 III-5-19】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343
【그림 III-5-20】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4개년 추이 : 중학생, 일반/ 특목/자율고생, 특성화고생)	343
【그림 III-5-21】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초등학생)	346
【그림 III-5-22】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중학생)	346
【그림 III-5-23】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고등학생)	347
【그림 III-5-24】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10년, 중위소득 50%)	349
【그림 III-5-25】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12년, 중위소득 50%)	350
【그림 III-5-26】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2009, 2011)	351

【그림 III-5-27】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지원예산	357
【그림 III-6-1】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 추이	365
【그림 III-6-2】 연도별 학업중단을 추이	368
【그림 III-6-3】 자퇴 충동여부 (연도별 추이)	370
【그림 III-6-4】 자퇴 충동이유 (연도별 추이)	372
【그림 III-6-5】 학교생활에서 친구들의 존중과 배려 (연도별 추이)	373
【그림 III-6-6】 학교생활에서 교사의 학생 존중 여부 (연도별 추이)	375
【그림 III-6-7】 학교생활에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움 (연도별 추이)	377
【그림 III-6-8】 학교에 대한 생각_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연도별 추이)	385
【그림 III-6-9】 학교에 대한 생각_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연도별 추이)	387
【그림 III-6-10】 학교에 대한 생각_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연도별 추이)	388
【그림 III-6-11】 공공도서관 이용여부 (연도별 추이)	397
【그림 III-6-12】 청소년시설 이용여부 (연도별 추이)	399
【그림 III-6-13】 문화예술 공간 이용여부 (연도별 추이)	401
【그림 III-6-14】 청소년 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연도별 추이)	404
【그림 III-6-15】 동아리 활동 여부 (연도별 추이)	405
【그림 III-6-16】 정규 수업시간 제외 평균 학습시간(3시간 이상) (연도별 추이)	409
【그림 III-6-17】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 (연도별 추이)	411
【그림 III-6-18】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가정) (연도별 추이)	413
【그림 III-6-19】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학교) (연도별 추이)	415
【그림 III-7-1】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434
【그림 III-7-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440
【그림 III-7-3】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03/2013)	441
【그림 III-7-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443
【그림 III-7-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음 (연도별 추이)	445

【그림 III-7-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함 (연도별 추이)	447
【그림 III-7-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도별 추이)	448
【그림 III-7-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부당한 해고 (연도별 추이)	450
【그림 III-7-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 (연도별 추이) ..	451
【그림 III-7-1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폭언 등 인격 모독 (연도별 추이)	453
【그림 III-7-1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구타나 폭행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455
【그림 III-7-1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성적 피해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456
【그림 III-7-1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 함 (연도별 추이)	458
【그림 III-7-14】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465
【그림 III-7-15】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연도별 추이)	466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1년 한국정부는 전 세계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담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을 갖게 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권리실태를 모니터링 받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세 차례 제출된 한국정부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결과 지속적으로 권고를 받은 사항 중의 하나가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데이터 수집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김영지, 김정준, 이민희, 김지혜, 2013: 3).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종합적인 청소년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체계 개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인권실태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된 제1기(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추진되고 있는 제2기(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I))로 구성되어 있다.

제1기 연구는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영역별로 광범위한 개별지표 풀을 구축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었으며, 제2기 연구는 지표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틀 기준으로 재구성하여²⁾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고, 2개 영역씩 격년 조사되던 것을 한 해에 종합조사하는 것으로 조사주기와 체계를 변경하여 인권실태의 통합적 분석 여건을 마련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국가통계로

1)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2)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전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 인권지표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2014년도에는 ‘대분류(6개) - 중분류(24개) - 지표(58개) - 지표항목(148개)’ 체계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구성하였으며, 148개 지표항목 중 58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90개는 행정문서와 행정통계자료 등을 통해 지표결과를 생산하였다.

한국사회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와 체벌, 청소년폭력, 빈곤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 청소년 문제, 과다경쟁적 입시중심 교육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노동인권 침해, 장애·이주배경·사법과정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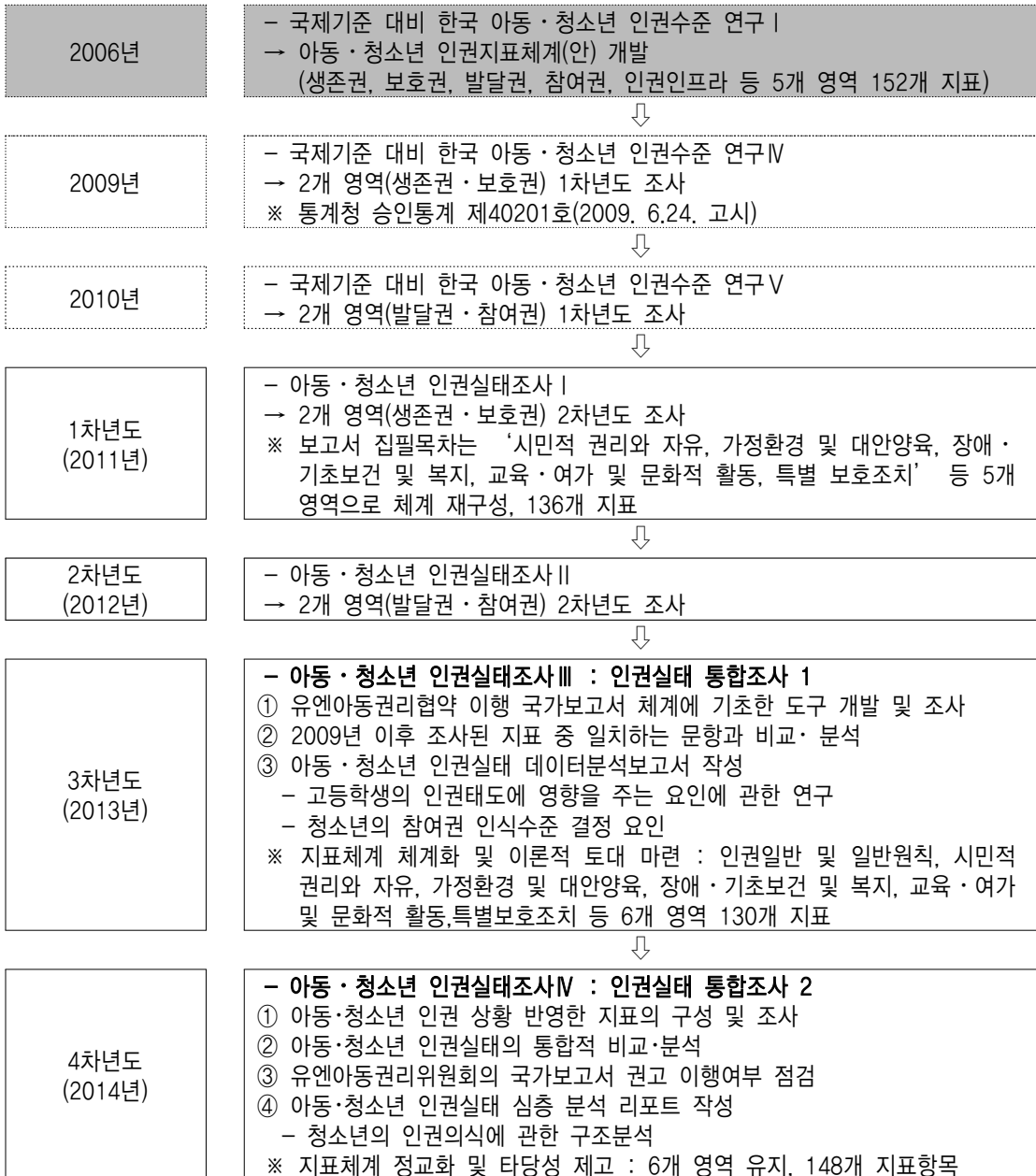
이러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의 의무인 협약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한 것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이며³⁾, 이를 통해 인권 현황과 진전상황에 대한 체계적 파악과 보다 과학적·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신뢰할 만한 인권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권지표의 체계화 및 정교화, 지표 산출체계의 안정적 구축 등은 지표결과 산출 작업과 함께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특히 2017년 6월까지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5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자료 분석과 함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통계와 정책자료들을 보완·검토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인권상황 분석과 정책과제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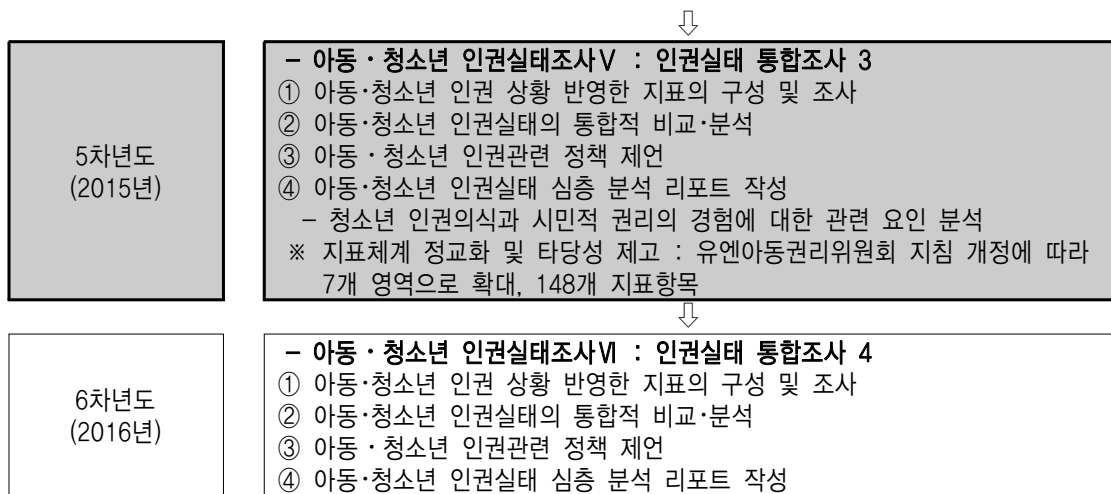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에 대한 반복적인 횡단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변화양상 및 추이에 대한 시계열적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 및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연구는 6개년도 사업의 5차년도 연구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자료원의 정교화 및 타당성 제고 작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지표 산출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실태조사와 행정통계 등을 통해 2015년도 지표결과 산출 및 종합지표 구축 이후 3년간의 인권상황 추이를 분석하며, 셋째, 이를 기반으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체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인권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고,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와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의미있는 통계치(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 2006: 23)”라 할 수 있다.

2. 연구 내용

2015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이해를 위해 1기와 2기를 모두 포함한 인권실태 연구의 연도별 추진과정과 내용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연도별 추진과정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보완

2013년도 연구를 통해 이전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 중 격년으로 2개 인권영역을 조사했었던 조사체계를 개선·발전시켜 한 해에 모든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틀을 마련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틀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전반에 대한 수정 및 재구성 작업이 수행된 바 있다. 2014년도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지표항목과 조사항목의 일치도를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의 타당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지표는 환경변화와 새로운 이슈 등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또한 148개라는 광범위한 지표항목별 타당도와 각 지표항목별 하위 세부 조사항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15년도에도 지표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2014년에 완료하지 못한 수정 지표항목별 생산방법과 지표별 통계자료원의 체계적 정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자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및 광범위한 의견조사 과정을 거쳐 지표 정교화 및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5년도의 인권환경 변화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민적 권리에 포함되어 있던 ‘폭력과 학대’ 영역이 별도의 대분류 영역으로 독립하였다. 이에 본 인권지표체계에도 이를 반영하여 국제적 인권관련 논의의 흐름을 반영하고 국가보고서 작성에의 정책 기여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6개의 대분류 영역을 7개의 영역으로 지표체계를 수정하였다.

2) 지표결과 생산 : 아동·청소년 인권종합실태 조사 및 분석

148개 지표항목 중 60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88개는 행정문서와 행정통계 및 타분야 통계자료원 등을 활용하여 지표결과를 생산한다. 설문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통계는 정부부처 및 공신력있는 통계생산 기관의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지표결과를 산출하였다. 특히, 2015년도는 2013년 인권지표체계의 종합적 재구성 이후 일관성 있는 조사도구를 통해 지표결과를 산출한 지 3년째 되는 시기로 시계열 추이 분석이 가능한 지표항목이 늘어났으므로 보다 풍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였다.

3)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 제안

인권지표 항목별로 결과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권실태와 정책현황의 종합 검토를 통해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이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3년도 이후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과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과 전문가 및 정책관계자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였다.

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인 만큼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실태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정책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과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 분석 :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

2013년도부터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에 주안점을 두어 데이터 분석 성격의 리포트를 발간하여 정책적·학술적 의의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조사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한 소논문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총괄보고서에서 담아내지 못한 보다 심층적인 인권실태 분석(영향요인, 인과관계 등)이 가능하며, 아동·청소년 분야 연구자들의 인권실태 데이터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 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도에는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별권으로 발간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국내·외 아동·청소년의 인권 모니터링 및 유엔권리협약에 따른 이행 수준 모니터링과 관련한 문헌연구를 위해 선행 자료와 유엔 및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보고서와 관련문헌을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영역별로 그동안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 각 지표별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인권관련 국내외 기관의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 파악을 위하여 관련 문서, 언론매체, 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인권지표 수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이슈를 파악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발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위해 그동안의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법,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변화 내용을 검토한다.

2) 전문가 자문

연구 목적, 내용 및 방법 등 전반적인 연구방향 및 수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인권지표체계의 검토를 위한 자문, 정책 제언 및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3년도에 기존에 격년으로 시행되던 조사체계와 지표체계를 통합하는 방대한 작업 이후 인권지표체계와 통계자료원의 정교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지표 영역별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지표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표결과 산출방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3)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제40201호)로 지정되어 실시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그동안의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2015년에도 실시되었다. 기존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연도별로 따로 조사되었던 것을 2013년부터 통합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년에 해당분야 전문가 분과회의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를 보완·수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2015년도 유사한 내용의 질문지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시계열데이터 축적이라는 조사의 의의를 고려하여 최대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2015년에는 크게 문항수정을 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아동·청소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성과지표로서의 활용가능성과 국제지표와의 비교가능성 등을 반영하고자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 기초보장 및 복지’ 영역에 ‘삶의 수준’을,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아동 및 청소년 조사 모두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조사원을 선발하여 권역별(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로 사전집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원은 사전에 표본 추출된 학교에 조사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또 전화로도 협조 요청하였다. 이후 조사원들은 조사협조가 가능한 조사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급단위로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직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2) 표본설계⁴⁾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4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9,500명을 목표 표본수로 결정하였다.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P$ 이다. 본 조사의 교급 및 학년별 모집단 크기와 목표표본 크기는 <표 I-3-1>과 같다.

본 인권실태조사는 변형비례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지역별, 교급별 할당에 따라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변형비례배분은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 $\times$ 학교급 = 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하며,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수가 약 360개 정도이고 조사될 목표 학생수가 9,500명을 넘도록 하였다.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을 보면 <표 I-3-2>와 같다.

4) 본 실태조사의 전체적인 표본설계는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담당하였으며, 이 총괄보고서에는 강현철교수가 집필한 표본설계에 대한 일부 내용만 연구진에 의해 축약·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기초통계데이터를 산출하는 성격을 고려하여 강현철 교수가 집필한 전반적인 표본설계의 상세내용은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별도로 제작되는 통계자료집에 모두 제시하였다.

표 1-3-1 학교급 및 학년별 모집단크기와 목표표본 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50,532	1,378,934 (28.1%)		2,667 (28.1%)		2,700 (28.4%)	
		5	468,240						
		6	460,162						
중학교	중학교	1	525,006	1,705,146 (34.7%)		3,298 (34.7%)		3,132 (32.9%)	
		2	593,902						
		3	586,238						
고등학교	일반고	1	423,344	1,295,108 (26.4%)	1,881,437 (35.8%)	2,505 (26.4%)	3,486 (36.7%)	2,400 (25.2%)	3,684 (38.7%)
		2	435,027						
		3	436,737						
	자율고	1	48,078	143,783 (2.9%)		278 (2.9%)		480 (5.0%)	
		2	48,049						
		3	47,656						
	특성화고	1	112,504	336,239 (6.8%)		650 (6.8%)		648 (6.8%)	
		2	112,854						
		3	110,881						
	특수 목적고	1	17,535	51,794 (1.1%)		100 (1.1%)		156 (1.6%)	
		2	17,752						
		3	16,507						
합계				4,911,004(100.0%)		9,500(100.0%)		9,516(100.0%)	

* 출처: 이 표는 본 인권실태조사를 포함한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표 1-3-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20	522	384	96	162	156	21(7)	18(6)	12(4)	3(1)	6(2)	6(2)
경기	660	783	576	96	81		33(11)	27(9)	18(6)	3(1)	3(1)	
인천	180	174	96				9(3)	6(2)	3(1)			
강원	60	87	96	96	81		3(1)	3(1)	3(1)	3(1)	3(1)	
충북	60	87	96				3(1)	3(1)	3(1)			
충남	120	174	96				6(2)	6(2)	3(1)			
대전	120	87	96				6(2)	3(1)	3(1)			
경북	120	174	96	96	243		6(2)	6(2)	3(1)	3(1)	9(3)	
경남	180	261	192				9(3)	9(3)	6(2)			
부산	180	174	96				9(3)	6(2)	3(1)			
대구	120	174	96				6(2)	6(2)	3(1)			
울산	60	87	96				3(1)	3(1)	3(1)			
전북	120	87	96	96	81		6(2)	3(1)	3(1)	3(1)	3(1)	
전남	120	87	96				6(2)	3(1)	3(1)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광주	120	87	96				6(2)	3(1)	3(1)			
제주	60	87	96				3(1)	3(1)	3(1)			
합계	2,700	3,132	2,400	480	648	156	135(45)	108(36)	75(25)	15(5)	24(8)	6(2)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 학생수 총계: 9,516명, 학교수 총계: 363(121)개

* 출처: 이 표는 본 인권실태조사를 포함한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고등학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일반고는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자율고는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는 가사·공업·농림업·상업·실업·해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목적고는 과학, 국제, 예술, 외국어고등학교가 포함된다. 이러한 고등학교 유형별 특수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 시 조사문항에 따라 이 고등학교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 모집단분석으로써 학교수와 학생수의 분포, 표본설계, 가중치와 모수추정 등에 대한 상세내용이 통계자료집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표본 수를 보면 <표 I-3-3>과 같다.

표 I-3-3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대상 현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고 학생	자율고 학생	특성화고 학생	특수목적고 학생	계
할당 표본 수	2,700	3,132	2,400	480	648	156	9,516
조사완료 표본 수*	3,041	3,408	2,501	673	384	260	10,453

* 조사완료 표본수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 실사기관과의 협의 결과, 표본 설계 시 예상했던 것보다 학급당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었으며, 이렇게 추가된 표본 수가 누적된 결과로 파악됨.

최종적으로 총 10,453명의 학생이 조사되었으며, 그 중 남학생이 52.2%, 여학생이 47.9%였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8.2%, 중학생이 34.7%,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30.4%, 특성화고 학생이 6.8%였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 학생이 43.7%, 중·소도시지역 학생이 40.9%, 읍·면지역 학생이 15.4%였다. 가족유형은 양부모 가정의 학생이 90.2%, 한부모 가정의 학생이 8.3%, 조손가정의 학생이 0.9%였다. 학업성적은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2.6%,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2.6%, ‘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24.7%였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상’으로 인식하는 학생은 51.5%, ‘중’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35.8%, ‘하’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2.7%였다.

표 1-3-4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N)	비율(%)
전체		10,453	100.0
성별	남자	5,448	52.1
	여자	5,005	47.9
학교유형	초등학교	2,935	28.1
	중학교	3,629	34.7
	일반/특목/자율고	3,173	30.4
	특성화고	716	6.8
지역규모	대도시	4,568	43.7
	중소도시	4,275	40.9
	읍면지역	1,610	15.4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428	90.2
	한부모가정	865	8.3
	조손가정	98	0.9
	기타	61	0.6
학업성적	상	3,400	32.6
	중	4,445	42.6
	하	2,578	24.7
경제적 수준	상	5,380	51.5
	중	3,744	35.8
	하	1,322	12.7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2014년 인권실태연구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기본 틀로 하되,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 2017년에 유엔에 제출할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변경에 따라, 인권 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과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따른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실태조사보다는 기존의 행정통계로써 더 객관적이고 대표성이 있거나, 2차 자료 분석이 더 효과적인 인권지표관련 조사문항은 본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개인적인 상황(건강 및 질병 등), 학교여건과 대상자의 응답 가능여부, 인권침해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없애도록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조사도구를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의 2개의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수월한 조사응답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생 각 4명씩을 대상으로 5월초에 사전조사(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구에 대한 이해(예, 정책)를 돕기 위해 전면적인 설문지 재검토를 통해 보조설명들을 추가하였으며, 유사문항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예, 차별한 경험, 차별을 당한 경험), 각 문항의 차별성을 더욱 강조하는 지시문과 편집을 활용하여 최대한 조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로직 검토 후 조사도구를 완성하였다.

표 1-3-5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문 항 번 호(신규*)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인권 협약, 기관 인지도	32(1~3)	41(1~3)
		인권의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40(1~5)	43(1~5)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34(1~5)	44(1~7)
		인권교육 경험	16	17
		인권교육 받은 기관	16-1	17-1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16-2	17-2
	일반원칙	차별 가해 경험	35(1~10)	45(1~10)
		차별 피해 경험	36(1~10)	46(1~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 표명권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17(1~4)	18(1~4)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30
		학급회의 운영 여부	29	32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29-1	32-1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31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28(1)	33(1)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	35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	37
		참여권 보장 수준	30	38
		참여 장애 이유	31	39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37(2~4)	40(2~4)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34,34-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37(1)	40(1)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	36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	36-1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29(1~3)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33(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28(2)	33(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28(3)	33(4)
	정보접근권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28(4)	33(5)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33(1~3)	42(1~3)

조 사 내 용			문 항 번 호(신규*)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3. 폭력 및 학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20(2,4)	21(2,4)
		폭력피해 경험	21(1~7)	22(1~7)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22(1~5)	23(1~5)
		체벌 경험률	20(1,3)	21(1,3)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방임유형 및 정도	18(1~5)	19(1~5)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19	20
		가출 이유	19-1	20-1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만족도	-	20-2,20-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사고 및 급식 안전 등에 대한 인식률 (교통사고, 범죄, 먹거리, 학교급식)	4 39(1~3)	4 49(1~3)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6	6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운동 실천율	5	5
		아침식사 결식률	3	3
		아침식사 결식이유	3-1	3-1
		수면시간	1	1
		수면부족여부	2	2
		수면부족 이유	2-1	2-1
		자살에 대한 생각	-	8
		자살 생각 이유	-	8-1
		우울증 지수	9(1~3)	10(1~3)
		자아존중감 지수	9(4~7)	10(4~7)
		스트레스 인지율	7(1~6)	7(1~6)
		행복도	10	11
		행복하지 않은 이유	10-1	11-1
		삶의 수준*	11*	12*
		고민거리 대화상대	8	9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학업포기 생각여부	13	14
		학업포기 생각 이유	13-1	14-1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14(1~4)*	15(1~4)*
	교육의 목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15(1~4)	16(1~4)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23	24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25	26
		동아리활동 참가율	26	27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24	25
		하루평균학습시간	12	13
		여가활동 및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23-1	24-1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27	28
7. 특별보호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	47,47-1(1~9)
	성적 착취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38	48
		성적 피해시 도움제공자	38-1	48-1

4) 전문가의견조사

(1) 전문가의견조사 개요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홀수년도(2009년, 2011년)와 짝수년도(2010년, 2012년)로 구분되어 조사됐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이 2013년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에서 통합·조사되었다(김영지, 김경준 외, 2013). 또한 보다 체계적인 지표체계 구성을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틀에 따라 지표를 재정리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3년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는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지표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지표항목은 2014년에 다양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인권영역별 분과회의(인권영역에 따라 6개 분과회의 운영)와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더욱 정교화되었다. 2015년에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통해 기초가 마련되고 정교화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항목의 타당성을 재검점함으로써 지표의 신뢰도를 높이고 최종 지표항목을 확정짓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가 시계열 데이터를 취합하고 인권실태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환경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최종적인 지표검토와 확인단계는 매우 중요한 검증과정이다.

올해 전문가의견조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지표항목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를 조사제목으로 하여 2015년 7월~8월 약 한 달 간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웹조사(web-based survey)를 통해 수행되었다. 전문가의견조사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학계, 현장, 정책의 광범위한 전문가 47명으로, 조사전문기관의 섭외와 실사로 진행되었다. 조사도구는 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변경에 따라 기존의 6개 영역이 아닌 다음의 <표 I-3-6>과 같은 7개 영역의 148개 지표항목 타당도와 이 지표를 산출하는 통계자료원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협조를 요청받은 47명의 전문가 중 45명이 조사에 응답하였는데, 아동·청소년관련 학과 교수 및 학계 전문가는 22명,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인권관련 NGO등의 현장전문가 25명이 응답하여 수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조사되었다.

조사는 전체 인권지표항목과 통계자료원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웹상에서 구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3-6 전문가의견조사의 인권지표항목 및 통계자료원 타당도 검증 내용

영역별	지표항목 타당도	통계자료원 타당도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2	7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5	13
3. 폭력 및 학대	11	9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5	28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32	35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21	20
7. 특별 보호 조치	32	38
합계	148	150
총 문항 수	298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지표항목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결과, 전문가들은 특히 지표항목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각 지표항목들에 1점(매우 타당하지 않음) ~ 5점(매우 타당함)까지의 척도를 이용하여 타당도를 선택하게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지표들에서 타당함을 의미하는 4점 이상의 평균값을 보였다. 전체 148개 지표항목 중 20개만이 4점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 지표들만 따로 살펴보면 <표 I-3-7>, <표 I-3-8>, <표 I-3-9>와 같다(전체 지표항목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타당도 점수와 함께 개방형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표에 대해 연구진들이 재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능한 반영하여 인권지표항목을 최종확정하는데 기여하였다.

지표항목의 타당도가 4점 미만으로 나타난 전문가의견조사결과를 인권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분류 “2.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에 대한 지표항목 타당도가 3.72점으로 나타났고, 병무청 요청자료 역시 통계자료원으로서 낮은 타당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 지표항목(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제시에 따라 이 지표항목과 관련 통계자료원은 삭제되었다. 이외에 해당 영역에서 통계자료원 중 5개가 4점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경우는 검토 후 삭제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추천한 다른 자료원으로 대체하였다. 또 일부 자료원은 대체할만한 접근 가능한 자료원이 없는 현실적인 한계로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5) 통계자료원 타당도 조사결과의 경우 관련 표가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부록에 제시하였음.

표 1-3-7 전문가의견조사결과 4점미만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표항목① (단위: 점)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항목)	타당도	
			M	SD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3.72	1.13
3. 폭력 및 학대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아동학대 신고건수	3.72	1.14
		3-2-2-3.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건 수	3.84	.90
		3-2-2-4. 서비스 제공정도와 원가정 복귀율	3.68	.99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 (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3.96	.79

* 인권지표항목과 통계자료원 타당도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서의 모든 조사결과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폭력 및 학대” 대분류에서는 기존에 다른 중분류에서 부적절하다고 문제시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이동시킴으로써 아동학대의 심각한 현황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학대피해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수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지표의 경우 전문가의견에 따라 사례판정건수와 사례관리기간에 대한 통계자료원을 새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 실태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새로운 통계자료원의 요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작성하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가 거의 유일한 자료원이어서 원안대로 유지시켰다.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대분류에서는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지표 및 통계자료원의 타당도가 각각 3.96점, 3.92점으로 나타났고, 대화시간만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보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4점에 근접해 있어 삭제하는 대신, 부모자녀와의 대화주제에 대한 부분을 새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낮은 타당도를 보인 일부 항목은 삭제하였다. 보육시설 이용률과 관련하여 유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유치원은 교육시설로도 분류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원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원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현재 이용가능한 공식적인 자료원이 사업주체인 교육부(방과후학교)나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타당도 점수 3.72~3.92점). 입양률과 관련하여 통계청 사회조사에 대한 통계자료원(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의 타당도가 낮았으나(3.64점),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다른 대체가능한 자료원이 없으며, 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지시켰다. 이외에 낮은 타당도를 보인 자료원인 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모형은 삭제하였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통계자료원 역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자료원 외에 대체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차선택으로 유지시켰으며 추후 검토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평가지표는 3.92점으로 타당도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유지시켰으며, 이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통보사항이나 사업결과보고 등에 대한 내용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다.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대분류에서는 ‘0세의 기대여명’ 지표항목에 대한 타당도가 3.84점,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대한 자료원 타당도가 3.92점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관련한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지시켰다. 또한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에 대한 타당도가 3.92점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지표가 생존과 안전에 관한 것으로 의미 있는 지표이며, 또 청소년의 범죄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원안대로 유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 비만, 질병 유병률의 자료원은(3.71~3.92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발표되는 국민건강 통계의 자료로써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포함시켰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이용율에 대한 통계자료원으로써 약국 이용률에 대한 타당도가 비교적 낮았으나(3.68점), 저소득가정에서 치료비용의 부담으로 병원보다 약국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유지시켰다. 또한 감기약 오남용 및 부탄가스나 본드 등의 약물경험율에 대한 지표항목의 타당도가 3.72점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지표항목과 통계자료원에 원안대로 포함시켰다. ‘삶의 수준(삶의 만족도)’에 대한 지표항목은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취합하는 조사항목으로써 별도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비교가능 지표로서의 필요성에 따라 포함시킨 지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아동빈곤율에 대한 통계자료원은(타당도, 3.92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에서 발췌한 현재의 아동빈곤율을 대체할만한 자료원의 확인이 어렵고 또 4점에 근사한 값인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포함시켰다. 취약계층 아동현황과 관련하여 기존의 한부모가구 비율만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조손가정비율을 포함시켰다.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중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차별성있는 통계자료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삭제시켰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 등에 대한 내용은(3.71~3.88점)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1-3-8 전문가의견조사결과 4점미만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표항목②

(단위 : 점)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항목)	타당도	
			M	SD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2. 생존 및 발달(제6조2항)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건수	3.92	.91
5-3. 보건서비스(제24조)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3.72	1.02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제24조)	5-4-3. 정신적 건강	5-4-3-5. 삶의 수준*	3.96	1.14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2.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6-2-2-1. 인성교육 실천학교 운영수	2.89	1.28
		6-2-2-2. 인성교육 연수 참여 교원수	2.83	1.38

* 인권지표항목과 통계자료원 타당도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사의 모든 조사결과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대분류에서는 기존의 인성교육 실천학교에 대한 부분이 3점 미만의 매우 낮은 타당도를 보임에 따라 연구진 논의를 거쳐 인성교육 실천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다. 대신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지표항목에 좀 더 부합한다는 연구진의 판단 하에 현재 자율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혁신학교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지표항목과 통계자료원을 모두 교체하였다.

“특별보호조치” 대분류에서는 ‘아동·청소년 난민비율’ 과 ‘탈북 난민 아동수’ 지표에 대해서 낮은 타당도점수(3.44점)와 함께 난민의 수가 부정확해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자료원의 출처가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의 자료로써 이를 대체할 별도의 신뢰할만한 통계자료원이 미흡하다는 연구진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포함시켰다. 또한 이외의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학교, 레인보우스쿨,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관련 서비스들에 대한 지표항목과 통계자료원이 대략 3.69~3.84점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학생이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들이고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정착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유지시켰다.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 지표항목의 경우 4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처우불복에 대한 제도 인지와 그 처리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원안대로 포함시켰다. 또한 ‘성폭력 예방 전문가 양성인원수’ 지표항목은 성폭력예방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포함시켰으며,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지표항목의 경우 실태조사 문항으로 시계열 자료를 취합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유지시켰다.

표 1-3-9 전문가의견조사결과 4점미만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표항목③

(단위 : 점)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항목)	타당도	
			M	SD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 · 청소년 난민 비율	3.44	1.00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3.80	.87
	7-1-3. 이주배경아동 ·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및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	3.84	.90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3.76	.83
		7-1-3-3.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3.68	.90
7-2. 소년사범아동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3.92	.76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3.84	.75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3.80	1.08
	7-4-2.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3.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3.92	.95
	7-4-4. 성폭력 피해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2.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3.88	.83

* 인권지표항목과 통계자료원 타당도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의 모든 조사결과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이러한 지표항목과 통계자료원의 타당도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제검토하였으며, 필요시 추가자문등을 통해 지표항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5) 정책협의회, 전문가워크숍, 청소년 의견청취, 유관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아동 · 청소년 인권관련 정책 현안 논의, 지표결과 생산을 위한 행정통계 발굴,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논의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보완 및 지표영역별 정책적 대안 모색 등 연구결과의 심층적 논의 및 인권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내용을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인권정책 과제가 당사자 요구와 필요에 맞도록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정책과제안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고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 아이디어를 청취하여 과제발굴 과정에 반영하였다.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는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정책관계자(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인권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모색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본 인권실태연구의 연구진)이 공동개최하였다.

제 Ⅱ 장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구성

1.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의 체계화
2.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구성요소
3. 2015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제 II 장

2015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구성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체계화⁶⁾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제1기(2006~2010)와 2기(2011~2016) 연구 역사를 거치면서 체계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표의 완성도와 사회적 활용도를 높여 가고 있다.

2013년부터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 공표하는 ‘청소년통계’에 인권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고 있고(양성평등의식, 인권의식 등 4개 문항), 보건복지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인권실태 문항 5개가 포함됨으로써 아동정책 성과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현황, 그리고 진전 상황을 객관적·과학적·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표로 기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환경과 이슈에 민감성을 갖고 계속 발전적으로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1년 2기 인권실태 연구 첫 해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성된 기존의 지표체계를 부분적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체계로 재구성 작업을 시도하였고, 2013년에 들어 한 해에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협약에 기반하고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이라는 정책활용도를 주요기준으로 한 지표체계를 완성하고 매년 이를 체계화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원리는 1차적으로 유엔 지침에서 제시한 인권영역과 하위내용(협약조항)을 각각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로 적용하고, 다음 단계로 지표체계로서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중분류 단위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6) 이 절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을 위한 주요 기반이 되는 자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3개 선택의 정서⁷⁾,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1호~18호, 유니세프 등 국제 민간단체의 협약 해설서, 협약 이행에 대한 한국의 국가보고서,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의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1996, 2005, 2010, 2015) 등이다(김영지·김경준 외, 2013: 67).

2015년도에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근간이 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이 개정·발표되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하위내용이었던 ‘체벌 및 폭력’ 관련 내용과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하위내용이었던 ‘학대’ 관련 내용이 합쳐져서 ‘폭력 및 학대’라는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독립되었다는 점이다.⁸⁾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6년 유엔차원의 아동폭력대책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문제를 중요 이슈로 강조해 온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논의에서 ‘폭력 및 학대’ 문제가 중요한 관심분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15년도 인권지표체계에서 ‘3. 폭력 및 학대’ 영역을 새로운 대분류로 설정하고, 기존 ‘2-6.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중분류와 ‘3-3.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중분류, 그리고 ‘3-1-2.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소분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폭력 및 학대’ 대분류의 하위내용으로 이동하여 구성하였다.

표 II -1-1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기준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⁹⁾

협약 영역	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제4조) ○ 협약 홍보(제42조) ○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2. 아동의 정의		○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제1조)
3. 일반 원칙		○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 아동 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7)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s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s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OPAC),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s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OPCP)

8) 2015년 개정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공식문서 제목은 다음과 같음.: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2015, 4)).

9) 표 안의 ‘영역’과 ‘하위내용’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에서 국가보고서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을 해당 영역과 조항 분류 그대로 표로 정리한 것임.

협약 영역	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이름과 국적(제7조) ○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 표현의 자유와 정보공유(제13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 사생활의 보호(제16조) ○ 정보접근권 및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제17조)
5. 폭력	3. 폭력 및 학대	○ 양육받는 동안의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및 조치, 예방 및 효과적인 사법적 개입(제19조) ○ 유해한 전통관습 폐지(제24조 3항) ○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제34조) ○ 피해아동의 신체적 ·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6.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 부모의 자녀지도 책임과 권리 및 의무(제5조, 제18조 1항), 부모의 양육 지원 및 아동보호 시설 및 서비스 개발(제18조 2항) ○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 가족의 재결합(제10조) ○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 입양(제21조) ○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 ○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7.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생존 및 발달(제6조) ○ 아동보호 서비스와 시설 및 사회보장(제18조 3항, 제26조) ○ 장애아동(제23조) ○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 기본적 의식주 등 적절한 생활수준(제27조 1, 2, 3항) ○ 약물남용 보호조치(제33조)
8.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교육에의 권리(제28조) ○ 교육의 목적, 교육의 질(제29조) ○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 인권교육과 시민교육 ○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제31조)
9. 특별보호 조치	7. 특별보호 조치	○ 난민아동(제22조) ○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제30조) ○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 착취상황하의 아동 - 경제적 착취(제32조) - 약물남용(제33조) - 성적 착취 및 학대(제34조)

협약 영역	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 인신매매 및 유괴(제35조) -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 ○ 법에 저촉된 아동,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 -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제37조 나, 라) -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제37조 가) -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 소년사법 운영(제40조) ○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를 비롯한 무력분쟁 하의 아동(제38조)

한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을 위한 주요 기반 자료 중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은 현재 제1호부터 18호까지 발표된 상황이다. 일반논평은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으로 협약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이해된다.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 수정·보완과정에서 각 영역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일반논평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일반논평 제19호는 2016년 발표 예정으로 현재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이 발표되어 있다.

표 II-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과 관련 지표영역

번호	일반논평	관련 영역
제1호 (2001)	교육의 목적(The aims of education)	6. 교육
제2호 (2002)	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The role of independent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1. 일반
제3호 (2003)	HIV/AIDS와 아동의 권리(HIV/AID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5. 보건복지
제4호 (2003)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5. 보건복지
제5호 (2003)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ts. 4, 42 and 44, para.6))	1. 일반
제6호 (2005)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4. 가정 7. 특별보호
제7호 (2005)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 2006년 수정본 : CRC/C/GC/7/Rev.1 (2006.9)	각 영역
제8호 (2006)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arts 19; 28, para.2 ; and 37, inter alia))	3. 폭력 7. 특별보호

번호	일반논평	관련 영역
제9호 (2006)	장애 아동의 권리(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5. 장애
제10호 (2007)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7. 특별보호
제11호 (2009)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Indigenous children and their rights under the Convention)	7. 특별보호
제12호 (2009)	아동의 피청취권(의견표명권)(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3. 시민권
제13호 (2011)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3. 폭력 7. 특별보호
제14호 (2013)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art. 3, para. 1))	1. 일반
제15호 (2013)	달성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아동의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art. 24))	5. 보건복지
제16호 (2013)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업 영역의 영향에 대한 국가 의무(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business sector on children's rights)	1. 일반
제17호 (2013)	휴식, 레저, 놀이, 여가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6. 문화여가
제18호 (2014)	유해한 관습에 대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31호) 및 아동권리위원회(18호) 공동 일반논평(Joint general recommendation/general comment No. 31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No. 18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harmful practices)	3. 폭력 5. 보건복지 7. 특별보호
제19호 (2016)	공공지출과 아동권리(Public spending and the rights of the child) ※ 2015. 6. 11. 초안발표	1. 일반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목록을 지표영역과 관련지어 표로 구성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 :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5&DocTypeID=11

* 국가인권위원회(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일반논평을 보면, 교육,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건강, 일반이행조치, 폭력, 장애, 청소년사법, 원주민 아동, 참여권,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기업과 인권, 여가 및 문화, 성차별, 아동·청소년 예산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구성요소¹⁰⁾¹¹⁾

2013년에 전체 지표항목을 한 해에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로 지표의 전면 개정작업을 실시하면서 인권지표 영역별 개념과 정의를 정리함으로써 인권지표체계 구성의 이론적 토대를 정리한 바 있다. 2015년도에도 후속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지표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기반이 되는 이론적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¹²⁾

특히 2015년에는 변화된 국제적 인권환경(아동 폭력과 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 확대)과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의 변화,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기존의 인권지표체계를 수정·보완하고 통계자료원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첫 번째 대분류 영역인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은 인권관련 법·제도, 조직, 자원, 협약 교육 및 홍보 등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에 해당하는 ‘인권일반’과 아동권리협약 전체 조항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네 개의 협약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등 두 개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은 2013년도 지표체계 대분류 영역에 새롭게 구성된 영역으로, 2011년도부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가 근거로 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10)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김희진 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가 집필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7개 대분류 영역 기준으로 담당 지표별로 지표의 구성과정과 내용을 집필하였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대분류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과 ‘대분류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관련 내용을, 김희진 연구위원은 대분류 3영역의 두번째 중분류 지표인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학박과 사회복귀’ 부분과 ‘대분류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그리고 ‘대분류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중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중분류와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중분류를, 이민희 교수는 대분류 3영역의 첫번째 중분류 지표인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대분류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관련 내용을, 박선영 교수는 대분류 5 영역의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등 세 개의 중분류와 ‘대분류 7. 특별보호조치’ 관련 내용을 집필하였다.

11) 이 절에서 참고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제문서의 저자는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약자인 ‘UNCRC’로 표기하였다.

12) 이 절은 2013년도에 지표체계 전면 보완작업을 수행하면서 정리한 이론적 기반의 후속 작업 성격으로, 2013년도의 지표영역별 이론적 논의의 흐름을 공유하면서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지표 변화내용을 보완 정리한 것이다. 즉, 2013년도의 연구보고서인 “김영지, 김경준 외(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의 이론적 논의 부분인 제Ⅱ장 ‘20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영역의 개념과 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2013년도 인권연구’와 ‘2014년도 인권연구’ 등은 6개년 연구로 연속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를 의미한다.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 등 세 개의 클러스터를 포괄하는 영역이다. ‘일반조치’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협약 제4조), 협약 홍보(제42조),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등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예산 등 인프라와 협약 및 국가보고서 홍보에 대한 사항을 말한다. ‘일반원칙’은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등 아동권리협약 전체 조항의 바탕이 되는 네 개의 일반원칙이다(김영지, 김경준 외, 2013: 69).

최종적으로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 영역은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등 2개의 중분류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하위영역은 지표(소분류) 5개, 지표항목은 총 12개로 설정하였다.

먼저 ‘인권일반’ 중분류는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인권에 대한 인지도’, ‘인권교육’ 등 세 개의 지표로 구성되는데,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지표는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법·제도,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등 세 개의 지표항목으로, ‘인권에 대한 인지도’ 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기관 인지도’,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등 세 개의 지표항목으로, ‘인권교육’ 지표는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등 세 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013년도에는 인권교육을 당시 대분류 5영역인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교육분야 하위내용으로 구성하였으나 보다 포괄적인 이행조치로 보아 2014년도부터 대분류 1영역으로 이동하였다. 2014년도에 ‘인권인프라’ 지표의 하위 항목으로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법·제도’를 신설하였다.

‘일반원칙’ 중분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일반원칙인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를 담고자 한 것이다. 이 중 제6조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는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대분류 5)과, 제12조 ‘의견표명의 권리’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대분류 2)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두 개 원칙은 제외하고 ‘차별금지’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였다(김영지, 김경준 외, 2013: 70).

‘차별 경험률’ 지표에 대해 2013년도에는 ‘차별의식 및 태도’와 ‘차별 경험’ 등 두 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하여 ‘차별의식과 태도’는 다문화 가정 또래와 장애가 있는 또래에 대한 질문만 구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10개의 동일한 차별경험을 가해 및 피해경험으로 각각 설문조사문항으로 구성하여 지표항목도 ‘차별 가해경험’과 ‘차별 피해경험’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지표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일종의 철학과 원리로서 그 적용범위와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인 지표항목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3년도에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구현하는 아동영향평가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실제 이행 성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영향평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지표 자료원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영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상 협약 조항 제7조 및 8조와 제13조에서 17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며, 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서는 앞의 ‘일반원칙’에서 언급했듯이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협약 제12조 일반원칙 내용을 여기에 포함하여 다룬다.

2013년 및 2014년도에는 제37조와 제28조 체벌 및 폭력 관련 내용이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속해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폭력 및 학대’를 별도의 대분류 영역으로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중분류 2-6(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이 새로운 대분류 3영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7조(이름과 국적), 제8조(신분의 등록 및 유지), 제12조(아동 의견표명의 권리),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4조(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5조(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제16조(사생활의 보호), 제17조(정보접근권)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12조와 제13조는 내용상 관련이 깊지만 각기 다른 고유의 특성을 가지는 조항이므로 현재와 같이 하나의 중분류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하위의 지표와 지표항목이 충분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12조(아동 의견표명의 권리)는 아동권리협약의 네 개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국가보고서 작성 시 ‘일반원칙’ 영역에서 별도 기술되나 내용적으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본 지표체계 대분류 1의 일반원칙에서는 다른 영역과 중복성이 낮은 ‘차별금지’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2가지만 다루고, 제12조 의견표명권은 대분류 2.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서 다루었다. 본 지표체계에서는 제12조 의견표명권과 제13조 표현의 자유를 하나의 중분류 지표영역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현단계 지표구성을 위한 제한적 결정이며 향후 제12조의 아동·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포괄적인 특성을 보

다 잘 담아낼 수 있는 지표체계 구성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2조가 담고 있는 권리내용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일반논평 제12호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제12조는 하나의 권리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반원칙으로서 다른 모든 권리들의 해석과 이행에 고려되어야 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모든 협약 조항에 나타난 권리의 실행에서 아동·청소년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면 다른 권리들도 온전히 실현될 수 없으므로 협약의 다른 많은 조항들과도 관련되어 있다(UNCRC, 2009: para 2, 68)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지표 보완이 필요하다(김영지, 김경준 외, 2013: 71-72).

한편 2013년에 중분류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던 ‘이름과 국적(제7조),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에 대한 지표항목으로 ‘출생신고율’을 설정하였으나, 2014년도에 이에 대한 행정통계 부족의 한계로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입양문제와 이주배경 아동과 관련된 이슈 등 지표의 의의를 볼 때 양적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면 현실태를 볼 수 있는 정성적 지표항목 개발 아이디어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보완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2014년도의 신규 지표항목으로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중분류의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지표에 아동·청소년의 일상적인 학교생활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급회의 운영여부와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를 알아보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중분류에서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및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지표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중분류에서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항목을 추가하였다.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지표의 하위 항목 중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게 나온 지표항목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은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영역은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의 중분류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하위영역은 지표(소분류) 10개, 지표항목은 총 24개로 설정하였다.

3) 폭력 및 학대

2015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에 있어서 2014년도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권지표의 대분류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 속해있던 중분류 지표들 중 하나였던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지표가 독립되어 기존의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과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 사이에 새롭게 마련된 대분류 지표 ‘3. 폭력 및 학대’ 영역에 속하는 중분류 지표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2014년까지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대분류 지표는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으로 순서가 바뀌면서 여기의 중분류 지표 ‘부모의 지도와 책임’에 속해있던 소분류 지표들 중 하나인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가 새로운 대분류 지표 ‘3. 폭력 및 학대’의 소분류 지표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분류 지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중분류 지표들 중 하나였던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와 그의 하위지표들 전체가 역시 새로운 대분류 지표 ‘3. 폭력 및 학대’ 영역의 중분류 지표체계로 이동하게 되었다.

2015년 지표체계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2015년 3월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된 ‘2015 정기 아동인권보고서 작성지침’에서 기존의 지침과는 달리 “5. 아동에 대한 폭력(제19조, 제24조 3, 제28조 2, 제34조, 제37조 a, 제39조)”을 대분류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UNCRC, 2015: 6). 한편, 유엔의 아동인권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작성지침의 대분류 주제를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명명하고 ‘학대’를 주제로 명명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UN의 새로운 지침에서 마련된 ‘아동에 대한 폭력’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9조에 아동에 대한 학대, 방임, 유기, 착취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5년도 지표체계에서 대분류 지표 명칭을 ‘폭력 및 학대’로 명명하였다.

이 밖에도 2015년도 아동인권지표체계가 조금 변화하면서 지표들의 이동과 함께 명칭이 내용에 따라 조금 수정되었는데,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2014년에 대분류 지표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중분류 지표들 중 하나였던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지표가 새로운 대분류 지표 ‘3. 폭력 및 학대’의 첫 번째 중분류 지표로 자리매김하면서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로 개칭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가호에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당사국들은 이를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도 지표체계에서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의 중분류 지표의 하위지표들 중 하나였던 ‘정서적 학대 경험률’ 소분류 지표는 삭제하고 이 지표 아래 세부지표항목으로 있었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을 언어폭력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대분류 지표체계 ‘3. 폭력 및 학대’의 첫 번째 소분류 지표로 자리매김한 ‘청소년폭력 경험률’의 첫 번째 세부지표항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대분류 지표 ‘폭력 및 학대’의 학대와 관련된 지표체계의 변화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대분류 지표의 두 번째 중분류 지표인 ‘학대, 방임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지표는 2014년도 대분류 지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소분류 지표들 중 하나였던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지표와

중분류 지표들 중 하나였던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지표의 명칭을 각 세부지표항목들의 내용을 고려하여 명칭과 내용을 혼합하여 새롭게 중분류 지표로 명명한 것이다. 그리고 2014년도 소분류 지표로써 지니고 있던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와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의 명칭과 하위 세부지표항목들의 명칭과 내용은 변하지 않고 지표영역만 이동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유엔아동인권위원회가 만든 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2015년도 아동인권지표체계에 대하여 종합 정리하여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4년도에는 없었던 새로운 대분류 지표 영역으로 ‘폭력 및 학대’가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과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다음의 세 번째 대분류 지표로 확정되었다. 이의 중분류 하위 지표들로는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3-2. 학대, 방임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의 2개 지표로 확정되었다. 다시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의 중지표 아래에는 ‘3-3-1. 청소년폭력 경험률’ 지표와 ‘3-1-2. 체벌 경험률’의 두 지표가 속해 있다. ‘3-3-1. 청소년폭력 경험률’의 소분류 지표는 ‘정서적 학대 경험률’, ‘폭력피해 경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의 3개 세부지표항들로 구성되었고, ‘3-1-2. 체벌 경험률’ 소분류 지표는 ‘체벌 경험률’ 하나의 세부지표항목으로만 구성되었다. 학대와 관련해서는 중분류 지표인 ‘학대, 방임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아래에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와 ‘3-3-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의 2개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소분류 지표에는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중복학대 및 재 학대 경험률’, ‘방임 유형 및 정도’의 세부지표항목들로 구성되었고,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의 소분류 지표에는 ‘아동학대 신고건수’,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건수’, ‘서비스 제공정도와 원가정복귀율’ 세부지표항목들이 2014년과 같이 속해있다.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가호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국이 보장해야 할 내용으로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분류 지표 ‘3.폭력 및 학대’의 중분류 지표 3-1의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는 바로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아동에 대한 ‘체벌’은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미성숙한 인간 존재에 대한 비인간적인 신체적 처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의 ‘체벌’은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소위 ‘간접체벌’로 말해지는 훈육, 기합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과도한 교육적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체벌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가장 흔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 중 하나이기에 항상 문제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과거로부터 적당한 체벌의 필요성과 체벌에 대한 전면 금지의 논지가 항상 대립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 제37조 가호의 내용이 내포하는 의미는 체벌에 대한 전면금지를 의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협약 제28조 2항은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체벌은 이 조항에 따르면 사실상 전면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소분류 지표 3-1-1의 ‘청소년폭력 경험률’에서 체벌을 따로 떼어 내어 독립된 소분류 지표로 ‘3-1-2. 체벌 경험률’로 지표체계를 구성한 것도 이렇게 체벌이 가지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폭력의 대표성과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다.

소분류 지표 3-1-1의 ‘청소년폭력 경험률’의 세부지표항목들은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 직접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 아닌 ‘정서적 학대 경험률’과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피해 경험’, 그리고 최근 SNS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행되고 있는 폭력을 알아보기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로 구성되어 있다. 소분류 지표 ‘3-1-2. 체벌 경험률’에는 역시 같은 명칭과 내용의 ‘체벌 경험률’ 하나의 세부지표 항목이 있다.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및 제39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대분류인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2015년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 정기 아동인권보고서 작성지침’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과 비인간적 체벌이나 처우,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재통합 등과 같은 내용 등과 함께 새로운 대분류 지표영역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유엔의 개정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는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에는 ‘학대와 방임(제19조)’,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시키는 수단’(제39조)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지표체계를 총 정리한 2013년의 지표는 제39조에 해당하는 심리적·신체적 회복과 사회복귀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이 시기에는 ‘3-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하의 중분류로써, '3-4-1. 학대·방임'을, 그리고 이에 속하는 소분류 지표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방임 경험률'만 포함하였는데, 특히, '3-4-1. 학대·방임'이 소분류 지표항목으로써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에 대한 지표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소분류 지표 역시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 다루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4년의 지표체계에서는 '3-3.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대분류 밑으로 '3-3-1.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중분류로 하여, '아동학대 신고건수,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건수', '서비스 제공정도와 원가정복귀율'등이 포함되어 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해당 조항내용에 더 근접하도록 수정되었다.

2015년에 아동권리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조사와 많은 담론을 거친 결과, 여전히 아동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회복과 사회복귀와 통합과 관련한 지표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방임, 중복학대 및 재학대의 심각성과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학대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율의 지표항목으로써의 타당성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서비스제공 수준과 사례판정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지표항목과 조사내용을 더욱 보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표영역과 세부지표항목들은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중분류 아래요,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의 소분류 속에 '아동학대 신고건수',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방임유형 및 정도'가 재조정되어 포함되었다.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회복과 사회복귀와 관련해서는,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의 소분류에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가 새롭게 조정, 포함되었다. 특히 원가정 복귀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0조(가정 재통합, Family reunification)에 명시되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바,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의 세부지표항목에서 학대아동의 가정복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원가정 복귀 전, 아동의 학대와 관련한 문제 상황의 해결을 전제로 할 것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정환경과 대안양육(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클러스터는 아동의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정환경과 적절한 양육에 대한 아동권리내용이다. 유엔아동인권위원회

제출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틀에 기초한 2013년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서는 부모의 지도 및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입양(제21조),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및 제39조),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19조, 제39조)를 중분류로 하여 이에 따른 지표들을 구성하였다(김영지, 김경준 외, 2013).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에서는 이 기본 틀은 유지하였으나, 세부적인 소분류와 구체적인 지표항목 구성에서는 차이를 두었다. 특히, 입양을 별도의 중분류 수준에서 구분하였던 2013년과는 달리, 2014년에는 당초 국가보고서 작성 틀을 반영하여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중분류로 재범주화 하였다.

2015년 인권연구에서는 2014년의 인권지표체계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되, ‘2015 정기 아동인권보고서 작성지침’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2014년에는 학대에 따른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에 따라 대안양육 제공 후 가족의 재결합(제10조)과 관련된 원가정 복귀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과 관련하여 2015년에 발표된 정기 아동인권보고서 작성지침에서는 “수감된 부모의 자녀와 또 수감된 모와 생활하는 아동 보호를 위한 척도”가 새로 포함되었으나(UNCRC, 2015), 아직 국내에서 이에 대한 정부수준에서의 검토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따라서 향후 이를 지표에 포함시킬지의 검토여부와 지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지표내용, 그 개념과 정의, 그리고 최근의 지표체계 변경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조, 제18조 1항과 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감독과 지도(제5조), 그리고 일반적인 부모의 책임과 부모에 대한 지원, 또 아동양육서비스의 제공(제18조 1항과 2항)을 의미한다(UNCRC, 2015). 특히,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서 각 국가의 아동인권보고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안들은 아동양육에 책임이 있는 부모와 법적 보호자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수,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과 가족의 수와 비율이며, 더불어 이용 가능한 아동양육 서비스와 시설의 수와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아동과 가족의 비율도 포함된다(UNCRC, 2015).

2013년 인권실태연구에서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에 ‘보호시설’과 ‘부모와의 관계’의 두 가지 소분류를

두었고, ‘보호시설’에는 방과 후 보호자 부재 아동수와 보육시설 수 및 재원 아동 수, 취약보육이용 아동수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방과 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등을 포함시켰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와의 대화시간만을 세부지표항목으로 포함시켰다(김영지, 김경준 외, 2013). 2014년 인권실태연구에서는 기존의 ‘보호시설’ 지표가 단순히 보호시설 수와 아동 수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로 구체적인 내용의 지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세부지표항목으로는 방과 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더불어 방과 후 시설의 이용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항목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를 부모와의 대화시간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수준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2015년 인권연구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유지시키도록 하였다.

‘부모의 지도와 책임’ 분류에는 기존과는 달리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를 새로운 지표 소분류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방임을 부모의 자녀양육과 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더 확대된 범위에서 학대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해당 세부지표항목으로는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방임유형 및 정도 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2014년 인권실태연구의 경우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제39조) 분류에는 구체적인 학대피해를 위한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2015 정기 아동인권보고서 작성지침’에서 학대가 폭력과 함께 별도의 클러스터로 분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중분류, 소분류 및 지표항목들도 따라서 이동하였다.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서는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이 박탈되거나, 아동최우선의 이익이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United Nations, 1989). 또한 국가는 국내법 내에 그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을 보장해야 하며, 이 대안양육은 아동의 인종, 종교, 그리고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United Nations, 1989).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2015 정기 아동인권보고서 작성지침’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① 무력분쟁, 빈곤, 차별의 결과로 유기와 같은 원인별 분류에 따른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수, ② 법원판결의 결과로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아동의 수(그 중에서도 부모의 학대와 방임, 구금, 수감, 노동 이주, 추방이나 강제이주와 같은 상황에서), ③ 지역별 아동을 위한 시설의 수, 그 시설에서 이용가능한 장소의 수, 아동 당 양육자의 비율과 위탁가정의 수, ④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살고 있는,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수와 비율, 그리고 보호조치 기간과 이에 대한 평가 빈도, ⑤ 위탁배치 이후 원부모와 재결합한 아동의 수와 비율, ⑥ 연령에 따른 국내, 국가 간 입양 프로그램의 아동 수와 함께 해당 아동의 모국과 입양국가에 대한 정보 등(UNCRC, 2015)으로, 이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

2013년 인권실태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출청소년과 소년소녀가정을 ‘대안적 양육’으로 분류하고, ‘가출청소년·소년소녀가정’의 세부지표항목으로 가출청소년비율과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가출시 이유와 서비스 이용 경험, 소년소녀가정 현황을 포함시켰다. ‘대안적 양육’에는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만이 세부지표항목으로 포함되었다. 2014년 인권실태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부지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과정을 거쳐 일부 분류의 표현과 세부지표항목을 수정하였다.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가출청소년비율과 관련 시설 수 뿐 아니라 이러한 시설에 대한 가출청소년의 만족도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직접한 지표항목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과 만족도를 새로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2013년 인권실태연구의 인권체계에서 ‘대안적 양육’ 소분류는 2014년 ‘대안양육 비율’로 수정하였고 대안양육이 필요한 요보호아동 현황도 새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은 조부모(대리양육) 및 친인척 중심의 위탁보호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추진에 따라 그 수가 매우 감소하여(보건복지부, 2013a) 이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였다.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 정기 아동인권보고서 작성지침’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었던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제39조)’의 내용이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체별 및 폭력과 관련한 ‘체별,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1항, 제28조 2항)’와 함께 합쳐져서 별도로 분리된 것이다. 학대와 관련하여 2013년 인권실태연구의 인권지표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방임 경험률 등을 세부지표항목으로 하였으나, 2014년 인권실태연구에서는 방임을 포함한 일부 내용이 앞서 ‘부모의 지도와 책임’ 분류로 이동하였고, 학대와 관련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소분류로 하여 아동학대 신고건수,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 수, 서비스 제공정도와 원가정복귀율 등의 세부지표항목들이 조사되었다. 특히, 원가족 복귀는 2014년 인권지표체계에서 새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0조의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을 반영

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5 정기 아동인권보고서 작성지침’에서 국가는 가족 재결합의 목적으로 입국 및 출국하는 아동의 수, 그리고 보호자 없는 난민 및 망명 아동의 수를 성, 연령, 그리고 국가 및 인종출신별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NCRC, 2015). 아동 학대와 유기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력과 함께 묶여 별도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다뤄질 예정이다.

입양(제21조)은 2013년 인권실태연구의 인권지표체계에서 별도의 중분류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2015 정기 아동인권보고서 작성지침’ 틀에서 ‘입양’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중분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2014년에는 이를 다시 원위치 시켰다. 입양 역시 아동이 출생한 원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에는 대안양육 및 가출청소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중분류로 재범주화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지적한 바 있었다. 또한 2013년 인권지표체계에서 ‘입양’의 중분류의 하위체계 내용은 ‘입양률’이었고, 지표항목은 ‘국내·외 입양 현황’ 정도로 입양과 관련한 충분한 지표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입양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아동의 인권상황을 더욱 잘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입양추이, 입양기피이유,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등 출생한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의 대안양육형태인 입양과 관련되어 더 포괄적인 내용이 지표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2014년 인권지표체계에 반영하였다. 특히 해외입양아동 사후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정기보고서를 위한 작성 기준에서는 ‘국제 입양 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같은 국가가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들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UNCRC, 1996), 국내 및 해외 입양 프로그램의 아동의 수를 연령별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입양 해당 아동의 출생국과 입양국에 대한 관련 정보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UNCRC, 2015). 또한 국가가 수감자 부모를 둔 아동(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새롭게 요청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수감된 부모를 둔 아동의 수와 감옥에서 수감된 모와 생활하는 아동의 수, 그리고 그 아동들의 평균 연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UNCRC, 2015).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2017년 국가보고서 작성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 정보를 현재로써는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이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5조에서는 아동의 (대안)양육 배치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Periodic review of placement)를 권고하고 있다. 즉, 아동의 양육 및 보호를 위한 상황과 배치, 치료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로서, 여기에는 아동의 위탁 및 입양가정,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등 가정외 보호를 받는 모든 아동들의 상황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승권, 김인숙, 박동은, 이배근, 이용교, 이재연 외, 2009).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양육 및 생활시설은 아동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적자원관리와 지역사회관계 영역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추세이다(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2013년 인권실태연구의 지표체계에서는 중분류 수준의 ‘3-5.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하에, ‘3-5-1. 보호기관 심사’라는 단독 항목으로 소분류 지표로만 구성되었으며, 또 세부지표항목은 ‘아동복지 시설 평가등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아동의 가정 외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2014년 인권실태연구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기관 심사’ 소분류 지표를 ‘3-4-1. 양육 · 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으로 변경하고, 이에 다른 세부지표항목도 ‘양육 · 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보호양육시설 예산’,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로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지표를 구성하였다.

2015년 인권실태연구의 인권지표체계 역시 동일한 지표영역과 세부지표항목으로 구성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문가들과 많이 논의되었던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에는 사례판단 결과(사례판정 건수), 아동학대 사례관리 기간,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를 포함한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등 아동학대사태에 대한 서비스내용 및 질적수준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2015년도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중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대분류는 2013년과 2014년 인권지표 대분류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13년에는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의 대분류 아래에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청소년의 생식 보건권리’, ‘약물남용방지 대책’, ‘사회 보장 및 아동 보호시설’이라는 중분류로 분류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청소년의 ‘생식 보건권리’, ‘약물남용방지 대책’은 삭제되었다. 2013년 청소년의 ‘생식 보건권리’ 중분류와 소분류인 ‘성교육’, 지표항목인 ‘성교육 경험률’이 2014년부터 삭제되어 2014년과 2015년의 중분류 및 지표(소분류)는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2014년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의 중분류인 장애의 지표(소분류)가 다소 변경되었다. 2014년 ‘장애’라는 중분류를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소분류로 구성한 것은 동일하나 지표항목이 2014년 5개에서 2015년 3개로 축소되었다. 그 이유는 2013년에는 없었으나 2014년 신규지표로 조사된 ‘장애아동·청소년 사망률(유기율 포함)’과 ‘장애아동·청소년 사고율’을 조사하는 지표영역 2개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장애’의 중분류는 지표(소분류)는 동일하되, ‘통합교육비율’,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취업률 추이’로만 지표항목이 구성되었다. 2013년에는 ‘장애아동·청소년 취학률’과 ‘장애 청소년 취업률’로 지표항목이 나뉘었으나 2014년 ‘장애아동·청소년 취학률 추이’로 합쳐져 2015년에도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생존 및 발달’ 중분류는 2013년 ‘생존과 발달보장’이라는 하나의 소분류로만 나뉘었으나 2014년부터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이라는 2개의 지표(소분류)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그 결과 2015년 ‘생존 및 발달’ 중분류 아래 ‘사망률’, ‘안전에 대한 인식률’이라는 지표(소분류)로 나뉘어 조사되었고 각각 0세의 기대여명,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사고 사망률, 범죄피해건수, 사고 및 급식 안전 등에 대한 인식률이 조사되었다.

2014년 인권실태 연구부터, ‘보건서비스’ 중분류가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현황’,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이용률’, ‘약물남용예방 프로그램 제공률’이라는 지표(소분류)로 구성되었는데, 2013년의 보건서비스 중분류에는 ‘건강관리조치’라는 지표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5년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지표항목으로 보건교사 배치현황,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이 조사되었다. 이는 2014년 지표와 동일하며 지역사회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은 2014년에 신규지표항목으로 포함된 것이며,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은 2013년 청소년 유병률이라는 지표항목이 2014년에 변경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은 2014년 이후 보다 세부지표항목으로 분류되어 조사되었으며, 2015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중분류와 관련하여 2014년에 추가된 ‘아침식사 결식율에 대한 이유’, ‘수면시간이 부족한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 신규지표항목이 2015년에도 그대로 조사되어 향후

이에 대한 장기적 조사와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중분류는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빈곤에 대한 국제비교’와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국간 비교’가 새롭게 추가 된 것이 2015년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2014년의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현황수준’ 지표항목은 2015년에 ‘취약 계층아동 현황 및 지원수준’으로 표현이 보다 명확하게 수정되었다. 이외에 2014년 ‘청소년 음주흡연’ 및 ‘약물남용예방교육’이라는 지표항목이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제공률’이라는 지표(소분류)로 이동 되었는데 2015년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구성과 분류로 조사되었다.

(1) 장애(장애아동의 권리)(제23조)

2013년 이후 ‘장애’(제23조)라는 중분류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이라는 소분류도 2014년에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장애아동·청소년 사망률(유기율 포함), 장애아동·청소년 사고율, 통합교육비율,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에 관한 지표항목이 2014년에 신규지표로 추가되었고 이는 2015년 인권실태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013년 인권실태연구에서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소분류 하에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률과 장애 청소년 취업률의 두 가지 지표항목으로만 구성되었던 것이 2014년 지표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취업률 추이로 합쳐졌으며, 2015년에도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권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중분류 ‘장애’(제23조)에 대한 개념은 소분류 지표인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로 설명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는 장애에 대해 육체적·신체적인 장애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고,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보장받고, 참여와 품위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치료, 국가적 지원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3조에서 추구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권리가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항목으로 구성하려 하였다.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인격을 존중 받고 자립과 적극적 사회참여가 장려되는 여건에서 여유롭고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이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인간존엄과 적극적 사회참여권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장애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청소년은 권리가 있음을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 국가는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아동과 부모 및 다른 양육책임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이 제공되도록 장려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UNCRC, 2015).

장애 아동·청소년의 권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장애 아동·청소년이 처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부모 등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해 가능한 한 무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UNCRC, 2015). 제23조 3항은 아동·청소년이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 등 개인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과 훈련, 의료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보다 구체적이고 어떤 수준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 설명될 수 있다. 제23조 4항은 비준한 당사국이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 보급과 이용을 비롯해 예방 의학분야,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치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듯 장애아동·청소년의 권리는 국가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서 권리보장이 시작되며, 이들의 교육과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의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써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뿐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이라는 중분류에는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이라는 소분류 지표가 포함된다. 사망률 지표에는 기존의 0세의 기대여명 지표항목이 2013년 이후 그대로 조사되며,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은 영아 사망률과 아동·청소년 사망률로 각각 분리되었으나 2014년 이후 하나의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사망률의 지표항목인 ‘사고 사망률’은 변동사항 없이 생존과 발달을 측정하는 지표로 2015년에도 사용되었다. 15세-19세 출산율 및 합계 출산율에 관한 조사내용은 2013년부터 삭제되었다.

‘안전에 대한 인식률’이라는 소분류지표는 2013년까지 범죄 피해건수,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학교급식 안전 현황, 학교급식 만족도라는 5개의 지표항목으로 조사되었는데 2014년부터 범죄 피해건수와 사고 및 급식 안전 등에 대한 인식률로 합쳐져 2개의 지표항목으로 조사되고 있다. 급식 안전 등에 대한 인식률이 2013년도에는 통계청 자료와 여성가족부의 2013년 청소년 통계자료로 조사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설문문항으로 조사되었다. 급식 안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실제 인식에 관한 조사이므로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보다는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조사하였다.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2항에서 규정하는 권리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생존 및 발달의 개념에는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며 사망률은 0세의 기대여명,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사고 사망률을 뜻한다. 안전에 대한 인식률이란 범죄피해건수, 사고 및 급식 안전 등에 대한 인식정도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생존 및 발달의 개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6조 2항을 통해 생존과 발달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아동의 생존과 발달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umos Foundation(2013)은 생존과 발달이야말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였다. 이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이 권리가 보장될 확률이 높지만, 심지어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의 생존과 발달에 관한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Lumos Foundation, 2013: 2). 그러므로 생존과 발달에 관한 권리는 장애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청소년이 질병과 사고로부터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이행핸드북에 따르면 “실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많은 조항들이 발달의 목표에 속해 있다. 다른 조항들은 아동의 발달을 위한 부모와 가족의 역할 및 아동을 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또한 생존과 발달권을 최대 보장해 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김승권 외, 2009: 161)고 강조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과 방향이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발달임을 알 수 있다. 1996년 343번째 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생명권 보장 대책, 아동·청소년의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에 기여하는 환경 조치, 자유로운 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개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UNCRC, 1996). 예를 들어 아동사망의 등록, 사망 원인, 사망에 대한 연구와 보고 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아동 자살 방지와 그 빈도 조사, 모든 연령 아동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각 집단이 특별히 노출되는 위험(성병, 거리 폭력 등) 방지대책(UNCRC, 1996) 등을 통해 아동의 생존과 발달이 보장될 수 있다.

(3) 보건서비스(제24조)

보건서비스와 관련된 인권지표체계는 2015년 인권실태연구에서 3개의 소분류지표로 나뉘는데 이는 2013년까지 2개의 지표로 조사되던 것에서 1개의 지표가 추가된 것이다. 기존에는 보건서비스 인프라구축 현황과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에 관한 조사지표였으며, 2014년부터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이용률을 추가하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지표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수에 관한 지표항목을 삭제하였고 지역사회 보건소를 포함한 신체, 정신건강 관련 시설 비율을 2014년 조사 이후 포함시켰다.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지표에서는 기존의 흡연율, 음주율,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은 그대로 조사 하되, 기타 약물 사용률에 대한 지표항목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의 보건서비스에 관한 권리는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이용률, 약물남용예방 프로그램 제공률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즉, 보건서비스를 위한 권리란 보건서비스의 인프라를 통해 모든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보장되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음주, 흡연, 기타 약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이러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현황과약을 통해서 그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현황, 지역사회 보건소를 포함한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등이 해당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1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항은 각국이 영아와 아동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 기초건강관리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이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기초건강관리 체계안에서 환경오염의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안전한 식수 보급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부모와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지식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부모교육,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이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보건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는 물론 보건서비스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할 것에 관한 3항과 4항의 내용은(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보건 서비스 인프라가 아닌 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신체적, 정신적건강 증진(제24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는 아동이 높은 건강수준과 질병치료 및 재활을 위한 시설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국가가 인식해야 하며, 보건서비스에 대한 아동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United Nations, 1989). 여기에는 다양한 영유아 및 모성보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이를 위한 보건서비스 및 의료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다(United Nations, 1989). 또한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련 이슈,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시도 증가에 따른 정신적 건강증진과 보호, 자살 예방대책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에 기초하여(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아동의 우울증, 스트레스, 행복감, 죽고 싶은 생각 등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세부지표항목들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영역에 포함되었다.

2013년도 인권실태연구의 인권체계에서 중분류로 구분된 ‘4.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은 2014년도와 2015년도 인권실태연구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인권지표와 조사항목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2013년에 이에 해당하는 인권지표 소분류로 ‘건강평가 및 관심도’가 2014년에는 ‘건강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었으며, 201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3년의 소분류인 ‘신체적 건강’과 해당 지표항목인 ‘운동실천율’,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 이유’,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비만율’은 2014년과 2015년에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013년의 ‘정서적 안정’ 소분류는 2014년과 2015년 ‘정서적 건강’으로 바뀌었으며, 지표항목에서도 다소 변화가 있었다. 2013년의 우울증 지수, 스트레스 인지율, 자아존중감, 행복도는 2014년과 201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2014년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고민거리 대화상대’가 신규 지표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2015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용하는 ‘삶의 수준(삶의 만족도)’ 척도를 새로운 지표로 포함시킴으로써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삶의 수준’은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삶의 수준을 가장 낮은 경우는 0점, 가장 높은 수준은 10점으로 하여 자신의 현재 위치를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 척도를 활용한 UNICEF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1세, 13세,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30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외, 2013).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 3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조에서는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는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면서, 이 혜택은 아동과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자원이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주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United Nations, 1989). 또한 제18조 3항에서는 일하는 부모를 둔 아동이 그들에게 적절한 아동보호 서비스나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ited Nations, 1989). 따라서 이 지표체계에는 아동과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이와 관련한 사회보장 제도와 이에 대한 국가의 노력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또 이러한 아동에 대한 지원내용과 수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아동의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의 정기 아동인권보고서 작성지침에서도 이와 대해 사회보장과 아동보호서비스(방과후 서비스) 및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인권실태연구의 인권지표체계에서는 ‘4-7.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중분류에, ‘4-7-1.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과 ‘4-7-2. 사회보장 서비스 내용’ 소분류로 구성되었다.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에는 ‘빈곤율’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을, 사회보장 서비스 내용에는 ‘아동급식 지원현황’,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아동발달계좌개설현황’이 포함되었다.

2014년 인권지표체계 구축 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상황과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한 상대적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국제비교 부분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에서도 모든 아동의 빈곤을 줄이고,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국가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빈곤율’과 ‘빈곤율 국제비교’,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가 새로 포함되면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빈곤에 대한 상대적 비교와 또 이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소분류인 ‘사회보장 서비스 내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으로 명칭을 바꾸고, 다양한 빈곤아동·청소년 지원 및 방과후 아동·청소년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현황 및 지원수준’,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등으로 세부지표항목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 지표항목 내에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예산, 드림스타트

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디딤씨앗(아동발달계좌) 저축 현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등을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켰다.

2015년의 해당 인권지표체계는 2014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그 중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아동가구로 한부모가구뿐만 아니라 조손가구에 대해서도 더욱 강조하고, 취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지역아동센터, 디딤씨앗 통장 등)의 지자체별 현황검토를 통해 지역별 편차 없는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 등에 대한 내용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추가하였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2015년도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관한 지표의 하위내용 분류는 2014년도 지표체계에서의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2014년도의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관한 지표체계를 살펴보면 2013년 지표체계와 비교해서 몇몇 변화된 사항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3년에는 지표체계를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지표항목의 차례로 구성하고 지칭한 반면, 2014년에는 ‘소분류’라는 범주 표현보다 ‘지표’라고 표현했고 그 하위 지표들을 다시 ‘최종 지표항목’으로 범주화하여 지칭했다는 점이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변화이지만 분류체계의 범주화 표현에 대해서 굳이 지적하자면 2013년 분류체계의 명칭이 더 타당하다 할 수 있겠다. 전체적인 분류체계에서 단순히 양적으로만 비교해 보면 2013년과 2014년에 중분류 3개, 소분류 8개 지표로 같으나 세부지표항목에 있어서 2013년에 29개 지표항목이었던 것이 20개로 축소된 것이 두드러진 변화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양년도의 지표체계들을 내용적으로 자세히 비교해서 변화를 알아보면, 먼저 중분류에서의 지표들은 교육에의 권리(제28조), 교육의 목표(제28조 2항 및 3항, 제29조, 30조),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제31조)으로 분류되어 2013년의 내용과 2014년의 내용이 같다. 소분류에 있어서는 8개 지표의 분류로 2013년과 2014년의 분류 수가 같으나 내용은 조금 변화가 있었다. 2013년 중분류 ‘교육에의 권리’에서는 일반적인 ‘교육의 기회’와 ‘진로교육의 기회’의 둘로 나누어 소분류를 형성하였으나, 2014년에는 ‘교육기회 보장정도(제28조 1항 가, 나, 다, 마호)’, ‘학교 부적응률’, ‘대안교육 참여율’로 지표의 내용이 변화하였다. 이는 최근 심각해진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에 소분류 지표로 선택된 ‘학교 부적응률’, ‘대안교육 참여율’ 지표들은 2013년도에는 세부지표항목이었던 지표들이었다. 2014년도와 비교하여 2015년에는 ‘대안교육 참여율’의 소분류 지표를 ‘대안학교 수와 학생 비율’로 칭하여 소분류 지표 ‘교육 기회보장 정도’의

세부지표항목으로 이동하고, 대신 최근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고, 교육현장에서도 조속히 확대되어야 하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지표로 ‘직업교육 참여율’을 새롭게 선정하였다. 2014 ‘교육에의 권리’ 중분류 지표는 10개의 세부지표항목들로 구성되었으나 2014년에는 8개로 축소되었고, 이는 2013년도 ‘방과 후학교’ 관련 지표들이 2014년에는 빠졌기 때문인데, 대다수의 학교들이 거의 모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기에 지표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의 중분류 지표인 ‘교육의 목표’는 ‘학교의 의미와 기능’,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 ‘다문화 및 자연환경 이해’로 구성되었으나, 2014년에는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과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의 2개 지표로 축소되어 중분류 되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문화 및 자연환경 이해’의 중분류 지표가 제외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다문화 관련 지표들은 2014년도에는 대분류 ‘특별보호 조치’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에 당시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이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대분류에서 다루어진 것은 아동권리협약 제29조 1항 다, 라호와 관련하여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변화 현상에 주목하여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교육 현황을 살피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2014년에는 이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인권 전반에 대하여 특별보호 대상으로 간주되어 교육영역의 지표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중분류 ‘교육의 목표’에서의 2014년도 변화는 인권교육 관련 내용 지표들이 대분류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으로 이동한 사항과 2014년 소분류에 해당하는 지표인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에 인성교육 관련 지표들이 새롭게 들어왔다는 점이다.

마지막 중분류 지표인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에서는 2013년도의 11개 세부지표항목이 2014년도에는 9개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소분류에 해당하는 지표들에서도 변화가 보였다. 2013년도에는 소분류 지표들이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아동·청소년 활동’, ‘소수집단 문화 및 여가 활동 권리’로 구성되었으나 2014년에는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제31조 1항, 2항)’,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변화되어 구성되었다. 2013년 세부지표항목 중에서 ‘소수집단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 및 여가 활동 기회 제공 여부’ 지표와 ‘휴일을 보내는 방법’, ‘지역 내 문화 및 여가 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가 제외되고 2014년에는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새롭게 세부지표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2015년도 지표체계는 2014년도 지표체계와 거의 같고 지표항목들도 같으며, 2013년도에 비해 세부지표항목들이 양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재범주화하거나 지표들이 첨삭되는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 교육에의 권리(제28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28조에 1항에서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라고 명시하면서 교육에 대한 권리의 인정과 무엇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교육에 대한 권리의 기초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지표도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에의 권리’를 제일 첫 번째 지표로 중분류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서술한 것과 같이 2014년에는 2013년과는 달리 ‘교육 기회보장 정도’, ‘학교 부적응률’, ‘대안교육 참여율’로 소분류 되었었으나, 2015년 ‘교육에의 권리’ 중분류 지표는 ‘교육기회보장 정도(제28조 1항 가, 나, 다)’, ‘직업교육 참여율(제28조 1항 나, 라)’, ‘학교부적응률(제28조 1항 마)’로 재구성되었다. 협약의 제28조 1항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먼저 인정함과 동시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기초로 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권리를 달성하고자 5개의 하위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협약의 제28조 1항 가호에서는 각 당사국이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15년도 인권지표에서는 이의 준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학생들의 취학율과 진학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미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초등교육에서는 교육에의 기회균등 권리가 잘 실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협약의 제28조 1항 나호는 일반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포함한 대안학교 등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등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기회균등이 강조되면서 무상교육과 필요에 따라서는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재정과 관련이 있어 이에 관한 준수여부를 알아보는 세부지표로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지표로 채택하였다. 한편,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에도 적응을 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대안학교 수와 학생 비율’의 지표를 마련하여 대안적 교육이 제공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협약의 제28조 1항의 나호와 라호에서는 교육에의 권리로서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항의 라호에서는 직업에 관한 정보와 교수들을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는 특히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동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권고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입학을 위한 교육으로 인해 직업 및 진로 교육이 매우 취약한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김영지·김경준 외, 2013: 84)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의 기회는 크게 고등교육으로의 진학과 직업교육을 통해 일찍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진로교육 상황은 과거와는

달리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 시 직업교육을 받고 일찍 사회에 진입하고자 해도 직업학교가 부족해서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부조리한 교육실천이 전개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치된 학생들은 학업수준에서 차이가 있고, 자존감이 더욱 낮아져서 학업 및 학교에 부적응을 보이고 있으며, 결국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로 진전하고 있어 국가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가 강조하고 있는 교육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기회균등의 기초가 성립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 조속한 제도적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협약의 준수와 이행을 알아보기와 ‘직업교육 참여율’을 소분류로 새롭게 지표화하고 이에 ‘직업학교 수와 종류’와 ‘직업학교 학생 비율’ 지표를 세부지표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교육에의 권리에 관한 소분류 지표로는 2014년도에 ‘학교부적응률’이 선택되었고, 이에 하위 지표로 ‘학업중단율’과 ‘학업포기 생각여부’가 세부지표로 마련되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28조 1항 마호와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2013년도에는 ‘교육의 기회’ 소분류 지표의 하위 세부지표항목으로 선정되었던 ‘학업중단율’과 ‘학교부적응’ 지표가 한국교육의 상황변화에 따른 그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소분류로 분류되어 따로 지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2013년도의 지표 설명에서도 협약의 제28조 1항 마호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알기 위하여 아동들이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비율과 탈락하고 있는 비율을 조사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부적응에 대한 지표가 산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김영지, 김경준 외, 2013: 84).

(2) 교육의 목표(제28조 2항 및 3항, 제29조 1항 및 2항)

2015년의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인권영역의 중분류 지표인 ‘교육의 목표’는 이미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2013에는 ‘학교의 의미와 기능’,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 ‘다문화 및 자연환경 이해’로 구성되었으나, 2014년에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제28조 2항 및 3항, 29조 1항 및 2항)’과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29조 1항 및 2항)’의 2개 지표로 축소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는 내용적으로 보면 ‘다문화 및 자연환경 이해’의 중분류 지표와 인권교육 관련 내용 지표들이 제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유는 다문화 관련 지표들이 2014년도에는 대분류 ‘특별보호 조치’에 편입되었고, 인권교육 관련 내용 지표들이 대분류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대신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의 지표에 인성교육 관련 지표들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의 지표는 아동권리협약 제29조 1항의 5개호의 내용들을 교육목표로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지표이다. 즉, 이 지표는 아동권리협약 제29조 1항 가호의 아동의 인성,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에 대한 최대한의 계발, 나호의 인권과 인간의 자유권에 대한 존중, 다호의 다문화사회에서의 상호 존중, 라호의 다문화사회에서의 관용성 등이 교육이 목표로 잘 준수되고 있는 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지표이다. 또 다른 소분류의 지표인 ‘학교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는 결국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의 지표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실천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2014년도 지표에서와 마찬가지로 2015년도 지표도 세부지표항목으로 ‘인성교육 실천학교 운영 수’와 ‘인성교육 연수 참여 교원 수’로 하여서 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지표들을 배치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 관련 지표들로만 구성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제31조)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31조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의미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 잘 서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오락 및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이를 위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김영지·김경준 외, 2013: 85)가 잘 준수되고 있는 가의 여부를 알고자 하는 데 있다. 2015년도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지표에는 2014년도 지표항목과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3년 지표들과 비교해보면 먼저 소분류 지표에 있어서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아동·청소년 활동’, ‘소수집단 문화 및 여가 활동 권리’의 지표 구성이 2014년에는 보다 실천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제31조 1항, 2항)’,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의 지표로 변화되어 구성되었다. 또한, 2013년 세부지표항목 중에서 ‘소수집단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 및 여가 활동 기회 제공 여부’ 지표와 ‘휴일을 보내는 방법’, ‘지역 내 문화 및 여가 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의 3개 지표들이 제외되고 2014년에는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새롭게 세부지표항목으로 추가되었다. 2013년과 비교하여 변화가 있다면 소분류로 채택되었던 ‘소수집단 문화 및 여가 활동 권리’가 세부지표항목과 함께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여기서 지칭하는 ‘소수집단’의 실체를 명확하게 범주화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는 지표구성에 관한 기본 취지에 관하여는 아래의 2013년의 지표설명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먼저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제31조 1항, 2항)과 관련된 세부지표들은 주로 여가와 문화 및 예술 활동들에 아동들이 잘 참여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참여의 기반인 해당 활동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생성되었다. 특히, 대학 입학 준비하느라 절대 활동시간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과 ‘휴일을 보내는 방법’의 세부 지표를 통해 이들의 여가와 놀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채택된 지표들이다. UNESCO와 UNICEF에 자문기구인 IPA(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hild’s Right to Play)에서도 세상이 점차 많은 위급을 알리는 유행들이 만연하고, 아동의 발달에 있어 그들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아동의 놀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Child’s Right to Play)”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UNICEF, 2007: 472; 김영지, 김경준 외, 2013: 86)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중분류 지표에는 다시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의 3개 소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제31조 1항, 2항)’는 다시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와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의 2개 세부지표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들에서는 전국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 또한 여가, 문화 및 예술 활동들이 수행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의 청소년수련시설과 각종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한가를 알아보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제31조 1항, 2항)’에는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참여도’, ‘동아리활동 참가율’,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하루 평균 학습시간’의 5개 세부지표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는 아동권리협약 31조 1항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를 알아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참여도’와 ‘동아리활동 참가율’은 아동·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하였을 때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즉, 아동·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동아리활동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지표이다.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과 ‘하루 평균 학습시간’ 세부지표항목들은 제31조가 권고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놀 권리가 지켜지기 위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지표이다. 놀 권리가 인정되고 주어지기는 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유명무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세부지표항목들이 가지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교육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벌사회체제에서 대학입학 경쟁으로 인해 여가나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아동들이 여가와 문화 및 예술 활동을 하면서 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놀지 못하는 교육적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소분류 지표인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제31조 2항)’에는 다시 ‘여가활동 및 여가시설 이용만족도’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 정도’의 2개 세부지표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여가활동 및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지표는 여가활동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고자 하는 지표와 특별히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지표이다. 여기서 여가활동이란 함은 문화예술 활동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업을 제외한 여가시간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지표이다.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 자체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시설에서 수행되는 활동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인력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 정도’의 지표는 사실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가정과 학교에서 당연히 지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학부모나 학교의 교장은 가정과 학교에 소속된 자녀와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여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을 가정과 학교의 명예와 가치로 보고 있기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것을 공부하지 않고 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권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와 문화 및 예술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가정과 학교의 지지가 확대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7)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에 관한 인권지표는 2013년 이후 다소 변경되어, 소분류지표와 지표항목이 많이 추가되었다. 중분류 지표는 추가되지 않았으나 소분류 지표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참여율’,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정도’,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정도’, ‘청소년성범죄자 처벌 강도’ 같은 지표가 추가되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참여율’이라는 신규지표는 이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근로와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 정도’는 청소년의 파트타임 취업률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으며 근로 시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사항은 성적 착취 항목이 아니라 경제적 착취가 그 원인이 되므로 경제적 착취라는 중분류 안에 포함시켰다.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 형량에 대한 변화가 지표항목에 포함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 작성지침은 특별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증진에 대해 여러 조항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UNCRC, 2015). 이렇게 특별조치가 필요한 아동에는 제22조에 명시된 난민의 지위를 요청한 아동, 적응가능한 국제법이나 국내법, 다른 절차에 따라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난민으로 규정된 아동이 포함된다(UNCRC, 2015). 이외에도 거리의 아동·청소년(children in street), 소년사범아동, 이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청소년이 포함되며,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제30조)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다(UNCRC, 2015). 경제적, 성적 착취를 받는 아동도 특별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며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변화 추이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14년과 비교할 때, 2015년 인권실태연구에서의 해당지표 영역의 중분류는 변화가 없었다. 즉, ‘특별 보호조치’ 아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사범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 지표(소분류)로 나누어 2014년 이후 특별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변화추이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청소년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지표들을 통해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연령대의 난민 숫자와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의 숫자의 경우 향후에는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항목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은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전체 수의 양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공식적인 연령대별 통계는 기록되지 않고 있어 이렇게 특별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와 공식통계작성에 대한 방법적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소년사범아동’ 중분류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비율’,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로 구성되었다. 2014년과 비교하여 중분류, 지표(소분류)의 변화는 없었지만, ‘소년사범아동’에 대한 인권친화적 환경과 치료적, 회복적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향후 좀 더 세부적으로 지표항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의 경우는 법률조력인 배치가 처음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 6월부터 모든

성폭력 피해 대상자로 확대되었으므로, 향후 전체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 중,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대상의 법률조력인 배치인원 비율로 지표항목을 수정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구제방안과 2차 피해 방지 방안들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이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얼마나 법률조력인 배치가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인 만큼 관련 부처의 적극적 실태파악과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제적 착취’와 ‘성적 착취’ 중분류는 2014년에 여러 신규 지표 항목이 포함되었다. 즉,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 수’,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 인원수’,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성폭력 피해아동 인구비율’,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 실시 인원’,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15년에는 이러한 신규 지표항목의 변화추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표항목의 변경 없이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성적 인권 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구증가에 따라 이들의 인권증진과 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여율’이 지표항목으로 추가되었다. 2013년까지는 탈북청소년중도탈락률이 단독으로 조사되었으나 2014년 이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까지 포함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로 통합되어 조사되고 있다. 이는 결혼 이주 여성의 아동이 이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참여율’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및 레인보우 스쿨 참가 인원수,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지표항목이 2014년부터 새롭게 추가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2조는 난민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요청하거나 적용 가능한 국제법이나 국내법, 다른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규정된 아동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협약 및 해당국가의 국제인권/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누림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도록 관련조치를 취해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은 이미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아동뿐만 아니라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난민 신청 중인 아동, 그리고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아동도 특별조치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에 해당된다(UNCRC, 2015). 한국에서는 탈북난민 아동도 여기에 포함되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여부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침해율, 교육실태 및 참가율,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여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에는 난민 외에 다문화가족 자녀, 탈북 난민 아동, 중도입국청소년이 모두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¹³⁾”를 말한다. 동법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차별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교육지원대책 마련,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아동에 대한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 언어발달을 위한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 즉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렇듯 한국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는 난민 아동·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의 아동·청소년,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이 포함되며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실태와 참가율,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여율이 조사되고 있다.

(2) 소년사법 아동

소년사법 아동에 관한 인권지표 중 2013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비율의 소분류 지표의 추가와 지표항목 배치의 변경이다. 여기에는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를 지표항목으로 구성하여 소년사법 아동이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2013년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13) 법제처. 다문화가족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undefined>에서 2015년 10월 인출.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소년 수용현황의 지표항목은 삭제되었는데, 이는 소년범죄자 구성비,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소년범죄 처리현황,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황은 소년사법 아동의 인권침해나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소년사건이나 범죄의 실태와 관련되므로 이것을 통해 인권침해나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 지표항목처럼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인권침해와 보호와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용 소분류지표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지표항목이 추가되었다.

2015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 작성지침에 의하면, 특별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법을 위반했거나, 범죄의 희생자, 또는 범죄의 목격자, 범죄를 저지른 아동이 포함된다. 특히 소년사법아동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이 타인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하고, 아동의 나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 맡게 될 건설적 역할의 가치를 고려하는 등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우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소년사법 아동에 대한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40조 2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보장, 부모나 후견인을 통한 신속한 법률적 지원, 법에 따른 공정한 심리,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이 없는 한 특별히 아동의 나이나 상황, 부모나 후견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은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받는 것과 대등한 조건으로 자신을 대변할 증인의 출석과 심문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무료로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사생활을 충분히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제40조 3항은 국가가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며,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호가 충분히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루는 조치, 아동복지측면에서 적절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 및 위법행위에 맞는 처우를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 직업훈련계획, 기타 대체방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유죄 판정을 받은 이후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소년사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은 자유박탈 아동·청소년의 수용률, 즉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같은 지표로 이들의 권리보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년사범 아동이 인권친화적인 환경, 다시 말해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제,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건수 등의 지표로 이들이 인권친화적 환경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비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 비율 등의 조사를 통해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다.

(3) 경제적 착취

경제적 착취 지표체계의 변화에는 청소년 근로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 시에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또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 수,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의 신규 지표항목을 추가하여 청소년을 경제적 착취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이유와 종류로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해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구체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위협하거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 조항에서는 이를 위해 국가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 규정, 고용시간 및 고용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개별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착취는 제33조에서 명시하듯이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아동과 청소년을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최저임금보장, 부당한 아르바이트 금지 및 처벌, 관련 보험가입과 업주의 보험료 납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보호자 동의 강화와 업주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이나 인식의 확산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거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표로는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임금수준,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근로관련 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 업소 수, 청소년 고용 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정도를 제고해 볼 수 있다.

(4) 성적 착취

성적 착취 지표구성에는 ‘청소년 성폭력예방 정도’의 소분류 지표와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강도’에 대한 소분류 지표가 추가되었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만약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높은 강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것이다.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 인원수,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 수와 같은 지표항목을 추가하여 성폭력 예방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연령이 점차 저연령화 되어감에 따라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에 성폭력 피해아동 인구비율을 추가로 지표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성범죄자 처벌에 있어서는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의 세부지표항목이 추가되었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강조하기 위해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과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을 신규로 지표항목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 및 조치현황 조사내용은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에 포함되어 조사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항목에서 삭제하였다.

성적인 착취를 경험하는 아동과 청소년 역시 특별보호조치 대상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에서는 국가가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하며 “아동을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아동을 매춘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5조에서는 성 착취나 성학대 외에도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명시하여 성적인 착취나 학대의 원인을 예방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서는 아동매매란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어떤 대가를 받고 아동을 어느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하는 모든 행위와 거래”라고 규정하

였고 아동매춘은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어떤 대가를 받고 아동을 성 관련 활동에 이용함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김영지, 김경준 외, 2013 재인용). 아동. 아동포르노그라피는 “그 방법을 불문하고 아동이 실제 또는 모의로 노골적 성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인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관련된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24).

아동·청소년의 성적인 착취와 학대로부터의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정도(성폭력 예방 전문가 양성, 성범죄자 신상공개),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율(성폭력 피해아동 인구, 성적 피해 경험율, 성적 피해 시 도움 제공자 등), 청소년성범죄자 처벌 강도(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형량 변화추이), 성폭력 피해 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성폭력 피해 청소년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인원,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재활을 위한 심리, 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등)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과 현황을 검토할 수 있다.

3.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과 일반논평 등 국제문서를 참고하고,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거쳐 확정된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표 II-3-1>과 같다. 지표 보완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15년도 인권지표는 ‘7개 대분류 - 24개 중분류 - 57개 소분류(지표) - 148개 지표항목’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¹⁴⁾

표 II-3-1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발전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지도	1-1-2-1.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14) 대분류 영역별 지표항목 개수는 1영역 인권일반 12개, 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 24개, 3영역 폭력 및 학대 11개, 4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6개, 5영역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32개, 6영역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21개, 7영역 특별보호조치 32개 등이다.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1. 아동·청소년의 인권	1-1. 아동·청소년의 인권	1-1-3. 인권교육	(가정, 학교, 지역, 전체, 사이버공간)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1-1-3-1. 인권교육 경험*
			1-1-3-2. 인권교육 받은 기관*
			1-1-3-3.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해 본 경험* 1-2-1-2. 차별받은 경험*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1-2-2. 학급회의 운영 여부*
			2-1-2-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2-1-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2-5.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 2-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2-4-2-2.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2-4-2-3.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률 2-5-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2-5-2. 정보제공 정도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3. 폭력 및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정서적 학대 경험률* (모욕적인 말·욕설 등) 3-1-1-2. 폭력피해 경험*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학대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3.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1-2. 체벌 경험률	3-1-2-1. 체벌 경험률*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2-1. 아동학대 신고건수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3-2-1-3.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3-2-1-4. 방임유형 및 정도*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3-2-2-2.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
			3-2-2-3.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1-2. 부모와의 관계의 질
			4-1-2-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청소년 비율
			4-1-2-2.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1-2-3.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2-1-2. 입양에 대한 의식
		4-2-2. 대안양육 비율	4-2-1-3.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4-2-2-1. 요보호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4-2-3-2. 가출 경험 여부와 가출 이유*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1-1-2.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수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2-1-3. 사고 사망률
			5-2-2-1. 범죄 피해율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2-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5-3-1-2.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1-3.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을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2-1. 운동 실천율*
		5-4-2. 신체적 건강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5-4-2-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5-4-2-4. 비만율
		5-4-3. 정신적 건강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5-4-3-2. 우울증*
			5-4-3-3. 스트레스 인지율*
			5-4-3-4.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5-4-3-5. 삶의 수준(2015추가문항)*
			5-4-3-6. 자아존중감*
			5-4-3-7. 고민거리대화상대*
	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1-1.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5-5-1-2.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률
			6-1-1-2. 학생 진학률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6-1-1-4.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1-3. 대안교육 참여율	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2015 신규추가) ※ 2013년도 조사문항
			6-1-3-1. 대안학교수와 종류
		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6-1-3-2. 대안학교 학생 비율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6-2-2. 학교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6-2-2-1. 혁신학교 운영수
			6-2-2-2. 혁신학교 운영 현황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수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율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6-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6-3-3. 여가·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5. 하루평균학습시간*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6-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7-2. 소년사법아동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7-1-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7-1-3.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7-1-3-3.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7-3. 경제적 착취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7-4. 성적 착취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7-4. 성적 착취	7-3-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7-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노력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7-4-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7-4-2-3.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7-4-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3-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제 III 장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폭력 및 학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7. 특별보호조치

제 III 장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¹⁵⁾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¹⁶⁾

1) 인권일반

(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① 아동·청소년관련 법·제도 발전

최근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8. 제정, 2015. 5. 29. 시행),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015. 3. 27 개정, 2015. 9. 28. 시행) 등을 들 수 있다.¹⁷⁾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이다.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제4조부터 제7조까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9조) 등을 담고 있다¹⁸⁾.

15) III 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는 설문조사와 행정통계 활용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된다. 본 과제는 인권실태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속과제이므로 2011년부터 인용된 행정통계나 타분야 통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본문의 출처는 각 연도별로 표기하고 참고문헌은 전년도 대비 추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제시와 관련하여 교차분석표는 주로 주요문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전체 통계결과표는 별권인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연구보고 15-R11-2)에서 참고할 수 있다. 통계표에서 일부 빈도/비율이 0건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16) 이 절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17) 법제처 법령검색 웹사이트 2015년 10월 16일 검색(이후 각주에 법령별 웹사이트 주소를 표기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을 시혜적 복귀의 대상으로 보고 학업복귀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논의가 출발하였다.¹⁹⁾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도록 하였고(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

2015년 3월 개정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제5조 제2항 신설), 가정 내 체벌이나 폭력이 아동학대의 하나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²⁰⁾

한편, 2015년도에 아동인권 신장을 위한 종합적·중장기적 정책 추진계획으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이 수립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기본계획은 아동분야에서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관계부처 합동, 2015). 기본계획의 비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원리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 및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5개 부문에 걸쳐 16개 중점과제, 158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한다는

18) 법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5%84%EB%8F%99%ED%95%99%EB%8C%80%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undefined>에서 2015년 10월 16일 인출(본문 및 제정·개정 이유).

19)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5%99%EA%B5%90%EB%B0%96%20%EC%B2%AD%EC%86%8C%EB%85%84%20#undefined>에서 2015년 10월 16일 인출(본문 및 제정·개정 이유).

20) 법제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undefined>에서 2015년 10월 16일 인출(본문 및 제정·개정 이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제1차 기본계획 이행관리(평가 포함) 및 부처별 대책 조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확충하고, 분야별 회의체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하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영역별로 개선이 시급한 결과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을 담고 있어 이의 시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단위 법체계인 조례 제정도 높아가고 있다.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서울시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송파구, 광주광역시, 군산시, 완주군 등이다.

②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2014~2015년도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관련 가장 큰 변화는 2014년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에 아동·청소년 인권을 전담하는 ‘아동·청소년인권팀’이 신설된 점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인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및 의견표명
3. 아동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내 인권침해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항의 조사 및 직권조사·구제
4. 제3조에 따른 조사·구제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사항 연구와 권고 및 의견표명
5. 제3호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6. 제3조에 따른 조사 대상 기관 관련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 출처: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제9조 8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W/nwRvsLslInfoR.do?lsiSeq=159070>에서 10월 16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의 주요 기능은 ‘아동·청소년인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등 조사와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전담팀이 신설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직제상 업무범위가 기본적인 인권사안 연구·모니터링·권고뿐만 아니라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까지 광범위한 데 비해 인력은 5명에 불과하여 전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이슈에 대응하기에 5인의 인력은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김영지, 모상현, 이용교, 2015: 43).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하였지만 과거 인권정책과와 조사국에서 했던 업무를 재분장하는 형식으로 기존 인력을 재구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 이는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두고, 조사국에 장애인차별조사1과(직원 11명), 장애인차별조사과(직원 10명)에 총 21명의 직원을 배치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김영지, 모상현 외, 2015: 144).

또한 직제규정상 아동·청소년인권팀은 2017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시조직으로 전환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부터 위탁 운영해오던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관련 부서인 아동·청소년팀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팀의 2015년도 사업을 보면 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 이행방안 모색(3백만원),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분야 아동인권 개선(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구축사업 포함, 1억5천3백만원), 소년원 방문조사 실시(1천만원) 등의 분야에 1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종합적 아동정책 수립, 관계부처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2007년 11월 30일에 개최된 제4차 회의를 끝으로 기능이 중단되었다가 2013년 7월 아동정책조정위원 위촉으로 재개되었다. 2014년 2월 25일 제7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2014년 2월 28일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아동학대 종합대책 및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김경준, 이호균, 서여정, 김광혁, 김형욱, 윤상석 외, 2014: 26).

2014년 12월 제8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초안(복지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고, 2015년 3월 제9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을

심의회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가 이루어졌다. 2015년 5월 제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서면심의회가 진행되었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년부터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재개되어 주요 아동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과 같이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는 과제는 아직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③ GDP 대비 아동·청소년관련 예산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다양한 부처와 관련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김영지, 김정준 외, 2013: 102), 여기에서는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중심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아동복지서비스, 보육, 청소년 분야의 예산현황을 살펴보았다.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을 보면, 2012년 2.82%, 2013년 2.91%, 2014년 2.79% 등으로 3%에 못미치는 가운데 2013년도에 소폭 증가했다가 2014년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I-1-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2~2015)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아동· 청소년 예산	유아 및 초중등교육	38,804,797,542	41,523,622,672	41,465,434,441	39,565,607,727
	아동복지서비스	208,479	239,061	213,511	222,801
	보육	3,028,568	4,131,345	5,273,819	4,943,994
	청소년	47,435	57,527	67,694	67,711
	총계	38,808,082,024	41,528,050,605	41,470,989,465	39,570,842,233
아동·청소년 인구 (~18세 미만)(천명)		10,276	10,019	9,772	9,538
1인당 지출비용		3,776	4,115	4,244	4,149
GDP		1,377.5조원	1,428.3조원	1,485.0조원	—
GDP 대비		2.82%	2.91%	2.79%	—

* 출처: 기획재정부(2013). 2013 나라살림 예산. pp.116~119, 271~272, 277~278, 317~319의 내용으로 구성함.

기획재정부(2015). 2015 나라살림 예산. pp.588, 255~256, 260~261, 296~297의 내용으로 구성함.

통계청 e-나라지표 (2015a). 국내총생산.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2015b).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7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 산출식: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1300항 요보호아동+1400항 아동복지+1000항 복지부의 아동·청소년정책 예산

보육 예산: 3100항 보육지원

청소년 예산: 21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2200항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2) 인권에 대한 인지도

①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담은 조약으로, 전세계 196개국이라는 최다 국가가 비준하였다.²¹⁾ 한국정부는 2017년 상반기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6·7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사회적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표 III-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아동권리협약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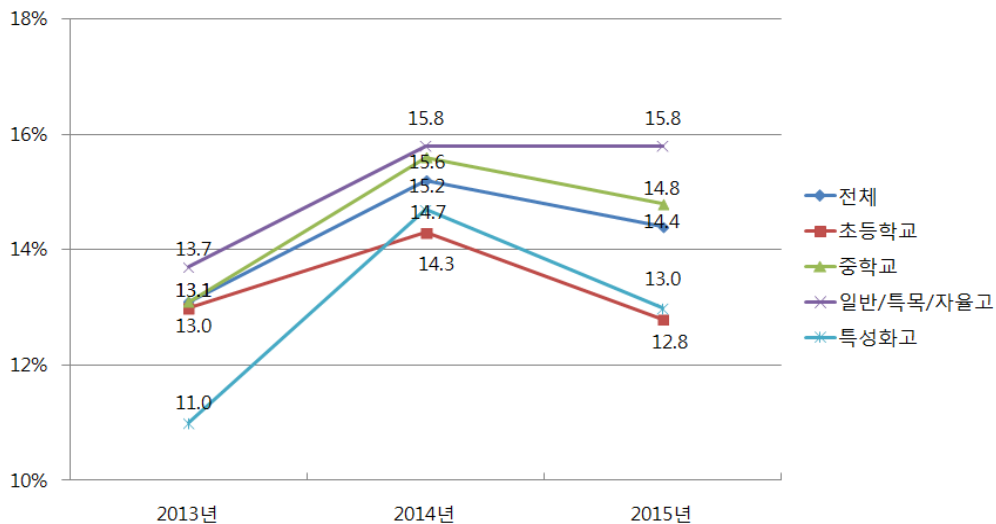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38.7	46.9	14.4	100.0(10,448)	—
성별	남자	40.4	44.6	15.0	100.0(5,446)
	여자	36.8	49.3	13.9	100.0(5,002)
학교 유형	초등학교	48.4	38.8	12.8	100.0(2,932)
	중학교	35.4	49.8	14.8	100.0(3,629)
	일반/특목/자율고	34.1	50.0	15.8	100.0(3,171)
	특성화고	35.8	51.1	13.0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37.3	47.4	15.3	100.0(4,567)
	중소도시	40.3	46.0	13.6	100.0(4,272)
	읍면지역	38.2	47.6	14.2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8.3	46.8	14.9	100.0(9,424)
	한부모가정	42.2	47.2	10.6	100.0(865)
	조손가정	38.8	49.5	11.7	100.0(98)
	기타	51.7	40.7	7.5	100.0(61)
학업 성적	상	34.0	46.5	19.4	100.0(3,399)
	중	39.8	47.5	12.8	100.0(4,441)
	하	42.9	46.4	10.7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36.9	46.1	16.9	100.0(5,376)
	중	41.2	47.5	11.4	100.0(3,743)
	하	38.7	48.3	13.0	100.0(1,322)

* $p<.05$, ** $p<.01$, *** $p<.001$.

2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재 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는 196개국이며, 미국은 아직 서명만 한 상태이다(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15).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담겨있는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모른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8.7%였고, ‘이름만 들어봤다’에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46.9%였으며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14.4%로 나타났다. 협약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85.6%나 된다는 것은 협약의 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협약에 대해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40.4%)이 여학생(36.8%)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48.4%), 특성화고(35.8%), 중학교(35.4%), 일반/특목/자율고(34.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37.3%, 중소도시가 40.3%, 읍면지역이 38.2%로 중소도시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족유형별로는 기타(51.7%), 한부모가정(42.2%), 조손가정(38.8%), 양부모가정(3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모른다’의 비율이 높게 나왔고(상 34.0%, 중 39.8%, 하 42.9%), 경제적수준별로는 중(41.2%), 하(38.7%), 상(36.9%)의 순으로 비율이 나타났다.



【그림 III-1-1】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유엔아동권리협약(연도별 추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이후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2014년도의 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전체값 ‘13년 13.1%, ’14년 15.2%, ’15년 14.4%). 일반/특목/자율고의 경우만 2014년도와 2015년도가 15.8%로 동일하고

다른 집단들은 모두 2014년 대비 2015년에 1%p 내외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나.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제정한 자치법규로 보장받아야 할 학생인권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옹호관이나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학생인권 모니터링 및 구제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개선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규라 할 수 있다.

표 III-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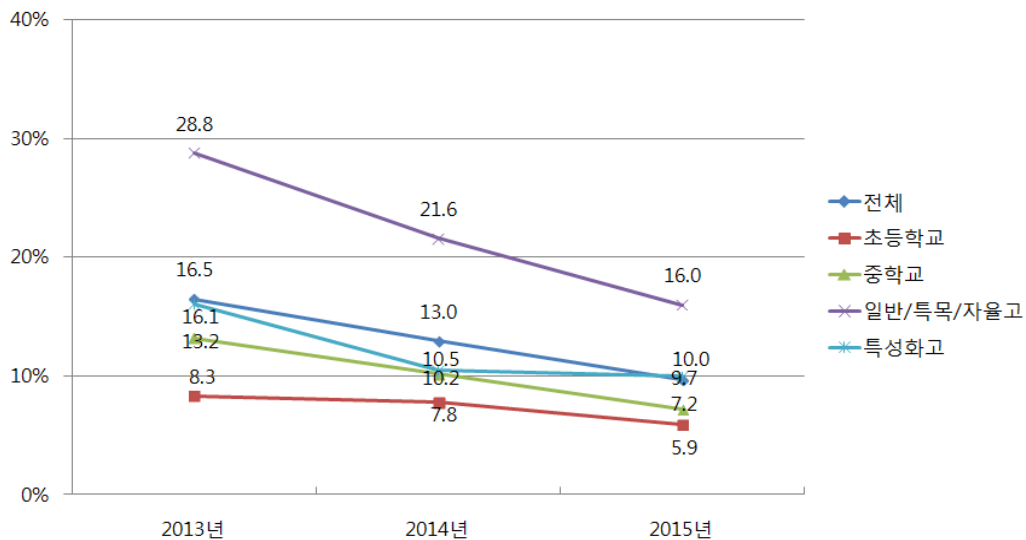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47.7	42.7	9.7	100.0(10,446)	—
성별	남자	49.2	41.2	9.6	100.0(5,445)	11,214**
	여자	46.0	44.2	9.8	100.0(5,001)	
학교 유형	초등학교	58.1	36.0	5.9	100.0(2,932)	429.486***
	중학교	49.7	43.1	7.2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35.2	48.8	16.0	100.0(3,170)	
	특성화고	49.7	40.3	10.0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48.1	43.2	8.7	100.0(4,567)	45,157***
	중소도시	45.0	43.7	11.3	100.0(4,271)	
	읍면지역	53.5	38.4	8.1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7.3	42.8	9.9	100.0(9,423)	8,062
	한부모가정	50.2	41.9	7.9	100.0(865)	
	조손가정	53.1	39.5	7.4	100.0(98)	
	기타	56.4	34.4	9.2	100.0(60)	
학업 성적	상	43.3	43.5	13.2	100.0(3,399)	93,456***
	중	48.9	42.4	8.7	100.0(4,440)	
	하	51.2	42.1	6.8	100.0(2,577)	
경제적 수준	상	47.4	42.4	10.2	100.0(5,375)	13,021*
	중	48.9	42.6	8.5	100.0(3,742)	
	하	45.3	43.7	11.0	100.0(1,322)	

* $p<.05$, ** $p<.01$, *** $p<.001$.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른다’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47.7%였고, ‘이름만 들어봤다’에 응답한 비율은 42.7%,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9.7%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의 이름도 모르고 이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아동·청소년들은 90.4%로 10명중 9명인 대다수의 아동·청소년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아동·청소년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 학교유형,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적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여자(46%)에 비해 남자(49.2%)가 ‘모른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유형에서는 초등학교(58.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와 특성화고(49.7%), 일반/특목/자율고(3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53.5%, 대도시는 48.1%, 중소도시의 아동·청소년은 45%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대해서는 하(51.2%), 중(48.9%), 상(43.3%) 순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중(48.9%)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상(47.4%), 하(45.3%)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I-1-2】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학생인권조례(연도별 추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2013년도 16.5%에서 2015년에는 9.7%로 낮아져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일자를 보면 경기도(2010. 10), 광주광역시(2012. 1), 서울특별시(2012. 1), 전라북도(2013. 6) 등으로 2010년 초반에 사회적으로 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이후 조례 제정 담론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지역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는 것은 조례 시행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환기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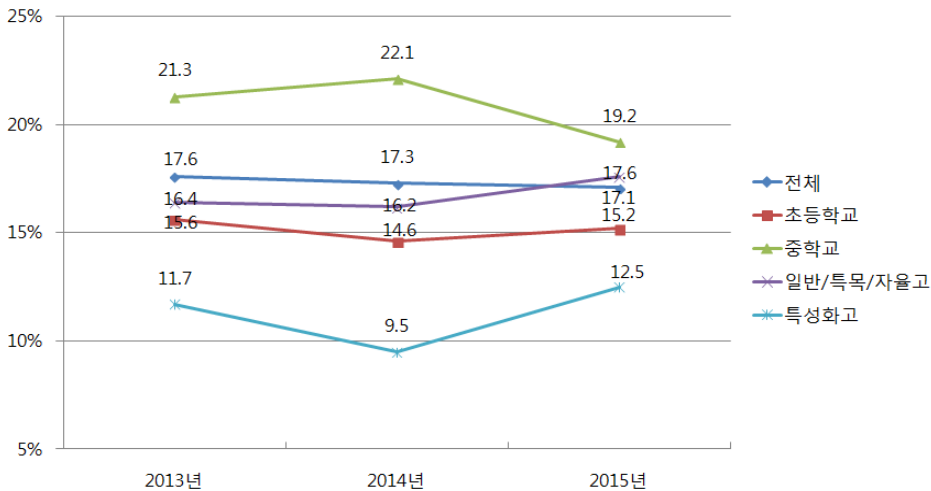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는 독립적 인권전담기구로 아동·청소년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진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른다’에 응답한 아동·청소년이 26.3%로 나타났고 ‘이름만 들어봤다’는 56.6%이며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는 17.1%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7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은 성별, 학교유형,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23.8%)보다는 남자(28.6%)가 더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34.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특성화고(30%), 일반/특목/자율고(22.9%), 중학교(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로 봤을 때는 중소도시(27.8%)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읍면지역(25.5%), 대도시(2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기타(40.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27.7%), 조손가정(27.5%), 양부모가정(2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하 31.1%, 중 26.9%, 상 21.8%)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모르는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적수준은 중(28.7%)에 속한 아동·청소년일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하(25.6%), 상(2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 -1-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26.3	56.6	17.1	100.0(10,446)	-
성별	남자	28.6	54.5	16.9	100.0(5,444)	31.779***
	여자	23.8	58.8	17.3	100.0(5,002)	
학교 유형	초등학교	34.7	50.1	15.2	100.0(2,931)	178.084***
	중학교	21.9	58.9	19.2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22.9	59.6	17.6	100.0(3,171)	
	특성화고	30.0	57.5	12.5	100.0(715)	
지역 규모	대도시	25.2	56.5	18.2	100.0(4,565)	13.127*
	중소도시	27.8	56.2	15.9	100.0(4,271)	
	읍면지역	25.5	57.4	17.1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1	56.4	17.5	100.0(9,423)	17.209**
	한부모가정	27.7	59.1	13.2	100.0(864)	
	조손가정	27.5	52.9	19.7	100.0(98)	
	기타	40.2	44.0	15.8	100.0(61)	
학업 성적	상	21.8	54.8	23.4	100.0(3,399)	182.130***
	중	26.9	57.5	15.5	100.0(4,439)	
	하	31.1	57.3	11.7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24.9	55.5	19.6	100.0(5,374)	56.688***
	중	28.7	57.4	14.0	100.0(3,742)	
	하	25.6	58.5	15.9	100.0(1,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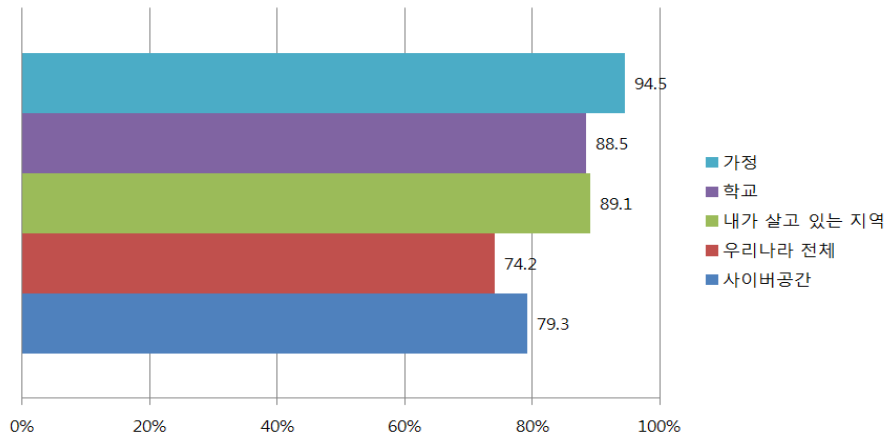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그림 III -1-3】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국가인권위원회(연도별 추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소폭이지만 하향 추세(17.6% → 17.3% → 17.1%)를 보이고 있다.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인지도는 2014년도에 소폭 낮아지다가 2015년에 소폭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져 전체값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②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지역, 대한민국 전체, 사이버공간)

먼저 가정, 학교, 살고 있는 지역, 대한민국 전체, 사이버공간 등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값을 비교해 보면, 가정(94.5%), 지역(89.1%), 학교(88.5%), 사이버공간(79.3%), 대한민국 전체(74.2%) 순으로 나타나 우리사회 전체적인 인권 존중정도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1-4】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각 영역별 인권존중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5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_1) 가정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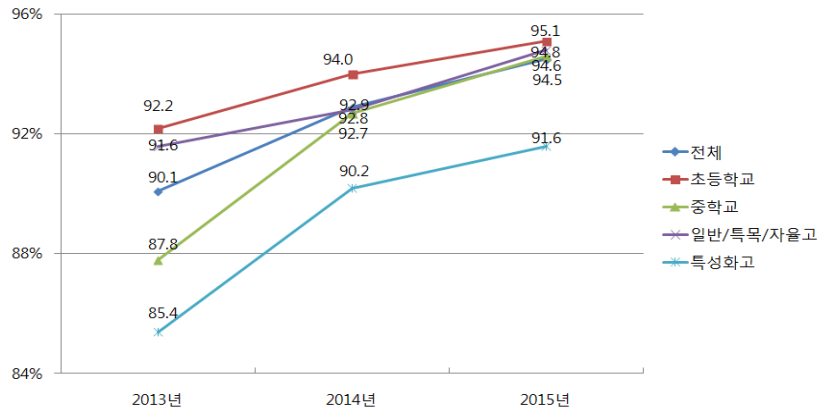
구분		평균(SD)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41(0.63)	1.1	4.3	47.2	47.3	100.0(10,449)	—
성별	남자	3.39(0.64)	1.5	4.2	48.1	46.2	100.0(5,446)	21.760***
	여자	3.43(0.61)	0.7	4.5	46.2	48.6	100.0(5,003)	

구분		평균(SD)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학교 유형	초등학교	3.52(0.63)	1.0	3.9	36.6	58.5	100.0(2,935)	236.904***
	중학교	3.38(0.62)	1.0	4.4	50.5	44.1	100.0(3,627)	
	일반/특목/자율고	3.37(0.62)	1.1	4.1	51.1	43.7	100.0(3,171)	
	특성화고	3.24(0.65)	1.9	6.5	57.2	34.4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3.43(0.64)	1.3	4.2	44.7	49.8	100.0(4,565)	31.003***
	중소도시	3.38(0.62)	1.1	4.5	50.0	44.5	100.0(4,274)	
	읍면지역	3.42(0.61)	0.7	4.3	47.1	47.9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2(0.62)	1.0	4.2	46.7	48.1	100.0(9,426)	36.501***
	한부모가정	3.30(0.68)	2.1	6.3	51.3	40.4	100.0(865)	
	조손가정	3.31(0.64)	2.0	3.3	55.9	38.7	100.0(97)	
	기타	3.28(0.65)	1.5	5.8	55.7	37.0	100.0(61)	
학업 성적	상	3.55(0.59)	0.5	3.4	36.9	59.2	100.0(3,398)	424.384***
	중	3.40(0.60)	0.9	3.4	50.2	45.5	100.0(4,444)	
	하	3.23(0.67)	2.1	7.4	55.8	34.7	100.0(2,576)	
경제적 수준	상	3.52(0.58)	0.7	2.5	40.5	56.3	100.0(5,378)	479.968***
	중	3.32(0.63)	1.4	4.9	53.9	39.8	100.0(3,744)	
	하	3.18(0.69)	2.1	10.2	55.6	32.1	100.0(1,320)	

*** $p < .001$.

먼저 가정에서 존중받고 있는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청소년 중의 94.5%가 가정에서 존중받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5.4%의 인원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에서의 존중정도는 배경변인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남학생(94.3%)보다는 여학생(94.8%)이 가정에서 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95.1%)에 속한 아동·청소년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 이후로 일반/특목/자율고(94.8%), 중학교(94.6%), 특성화고(91.6%)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95%)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더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고 그 이후로는 대도시(94.5%), 중소도시(94.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4.8%)에 속한 아동·청소년이 조손가정(94.6%), 기타(92.7%), 한부모가정(91.7%)에 속한 아동·청소년보다 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학업성적(상96.1%, 중95.7%, 하90.5%)과 경제적 수준(상96.8%, 중93.7%, 하87.7%)이 높을수록 더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1-5】 인권존중 정도_가정(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값 '13년 90.1% → '14년 92.9% → '15년 94.5%). 2013년도에 평균치에 닿지 못했던 중학생(87.8%)과 특성화고등학교생(85.4%)도 2015년에는 각각 94.6%, 91.6%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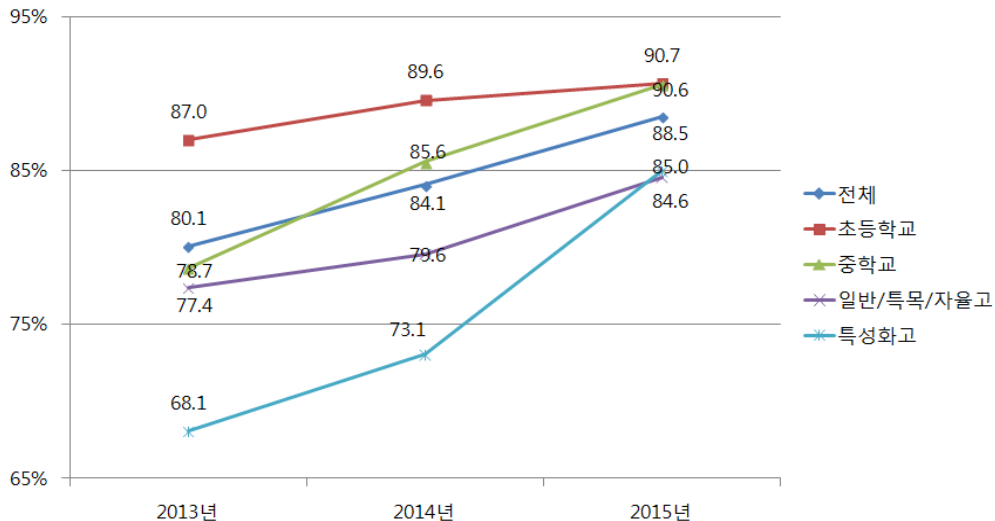
표 Ⅲ-1-6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_2) 학교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12(0.65)	2.2	9.4	62.6	25.9	100.0(10,451)	—
성별	남자	3.12(0.67)	2.7	9.3	61.3	26.7	100.0(5,446)	21.377***
	여자	3.12(0.63)	1.6	9.4	64.0	25.0	100.0(5,0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8(0.68)	1.8	7.5	52.1	38.6	100.0(2,935)	471.503***
	중학교	3.14(0.62)	1.8	7.7	65.0	25.6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2.99(0.64)	2.8	12.6	67.5	17.1	100.0(3,171)	
	특성화고	2.95(0.62)	3.5	11.5	71.4	13.6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3.14(0.67)	2.4	9.3	60.7	27.7	100.0(4,567)	18.260**
	중소도시	3.1(0.64)	2.1	9.8	63.8	24.3	100.0(4,274)	
	읍면지역	3.12(0.63)	2.0	8.7	64.6	24.8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3(0.65)	2.2	9.0	62.3	26.5	100.0(9,427)	29.246***
	한부모가정	3.03(0.64)	2.2	12.6	65.6	19.6	100.0(865)	
	조손가정	3.09(0.65)	1.9	11.3	62.5	24.3	100.0(97)	
	기타	3.00(0.73)	3.7	14.8	59.1	22.4	100.0(61)	
학업 성적	상	3.28(0.63)	1.2	6.2	55.7	36.9	100.0(3,398)	517.473***
	중	3.12(0.63)	2.0	8.6	65.3	24.1	100.0(4,444)	
	하	2.91(0.66)	3.8	15.1	67.1	14.0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3.23(0.64)	1.6	6.7	58.9	32.7	100.0(5,378)	397.149***
	중	3.05(0.64)	2.4	10.6	66.5	20.4	100.0(3,744)	
	하	2.89(0.66)	3.7	16.8	66.5	13.0	100.0(1,321)	

* $p < .05$, ** $p < .01$, *** $p < .001$.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청소년 중의 88.5%가 존중받고 있다(존중받는 편 + 매우 존중받음)고 느끼고 있었으며 11.6%의 아동·청소년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존중받지 못하는 편 + 전혀 존중받지 못함)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차이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서는 여자(89.0%)가 남자(88%)보다 학교 안에서 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90.7%), 중학교(90.6%), 특성화고(85.0%), 일반/특목/자율고(8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89.4%), 대도시(88.4%), 중소도시(8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88.8%), 조손가정(86.8%), 한부모가정(85.2%), 기타(8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92.6%, 중89.4%, 하81.1%)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상91.6%, 중86.9%, 하79.5%)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림 III-1-6】 인권존중 정도_학교(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에서의 인권존중 정도가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전체값 '13년 80.1% → '14년 84.1% → '15년 88.5%). 2013년도에 학교에서의 인권존중 정도가 낮다고 응답했던 중학생(78.7%)과 특성화고등학생(68.1%)이 2015년에는 각각 90.6%, 85.0%로 인권존중 정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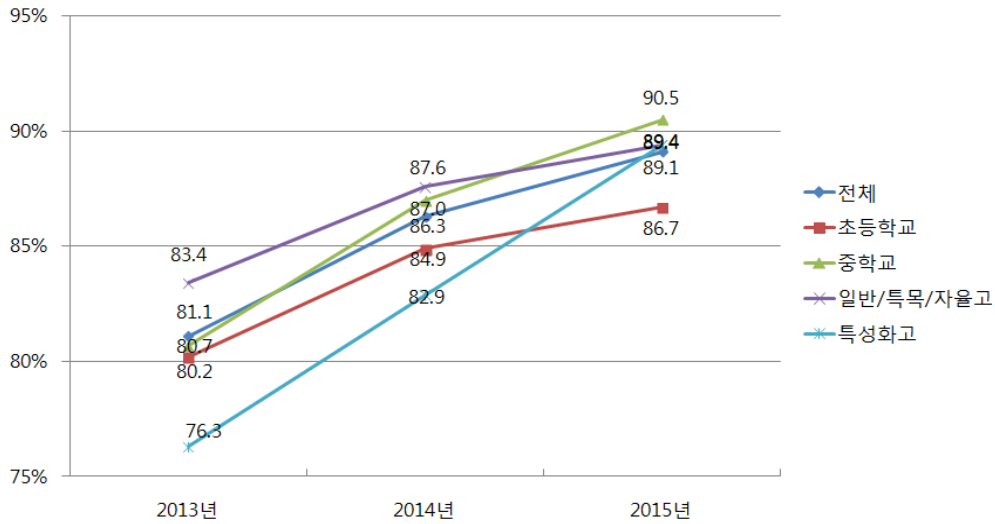
표 Ⅲ-1-7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_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12(0.63)	1.9	9.0	64.5	24.6	100.0(10,446)	—
성별	남자	3.12(0.66)	2.4	8.9	62.6	26.1	100.0(5,443)	30.695***
	여자	3.11(0.60)	1.4	9.2	66.5	22.9	100.0(5,0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0(0.73)	2.8	10.5	50.8	35.9	100.0(2,933)	426.347***
	중학교	3.13(0.60)	1.4	8.2	66.2	24.3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3.04(0.57)	1.9	8.7	72.7	16.7	100.0(3,169)	
	특성화고	3.02(0.54)	1.6	8.9	75.2	14.2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3.15(0.64)	1.9	8.1	63.0	27.1	100.0(4,563)	34.505***
	중소도시	3.08(0.63)	2.0	9.8	66.2	22.1	100.0(4,272)	
	읍면지역	3.10(0.64)	1.9	9.8	64.2	24.1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3(0.63)	1.8	9.0	64.0	25.2	100.0(9,423)	34.141***
	한부모가정	3.04(0.63)	2.9	8.9	69.3	18.9	100.0(864)	
	조손가정	3.01(0.74)	5.9	9.1	63.5	21.5	100.0(97)	
	기타	3.00(0.68)	5.1	7.4	69.4	18.1	100.0(61)	
학업 성적	상	3.24(0.63)	1.2	7.3	57.7	33.9	100.0(3,397)	329.955***
	중	3.11(0.62)	2.0	8.5	66.4	23.0	100.0(4,444)	
	하	2.97(0.62)	2.8	12.2	70.3	14.6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3.22(0.63)	1.5	7.1	59.5	31.9	100.0(5,377)	375.406***
	중	3.04(0.61)	2.1	10.3	69.0	18.5	100.0(3,742)	
	하	2.92(0.62)	3.4	13.2	71.6	11.8	100.0(1,320)	

* $p<.05$, ** $p<.01$, *** $p<.00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존중받고 있는 정도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89.1%이며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10.9%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나타난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89.4%)가 남자(88.7%)보다 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90.5%), 일반/특목/자율고(89.4%), 특성화고(89.4%), 초등학교(8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90.1%), 읍면지역(88.3%), 중소도시(88.3%)의 순으로 살고있는 지역에서 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89.2%), 한부모가정(88.2%), 기타(87.5%), 조손가정(85%)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상91.6%, 중89.4%, 하84.9%)과 경제적 수준(상91.4%, 중87.5%, 하83.4%)이 높을수록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1-7】 인권존중 정도_살고 있는 지역(연도별 추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81.1%, 2014년 86.3%, 2015년 89.1% 등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도에 지역의 인권존중 정도가 76.3%로 낮게 나타났던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우 2015년 89.4%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III-1-8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_4) 대한민국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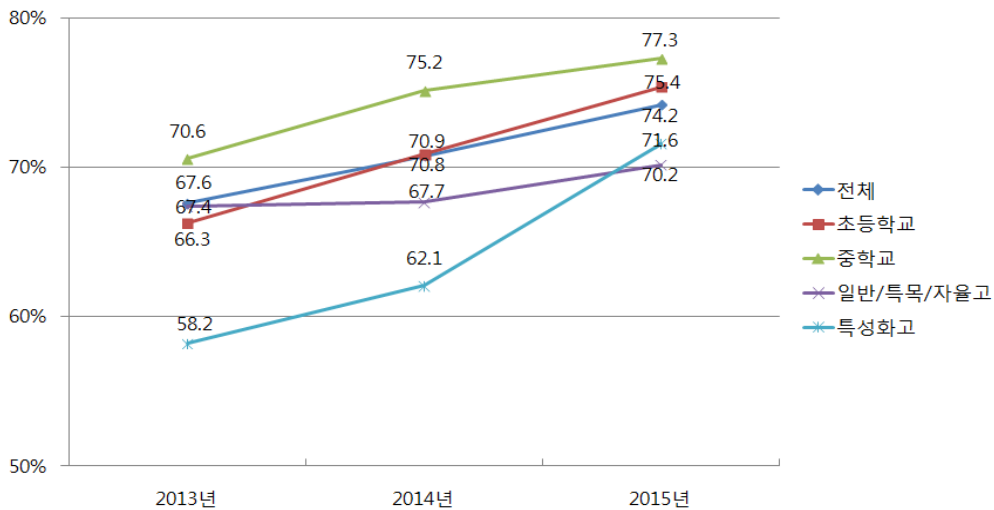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2.87(0.77)	5.8	20.1	55.7	18.5	100.0(10,445)	-
성별	남자	2.87(0.81)	7.0	19.2	53.3	20.5	100.0(5,444)	70.647***
	여자	2.87(0.73)	4.4	21.0	58.3	16.4	100.0(5,001)	
학교 유형	초등학교	2.97(0.87)	7.2	17.4	46.5	28.9	100.0(2,932)	438.339***
	중학교	2.92(0.74)	4.4	18.3	58.4	18.9	100.0(3,627)	
	일반/특목/자율고	2.75(0.72)	6.1	23.8	59.5	10.7	100.0(3,170)	
특성화고		2.75(0.69)	5.2	23.3	62.5	9.1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2.90(0.78)	5.6	19.6	54.2	20.7	100.0(4,566)	25.984***
	중소도시	2.84(0.77)	6.0	20.7	56.7	16.6	100.0(4,269)	
	읍면지역	2.86(0.76)	5.7	19.8	57.1	17.5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8(0.77)	5.5	20.1	55.5	18.9	100.0(9,423)	26.549**
	한부모가정	2.78(0.78)	7.7	20.7	57.2	14.4	100.0(863)	
	조손가정	2.82(0.88)	10.3	18.1	51.1	20.6	100.0(97)	
	기타	2.80(0.78)	10.0	12.1	66.1	11.8	100.0(61)	

구분		평균(SD)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3.00(0.78)	4.6	16.1	53.6	25.7	100.0(3,396)	262,869***
	중	2.86(0.76)	5.5	20.3	57.1	17.1	100.0(4,442)	
	하	2.71(0.76)	7.7	24.9	56.3	11.1	100.0(2,576)	
경제적 수준	상	2.98(0.78)	4.9	16.9	54.0	24.2	100.0(5,377)	321,490***
	중	2.80(0.75)	6.0	21.8	58.1	14.1	100.0(3,741)	
	하	2.63(0.75)	8.7	28.0	55.4	8.0	100.0(1,320)	

* $p<.05$, ** $p<.01$, *** $p<.001$.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4.2%였고 존중받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5.9%였다. 배경별인별로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74.7%)는 남자(73.8%)보다 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77.3%), 초등학교(75.4%), 특성화고(71.6%), 일반/특목/자율고(7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74.9%), 읍면지역(74.6%), 중소도시(73.3%)의 순으로 더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는 기타(77.9%), 양부모가정(74.4%), 조손가정(71.7%), 한부모가정(71.6%)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상79.3%, 중74.2%, 하67.4%)과 경제적 수준(상78.2%, 중72.2%, 하63.4%)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안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1-8】 인권존중 정도__대한민국 전체(연도별 추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3년 67.6%, '14년 70.8%, '15년 74.2%). 일반/특목/자율고등학생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의 응답률 차이가 거의 없었고, 2015년에도 가장 소폭의 증가율을 보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1-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5) 사이버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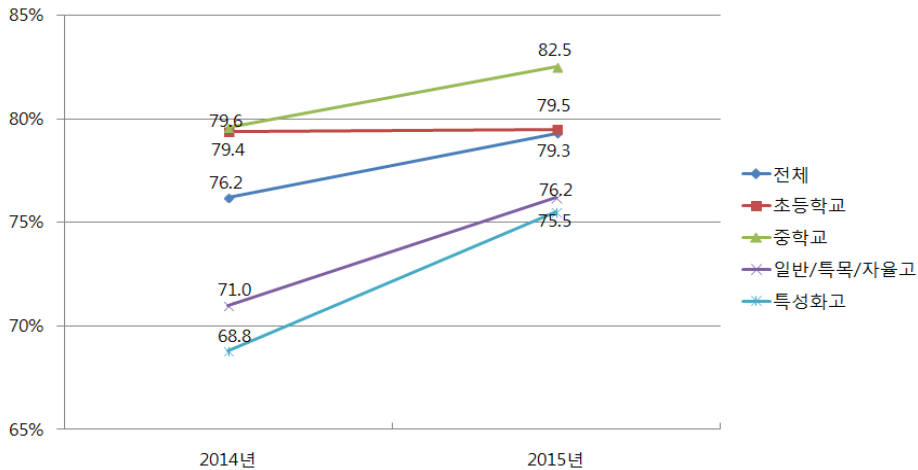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2.93(0.76)	6.0	14.7	59.1	20.2	100.0(10,428)	-
성별	남자	2.89(0.83)	7.9	16.4	54.4	21.3	100.0(5,437)	140.920***
	여자	2.98(0.69)	3.9	12.9	64.2	19.0	100.0(4,991)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3(0.86)	7.6	12.9	48.5	31.0	100.0(2,922)	446.938***
	중학교	2.98(0.72)	4.7	12.8	62.2	20.3	100.0(3,627)	
	일반/특목/자율고	2.83(0.71)	5.8	18.0	63.6	12.6	100.0(3,163)	
	특성화고	2.78(0.70)	6.8	17.7	66.4	9.1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2.98(0.77)	5.7	13.6	58.1	22.7	100.0(4,556)	45.549***
	중소도시	2.88(0.76)	6.3	16.4	59.8	17.5	100.0(4,262)	
	읍면지역	2.95(0.76)	5.9	13.7	59.9	20.5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4(0.76)	5.8	14.4	59.2	20.5	100.0(9,408)	23.058**
	한부모가정	2.84(0.78)	7.5	17.6	58.4	16.5	100.0(861)	
	조손가정	2.83(0.90)	10.2	19.1	48.2	22.5	100.0(97)	
	기타	2.92(0.75)	6.8	11.5	64.5	17.2	100.0(61)	
학업 성적	상	3.04(0.78)	5.3	13.0	54.1	27.6	100.0(3,395)	219.517***
	중	2.93(0.74)	5.6	14.8	60.9	18.8	100.0(4,431)	
	하	2.81(0.75)	7.6	16.9	62.8	12.7	100.0(2,571)	
경제적 수준	상	3.03(0.78)	5.3	12.8	55.6	26.3	100.0(5,367)	283.089***
	중	2.87(0.74)	6.2	16.0	62.7	15.1	100.0(3,735)	
	하	2.75(0.75)	8.3	18.8	63.0	10.0	100.0(1,318)	

* $p < .05$, ** $p < .01$, *** $p < .001$.

사이버공간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동·청소년 중의 79.3%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0.7%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나타난 차이를 보면 남자(75.7%)보다는 여자(83.2%)가 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의 82.5%가 사이버공간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79.5%), 일반/특목/자율고(76.2%), 특성화고(7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80.8%), 읍면지역(80.4%), 중소도시(77.3%)의 순으로, 가족유형으로는 기타(81.7%), 양부모가정(79.7%), 한부모가정(74.9%),

조손가정(70.7%)의 순으로 더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업성적(상81.7%, 중79.7%, 하75.5%)과 경제적 수준(상81.9%, 중77.8%, 하73%)이 높을수록 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림 Ⅲ-1-9】 인권존중 정도_사이버 공간(연도별 추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전체값 '14년 76.2%, '15년 79.3%), 초등학생의 경우는 거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4년 79.4%, '15년 79.5%).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우 2014년도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존중 정도가 68.8%로 가장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2015년도에는 75.5%로 존중 정도의 증가율은 다른 교급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③ 인권의식 및 태도

표 Ⅲ-1-10 인권인식_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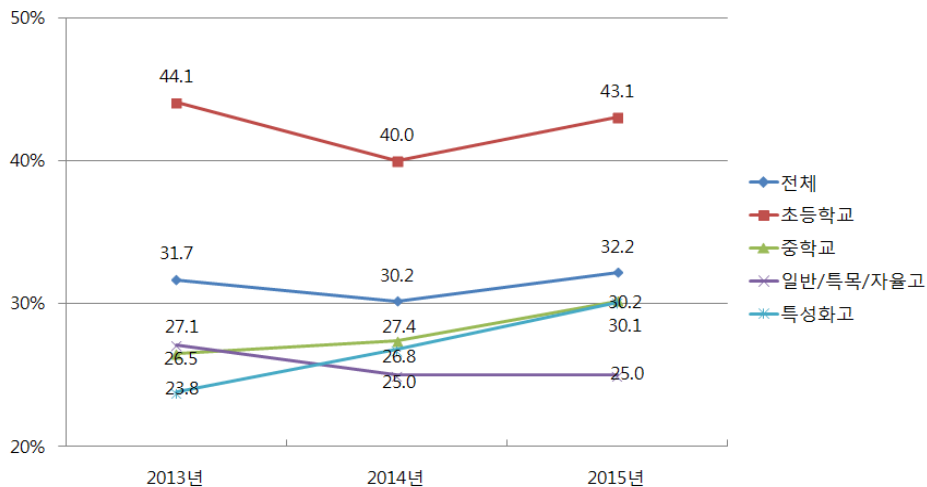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9(0.83)	25.4	42.4	28.0	4.2	100.0(10,449)	—
성별	남자	2.86(0.86)	25.5	39.7	29.8	5.0	100.0(5,445)	50.726***
	여자	2.92(0.80)	25.2	45.4	26.1	3.3	100.0(5,004)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교 유형	초등학교	2.72(0.93)	24.3	32.7	34.2	8.9	100.0(2,935)	400.325***
	중학교	2.93(0.81)	26.5	43.3	27.3	2.9	100.0(3,626)	
	일반/특목/자율고	2.98(0.75)	25.2	49.8	23.1	1.9	100.0(3,172)	
	특성화고	2.93(0.77)	24.6	45.3	28.3	1.8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2.89(0.84)	25.6	42.0	27.9	4.4	100.0(4,566)	13.522*
	중소도시	2.87(0.83)	24.1	43.2	28.4	4.3	100.0(4,274)	
	읍면지역	2.94(0.82)	28.0	41.6	27.3	3.1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9(0.83)	25.1	42.5	28.1	4.2	100.0(9,424)	9.352
	한부모가정	2.93(0.83)	27.8	41.2	27.4	3.6	100.0(865)	
	조손가정	2.76(0.83)	19.8	41.9	33.1	5.2	100.0(98)	
	기타	3.07(0.82)	33.5	43.5	19.8	3.2	100.0(61)	
학업 성적	상	2.90(0.84)	26.8	40.9	28.0	4.4	100.0(3,398)	23.607***
	중	2.85(0.82)	23.2	43.2	29.2	4.3	100.0(4,442)	
	하	2.94(0.82)	27.0	43.2	26.1	3.7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2.86(0.86)	25.7	39.8	29.2	5.3	100.0(5,379)	96.331***
	중	2.89(0.80)	23.6	44.3	29.0	3.1	100.0(3,742)	
	하	3.03(0.78)	28.7	47.9	20.7	2.7	100.0(1,321)	

* $p<.05$, ** $p<.01$, *** $p<.00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인권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의 32.2%(그런 편이다 28%, 매우 그렇다 4.2%)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67.8%(전혀 그렇지 않다 25.4%, 그렇지 않은 편이다 42.4%)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로 나타난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29.4%)보다 남학생(34.8%)이 청소년의 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43.1%로 다른 교급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이후로 중학생(30.2%), 특성화고(30.1%), 일반/특목/자율고(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32.7%), 대도시(32.3%), 읍면지역(30.4%)의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업 성적이 중위권(33.5%)에 속할수록 경제적 수준이 상위권(34.5%)에 속할수록 청소년의 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림 Ⅲ-1-10】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연도별 추이)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률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4년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5년 다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13년 31.7%, ’14년 30.2%, ’15년 32.2%). 특성화고등학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크고(’13년 23.8% → ’15년 30.1%), 일반/특목/자율고등학생만 유일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3년 27.1% → ’15년 25.0%).

표 Ⅲ-1-11 인권인식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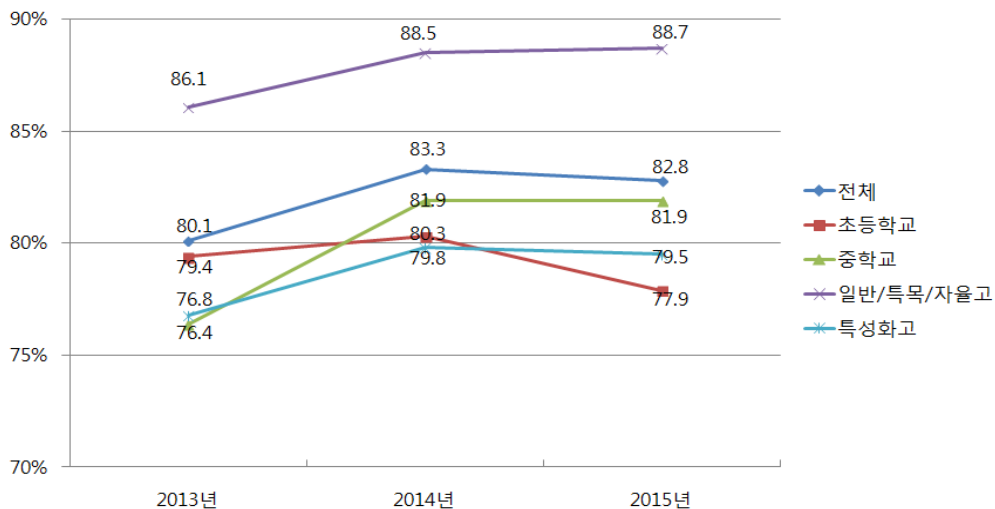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성별	전체	3.03(0.74)	4.4	12.8	58.4	24.4	100.0(10,447)	132.852***
	남자	2.96(0.79)	5.8	15.5	55.2	23.5	100.0(5,443)	
	여자	3.09(0.68)	3.0	9.9	61.8	25.3	100.0(5,0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2(0.86)	6.9	15.2	47.4	30.5	100.0(2,934)	306.771***
	중학교	2.99(0.72)	4.2	13.9	60.8	21.1	100.0(3,625)	
	일반/특목/자율고	3.11(0.65)	2.5	8.8	64.2	24.5	100.0(3,172)	
	특성화고	2.90(0.69)	4.4	16.1	64.9	14.6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3.04(0.75)	4.7	12.3	57.4	25.6	100.0(4,564)	12.885*
	중소도시	3.01(0.73)	4.3	13.2	59.7	22.8	100.0(4,274)	
	읍면지역	3.03(0.74)	4.0	13.5	57.5	25.0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3(0.74)	4.4	12.6	58.4	24.6	100.0(9,423)	16.769
	한부모가정	2.97(0.75)	4.6	15.4	58.2	21.8	100.0(865)	
	조손가정	3.01(0.79)	5.0	15.6	53.1	26.3	100.0(97)	
	기타	2.80(0.86)	11.2	14.8	56.7	17.3	100.0(61)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3.14(0.73)	3.7	9.6	55.4	31.3	100.0(3,398)	163.561***
	중	2.99(0.74)	4.5	13.9	59.4	22.2	100.0(4,440)	
	하	2.93(0.74)	5.2	15.1	60.7	18.9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3.06(0.75)	4.4	12.2	56.0	27.3	100.0(5,378)	60.100***
	중	2.98(0.72)	4.3	13.8	61.4	20.4	100.0(3,740)	
	하	3.02(0.74)	4.8	12.4	59.2	23.6	100.0(1,321)	

* $p<.05$, ** $p<.01$, *** $p<.001$.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82.8%(그런 편이다 58.4%, 매우 그렇다 24.4%)의 아동·청소년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7.2%(전혀 그렇지 않다 4.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8%)의 아동·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87.1%)이 남학생(78.7%)보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특목/자율고(88.7%)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 이후로는 중학생(81.9%), 특성화고(79.5%), 초등학교(77.9%)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83%)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중소도시(82.5%)와 읍면 지역(82.5%)보다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더 동의하였다. 또한 학업성적이 상위권(86.7%)일수록 경제적 수준은 상(83.3%), 하(82.8%), 중(81.8%)의 순으로 ‘그렇다’에 더 동의하고 있었다.



【그림 III -1-11】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연도별 추이)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은 2013년 80.1%, 2014년 83.3%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5년 82.8%로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초등학생만 유일하게 2014년도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른 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13년 79.4%, ’14년 80.3%, ’15년 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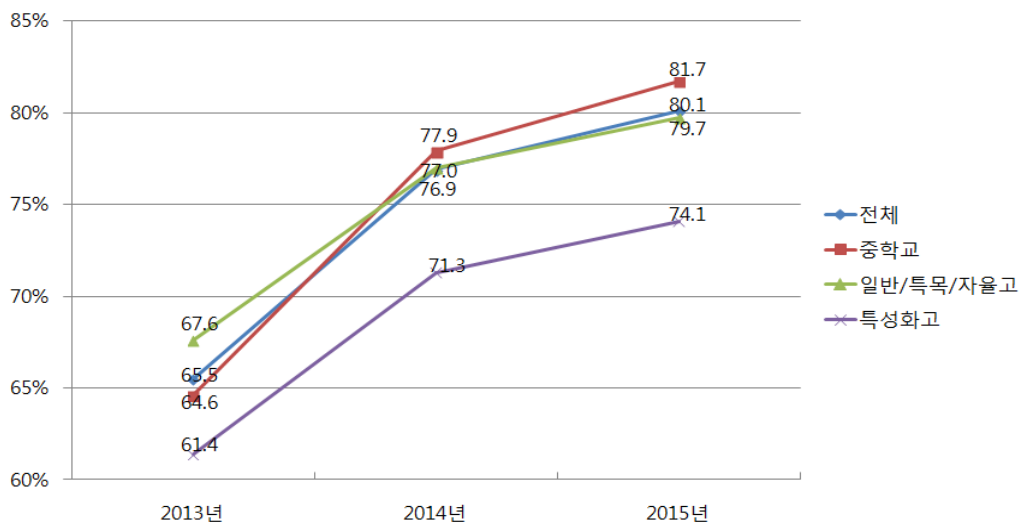
표 Ⅲ -1-12 인권인식_3) 청소년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1(0.69)	4.4	15.5	64.6	15.5	100.0(7,512)	-
성별	남자	2.85(0.74)	6.1	17.4	61.8	14.8	100.0(3,918)	81.714***
	여자	2.98(0.63)	2.6	13.4	67.6	16.3	100.0(3,594)	
학교 유형	중학교	2.95(0.68)	3.9	14.5	64.7	17.0	100.0(3,625)	47.669***
	일반/특목/자율고	2.91(0.70)	4.5	15.8	64.3	15.4	100.0(3,171)	
	특성화고	2.76(0.70)	6.9	19.1	65.4	8.7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2.90(0.72)	5.3	15.4	62.8	16.4	100.0(3,246)	33.607***
	중소도시	2.90(0.66)	3.8	16.3	66.4	13.5	100.0(3,028)	
	읍면지역	2.97(0.68)	3.6	13.7	64.7	18.1	100.0(1,2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2(0.69)	4.3	15.2	64.4	16.1	100.0(6,726)	34.190***
	한부모가정	2.82(0.67)	5.0	18.3	66.7	9.9	100.0(675)	
	조손가정	2.87(0.75)	7.0	13.9	64.1	15.0	100.0(57)	
	기타	2.63(0.85)	12.6	23.1	52.7	11.6	100.0(54)	
학업 성적	상	2.99(0.69)	3.5	14.2	62.5	19.8	100.0(2,070)	84.416***
	중	2.93(0.67)	3.9	14.5	65.8	15.8	100.0(3,107)	
	하	2.81(0.71)	6.0	17.8	64.8	11.4	100.0(2,330)	
경제적 수준	상	2.96(0.69)	3.9	14.4	63.5	18.3	100.0(3,377)	58.212***
	중	2.89(0.67)	4.3	15.4	67.1	13.2	100.0(2,925)	
	하	2.82(0.74)	6.4	18.6	61.5	13.4	100.0(1,209)	

* $p<.05$, ** $p<.01$, *** $p<.001$.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권상황에 대해 80.1%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64.6%, 매우 그렇다 15.5%)라고 응답하였고 19.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5%)로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76.6%)보다 여학생(83.9%)이, 그리고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81.7%), 일반/특목/자율고(79.7%), 특성화고(74.1%)의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79.9%), 대도시(79.2%), 읍면지역(82.8%)의 순으로 청소년의 의견 제시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 가족(80.5%), 조손가정(79.1%), 한부모가정(76.6%), 기타(64.3%)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상82.3%, 중81.6%, 하76.2%)과 경제적 수준(상81.8%, 중80.3%, 하74.9%)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의견이 도움이 된다는 것에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그림 III-1-12】 청소년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연도별 추이)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13년 65.5% → ’14년 76.9% → ’15년 80.1%). 교급별로는 중학생 응답률의 증가세가 큰 편인 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증가세는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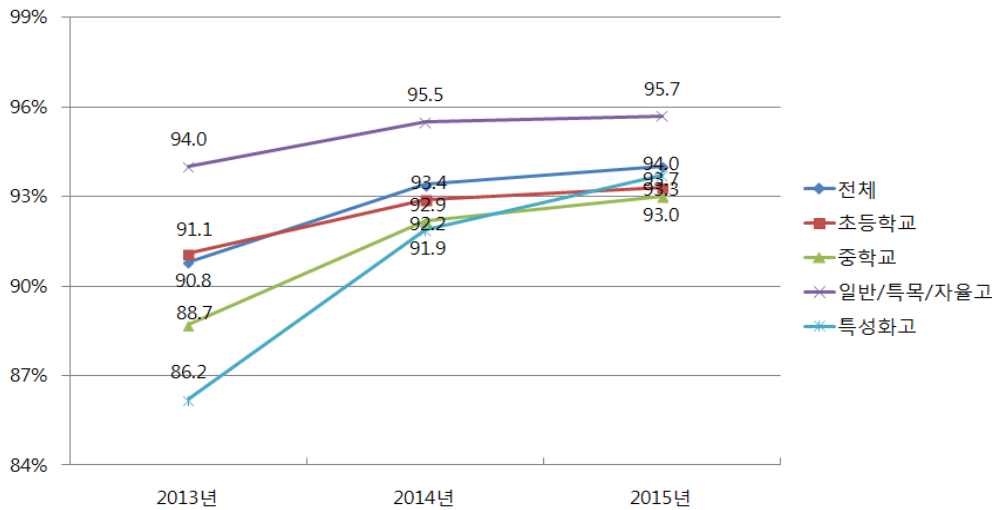
표 Ⅲ -1-13 인권인식_4)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40(0.67)	2.2	3.8	45.6	48.4	100.0(10,444)	—
성별	남자	3.33(0.72)	3.1	5.3	47.0	44.6	100.0(5,441)	146.796***
	여자	3.48(0.60)	1.1	2.3	44.2	52.4	100.0(5,0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3.49(0.71)	3.1	3.6	34.8	58.5	100.0(2,932)	249.562***
	중학교	3.34(0.67)	2.2	4.8	50.2	42.8	100.0(3,625)	
	일반/특목/자율고	3.42(0.62)	1.3	3.0	48.2	47.5	100.0(3,171)	
	특성화고	3.30(0.65)	2.3	4.0	55.1	38.6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3.42(0.67)	2.1	3.9	43.5	50.5	100.0(4,562)	16.044*
	중소도시	3.39(0.67)	2.2	3.8	47.4	46.7	100.0(4,273)	
	읍면지역	3.38(0.67)	2.3	3.8	47.0	46.9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1(0.66)	2.1	3.8	45.1	49.0	100.0(9,419)	41.789***
	한부모가정	3.34(0.68)	2.5	4.0	50.2	43.2	100.0(865)	
	조손가정	3.27(0.80)	5.5	5.2	45.9	43.4	100.0(98)	
	기타	3.02(0.86)	9.2	7.9	54.5	28.4	100.0(61)	
학업 성적	상	3.52(0.62)	1.5	2.4	38.2	57.8	100.0(3,397)	228.820***
	중	3.38(0.66)	2.0	4.1	47.7	46.2	100.0(4,440)	
	하	3.28(0.71)	3.2	5.3	52.0	39.5	100.0(2,576)	
경제적 수준	상	3.45(0.66)	2.1	3.2	42.2	52.5	100.0(5,375)	87.030***
	중	3.33(0.68)	2.4	4.5	50.3	42.8	100.0(3,740)	
	하	3.40(0.66)	1.8	4.2	46.5	47.4	100.0(1,321)	

* $p<.05$, ** $p<.01$, *** $p<.001$.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인권상황에 대해 94%(그런 편이다 45.6%, 매우 그렇다 48.4%)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전혀 그렇지 않다 2.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8%)의 아동·청소년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91.6%)보다는 여학생(96.6%)이, 학교유형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95.7%), 특성화고(93.7%), 초등학교(93.3%), 중학교(93%)의 순으로, 지역규모 별로는 중소도시(94.1%), 대도시(94.0%), 읍면지역(93.9%)의 순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권리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4.1%), 한부모가정(93.4%), 조손가정(89.3%), 기타(82.9%)의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상 96%, 중 93.9%, 하 91.5%) 해당 내용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수준별로는 상(94.7%), 하(93.9%), 중(9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1-13】 모든 사람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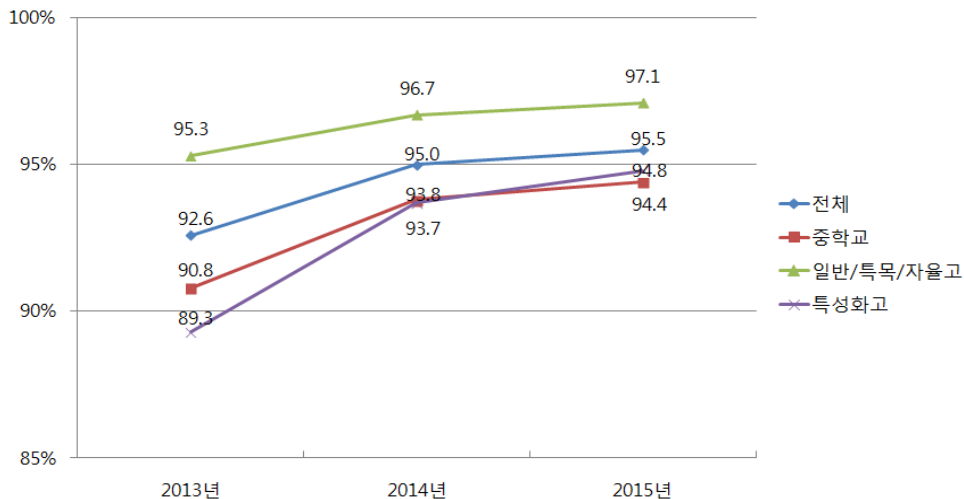
‘모든 사람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13년 90.8% → ‘14년 93.4% → ‘15년 94.0%). 모든 교급이 3개년 동안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우 타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3년 86.2% → ‘14년 91.9%).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34.6%, 매우 그렇다 60.9%) 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95.5%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로 응답한 아동·청소년 4.5%였다. 배경변인별로 나타난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남학생(93.4%)보다는 여학생(97.9%)이 ‘그렇다’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97.1%), 특성화고(94.8%), 중학교(94.4%)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95.9%), 읍면지역(95.4%), 대도시(95.2%) 순으로 가정형편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5.8%), 한부모가정(94.4%), 조손가정(93.7%), 기타(80.1%)의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상(97.4%), 중(95.5%), 하(94%)의 순으로,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96.5%), 상(95.7%), 중(95%)의 순으로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표 Ⅲ-1-14 인권인식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55(0.63)	1.6	2.9	34.6	60.9	100.0(7,512)	-
성별	남자	3.46(0.69)	2.3	4.3	38.2	55.2	100.0(3,918)	160.388***
	여자	3.64(0.55)	0.8	1.3	30.7	67.2	100.0(3,594)	
학교 유형	중학교	3.50(0.67)	2.0	3.6	36.9	57.5	100.0(3,624)	56.765***
	일반/특목/자율고	3.61(0.58)	0.9	2.0	32.0	65.1	100.0(3,172)	
	특성화고	3.52(0.67)	2.2	3.1	35.0	59.8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3.56(0.64)	1.9	2.9	32.8	62.4	100.0(3,245)	13.024*
	중소도시	3.54(0.62)	1.2	2.9	36.6	59.3	100.0(3,028)	
	읍면지역	3.55(0.64)	1.7	2.9	34.5	60.9	100.0(1,2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6(0.63)	1.5	2.7	34.4	61.4	100.0(6,726)	65.752***
	한부모가정	3.52(0.65)	1.4	4.1	35.2	59.2	100.0(674)	
	조손가정	3.36(0.65)	1.6	4.7	49.6	44.1	100.0(57)	
	기타	3.05(1.00)	13.1	6.7	41.7	38.4	100.0(54)	
학업 성적	상	3.63(0.57)	0.8	1.8	31.2	66.2	100.0(2,069)	59.578***
	중	3.55(0.63)	1.6	2.9	34.7	60.8	100.0(3,108)	
	하	3.48(0.68)	2.2	3.9	37.6	56.4	100.0(2,330)	
경제적 수준	상	3.55(0.63)	1.5	2.8	34.4	61.3	100.0(3,377)	27.028***
	중	3.51(0.65)	1.7	3.3	36.8	58.2	100.0(2,924)	
	하	3.62(0.60)	1.4	2.0	30.0	66.5	100.0(1,209)	

* $p<.05$, ** $p<.01$, *** $p<.001$.

【그림 Ⅲ-1-14】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연도별 추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율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3년 92.6% → ’14년 95.0% → ’15년 95.5%). 모든 교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13년 89.3% → ’14년 93.7% → ’15년 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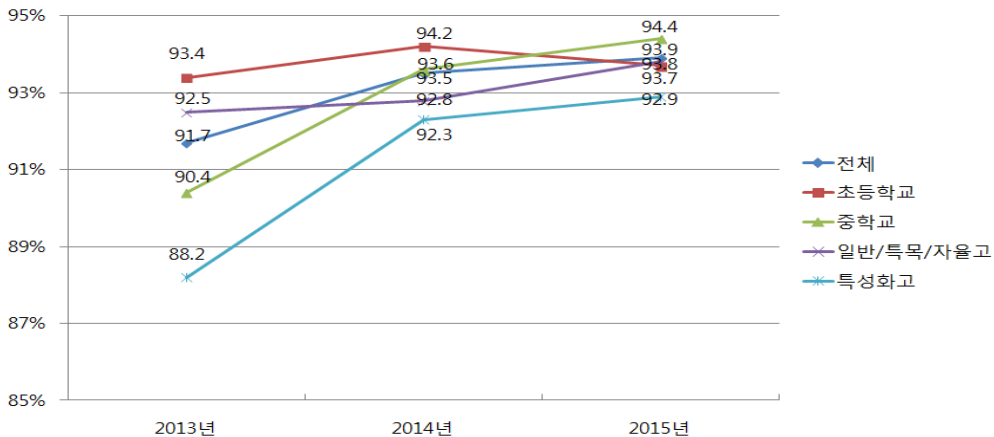
표 III -1-15 인권인식_6)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51(0.67)	2.0	4.1	34.5	59.4	100.0(10,437)	-
성별	남자	3.43(0.72)	2.9	5.4	37.8	53.9	100.0(5,436)	182.612***
	여자	3.61(0.60)	1.1	2.6	31.0	65.3	100.0(5,001)	
학교 유형	초등학교	3.59(0.69)	2.7	3.6	25.8	67.9	100.0(2,932)	157.616***
	중학교	3.49(0.65)	1.5	4.1	38.0	56.4	100.0(3,624)	
	일반/특목/자율고	3.48(0.67)	1.9	4.2	37.6	56.2	100.0(3,165)	
	특성화고	3.44(0.68)	1.9	5.2	39.4	53.5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3.53(0.68)	2.2	4.0	32.8	61.0	100.0(4,563)	17.703**
	중소도시	3.50(0.66)	1.8	4.1	36.7	57.4	100.0(4,265)	
	읍면지역	3.52(0.68)	2.1	4.2	33.8	60.0	100.0(1,60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2(0.66)	1.9	3.9	34.3	59.8	100.0(9,416)	52.905***
	한부모가정	3.48(0.70)	2.3	5.3	34.9	57.5	100.0(862)	
	조손가정	3.36(0.76)	3.4	6.6	40.9	49.0	100.0(98)	
	기타	3.01(0.94)	11.2	9.2	46.7	32.9	100.0(61)	
학업 성적	상	3.61(0.63)	1.6	3.2	27.9	67.3	100.0(3,396)	158.642***
	중	3.50(0.66)	1.8	4.0	36.3	57.8	100.0(4,436)	
	하	3.41(0.71)	2.7	5.2	40.3	51.8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3.56(0.66)	1.9	3.4	31.5	63.1	100.0(5,371)	74.683***
	중	3.45(0.69)	2.1	4.8	38.8	54.3	100.0(3,740)	
	하	3.50(0.68)	2.0	4.7	34.6	58.7	100.0(1,318)	

* $p < .05$, ** $p < .01$, *** $p < .001$.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93.9%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34.5%, 매우 그렇다 59.4%)에 응답하였고, 6.1%의 아동·청소년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0%, 그렇지 않다 4.1%)라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91.7%)보다는 여학생(96.3%)이 남녀평등에 관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94.4%), 일반/특목/자율고 학생(93.8%), 초등학생(93.7%), 특성화고 학생(92.9%)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94.1%), 대도시(93.8%), 읍면지역(93.8%)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4.1%), 한부모가정(92.4%), 조손가정(89.9%), 기타(79.6%)의 순으로, 학업성적(상95.2%, 중94.1%,

하(92.1%)이 높을수록 ‘그렇다’에 대해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94.6%), 하(93.3%), 중(93.1%)의 순으로 남녀평등에 관한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I -1-15】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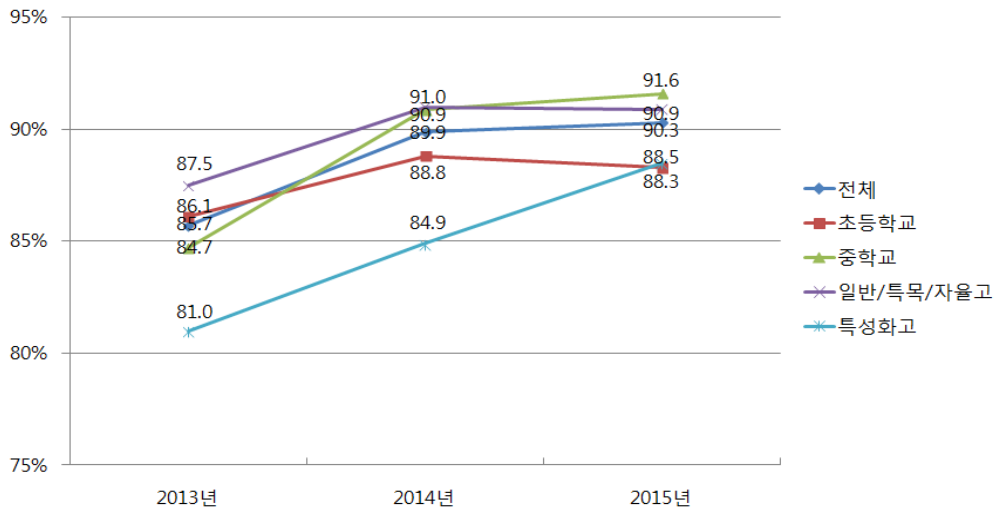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율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3년 91.7% → ’14년 93.5% → ’15년 93.9%). 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반/특목/자율고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만 2014년에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5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양성평등 의식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우 2013년도에서 2014년 사이의 증가폭이 큰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에 대해 90.3%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40.3%, 매우 그렇다 50%)라고 응답하였으며 9.7%의 아동·청소년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 그렇지 않은 편이다 6.3%)라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자(88.7%)보다는 여자(91.9%)가 타민족 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91.6%), 일반/특목/자율고(90.9%), 특성화고(88.5%), 초등학교(88.3%)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90.5%), 대도시(90.3%), 읍면지역(89.4%)의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95.5%), 양부모가정(90.5%), 한부모가정(87.8%), 기타(75.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상위권(92.1%)에 속한 아동·청소년과 경제적 수준(90.8%)이 상위권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해당 인권 상황에 대해 ‘그렇다’에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7(0.75)	3.4	6.3	40.3	50.0	100.0(10,432)	-
성별	남자	3.31(0.78)	4.3	7.0	41.8	46.9	100.0(5,435)	61.125***
	여자	3.43(0.71)	2.4	5.6	38.6	53.3	100.0(4,996)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9(0.80)	4.3	7.4	32.8	55.5	100.0(2,927)	110.356***
	중학교	3.38(0.72)	2.9	5.5	42.7	48.9	100.0(3,625)	
	일반/특목/자율고	3.36(0.73)	2.9	6.1	43.2	47.7	100.0(3,164)	
	특성화고	3.27(0.77)	4.2	7.3	45.7	42.8	100.0(715)	
지역 규모	대도시	3.38(0.76)	3.6	6.1	38.7	51.7	100.0(4,558)	13.798*
	중소도시	3.36(0.74)	3.0	6.5	41.6	48.9	100.0(4,264)	
	읍면지역	3.34(0.77)	3.8	6.7	41.5	48.0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8(0.74)	3.2	6.2	40.2	50.4	100.0(9,412)	35.041***
	한부모가정	3.31(0.80)	4.6	7.6	40.2	47.6	100.0(860)	
	조손가정	3.39(0.65)	2.3	2.2	49.7	45.8	100.0(98)	
	기타	2.96(0.95)	11.2	13.3	44.0	31.5	100.0(61)	
학업 성적	상	3.48(0.72)	2.7	5.2	33.5	58.6	100.0(3,394)	182.733***
	중	3.35(0.74)	3.2	6.0	42.9	47.9	100.0(4,435)	
	하	3.25(0.79)	4.4	8.4	44.8	42.3	100.0(2,572)	
경제적 수준	상	3.41(0.75)	3.4	5.8	37.7	53.1	100.0(5,367)	46.524***
	중	3.33(0.75)	3.3	7.0	43.4	46.2	100.0(3,737)	
	하	3.34(0.76)	3.7	6.4	41.9	48.0	100.0(1,320)	

* $p<.05$, ** $p<.01$, *** $p<.001$.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도 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2014년 소폭 증가했다가 2015년에 다시 미세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학생과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16】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도 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3) 인권교육

① 인권교육 경험

표 Ⅲ-1-17 인권교육 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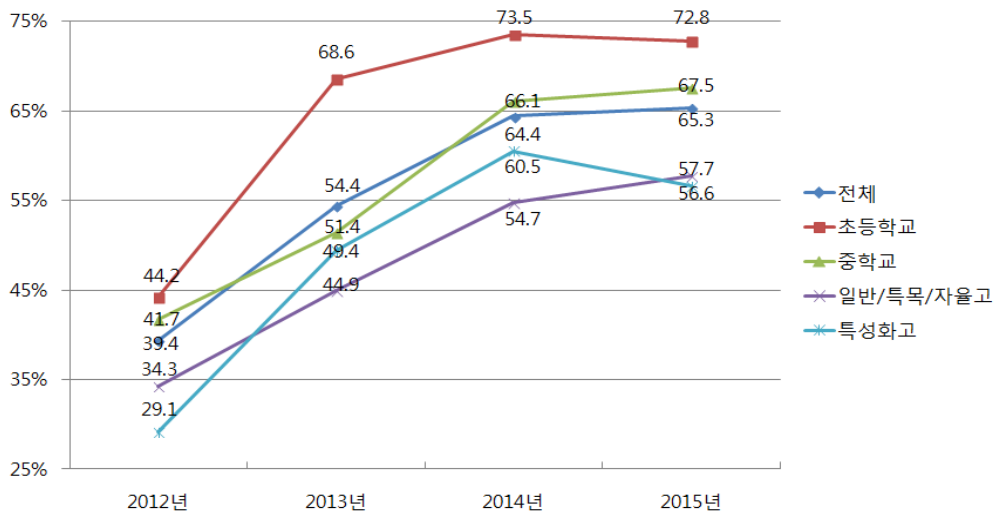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교육 받은 적 없음	전체(N)	χ^2
전체		14.1	17.2	15.9	5.1	13.0	34.7	100.0(10,445)	-
성별	남자	13.0	15.8	14.9	4.6	12.2	39.5	100.0(5,446)	115.657***
	여자	15.3	18.8	17.1	5.5	13.8	29.5	100.0(4,999)	
학교 유형	초등학교	11.2	13.5	17.4	9.1	21.6	27.3	100.0(2,935)	648.698***
	중학교	13.5	19.2	18.2	4.3	12.3	32.4	100.0(3,627)	
	일반/특목/자율고	17.1	18.2	12.6	2.6	7.2	42.2	100.0(3,167)	
	특성화고	16.0	18.3	13.0	2.7	6.6	43.4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14.9	16.5	15.1	4.6	14.0	34.9	100.0(4,566)	43.346***
	중소도시	12.7	18.2	16.9	6.0	12.5	33.7	100.0(4,270)	
	읍면지역	15.8	16.6	15.6	3.8	11.5	36.7	100.0(1,60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4.0	17.3	15.9	5.1	13.3	34.4	100.0(9,421)	23.175
	한부모가정	14.4	18.3	15.7	4.2	9.2	38.2	100.0(864)	
	조손가정	17.3	11.7	16.2	6.2	14.9	33.8	100.0(98)	
	기타	20.4	8.3	17.0	5.0	13.6	35.7	100.0(61)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교육 받은 적이 없음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13.3	17.7	16.0	6.9	15.7	30.3	100.0(3,400)	270.706***
	중	14.8	17.3	15.9	4.6	12.6	34.8	100.0(4,440)	
	하	14.1	16.6	15.7	3.5	9.8	40.3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13.2	16.7	17.1	6.3	15.0	31.8	100.0(5,376)	134.152***
	중	14.8	18.1	15.2	4.3	11.1	36.5	100.0(3,742)	
	하	16.2	17.1	12.9	2.3	9.9	41.5	100.0(1,319)	

* $p<.05$, ** $p<.01$, *** $p<.001$.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65.3%로 나타났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은 34.7%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인권교육을 1회 이상 받은 경험은 초등학교(72.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생(67.6%), 일반/특목/자율고 학생(57.8%), 특성화고(56.6%)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보다 인권교육 경험 정도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 규모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소도시의 아동·청소년이 1회 이상 교육받은 경험이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대도시(65.1%), 읍면지역(63.3%)의 순으로 경험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I-1-17】 인권교육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률’ 전체값을 보면 2012년(39.4%)에서 2013년(54.4%)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학생과 일반/특목/자율고 등학생의 경우 유사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과 특성화고등학생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4년 60.5%에서 2015년 56.6%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권교육 경험이 줄어들었다.

② 인권교육 받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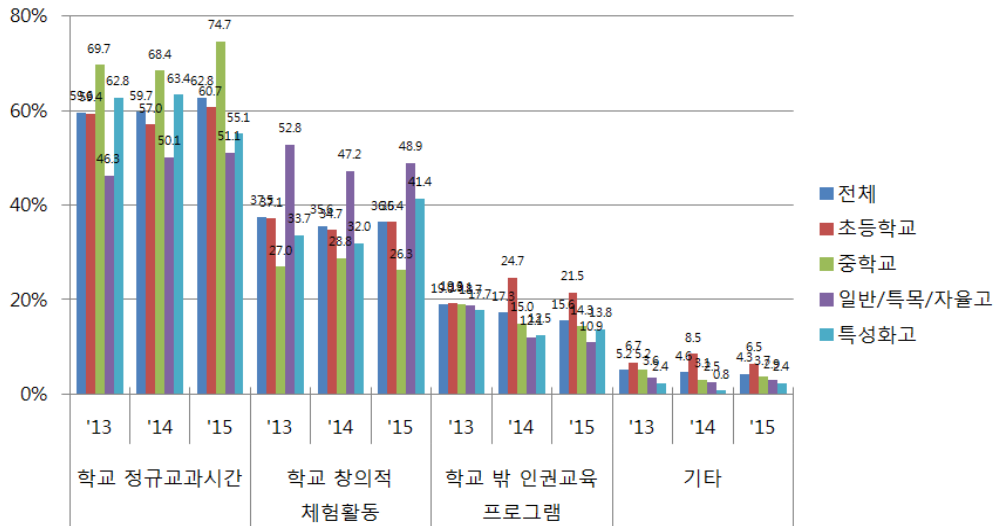
표 Ⅲ-1-18 인권교육 경험 장소

(단위 : %(명))

구분		학교 정규 교과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전체(N)
전체		62.8	36.5	15.6	4.3	100.0(6,739)
성별	남자	62.3	34.8	15.7	3.5	100.0(3,253)
	여자	63.3	37.9	15.5	5.0	100.0(3,486)
학교 유형	초등학교	60.7	36.4	21.5	6.5	100.0(2,101)
	중학교	74.7	26.3	14.3	3.7	100.0(2,424)
	일반/특목/자율고	51.1	48.9	10.9	2.9	100.0(1,812)
	특성화고	55.1	41.4	13.8	2.4	100.0(402)
지역 규모	대도시	62.7	36.7	15.8	4.5	100.0(2,937)
	중소도시	61.7	38.5	14.8	4.3	100.0(2,792)
	읍면지역	66.3	30.0	17.1	3.6	100.0(1,0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3.2	36.6	15.6	4.2	100.0(6,115)
	한부모가정	59.5	35.8	14.8	5.1	100.0(524)
	조손가정	54.2	30.1	22.2	4.1	100.0(65)
	기타	59.7	23.5	9.4	10.1	100.0(36)
학업 성적	상	63.8	37.4	17.6	4.9	100.0(2,346)
	중	62.4	36.9	14.5	4.1	100.0(2,861)
	하	61.9	34.2	14.6	3.6	100.0(1,515)
경제적 수준	상	63.4	35.8	16.8	4.6	100.0(3,624)
	중	62.7	36.4	14.2	4.1	100.0(2,351)
	하	60.5	39.6	14.1	3.4	100.0(758)

인권교육을 경험한 장소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학교 정규교과시간은 62.8%,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36.5%,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는 15.6%, 기타는 4.3%로 나타났다. 학교 밖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한 정도보다 학교 안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더 많게 나타났다. 초등학생(60.7%), 중학생(74.7%), 일반/특목/자율고(51.1%), 특성화고(55.1%) 모두 학교 정규교과시간에 인권교육을 경험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경험한 학교 유형은 초등학교(21.5%)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1-18】 인권교육 경험 장소(연도별 추이)

학교 정규교과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는데('13년 59.6% → '14년 59.7% → '15년 62.8%), 일반/특목/자율고가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특성화고등학교는 감소경향을 보였다('13년 62.8% → '15년 55.1%).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는 2014년도에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미세하게 증가하였다('13년 37.5% → '14년 35.6% → '15년 36.5%).

③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움이 된다'(도움이 되는 편이다 59.6%, 매우 도움이 된다 11%)로 응답한 비율은 70.6%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7%,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23.7%)로 응답한 비율은 29.4%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비율이 남학생(68.8%)보다는 여학생(72.2%)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에서는 초등학교생이 87.5%으로 가장 높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초등학교생은 인권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다른 교급에 비해 인권교육의 경험률도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가족(71%)의 아동·청소년들이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학업성적

(75.5%)과 경제적인 수준(75.6%)이 높을수록 인권교육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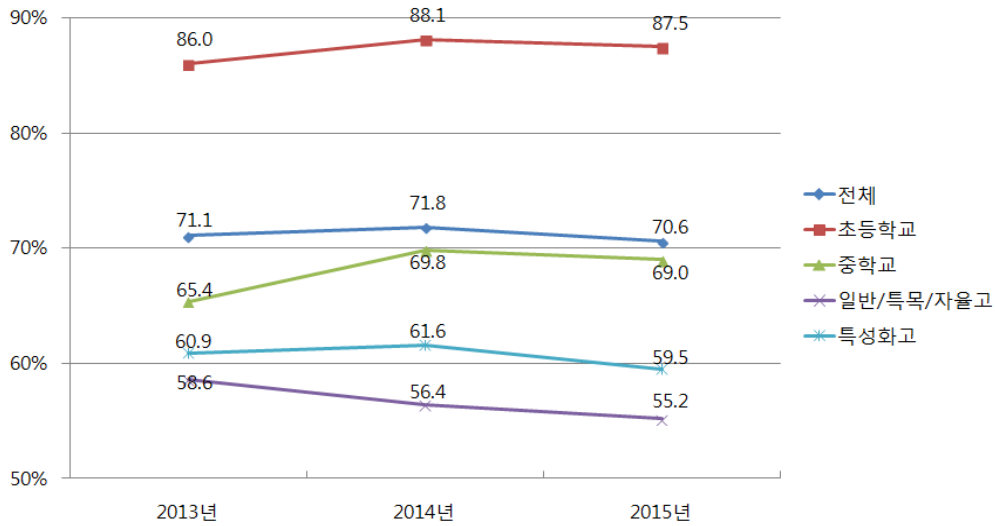
표 Ⅲ-1-19 인권교육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SD)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도움이 된다	전체(N)	χ^2
전체		2.76(0.72)	5.7	23.7	59.6	11.0	100.0(6,530)	-
성별	남자	2.72(0.76)	7.7	23.5	57.4	11.4	100.0(3,174)	52.573***
	여자	2.79(0.67)	3.7	24.0	61.6	10.6	100.0(3,356)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0(0.65)	2.1	10.3	62.5	25.0	100.0(2,047)	927.454***
	중학교	2.69(0.67)	5.8	25.2	63.1	5.9	100.0(2,355)	
	일반/특목/자율고	2.49(0.71)	9.2	35.6	51.9	3.3	100.0(1,744)	
	특성화고	2.54(0.67)	7.9	32.5	57.5	2.0	100.0(384)	
지역 규모	대도시	2.78(0.73)	5.8	22.8	58.8	12.7	100.0(2,863)	20.471**
	중소도시	2.73(0.71)	5.7	25.2	59.2	9.9	100.0(2,695)	
	읍면지역	2.76(0.69)	5.5	22.4	63.0	9.1	100.0(97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7(0.72)	5.5	23.5	59.7	11.3	100.0(5,920)	17.190*
	한부모가정	2.67(0.71)	7.1	25.7	59.8	7.4	100.0(514)	
	조손가정	2.75(0.81)	6.9	27.3	50.0	15.8	100.0(61)	
	기타	2.50(0.72)	9.7	32.9	54.6	2.8	100.0(36)	
학업 성적	상	2.87(0.72)	4.2	20.3	59.8	15.7	100.0(2,296)	198.624***
	중	2.77(0.68)	4.7	22.9	62.5	9.8	100.0(2,755)	
	하	2.55(0.75)	9.8	30.6	54.0	5.6	100.0(1,465)	
경제적 수준	상	2.86(0.71)	4.7	19.7	61.0	14.6	100.0(3,508)	222.046***
	중	2.70(0.70)	6.2	25.5	60.4	7.9	100.0(2,270)	
	하	2.48(0.70)	8.7	37.5	50.8	3.1	100.0(747)	

* $p<.05$, ** $p<.01$, *** $p<.001$.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3개년간 71% 전후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2015년 들어 일반/특목/자율고등학생과 특성화고등학생들은 인권교육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9】 인권교육 도움 정도(연도별 추이)

2) 일반원칙

(1) 차별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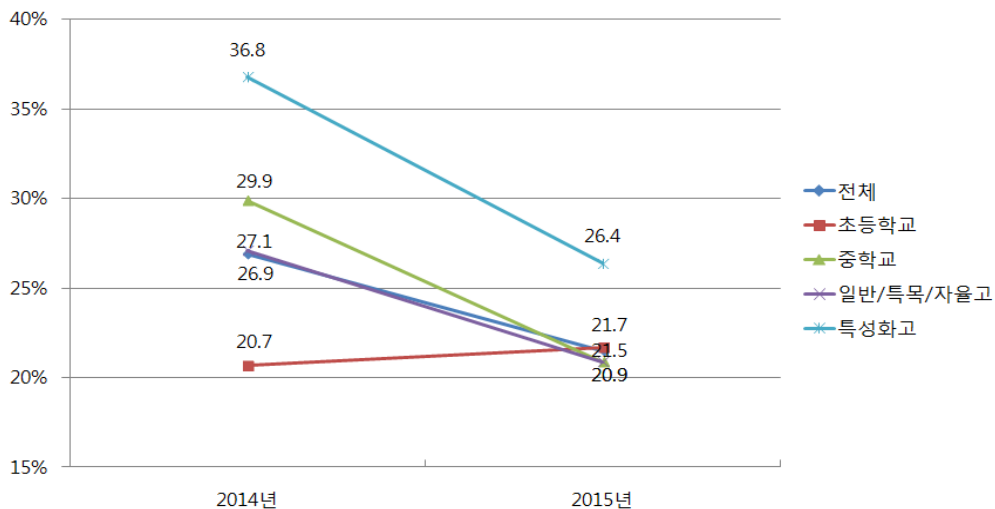
① 차별해 본 경험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성차별 가해 경험 비율은 21.5%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수치를 살펴보면 먼저 남학생(20.3%)보다는 여학생(22.9%)의 성차별 가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 학생(26.4%)들에게서 1년에 1회 이상 성차별 가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생(21.7%), 중학생(20.9%), 일반/특목/자율고(20.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 부모 가정(24.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22.5%), 양부모가정(21.3%), 조손가정(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하 26.5%, 중 21.7%, 상 20.2%)이 낮을수록 성차별에 대해 가해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1-20 차별해 본 경험_1)_성차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8.5	15.6	4.1	1.1	0.7	21.5	100.0(10,450)	-
성별	남자	79.7	13.5	4.3	1.3	1.2	20.3	100.0(5,447)	71.682***
	여자	77.2	17.9	3.9	0.9	0.2	22.9	100.0(5,0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78.3	14.3	4.6	1.6	1.2	21.7	100.0(2,935)	46.740***
	중학교	79.1	15.7	3.9	1.0	0.3	20.9	100.0(3,626)	
	일반/특목/자율고	79.0	15.8	3.7	0.7	0.7	20.9	100.0(3,173)	
	특성화고	73.7	19.4	5.4	1.0	0.6	26.4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78.6	15.8	3.8	1.1	0.7	21.4	100.0(4,566)	4.632
	중소도시	78.7	15.3	4.1	1.1	0.8	21.3	100.0(4,274)	
	읍면지역	77.6	16.0	4.8	1.1	0.5	22.4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8.6	15.3	4.2	1.1	0.7	21.3	100.0(9,426)	21.086*
	한부모가정	75.5	19.2	4.0	0.9	0.4	24.5	100.0(865)	
	조손가정	89.9	6.8	2.2	0.0	1.1	10.1	100.0(98)	
	기타	77.5	19.2	1.7	1.6	0.0	22.5	100.0(61)	
학업 성적	상	79.3	14.9	4.1	1.0	0.6	20.6	100.0(3,399)	12.017
	중	79.0	15.3	4.0	0.9	0.7	20.9	100.0(4,445)	
	하	76.5	16.9	4.2	1.5	0.8	23.4	100.0(2,576)	
경제적 수준	상	79.8	14.8	3.5	1.2	0.7	20.2	100.0(5,379)	41.610***
	중	78.3	15.5	4.3	1.0	0.9	21.7	100.0(3,742)	
	하	73.4	19.0	6.2	0.8	0.5	26.5	100.0(1,322)	

* $p<.05$, ** $p<.01$, *** $p<.001$.

【그림 Ⅲ-1-20】 차별해 본 경험_성차별(연도별 추이)

최근 1년 동안 성차별을 해본 경우는 2014년 26.9%에서 2015년 21.5%로 감소하였다.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교급이 성차별을 해본 경험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은 2014년 20.7%에서 2015년 21.7%로 성차별 경험이 증가하였다.

표 III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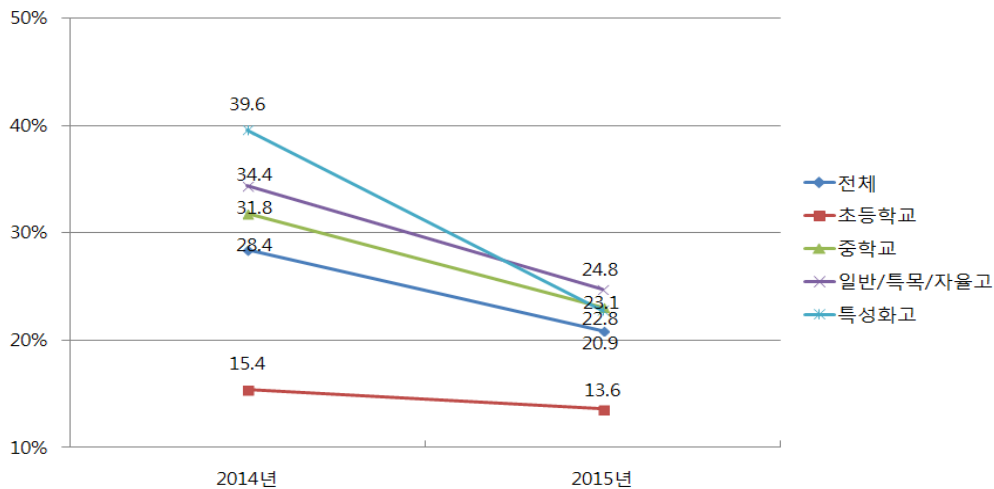
차별해 본 경험_2)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9.1	13.3	5.3	1.5	0.8	20.9	100.0(10,452)	-
성별	남자	77.7	13.0	6.5	1.9	1.0	22.4	100.0(5,448)	53.468***
	여자	80.8	13.6	3.9	1.1	0.6	19.2	100.0(5,0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86.4	9.3	2.7	1.0	0.6	13.6	100.0(2,935)	146.278***
	중학교	77.0	14.5	6.1	1.6	0.9	23.1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75.3	15.6	6.3	1.9	1.0	24.8	100.0(3,173)	
	특성화고	77.2	13.5	7.2	1.8	0.3	22.8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78.1	13.7	5.7	1.8	0.8	22.0	100.0(4,568)	10.348
	중소도시	80.2	12.9	4.8	1.2	0.8	19.7	100.0(4,274)	
	읍면지역	79.3	13.2	5.3	1.6	0.7	20.8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9.4	13.1	5.2	1.6	0.7	20.6	100.0(9,428)	19.944
	한부모가정	76.9	14.3	6.4	1.0	1.4	23.1	100.0(865)	
	조손가정	72.9	20.6	3.1	1.1	2.4	27.2	100.0(98)	
	기타	78.7	16.3	5.0	0.0	0.0	21.3	100.0(61)	
학업 성적	상	82.3	12.3	4.1	1.1	0.2	17.7	100.0(3,400)	164.699***
	중	80.9	12.8	4.4	1.2	0.7	19.1	100.0(4,444)	
	하	72.0	15.4	8.2	2.7	1.7	28.0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81.2	12.3	4.7	1.3	0.6	18.9	100.0(5,379)	60.349***
	중	78.3	14.1	5.1	1.5	1.0	21.7	100.0(3,744)	
	하	73.1	15.2	8.1	2.6	0.9	26.8	100.0(1,322)	

* $p<0.05$, ** $p<0.01$, *** $p<0.001$.

지난 1년간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회 이상 경험한 수치가 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는 여학생(19.2%)보다는 남학생(22.4%)들이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24.8%)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23.1%), 특성화고(22.8%), 초등학교(13.6%)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하28%, 중19.1%, 상17.7%)로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높은 차별 경험을 보이고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하26.8%, 중21.7%, 상18.9%)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에 대해 차별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21】 차별해 본 경험_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연도별 추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은 2014년 28.4%에서 2015년 20.9%로 줄어들었다. 모든 교급의 차별 경험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2014년도에 특성화고등학생의 차별경험률이 높았던 것에 비해 2015년의 감소폭도 큰 편임을 볼 수 있다.

표 Ⅲ-1-22 차별해 본 경험_3) 연령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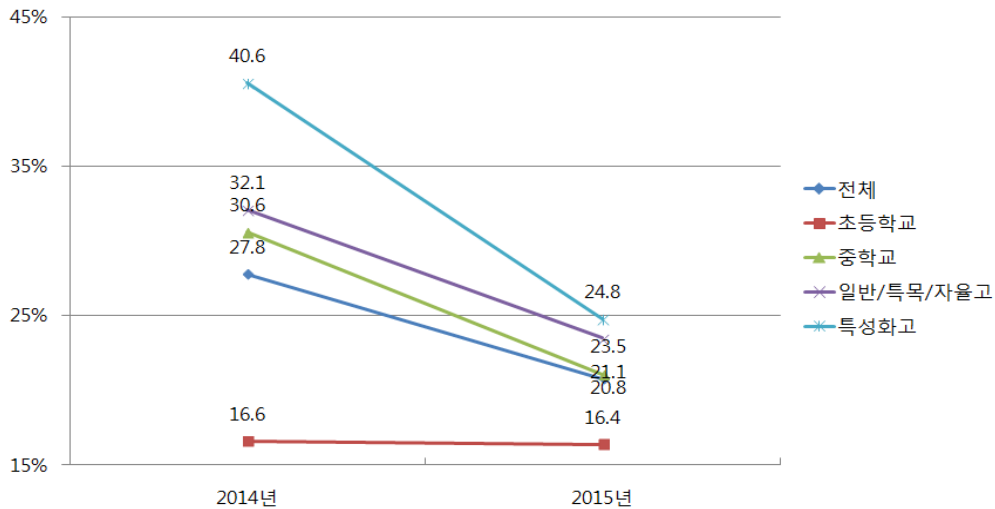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9.2	14.2	4.9	1.1	0.6	20.8	100.0(10,451)	-
성별	남자	81.0	11.9	5.1	1.1	0.8	18.9	100.0(5,447)	65.493***
	여자	77.2	16.8	4.7	1.0	0.2	22.7	100.0(5,0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83.5	11.5	3.6	0.7	0.6	16.4	100.0(2,935)	60.943***
	중학교	78.9	14.5	5.0	1.1	0.5	21.1	100.0(3,627)	
	일반/특목/자율고	76.5	16.0	5.7	1.2	0.6	23.5	100.0(3,173)	
	특성화고	75.3	16.1	6.9	1.5	0.3	24.8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78.7	14.8	5.1	1.0	0.5	21.4	100.0(4,567)	5.102
	중소도시	79.5	13.9	4.8	1.1	0.7	20.5	100.0(4,274)	
	읍면지역	79.8	13.5	5.1	1.1	0.4	20.1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9.3	14.2	4.8	1.1	0.6	20.7	100.0(9,426)	8.070
	한부모가정	77.6	14.8	6.1	0.8	0.7	22.4	100.0(865)	
	조손가정	84.9	11.1	2.9	1.1	0.0	15.1	100.0(98)	
	기타	82.6	11.2	6.2	0.0	0.0	17.4	100.0(61)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80.0	14.3	4.6	0.8	0.3	20.0	100.0(3,400)	35.778***
	중	80.3	13.5	4.8	0.8	0.6	19.7	100.0(4,444)	
	하	76.3	15.4	5.7	1.7	0.9	23.7	100.0(2,576)	
경제적 수준	상	80.4	13.8	4.4	0.9	0.6	19.7	100.0(5,379)	37.959***
	중	79.4	14.1	5.0	1.0	0.4	20.5	100.0(3,744)	
	하	73.8	16.5	7.0	1.8	0.9	26.2	100.0(1,321)	

* $p<.05$, *** $p<.001$.

연령에 대해 차별한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1년 동안 차별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수치는 79.2%로 나타났고 1회 이상 차별한 경험은 20.8%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18.9%) 보다는 여자(22.7%)에게서 차별한 경험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24.8%) 학생들이 연령에 관해 차별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23.5%), 중학교(21.1%), 초등학교(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별로는 하(23.7%), 상(20%), 중(19.7%)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26.2%), 중(20.5%), 상(19.7%)의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I -1-22】 차별해 본 경험_연령차별(연도별 추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은 2014년 27.8%에서 2015년 20.8%로 줄어들었다. 모든 교급의 차별경험률이 줄었는데 특히 2014년도 특성화고등학생의 차별경험률이 매우 높았던 것에

비해 감소율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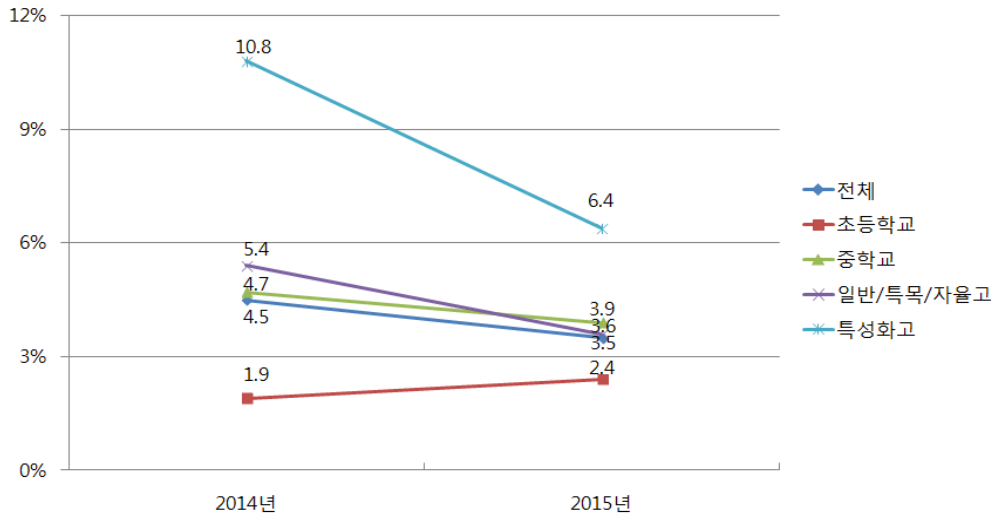
표 Ⅲ-1-23 차별해 본 경험_4)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6.5	2.4	0.7	0.3	0.1	3.5	100.0(10,451)	-
성별	남자	95.7	2.7	1.0	0.3	0.3	4.3	100.0(5,447)	26.766***
	여자	97.2	2.1	0.4	0.2	0.0	2.7	100.0(5,0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97.6	1.6	0.5	0.2	0.1	2.4	100.0(2,935)	38.735***
	중학교	96.2	2.5	0.9	0.3	0.2	3.9	100.0(3,629)	
	일반/특목/자율고	96.4	2.5	0.7	0.3	0.1	3.6	100.0(3,171)	
	특성화고	93.5	5.0	1.1	0.1	0.2	6.4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96.4	2.5	0.7	0.3	0.1	3.6	100.0(4,568)	10.764
	중소도시	96.3	2.6	0.8	0.1	0.2	3.7	100.0(4,273)	
	읍면지역	97.2	1.6	0.6	0.4	0.1	2.7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6	2.3	0.7	0.2	0.1	3.3	100.0(9,427)	12.210
	한부모가정	95.0	3.3	0.9	0.5	0.3	5.0	100.0(865)	
	조손가정	94.6	4.3	1.1	0.0	0.0	5.4	100.0(98)	
	기타	95.5	2.4	2.1	0.0	0.0	4.5	100.0(61)	
학업 성적	상	97.2	2.0	0.5	0.1	0.2	2.8	100.0(3,398)	31.028***
	중	96.8	2.0	0.8	0.2	0.1	3.1	100.0(4,445)	
	하	94.9	3.6	0.9	0.5	0.2	5.2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97.3	1.9	0.5	0.2	0.2	2.8	100.0(5,380)	56.571***
	중	96.3	2.6	0.7	0.3	0.1	3.7	100.0(3,742)	
	하	93.3	4.2	1.8	0.5	0.2	6.7	100.0(1,322)	

*** $p<.001$.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해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비율은 96.5%였고 1회 이상 차별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여학생(2.7%) 보다는 남학생(4.3%)에게서 차별 가해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6.4%)가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3.9%), 일반/특목/자율고(3.6%), 초등학교(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위권(5.2%)에 속한 응답자가 중위권(3.1%), 상위권(2.8%)에 비해 높은 차별 가해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위권(6.7%)에 속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3.7%), 상(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23】 차별해 본 경험_가정형편(연도별 추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2014년 4.5%에서 2015년 3.5%로 줄어들었다. 교급별 상황을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줄어든 반면 초등학생은 2014년 1.9%에서 2015년 2.4%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 10.8%라는 높은 차별경험을 보인 특성화고등학생들은 다른 교급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큰 폭으로 차별경험률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15년 6.4%).

표 Ⅲ-1-24 차별해 본 경험_5) 지역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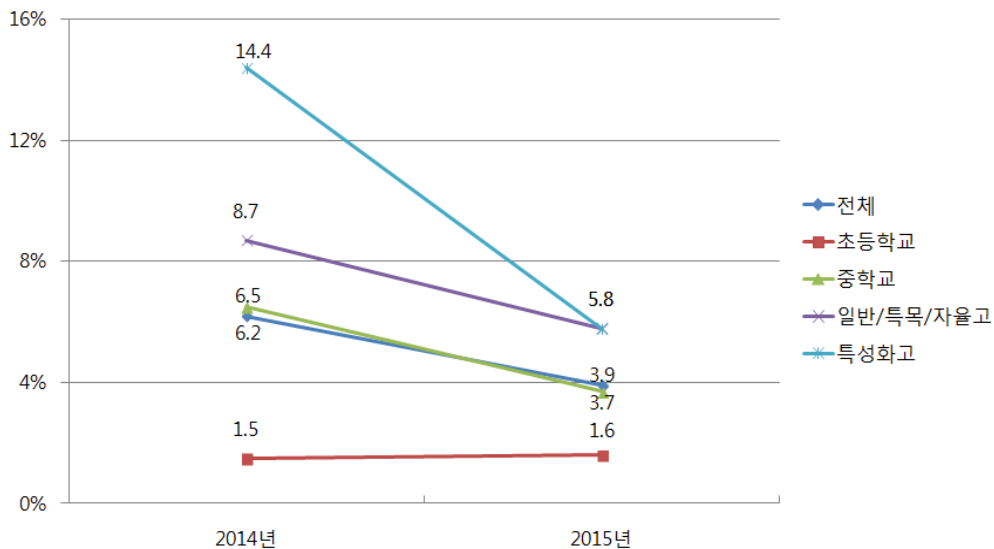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6.1	2.5	0.8	0.3	0.3	3.9	100.0(10,453)	—
성별	남자	95.0	2.9	1.2	0.4	0.5	5.0	100.0(5,448)	57.552***
	여자	97.3	2.1	0.4	0.2	0.0	2.7	100.0(5,0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4	1.0	0.3	0.1	0.2	1.6	100.0(2,935)	86.705***
	중학교	96.3	2.4	0.9	0.2	0.2	3.7	100.0(3,629)	
	일반/특목/자율고	94.1	3.8	1.2	0.4	0.4	5.8	100.0(3,173)	
	특성화고	94.1	3.9	1.1	0.4	0.4	5.8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96.5	2.2	0.8	0.3	0.2	3.5	100.0(4,568)	9.133
	중소도시	96.0	2.6	0.8	0.2	0.3	3.9	100.0(4,275)	
	읍면지역	95.2	3.1	1.0	0.3	0.3	4.7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2	2.5	0.8	0.3	0.2	3.8	100.0(9,428)	20.686
	한부모가정	95.4	2.4	1.1	0.2	0.9	4.6	100.0(865)	
	조손가정	96.7	3.3	0.0	0.0	0.0	3.3	100.0(98)	
	기타	92.0	4.3	3.6	0.0	0.0	7.9	100.0(61)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97.3	1.8	0.6	0.2	0.2	2.8	100.0(3,400)	35.400***
	중	96.2	2.3	0.9	0.3	0.3	3.8	100.0(4,445)	
	하	94.4	3.8	1.2	0.4	0.3	5.7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96.9	2.0	0.6	0.2	0.3	3.1	100.0(5,380)	26.620***
	중	95.6	2.9	0.9	0.3	0.2	4.3	100.0(3,744)	
	하	94.3	3.4	1.6	0.4	0.2	5.6	100.0(1,322)	

* $p<.05$, ** $p<.01$, *** $p<.001$.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경험에 대해 질문 한 결과 중 1년에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비율을 합친 결과는 3.9%였다. 먼저 여학생(2.7%)보다는 남학생(5%)이 비교적 차별을 한 경험이 많고 학교유형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5.8%)와 특성화고(5.8%)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3.7%), 초등학교(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5.7%)에 속한 응답자들이 중(3.8%), 상(2.8%)에 속한 아동·청소년보다 비교적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위권(5.6%)의 비율이 중(4.3%), 상(3.1%)보다 비교적 지역차별을 한 경험이 많았다.



【그림 Ⅲ-1-24】 차별해 본 경험_지역(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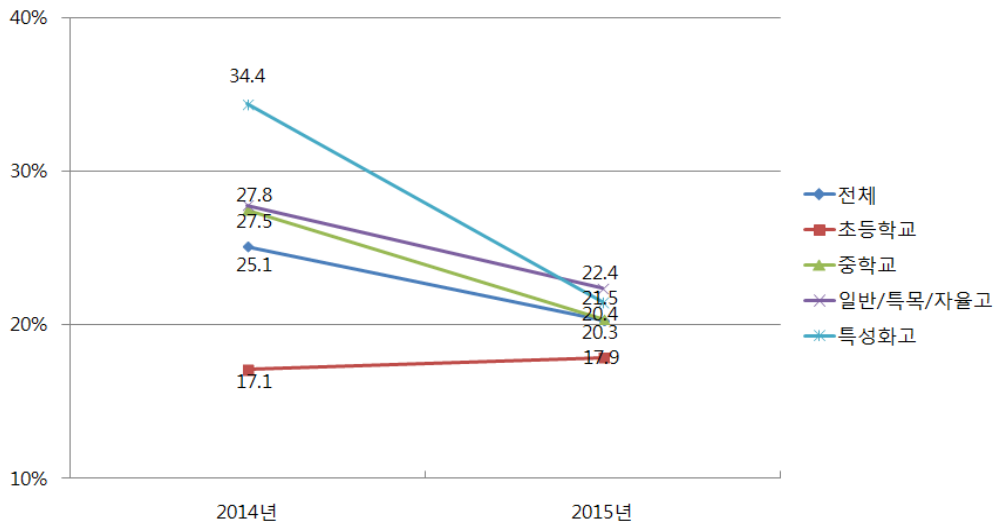
‘고향과 지역을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2014년 62%에서 2015년 39%로 줄어들었으며, 초등학생을 제외한 전 교급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차별경험과 유사하게 다소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14년 14.4% → ’15년 5.8%).

표 III-1-25 차별해 본 경험_6)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9.7	13.6	4.3	1.5	0.9	20.3	100.0(10,452)	-
성별	남자	79.4	12.6	5.0	1.9	1.1	20.6	100.0(5,447)	32.599***
	여자	79.9	14.6	3.6	1.2	0.7	20.1	100.0(5,0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82.1	11.7	3.7	1.7	0.8	17.9	100.0(2,935)	26.598**
	중학교	79.7	13.5	4.5	1.6	0.8	20.4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77.6	15.0	4.9	1.5	1.0	22.4	100.0(3,173)	
	특성화고	78.4	15.5	3.6	1.4	1.0	21.5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79.0	14.0	4.3	1.7	1.0	21.0	100.0(4,568)	6.738
	중소도시	80.1	13.1	4.5	1.4	0.8	19.8	100.0(4,275)	
	읍면지역	80.2	13.9	3.7	1.4	0.7	19.7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9.9	13.4	4.3	1.5	0.9	20.1	100.0(9,428)	15.373
	한부모가정	76.2	16.0	4.7	1.9	1.2	23.8	100.0(865)	
	조손가정	84.5	10.9	1.4	3.2	0.0	15.5	100.0(98)	
	기타	83.6	12.8	3.7	0.0	0.0	16.5	100.0(61)	
학업 성적	상	80.6	13.7	3.5	1.5	0.7	19.4	100.0(3,400)	31.236***
	중	80.7	12.8	4.4	1.3	0.8	19.3	100.0(4,445)	
	하	76.7	14.8	5.2	2.1	1.3	23.4	100.0(2,577)	
경제적 수준	상	81.3	12.7	3.8	1.4	0.8	18.7	100.0(5,380)	49.795***
	중	79.6	13.5	4.5	1.6	0.8	20.4	100.0(3,744)	
	하	73.0	17.6	6.0	1.9	1.5	27.0	100.0(1,321)	

** $p < .01$, *** $p < .001$.

지난 1년 동안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라 차별을 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회 이상 차별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치의 합계는 20.3%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20.6%가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차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그보다 낮은 20.1%의 학생들이 가해 경험에 응답하고 있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가 22.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21.5%), 중학교(20.4%), 초등학교(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응답자(하 23.4%)가 높은 학생들(중19.3%, 상19.4%)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27%, 중20.4%, 상18.7%) 외모, 신체조건에 대해 차별을 한 경험이 많았다.



【그림 Ⅲ-1-25】 차별해 본 경험_외모, 신체조건(연도별 추이)

‘외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다른 차별경험의 전반적 경향과 유사하게 초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교급의 학생들이 감소세를 보였으며(전체값 ‘14년 25.1% → ’15년 20.3%), 특성화고등학교의 차별경험이 큰 폭으로 줄어 2015년에는 일반/특목/자율고등학교보다도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Ⅲ-1-26 차별해 본 경험_7) 종교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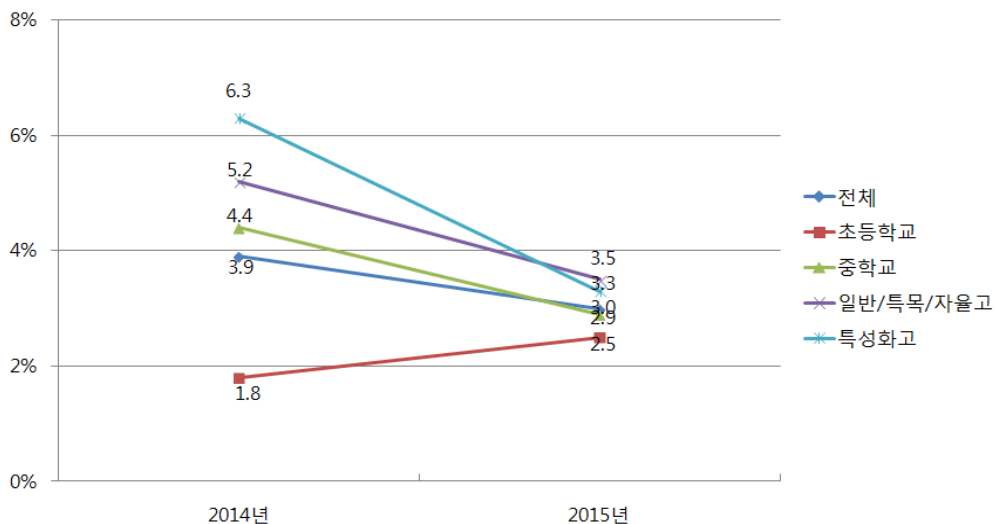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7.0	2.0	0.6	0.2	0.2	3.0	100.0(10,440)	-
성별	남자	96.2	2.4	0.9	0.2	3.8	100.0(5,439)	35.942***
	여자	97.9	1.6	0.3	0.2	0.0	100.0(5,001)	
학교 유형	초등학교	97.5	1.5	0.7	0.2	0.1	100.0(2,931)	21.509*
	중학교	97.1	1.8	0.7	0.2	0.2	100.0(3,624)	
	일반/특목/자율고	96.5	2.8	0.4	0.1	0.2	100.0(3,169)	
	특성화고	96.7	1.8	1.0	0.2	0.3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97.0	2.0	0.7	0.2	0.1	100.0(4,562)	5.454
	중소도시	97.0	2.0	0.6	0.2	0.3	100.0(4,271)	
	읍면지역	97.2	1.9	0.6	0.2	0.1	100.0(1,60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1	1.9	0.6	0.2	0.2	100.0(9,417)	17.426
	한부모가정	95.8	3.0	0.8	0.1	0.3	100.0(865)	
	조손가정	96.7	1.1	2.2	0.0	0.0	100.0(98)	
	기타	95.4	0.9	3.7	0.0	0.0	100.0(60)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97.4	1.8	0.4	0.2	0.2	2.6	100.0(3,397)	13.597
	중	97.2	1.9	0.7	0.1	0.1	2.8	100.0(4,441)	
	하	96.2	2.5	0.8	0.3	0.2	3.8	100.0(2,571)	
경제 적 수준	상	97.4	1.8	0.5	0.1	0.1	2.5	100.0(5,370)	20.937**
	중	97.0	2.0	0.6	0.3	0.1	3.0	100.0(3,743)	
	하	95.5	2.9	1.2	0.2	0.3	4.6	100.0(1,320)	

* $p<.05$, ** $p<.01$, *** $p<.001$.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 1회 이상 경험에 응답한 비율의 합계는 3%이다. 여학생(2.1%)에 비해 남학생(3.8%)에게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고 학교유형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가 3.5%로 특성화고(3.3%), 중학교(2.9%), 초등학교(2.5%)보다 더 종교를 이유로 한 가해 경험을 나타내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하위권(4.6%)에 속한 응답자들에게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경험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III-1-26】 차별해 본 경험_종교(연도별 추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2014년 3.9%에서 2015년 3.0%로 감소하였다. 초등학생은 1.8%에서 2.5%로 차별경험이 증가하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감소경향을 보였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차별경험률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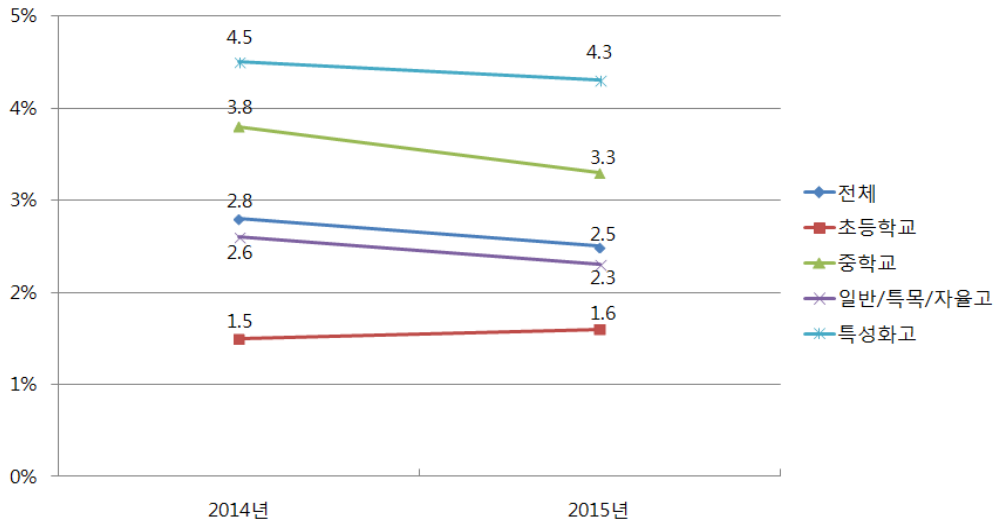
표 Ⅲ-1-27 차별해 본 경험_8)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7.4	1.5	0.6	0.2	0.2	2.5	100.0(10,453)	-
성별	남자	96.6	1.7	0.8	0.4	0.4	3.3	100.0(5,448)	44.662***
	여자	98.3	1.2	0.3	0.1	0.0	1.6	100.0(5,0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5	0.9	0.4	0.2	0.1	1.6	100.0(2,935)	38.881***
	중학교	96.7	1.8	0.9	0.3	0.3	3.3	100.0(3,629)	
	일반/특목/자율고	97.8	1.4	0.4	0.2	0.3	2.3	100.0(3,173)	
	특성화고	95.7	2.6	0.8	0.3	0.6	4.3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97.4	1.5	0.6	0.3	0.2	2.6	100.0(4,568)	7.463
	중소도시	97.4	1.4	0.6	0.2	0.4	2.6	100.0(4,275)	
	읍면지역	97.8	1.5	0.4	0.3	0.0	2.2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8	1.2	0.5	0.2	0.2	2.1	100.0(9,428)	88.750***
	한부모가정	94.1	3.6	1.6	0.1	0.7	6.0	100.0(865)	
	조손가정	95.7	2.1	0.0	2.2	0.0	4.3	100.0(98)	
	기타	92.2	7.8	0.0	0.0	0.0	7.8	100.0(61)	
학업 성적	상	97.9	1.4	0.3	0.2	0.3	2.2	100.0(3,400)	14.763
	중	97.6	1.3	0.7	0.2	0.2	2.4	100.0(4,445)	
	하	96.6	1.9	0.8	0.3	0.3	3.3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98.0	1.2	0.3	0.2	0.2	1.9	100.0(5,380)	28.324***
	중	97.2	1.6	0.8	0.2	0.2	2.8	100.0(3,744)	
	하	95.7	2.4	1.0	0.5	0.4	4.3	100.0(1,322)	

*** $p < .001$.

가족유형을 이유로 차별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회 이상의 경험이 있는 비율은 25%로 나타났다. 남학생(3.3%)은 여학생(1.6%)보다 차별 가해 경험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학교유형에서는 특성화고(4.3%), 중학교(3.3%), 일반/특목/자율고(2.3%), 초등학교(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조손가정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 4.3%, 중 2.8%, 상 1.9%)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1-27】 차별해 본 경험_가족유형(연도별 추이)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와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2014년 2.8%에서 2015년 2.5%로 줄어들었다. 초등학교생의 경우만 차별경험이 미세하게(0.1%) 증가하였고, 모든 교급에서 차별 경험의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1-28 차별해 본 경험_9) 장애에 따른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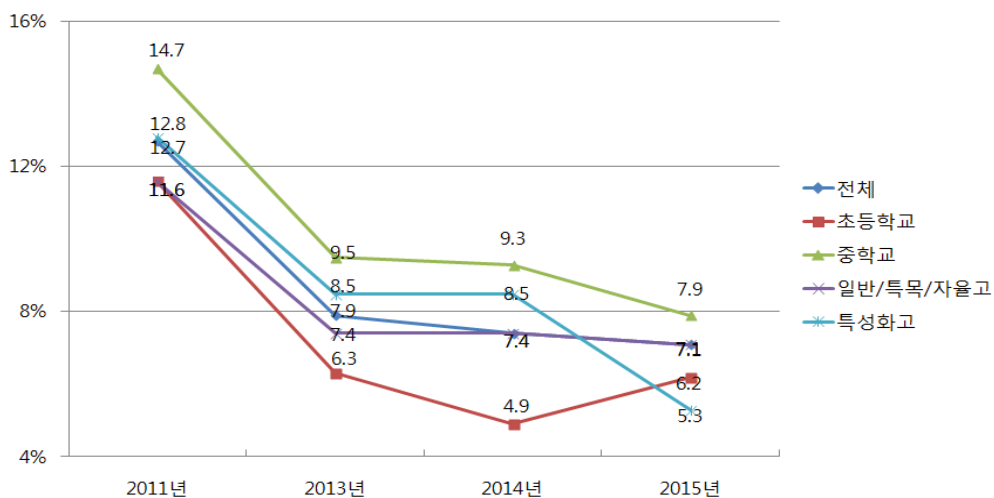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2.9	5.2	1.2	0.5	0.2	7.1	100.0(10,452)	-
성별	남자	92.6	4.9	1.5	0.8	0.2	100.0(5,447)	33.012***
	여자	93.3	5.5	0.9	0.1	0.2	100.0(5,0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93.8	4.4	0.9	0.6	0.3	100.0(2,935)	23.883*
	중학교	92.1	5.6	1.7	0.4	0.2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92.8	5.6	1.1	0.3	0.1	100.0(3,173)	
	특성화고	94.8	4.2	0.6	0.4	0.1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92.5	5.4	1.3	0.7	0.2	100.0(4,568)	11.523
	중소도시	93.3	5.0	1.2	0.2	0.2	100.0(4,275)	
	읍면지역	93.1	5.2	1.1	0.4	0.1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9	5.3	1.2	0.4	0.2	100.0(9,427)	16.877
	한부모가정	93.6	4.0	1.3	0.9	0.1	100.0(865)	
	조손가정	94.7	4.2	0.0	1.1	0.0	100.0(98)	
	기타	92.2	4.1	1.5	0.0	2.1	100.0(61)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91.6	6.4	1.3	0.5	0.2	8.4	100.0(3,400)	18.780*
	중	93.9	4.4	1.1	0.4	0.2	6.1	100.0(4,444)	
	하	93.0	5.0	1.3	0.5	0.1	6.9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93.5	4.8	1.0	0.4	0.2	6.4	100.0(5,379)	11.052
	중	92.7	5.2	1.4	0.5	0.2	7.3	100.0(3,744)	
	하	91.3	6.6	1.4	0.5	0.2	8.7	100.0(1,322)	

* $p<.05$, *** $p<.001$.

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을 질문한 결과, 1회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7.1%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6.7%)보다 남학생(7.4%)에게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중학교(7.9%), 일반/특목/자율고(7.1%), 초등학교(6.2%), 특성화고(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성적에서는 상위권(8.4%)에 속한 학생들에게서 차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하위권(6.9%), 중위권(6.1%)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8】 차별해 본 경험_장애(연도별 추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11년 12.7% → ’13년 7.9% → ’14년 7.4% → ’15년 7.1%). 모든 교급 중에서 특성화고등학생의 2015년 차별경험이 가장 낮은 점(5.3%), 초등학교생의 2015년 경험률이 전년 대비 증가한 점(6.2%), 다른 차별경험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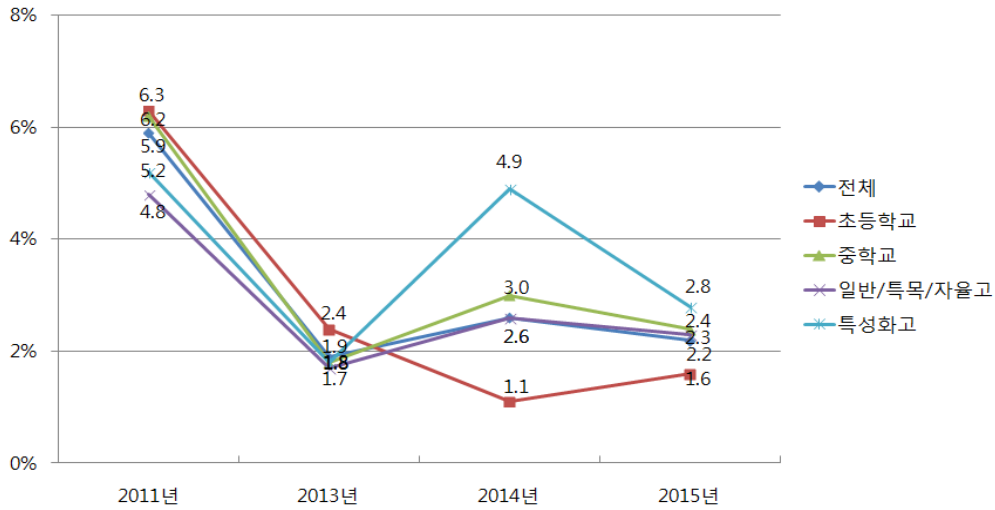
대부분 특성화고등학교의 경험률이 높은 것에 비해 장애 차별의 경우 모든 연도의 중학생 차별경험률이 가장 높다는 점 등을 주목할 만하다.

표 III-1-29 차별해 본 경험_10) 다문화가정 차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7.8	1.4	0.5	0.1	0.2	2.2	100.0(10,449)	-
성별	남자	97.2	1.6	0.8	0.2	0.3	2.9	100.0(5,446)	32.799***
	여자	98.5	1.2	0.2	0.1	0.1	1.6	100.0(5,0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3	0.9	0.4	0.1	0.2	1.6	100.0(2,933)	12.976
	중학교	97.5	1.5	0.6	0.2	0.1	2.4	100.0(3,629)	
	일반/특목/자율고	97.7	1.5	0.5	0.1	0.2	2.3	100.0(3,171)	
	특성화고	97.2	2.1	0.5	0.1	0.1	2.8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97.8	1.3	0.6	0.2	0.2	2.3	100.0(4,568)	2.315
	중소도시	97.7	1.5	0.5	0.1	0.2	2.3	100.0(4,271)	
	읍면지역	98.0	1.3	0.5	0.1	0.1	2.0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9	1.3	0.5	0.1	0.1	2.0	100.0(9,425)	22.844*
	한부모가정	96.8	1.9	0.5	0.2	0.4	3.0	100.0(865)	
	조손가정	96.7	1.1	1.1	0.0	1.1	3.3	100.0(98)	
	기타	95.5	0.9	3.6	0.0	0.0	4.5	100.0(61)	
학업 성적	상	98.2	1.3	0.3	0.1	0.1	1.8	100.0(3,400)	13.431
	중	97.9	1.2	0.5	0.2	0.2	2.1	100.0(4,443)	
	하	97.0	1.8	0.8	0.2	0.2	3.0	100.0(2,576)	
경제적 수준	상	98.3	1.0	0.4	0.1	0.2	1.7	100.0(5,377)	14.788
	중	97.3	1.7	0.6	0.2	0.2	2.7	100.0(3,743)	
	하	97.1	1.9	0.6	0.3	0.1	2.9	100.0(1,322)	

* $p<.05$, *** $p<.001$.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경험에 대해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비율은 2.2%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는 성별, 가족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경험으로 2.9%를 나타내고 있었고 여학생은 1.6%로 남학생보다 적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유형으로는 조손가정이 3.3%, 한부모가정 3%, 양부모가정 2%로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 -1-29】 차별해 본 경험_다문화가정(연도별 추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해 본 경험률’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줄어들다가 2014년 소폭 증가하였고 2015년 다시 소폭 줄어들었다. 2014년도의 차별경험률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경험률이 가장 높고 초등학교의 차별경험률이 가장 낮는데 2015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차별경험은 감소하는 반면 초등학교의 차별경험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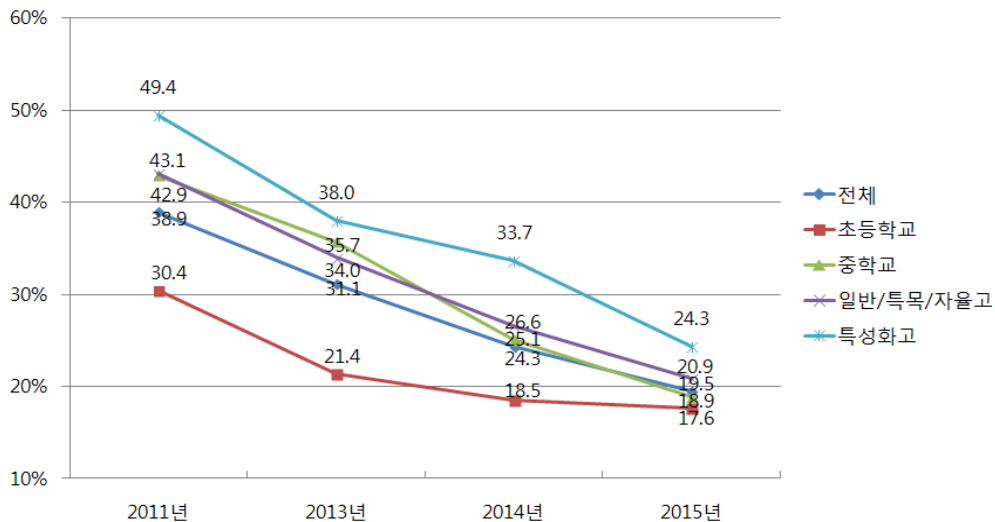
② 차별받은 경험

지난 1년간 성차별을 경험한 경우에 대해 질문한 결과,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는 19.5%로 나타났고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경우는 80.5%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는 성별, 학교유형, 지역규모,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서 나타났다. 성차별의 경험은 남학생(16%)보다 여학생(23.3%)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가 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특목/자율고(20.9%), 중학교(18.9%), 초등학교(17.6%)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먼저 대도시가 20.4%로 중소도시(19.3%), 읍면지역(17.4%)보다 더 높은 성차별의 경험을 보였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22.9%), 양부모가정(19.4%), 조손가정(13.8%)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하26.3%, 중19.4%, 상17.9%)이 낮을수록 성차별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1-30 차별받은 경험_1) 성차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80.5	13.2	4.2	1.3	0.8	19.5	100.0(10,452)	-
성별	남자	84.0	9.0	4.4	1.4	1.2	16.0	100.0(5,448)	185.315***
	여자	76.7	17.7	4.0	1.1	0.5	23.3	100.0(5,0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82.5	11.1	3.5	1.7	1.3	17.6	100.0(2,935)	54.910***
	중학교	81.0	12.7	4.4	1.2	0.6	18.9	100.0(3,629)	
	일반/특목/자율고	79.1	14.9	4.3	0.9	0.8	20.9	100.0(3,172)	
지역 규모	특성화고	75.7	16.4	5.6	1.8	0.5	24.3	100.0(716)	17.767*
	대도시	79.5	13.8	4.2	1.3	1.1	20.4	100.0(4,568)	
	중소도시	80.7	12.8	4.3	1.4	0.8	19.3	100.0(4,274)	
가족 유형	읍면지역	82.6	12.3	4.1	0.7	0.3	17.4	100.0(1,610)	29.401**
	양부모가정	80.7	13.2	4.2	1.2	0.8	19.4	100.0(9,427)	
	한부모가정	77.1	14.9	5.1	1.8	1.1	22.9	100.0(865)	
	조손가정	86.3	7.1	2.5	1.0	3.2	13.8	100.0(98)	
학업 성적	기타	91.0	0.9	4.0	1.6	2.6	9.1	100.0(61)	15.068
	상	80.8	12.7	4.1	1.5	0.9	19.2	100.0(3,400)	
	중	81.2	13.1	3.8	1.2	0.7	18.8	100.0(4,445)	
경제적 수준	하	78.8	13.8	5.1	1.1	1.1	21.1	100.0(2,577)	67.135***
	상	82.0	12.6	3.5	1.1	0.7	17.9	100.0(5,380)	
	중	80.7	13.1	4.3	1.1	0.9	19.4	100.0(3,743)	
	하	73.6	15.7	7.0	2.5	1.1	26.3	100.0(1,322)	

* $p<.05$, ** $p<.01$, *** $p<.001$.

【그림 Ⅲ-1-30】 차별받은 경험_성차별(연도별 추이)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11년 38.9% → ’13년 31.1% → ’14년 24.3% → ’15년 19.5%). 2015년에는 2011년에 비해 거의 절반에 가깝게 성차별 경험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고등학교, 중학생, 초등학교 순으로 차별받은 경험이 많은 경향이 매년 유지되고 있다(2013년도만 중학생이 일반고등학교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임).

표 Ⅲ-1-31 차별받은 경험_2)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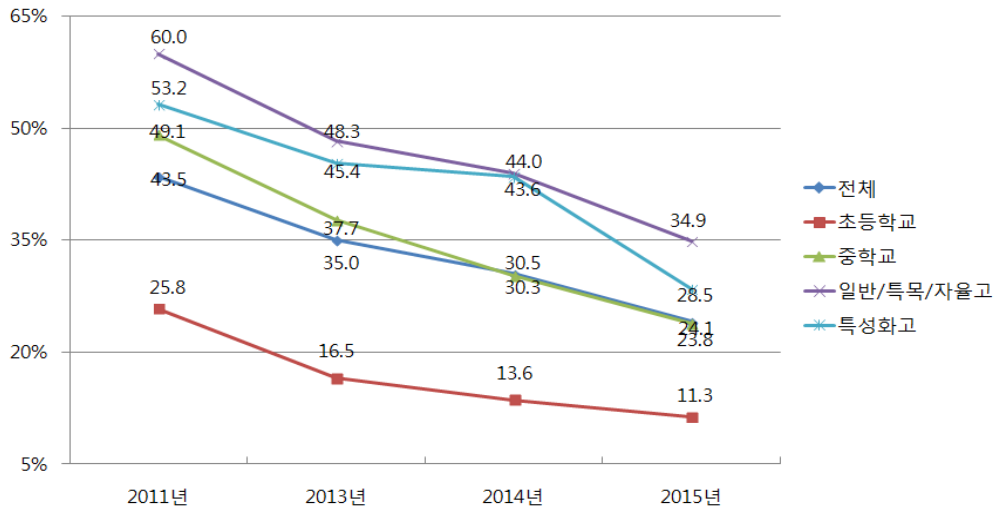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6.0	14.7	6.5	1.8	1.1	24.1	100.0(10,451)	-
성별	남자	78.7	12.0	6.2	1.9	1.2	100.0(5,448)	71.173***
	여자	73.0	17.7	6.7	1.6	0.9	100.0(5,0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88.6	7.8	2.2	0.8	0.5	100.0(2,935)	481.889***
	중학교	76.2	14.5	6.5	1.9	0.9	100.0(3,629)	
	일반/특목/자율고	65.1	20.7	9.9	2.6	1.7	100.0(3,171)	
	특성화고	71.5	18.2	8.0	1.5	0.8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74.2	15.3	7.3	2.0	1.2	100.0(4,568)	32.249***
	중소도시	76.4	15.0	6.0	1.4	1.0	100.0(4,273)	
	읍면지역	79.7	12.3	5.3	2.2	0.6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6.4	14.4	6.4	1.8	1.0	100.0(9,427)	24.145*
	한부모가정	69.9	19.1	7.6	2.0	1.4	100.0(865)	
	조손가정	81.0	11.6	4.7	2.7	0.0	100.0(98)	
	기타	80.6	13.1	3.7	1.6	0.9	100.0(61)	
학업 성적	상	88.3	8.1	2.5	0.8	0.4	100.0(3,400)	789.554***
	중	76.9	15.0	5.8	1.5	0.8	100.0(4,445)	
	하	58.0	23.0	12.9	3.7	2.4	100.0(2,576)	
경제적 수준	상	80.6	12.5	5.0	1.3	0.7	100.0(5,378)	248.287***
	중	74.5	15.9	6.5	1.9	1.2	100.0(3,744)	
	하	61.3	20.8	12.3	3.4	2.2	100.0(1,322)	

* $p<.05$, *** $p<.001$.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 당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년 동안 1회 이상의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4.1%로 나타났다. 여학생(26.9%)이 남학생(21.3%)에 비해 차별을 당한 경험이 비교적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 일반/특목/자율고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특성화고 28.5%, 중학교 23.8%, 초등학교 11.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25.8%로 중소도시(23.4%), 읍면지역(20.4%)보다 비율이 높았고,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30.1%로 양부모가정(23.6%), 조손가정(19%)보다 높은 경험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하42%, 중23.1%, 상11.8%),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38.7%, 중25.5%, 상19.5%)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험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31】 차별받은 경험_학업성적(연도별 추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11년 43.5% → ’13년 35.0% → ’14년 30.5% → ’15년 24.1%). 교급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등학생, 특성화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순으로 차별경험이 많은 경향이 매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1-32 차별받은 경험_3) 연령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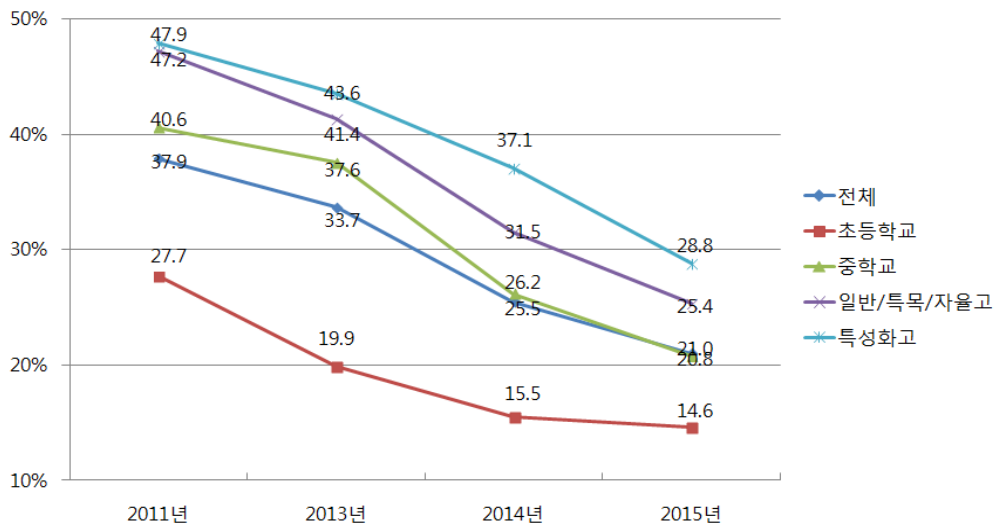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9.0	14.7	4.5	1.1	0.7	21.0	100.0(10,452)	-
성별	남자	83.3	10.4	4.4	1.1	0.9	16.8	100.0(5,448)	178.598***
	여자	74.4	19.5	4.7	1.0	0.5	25.7	100.0(5,0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85.5	9.9	3.1	0.8	0.8	14.6	100.0(2,935)	153.889***
	중학교	79.2	14.3	4.7	1.3	0.5	20.8	100.0(3,629)	
	일반/특목/자율고	74.6	18.5	5.2	0.9	0.8	25.4	100.0(3,173)	
	특성화고	71.2	20.2	6.4	1.7	0.5	28.8	100.0(715)	
지역 규모	대도시	78.8	14.6	4.8	1.1	0.6	21.1	100.0(4,568)	6.948
	중소도시	78.7	15.0	4.7	1.0	0.7	21.4	100.0(4,274)	
	읍면지역	80.4	14.6	3.4	0.9	0.6	19.5	100.0(1,610)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9.3	14.6	4.4	1.0	0.7	20.7	100.0(9,428)	19.502
	한부모가정	74.9	16.6	6.2	1.6	0.6	25.0	100.0(865)	
	조손가정	82.7	12.3	3.9	1.1	0.0	17.3	100.0(98)	
	기타	89.7	7.7	1.6	0.0	0.9	10.2	100.0(61)	
학업 성적	상	81.1	13.4	4.4	0.8	0.3	18.9	100.0(3,399)	60.044***
	중	79.9	14.6	3.9	1.0	0.6	20.1	100.0(4,445)	
	하	74.6	16.8	5.9	1.4	1.2	25.3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81.2	13.6	3.9	0.8	0.5	18.8	100.0(5,379)	120.975***
	중	79.3	14.9	4.1	1.0	0.7	20.7	100.0(3,744)	
	하	69.1	19.1	8.4	2.2	1.3	31.0	100.0(1,322)	

*** $p < .001$.

연령으로 인해 1년에 1회 이상 차별을 받은 경험은 21%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로는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학생(25.7%)이 남학생(16.8%)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28.8%)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25.4%), 중학교(20.8%), 초등학교(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하25.3%, 중20.1%, 상18.9%)과 경제적 수준(하31%, 중20.7%, 상18.8%)이 낮을수록 연령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 -1-32】 차별받은 경험_연령(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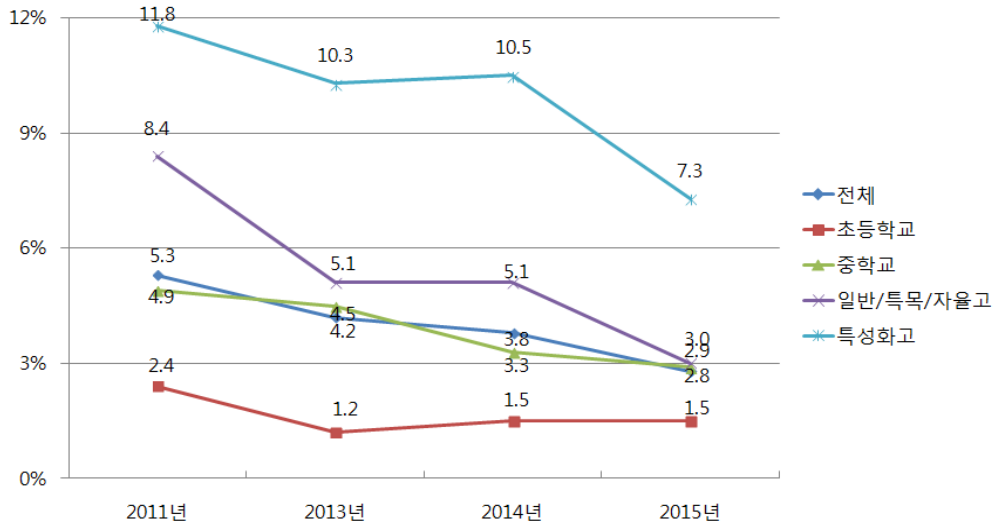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11년 37.9% → ’13년 33.7% → ’14년 25.5% → ’15년 21%), 특성화고등학생, 일반/특목/자율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차별경험이 많은 경향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

표 III-1-33 차별받은 경험_4) 가정 형편에 따른 차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7.2	1.9	0.6	0.2	0.1	2.8	100.0(10,451)	-
성별	남자	96.8	2.0	0.8	0.3	0.2	100.0(5,447)	18.312**
	여자	97.6	1.9	0.4	0.1	0.0	100.0(5,0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4	1.1	0.3	0.1	0.0	100.0(2,934)	83.384***
	중학교	97.1	1.7	0.8	0.3	0.1	100.0(3,629)	
	일반/특목/자율고	97.1	2.1	0.6	0.1	0.2	100.0(3,172)	
	특성화고	92.8	5.5	1.1	0.3	0.4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97.1	2.0	0.6	0.2	0.1	100.0(4,567)	6.108
	중소도시	96.9	2.1	0.7	0.2	0.1	100.0(4,275)	
	읍면지역	98.1	1.3	0.4	0.1	0.1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6	1.6	0.5	0.1	0.1	100.0(9,428)	90.031***
	한부모가정	93.2	4.5	1.4	0.5	0.4	100.0(864)	
	조손가정	91.4	6.8	1.8	0.0	0.0	100.0(98)	
	기타	98.2	0.9	0.0	0.0	0.9	100.0(61)	
학업 성적	상	98.1	1.4	0.4	0.2	0.0	100.0(3,399)	47.090***
	중	97.5	1.7	0.6	0.1	0.1	100.0(4,443)	
	하	95.4	3.2	1.0	0.3	0.2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98.7	0.9	0.2	0.1	0.1	100.0(5,380)	265.503***
	중	97.4	1.8	0.6	0.2	0.1	100.0(3,742)	
	하	90.5	6.4	2.3	0.5	0.4	100.0(1,322)	

* $p < .05$, ** $p < .01$, *** $p < .001$.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에 1회 이상 차별을 당한 경험은 2.8%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보이는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여학생(2.4%)보다 남학생(3.3%)이 차별 당한 경험이 비교적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가 7.3%로 일반/특목/자율고(3%), 중학교(2.9%), 초등학교(1.5%)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8.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부모가정(6.8%), 양부모가정(2.3%)의 순으로 차별 피해 경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학업성적(하 4.7%, 중 2.5%, 상 2%)과 경제적 수준(하 9.6%, 중 2.7%, 상 1.3%)이 낮을수록 가정형편의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33】 차별받은 경험_가정형편(연도별 추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받은 경험률’은 매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11년 5.3% → ’13년 4.2% → ’14년 3.8% → ’15년 2.8%), 초등학교의 경우만 2014년 차별경험이 미세하게 증가하여 2015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가정형편으로 인한 차별경험률이 다른 교급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1-34 차별받은 경험_5) 지역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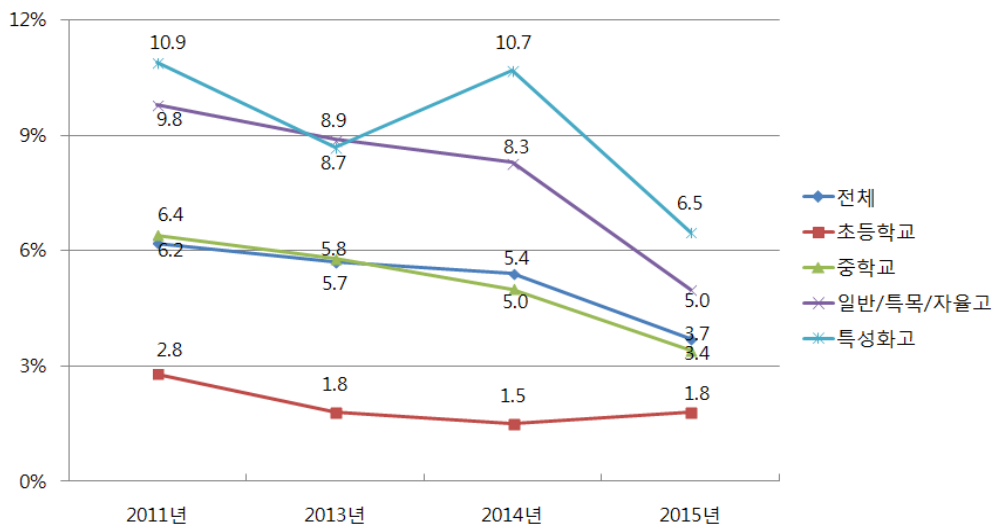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6.4	2.5	0.7	0.2	0.3	3.7	100.0(10,449)	-
성별	남자	96.3	2.2	0.9	0.2	0.3	100.0(5,445)	19.505***
	여자	96.4	2.9	0.4	0.1	0.2	100.0(5,0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3	1.2	0.3	0.1	0.2	100.0(2,934)	73.902***
	중학교	96.6	2.4	0.7	0.2	0.1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94.9	3.5	0.9	0.2	0.4	100.0(3,171)	
	특성화고	93.5	4.3	1.6	0.1	0.5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97.0	1.8	0.7	0.2	0.3	100.0(4,568)	21.110**
	중소도시	95.9	3.0	0.6	0.2	0.3	100.0(4,270)	
	읍면지역	95.7	3.3	0.8	0.2	0.1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5	2.4	0.7	0.2	0.2	100.0(9,424)	20.506
	한부모가정	94.6	3.8	1.0	0.3	0.3	100.0(865)	
	조손가정	97.8	1.1	0.0	0.0	1.1	100.0(98)	
	기타	94.2	4.8	0.0	0.0	0.9	100.0(61)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96.8	2.5	0.4	0.1	0.2	3.2	100.0(3,397)	34.863***
	중	96.8	2.3	0.6	0.2	0.1	3.2	100.0(4,445)	
	하	95.1	2.9	1.3	0.2	0.6	5.0	100.0(2,576)	
경제적 수준	상	97.1	2.1	0.4	0.2	0.2	2.9	100.0(5,377)	56.305***
	중	96.3	2.4	0.8	0.2	0.3	3.7	100.0(3,743)	
	하	93.2	4.7	1.6	0.1	0.5	6.9	100.0(1,322)	

** $p<.01$, *** $p<.001$.

고향이나 사는 지역으로 인해 차별당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6.5%), 일반/특목/자율고(5%), 중학교(3.4%), 초등학교(1.8%)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4.4%로 중소도시(4.1%), 대도시(3%)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학업성적으로는 하위권에 속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5%로 상위권(3.2%), 중위권(3.2%)에 속한 응답자들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6.9%), 중(3.7%), 상(2.9%) 순으로 차별당한 경험을 나타냈다.



【그림 III -1-34】 차별받은 경험_지역(연도별 추이)

‘고향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11년 6.2% → ’13년 5.7% → ’14년 5.4% → ’15년 3.7%), 2014년도의 특성화고등학생의 경험률이 일시적으로 높은 점(10.7%), 초등학교의 2015년도 차별경험이 2013년도 수준으로 다시 높아진 점(1.8%)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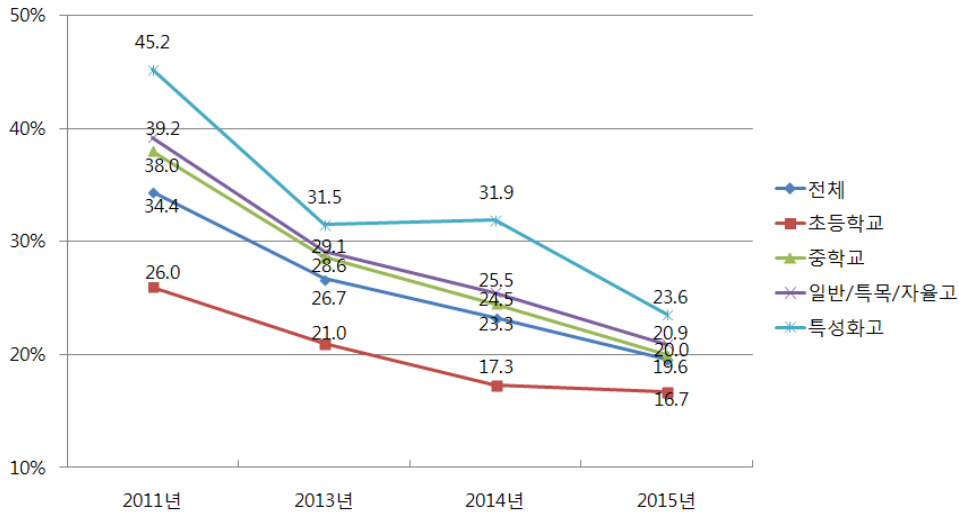
특이사항을 볼 수 있다.

표 Ⅲ-1-35 차별받은 경험_6)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80.4	11.8	4.8	1.9	1.1	19.6	100.0(10,449)	-
성별	남자	82.4	9.7	4.7	2.1	1.1	17.6	100.0(5,447)	46.901***
	여자	78.3	14.0	4.9	1.8	1.1	21.8	100.0(5,002)	
학교 유형	초등학교	83.3	9.5	4.2	1.8	1.2	16.7	100.0(2,934)	43.932***
	중학교	80.0	11.6	4.9	2.4	1.1	20.0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79.1	13.0	5.3	1.5	1.1	20.9	100.0(3,171)	
	특성화고	76.4	16.0	4.5	2.1	1.0	23.6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80.1	11.9	4.9	1.9	1.1	19.8	100.0(4,567)	5.029
	중소도시	80.2	11.9	4.7	2.1	1.1	19.8	100.0(4,274)	
	읍면지역	82.0	11.1	4.6	1.4	1.0	18.1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0.8	11.6	4.7	1.8	1.1	19.2	100.0(9,426)	23.271*
	한부모가정	75.6	14.5	6.0	2.7	1.3	24.5	100.0(864)	
	조손가정	81.8	8.2	4.7	3.9	1.4	18.2	100.0(98)	
	기타	86.4	8.2	2.8	0.0	2.7	13.7	100.0(61)	
학업 성적	상	83.0	10.5	4.0	1.5	1.0	17.0	100.0(3,400)	77.148***
	중	81.4	11.3	4.8	1.7	0.8	18.6	100.0(4,445)	
	하	75.1	14.2	6.0	3.0	1.8	25.0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82.9	10.5	4.2	1.4	0.9	17.0	100.0(5,380)	134.092***
	중	80.8	11.3	4.9	2.1	1.0	19.3	100.0(3,741)	
	하	69.1	18.3	7.2	3.3	2.1	30.9	100.0(1,321)	

* $p<.05$, *** $p<.001$.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차별을 당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은 19.6%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17.6%가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21.8%가 차별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적인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가 23.6%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후로 일반/특목/자율고(20.9%), 중학교(20%), 초등학교(16.7%)의 순서로 보이고 있었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24.5%로 양부모가정(19.2%), 조손가정(18.2%)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을수록(하25%, 중18.6%, 상17%),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 30.9%, 중19.3%, 상17%)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Ⅲ-1-35】 차별받은 경험_외모, 신체조건(연도별 추이)

‘외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11년 34.4% → ’13년 26.7% → ’14년 23.3% → ’15년 19.6%), 2014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경험률이 일시적으로 미세하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급이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1-36 차별받은 경험_7) 종교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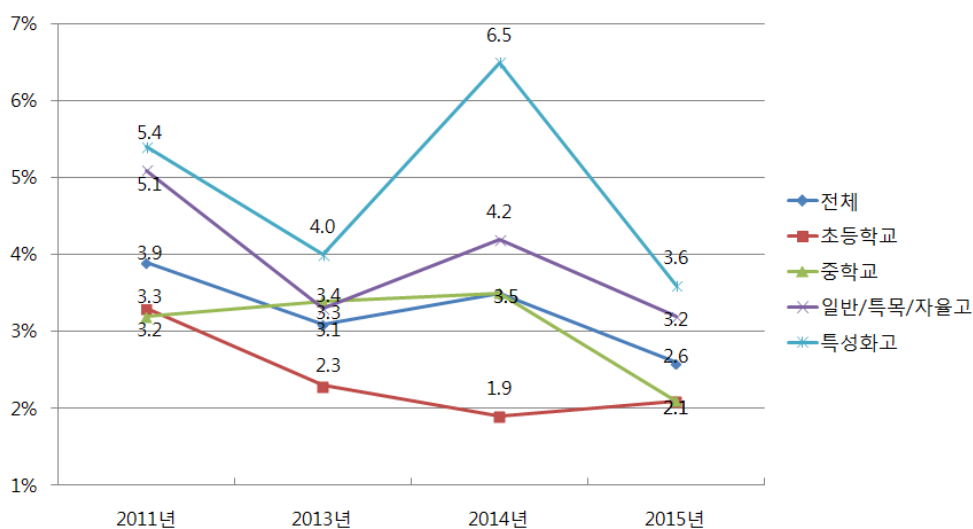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7.5	1.6	0.6	0.3	0.1	2.6	100.0(10,446)	-
성별	남자	97.1	1.6	0.8	0.4	0.1	2.9	100.0(5,446)	14.199**
	여자	97.8	1.6	0.3	0.2	0.1	2.2	100.0(5,0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97.9	1.1	0.6	0.3	0.1	2.1	100.0(2,933)	26.010*
	중학교	97.9	1.4	0.5	0.2	0.0	2.1	100.0(3,627)	
	일반/특목/자율고	96.8	2.0	0.6	0.4	0.2	3.2	100.0(3,170)	
	특성화고	96.3	2.8	0.6	0.1	0.1	3.6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97.2	1.7	0.6	0.4	0.1	2.8	100.0(4,565)	8.813
	중소도시	97.4	1.7	0.6	0.2	0.1	2.6	100.0(4,272)	
	읍면지역	98.3	1.1	0.3	0.2	0.1	1.7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6	1.6	0.5	0.2	0.1	2.4	100.0(9,421)	32.950***
	한부모가정	96.4	2.0	0.8	0.7	0.0	3.5	100.0(865)	
	조손가정	96.4	2.5	0.0	0.0	1.1	3.6	100.0(98)	
	기타	96.1	0.9	2.1	0.0	0.9	3.9	100.0(61)	

학업 성적	상	97.6	1.4	0.6	0.3	0.1	2.4	100.0(3,395)	8.305
	중	97.6	1.6	0.5	0.2	0.1	2.4	100.0(4,444)	
	하	96.9	1.8	0.7	0.4	0.2	3.1	100.0(2,577)	
경제적 수준	상	97.9	1.5	0.4	0.2	0.0	2.1	100.0(5,375)	22.658**
	중	97.4	1.5	0.7	0.3	0.2	2.7	100.0(3,743)	
	하	95.9	2.3	0.8	0.6	0.2	3.9	100.0(1,321)	

* $p<.05$, ** $p<.01$, *** $p<.001$.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년에 1회 이상 차별 경험의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2.9%로 여학생(2.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가 3.6%로 일반/특목/자율고(3.2%), 중학교(2.1%), 초등학교(2.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3.6%), 한부모가정(3.5%), 양부모가정(2.4%)의 순으로 차별 피해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별로는 하(3.1%), 중(2.4%), 상(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종교로 인한 차별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 -1-36】 차별받은 경험_종교(연도별 추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2011년 3.9%에서 2015년 2.6%로 전체 추세는 줄어들었으나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급이 2014년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2014년에는 줄어들었으나 2015년도에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1-37 차별받은 경험_8)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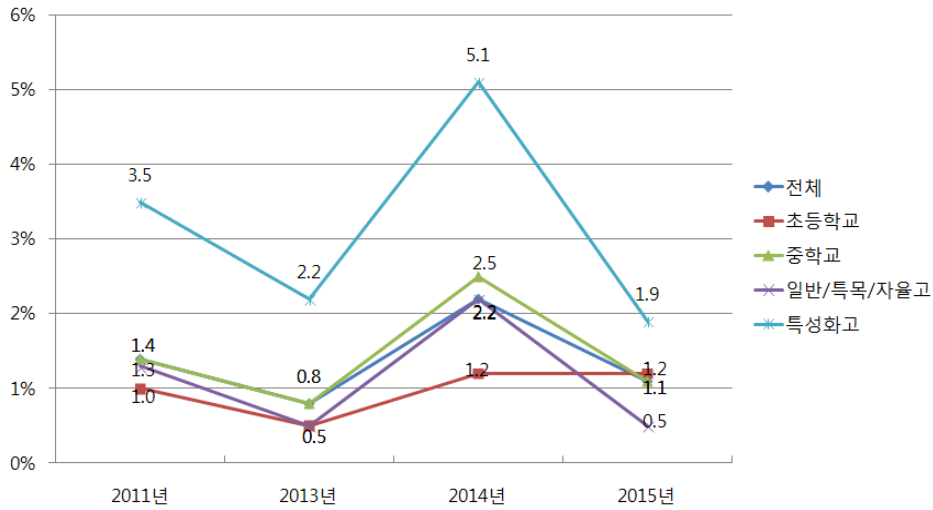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9.0	0.6	0.3	0.1	0.1	1.1	100.0(10,366)	-
성별	남자	98.9	0.6	0.3	0.1	0.1	1.1	100.0(5,378)	5.704
	여자	99.0	0.7	0.2	0.0	0.0	0.9	100.0(4,988)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8	0.6	0.4	0.1	0.1	1.2	100.0(2,933)	22.702*
	중학교	98.9	0.7	0.3	0.1	0.0	1.1	100.0(3,586)	
	일반/특목/자율고	99.4	0.4	0.1	0.0	0.0	0.5	100.0(3,141)	
	특성화고	98.2	1.4	0.3	0.0	0.2	1.9	100.0(706)	
지역 규모	대도시	99.1	0.5	0.3	0.0	0.0	0.8	100.0(4,522)	8.647
	중소도시	98.8	0.7	0.3	0.1	0.1	1.2	100.0(4,242)	
	읍면지역	98.9	0.9	0.1	0.1	0.0	1.1	100.0(1,60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9.7	0.2	0.1	0.0	0.0	0.3	100.0(9,342)	604.741***
	한부모가정	91.8	5.2	1.9	0.7	0.4	8.2	100.0(865)	
	조손가정	93.0	3.0	2.9	0.0	1.1	7.0	100.0(97)	
	기타	92.6	6.5	0.0	0.0	0.9	7.4	100.0(61)	
학업 성적	상	99.2	0.4	0.2	0.1	0.1	0.8	100.0(3,383)	12.288
	중	99.0	0.6	0.3	0.0	0.1	1.0	100.0(4,409)	
	하	98.6	1.1	0.3	0.1	0.0	1.5	100.0(2,543)	
경제적 수준	상	99.5	0.3	0.1	0.0	0.0	0.4	100.0(5,350)	63.378***
	중	98.9	0.7	0.2	0.1	0.1	1.1	100.0(3,700)	
	하	97.0	1.9	0.9	0.1	0.2	3.1	100.0(1,309)	

* $p<0.05$, *** $p<0.001$.

지난 1년간 가족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을 질문한 결과,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은 1.1%로 나타났다. 배경변인 중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성화고가 1.9%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1.2%, 중학교 1.1%, 일반/특목/자율고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 가정(8.2%)이 다른 유형보다 차별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손가정(7%), 양부모 가정(0.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3.1%, 중1.1%, 상0.4%) 가족유형으로 인해 차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와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11년 1.4%, ‘13년 0.8%, ‘14년 2.2%, ‘15년 1.1%). 모든 교급의 2014년의 차별경험률이 2013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림 Ⅲ-1-37】 차별받은 경험_가족유형(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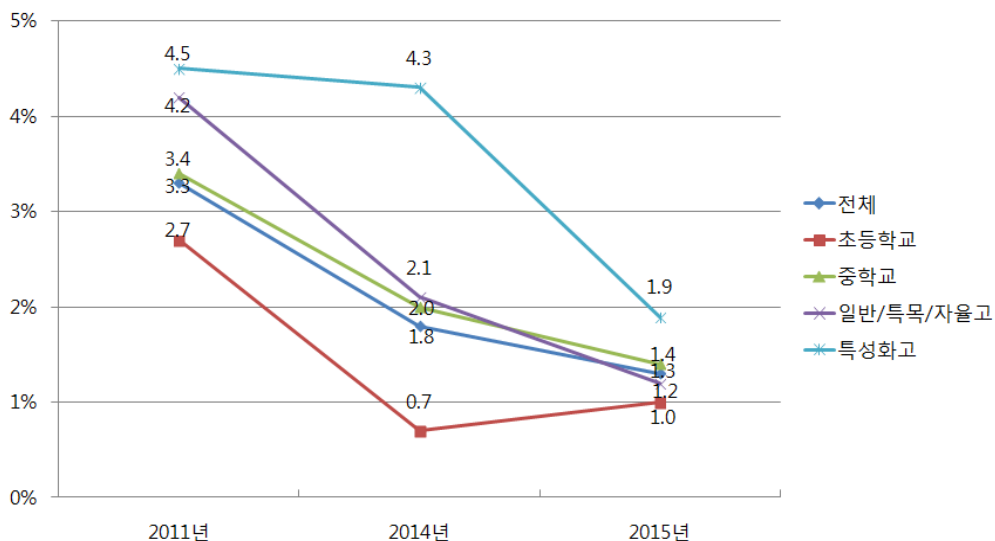
표 Ⅲ-1-38 차별받은 경험_9) 장애에 따른 차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8.8	0.7	0.3	0.2	0.1	1.3	100.0(10,453)	—
성별	남자	98.0	1.2	0.4	0.3	0.2	2.1	100.0(5,448)	53.319***
	여자	99.6	0.2	0.1	0.1	0.0	0.4	100.0(5,005)	
	초등학교	99.0	0.6	0.2	0.1	0.1	1.0	100.0(2,935)	
학교 유형	중학교	98.6	0.9	0.3	0.2	0.0	1.4	100.0(3,629)	18.267
	일반/특목/자율고	98.8	0.6	0.2	0.2	0.2	1.2	100.0(3,173)	
	특성화고	98.2	1.1	0.4	0.4	0.0	1.9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98.3	1.0	0.3	0.3	0.1	1.7	100.0(4,568)	16.952*
	중소도시	99.0	0.5	0.2	0.1	0.1	0.9	100.0(4,275)	
	읍면지역	99.3	0.4	0.2	0.0	0.1	0.7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9	0.6	0.2	0.1	0.1	1.0	100.0(9,428)	51.940***
	한부모가정	97.5	1.3	0.7	0.4	0.1	2.5	100.0(865)	
	조손가정	96.7	0.5	0.6	1.1	1.1	3.3	100.0(98)	
	기타	96.1	2.9	0.0	0.0	0.9	3.8	100.0(61)	
학업 성적	상	99.3	0.5	0.1	0.1	0.0	0.7	100.0(3,400)	17.193*
	중	98.6	0.8	0.3	0.2	0.1	1.4	100.0(4,445)	
	하	98.3	0.9	0.4	0.3	0.2	1.8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99.0	0.7	0.1	0.1	0.1	1.0	100.0(5,380)	17.304*
	중	98.6	0.7	0.3	0.2	0.1	1.3	100.0(3,744)	
	하	98.4	0.6	0.6	0.4	0.1	1.7	100.0(1,322)	

* $p < .05$, *** $p < .001$.

지난 1년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을 질문한 결과,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1%로 이는 여학생(0.4%)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보다 높은 수치였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도시가 1.7%로 읍면지역(0.7%), 중소도시(0.9%)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족유형으로는 조손가정이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한부모가정(2.5%), 양부모가정(1%)의 순으로 차별 경험 비율을 보였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하1.8%, 중1.4%, 상0.7%), 경제적 수준은 낮을수록(하1.7%, 중1.3%, 상1%) 차별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 -1-38】 차별받은 경험_장애(연도별 추이)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률’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11년 3.3% → ’14년 1.8% → ’15년 1.3%) 이는 초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교급이 유사하였다. 특성화고등학생의 차별경험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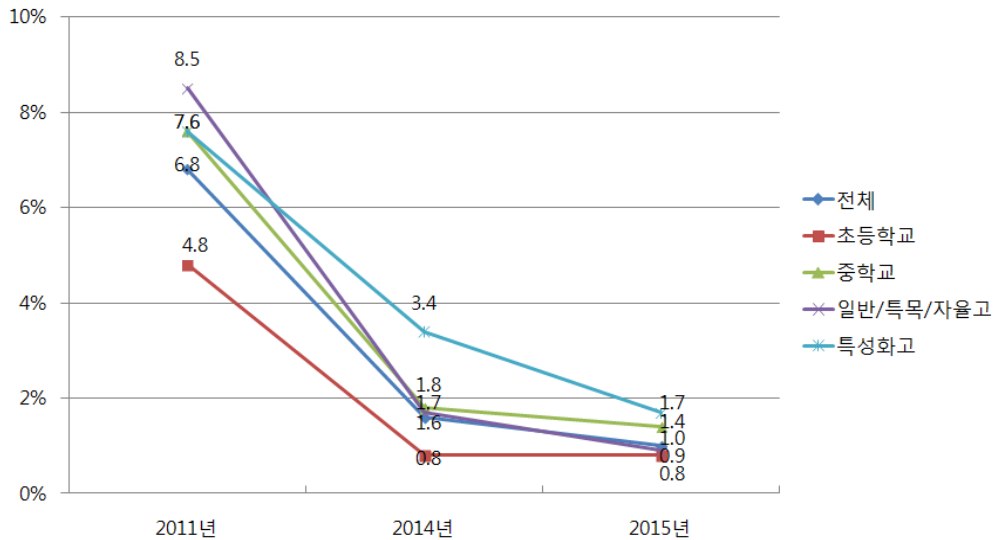
표 Ⅲ-1-39 차별받은 경험_10) 다문화가정 차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8.9	0.6	0.2	0.1	0.1	1.0	100.0(10,452)	-
성별	남자	98.4	0.9	0.4	0.2	0.2	1.7	100.0(5,448)	29.589***
	여자	99.5	0.3	0.1	0.1	0.1	0.6	100.0(5,0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99.1	0.4	0.1	0.1	0.2	0.8	100.0(2,935)	17.111
	중학교	98.7	0.7	0.4	0.2	0.1	1.4	100.0(3,629)	
	일반/특목/자율고	99.1	0.6	0.1	0.1	0.1	0.9	100.0(3,172)	
	특성화고	98.2	1.1	0.3	0.1	0.2	1.7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98.7	0.7	0.3	0.2	0.1	1.3	100.0(4,568)	7.170
	중소도시	99.0	0.6	0.2	0.1	0.1	1.0		
	읍면지역	99.4	0.4	0.1	0.1	0.1	0.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9.0	0.5	0.2	0.1	0.1	0.9	100.0(9,428)	57.120***
	한부모가정	97.6	1.3	0.5	0.4	0.1	2.3	100.0(865)	
	조손가정	97.3	0.5	0.0	0.0	2.2	2.7	100.0(98)	
	기타	98.2	0.9	0.0	0.0	0.9	1.8	100.0(61)	
학업 성적	상	99.3	0.5	0.1	0.1	0.1	0.8	100.0(3,400)	15.187
	중	98.9	0.6	0.3	0.1	0.1	1.1	100.0(4,444)	
	하	98.4	0.8	0.4	0.2	0.2	1.6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99.2	0.6	0.1	0.1	0.1	0.9	100.0(5,380)	11.420
	중	98.6	0.7	0.4	0.1	0.2	1.4	100.0(3,743)	
	하	98.6	0.5	0.3	0.3	0.3	1.4	100.0(1,322)	

* $p<0.05$, ** $p<0.01$, *** $p<0.001$.

지난 1년간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1회 이상 차별을 당한 적이 있었던 비율은 1.0%이다.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성별, 가족유형이었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1.7%로 여학생(0.6%)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2.7%)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한부모가정(2.3%), 양부모가정(0.9%)의 순으로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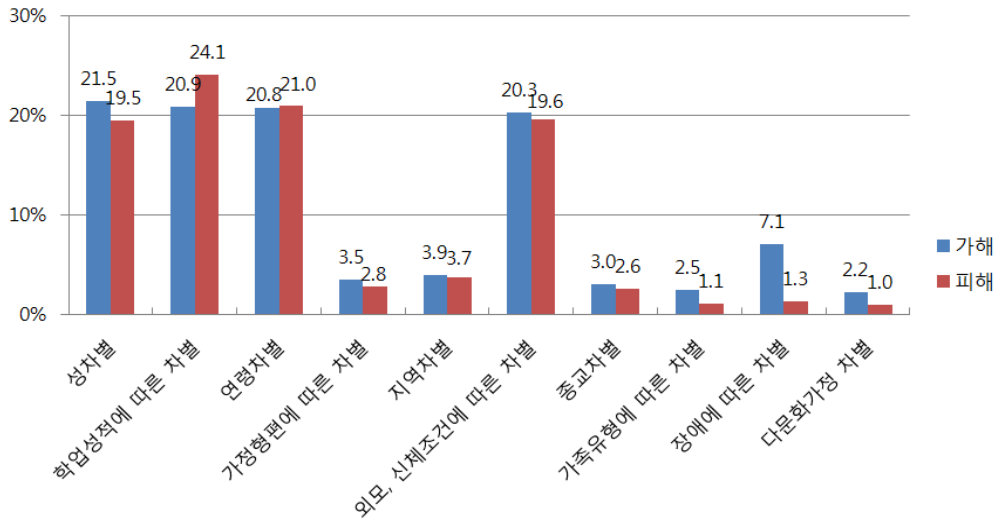
【그림 III-1-39】 차별받은 경험_다문화가정(연도별 추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11년 6.8% → ‘14년 1.6% → ‘15년 1%), 모든 교급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특성화고등학교의 2014년도 차별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도의 질문내용은 ‘다른 사람과 생김새와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으로 2014년 이후 문항과 차이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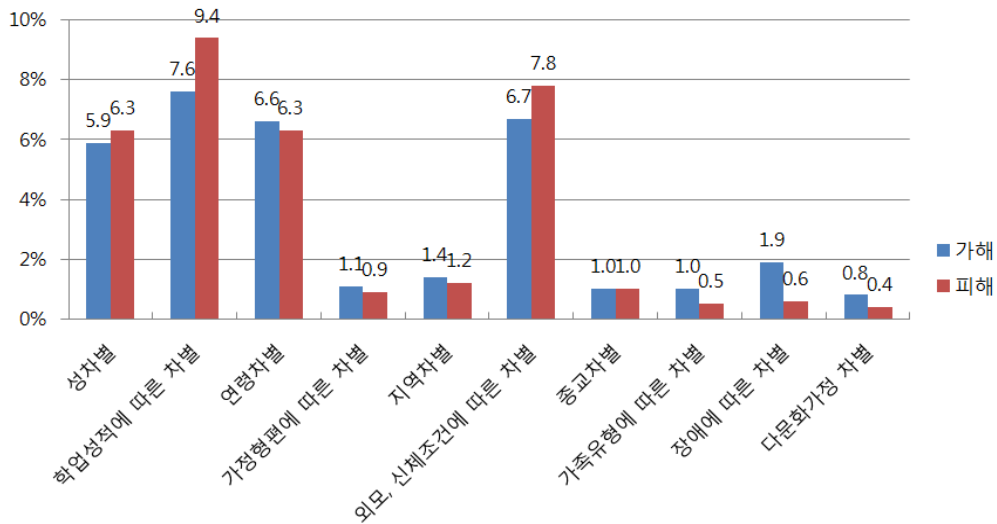
표 III-1-40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_전체

(단위 : %(명))

구분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한 달에 1회 이상 합계	
	차별한 경험	차별받은 경험	차별한 경험	차별받은 경험
1) 성차별	21.5	19.5	5.9	6.3
2)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20.9	24.1	7.6	9.4
3) 연령차별	20.8	21.0	6.6	6.3
4)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3.5	2.8	1.1	0.9
5) 지역차별	3.9	3.7	1.4	1.2
6)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20.3	19.6	6.7	7.8
7) 종교차별	3.0	2.6	1.0	1.0
8)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2.5	1.1	1.0	0.5
9) 장애에 따른 차별	7.1	1.3	1.9	0.6
10) 다문화가정 차별	2.2	1.0	0.8	0.4



【그림 III-1-40】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일 년에 1회 이상)



【그림 III-1-41】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한 달에 1회 이상)

차별 경험 전체를 보면, 일 년에 1회 이상 차별한 경험은 성차별(21.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 차별(20.9%), 연령차별(20.8%), 외모·신체조건 차별(20.3%) 순으로, 차별받은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24.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령차별(21.0%), 외모·신체조건 차별(19.6%), 성차별(1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과 연령차별은 차별한 경험률보다 차별 받은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 사이의 차별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나 생활에서 만나는 성인으로부터의 차별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차별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차별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한편 한 달에 1회 이상 차별한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7.6%), 외모·신체조건 차별(6.7%), 연령차별(6.6%), 성차별(5.9%) 순으로, 차별받은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9.4%), 외모·신체조건 차별(7.8%), 성차별(6.3%)과 연령차별(6.3%)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대표적인 일반원칙 중 하나인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를 볼 수 있는 지표결과로는 이 원칙을 정책화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의 시행 여부가 있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법·제도, 정책, 행정행위 등이 아동·청소년의 이익과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 이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김영지, 김경준 외, 2013: 414).

아동·청소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2013년과 2014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기초연구가 수행되었고,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의 ‘5-5-2. 아동영향평가 도입’ 과제 설정, 제5차(‘13~’17)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5-3-1.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과제 설정 등으로 추진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최근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 확대로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아동영향평가를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유일하다. 성북구는 2014년 5월 29일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아동영향평가를 사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성북구청, 2014). 아동영향평가위원회는 아동의 권리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심의·조정하며, 이와 별도로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권리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는 아동권리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아동영향평가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교육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소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 영역의 12개 지표항목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 제정,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재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신설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4.4%, 9.7%, 17.1%로 중요한 인권 규범과 기구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는 74.2%로 2014년도 70.8% 대비 상승하였다. 65.3%만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인권교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70.6%만이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인권교육 내실화 방안이 필요하다. 일 년에 1회 이상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성차별(21.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 차별(20.9%), 연령차별(20.8%), 외모·신체조건 차별(20.3%) 순으로, 차별받은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24.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령차별(21.0%), 외모·신체조건 차별(19.6%), 성차별(1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차별경험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²²⁾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①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질문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53.5%, 매우 그렇다 31.4%)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84.9%였다.

22) 이 절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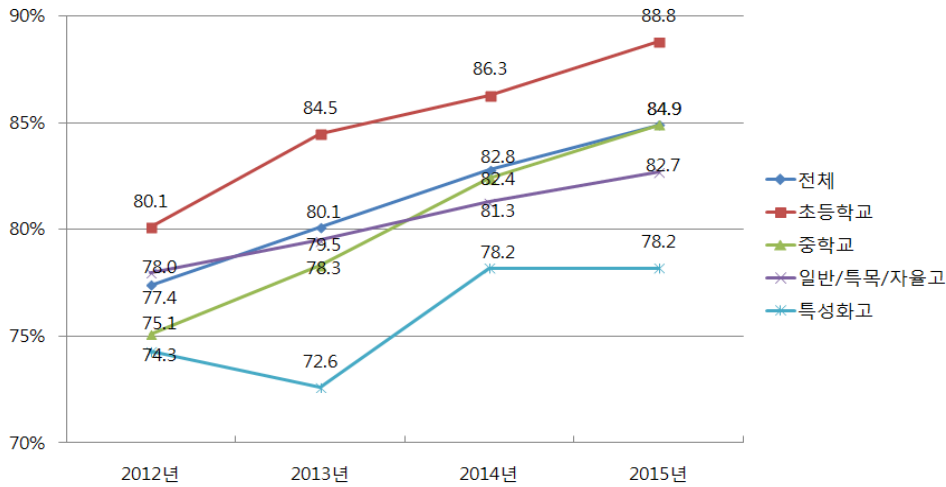
표 III -2-1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1)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4(0.72)	2.3	12.8	53.5	31.4	100.0(10,378)	—
성별	남자	3.12(0.74)	2.8	13.6	52.9	30.8	100.0(5,409)	17.734***
	여자	3.16(0.70)	1.8	12.0	54.2	32.0	100.0(4,969)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3(0.73)	2.4	8.7	42.7	46.1	100.0(2,903)	461.681***
	중학교	3.10(0.69)	2.1	13.0	57.4	27.5	100.0(3,607)	
	일반/특목/자율고	3.06(0.70)	2.3	15.0	57.3	25.4	100.0(3,153)	
	특성화고	2.92(0.69)	3.0	18.8	60.9	17.3	100.0(715)	
지역 규모	대도시	3.15(0.73)	2.4	12.8	51.5	33.2	100.0(4,526)	25.131***
	중소도시	3.11(0.70)	2.1	13.4	55.4	29.1	100.0(4,252)	
	읍면지역	3.16(0.71)	2.5	11.1	54.1	32.3	100.0(1,60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5(0.71)	2.2	12.4	53.4	31.9	100.0(9,358)	26.148**
	한부모가정	3.04(0.74)	2.9	16.9	53.8	26.4	100.0(861)	
	조손가정	3.09(0.71)	2.5	13.3	56.6	27.5	100.0(98)	
	기타	2.97(0.78)	5.4	15.1	56.9	22.6	100.0(61)	
학업 성적	상	3.27(0.71)	1.8	10.1	47.9	40.2	100.0(3,374)	297.731***
	중	3.15(0.69)	2.1	11.8	55.8	30.4	100.0(4,409)	
	하	2.96(0.73)	3.4	18.2	57.1	21.3	100.0(2,565)	
경제적 수준	상	3.28(0.68)	1.4	8.8	49.8	39.9	100.0(5,335)	571.965***
	중	3.05(0.70)	2.6	14.6	58.3	24.5	100.0(3,718)	
	하	2.82(0.76)	5.2	23.8	54.8	16.2	100.0(1,318)	

** $p < .01$, *** $p < .001$.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86.2%로 남학생(83.7%)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교유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88.8%)가 가장 높은 비율로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84.9%), 일반/특목/자율고(82.7%), 특성화고(7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를 살펴보면 읍면지역(86.4%)이 대도시(84.7%), 중소도시(84.5%)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정이 85.3%로 조손가정(84.1%), 한부모가정(80.2%)보다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상88.1%, 중86.2%, 하78.4%),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89.7%, 중82.8%, 하71%) 집안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부모님께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2-1】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심 (연도별 추이)

【그림Ⅲ-2-1】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부모님들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 가와 관련된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의사결정에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정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수치를 보면 2012년에는 78%이었던 수치가 2015년도에는 84.9%까지 증가하였다. 학교 유형별로 전반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특성화고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2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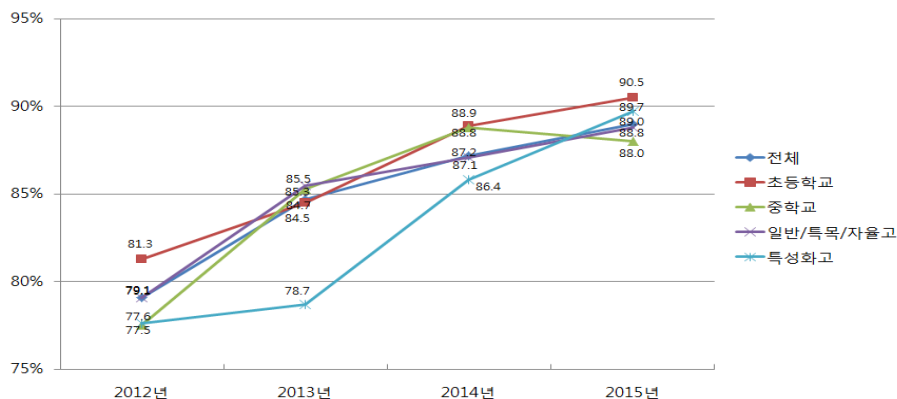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5(0.69)	1.8	9.2	51.5	37.5	100.0(10,355)	—
성별	남자	3.21(0.70)	2.0	10.2	52.8	35.0	100.0(5,399)	38.823***
	여자	3.29(0.68)	1.6	8.1	50.0	40.3	100.0(4,956)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5(0.70)	1.9	7.6	44.3	46.2	100.0(2,881)	152.797***
	중학교	3.21(0.69)	1.6	10.5	53.0	35.0	100.0(3,606)	
	일반/특목/자율고	3.21(0.69)	2.1	9.2	54.1	34.7	100.0(3,153)	
	특성화고	3.17(0.63)	1.1	9.2	61.2	28.5	100.0(715)	
지역 규모	대도시	3.28(0.69)	1.6	8.7	50.0	39.6	100.0(4,526)	32.831***
	중소도시	3.20(0.70)	2.0	10.4	52.9	34.8	100.0(4,230)	
	읍면지역	3.28(0.67)	1.7	7.4	51.7	39.1	100.0(1,600)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6(0.69)	1.7	8.9	51.3	38.1	26.933**
	한부모가정	3.16(0.72)	2.7	11.5	53.2	32.6	
	조손가정	3.23(0.67)	1.0	10.7	52.9	35.4	
	기타	2.99(0.75)	3.5	17.8	55.1	23.7	
학업 성적	상	3.40(0.65)	1.1	6.1	44.9	47.9	329.070***
	중	3.23(0.68)	1.5	9.3	53.7	35.4	
	하	3.08(0.73)	3.2	13.0	56.3	27.5	
경제적 수준	상	3.35(0.67)	1.4	7.1	46.7	44.8	299.845***
	중	3.17(0.68)	1.9	10.4	56.6	31.1	
	하	3.05(0.73)	3.3	14.2	56.3	26.2	

* $p<.05$, ** $p<.01$, *** $p<.001$.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질문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51.5%, 매우 그렇다 37.5%)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89%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학생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비율은 90.3%로 남학생(87.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에서는 초등학교가 9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특성화고(89.7%), 일반/특목/자율고(88.8%), 중학교(88.0%)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90.8%로 타 지역규모(중소도시 87.7%, 대도시 89.6%)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92.8%, 중89.1%, 하83.8%),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91.5%, 중87.7%, 하82.5%)로 더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2-2】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주심 (연도별 추이)

【그림 III-2-2】에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위의 그림과 같이 해마다 전반적인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79.1%에서 2015년에는 8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상급학교 결정 시 부모님께 의견을 존중받는 정도가 매해 낮게 나타나다가 2015년에는 전체 수치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에 78.7%의 수치를 보이고 있었던 것을 보면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2-3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3)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3(0.69)	1.8	7.6	46.3	44.3	100.0(10,370)	—
성별	남자	3.30(0.70)	2.0	8.2	47.9	41.9	100.0(5,406)	28.748***
	여자	3.37(0.68)	1.6	6.9	44.6	46.9	100.0(4,965)	
학교 유형	초등학교	3.50(0.69)	1.7	6.5	32.4	59.4	100.0(2,899)	418.188***
	중학교	3.27(0.69)	2.0	8.3	50.5	39.3	100.0(3,606)	
	일반/특목/자율고	3.28(0.68)	1.8	7.7	50.9	39.6	100.0(3,151)	
	특성화고	3.18(0.63)	1.6	7.9	61.7	28.8	100.0(715)	
지역 규모	대도시	3.36(0.69)	1.6	7.5	44.0	47.0	100.0(4,523)	29.028***
	중소도시	3.30(0.70)	2.0	7.9	48.7	41.5	100.0(4,248)	
	읍면지역	3.33(0.70)	2.1	6.9	46.7	44.3	100.0(1,59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4(0.69)	1.7	7.3	46.0	45.0	100.0(9,352)	33.207***
	한부모가정	3.22(0.74)	3.0	10.0	48.7	38.3	100.0(860)	
	조손가정	3.25(0.75)	3.3	8.6	47.9	40.2	100.0(98)	
	기타	3.13(0.68)	1.6	12.6	57.0	28.8	100.0(61)	
학업 성적	상	3.47(0.66)	1.2	5.5	38.3	55.1	100.0(3,374)	309.137***
	중	3.31(0.68)	1.6	7.4	49.1	42.0	100.0(4,402)	
	하	3.17(0.73)	3.0	10.7	52.2	34.0	100.0(2,563)	
경제적 수준	상	3.44(0.67)	1.4	5.9	40.2	52.6	100.0(5,332)	337.157***
	중	3.24(0.69)	2.0	8.6	52.6	36.8	100.0(3,714)	
	하	3.14(0.74)	3.2	11.5	53.3	32.0	100.0(1,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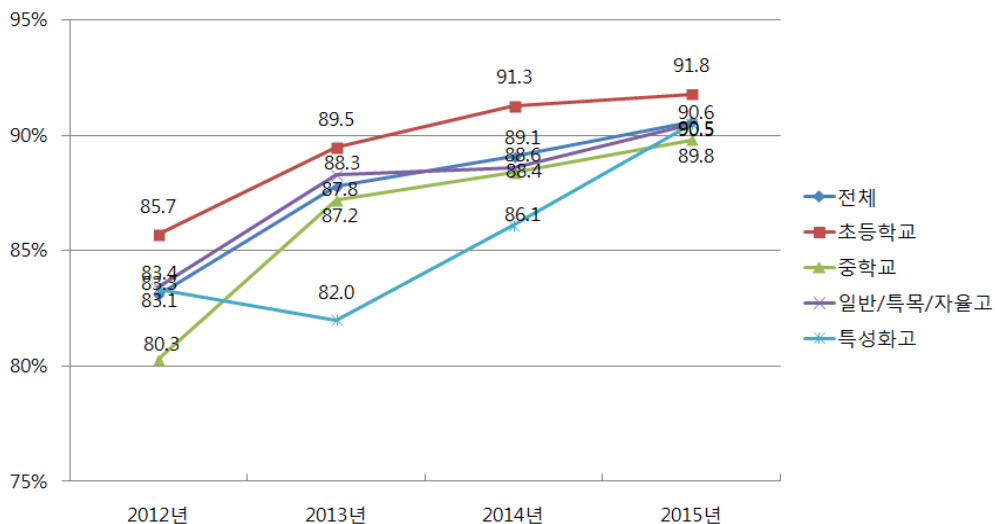
*** $p < .001$.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 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 46.3%, 매우 그렇다 44.3%)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90.6%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91.5%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남학생(89.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유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91.8%)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특목/자율고(90.5%), 특성화고(90.5%), 중학교(89.8%)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91%), 읍면지역(91%), 중소도시(90.2%)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1%), 조손가정(88.1%), 한부모가정(87%)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3.4%, 중91.1%, 하86.2%),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92.8%, 중89.4%, 하85.3%)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부모님의 태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성화고의 수치가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학교의 수치를 살펴보면 2012년에 80.3%로 가장 낮고 그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2015년에도 가장 낮은 비율(89.8%)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존중 질문 유형 중에서도 부모님이 중학생들의 장래희망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비율이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3】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존중해 주심 (연도별 추이)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부모님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 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 48.8%, 매우 그렇다 35.3%)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84.1%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86.3%, 남학생은 82%로 여학생이 의견을 더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87.1%), 일반/특목/자율고(86.8%), 중학교(83%),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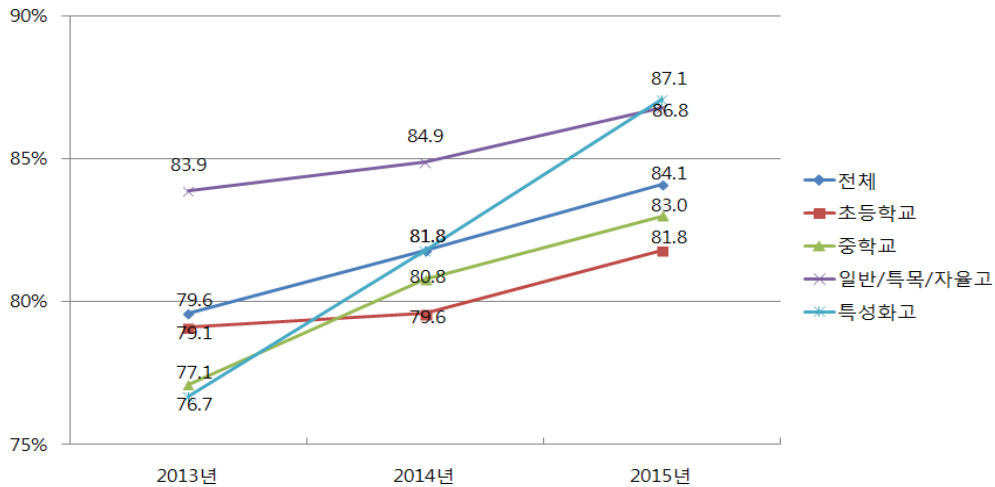
(81.8%)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84.9%), 중소도시(84.3%), 대도시(83.7%)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가족유형으로는 양부모 가정(84.3%), 한부모 가정(82.7%), 조손가정(79%)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고(상87.2%, 중84.3%, 하79.4%),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86.2%, 중82.7%, 하79.6%) 부모님께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추이가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공부시간이나 방법에 있어서 의견을 존중받고 있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의사결정 시 존중정도의 다른 유형에서는 존중받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이 질문 유형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특목/자율고는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해마다 존중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 -2-4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4)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6(0.77)	3.7	12.2	48.8	35.3	100.0(10,367)	-
성별	남자	3.10(0.79)	4.4	13.6	49.5	32.5	100.0(5,402)	58.447***
	여자	3.22(0.75)	2.9	10.8	48.0	38.3	100.0(4,965)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2(0.87)	5.6	12.6	35.8	46.0	100.0(2,897)	359.633***
	중학교	3.10(0.75)	3.4	13.6	52.3	30.7	100.0(3,602)	
	일반/특목/자율고	3.18(0.71)	2.4	10.8	53.5	33.3	100.0(3,153)	
	특성화고	3.08(0.66)	2.5	10.4	63.5	23.6	100.0(715)	
지역 규모	대도시	3.17(0.79)	4.0	12.3	46.7	37.0	100.0(4,522)	23.325***
	중소도시	3.14(0.76)	3.6	12.2	51.2	33.1	100.0(4,245)	
	읍면지역	3.18(0.75)	2.9	12.2	48.5	36.4	100.0(1,59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7(0.77)	3.6	12.2	48.4	35.9	100.0(9,350)	23.284**
	한부모가정	3.08(0.77)	4.4	12.8	52.7	30.0	100.0(859)	
	조손가정	3.03(0.88)	7.8	13.2	46.7	32.3	100.0(97)	
	기타	3.13(0.65)	1.6	10.2	61.6	26.6	100.0(61)	
학업 성적	상	3.30(0.78)	3.7	9.2	41.2	46.0	100.0(3,372)	324.672***
	중	3.14(0.75)	3.2	12.5	51.3	33.0	100.0(4,400)	
	하	3.00(0.77)	4.5	16.1	54.6	24.8	100.0(2,564)	
경제적 수준	상	3.25(0.78)	3.5	10.3	44.1	42.1	100.0(5,329)	244.380***
	중	3.08(0.74)	3.2	14.1	53.8	28.9	100.0(3,713)	
	하	3.00(0.79)	5.5	14.9	53.8	25.8	100.0(1,317)	

** $p < .01$, *** $p < .001$.



【그림 Ⅲ-2-4】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심 (연도별 추이)

(2) 학교에서의 참여정도

①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표 Ⅲ-2-5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내 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26.1	18.8	55.1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3.1	25.7	41.1
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11.9	28.3	59.8
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	13.3	33.5	53.2

학생회운영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전체 문항별 응답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문항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8.3%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2-6

학생회 활동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전체		26.1	18.8	55.1	100.0(7,518)	—
	성별	남자	25.2	18.9	55.9	100.0(3,923)	3.452
		여자	27.0	18.8	54.2	100.0(3,595)	
	학교 유형	중학교	23.4	21.3	55.3	100.0(3,629)	57.034***
		일반/특목/자율고	27.3	17.0	55.6	100.0(3,173)	
		특성화고	34.0	14.0	52.0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26.3	18.8	54.9	100.0(3,249)	6.402
		중소도시	26.2	17.9	55.9	100.0(3,030)	
		읍면지역	24.9	21.1	54.0	100.0(1,239)	
		양부모가정	26.1	19.0	54.9	100.0(6,731)	
	가족 유형	한부모가정	24.9	16.9	58.2	100.0(675)	11.288
		조손가정	34.5	15.2	50.3	100.0(57)	
		기타	23.1	32.0	44.9	100.0(54)	
	학업 성적	상	25.5	19.6	54.9	100.0(2,071)	3.173
		중	25.6	19.0	55.4	100.0(3,111)	
		하	27.1	18.0	54.9	100.0(2,331)	
	경제적 수준	상	26.8	21.2	52.0	100.0(3,379)	40.543***
		중	24.6	18.1	57.3	100.0(2,927)	
		하	27.3	14.0	58.7	100.0(1,210)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체		33.1	25.7	41.1	100.0(7,518)	—
	성별	남자	34.4	22.7	42.9	100.0(3,923)	38.915***
		여자	31.8	29.0	39.2	100.0(3,595)	
	학교 유형	중학교	30.8	26.6	42.6	100.0(3,629)	25.847***
		일반/특목/자율고	36.1	25.3	38.6	100.0(3,173)	
		특성화고	31.8	23.7	44.5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31.4	29.7	38.9	100.0(3,249)	49.947***
		중소도시	33.7	23.0	43.3	100.0(3,030)	
		읍면지역	36.3	22.1	41.7	100.0(1,2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3	26.0	40.6	100.0(6,731)	9.339
		한부모가정	31.1	23.0	45.9	100.0(675)	
		조손가정	33.9	19.4	46.7	100.0(57)	
		기타	34.0	29.9	36.1	100.0(54)	
	학업 성적	상	37.8	24.7	37.5	100.0(2,071)	43.968***
		중	33.4	25.2	41.3	100.0(3,111)	
		하	28.6	27.3	44.1	100.0(2,331)	
	경제적 수준	상	35.5	26.4	38.2	100.0(3,379)	31.148***
		중	32.4	25.1	42.5	100.0(2,927)	
		하	28.4	25.4	46.1	100.0(1,210)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전체		11.9	28.3	59.8	100.0(7,518)	—
	성별	남자	13.1	27.0	59.8	100.0(3,923)	14.309***
		여자	10.7	29.7	59.7	100.0(3,595)	
	학교 유형	중학교	11.6	29.6	58.8	100.0(3,629)	8.321
		일반/특목/자율고	12.0	27.7	60.3	100.0(3,173)	
		특성화고	13.2	24.7	62.1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12.2	27.9	59.9	100.0(3,249)	7.776
		중소도시	12.4	27.7	59.8	100.0(3,030)	
		읍면지역	10.0	30.7	59.3	100.0(1,2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1.7	29.0	59.3	100.0(6,731)	3809.860***
		한부모가정	12.8	21.5	65.7	100.0(675)	
		조손가정	14.9	29.8	55.2	100.0(57)	
		기타	23.7	27.9	48.4	100.0(54)	
	학업 성적	상	10.7	32.7	56.6	100.0(2,071)	34.187***
		중	11.7	27.8	60.5	100.0(3,111)	
		하	13.4	25.1	61.5	100.0(2,331)	
	경제적 수준	상	12.1	31.0	56.9	100.0(3,379)	39.649***
		중	11.5	27.9	60.7	100.0(2,927)	
		하	12.6	21.8	65.5	100.0(1,210)	
학생회 의견을 존중해준다	전체		13.3	33.5	53.2	100.0(7,518)	—
	성별	남자	14.4	31.9	53.7	100.0(3,923)	14.599***
		여자	12.1	35.2	52.7	100.0(3,595)	
	학교 유형	중학교	10.7	38.8	50.5	100.0(3,629)	108.689***
		일반/특목/자율고	16.2	28.2	55.6	100.0(3,173)	
		특성화고	14.0	29.5	56.5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14.6	32.6	52.8	100.0(3,249)	17.189**
		중소도시	13.1	33.2	53.7	100.0(3,030)	
		읍면지역	10.3	36.4	53.2	100.0(1,2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3.4	34.2	52.4	100.0(6,731)	24.485***
		한부모가정	11.6	26.7	61.6	100.0(675)	
		조손가정	13.6	29.2	57.3	100.0(57)	
		기타	20.8	32.7	46.5	100.0(54)	
	학업 성적	상	12.8	35.9	51.3	100.0(2,071)	20.948***
		중	12.6	34.4	53.1	100.0(3,111)	
		하	14.8	30.1	55.1	100.0(2,331)	
	경제적 수준	상	14.8	35.8	49.4	100.0(3,379)	70.463***
		중	10.9	34.1	54.9	100.0(2,927)	
		하	14.8	25.4	59.8	100.0(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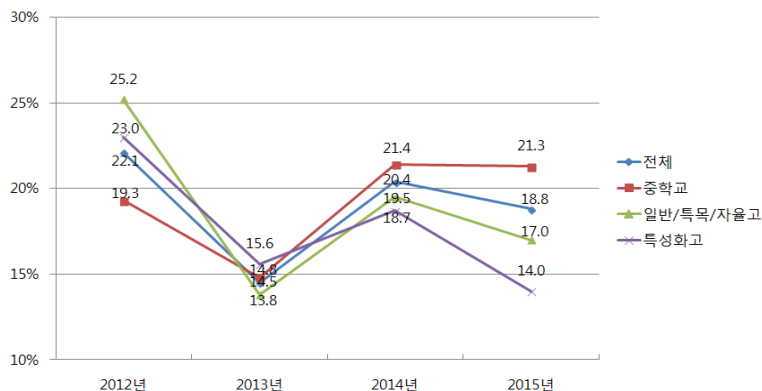
** $p<.01$, *** $p<.001$.

학생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6.1%,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8%,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5.1%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렇다’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유형은 중학교(21.3%)였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특목/자율고(17%), 특성화고(14%)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회 인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1%였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7%,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1.1%였다. 학교 유형별로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특목/자율고가 3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31.8%), 중학교(3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을 보았을 때는 중학교가 26.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25.3%), 특성화고(23.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1.9%였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8.3%였고,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비율은 59.8%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특성화고가 1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특목/자율고(12%), 중학교(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29.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특목/자율고(27.7%), 특성화고(24.7%)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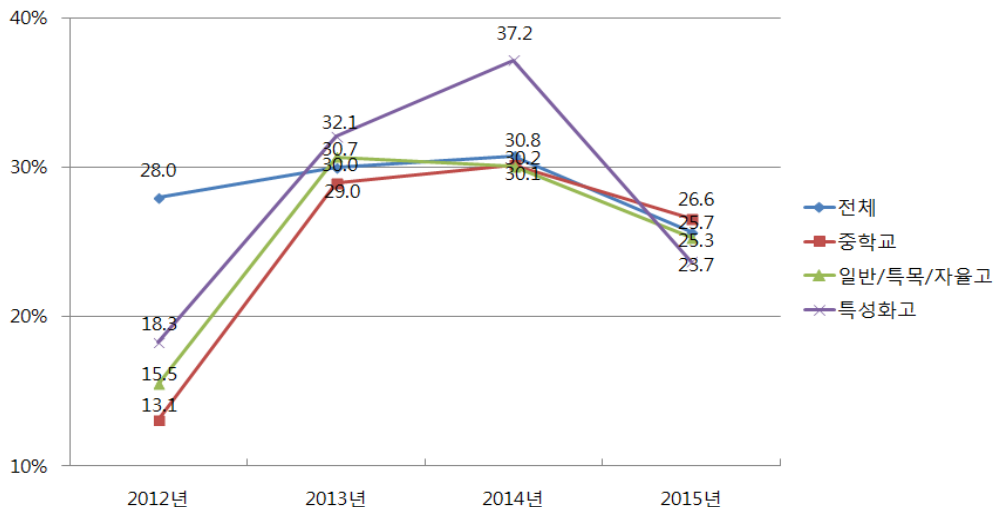
학생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3%,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5%,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3.2%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특목/자율고가 16.2%로 특성화고(14%), 중학교(10.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가 38.8%로 특성화고(29.5%), 일반/특목/자율고(28.2%)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Ⅲ-2-5】 학생회 활동_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음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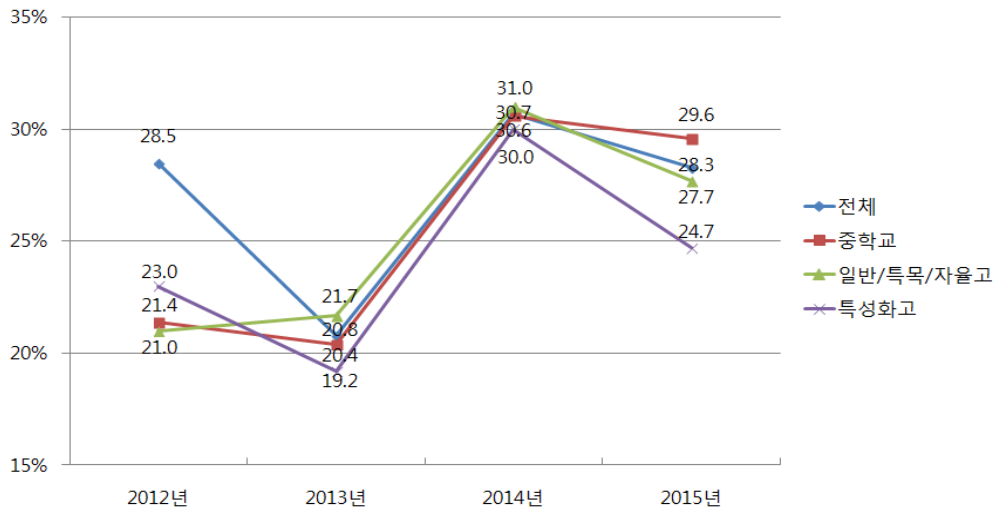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 비해 전체 비율은 낮아졌지만 2013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그 다음해부터 다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6】을 보면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는 것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그렇다’로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 유형이 2014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특성화고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일반/특목/자율고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2015년도에는 그 비율이 가장 낮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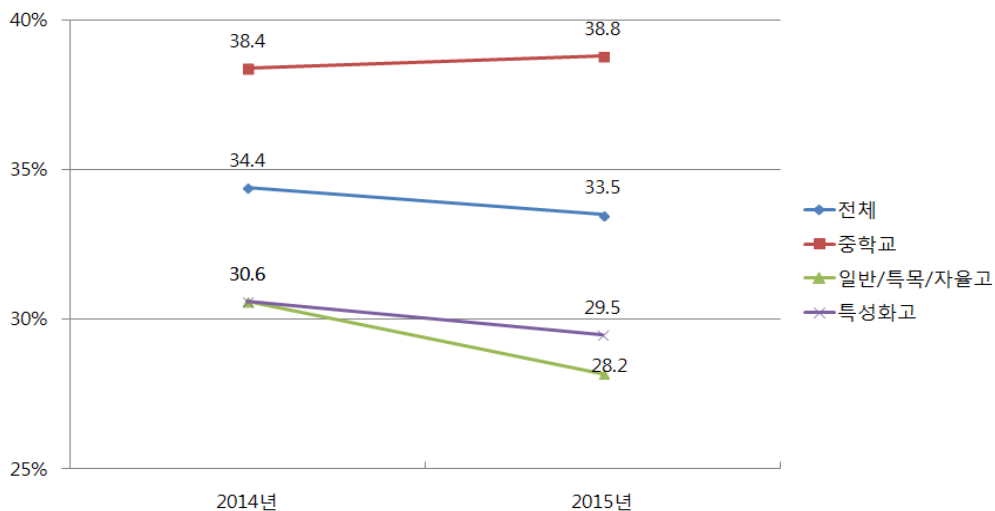
【그림 III-2-6】 학생회 활동_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함 (연도별 추이)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I-2-7】에서 보여주듯이 2012년보다 현재의 수치가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성화고의 지원은 2012년 오히려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높았던 것과는 반대로 현재를 기준으로 다른 학교유형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림 Ⅲ-2-7】 학생회 활동_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 함 (연도별 추이)

학생회의 의견을 어느정도 존중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치가 2014년 34.4%에서 2015년에는 33.5%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존중 정도로 응답한 중학교의 수치는 두 해 모두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일반/특목/자율고의 존중정도는 2014년(30.6%)에 비해 2015년(28.2%)이 더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8】 학생회 활동_학생회 의견을 존중해 줌 (연도별 추이)

② 학급회의 운영 여부

학급회의 운영여부에 대해 61.6%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8.4%가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학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정도가 초등학교(79.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56.7%), 일반/특목/자율고(53.4%), 특성화고(50.9%)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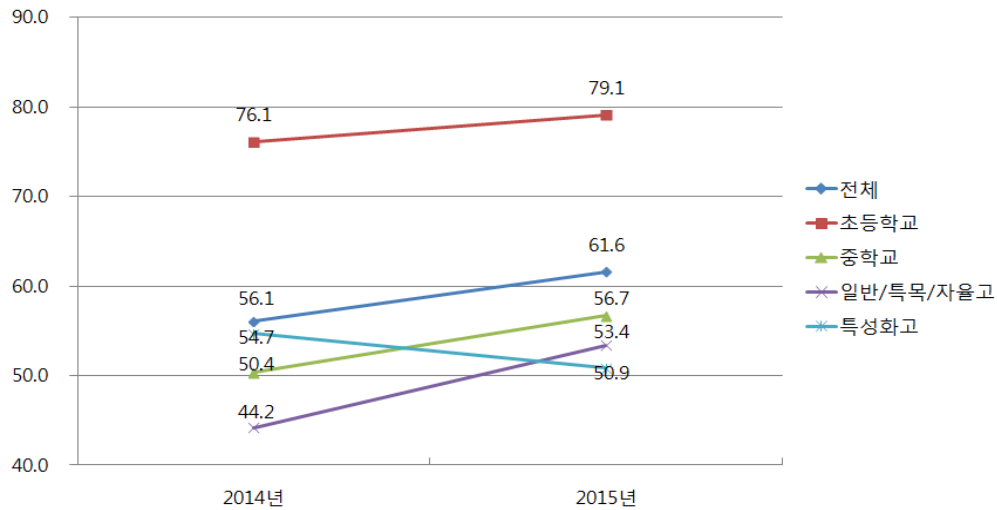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여부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그림Ⅲ-2-9】를 통해 살펴보면 2014년 56.1%에서 2015년 61.6%로 전반적으로 학급회의 운영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특목/자율고에서는 전반적으로 운영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특성화고에서는 학급회의 운영이 감소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Ⅲ-2-7 학급회의 운영여부

(단위 : %(명))

구분		운영되고 있다	운영되지 않는다	전체(N)	χ^2
전체		61.6	38.4	100.0(10,446)	—
성별	남자	59.3	40.7	100.0(5,443)	25.735***
	여자	64.1	35.9	100.0(5,0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79.1	20.9	100.0(2,935)	541.118***
	중학교	56.7	43.3	100.0(3,626)	
	일반/특목/자율고	53.4	46.6	100.0(3,171)	
	특성화고	50.9	49.1	100.0(714)	
지역 규모	대도시	64.0	36.0	100.0(4,567)	22.282***
	중소도시	59.1	40.9	100.0(4,270)	
	읍면지역	61.5	38.5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1.8	38.2	100.0(9,424)	8.792*
	한부모가정	58.8	41.2	100.0(864)	
	조손가정	68.7	31.3	100.0(97)	
	기타	50.4	49.6	100.0(60)	
학업 성적	상	62.8	37.2	100.0(3,398)	29.582***
	중	63.2	36.8	100.0(4,441)	
	하	57.0	43.0	100.0(2,576)	
경제적 수준	상	64.1	35.9	100.0(5,378)	43.944***
	중	60.5	39.5	100.0(3,739)	
	하	54.5	45.5	100.0(1,322)	

* $p<.05$, *** $p<.001$.



【그림 Ⅲ-2-9】 학급회의 운영여부 (연도별 추이)

③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학급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 53%, 매우 그렇다 29.6%)가 82.6%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2%)가 17.4%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85.1%로 타 유형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특목/자율고(85%), 특성화고(79.5%), 중학교(7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8 학급회의 참여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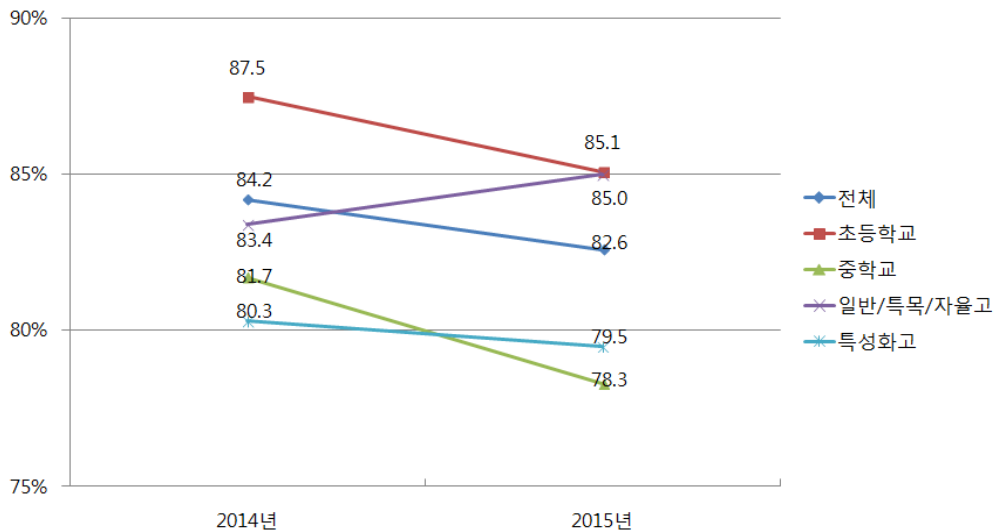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8(0.77)	4.2	13.2	53.0	29.6	100.0(6,380)	-
성별	남자	3.05(0.79)	5.1	13.4	52.8	28.7	100.0(3,201)	13.007**
	여자	3.11(0.75)	3.4	13.0	53.1	30.5	100.0(3,179)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5(0.81)	4.2	10.8	40.8	44.3	100.0(2,304)	412.810***
	중학교	2.94(0.76)	5.0	16.7	57.5	20.8	100.0(2,040)	
	일반/특목/자율고	3.04(0.68)	3.0	12.1	62.5	22.5	100.0(1,679)	
	특성화고	2.92(0.75)	5.9	14.6	61.0	18.5	100.0(357)	
지역 규모	대도시	3.12(0.77)	3.9	12.5	50.8	32.7	100.0(2,897)	26.964***
	중소도시	3.05(0.77)	4.5	13.6	54.2	27.7	100.0(2,501)	
	읍면지역	3.02(0.76)	4.5	14.1	56.2	25.3	100.0(983)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9(0.77)	4.1	13.0	52.8	30.1	100.0(5,784)	13.390
	한부모가정	3.01(0.79)	5.5	14.2	54.5	25.8	100.0(500)	
	조손가정	3.06(0.71)	2.3	15.6	56.2	26.0	100.0(66)	
	기타	2.73(0.84)	9.3	23.3	52.5	14.8	100.0(30)	
학업 성적	상	3.28(0.72)	2.3	9.2	47.2	41.3	100.0(2,115)	323.790***
	중	3.06(0.75)	3.9	13.3	55.8	27.0	100.0(2,785)	
	하	2.83(0.79)	7.6	18.8	56.7	16.9	100.0(1,457)	
경제적 수준	상	3.15(0.76)	3.4	12.0	50.6	34.0	100.0(3,420)	83.047***
	중	3.01(0.77)	5.3	13.7	55.9	25.0	100.0(2,242)	
	하	2.96(0.77)	4.9	17.0	55.4	22.7	100.0(713)	

** $p < .01$, *** $p < .001$.

【그림 III-2-10】에서는 학급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치가 2014년 84.2%에서 2015년 82.6%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특목/자율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 유형들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일반/특목/자율고는 2014년 83.4%에서 2015년 85.1%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며 학급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 -2-10】 학급회의 참여정도 (연도별 추이)

④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학생회 대표가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6.7%로 나타났고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에 5.2%,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18.8%, ‘잘 모르겠다’에 69.3%로 응답하였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학생회 대표의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전달여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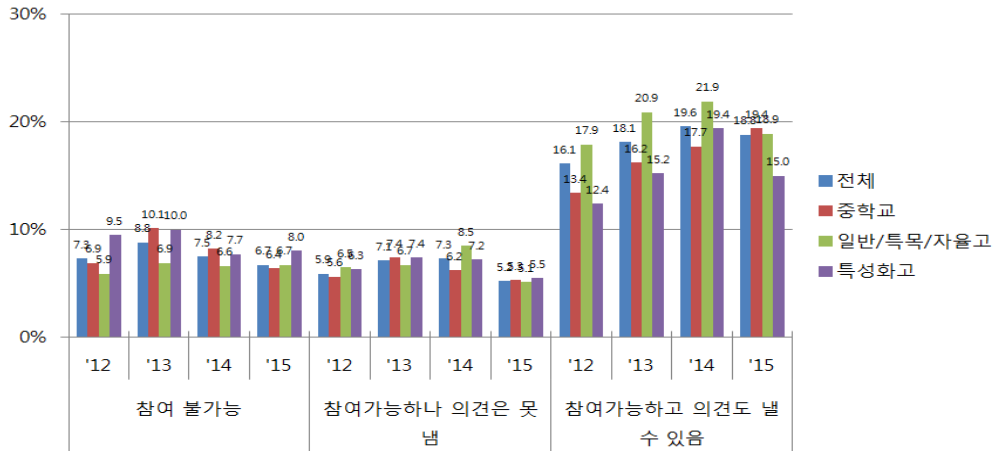
표 Ⅲ-2-9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단위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 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6.7	5.2	18.8	69.3	100.0(7,518)	—
성별	남자	7.7	5.5	16.4	100.0(3,923)	40.130***
	여자	5.6	5.0	21.4	100.0(3,595)	
학교 유형	중학교	6.4	5.3	19.4	100.0(3,629)	9.243
	일반/특목/자율고	6.7	5.1	18.9	100.0(3,173)	
	특성화고	8.0	5.5	15.0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7.7	6.0	18.7	100.0(3,249)	18.610**
	중소도시	5.8	4.5	18.5	100.0(3,030)	
	읍면지역	6.2	5.0	19.4	100.0(1,2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5	5.2	19.0	100.0(6,731)	30.955***
	한부모가정	6.3	4.9	17.4	100.0(675)	
	조손가정	19.9	9.6	13.6	100.0(57)	
	기타	19.2	4.9	15.5	100.0(54)	
학업 성적	상	6.5	4.3	23.3	100.0(2,071)	72.843***
	중	6.2	5.1	19.5	100.0(3,111)	
	하	7.5	6.3	13.8	100.0(2,331)	
경제적 수준	상	6.6	5.5	21.2	100.0(3,379)	33.793***
	중	6.5	5.0	17.9	100.0(2,927)	
	하	7.5	5.3	14.1	100.0(1,210)	

** $p < .01$, *** $p < .001$.



【그림 III-2-11】 학생회 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연도별 추이)

【그림 III-2-11】을 통해 학생회 대표의 운영위원회의 참여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도 낼 수 있음에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보다도 ‘잘 모르겠다’에서 가장 높은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일반/특목/자율고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도 낼 수 있음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2015년도에는 그 비율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고 특성화고에서의 비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⑤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표 III-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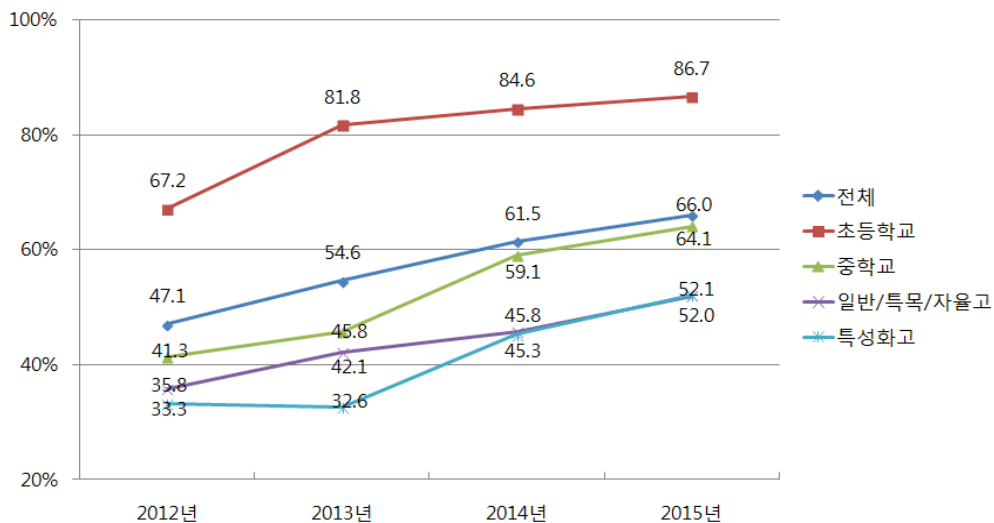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70(0.86)	11.1	22.9	50.6	15.4	100.0(10,366)	—
성별	남자	2.68(0.89)	13.0	22.0	49.4	15.6	100.0(5,405)	43.730***
	여자	2.73(0.83)	9.1	23.9	51.9	15.1	100.0(4,961)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0(0.78)	4.5	8.9	49.2	37.5	100.0(2,932)	1951.268***
	중학교	2.62(0.82)	12.0	23.9	54.6	9.5	100.0(3,583)	
	일반/특목/자율고	2.41(0.80)	15.5	32.5	47.8	4.2	100.0(3,150)	
	특성화고	2.41(0.77)	14.5	33.4	49.0	3.1	100.0(701)	
지역 규모	대도시	2.71(0.87)	11.2	22.5	50.2	16.1	100.0(4,539)	8.714
	중소도시	2.68(0.86)	11.3	23.7	50.6	14.4	100.0(4,234)	
	읍면지역	2.74(0.85)	10.3	21.9	51.7	16.1	100.0(1,592)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1(0.86)	11.0	23.0	50.2	15.8	100.0(9,352)	22.658**
	한부모가정	2.63(0.84)	12.6	22.5	53.7	11.2	100.0(858)	
	조손가정	2.81(0.81)	8.8	17.2	58.0	16.0	100.0(97)	
	기타	2.51(0.89)	18.2	20.0	53.8	7.9	100.0(58)	
학업 성적	상	2.83(0.89)	9.5	20.8	46.5	23.2	100.0(3,379)	337.433***
	중	2.71(0.83)	10.3	22.1	53.4	14.1	100.0(4,401)	
	하	2.51(0.83)	14.7	27.1	51.1	7.1	100.0(2,555)	
경제적 수준	상	2.79(0.89)	10.7	19.7	49.2	20.4	100.0(5,331)	287.028***
	중	2.65(0.82)	10.7	24.6	53.3	11.4	100.0(3,715)	
	하	2.47(0.81)	13.8	31.4	48.6	6.2	100.0(1,312)	

** $p < .01$, *** $p < .001$.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참여와 존중에 관련된 사항으로 학교의 규칙 및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여부를 질문하였다. 응답자 중 66%(그런 편이다 50.6%, 매우 그렇다 15.4%)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4%(전혀 그렇지 않다 11.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9%)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86.7%로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64.1%), 특성화고(52.1%), 일반/특목/자율고(52.0%)의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I-2-12】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연도별 추이)

교칙 재·개정 시 학생 참여 허용 비율의 연도별 추이에 대해 보면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12년에는 47.1%, 2013년에는 54.6%, 2014년에는 61.5%, 2015년에는 66%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진적으로 교칙을 재·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의 추세를 보면 2012년(33.3%)에 비해 2015년에 52.1%로 많이 증가한 수치이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매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3) 사회에서의 참여정도

① 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정도는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로 살펴보고 있다.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이 있지만 정책개발과 환류 시스템이 법제화되어 공식적인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특별회의 의제수용률이 유일하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의제의 통지). 2013년에는 진로체험활동 분야의 29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96.5%의 높은 정책반영률을 보였다.

표 III-2-11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연도	의제	수용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35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1개 과제 수용	31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자원망 조성(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29개 수용 (82.9%)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49개 수용 (92.4%)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청소년백서, 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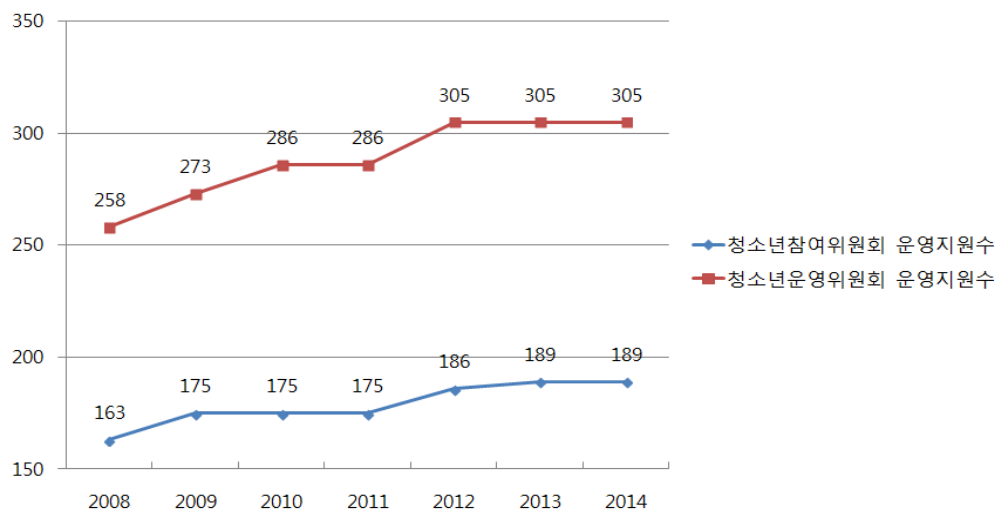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개발을 하는 전국단위 법정 참여기구로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참여기구로 전국 189개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의 청소년참여를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305개가 운영 중이다.

표 III-2-12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4) (단위 :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청소년참여위원회	163	175	175	175	186	189	189
청소년운영위원회	258	273	286	286	305	305	305

* 출처: 김경준·김희진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p.299 재인용.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4a). 청소년백서, p.79.



【그림 III-2-13】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표 III-2-13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4) (단위 : 개)

	계	여성 가족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참여위원회	189	1	6	3	3	10	2	2	6	1	32	19	5	16	15	23	24	20	1
청소년운영위원회	305	-	44	14	9	12	6	10	7	-	62	32	15	14	16	14	13	15	22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청소년백서, pp.79-81.

아동총회는 전국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아동대표와 의장단 등이 모여 아동정책 관련 토론과 결의문 채택 등을 해나가는 아동분야 참여기구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이 중심이 된다. 아동총회를 통해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사항을 결의문으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동총회 제안사항의 정책반영 및 환류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표 III-2-14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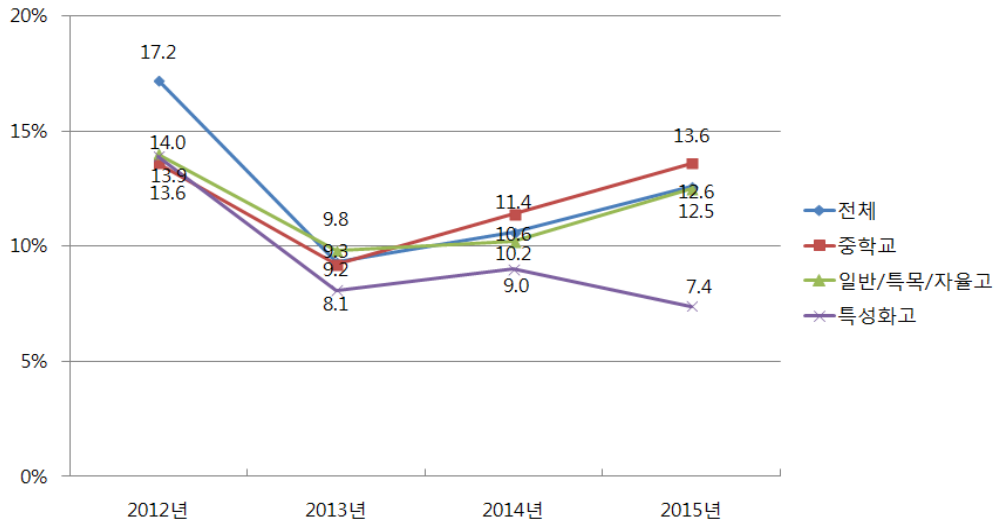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제1회	• 일시: 2004. 7. 27 ~ 29(2박 3일) • 주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만들기 • 참여인원: 112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2회	• 일시: 2005. 10. 20 ~ 22(2박 3일) • 주제: 아동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 참여인원: 480명(지역대회 개최)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3회	• 일시: 2006. 9. 21 ~ 23(2박 3일) • 주제: 아동, 그 차별의 벽을 넘어서 • 참여인원: 500명(이주아동 참가, 지역대회 개최)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4회	• 일시: 2007. 8. 14 ~ 16(2박 3일) • 주제: 아동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 참여인원: 560명(아동권리 수호천사 및 교육청 아동단체 추천)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5회	• 일시: 2008. 8. 18 ~ 20(2박 3일) • 주제: 우리들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 참여인원: 총 610명(아동 580명, 지도자 30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6회	• 일시: 2009. 11. 17 ~ 19(2박 3일) • 주제: 서로 존중해주는 세상을 위하여 • 참여인원: 총 547명(아동 418명, 지도자 129명) - 지역대회: 410명 - 본대회: 137명(지역대회 선발아동, 교육청 아동단체 추천)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7회	• 일시: 2010. 8. 24 ~ 26(2박 3일) • 주제: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말하다 • 참여인원: 총 1,335명(아동 1,040명, 지도자 295명) - 지역대회: 1,182명 - 본대회: 153명(지역대회 선발아동, 이주새터민 의장단 등)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구분	주요내용
제8회	• 일시: 2011. 8. 17 ~ 19(2박 3일) • 주제: 세상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통 • 참여인원: 총 1,741명(아동 1,338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3명) - 지역대회: 1,583명(아동 1,216명, 지도자 및 실무자 367명) - 본대회: 158명(아동 122명, 지도자 및 실무자 36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9회	• 일시: 2012. 8. 8 ~ 10(2박 3일) • 주제: 꿈, 행복을 향한 도전 • 참여인원: 총 1,831명(아동 1,529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2명) - 지역대회: 1,663명(아동 1,307명, 지도자 및 실무자 356명) - 본대회: 168명(아동 122명, 지도자 및 실무자 46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10회	• 일시: 2013. 8. 7 ~ 9(2박 3일) • 주제: 건강한 아동, 건강한 대한민국 • 참여인원: 총 1,174명(아동 897명, 지도자 및 실무자 277명) - 지역대회: 1,046명(아동 799명, 지도자 및 실무자 247명) - 본대회: 128명(아동 98명, 지도자 및 실무자 30명) • 주관: InCRC 국제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11회	• 일시: 2014. 8. 11 ~ 13(2박 3일) • 주제: 대한민국 아동안전은 녹색불입니까? • 참여인원: 총 810명(아동 555명, 지도자 및 실무자 255명) - 지역대회: 676명(아동 456명, 지도자 및 실무자 220명) - 본대회: 134명(아동 99명, 지도자 및 실무자 35명) •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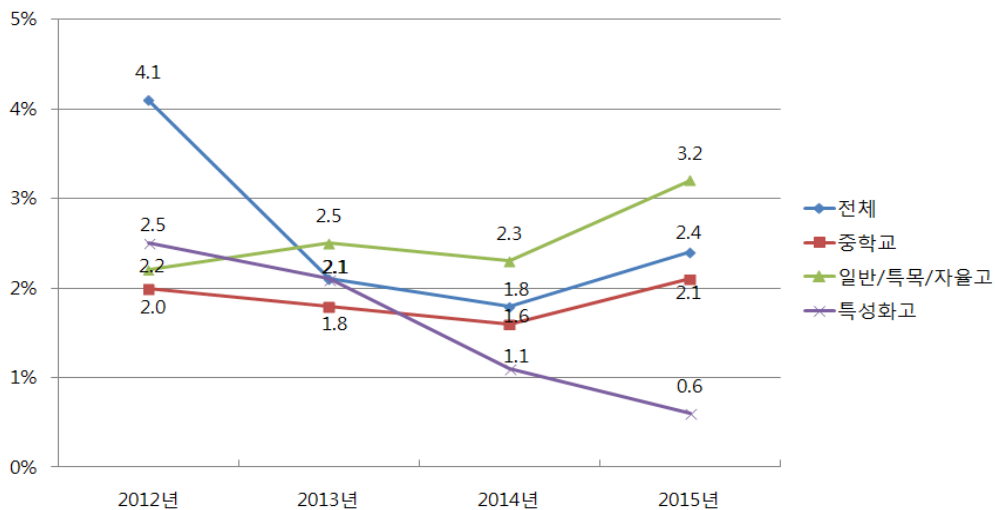
* 출처: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5),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0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 사이트 <http://www.kocconet.or.kr>에서 인출.

②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특별회의 등)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 중 인지도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2013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2년에 17.2%의 수치를 나타냈고 2015년에는 12.6%인 것으로 보아 2012년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서는 초등학생(13.6%)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알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III-2-14】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연도별 추이)



【그림 III-2-15】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참여경험 (연도별 추이)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도 있고 참여해 본 경험도 있는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볼 때 전체적인 수치가 2012년(4.1%)에 가장 높았다가 현재(2.4%)에는 그 수치보다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의 참여경험은 2012년에는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 외 다른 유형들은 점차적으로 참여경험이 높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51.7%,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35.8%,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에 10.2%,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에 2.4%의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남학생(2.2%)보다 여학생(2.7%)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유형별 차이를 보면 일반/특목/자율고가 3.2%로 중학교(2.1%), 특성화고(0.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 규모별로 보면 읍면지역이 3.7%로 중소도시(2.5%), 대도시(1.9%)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상3.5%, 중2.1%, 하1.9%)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참여율이 높았다.

표 III-2-15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전체(N)	χ^2
전체		51.7	35.8	10.2	2.4	100.0(7,507)	—
성별	남자	56.9	31.4	9.5	2.2	100.0(3,918)	93.545***
	여자	45.9	40.5	10.9	2.7	100.0(3,589)	
학교 유형	중학교	48.3	38.1	11.5	2.1	100.0(3,626)	65.932***
	일반/특목/자율고	54.4	33.0	9.3	3.2	100.0(3,167)	
	특성화고	56.2	36.4	6.8	0.6	100.0(715)	
지역 규모	대도시	51.7	36.3	10.1	1.9	100.0(3,243)	17.326**
	중소도시	52.7	34.5	10.3	2.5	100.0(3,028)	
	읍면지역	49.1	37.3	9.9	3.7	100.0(1,23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1.4	36.0	10.3	2.4	100.0(6,721)	8.237
	한부모가정	53.6	33.9	9.6	2.9	100.0(675)	
	조손가정	63.1	27.0	9.9	0.0	100.0(57)	
	기타	50.9	40.3	5.2	3.6	100.0(54)	
학업 성적	상	50.0	36.1	10.3	3.5	100.0(2,071)	32.793***
	중	50.2	36.6	11.1	2.1	100.0(3,100)	
	하	55.2	34.2	8.7	1.9	100.0(2,331)	
경제적 수준	상	50.2	36.5	10.8	2.4	100.0(3,374)	11.380
	중	52.4	35.1	10.3	2.3	100.0(2,922)	
	하	54.0	35.3	8.0	2.7	100.0(1,210)	

** $p < .01$, *** $p < .001$.

③ 선거 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을 때 현재의 투표연령인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24.3%였고 ‘현재 연령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52.4%였으며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7.9%,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5.4%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현재의 투표연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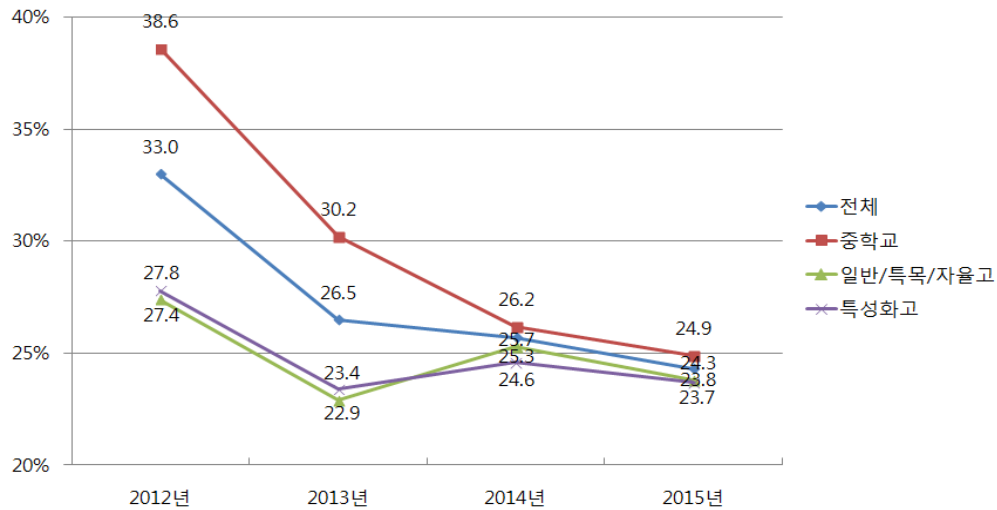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여학생(24.2%)보다는 남학생(24.5%)이 투표 연령 하향화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 유형에서는 중학교(24.9%), 일반/특목/자율고(23.8%), 특성화고(2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유형으로는 양부모 가정(24.5%), 한부모가정(24.2%), 조손가정(12.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으로는 성적이 낮을수록(하25.7%, 중24.6%, 상22.5%) 투표연령 하향화에 응답을 보이고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25.6%), 상(24.9%), 중(23.2%)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16 투표연령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현재 만19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24.3	52.4	7.9	15.4	100.0(7,518)	—
성별	남자	24.5	47.7	10.3	17.6	100.0(3,923)	120.588***
	여자	24.2	57.5	5.3	13.0	100.0(3,595)	
학교 유형	중학교	24.9	49.5	6.9	18.7	100.0(3,629)	92.136***
	일반/특목/자율고	23.8	56.3	8.7	11.1	100.0(3,173)	
	특성화고	23.7	49.8	9.3	17.2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24.7	52.4	8.4	14.5	100.0(3,249)	8.361
	중소도시	23.6	52.7	7.9	15.8	100.0(3,030)	
	읍면지역	25.4	51.5	6.5	16.6	100.0(1,2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4.5	53.1	7.5	14.9	100.0(6,731)	32.252***
	한부모가정	24.2	46.4	11.2	18.2	100.0(675)	
	조손가정	12.7	51.9	10.4	25.0	100.0(57)	
	기타	23.0	44.7	7.1	25.2	100.0(54)	
학업 성적	상	22.5	58.4	9.0	10.1	100.0(2,071)	106.254***
	중	24.6	52.6	7.3	15.5	100.0(3,111)	
	하	25.7	46.7	7.8	19.8	100.0(2,331)	
경제적 수준	상	24.9	53.0	7.7	14.5	100.0(3,379)	16.790*
	중	23.2	52.5	7.4	16.9	100.0(2,927)	
	하	25.6	50.5	9.6	14.3	100.0(1,210)	

* $p<.05$, *** $p<.001$.



【그림 Ⅲ-2-16】 투표연령 하향화에 대한 의견 (연도별 추이)

현재 투표연령에 대해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2012년에 33%였던 것에 비해 2015년에 24.3%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2년에 중학생이 투표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38.6%로 가장 높았으며 이 비율은 매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타 유형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④ 참여권 보장 수준, 참여 장애 이유

가. 참여권 보장 수준

표 Ⅲ-2-17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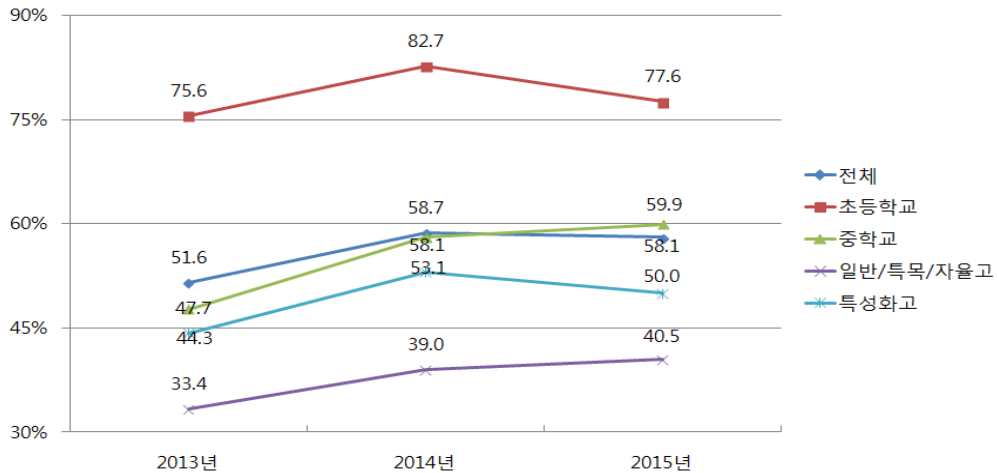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1(0.94)	14.6	27.3	40.5	17.6	100.0(10,323)	-
성별	남자	2.57(0.96)	17.1	26.2	39.7	17.0	100.0(5,390)	58.461***
	여자	2.66(0.91)	11.8	28.6	41.4	18.2	100.0(4,932)	
학교 유형	초등학교	2.99(0.81)	5.4	17.1	50.9	26.7	100.0(2,818)	964.927***
	중학교	2.62(0.89)	13.0	27.1	44.8	15.1	100.0(3,623)	
	일반/특목/자율고	2.30(0.97)	23.5	36.0	27.5	13.0	100.0(3,166)	
	특성화고	2.45(0.96)	19.4	30.6	35.8	14.2	100.0(716)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2.60(0.96)	15.8	27.0	38.8	18.4	100.0(4,506)	30.096***
	중소도시	2.60(0.92)	14.3	27.9	41.8	16.0	100.0(4,218)	
	읍면지역	2.69(0.92)	11.8	26.8	42.0	19.3	100.0(1,59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1(0.94)	14.4	27.3	40.8	17.5	100.0(9,311)	14.685
	한부모가정	2.59(0.95)	14.9	28.8	38.1	18.1	100.0(854)	
	조손가정	2.66(1.04)	18.0	22.4	35.2	24.3	100.0(97)	
	기타	2.43(0.99)	24.4	20.1	43.5	12.0	100.0(60)	
학업 성적	상	2.65(0.95)	13.8	27.1	39.4	19.8	100.0(3,340)	39.650***
	중	2.63(0.92)	13.6	27.2	41.9	17.3	100.0(4,391)	
	하	2.53(0.95)	17.2	28.0	39.8	15.0	100.0(2,562)	
경제적 수준	상	2.70(0.93)	12.7	24.7	42.3	20.3	100.0(5,297)	174.574***
	중	2.56(0.91)	14.3	29.9	40.9	14.8	100.0(3,704)	
	하	2.38(0.99)	22.8	30.8	32.0	14.5	100.0(1,315)	

*** $p < .001$.

우리사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응답자 중 ‘그렇다’(그런 편이다 40.5%, 매우 그렇다 17.6%)라고 응답한 비율은 58.1%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4.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3%)고 생각하는 비율은 41.9%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변인별로 나타난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59.6%)이 남학생(56.7%)보다 청소년 참여 권리보장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초등학교(77.5%)가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59.9%), 특성화고(50%), 일반/특목/자율고(4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61.3%), 중소도시(57.8%), 대도시(57.2%)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별로는 상(59.1%), 중(59.1%), 하(54.8%),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62.6%), 중(55.8%), 하(46.5%)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그림 Ⅲ-2-17】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 참여 권리보장 수준 (연도별 추이)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에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연도별 추이가 【그림 Ⅲ-2-17】에 나타나 있다. 변화의 폭은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추이가 2014년에 58.7%로 증가했다가 2015년에 58.1%로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타 유형에 비해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은 청소년들의 권리보장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적은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에 33.4%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던 것보다 2015년에 40.5%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나. 참여의 장애

표 Ⅲ-2-18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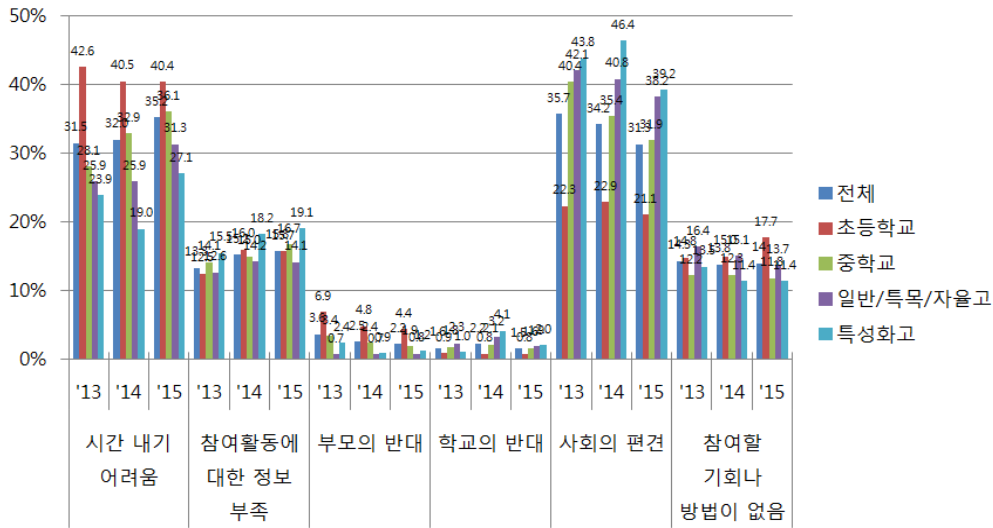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부모님 (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35.2	15.8	2.2	1.5	31.3	14.0	100.0(10,416)	—
성별	남자	39.6	15.6	2.5	1.8	28.3	100.0(5,426)	137.684***
	여자	30.5	16.0	1.9	1.1	34.5	100.0(4,990)	
학교 유형	초등학교	40.4	15.7	4.4	0.8	21.1	100.0(2,913)	375.152***
	중학교	36.1	16.7	1.9	1.6	31.9	100.0(3,623)	
	일반/특목/자율고	31.3	14.1	0.8	1.9	38.2	100.0(3,167)	
	특성화고	27.1	19.1	1.2	2.0	39.2	100.0(714)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35.8	15.1	2.1	1.5	31.9	13.6	100.0(4,553)	12.858
	중소도시	34.8	15.9	2.3	1.6	30.7	14.6	100.0(4,256)	
	읍면지역	34.8	17.6	2.3	0.9	31.1	13.4	100.0(1,60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4	15.7	2.2	1.5	31.3	13.9	100.0(9,396)	17.174
	한부모가정	34.1	16.3	2.5	0.9	32.1	14.1	100.0(861)	
	조손가정	31.0	20.1	3.3	1.4	28.7	15.5	100.0(98)	
	기타	38.0	20.6	5.7	1.6	16.2	17.8	100.0(61)	
학업 성적	상	34.8	14.4	2.1	1.3	33.2	14.1	100.0(3,388)	19.943*
	중	35.6	16.1	2.2	1.3	30.7	14.1	100.0(4,425)	
	하	35.0	17.1	2.4	1.9	29.9	13.8	100.0(2,572)	
경제적 수준	상	38.0	14.7	2.4	1.5	29.8	13.6	100.0(5,359)	66.257***
	중	33.9	17.2	2.0	1.3	31.4	14.1	100.0(3,727)	
	하	27.9	16.0	2.0	1.9	37.1	15.2	100.0(1,322)	

* $p<.05$, *** $p<.001$.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답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한 이유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35.2%)’였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 31.3%, 그 다음으로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8%)’,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음(14%)’,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2.2%)’,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1.5%)’의 순서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는 남학생은 ‘시간 부족’(39.6%), 여학생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4.5%)을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40.4%)와 중학생(36.1%)은 ‘시간부족’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38.2%)과 특성화고(39.2%) 학생들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의 이유가 높게 나왔다.



【그림 III-2-18】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 (연도별 추이)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연도별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간 내기 어려움’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었다. 2013년~2015년 매해 동안 ‘시간 부족’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장 높은 응답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참여 기회나 방법을 몰라서 참여가 어렵다고 한 응답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참여증진을 위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①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청소년들의 생각을 가정, 학교, 사회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가정에서 생각의 자유를 존중받고 있는 정도(87.3%)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78.1%), 사회(62.9%)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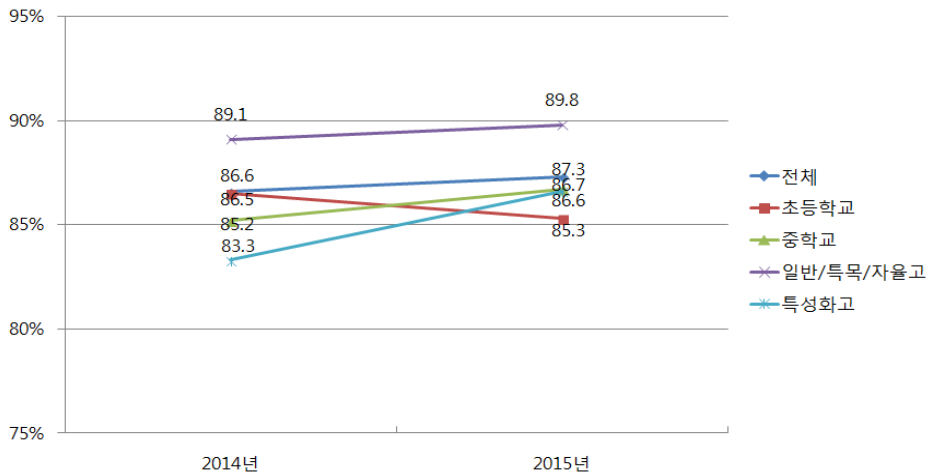
표 III-2-19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가정, 학교, 사회) (단위 : %)

내 용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3.21(0.76)	3.8	8.9	49.6	37.7
2)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2.99(0.79)	4.9	17.0	52.0	26.1
3)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2.73(0.89)	10.1	26.9	42.9	20.0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87.3%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49.6%, 매우 그렇다 37.7%)로 응답하였고 12.7%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8%, 그렇지 않은 편이다 8.9%)고 응답했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10.9%)보다는 남학생(14.4%)이 ‘그렇지 않다’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14.7%)가 타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특성화고(13.4%), 중학교(13.2%), 일반/특목/자율고(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13.6%), 읍면지역(12.7%), 대도시(11.9%)의 순으로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16.4%)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부모 가정(16.2%), 양부모 가정(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18.1%), 중(12.9%), 상(8.5%)의 순서로,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16.5%), 중(14.4%), 상(10.6%)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Ⅲ-2-20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 가정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1(0.76)	3.8	8.9	49.6	37.7	100.0(10,432)	—
성별	남자	3.18(0.79)	4.9	9.5	48.6	37.0	100.0(5,438)	43.185***
	여자	3.25(0.71)	2.6	8.3	50.6	38.5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5(0.84)	5.6	9.1	39.7	45.6	100.0(2,924)	234.403***
	중학교	3.16(0.75)	3.9	9.3	53.6	33.1	100.0(3,624)	
	일반/특목/자율고	3.26(0.69)	2.0	8.2	51.6	38.2	100.0(3,168)	
	특성화고	3.09(0.71)	3.8	9.6	60.3	26.3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3.25(0.75)	3.6	8.3	47.9	40.2	100.0(4,562)	27.859***
	중소도시	3.17(0.76)	4.0	9.6	51.6	34.9	100.0(4,261)	
	읍면지역	3.22(0.76)	3.9	8.8	49.0	38.2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2(0.75)	3.6	8.7	49.4	38.3	100.0(9,413)	49.514***
	한부모가정	3.11(0.79)	5.2	11.0	51.7	32.1	100.0(861)	
	조손가정	3.17(0.83)	5.5	10.9	45.3	38.3	100.0(97)	
	기타	2.87(0.99)	16.1	7.4	49.8	26.8	100.0(60)	
학업 성적	상	3.38(0.71)	2.4	6.1	43.1	48.5	100.0(3,395)	328.318***
	중	3.18(0.74)	3.7	9.2	52.2	34.9	100.0(4,431)	
	하	3.04(0.80)	5.8	12.3	53.7	28.2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3.29(0.75)	3.6	7.0	46.1	43.3	100.0(5,366)	170.450***
	중	3.14(0.75)	3.8	10.6	53.6	31.9	100.0(3,739)	
	하	3.11(0.77)	4.3	12.2	52.2	31.3	100.0(1,320)	

*** $p < .001$.

【그림 Ⅲ-2-19】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가정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 (연도별 추이)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에 89.8%로 2014년 89.1%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작년에 비해 대부분의 학교 유형들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초등학교의 수치는 오히려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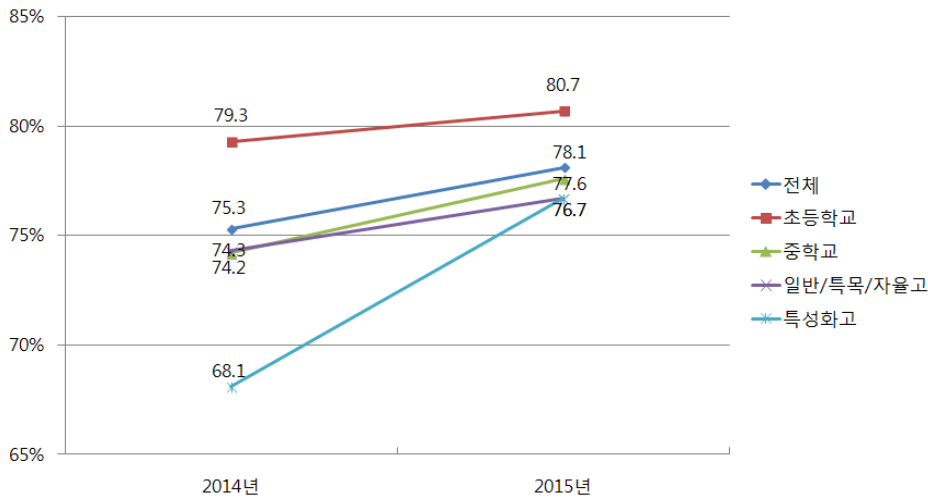
표 III-2-21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9(0.79)	4.9	17.0	52.0	26.1	100.0(10,429)	—
성별	남자	2.98(0.83)	6.2	17.0	49.6	27.2	100.0(5,435)	56.952***
	여자	3.01(0.75)	3.5	17.0	54.6	24.9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2(0.86)	6.0	13.3	43.1	37.6	100.0(2,922)	335.097***
	중학교	2.96(0.76)	4.4	18.1	54.9	22.7	100.0(3,625)	
	일반/특목/자율고	2.94(0.76)	4.3	19.0	54.9	21.8	100.0(3,168)	
	특성화고	2.87(0.73)	5.4	18.0	61.4	15.3	100.0(714)	
지역 규모	대도시	3.01(0.80)	4.7	16.9	50.8	27.6	100.0(4,560)	11.228
	중소도시	2.98(0.78)	4.9	16.9	53.5	24.7	100.0(4,261)	
	읍면지역	2.98(0.80)	5.1	17.7	51.5	25.6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0(0.79)	4.7	16.7	52.0	26.6	100.0(9,409)	33.616***
	한부모가정	2.89(0.79)	5.8	20.2	53.1	21.0	100.0(863)	
	조손가정	3.00(0.87)	6.8	17.2	45.9	30.2	100.0(97)	
	기타	2.75(0.95)	15.4	13.9	50.6	20.1	100.0(60)	
학업 성적	상	3.18(0.76)	3.0	12.5	47.8	36.7	100.0(3,395)	427.050***
	중	2.97(0.77)	5.0	16.6	55.3	23.1	100.0(4,429)	
	하	2.79(0.81)	7.2	23.6	52.3	16.9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3.07(0.80)	4.7	14.7	49.3	31.4	100.0(5,365)	189.839***
	중	2.93(0.76)	4.8	18.2	55.8	21.2	100.0(3,738)	
	하	2.84(0.79)	5.8	23.0	52.7	18.5	100.0(1,320)	

*** $p < .001$.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 52%, 매우 그렇다 26.1%)라고 응답한 비율은 78.1%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로 응답한 비율은 21.9%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23.2%)이 여학생(20.5%)보다 학교에서의 의견 표현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가 23.4%로 중학교(22.5%), 초등학교(19.3%)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 가정이 26%로 조손가정(24%), 양부모가정(21.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28.8%, 중23%, 상19.4%)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림 III-2-20】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 (연도별 추이)

학교에서 청소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가정에서의 생각 표현과 마찬가지로 작년(75.3%)에 비해 올해 78.1%로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특목/자율고, 특성화고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성화고의 수치는 2014년에 68.1%, 2015년에 76.7%로 다른 유형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2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 사회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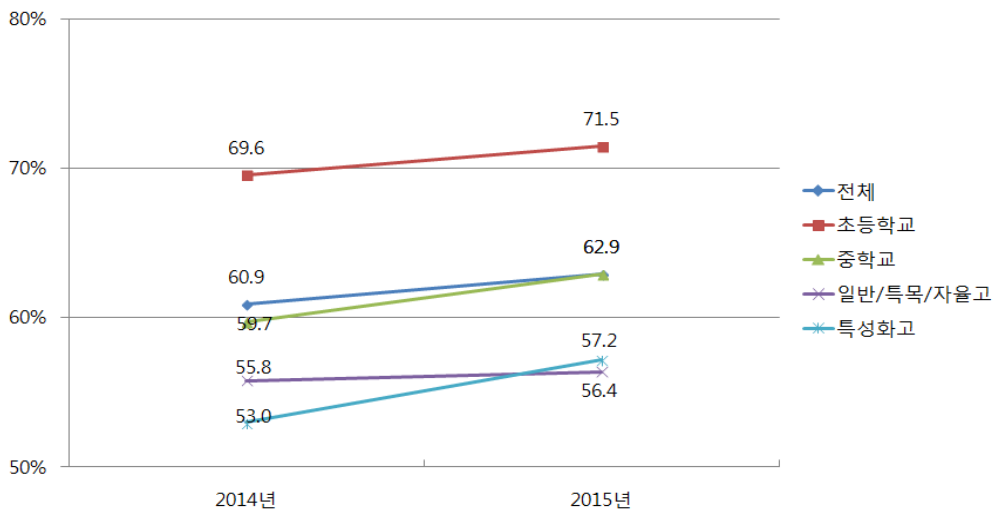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성별	전체	2.73(0.89)	10.1	26.9	42.9	20.0	100.0(10,424)	97.286***
	남자	2.74(0.94)	11.8	24.6	41.1	22.5	100.0(5,433)	
	여자	2.71(0.85)	8.3	29.5	45.0	17.3	100.0(4,992)	
학교 유형	초등학교	2.95(0.95)	9.5	19.0	38.2	33.3	100.0(2,919)	513.750***
	중학교	2.70(0.85)	9.5	27.7	46.5	16.4	100.0(3,622)	
	일반/특목/자율고	2.59(0.86)	11.3	32.3	42.5	13.9	100.0(3,168)	
	특성화고	2.57(0.83)	10.9	31.8	46.3	10.9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2.73(0.92)	11.0	26.4	41.6	21.1	100.0(4,555)	20.008**
	중소도시	2.73(0.88)	9.7	26.9	44.6	18.8	100.0(4,261)	
	읍면지역	2.73(0.88)	8.9	28.8	42.4	20.0	100.0(1,60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4(0.89)	9.8	26.9	42.9	20.4	100.0(9,405)	28.022***
	한부모가정	2.62(0.89)	12.3	28.2	44.4	15.1	100.0(863)	
	조손가정	2.74(1.03)	15.7	22.0	34.6	27.7	100.0(96)	
	기타	2.63(0.98)	17.0	21.2	43.3	18.4	100.0(60)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2.91(0.90)	7.7	22.4	41.2	28.7	100.0(3,392)	324.548***
	중	2.70(0.87)	10.0	27.3	45.3	17.4	100.0(4,428)	
	하	2.53(0.88)	13.5	32.3	41.4	12.7	100.0(2,573)	
경제적 수준	상	2.84(0.90)	8.9	23.4	42.6	25.1	100.0(5,364)	252.457***
	중	2.65(0.86)	10.4	29.3	45.0	15.3	100.0(3,734)	
	하	2.49(0.89)	14.4	34.7	38.6	12.3	100.0(1,319)	

** $p<.01$, *** $p<.001$.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 42.9%, 매우 그렇다 20%)라고 응답한 비율은 62.9%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0.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는 37.1%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먼저 남학생(36.4%)보다는 여학생(37.8%)에게서 ‘그렇지 않다’의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학교유형으로 보면 일반/특목/자율고가 4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특성화고(42.7%), 중학교(37.2%), 초등학교(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37.7%), 대도시(37.4%), 중소도시(36.6%)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40.5%), 조손가정(37.7%), 양부모가정(36.7%)의 순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을수록(하45.8%, 중37.3%, 상30.1%),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49.1%, 중39.7%, 상32.3%)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I-2-21】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사회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 (연도별 추이)

사회에서 청소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정, 학교에서 나타난 추이와 비슷하게 작년(60.9%)보다 올해(62.9%)의 수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특목/자율고, 특성화고의 수치가 모두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 종교 자유 보장정도

①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재학 중인 학교가 종교재단인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6%는 ‘예’라고 응답하였고 90.4%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종교재단이 아닌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약 10% 정도의 학생들만 종교재단인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표 Ⅲ-2-23 종교재단 학교 재학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전체		9.6	90.4	100.0(7,516)	—
성별	남자	9.9	90.1	100.0(3,921)	1.201
	여자	9.2	90.8	100.0(3,595)	
학교 유형	중학교	5.2	94.8	100.0(3,627)	156.350***
	일반/특목/자율고	14.0	86.0	100.0(3,173)	
	특성화고	12.0	88.0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11.6	88.4	100.0(3,249)	44.207***
	중소도시	6.8	93.2	100.0(3,028)	
	읍면지역	10.9	89.1	100.0(1,2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	90.3	100.0(6,730)	3.759
	한부모가정	8.7	91.3	100.0(675)	
	조손가정	2.9	97.1	100.0(57)	
	기타	6.6	93.4	100.0(54)	
학업 성적	상	10.7	89.3	100.0(2,070)	4.645
	중	8.9	91.1	100.0(3,110)	
	하	9.5	90.5	100.0(2,331)	
경제적 수준	상	8.8	91.2	100.0(3,379)	7.227*
	중	9.6	90.4	100.0(2,926)	
	하	11.5	88.5	100.0(1,209)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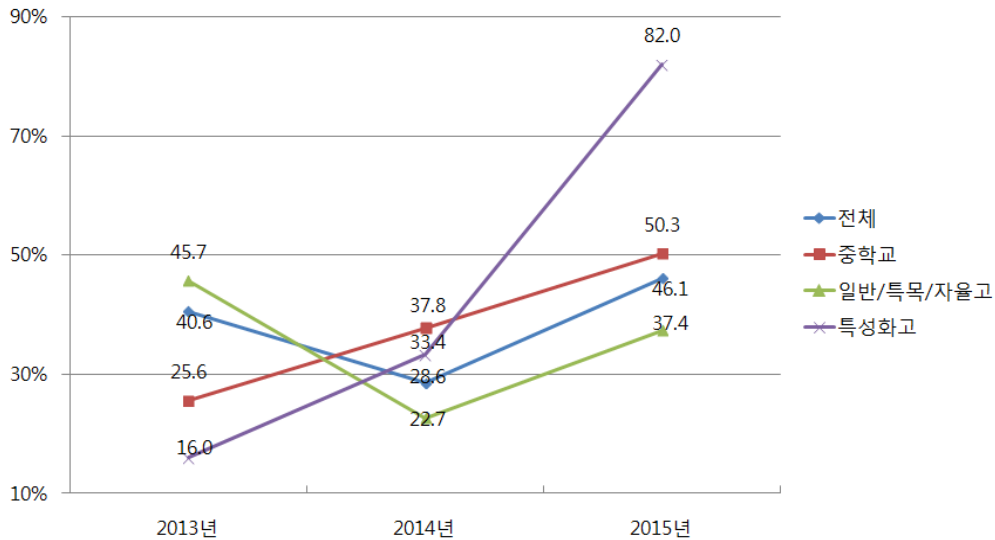
표 III-2-24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33(1.14)	33.6	20.3	25.8	20.3	100.0(718)	-
성별	남자	2.39(1.16)	32.9	18.2	26.0	22.9	100.0(388)	4.685
	여자	2.25(1.11)	34.6	22.7	25.5	17.3	100.0(330)	
학교 유형	중학교	2.43(1.13)	29.0	20.7	28.2	22.1	100.0(189)	61.153***
	일반/특목/자율고	2.14(1.13)	40.6	22.1	20.3	17.1	100.0(443)	
	특성화고	3.07(0.87)	8.0	10.0	48.9	33.1	100.0(86)	
지역 규모	대도시	2.24(1.13)	37.4	19.3	25.5	17.8	100.0(377)	140.898***
	중소도시	1.88(0.92)	44.6	28.1	22.5	4.8	100.0(207)	
	읍면지역	3.27(0.90)	6.3	11.0	31.7	51.0	100.0(13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33(1.15)	33.8	20.1	25.3	20.9	100.0(654)	4.846
	한부모가정	2.32(1.08)	31.0	21.8	31.5	15.8	100.0(58)	
	조손가정	1.42(0.78)	58.2	41.8	0.0	0.0	100.0(2)	
	기타	1.87(1.00)	43.1	26.6	30.3	0.0	100.0(4)	
학업 성적	상	2.34(1.21)	37.2	16.2	21.9	24.7	100.0(221)	13.732*
	중	2.36(1.10)	30.6	20.2	31.3	17.9	100.0(275)	
	하	2.27(1.12)	33.9	24.4	22.7	19.0	100.0(222)	
경제적 수준	상	2.34(1.13)	32.5	21.1	26.7	19.8	100.0(299)	7.974
	중	2.34(1.12)	31.4	22.6	26.4	19.7	100.0(280)	
	하	2.27(1.22)	40.7	14.0	22.6	22.8	100.0(139)	

* $p<0.05$, *** $p<0.001$.

종교재단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 25.8%, 매우 그렇다 20.3%)에 응답한 비율은 46.1%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3.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3%)에 응답한 비율은 53.9%로 나타났다.

【그림 III-2-22】를 통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치가 2013년도에 40.6에서 2014년에 28.6%로 감소했다가 2015년도에는 46.1%로 증가하였다. 일반/특목/자율고에서는 2013년에 45.7%였는데 2014년에는 22.7%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37.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에서는 2015년 수치로 볼 때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는지 여부가 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2013년에 16%, 2014년에는 33.4%로 증가 추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22】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연도별 추이)

②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표 Ⅲ-2-25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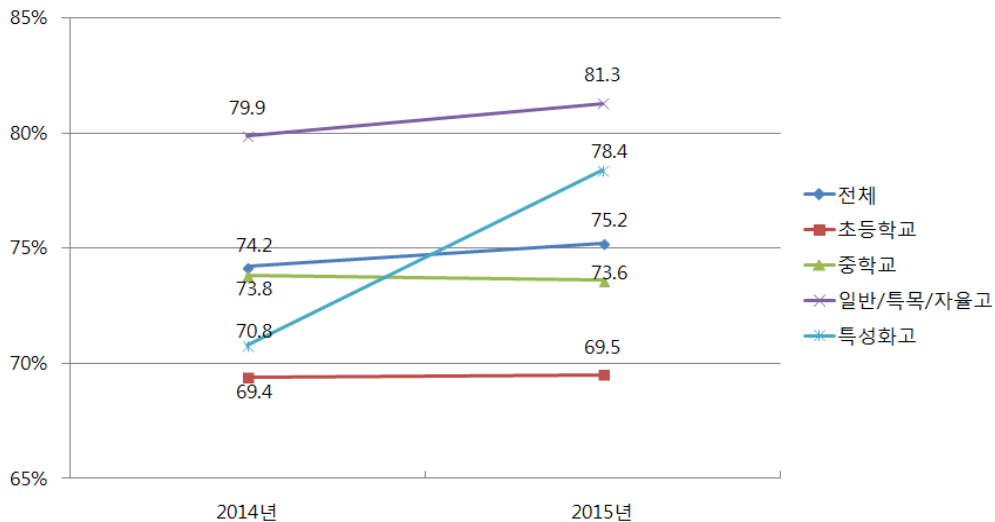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0(0.95)	9.9	14.9	40.2	35.0	100.0(10,427)	-
성별	남자	2.99(0.98)	11.7	13.7	38.3	36.4	100.0(5,435)	63.470***
	여자	3.01(0.91)	8.0	16.3	42.2	33.5	100.0(4,992)	
학교 유형	초등학교	2.91(1.06)	15.2	15.3	32.8	36.7	100.0(2,917)	238.469***
	중학교	2.95(0.94)	10.0	16.4	41.9	31.7	100.0(3,625)	
	일반/특목/자율고	3.13(0.84)	5.3	13.4	44.2	37.1	100.0(3,170)	
	특성화고	3.05(0.91)	8.7	12.8	43.4	35.0	100.0(715)	
지역 규모	대도시	3.04(0.95)	9.7	14.3	38.3	37.7	100.0(4,556)	33.764***
	중소도시	2.98(0.94)	10.2	14.8	42.2	32.8	100.0(4,262)	
	읍면지역	2.96(0.95)	9.8	17.2	40.1	32.9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1(0.94)	9.7	15.1	40.2	35.0	100.0(9,408)	24.818**
	한부모가정	2.97(0.99)	12.7	11.9	40.8	34.6	100.0(862)	
	조손가정	3.02(0.93)	6.7	21.7	34.3	37.3	100.0(98)	
	기타	2.72(1.01)	13.5	27.5	32.7	26.3	100.0(60)	
학업 성적	상	3.13(0.93)	8.1	13.1	36.9	42.0	100.0(3,393)	124.642***
	중	2.97(0.94)	10.1	15.6	41.9	32.5	100.0(4,429)	
	하	2.90(0.97)	12.1	16.3	41.6	30.0	100.0(2,575)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3.02(0.96)	10.3	14.2	38.8	36.7	100.0(5,365)	30.840***
	중	2.97(0.93)	9.7	15.7	42.6	31.9	100.0(3,734)	
	하	3.03(0.94)	8.9	15.7	38.7	36.7	100.0(1,321)	

** $p<.01$, *** $p<.001$.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40.2%, 매우 그렇다 35%)라고 응답한 비율은 75.2%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9.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9%)는 24.8%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은 25.4%이고 여학생은 24.3%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30.5%로 타 유형에 비해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26.4%), 특성화고(21.5%), 일반/특목/자율고(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27%)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소도시(25%), 대도시(24%) 순이었으며, 학업성적별로는 하(28.4%), 중(25.7%), 상(21.2%)의 순으로, 경제적 수준별로는 중(25.4%), 하(24.6%), 상(24.5%) 순으로 부정적 응답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I-2-23】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음 (연도별 추이)

청소년들의 종교적인 부분에서 자유보장 수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의 값이 2014년에 74.2%이었고 2015년에 75.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특목/자율고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높은 수준의 추이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성화고는 2014년에 70.8%로 타 유형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78.4%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2014년 73.8%에서 2015년 73.6%로 오히려 종교적인 자유에서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 결사·집회 경험률

① 결사·집회 경험률

표 Ⅲ-2-26 결사·집회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N)	χ^2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전체		1.55(0.86)	65.7	17.3	13.3	3.7	100.0(7,512)	17.758***
	성별	남자	1.58(0.89)	64.2	17.7	13.7	4.4	100.0(3,920)	
		여자	1.51(0.82)	67.4	16.9	12.8	2.8	100.0(3,592)	
	학교 유형	중학교	1.61(0.89)	62.4	18.8	14.3	4.5	100.0(3,624)	42.134***
		일반/특목/자율고	1.49(0.82)	69.2	15.5	12.4	2.9	100.0(3,173)	
		특성화고	1.51(0.81)	67.1	17.9	12.2	2.8	100.0(715)	
	지역 규모	대도시	1.53(0.85)	67.0	16.7	12.6	3.7	100.0(3,248)	17.624**
		중소도시	1.56(0.87)	65.8	16.8	13.4	4.0	100.0(3,026)	
		읍면지역	1.58(0.84)	62.1	20.2	14.9	2.8	100.0(1,2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5(0.86)	65.5	17.5	13.5	3.6	100.0(6,725)	12.913
		한부모가정	1.54(0.88)	68.0	14.9	12.3	4.8	100.0(675)	
		조손가정	1.61(0.89)	60.9	22.9	10.8	5.5	100.0(57)	
		기타	1.32(0.58)	73.5	21.0	5.5	0.0	100.0(54)	
	학업 성적	상	1.65(0.93)	61.7	17.1	15.8	5.4	100.0(2,070)	47.118***
		중	1.51(0.82)	66.6	18.3	12.2	2.8	100.0(3,108)	
		하	1.51(0.84)	68.0	16.2	12.5	3.3	100.0(2,330)	
	경제적 수준	상	1.59(0.89)	64.1	17.4	14.3	4.3	100.0(3,375)	14.617*
		중	1.51(0.83)	67.6	16.8	12.5	3.1	100.0(2,926)	
		하	1.54(0.84)	65.7	18.4	12.5	3.4	100.0(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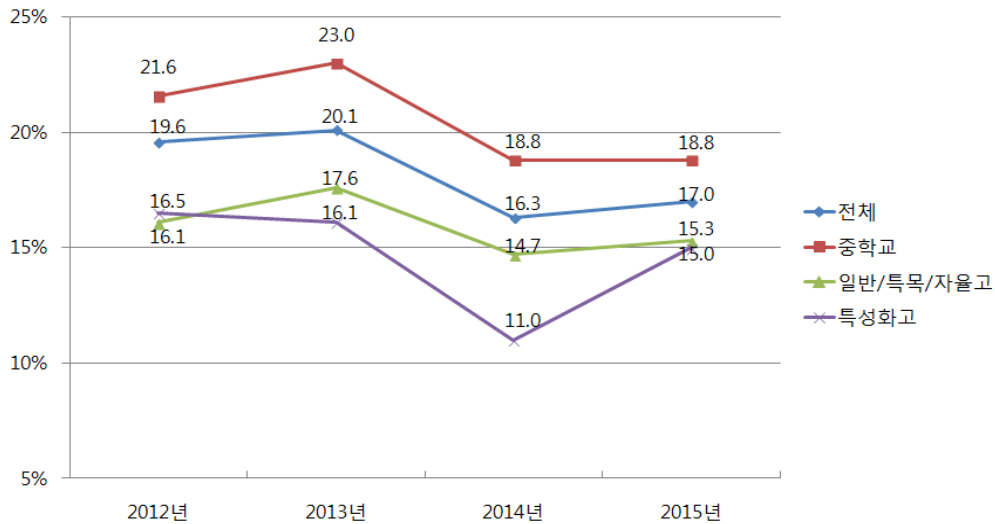
구분		평균(SD)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N)	χ^2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전체		1.33(0.61)	74.1	19.2	6.1	0.6	100.0(7,503)	-
	성별	남자	1.32(0.60)	74.2	19.8	5.4	0.6	100.0(3,920)	7.293
		여자	1.34(0.63)	74.0	18.6	6.8	0.5	100.0(3,583)	
	학교 유형	중학교	1.38(0.64)	70.0	22.6	6.7	0.7	100.0(3,620)	67.574***
		일반/특목/자율고	1.29(0.59)	78.2	15.6	5.7	0.5	100.0(3,169)	
		특성화고	1.28(0.56)	76.9	18.0	5.0	0.1	100.0(714)	
	지역 규모	대도시	1.31(0.59)	75.2	18.8	5.7	0.4	100.0(3,242)	9.569
		중소도시	1.34(0.62)	73.9	19.1	6.4	0.6	100.0(3,023)	
		읍면지역	1.36(0.65)	71.9	20.6	6.5	1.0	100.0(1,2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33(0.61)	74.2	19.2	6.0	0.5	100.0(6,719)	7.065
		한부모가정	1.35(0.65)	73.3	18.9	6.7	1.0	100.0(674)	
		조손가정	1.32(0.65)	76.4	15.9	6.7	1.0	100.0(56)	
		기타	1.33(0.55)	70.7	25.4	3.9	0.0	100.0(54)	
	학업 성적	상	1.38(0.68)	72.3	18.7	8.0	1.1	100.0(2,069)	33.040***
		중	1.32(0.59)	74.3	20.0	5.3	0.4	100.0(3,102)	
		하	1.31(0.59)	75.6	18.5	5.5	0.4	100.0(2,328)	
	경제적 수준	상	1.35(0.64)	72.7	19.9	6.6	0.8	100.0(3,370)	11.063
중		1.31(0.59)	75.4	18.7	5.6	0.3	100.0(2,923)		
하		1.32(0.61)	75.0	18.5	5.9	0.6	100.0(1,209)		

* $p<.05$, ** $p<.01$, *** $p<.001$.

지난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한 참여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으로 참여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혀 없다’가 65.7%, ‘거의 없다’가 17.3%, ‘가끔 있다’가 13.3%, ‘자주 있다’가 3.7%로 나타났다. 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 중에 17%가 인터넷 상에서의 활동 경험이 있었다. 배경변인별 참여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았을 때 남학생은 18.1%, 여학생은 15.6%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중학교(18.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 일반/특목/자율고(15.3%), 특성화고(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17.7%), 중소도시(17.4%), 대도시(16.3%)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상(21.2%), 하(15.8%), 중(15%), 경제적 수준으로는 상(18.6%), 하(15.9%), 중(15.6%)의 순으로 참여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혀 없다’가 74.1%, ‘거의 없다’가 19.2%, ‘가끔 있다’가 6.1%, ‘자주 있다’가 0.6%로 나타났다. 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 중 6.7%가 참여 경험이 있었다. 배경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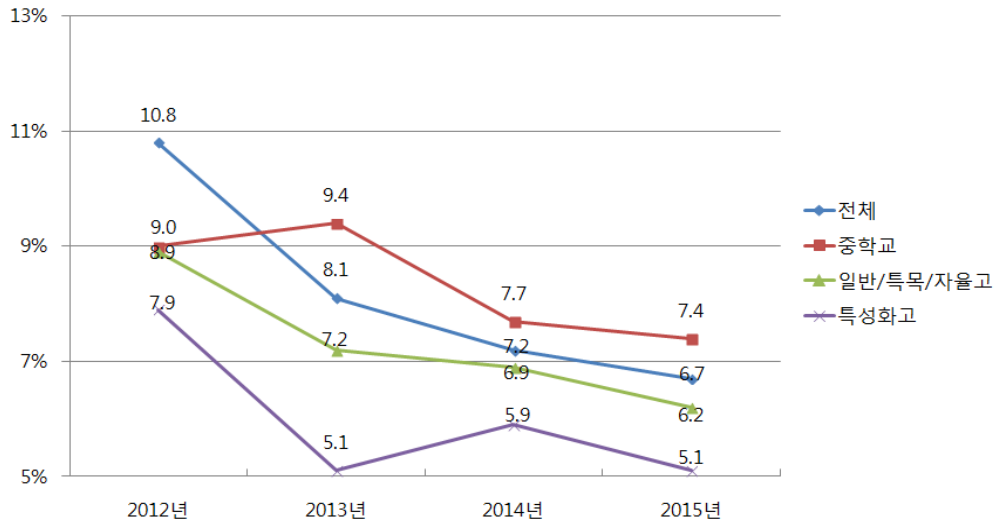
별 참여경험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남학생은 6%, 여학생은 7.3%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중학교(7.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6.2%), 특성화고(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상위권(9.1%)에 있는 학생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하위권(5.9%), 중위권(5.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24】 결사·집회 경험률_모임이나 인터넷카페에 가입 (연도별 추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모임이나 인터넷카페에 가입함으로 참여한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5년에는 ‘가끔 있다’, ‘자주 있다’의 비율이 17%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19.6%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2012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I-2-25】에는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에 참여한 비율에 대한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있는데,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2012년 10.8%, 2013년 8.1%, 2014년 7.2%, 2015년에 6.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거리집회와 문화행사 참여에 대해 타 학교 유형들 중 중학생의 참여 경험율이 매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성화고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Ⅲ-2-25】 결사·집회 경험률_거리집회나 문화행사등에 참여 (연도별 추이)

②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참여활동을 한 경험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대해 알아본 결과,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가 9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고 및 훈계’를 당한 경우가 2.1%,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이 0.9%, ‘기타’에 0.4%,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에 0.3%의 경험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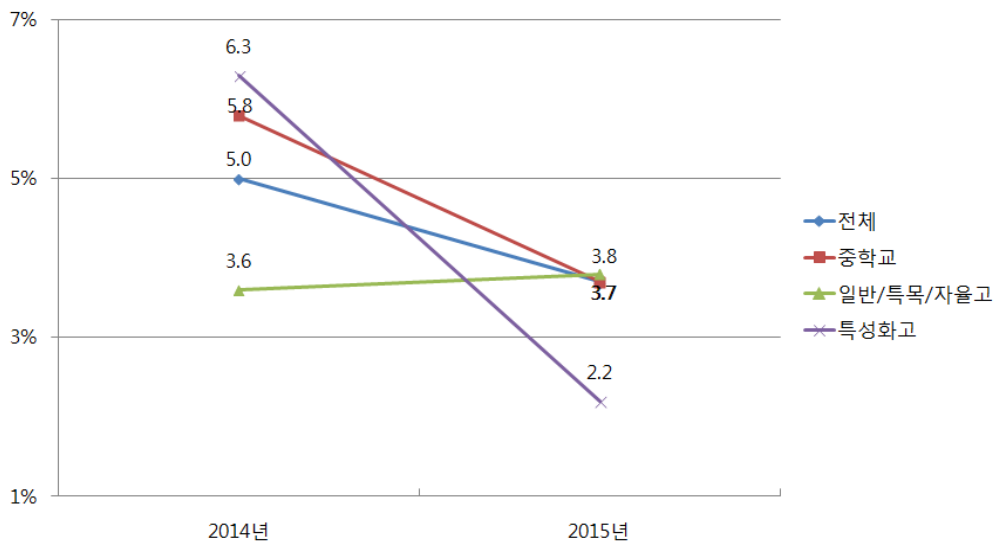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경험의 유무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인 수치가 작년에 5%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3.7%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 특성화고의 피해경험율이 6.3%로 가장 높았던 것과는 반대로 2015년에는 2.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Ⅲ-2-27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경고 및 훈계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선도 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기타	전체(N)
성별	전체	96.4	2.1	0.9	0.3	0.4	100.0(1,417)
	남자	95.6	2.3	1.4	0.6	0.1	100.0(759)
	여자	97.4	1.8	0.3	0.0	0.6	100.0(659)
학교 유형	중학교	96.3	1.9	0.8	0.6	0.4	100.0(745)
	일반/특목/자율고	96.4	2.4	1.0	0.0	0.4	100.0(556)
	특성화고	97.8	1.8	0.4	0.0	0.0	100.0(117)

구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경고 및 훈계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선도 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기타	전체(N)
지역 규모	대도시	95.5	3.0	1.3	0.2	0.0	100.0(587)
	중소도시	96.5	1.5	0.8	0.4	0.9	100.0(579)
	읍면지역	98.5	1.0	0.0	0.5	0.0	100.0(2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6	2.2	0.6	0.4	0.3	100.0(1,274)
	한부모가정	95.7	0.7	2.8	0.0	0.8	100.0(129)
	조손가정	85.1	0.0	14.9	0.0	0.0	100.0(11)
	기타	100.0	0.0	0.0	0.0	0.0	100.0(4)
학업 성적	상	97.8	1.8	0.2	0.0	0.4	100.0(486)
	중	95.8	1.8	1.4	0.8	0.2	100.0(528)
	하	95.7	2.7	1.1	0.0	0.6	100.0(403)
경제적 수준	상	97.0	1.7	0.9	0.3	0.3	100.0(686)
	중	96.1	2.5	0.8	0.2	0.4	100.0(511)
	하	95.7	2.2	1.0	0.4	0.5	100.0(220)



【그림 Ⅲ-2-26】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연도별 추이)

4) 사생활의 보호

(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①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표 Ⅲ-2-28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 :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1) 용모 검사	전체		49.3	21.1	19.4	4.1	6.1	50.7	100.0(7,518)	—
	성별	남자	57.7	17.8	18.6	2.5	3.4	42.3	100.0(3,923)	307.931***
		여자	40.2	24.6	20.4	5.8	9.0	59.8	100.0(3,595)	
	학교 유형	중학교	54.7	18.5	15.4	4.8	6.6	45.3	100.0(3,629)	155.122***
		일반/특목/자율고	43.9	23.3	23.8	2.9	6.2	56.2	100.0(3,173)	
		특성화고	46.3	24.5	20.6	5.5	3.1	53.7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45.2	21.5	21.8	4.4	7.1	54.8	100.0(3,249)	86.183***
		중소도시	49.6	21.5	19.2	4.1	5.6	50.4	100.0(3,030)	
		읍면지역	59.6	18.9	13.9	3.0	4.6	40.4	100.0(1,2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8.9	20.9	19.9	4.1	6.2	51.1	100.0(6,731)	20.586
		한부모가정	51.2	23.2	15.9	3.9	5.8	48.8	100.0(675)	
		조손가정	64.3	16.0	13.1	4.5	2.2	35.8	100.0(57)	
		기타	62.1	22.0	12.1	0.0	3.8	37.9	100.0(54)	
	학업 성적	상	46.9	21.3	21.2	3.8	6.8	53.1	100.0(2,071)	11.451
		중	50.7	20.6	18.7	4.0	6.0	49.3	100.0(3,111)	
		하	49.6	21.5	18.9	4.3	5.7	50.4	100.0(2,331)	
	경제적 수준	상	49.0	20.3	20.8	3.4	6.4	50.9	100.0(3,379)	23.819**
		중	50.6	20.7	18.6	4.6	5.5	49.4	100.0(2,927)	
		하	47.0	24.0	17.8	4.5	6.7	53.0	100.0(1,210)	
2) 복장 검사	전체		56.4	19.0	14.7	3.5	6.4	43.6	100.0(7,515)	—
	성별	남자	70.3	13.3	10.6	1.9	3.9	29.7	100.0(3,919)	650.723***
		여자	41.3	25.1	19.2	5.2	9.2	58.7	100.0(3,595)	
	학교 유형	중학교	58.0	17.7	13.9	4.0	6.3	41.9	100.0(3,627)	54.771***
		일반/특목/자율고	54.3	20.4	15.6	2.5	7.3	45.8	100.0(3,173)	
		특성화고	57.5	19.2	14.8	5.7	2.8	42.5	100.0(715)	
	지역 규모	대도시	55.5	18.5	15.1	3.4	7.5	44.5	100.0(3,248)	52.875***
		중소도시	54.0	20.6	15.5	4.0	5.8	45.9	100.0(3,028)	
		읍면지역	64.5	16.2	11.4	2.7	5.1	35.4	100.0(1,2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5.8	18.9	15.1	3.6	6.6	44.2	100.0(6,728)	19.283
		한부모가정	60.9	19.2	11.8	2.6	5.6	39.2	100.0(675)	
		조손가정	68.0	18.9	9.7	1.2	2.2	32.0	100.0(57)	
		기타	65.6	20.9	9.7	0.0	3.8	34.4	100.0(54)	

구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3) 소지품 검사	학업 성적	상	53.4	19.5	16.9	3.2	7.0	46.6	100.0(2,070)	20,321**
		중	57.1	19.1	14.1	3.3	6.4	42.9	100.0(3,110)	
		하	58.0	18.4	13.6	4.1	5.9	42.0	100.0(2,330)	
	경제적 수준	상	55.8	18.4	15.7	3.4	6.7	44.2	100.0(3,377)	12,239
		중	57.4	18.5	14.2	3.7	6.2	42.6	100.0(2,926)	
		하	55.5	21.7	13.3	3.4	6.1	44.5	100.0(1,210)	
3) 소지품 검사	전체		82.2	12.6	4.1	0.7	0.4	17.8	100.0(7,513)	-
	성별	남자	82.7	12.6	3.6	0.7	0.4	17.3	100.0(3,918)	6,533
		여자	81.6	12.5	4.7	0.6	0.5	18.3	100.0(3,595)	
	학교 유형	중학교	84.1	11.5	3.3	0.7	0.4	15.9	100.0(3,625)	293,112***
		일반/특목/자율고	84.8	11.2	3.1	0.5	0.5	15.3	100.0(3,172)	
		특성화고	60.8	24.2	13.3	1.3	0.4	39.2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80.9	13.0	4.8	0.7	0.6	19.1	100.0(3,248)	28,628***
		중소도시	82.4	12.1	4.4	0.7	0.4	17.6	100.0(3,027)	
		읍면지역	85.0	12.6	1.8	0.3	0.3	15.0	100.0(1,2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2.3	12.7	4.0	0.6	0.4	17.7	100.0(6,727)	24,509*
		한부모가정	80.3	12.1	6.0	1.1	0.5	19.7	100.0(675)	
		조손가정	83.7	10.9	5.4	0.0	0.0	16.3	100.0(57)	
		기타	84.5	11.8	0.0	0.0	3.8	15.6	100.0(54)	
	학업 성적	상	81.0	13.9	4.0	0.6	0.4	18.9	100.0(2,069)	15,105
		중	82.9	11.9	4.4	0.5	0.2	17.0	100.0(3,110)	
		하	82.2	12.3	3.9	0.9	0.7	17.8	100.0(2,330)	
	경제적 수준	상	82.4	12.6	4.0	0.6	0.4	17.6	100.0(3,377)	7,489
		중	82.4	12.2	4.1	0.9	0.4	17.6	100.0(2,925)	
		하	80.8	13.5	4.7	0.4	0.6	19.2	100.0(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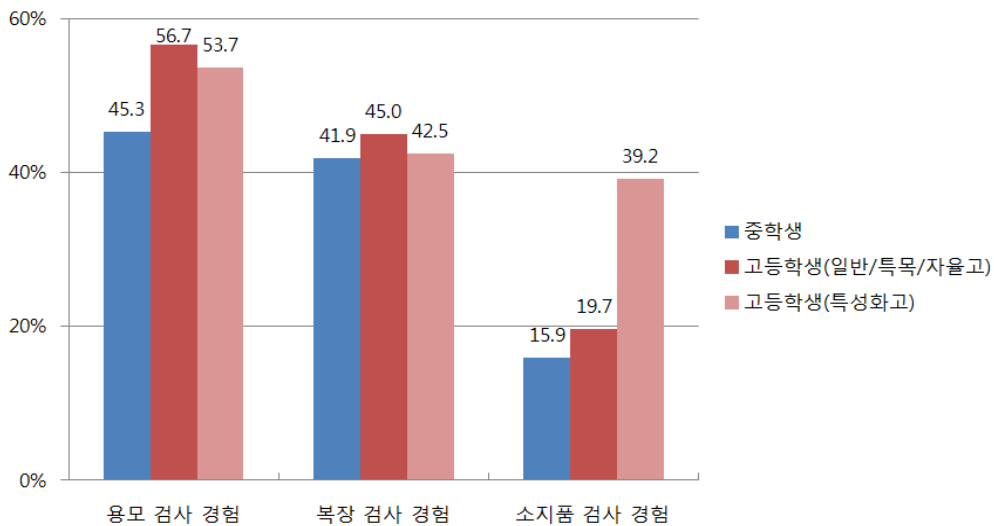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용모(머리모양, 길이, 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 결과, ‘한 번도 없음’은 49.3%, ‘일 년에 1-2회 정도’는 21.1%, ‘한 달에 1-2회 정도’는 19.4%, ‘1주일에 1-2회 정도’는 4.1%, ‘1주일에 3회 이상’은 6.1%인 것으로 나타났고 일 년에 1회 이상의 경험이 있는 비율은 50.7%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 년에 1회 이상 용모검사의 경험이 있는 남학생들은 42.3%, 여학생은 59.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는 56.2%로 특성화고(53.7%), 중학교(45.3%)보다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 별로는 대도시에서 54.8%로 타 도시 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중소도시(50.4%), 읍면지역(40.4%) 순으로 용모검사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한 번도 없음’에 56.4%, ‘일 년에 1-2회 정도’가 19%, ‘한 달에 1-2회 정도’가 14.7%, ‘1주일에 1-2회 정도’가 3.5%,

‘1주일에 3회 이상’이 6.4%로 나타났고 일 년에 1회 이상의 경험이 있는 비율은 43.6%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29.7%, 여학생은 58.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검사 경험이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45.8%)가 특성화고(42.5%), 중학교(41.9%)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가 45.9%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이후로는 대도시(44.5%), 읍면지역(3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서는 상(46.6%), 중(42.9%), 하(42%)의 순으로 복장 검사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지품 검사 경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음’은 82.2%, ‘일 년에 1-2회 정도’는 12.6%, ‘한 달에 1-2회 정도’ 4.1%, ‘1주일에 1-2회 정도’는 0.7%, ‘1주일에 3회 이상’은 0.4%로 나타났고 일 년에 1회 이상 검사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8%였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고가 3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중학교(15.9%), 일반/특목/자율고(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9.1%로 타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17.6%, 읍면지역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27】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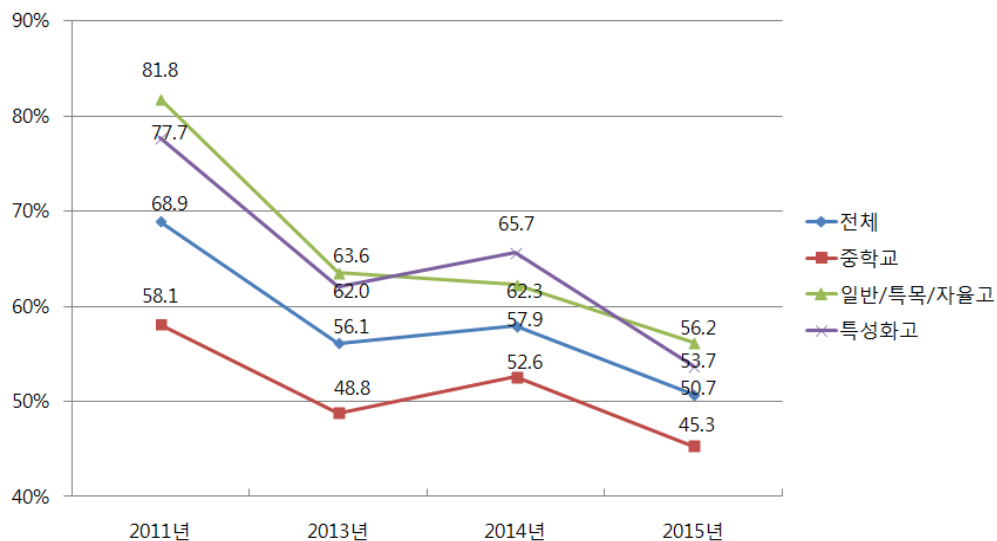
표 Ⅲ-2-29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연도별 추이)

(단위 : %)

구분	연도		용모 검사 경험	복장 검사 경험	소지품 검사 경험
중학생	2011년		58.2	54.8	23.5
	2013년		48.7	49.9	15.6
	2014년		52.6	51.6	23.6
	2015년		45.3	41.9	15.9
고등 학생	일반/특목/자율고	2011년	80.9	70.4	34.5
		2013년	63.4	54.8	18.3
		2014년	63.0	55.0	22.7
		2015년	56.7	45.0	19.7
	특성화고	2011년	77.8	62.3	42.4
		2013년	62.0	45.5	25.9
		2014년	65.7	57.3	56.9
		2015년	53.7	42.5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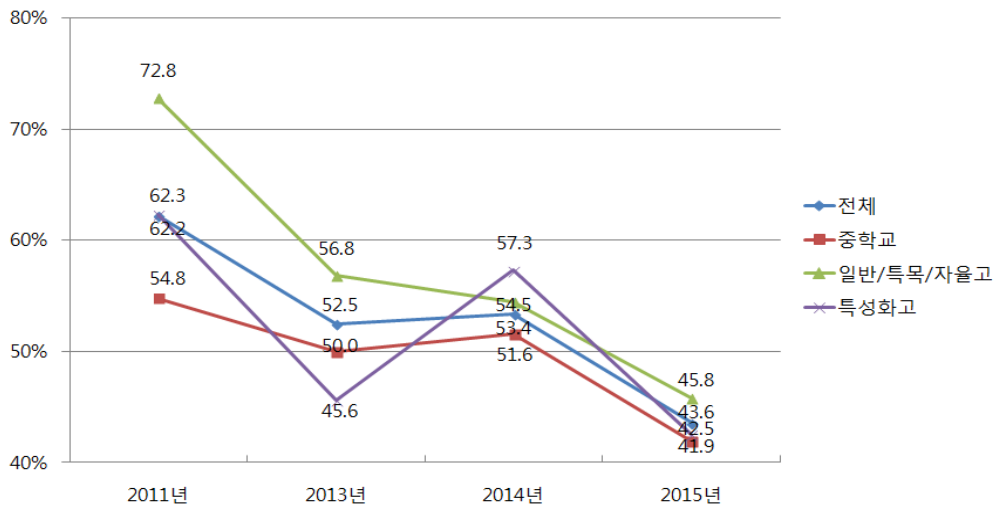
* 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용모, 복장, 소지품검사 문항 동일 적용)

용모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경험 유무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도 68.9%, 2013년에는 56.1%, 2014년에는 57.9%, 2015년에는 50.7%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매해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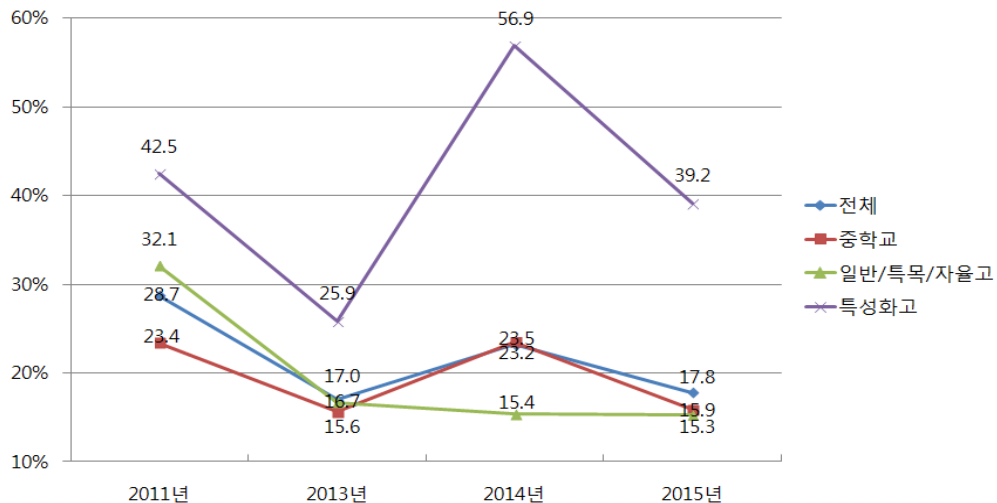


【그림 Ⅲ-2-28】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 검사 (연도별 추이)

복장검사 여부에서 나타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용모검사와 마찬가지로 2011년에 62.3%, 2013년에 52.5%, 2014년에 54.5%, 2015년에 43.6%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세부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일반/특목/자율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성화고는 2013년에 급격하게 그 비율이 감소했다가 2014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었으며 2015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 III-2-29】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복장 검사 (연도별 추이)



【그림 III-2-30】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소지품 검사 (연도별 추이)

소지품검사 여부에서 나타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고가 2011년에 42.5%, 2013년에 25.9%, 2014년에 56.9%, 2015년에 39.2%로 다른 학교 유형보다 비율이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수치는 2013년에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다시 2014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다시 그 다음해에 증가함으로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특목/자율고에서는 2011년도에 소지품 검사 경험률이 32.1%로 나타났는데 2015년에는 15.3%로 가장 낮은 비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생 정보 보호정도

①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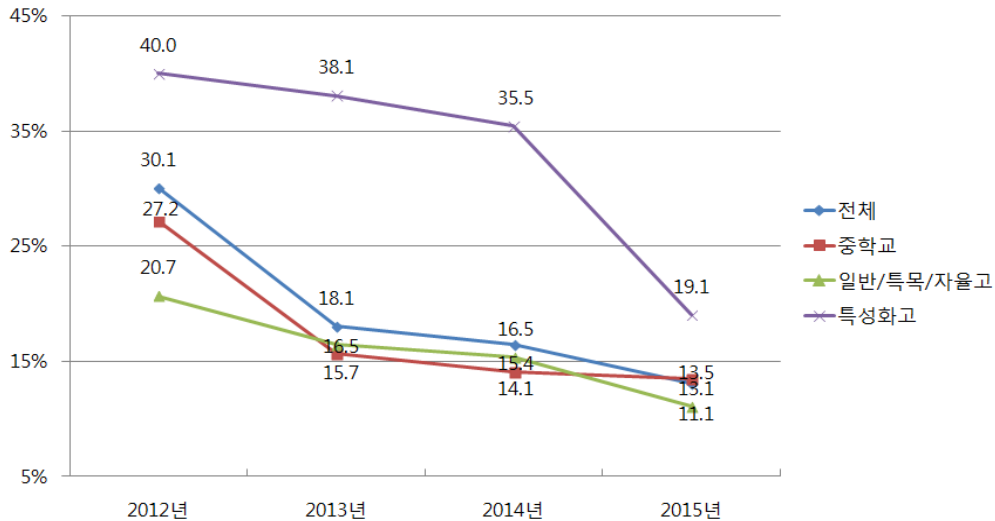
표 III-2-30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교육비를 내지 않는 학생의 이름 공개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47(0.78)	62.8	24.2	10.7	2.4	100.0(7,431)	-
성별	남자	3.44(0.80)	61.1	24.0	12.3	2.6	100.0(3,879)	24.846***
	여자	3.51(0.74)	64.6	24.4	8.9	2.1	100.0(3,552)	
학교 유형	중학교	3.47(0.78)	63.3	23.2	11.1	2.4	100.0(3,583)	53.207***
	일반/특목/자율고	3.51(0.75)	64.7	24.1	9.0	2.1	100.0(3,147)	
	특성화고	3.29(0.85)	51.7	29.2	15.7	3.4	100.0(701)	
지역 규모	대도시	3.46(0.79)	62.5	23.9	11.0	2.6	100.0(3,219)	19.571**
	중소도시	3.46(0.79)	62.4	23.7	11.6	2.3	100.0(2,990)	
	읍면지역	3.53(0.71)	64.6	26.1	7.5	1.8	100.0(1,222)	
	양부모가정	3.48(0.77)	63.1	24.3	10.3	2.3	100.0(6,656)	
가족 유형	한부모가정	3.41(0.82)	60.4	23.1	14.0	2.5	100.0(668)	17.489*
	조손가정	3.63(0.60)	69.1	25.0	5.9	0.0	100.0(56)	
	기타	3.27(0.92)	53.8	23.0	19.1	4.1	100.0(51)	
학업 성적	상	3.54(0.77)	68.9	18.8	9.8	2.5	100.0(2,053)	57.103***
	중	3.47(0.77)	61.6	25.7	10.3	2.3	100.0(3,068)	
	하	3.42(0.79)	59.0	26.7	12.0	2.3	100.0(2,305)	
경제적 수준	상	3.50(0.78)	65.7	21.6	10.2	2.6	100.0(3,333)	36.089***
	중	3.44(0.78)	59.5	27.3	10.9	2.3	100.0(2,898)	
	하	3.48(0.76)	62.8	23.9	11.6	1.6	100.0(1,199)	

* $p<.05$, ** $p<.01$, *** $p<.001$.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공개하는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 10.7%, 매우 그렇다 2.4%)에 13.1%,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62.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2%)에 87%로 나타났다. 교육비 미납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학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고가 1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13.5%), 일반/특목/자율고(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31】에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인 비율이 2012년 30.1%에서 2015년 13%로 교육비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공개하는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성화고는 2012년에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13년에는 38.1%, 2014년에는 35.5%, 2015년에는 19.1%로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31】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교육비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공개함 (연도별 추이)

②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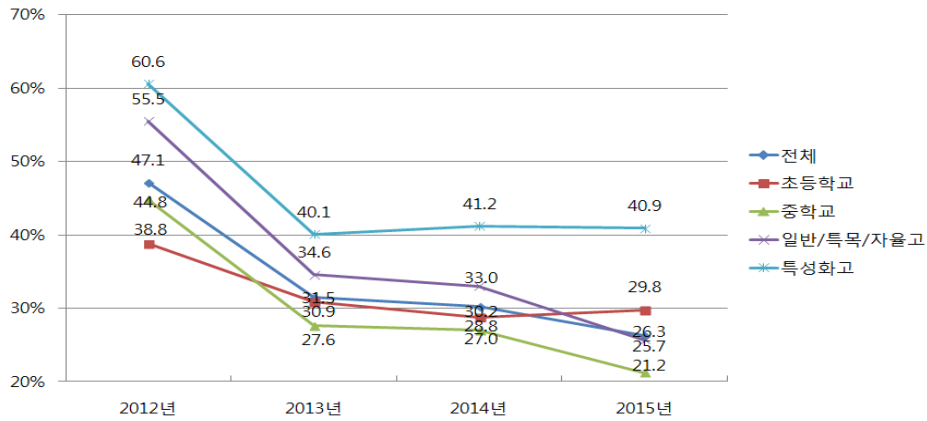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하는 정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 20.8%, 매우 그렇다 5.5%)에 26.3%,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6.7%,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는 73.7%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고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29.8%), 일반/특목/자율고(25.7%), 중학교(21.2%)의 순으로 징계처분 공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1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 공개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3)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전체		1.95(0.89)	36.7	37.0	20.8	5.5	100.0(10,352)	—
	성별	남자	2.01(0.92)	35.0	35.6	22.6	6.8	100.0(5,400)	61.363***
		여자	1.89(0.85)	38.5	38.4	18.8	4.2	100.0(4,952)	
	학교 유형	초등학교	2.04(0.91)	32.8	37.4	23.0	6.8	100.0(2,929)	210.146***
		중학교	1.81(0.86)	43.8	35.0	17.1	4.1	100.0(3,579)	
		일반/특목/자율고	1.96(0.88)	34.8	39.5	20.3	5.4	100.0(3,147)	
		특성화고	2.24(0.92)	25.2	34.0	32.5	8.4	100.0(696)	
	지역 규모	대도시	2.00(0.90)	34.8	36.8	22.2	6.2	100.0(4,535)	34.112***
		중소도시	1.93(0.87)	37.0	37.9	20.1	5.0	100.0(4,226)	
		읍면지역	1.87(0.89)	41.6	34.8	18.4	5.2	100.0(1,59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5(0.89)	36.6	37.1	20.7	5.6	100.0(9,339)	8.097
		한부모가정	1.96(0.89)	36.7	36.1	21.8	5.4	100.0(857)	
		조손가정	1.96(0.87)	34.6	40.1	20.1	5.2	100.0(97)	
		기타	1.72(0.84)	51.4	25.9	21.8	1.0	100.0(58)	
	학업 성적	상	1.98(0.92)	36.5	35.1	21.9	6.5	100.0(3,379)	19.018**
		중	1.94(0.88)	37.3	37.1	20.5	5.1	100.0(4,391)	
하		1.94(0.87)	36.0	39.2	19.8	5.0	100.0(2,551)		
경제적 수준	상	1.95(0.91)	38.4	34.7	20.9	6.0	100.0(5,321)	30.892***	
	중	1.96(0.86)	34.5	40.1	20.4	5.0	100.0(3,712)		
	하	1.96(0.89)	36.0	37.1	21.6	5.3	100.0(1,311)		

** $p < .01$, *** $p < .001$.

【그림 Ⅲ-2-32】에서 징계내용 및 이름의 공개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에는 47.1%로 절반에 가까웠던 비율이 2013년에는 31.5%, 2014년에 30.2%, 2015년에 26.3%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특성화고의 2012년도에서 2013년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40.9%의 비율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32】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함 (연도별 추이)

③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표 III-2-32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개인의 시험성적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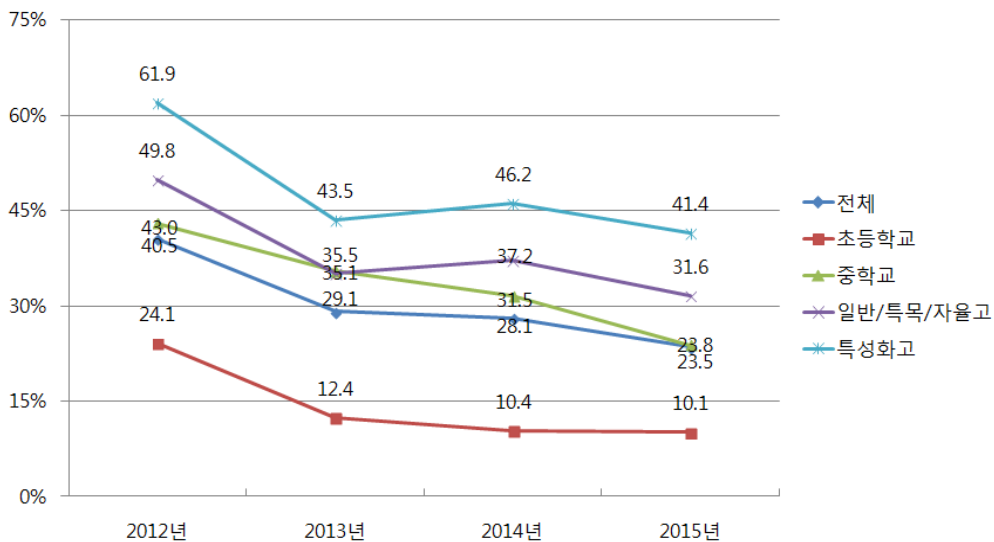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4) 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한다	전체		1.84(0.92)	45.0	31.5	17.6	5.9	100.0(10,349)	—
	성별	남자	1.88(0.93)	43.7	31.1	18.9	6.3	100.0(5,392)	19.355***
		여자	1.81(0.90)	46.3	32.1	16.1	5.5	100.0(4,957)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7(0.77)	66.1	23.8	6.7	3.4	100.0(2,930)	986.450***
		중학교	1.87(0.89)	42.3	33.9	18.7	5.1	100.0(3,574)	
		일반/특목/자율고	2.07(0.95)	33.3	35.1	22.7	8.9	100.0(3,144)	
		특성화고	2.26(0.89)	22.8	35.8	33.9	7.5	100.0(701)	
	지역 규모	대도시	1.87(0.94)	44.5	30.8	17.9	6.8	100.0(4,531)	15.254*
		중소도시	1.83(0.90)	44.8	32.6	17.3	5.2	100.0(4,229)	
		읍면지역	1.81(0.90)	46.6	30.8	17.4	5.2	100.0(1,58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4(0.92)	45.2	31.4	17.4	6.0	100.0(9,337)	7.258
		한부모가정	1.89(0.91)	42.0	33.3	19.1	5.7	100.0(857)	
		조손가정	1.80(0.87)	45.4	33.0	17.9	3.8	100.0(97)	
		기타	1.86(0.91)	45.8	26.4	24.5	3.4	100.0(58)	
	학업 성적	상	1.82(0.93)	47.7	28.4	17.7	6.2	100.0(3,374)	92.071***
		중	1.79(0.89)	46.9	32.1	16.0	5.0	100.0(4,396)	
		하	1.97(0.93)	37.5	35.0	20.3	7.2	100.0(2,548)	
경제적 수준	상	1.80(0.93)	49.0	28.6	16.2	6.2	100.0(5,324)	107.008***	
	중	1.87(0.89)	42.4	33.5	19.0	5.1	100.0(3,708)		
	하	1.98(0.92)	35.7	37.8	19.2	7.3	100.0(1,310)		

* $p < .05$, *** $p < .001$.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 17.6%, 매우 그렇다 5.9%)가 23.5%,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5%,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5%)가 76.5%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나타난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고가 41.4%으로 시험성적 공개 여부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31.6%), 중학교(23.8%), 초등학교(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33】에서 나타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나타냈다. 2012년에는 공개 경험에 대해 40.5%의 비율을 보였는데 2013년에는 29.1%, 2014년에는 28.1%, 2015년에는 23.5%로 감소하였다. 특성화고의 수치는 2012년에 61.9%, 2015년에는 4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학교 유형과 매해 비교해봤을 때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33】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 (연도별 추이)

5) 정보접근권

(1) 매체 접근율

① 매체 이용률

아동·청소년들의 매체 이용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SNS, 스마트폰, 독서에 관한 이용률을 조사하였다. 먼저,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2014년 기준으로 10대는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한다’에 95.2%가 응답하였고 20대는 99.3%가 응답하였다. 거의 대다수의 아동·청소년이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10대는 하루 평균 약 2시간 정도, 20대는 약 3시간 정도 사용하였다. 10대의 주평균 이용시간 변화 추이를 보면 2009년에 10.8시간에서 2014년에 14.4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대의 주평균 이용시간도 2009년에 18.6시간에서 2014년에 20.5시간으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2-33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평균 이용시간(시간)
2009	10대	96.7	3.3	—	—	10.8
	20대	91.3	8.7	—	—	18.6
2010	10대	97.3	2.7	—	0.0	12.4
	20대	96.8	3.2	—	—	19.4
2011	10대	97.8	2.2	0.1	0.0	13.2
	20대	98.5	1.5	—	0.0	20.4
2012	10대	97.6	2.4	0.0	0.0	14.1
	20대	98.5	1.4	0.0	0.0	21.7
2013	10대	95.8	4.1	0.0(0.02)	—	14.1
	20대	99.3	0.7	0.0(0.03)	—	20.3
2014	10대	95.2	4.7	0.1	—	14.4
	20대	99.3	0.7	0.0(0.026)	—	20.5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4-35.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4-35.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4-35.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4-35.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4-35.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4-35.

표 Ⅲ-2-34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

(단위 : %)

		SNS 이용 ¹⁾ 현황(복수응답)					
		블로그 ²⁾	커뮤니티	미니홈피	프로필 기반 서비스 ³⁾	마이크로블로그 ⁴⁾	기타서비스 ⁵⁾
2010	초등학생	70.4	73.9	55.9	—	2.6	—
	중학생	95.5	61.3	82.0	—	12.2	—
	고등학생	94.1	59.4	95.6	—	18.0	—
	대학생	87.1	80.4	92.4	—	21.6	—
2011	초등학생	70.7	74.5	61.5	13.9	3.8	—
	중학생	92.1	63.5	82.0	11.6	13.2	—
	고등학생	94.3	61.4	94.3	11.5	17.9	—
	대학생	91.1	81.4	91.7	18.9	21.9	—
2012	초등학생	69.0	72.0	61.2	16.5	5.3	—
	중학생	90.6	62.5	81.2	13.1	13.8	—
	고등학생	92.6	59.7	93.3	13.6	18.7	—
	대학생	89.0	80.0	89.9	22.0	23.0	—
	6~19세	86.3	63.3	82.1	13.8	14.5	—
	20대	88.5	83.6	84.5	24.9	19.7	—
2013	6~19세	20.4	—	25.6	93.7	23.7	6.5
	20대	27.0	—	28.6	95.1	33.7	9.5
2014	6~19세	19.8	25.0	14.5	94.2	15.4	—
	20대	29.5	36.7	16.6	96.6	24.6	—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3.5.2.), 2013 청소년 통계. p.29.

* 원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66.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64.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70.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66.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66.

* 주: 1) 최근 1년 이내 이용여부임.

2)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

3) 나이, 학력 등 개인정보 및 사진, 친구목록 등이 프로필 페이지에 제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인맥형성, 교류하는 서비스(페이스북 등)

4) 한 두 문장 정도의 짧은 메시지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의 한 종류(트위터, 미투데이 등)

5) 2013년 조사부터 커뮤니티 대신으로 추가된 문항

SNS 이용률을 살펴보면, 프로필 기반 서비스가 6~19세 사이의 이용자들에게는 94.2%로 20대에게는 96.6%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추이는 2013년도부터 이어져왔고 그 전 해에는 다른 이용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까지는 그 이후의 해와는 다르게 프로필 기반 서비스보다 블로그 및 커뮤니티(온라인 카페, 클럽 등)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19세 사이의 이용자들은 프로필 기반 서비스 다음으로 커뮤니티(25%), 블로그(19.8%), 마이크로블로그(15.4%), 미니홈피(14.5%)의 순으로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2-35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 현황

(단위 : %)

연도	이용률	이용 현황									
		계	음성·영상 통화	문자메시지(SMS, MMS)	무선 인터넷 및 애플리케이션	채팅, 메신저	검색	게임	음악 감상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쇼핑
2011	40.0	100.0	26.5	38.2	35.3	-	-	-	-	-	-
2012	80.7	100.0	29.3	36.7	34.0	-	-	-	-	-	-
2013	97.8	100.0	45.2	36.1	-	86.8	33.0	46.7	35.9	13.6	-
2014	98.3	100.0	41.8	31.5	-	85.6	31.9	48.8	34.0	22.9	1.1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84.

* 주: 2013년도 조사 자료에서는 청소년(12~19세)의 자료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2014년 자료에는 10대 이용자라고 명시되어 있음.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2세~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이용률은 2014년 기준으로 98.3%로 나타났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채팅 및 메신저(85.6%)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게임(48.8%), 음성 및 영상통화(41.8%), 음악감상(34%), 검색(31.9%), 문자메시지(31.5%), SNS(22.9%), 인터넷쇼핑(1.1%)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2년 사이로 스마트폰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SNS 사용량이 2013년에는 13.6%에서 2014년에는 22.9%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음성 및 문자메시지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36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시간

년도	(일)평균 이용시간(시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2011	2.7	100.0	16.0	24.3	18.0	41.7
2012	2.6	100.0	7.7	28.9	27.0	36.4
2013	2.36	100.0	3.5	28.8	30.0	37.7
2014	2.51	100.0	3.6	24.4	26.3	45.7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8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알아보면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2014년 기준으로 2.5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1년도에 2.7시간 보다 줄어든 수치이다. 하지만 이용시간 비율로 보면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45.7%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 비율은 2012년도에 소폭 감소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 Ⅲ-2-37 학생-성인 독서율

(단위 : %)

구분 \ 년도		2010	2011	2013
학생	성인	65.4	66.8	71.4
	소 계	92.3	83.8	96.0
	초 등 학 생	97.6	93.8	99.4
	중 학 생	86.9	79.3	96.0
	고 등 학 생	89.8	79.1	92.7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1, 2013). 국민독서실태 조사. p.32, 2013년 자료는 p.52.

* 주: '국민독서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생산되는 자료로, 2015년 데이터는 2016년 3월에 공표 예정임.

학생들의 연도별 독서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65.4%, 2011년에는 66.8%, 2013년에는 71.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급별 독서율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독서율이 9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생이 96%, 고등학생이 92.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2011년도보다 독서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② 유해매체 이용률

표 Ⅲ-2-38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단위 : %)

분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	케이블TV 성인용 프로그램	컴퓨터 성인용	휴대폰 성인용	온라인 사행성 게임	성인용 게임	이성만남 전화번호
2010	중	27.7	17.1	18.5	8.5	24.8	7.4	38.9	48.6	1.2
	고	49.0	38.6	40.5	21.1	51.8	7.6	53.3	50.4	1.6
2011	중	32.2	21.8	15.2	9.5	24.5	11.7	34.3	47.7	1.3
	고	50.0	42.3	35.5	20.1	50.3	13.0	48.1	47.1	1.6
2012	중	28.5	17.8	13.7	15.4	30.3	16.0	17.5	29.7	1.3
	고	51.1	36.9	33.1	38.1	60.3	24.9	25.4	34.9	2.3
2014	중	26.4	50.3	22.7	41.8	24.6	50.1	8.7	29.9	1.3
	고	40.2	77.1	22.8	43.3	27.1	54.5	16.3	35.5	2.1

* 출처: 여성가족부(2010b).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71.

여성가족부(2011b).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73.

여성가족부(2012b).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51.

여성가족부(2014b).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33.

* 주: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생산되는 자료로, 2016년에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와 통합되어 조사가 실시될 예정임.

중학생들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을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인용 영상물이 50.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휴대폰 성인물(50.1%), 케이블TV성인용 프로그램(41.8%), 성인용 게임(29.9%), 성인용 간행물(26.4%), 컴퓨터 성인물(24.6%), 지상파TV성인용프로그램(22.7%), 온라인 사행성 게임(8.7%), 이성만남 전화번호(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을 보면 중학생과 같이 성인용 영상물이 77.1%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휴대폰 성인물(54.5%), 케이블TV성인용프로그램(43.3%), 성인용 간행물(40.2%), 성인용 게임(35.5%), 컴퓨터성인물(27.1%), 지상파TV성인용프로그램(22.8%), 온라인사행성게임(16.3%), 이성만남 전화번호(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중학생들에게는 PC방이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노래방(87%), 전자오락실(50.8%)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경험률을 보면 노래방이 9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PC방(75.1%), 전자오락실(46.3%)을 이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PC방과 노래방의 이용 경험은 매해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III-2-39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만화방	전 자 오락실	PC방	노래방	비디오/DVD방	성인용 주점	성인용 무도장	멀티방/룸카페
2010	중	31.4	44.3	80.7	82.3	11.4	5.8	0.9	27.4
	고	32.8	59.0	86.0	87.2	15.6	23.2	2.9	52.8
2011	중	28.4	43.8	83.8	82.9	10.9	7.8	1.0	36.0
	고	30.0	51.1	83.8	85.5	12.2	16.3	2.3	52.9
2012	중	24.4	53.8	81.5	89.1	12.5	8.9	1.0	16.5
	고	35.2	65.9	89.8	92.7	12.1	18.6	2.9	32.1
2014	중	19.9	50.8	90.0	87.0	11.6	10.7	1.2	15.4
	고	24.8	46.3	75.1	96.9	12.4	8.5	0.8	36.0

* 출처: 여성가족부(2010b).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147.
 여성가족부(2011b).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149.
 여성가족부(2012b).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67.
 여성가족부(2014b).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35, p.56.

③ 아동·청소년 도서발행 비율

아동·청소년의 지적인 발달과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도서의 기능을 봤을 때 이들을 위한 유익한 도서들은 지속적으로 발행되어야 한다(김영지, 김정준 외, 2013: 191).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신간 발행 종수와 발행 부수를 조사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통계를 보면, 아동·청소년 도서의

신간 발행 종수는 2014년에 7,269였으며 전체 점유율은 15.27%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간 발행 부수는 26,166,569였으며 전체 점유율로는 27.79%를 차지하였다.

표 Ⅲ-2-40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구분	신간 발행 종수(종)					신간 발행 부수(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계	40,291	44,036	39,767	43,146	47,589	106,309,626	109,550,227	86,906,643	86,513,472	94,165,930
아동	7,352	9,546	7,495	7,424	7,269	26,199,626	37,705,148	26,537,234	24,862,658	26,166,569
점유율	18.25%	21.68%	18.9%	17.21%	15.27%	24.64%	34.42%	30.5%	28.74%	27.79%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2010~2014). 출판통계, p.1. 각년도

(2) 정보제공 정도

①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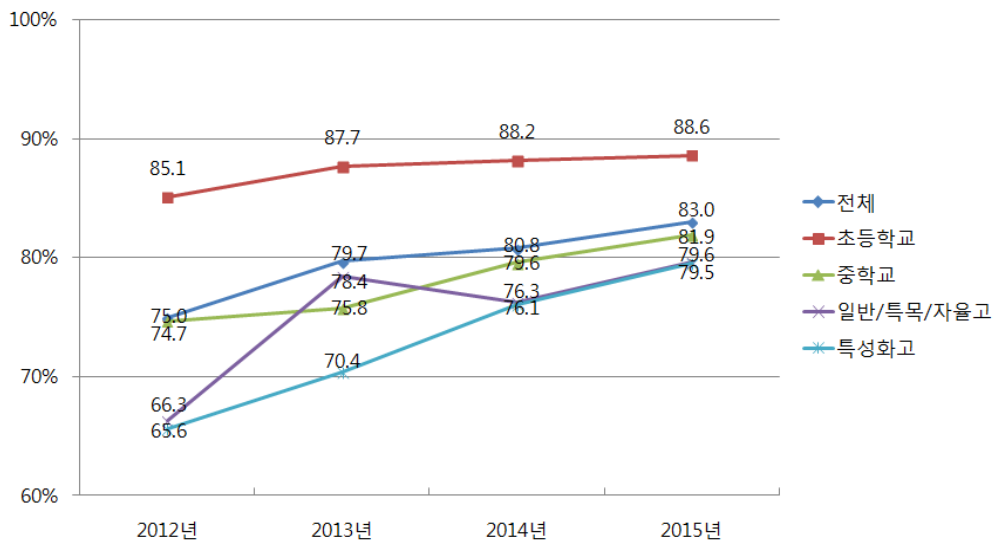
표 Ⅲ-2-41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5(0.80)	6.5	10.6	54.9	28.1	100.0(10,343)	-
성별	남자	2.97(0.85)	8.5	12.2	53.1	26.2	100.0(5,396)	120.920***
	여자	3.13(0.74)	4.3	8.8	56.9	30.1	100.0(4,947)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4(0.81)	5.0	6.3	38.0	50.6	100.0(2,930)	1110.101***
	중학교	2.98(0.80)	7.5	10.6	58.6	23.3	100.0(3,572)	
	일반/특목/자율고	2.88(0.73)	6.5	13.9	64.3	15.3	100.0(3,145)	
	특성화고	2.87(0.75)	7.4	13.0	64.2	15.3	100.0(696)	
지역 규모	대도시	3.09(0.80)	5.8	9.9	53.3	30.9	100.0(4,532)	44.850***
	중소도시	3.00(0.80)	6.9	11.1	57.2	24.8	100.0(4,221)	
	읍면지역	3.03(0.83)	7.2	10.9	53.2	28.6	100.0(1,59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5(0.80)	6.3	10.5	54.6	28.5	100.0(9,330)	21.901**
	한부모가정	2.97(0.81)	7.7	11.4	57.4	23.5	100.0(857)	
	조손가정	3.04(0.91)	10.7	7.2	50.1	32.1	100.0(97)	
	기타	2.91(0.79)	9.9	5.9	67.2	17.0	100.0(58)	
학업 성적	상	3.18(0.80)	5.3	8.6	49.4	36.7	100.0(3,377)	251.080***
	중	3.03(0.79)	6.5	10.3	56.8	26.4	100.0(4,390)	
	하	2.89(0.80)	8.1	13.6	59.2	19.1	100.0(2,545)	
경제적 수준	상	3.12(0.82)	6.3	9.4	50.4	33.9	100.0(5,315)	197.422***
	중	2.98(0.78)	6.6	11.7	58.8	22.9	100.0(3,708)	
	하	2.93(0.76)	7.1	11.8	62.3	18.8	100.0(1,312)	

* $p<.05$, ** $p<.01$, *** $p<.001$.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 54.9%, 매우 그렇다 28.1%)는 83%,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6.5%,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6%)는 17.1%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나타난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88.6%로 공지정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81.9%), 일반/특목/자율고(79.6%), 특성화고(79.5%)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84.2%, 중소도시 82%, 읍면지역 81.9%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I-2-34】에서 나타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변경된 학교규칙 및 규정을 공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에는 75%, 2013년에는 79.7%, 2014년에는 80.8%, 2015년에는 83%로 증가하였다. 세부 학교 유형 중 특성화고의 수치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65.6%, 2015년에는 79.5%로 비율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III-2-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줌 (연도별 추이)

②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표 Ⅲ-2-42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 청소년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침해시
상당기관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전체(N)	χ^2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있다	전체		77.6	22.4	100.0(10,433)	—
	성별	남자	77.4	22.6	100.0(5,434)	0.378
		여자	77.9	22.1	100.0(4,999)	
	학교 유형	초등학교	73.0	27.0	100.0(2,926)	65.894***
		중학교	77.5	22.5	100.0(3,621)	
		일반/특목/자율고	81.0	19.0	100.0(3,171)	
	지역 규모	특성화고	82.1	17.9	100.0(716)	6.183*
		대도시	76.5	23.5	100.0(4,559)	
		중소도시	78.2	21.8	100.0(4,266)	
	가족 유형	읍면지역	79.2	20.8	100.0(1,607)	7.128
		양부모가정	77.3	22.7	100.0(9,410)	
		한부모가정	79.8	20.2	100.0(864)	
		조손가정	77.0	23.0	100.0(98)	
	학업 성적	기타	87.8	12.2	100.0(61)	78.072***
		상	72.9	27.1	100.0(3,393)	
		중	78.5	21.5	100.0(4,435)	
	경제적 수준	하	82.3	17.7	100.0(2,574)	69.984***
상		74.3	25.7	100.0(5,365)		
중		80.6	19.4	100.0(3,741)		
	하	82.4	17.6	100.0(1,320)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전체		84.9	15.1	100.0(10,436)	—
	성별	남자	84.4	15.6	100.0(5,437)	2.154
		여자	85.4	14.6	100.0(5,0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81.0	19.0	100.0(2,927)	55.024***
		중학교	85.3	14.7	100.0(3,625)	
		일반/특목/자율고	87.2	12.8	100.0(3,169)	
	지역 규모	특성화고	88.5	11.5	100.0(716)	11.523**
		대도시	84.0	16.0	100.0(4,561)	
		중소도시	84.8	15.2	100.0(4,269)	
	가족 유형	읍면지역	87.5	12.5	100.0(1,607)	6.051
		양부모가정	84.7	15.3	100.0(9,412)	
		한부모가정	87.5	12.5	100.0(865)	
		조손가정	85.1	14.9	100.0(98)	
	학업 성적	기타	79.7	20.3	100.0(61)	72.991***
		상	81.1	18.9	100.0(3,394)	
		중	85.4	14.6	100.0(4,436)	
	경제적 수준	하	89.0	11.0	100.0(2,575)	47.756***
		상	82.5	17.5	100.0(5,367)	
		중	87.0	13.0	100.0(3,742)	
		하	88.4	11.6	100.0(1,320)	

	구분		아니다	그렇다	전체(N)	χ^2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를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전체		74.5	25.5	100.0(10,428)	—
	성별	남자	75.3	24.7	100.0(5,434)	3.505
		여자	73.7	26.3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67.2	32.8	100.0(2,921)	160.438***
		중학교	80.3	19.7	100.0(3,623)	
		일반/특목/자율고	73.3	26.7	100.0(3,169)	
		특성화고	80.0	20.0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73.7	26.3	100.0(4,559)	8.016*
		중소도시	74.3	25.7	100.0(4,264)	
		읍면지역	77.3	22.7	100.0(1,60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4.1	25.9	100.0(9,404)	7.910*
		한부모가정	78.1	21.9	100.0(865)	
		조손가정	73.0	27.0	100.0(98)	
		기타	81.0	19.0	100.0(61)	
	학업 성적	상	66.8	33.2	100.0(3,392)	220.014***
		중	75.0	25.0	100.0(4,434)	
		하	83.7	16.3	100.0(2,571)	
	경제적 수준	상	72.2	27.8	100.0(5,361)	30.855***
		중	77.2	22.8	100.0(3,742)	
		하	76.2	23.8	100.0(1,31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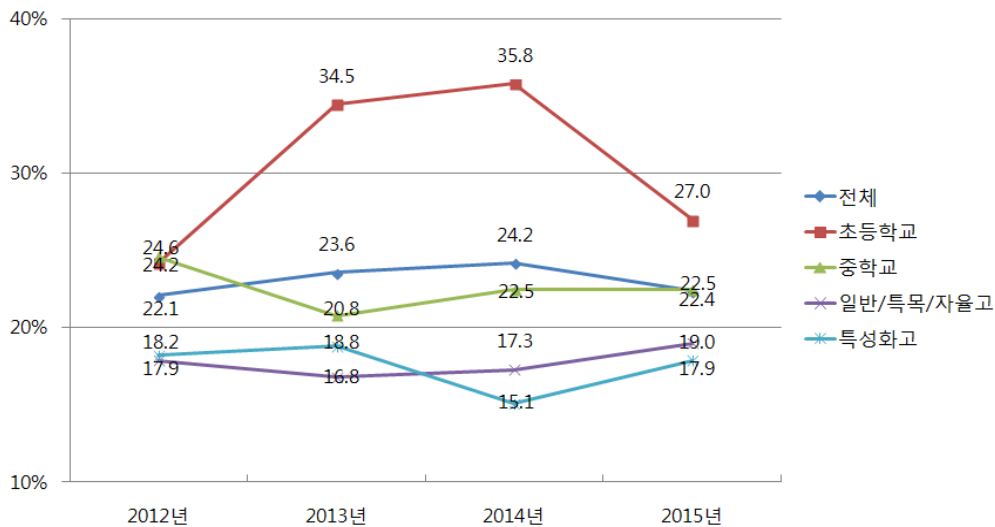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결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 제공’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2.4%로 나타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 제공’에 대해 제공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15.1%,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를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25.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세부 문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 제공’에 대해 ‘그렇다’는 22.4%로 나타났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7.6%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27%로 가장 많이 자료 제공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22.5%), 일반/특목/자율고(19%), 특성화고(17.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23.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중소도시(21.8%), 읍면지역(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상27.1%, 중21.5%, 하17.7%)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상25.7%, 중19.4%, 하17.6%)이 높을수록 정보에 대해 제공받는 비율도 높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 정보 제공’에 대해서 ‘그렇다’는 15.1%, ‘아니다’는 84.9%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19%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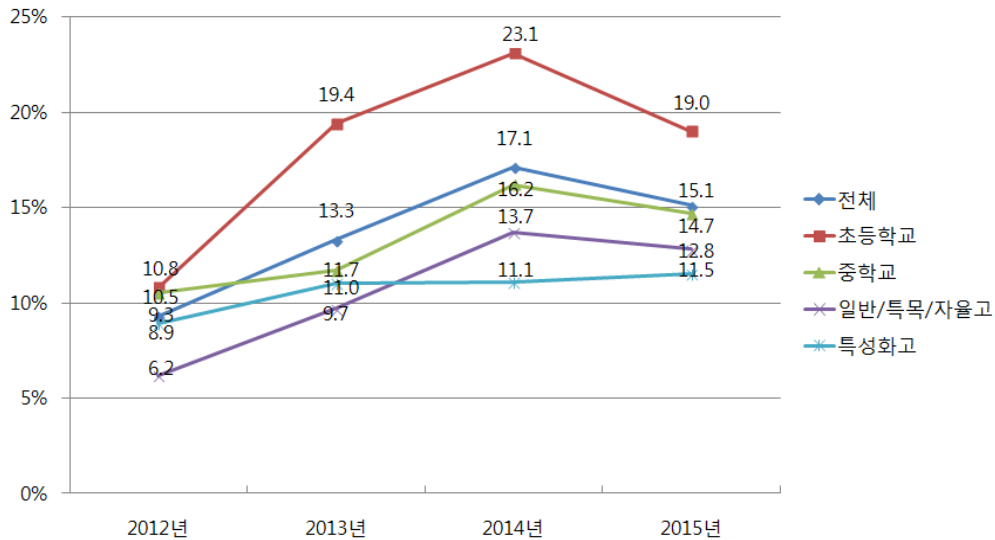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14.7%), 일반/특목/자율고(12.8%), 특성화고(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중소도시(15.2%), 읍면지역(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상18.9%, 중14.6%, 하11%)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상17.5%, 중13%, 하11.6%)이 높을수록 정보에 대해 제공받았던 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은 25.5%, ‘아니다’는 74.5%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가 32.8%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특목/자율고(26.7%), 특성화고(20%), 중학교(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26.3%로 중소도시(25.7%), 읍면지역(22.7%)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27%)이 양부모가정(25.9%), 한부모가정(21.9%)보다 정보 제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상33.2%, 중25%, 하16.3%)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은 상(27.8%), 하(23.8%), 중(22.8%)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II-2-35】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음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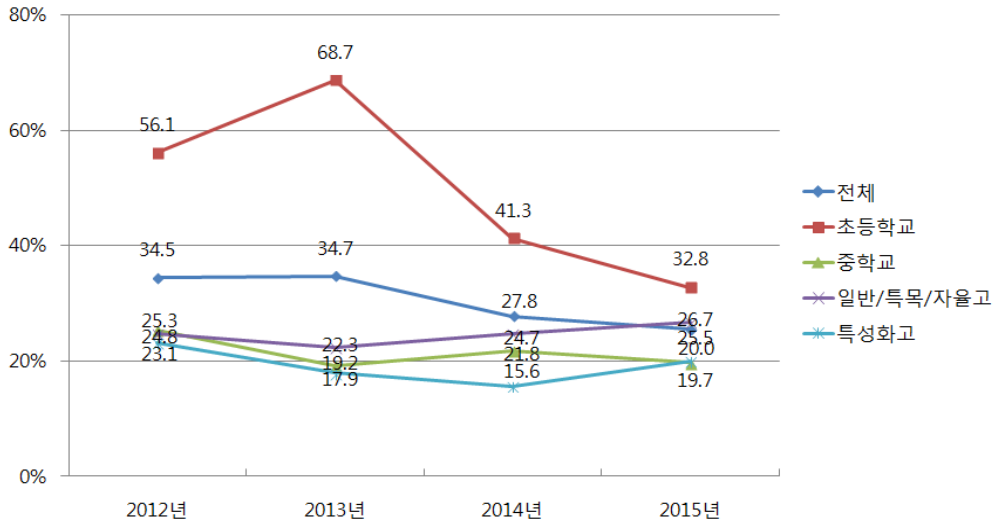
【그림 III-2-35】에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의 제공 경험 여부에 대한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있다. 전체적으로 2012년에는 22.1%, 2013년에는 23.6%, 2014년에는 24.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22.5%로 감소하였다. 세부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자료 제공 경험여부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매해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36】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_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음 (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에 대해 제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I-2-3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에는 9.3%, 2013년도 13.3%, 2014년도에는 17.1%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15.1%로 감소하였다. 세부 학교 유형 중 초등학생이 인권정보에 대해 제공받은 비율을 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 매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그림 III-2-37】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012년에는 34.5%, 2013년에는 34.7%, 2014년에는 27.8%, 2015년에는 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초등학생이 매해마다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에 68.7%이었던 수치에 비해 2014년에는 41.3%, 2015년에는 32.8%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37】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_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를 제공받음 (연도별 추이)

6) 소결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영역의 24개 지표항목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가정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의견존중도는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학생회의 자율권 보장은 20~30% 내외로 낮게 나타났고 학급회의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4%,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34%나 되었다.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12.6%로 낮은 편이었고 참여기구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는 2.4%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58.1%였으며,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시간부족이 35.2%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1.3%),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부족(15.8%), 참여방법과 기회부족(14%)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은 62.9%였으며, 종교재단 재학 청소년 중 53.9%가 종교행사 선택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문제와 관련한 참여활동으로 경고 및 훈계를 받은 경우는 2.1%로 나타났다. 용모검사, 복장검사, 소지품검사 경험은 50.7%, 43.6%, 17.8% 정도로 나타났으나 용모·복장검사 경험은 2011년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가 학교규칙 변경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는 83%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정책 홍보자료 제공(22.4%),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 제공(15.1%),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25.5%) 등 인권관련 정보를 받은 경험은 2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3. 폭력 및 학대²³⁾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 청소년폭력 경험률

① 정서적 학대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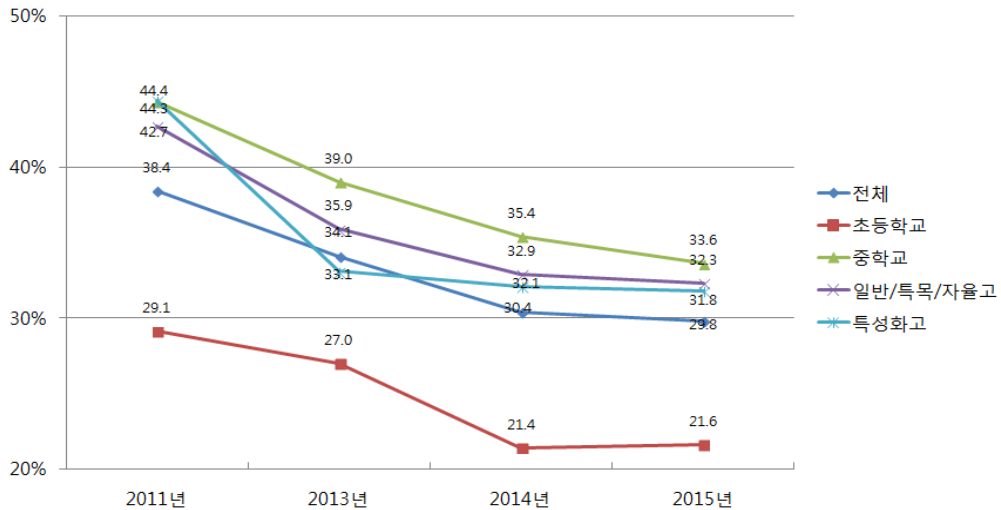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호에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법률적 정의를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를 말하자면 물리적, 신체적 폭력과 구분하여 주로 심리적인 피해를 가하는 욕설이나 모욕을 말할 수 있겠고,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욕설이나 모욕, 따돌림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를 통한 폭력 피해는 청소년들의 내면세계에 영향을 미쳐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증, 자살 등의 2차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 10,438명 중 29.8%에 해당하였다. 말하자면 질문에 응답한 학생 10명 중 3명이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정서적 학대 경험에 있어서 남녀 성별 차이는 없었으며, 세부 학교 유형별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 차이를 굳이 언급하자면 정서적 학대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이 초등학교와, 특목고 학생들에서 상대적으로 10%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인 차이는 그다지 주목할 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주일에 3회 이상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듣는 비율은 조사결과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0.6%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응답이 가장 높아 4.4%에 해당되었다.

23) 이 절에서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는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가,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는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표 Ⅲ-3-1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 -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0.2	16.1	7.8	3.7	2.2	100.0(10,438)	-
성별	남자	69.8	15.9	7.8	3.8	2.7	100.0(5,441)	14.252**
	여자	70.7	16.3	7.7	3.6	1.6	100.0(4,997)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78.3	11.5	5.4	2.6	2.1	100.0(2,927)	181.693***
	중학교	66.4	17.0	9.7	4.4	2.5	100.0(3,627)	
	일반고	67.3	19.6	7.4	3.7	2.0	100.0(2,388)	
	특수목적고	77.7	10.0	9.5	2.1	.6	100.0(258)	
	특성화고	68.2	17.8	6.5	4.9	2.6	100.0(715)	
	자율고	64.6	19.8	9.7	4.2	1.8	100.0(524)	
학업 성적	상	73.4	15.0	6.8	2.7	2.0	100.0(3,395)	74.609***
	중	71.2	15.9	7.2	3.8	1.9	100.0(4,437)	
	하	64.3	18.0	9.9	4.8	3.0	100.0(2,576)	
경제적 수준	상	72.5	15.8	7.2	2.8	1.7	100.0(5,371)	117.380***
	중	70.1	16.3	7.6	3.9	2.1	100.0(3,739)	
	하	61.3	16.8	10.6	6.8	4.4	100.0(1,321)	

** $p<.01$, *** $p<.001$.

【그림 Ⅲ-3-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그림 Ⅲ-3-1】의 그래프를 통해 2012년도를 제외한 2011~2015년까지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에 관한 연도별 추이를 읽을 수 있다. 연도별 추이에 따르면 부모님으로부터의 정서적

학대는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별히 많은 폭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학대가 줄어든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등학교로 나타나 2011년에는 44.4%가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모든 학교 유형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정적 응답이 있었는데, 2015년에는 31.8%로 정서적 학대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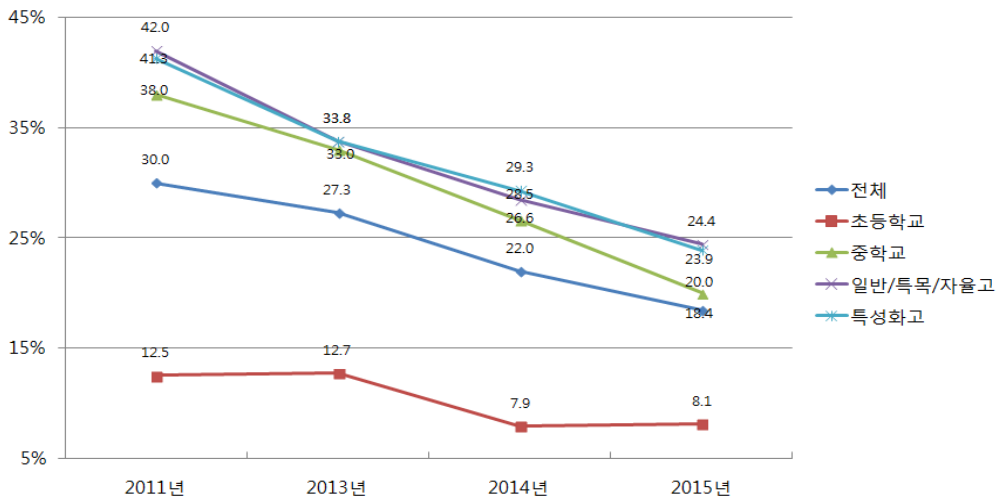
표 III-3-2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 -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1.7	10.7	4.5	2.0	1.2	100.0(10,434)	-
성별	남자	77.9	11.6	6.0	2.6	2.0	100.0(5,437)	164.806***
	여자	85.8	9.7	2.8	1.4	0.3	100.0(4,998)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91.9	4.5	2.2	0.6	0.8	100.0(2,920)	339.310***
	중학교	80.0	11.9	5.0	2.1	1.0	100.0(3,628)	
	일반고	74.0	15.0	6.1	3.2	1.8	100.0(2,389)	
	특수목적고	81.2	12.1	5.5	0.5	0.7	100.0(258)	
	특성화고	76.1	13.0	6.2	3.1	1.6	100.0(716)	
	자율고	79.8	12.9	3.5	2.2	1.5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80.4	11.7	4.8	1.9	1.2	100.0(4,560)	15.808*
	중소도시	82.2	10.1	4.4	2.0	1.2	100.0(4,266)	
	읍면지역	84.1	9.3	3.7	2.1	0.9	100.0(1,608)	
학업 성적	상	84.4	9.5	3.7	1.3	1.1	100.0(3,392)	83.553***
	중	82.8	10.1	4.0	2.0	1.0	100.0(4,437)	
	하	76.0	13.2	6.3	2.8	1.6	100.0(2,575)	
경제적 수준	상	82.9	9.8	4.4	1.8	1.0	100.0(5,369)	48.229***
	중	82.1	11.0	4.1	1.7	1.1	100.0(3,738)	
	하	75.5	13.3	5.9	3.3	2.0	100.0(1,321)	

* $p < .05$, *** $p < .001$.

<표 III-3-2>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과 같은 정서적 학대를 받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정보다 학교에서 정서적 학대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11.5%정도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도 차이가 있어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7.9%정도 높게 조사되었다. 학교급별 비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초등학교 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정서적 학대가 더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74%)에 비해서 특목고(81.2%), 특성화고(76.1%), 자율고(79.8%)가 상대적으로 정서적 학대가 조금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비교에 있어서는 근소한 차이지만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정서적 학대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읍면지역(84.1%), 중소도시(82.2%), 대도시(80.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있어서 학업성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 학대가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학업성적에 있어서 부모 및 교사와 학생 간에 갈등이 많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이 부모와 학생자녀 간 가정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교사와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림 Ⅲ-3-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그림 Ⅲ-3-2】는 정서적 학대의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 결과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 가장 적으로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학대 경험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학대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히,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2011년과 2015년을 비교하였을 때에 약 18%에 가까운 큰 폭으로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학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에서 학교교사의 체벌금지에 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개선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가정의 부모나 보호자(70.2%)와 학교의 교사로(81.7%)부터 정서적 학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이 학교 선배나 또래 친구(85.6%)에서보다 더 낮게 나타나 대체로 응답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동류집단보다는 어른들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3>은 응답학생들이 자신들의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학생들의 14.3%가 이러한 정서적 학대의 경험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나 보호자(29.8%)로부터와 학교의 교사(18.4%)로부터 보다 낮은 수치여서 오히려 성인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학대의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17.9%)이 여학생(10.5%)보다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학대를 더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그룹의 학생들이 조금 더 정서적 학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부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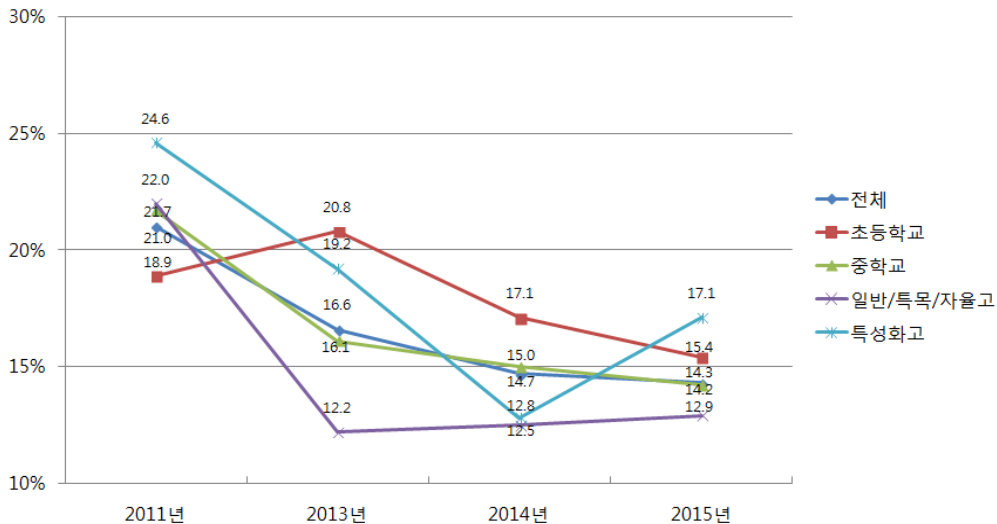
표 III-3-3 정서적 학대 경험여부 - 선후배,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5.6	8.5	2.8	1.5	1.5	100.0(10,453)	-
성별	남자	82.1	9.5	3.8	2.2	2.5	100.0(5,448)	170.716***
	여자	89.5	7.4	1.8	0.8	0.4	100.0(5,005)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84.6	9.8	3.0	1.7	0.9	100.0(2,935)	72.609***
	중학교	85.7	8.7	2.9	1.5	1.1	100.0(3,629)	
	일반고	87.3	7.0	2.4	1.1	2.2	100.0(2,391)	
	특수목적고	84.3	9.6	3.2	2.0	0.9	100.0(258)	
	특성화고	82.9	7.7	3.4	2.5	3.5	100.0(716)	
	자율고	87.9	6.9	2.4	0.5	2.3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85.7	8.2	3.0	1.6	1.5	100.0(4,568)	12.174
	중소도시	85.3	8.4	3.0	1.5	1.8	100.0(4,275)	
	읍면지역	86.2	9.4	2.1	1.4	0.9	100.0(1,610)	
학업 성적	상	87.2	7.8	2.4	1.4	1.2	100.0(3,400)	29.730***
	중	86.2	8.2	2.6	1.4	1.6	100.0(4,445)	
	하	82.7	10.1	3.7	1.7	1.8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86.8	8.3	2.3	1.3	1.2	100.0(5,380)	63.300***
	중	85.6	8.6	2.8	1.4	1.6	100.0(3,744)	
	하	80.7	8.9	5.3	2.6	2.5	100.0(1,322)	

*** $p < .001$.

【그림 III-3-3】에서는 응답학생들이 자신들의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받은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있다. 전체적으로 응답학생들의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고등학교에서는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비율이 2013년 이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2011년

24.6%에서 2014년 12.8%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다시 17.1%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3】 선후배,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연도별 추이)

② 폭력피해 경험

다음 제시된 표들은 정서적 학대와는 다른 종류의 폭력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폭력피해 경험은 상해, 폭행, 성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포함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신체적 폭력의 피해이자 주로 성인들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이라 할 수 있는 체벌에 관해서는 따로 살펴보았으며, 응답학생의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폭력인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성적 희롱이나 추행과 같은 피해 경험들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았다.

폭력피해 경험에 있어서 먼저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표 Ⅲ-3-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응답자 중 5.5%에 해당되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남자는 8.1%로 여자 2.6%로 보다 상대적으로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세부 학교유형이나 지역규모, 학업수준과 경제적 수준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1주일에 3회 이상의 상습적인 폭력피해 경험에 있어서는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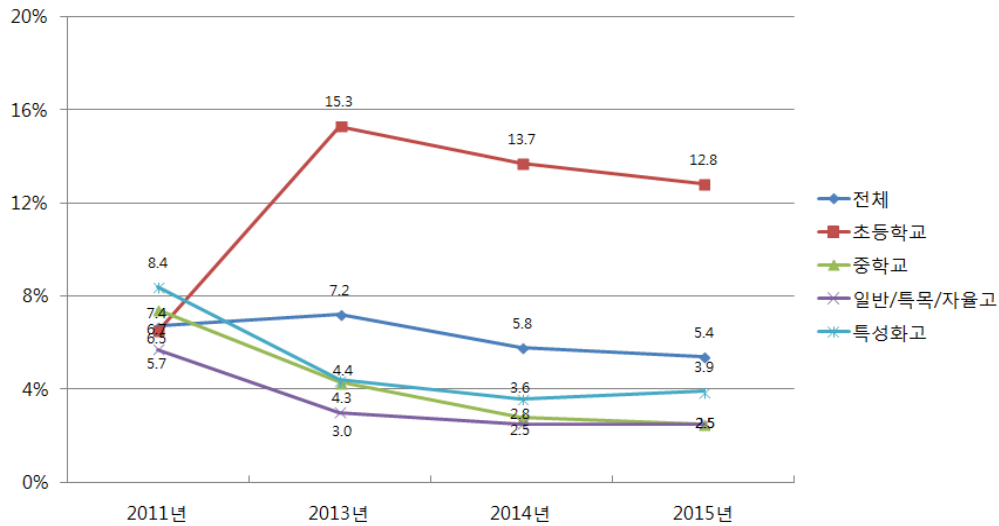
에서 13%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와 주목할 만한 조사결과라 할 수 있어 초등학생부터 폭력예방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 - 폭행이나 구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4.5	3.0	1.2	0.6	0.6	100.0(10,452)	-
성별	남자	91.9	4.4	1.8	1.0	0.9	100.0(5,447)	158.835***
	여자	97.4	1.6	0.6	0.2	0.2	100.0(5,005)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87.2	7.4	2.8	1.3	1.3	100.0(2,935)	435.271***
	중학교	97.5	1.2	0.8	0.3	0.2	100.0(3,628)	
	일반고	97.4	1.4	0.3	0.4	0.5	100.0(2,391)	
	특수목적고	97.3	1.1	0.9	0.6	0.0	100.0(258)	
	특성화고	96.1	2.3	0.9	0.6	0.1	100.0(716)	
	자율고	98.2	0.9	0.2	0.3	0.4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94.5	3.0	1.5	0.5	0.5	100.0(4,567)	11.610
	중소도시	94.2	3.4	1.1	0.7	0.6	100.0(4,275)	
	읍면지역	95.4	2.3	0.9	0.8	0.6	100.0(1,610)	
학업 성적	상	94.3	3.3	1.1	0.6	0.7	100.0(3,400)	13.081
	중	94.1	3.1	1.5	0.7	0.6	100.0(4,444)	
	하	95.7	2.4	0.9	0.6	0.4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94.5	3.2	1.0	0.7	0.6	100.0(5,380)	20.583**
	중	94.9	2.7	1.5	0.4	0.5	100.0(3,743)	
	하	93.4	3.4	1.5	1.2	0.5	100.0(1,322)	

** $p < .01$, *** $p < .001$.

【그림 III-3-4】에서는 응답학생들이 자신들의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험의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있다. 전체적으로 구타를 당한 경험은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소폭 증가세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의 구타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1년 6.5%였던 구타율이 2013년에 15.3%로 크게 증가하더니 이후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12.8%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폭력의 조기에방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3-4】 선후배, 친구로부터 폭행이나 구타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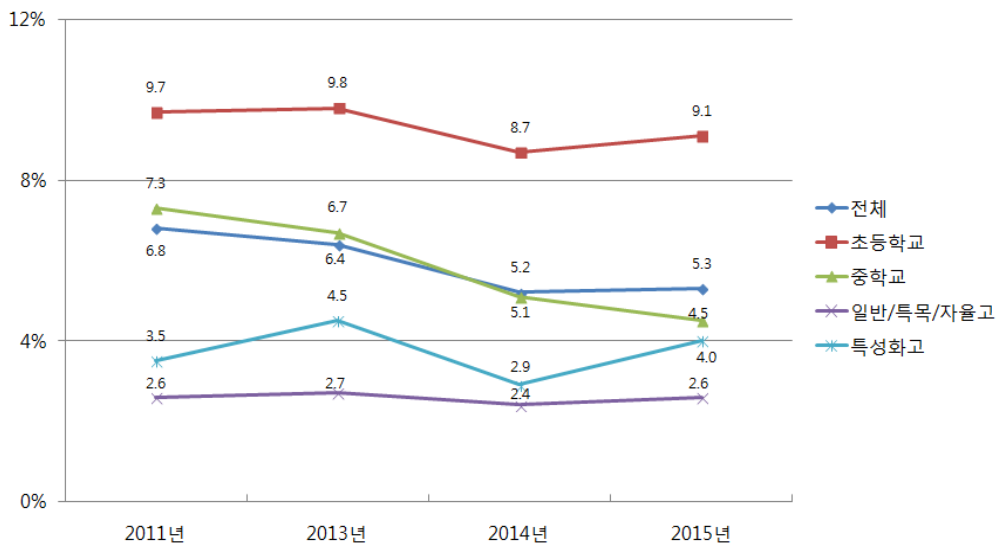
표 Ⅲ-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 - 따돌림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4.8	3.3	1.0	0.5	0.5	100.0(10,449)	-
성별	남자	95.2	2.7	1.1	0.5	0.5	100.0(5,444)	15.445**
	여자	94.4	3.9	0.8	0.5	0.5	100.0(5,005)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90.8	5.7	1.7	1.1	0.6	100.0(2,932)	179.974***
	중학교	95.6	2.8	1.0	0.4	0.3	100.0(3,628)	
	일반고	97.3	2.2	0.3	0.0	0.2	100.0(2,391)	
	특수목적고	96.3	2.4	0.5	0.2	0.6	100.0(258)	
	특성화고	96.0	1.6	0.5	0.3	1.6	100.0(716)	
	자율고	97.8	1.1	0.5	0.3	0.3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94.6	3.5	1.0	0.6	0.3	100.0(4,566)	12.074
	중소도시	94.7	3.2	1.1	0.5	0.5	100.0(4,273)	
	읍면지역	95.5	3.0	0.7	0.2	0.7	100.0(1,610)	
학업 성적	상	95.4	3.1	0.7	0.4	0.4	100.0(3,398)	14.338
	중	95.0	3.2	0.9	0.5	0.4	100.0(4,444)	
	하	93.7	3.7	1.4	0.6	0.6	100.0(2,577)	
경제적 수준	상	95.2	3.3	0.8	0.4	0.4	100.0(5,377)	21.055**
	중	95.0	3.0	1.0	0.6	0.4	100.0(3,743)	
	하	92.4	4.4	1.6	0.7	0.8	100.0(1,322)	

** $p < .01$, *** $p < .001$.

<표 III-3-5>는 폭력피해 경험 중에서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피해경험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10,449명 중에서 5.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남녀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초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따돌림 피해경험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근소하게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주일에 3회 이상의 상습적인 따돌림 피해경험에 있어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아(1.6%)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유형별 종류에 비해 약 3~8배의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I-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그림 III-3-5】는 응답학생들이 자신들의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경험은 점차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감소폭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염려되는 것은 2014년 이후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 유형들에서 따돌림 경험이 미세하나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Ⅲ-3-6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 - 성적 희롱이나 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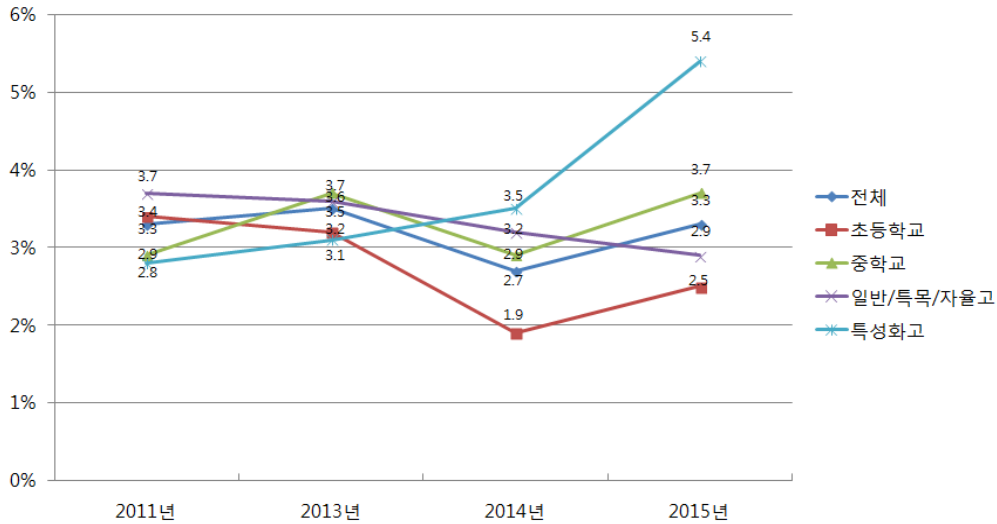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6.8	1.4	0.8	0.5	0.6	100.0(10,449)	-
성별	남자	95.6	1.8	1.1	0.7	0.8	100.0(5,446)	53.210***
	여자	98.0	1.0	0.5	0.2	0.2	100.0(5,003)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97.4	1.3	0.5	0.3	0.4	100.0(2,932)	38.057**
	중학교	96.3	1.5	1.1	0.6	0.5	100.0(3,628)	
	일반고	96.9	1.2	0.7	0.5	0.7	100.0(2,391)	
	특수목적고	97.7	0.5	0.9	0.9	0.0	100.0(258)	
	특성화고	94.6	2.2	1.2	0.4	1.6	100.0(715)	
	자율고	98.2	1.0	0.5	0.2	0.1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97.1	1.1	0.7	0.6	0.6	100.0(4,566)	15.601*
	중소도시	96.3	1.8	1.0	0.4	0.6	100.0(4,272)	
	읍면지역	97.3	1.3	0.7	0.3	0.4	100.0(1,610)	
학업 성적	상	96.8	1.6	0.6	0.5	0.4	100.0(3,398)	11.217
	중	97.0	1.2	0.9	0.4	0.5	100.0(4,443)	
	하	96.2	1.5	0.9	0.6	0.8	100.0(2,577)	
경제적 수준	상	97.4	1.3	0.5	0.3	0.4	100.0(5,377)	37.729***
	중	96.7	1.4	0.9	0.5	0.5	100.0(3,742)	
	하	94.4	2.0	1.6	0.8	1.1	100.0(1,322)	

* $p<.05$, ** $p<.01$, *** $p<.001$.

폭력피해 경험 중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받은 성적 희롱이나 추행의 경험은 <표 Ⅲ-3-6>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3.2%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남학생(4.4%)이 여학생(2%)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학업성적별에서는 피해경험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그룹 학생들의 5.6%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룹(2.6%), 중간 수준의 그룹(3.3%)보다 상대적으로 성적 희롱이나 추행의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3-6】은 응답학생들이 자신들의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학교들은 2014년까지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성추행 경험이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일반/특목/자율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가장 성추행 경험이 낮았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2015년에는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원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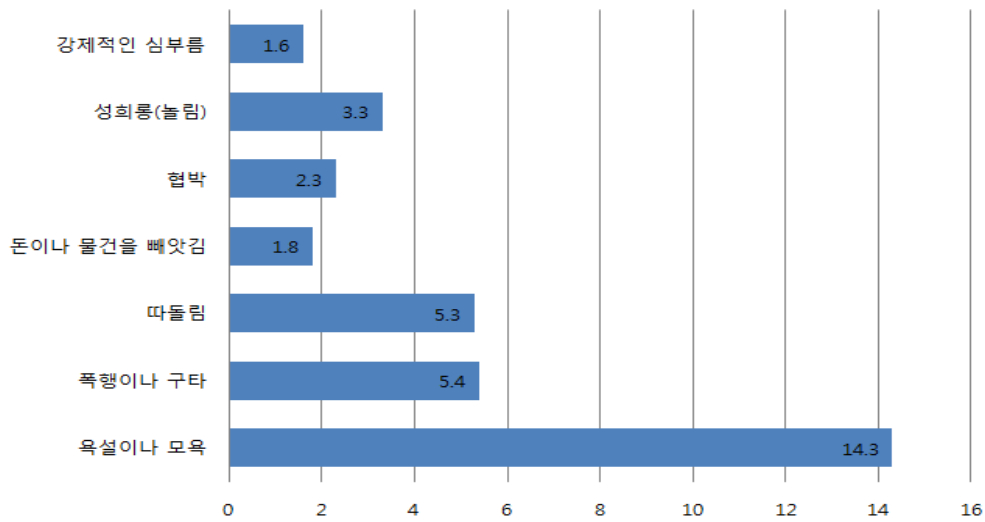
【그림 Ⅲ-3-6】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이 밖에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의 다른 폭력피해 종류들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전체 응답자 중 협박을 당한 경험이 2.3%,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1.8%, 강제적 심부름 경험이 1.6%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7>과 【그림 Ⅲ-3-7】에서는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각종 폭력피해 경험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리적 폭력이 아닌 모욕이나 욕설과 같은 정서적 학대의 피해경험이 14.3%로 가장 많고, 신체적 폭력인 폭행과 구타가 5.4%, 심리적 폭력이라 할 수 있는 따돌림이 5.3%로 비슷하며, 나머지 갈취, 협박, 성적 희롱 및 추행, 강제적 심부름은 1.6%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7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피해 경험여부

(단위 : %(명))

내 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85.6	8.5	2.8	1.5	1.5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94.5	3.0	1.2	0.6	0.6
3) 따돌림을 당함	94.8	3.3	1.0	0.5	0.5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98.1	1.2	0.4	0.1	0.1
5) 협박을 당함	97.8	1.3	0.5	0.3	0.2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96.8	1.4	0.8	0.5	0.6
7) 강제적인 심부름	98.4	0.8	0.4	0.2	0.2



【그림 Ⅲ-3-7】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단위(%)

표 Ⅲ-3-8 9~17세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 폭력 가해 경험		계 (명)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전체		67.8	32.2	78.5	21.5	100.0(5,487,900)
아동 성별	남자	66.6	33.4	75.4	24.6	100.0(2,885,431)
	여자	69.1	30.9	81.9	18.1	100.0(2,602,469)
연령	9-11세	61.4	38.6	77.8	22.2	100.0(1,546,503)
	12-17세	70.3	29.7	78.7	21.3	100.0(3,941,397)
소득수준1	빈곤	67.6	32.4	77.3	22.7	100.0(265,634)
	일반	67.8	32.2	78.5	21.5	100.0(5,222,267)
소득수준2	기초수급	69.1	30.9	75.0	25.0	100.0(193,077)
	차상위	63.5	36.5	83.3	16.7	100.0(72,556)
	일반	67.8	32.2	78.5	21.5	100.0(5,222,267)
거주지역	대도시	64.6	35.4	79.4	20.6	100.0(2,391,807)
	중소도시	69.8	30.2	77.0	23.0	100.0(2,759,123)
	농어촌	74.9	25.1	83.9	16.1	100.0(336,971)
가족유형	양부모	68.9	31.1	78.6	21.4	100.0(4,675,385)
	한부모·조손	60.9	39.1	76.5	23.5	100.0(759,865)

* 출처: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pp.361-362.

<표 Ⅲ-3-8>은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9~17세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을 보여주고 있어 2015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 행위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2015년의 조사에서는 학교의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인 체벌경험 18.4%와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5%를 합하면, 23.4%와 2013년의 피해경험 응답율 32.2%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년 동안 학교폭력이 감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년 간 조사의 공통적인 경향으로는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서 피해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학교폭력의 예방에 있어서 초등학교부터 적극적인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표 Ⅲ-3-9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 욕설이나 모욕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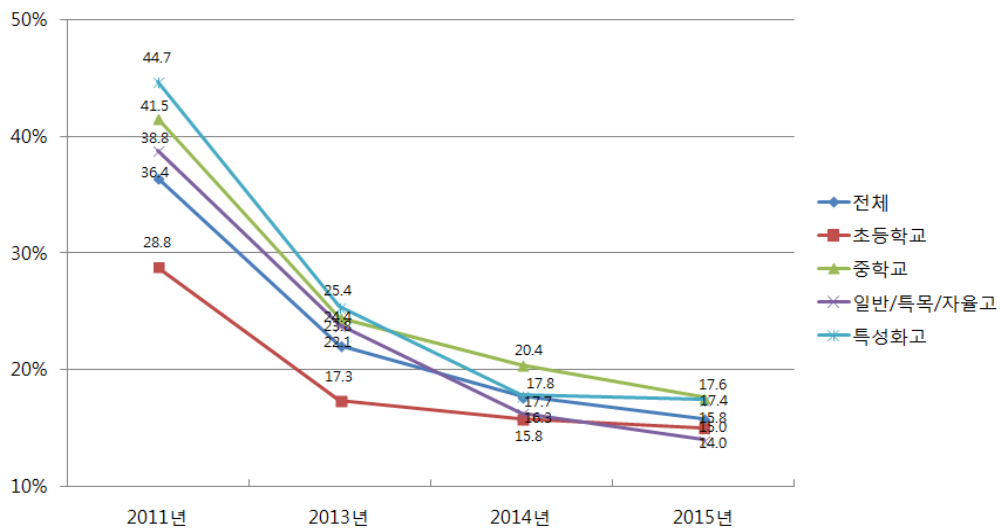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4.2	8.3	3.6	1.7	2.2	100.0(10,450)	—
성별	남자	80.0	8.2	5.0	2.8	4.0	100.0(5,446)	325.890***
	여자	88.7	8.4	2.0	0.5	0.3	100.0(5,004)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85.0	8.8	2.9	1.6	1.7	100.0(2,935)	61.811***
	중학교	82.3	9.3	4.3	1.8	2.2	100.0(3,627)	
	일반고	85.3	6.3	3.6	1.8	3.0	100.0(2,391)	
	특수목적고	91.5	6.8	1.7	0.0	0.0	100.0(258)	
	특성화고	82.6	8.7	3.9	2.2	2.6	100.0(716)	
	자율고	86.4	8.5	2.8	0.7	1.7	100.0(524)	
학업 성적	상	84.8	8.1	3.8	1.7	1.7	100.0(3,400)	33.832***
	중	85.5	8.1	3.1	1.4	2.0	100.0(4,444)	
	하	81.2	9.2	4.2	2.3	3.1	100.0(2,577)	
경제적 수준	상	85.3	7.8	3.2	1.4	2.3	100.0(5,378)	37.934***
	중	84.2	8.6	3.5	1.9	1.8	100.0(3,744)	
	하	79.5	9.9	5.4	2.3	2.9	100.0(1,321)	

*** $p<.001$.

사이버공간에서의 심한 모욕이나 욕설과 같은 정서적 학대 피해경험을 보면 <표 Ⅲ-3-9>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 응답자 10,450명 중 해당되는 비율은 15.8%에 달하고 있다. 이는 10명 중 1~2명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주로 남자(20%)보다 여자 응답자(11.3%)가 사이버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덜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학교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 중학교(17.7%)와 특성화고

(17.4%)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피해 경험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특수목적고(8.5%)는 피해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 차이에서 나타나는 피해경험 비율은 비슷하였으나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8】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정서적 학대의 피해 경험여부에 관한 2011~2015년의 4년간의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다(2012년 제외). 전체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서적 학대 피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감소의 폭이 작게 나타나고 있고, 정서적 학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8】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이나 모욕 피해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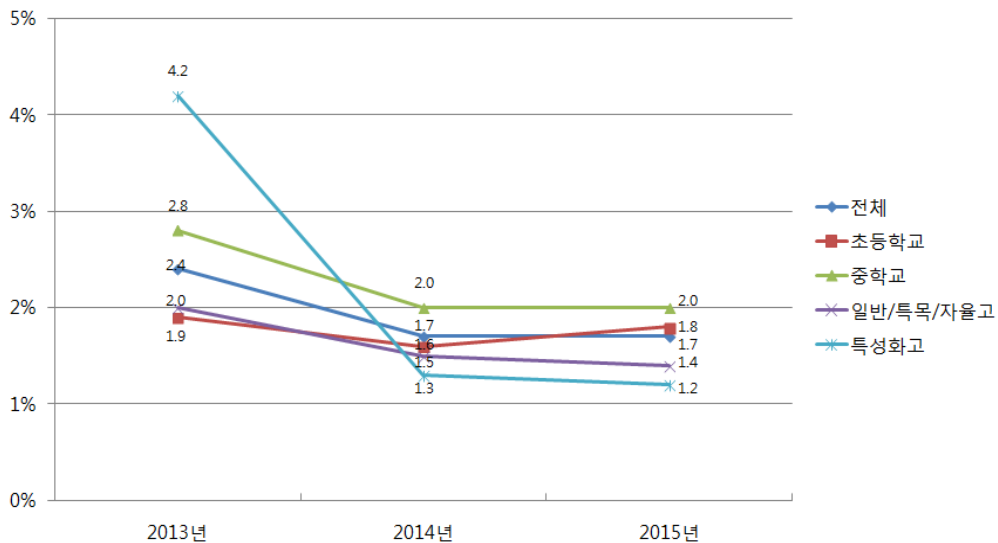
또 다른 사이버공간에서의 심리적 폭력이라 할 수 있는 따돌림의 피해경험을 <표 III-3-10>에서 살펴보면, 모욕이나 욕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 전체의 98.3%는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남녀 비교, 세부 학교유형별 비교, 성적과 경제적 수준 차이의 비교에 있어서도 거의 차이가 없이 피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8%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제일 낮은 응답자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7%대로 조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습적인 따돌림 피해도 이 집단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박, 성희롱, 사생활침해와 같은 정신적 학대 피해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 비율은 각각 97.9%, 97.2%, 95.1%로 나타났다. 따돌림으로 인한 폭력피해의 경험은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응답자 전체가 10,451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중에서 사이버 상에서의 심리적 폭력의 피해 경험 학생들이 200~500명에 달하고 있어 아주 낮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 Ⅲ-3-10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 따돌림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8.3	1.1	0.3	0.1	0.2	100.0(10,449)	-
성별	남자	98.1	1.1	0.4	0.1	0.3	100.0(5,446)	15.990**
	여자	98.6	1.2	0.2	0.0	0.1	100.0(5,003)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2	1.2	0.3	0.1	0.2	100.0(2,933)	11.217
	중학교	98.1	1.3	0.4	0.1	0.2	100.0(3,628)	
	일반고	98.6	1.0	0.2	0.1	0.3	100.0(2,391)	
	특수목적고	99.1	0.9	0.0	0.0	0.0	100.0(258)	
	특성화고	98.9	1.0	0.1	0.0	0.1	100.0(716)	
	자율고	98.8	1.1	0.1	0.0	0.0	100.0(524)	
학업 성적	상	98.8	0.8	0.3	0.0	0.1	100.0(3,399)	24.054**
	중	98.4	1.2	0.3	0.1	0.1	100.0(4,444)	
	하	97.6	1.6	0.3	0.1	0.5	100.0(2,577)	
경제적 수준	상	98.7	0.8	0.2	0.0	0.2	100.0(5,378)	20.414**
	중	98.1	1.4	0.2	0.1	0.1	100.0(3,743)	
	하	97.4	1.7	0.5	0.0	0.4	100.0(1,321)	

* $p<.05$, ** $p<.01$.



【그림 Ⅲ-3-9】 사이버공간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그림 Ⅲ-3-9】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의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사이버공간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의 추이는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사실은 2013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이버공간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이 모든 유형의 학교들 중에서 가장 높아 4.2%였었는데, 2014년에는 1.3%로 대폭 낮아지더니 2015년에는 1.2%로 낮아져 모든 유형의 학교들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최근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유형 중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폭력적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Ⅲ-3-11>은 이러한 종류의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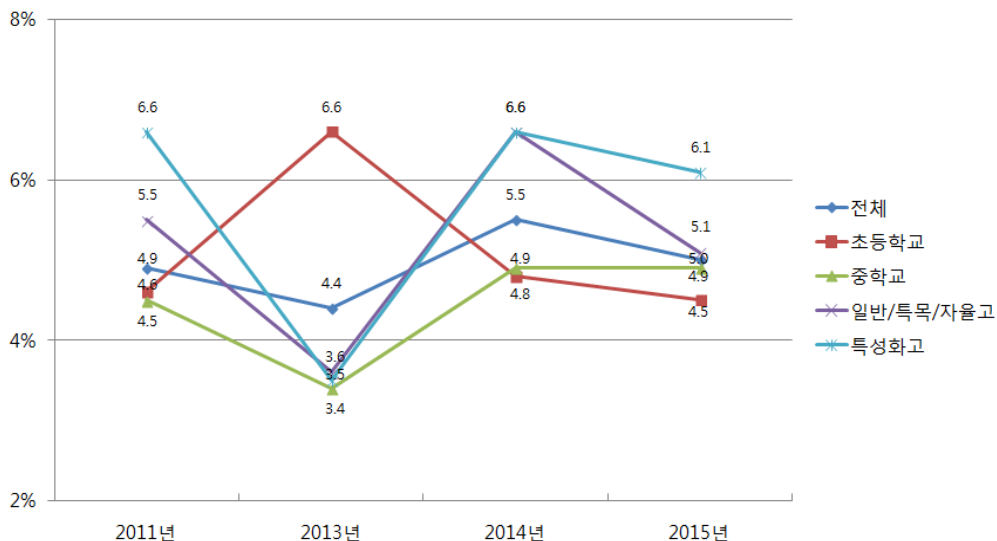
표 Ⅲ-3-11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알려짐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1	3.7	0.6	0.4	0.3	100.0(10,451)	—
성별	남자	94.7	3.6	0.9	0.5	0.2	100.0(5,447)	29.617***
	여자	95.5	3.8	0.2	0.2	0.3	100.0(5,004)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95.6	3.5	0.5	0.3	0.2	100.0(2,935)	38.680**
	중학교	95.1	3.5	0.7	0.5	0.2	100.0(3,628)	
	일반고	95.0	3.9	0.6	0.3	0.2	100.0(2,391)	
	특수목적고	95.2	4.0	0.5	0.3	0.0	100.0(258)	
	특성화고	93.9	4.0	0.6	0.2	1.3	100.0(716)	
	자율고	94.2	4.8	0.8	0.1	0.2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94.8	3.8	0.8	0.4	0.2	100.0(4,567)	13.458
	중소도시	95.3	3.6	0.4	0.4	0.4	100.0(4,275)	
	읍면지역	95.5	3.6	0.5	0.3	0.1	100.0(1,609)	
학업 성적	상	95.3	3.9	0.4	0.2	0.2	100.0(3,400)	27.311***
	중	95.6	3.4	0.6	0.3	0.2	100.0(4,445)	
	하	93.9	4.0	0.9	0.6	0.5	100.0(2,577)	
경제적 수준	상	95.6	3.4	0.4	0.4	0.3	100.0(5,379)	46.134***
	중	95.5	3.5	0.6	0.3	0.2	100.0(3,744)	
	하	92.0	5.6	1.6	0.6	0.2	100.0(1,321)	

** $p<.01$, *** $p<.001$.

전체 응답학생 10,451명 중 4.9%는 자신의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사이버공간에서 알려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0명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피해가 점차 증가일로에 있다는 사실과 불특정 다수가 이러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세부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별에 있어서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근소하게 특성화고(6.1%)와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그룹의 학생들이 각각 6.1%와 8.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주일에 3회 이상의 이러한 폭력피해 경험을 상습적으로 겪고 있는 응답자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장 많아 응답자 전체 716명 중 13%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다른 세부 학교유형보다 약 6배나 높은 비율이다.

【그림 III-3-10】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 경험여부에 관한 2011~2015년의 4년간의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 있다(2012년 제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의 폭력이 증가되지 않은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큰 폭으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와는 달리 사생활 침해의 사이버폭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사생활 침해의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될수록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III-3-10】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 유출 피해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2) 체벌 경험률

① 체벌 경험률

폭력 피해 경험 중에서 체벌은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으로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 어른들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의 피해 경험이다. <표 III-3-12>에서는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폭력인 체벌에 대하여 조사된 결과를 볼 수 있다.

표 III-3-12 체벌 경험여부 -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5.2	18.1	5.0	1.2	0.4	100.0(10,434)	-
성별	남자	74.4	18.2	5.4	1.4	0.5	100.0(5,437)	13.101*
	여자	76.1	18.0	4.6	1.1	0.2	100.0(4,997)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69.5	20.3	7.3	2.1	0.8	100.0(2,926)	282.262***
	중학교	71.6	20.9	5.9	1.3	0.3	100.0(3,628)	
	일반고	83.2	14.3	1.9	0.3	0.3	100.0(2,385)	
	특수목적고	90.8	6.1	2.2	0.8	0.0	100.0(258)	
	특성화고	82.2	12.5	3.9	1.3	0.1	100.0(712)	
	자율고	78.8	17.6	3.3	0.3	0.0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74.9	18.3	5.0	1.4	0.4	100.0(4,561)	9.177
	중소도시	74.6	18.3	5.4	1.3	0.4	100.0(4,265)	
	읍면지역	77.7	17.0	4.2	0.9	0.3	100.0(1,608)	
학업 성적	상	74.6	18.1	5.7	1.3	0.3	100.0(3,395)	6.877
	중	75.9	18.1	4.5	1.2	0.4	100.0(4,436)	
	하	74.9	18.1	5.2	1.3	0.4	100.0(2,572)	
경제적 수준	상	74.8	18.5	5.2	1.2	0.3	100.0(5,374)	13.809
	중	76.4	17.7	4.4	1.1	0.4	100.0(3,731)	
	하	73.7	17.8	6.1	1.9	0.5	100.0(1,321)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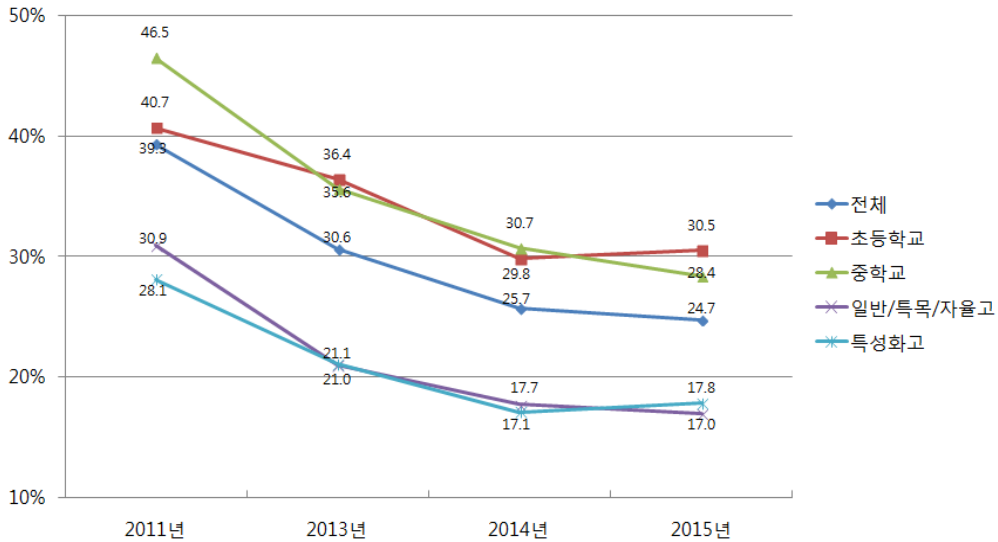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10,434명 중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응답자는 거의 25%에 달해 응답자 4명 중 1명은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주일에 3회 이상 체벌을 당하는 응답 학생들이 0.4%에 불과하지만 전체 응답자 중 약 40명이 해당되어 보호자로부터 거의 매일 상습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해 경험을 보았을 때에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세부 학교유형별로 보았을 때에는 초등학생들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아 30.5%에

달하였으며, 특수목적고 학생들은 가장 적어 9.2%만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규모와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별 구분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3>과 【그림 III-3-11】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은 경험여부에 관하여 2012년을 제외한 2011~2015년의 4년간의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2011년과 비교해보았을 때에 4년 간 부모로부터의 체벌은 눈에 띄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체벌 감소의 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초등학생으로 2011년에 체벌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이 59.3%에서 2015년에는 75.2%로 15.9%나 높아졌다. 이렇게 부모로부터의 체벌이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체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대한민국에서 부모들의 체벌은 여전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부모로부터의 체벌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전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 약간 체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3 체벌 경험여부 -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단위 : %)

학교유형		연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이상
초등학교		2011	59.3	26.2	9.5	3.3	1.7
		2013	63.5	24.2	8.7	2.4	1.1
		2014	70.2	20.4	6.7	1.6	1.1
		2015	75.2	18.1	5.0	1.2	0.4
중학교		2011	53.6	32.8	10.0	2.9	0.8
		2013	64.5	25.6	7.4	1.8	0.8
		2014	69.1	23.0	6.1	1.2	0.4
		2015	71.6	20.9	5.9	1.3	0.3
고등 학교	전체	2011	69.7	23.7	4.8	1.3	0.5
		2013	79.0	17.4	2.6	0.6	0.4
		2014	82.4	14.3	2.5	0.5	0.2
		2015	82.9	13.9	2.5	0.5	0.2
	일반/특목/ 자율고	2011	69.1	24.4	4.7	1.5	0.3
		2013	79.0	17.5	2.6	0.5	0.4
		2014	82.3	14.6	2.4	0.5	0.2
		2015	83.1	14.2	2.2	0.3	0.3
	특성 화고	2011	71.8	21.2	5.3	0.4	1.2
		2013	78.9	17.2	2.5	1.1	0.3
		2014	82.9	13.1	3.4	0.4	0.2
		2015	82.2	12.5	3.9	1.3	0.1



【그림 Ⅲ-3-11】 부모로부터 신체적 벌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표 Ⅲ-3-14>에서는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신체적 체벌 경험이 나타나있다. 가정에서의 체벌보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더 적어 전체 응답자의 18.5%가 체벌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1주일에 3번 이상 체벌을 받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가정에서의 피해 경험 응답 비율보다 높아 0.8%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의 약 80명을 넘는 숫자여서 상습적으로 폭력 피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성별로 보았을 때에 가정에서의 피해 경험 응답 상황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남녀 간의 차이가 있어 남학생(26%)이, 여학생(10.2%)보다 훨씬 체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학교유형별에서도 가정에서의 피해 경험과는 상반된 조사결과가 나타났는데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특목고(9.2%)와 초등학교(11.6%)에서 가장 피해 경험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규모로 볼 때에 대도시(20.3%) 학생들이 중소도시(17.2%)나 읍면지역(16.4%)의 학생들보다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하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체벌이 많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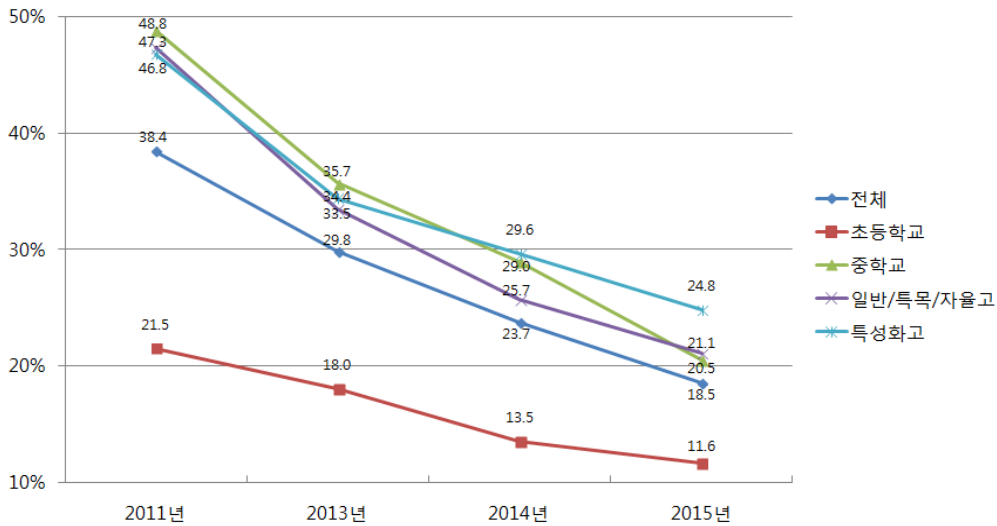
표 III-3-14 체벌 경험여부 -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1.6	9.9	5.6	2.2	0.8	100.0(10,430)	—
성별	남자	74.0	12.7	8.6	3.4	1.3	100.0(5,433)	476.352***
	여자	89.8	6.9	2.2	0.9	0.2	100.0(4,996)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88.5	6.3	3.2	1.3	0.8	100.0(2,920)	199.484***
	중학교	79.6	11.2	6.1	2.7	0.5	100.0(3,627)	
	일반고	76.6	11.6	7.6	2.9	1.3	100.0(2,385)	
	특수목적고	90.7	5.8	1.8	1.4	0.2	100.0(258)	
	특성화고	75.1	14.2	7.5	2.3	0.8	100.0(715)	
	자율고	83.3	10.0	5.2	1.3	0.3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79.7	11.2	6.1	2.2	0.8	100.0(4,559)	28.977***
	중소도시	82.8	8.8	5.5	2.3	0.6	100.0(4,264)	
	읍면지역	83.6	9.2	4.3	1.9	1.0	100.0(1,607)	
학업 성적	상	82.7	10.8	4.6	1.2	0.7	100.0(3,392)	68.122***
	중	82.9	8.4	5.6	2.4	0.7	100.0(4,433)	
	하	77.5	11.5	6.8	3.2	1.0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82.1	9.9	5.2	2.0	0.8	100.0(5,372)	16.741*
	중	81.9	9.4	5.8	2.4	0.6	100.0(3,732)	
	하	78.3	11.4	6.5	2.7	1.1	100.0(1,319)	

* $p < .05$, *** $p < .001$.

【그림 III-3-12】는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은 경험여부에 관하여 2012년을 제외한 2011~2015년의 4년간의 연도별 추이 조사결과이다. 전반적으로 2011년에 비해 2015년도에는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체벌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체벌이 많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신체적 체벌이 가장 많아 아직도 4명 중 1명은 체벌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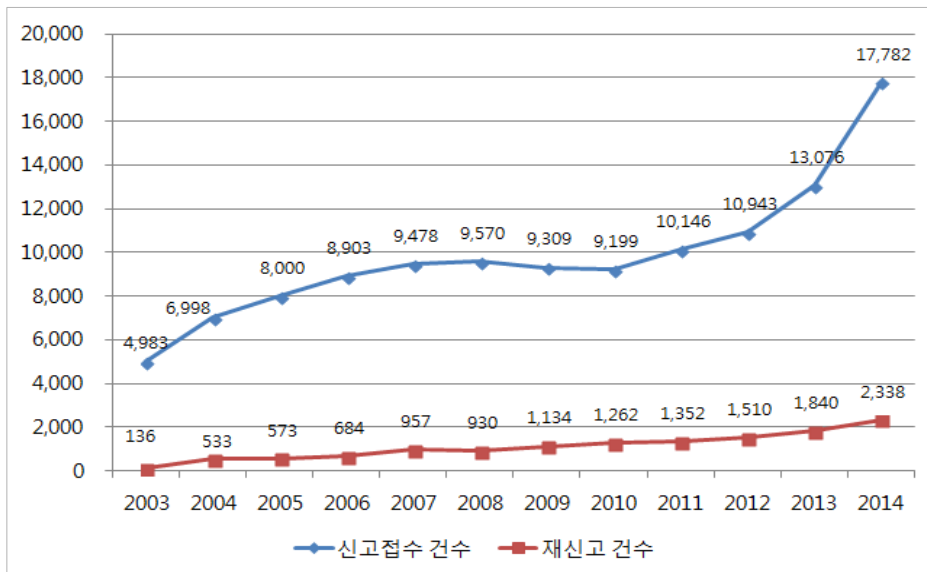
【그림 Ⅲ-3-12】 교사로부터 신체적 별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① 아동학대 신고 건수

2017년에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의 변경으로 2014년까지는 대분류 3영역인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에 포함되었던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내용인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와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소분류가 ‘폭력 및 학대’ 대분류로 재범주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건수 역시 기존의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소분류에서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로 이동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 학대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도록 지표영역과 지표항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252. 관련내용 재구성

【그림 III-3-13】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재신고 건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의 가장 최근 보고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신고접수 건수가 2013년과 2014년에 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그림 III-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4,983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07년에 9,478건으로 2배에 육박하였고, 이후 큰 증가 없이 이어지던 신고건수는 2013년 13,076건이었으며, 2014년에는 17,782건으로 나타나²⁴⁾, 2003년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특히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2,133건이, 그리고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4,706건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을 최근 1~2년 사이에 실제 아동학대가 이러한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2014년에 제정·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처벌 기준 강화와 같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도 정비,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더 큰 영향일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112로의 통합,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인프라의 구축 및 확대에 따른 신고접근성 향상때문일 수도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실제로, 112 신고전화 통합 이전과 이후의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보면(<표 III-3-15>), 112 신고전화 통합기간이 3개월에

24) 2014년 기준 17,791건의 신고접수 건수에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2,566건, 아동학대의심사례 12,459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84.5%를 차지하고 있음(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불과함에도 112를 통한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3-15 신고접수 경로유형

(단위 : 건(%))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112 신고전화 통합이전 (2014.1.1.~2014.9.28.)	12,336 (92.3)	496 (3.7)	0 (0.0)	12,832 (96.0)	55 (0.4)	17 (0.1)	440 (3.3)	25 (0.2)	13,369 (100.0)
112 신고전화 통합이후 (2014.9.29.~2014.12.31.)	1,931 (43.7)	107 (2.4)	43 (1.0)	2,081 (47.1)	2,321 (52.5)	3 (0.1)	8 (0.8)	9 (0.2)	4,422 (100.0)
총합	41,267 (80.20)	603 (3.40)	43 (0.2)	14,913 (83.8)	2,376 (13.40)	20 (0.1)	448 (2.5)	34 (0.2)	17,791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89.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3년 기준 51개소, 2015년 현재 54개소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아동학대 신고는 이를 접수하고 사례관정하며 사후조치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담당인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관련 기관과 상담원의 수적 증가와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

②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표 Ⅲ-3-16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신체학대	2,858(28.8)	3,160(30.9)	5,699(36.9)
정서학대	3,785(38.0)	3,843(37.6)	6,176(40.0)
성학대	446(4.5)	380(3.7)	447(2.9)
방임	2,849(28.7)	2,848(27.8)	3,136(20.3)
계	9,938(100.0)	10,231(100.0)	15,458(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95. 관련 내용 재구성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89. 관련 내용 재구성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7. 관련 내용 재구성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사례 유형에 따른 2014년의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표 Ⅲ-3-16>),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사례수와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중복학대 미분류). 가장 많은 사례건수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서학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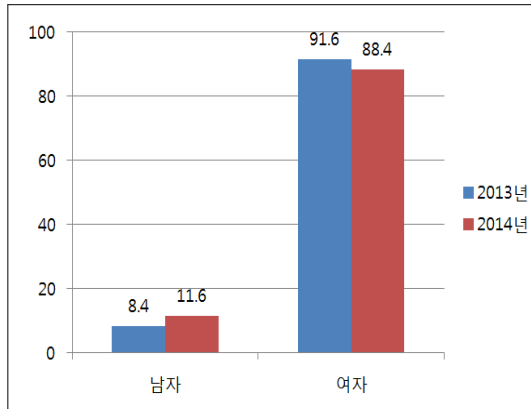
2013년 3,843건으로 37.6%의 비중이었으나, 2014년에는 6,176건, 40%로 나타나 사례수는 2,333건, 비율은 24%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체학대는 2013년 3,160건에서 2014년 5,69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율 역시 30.9%에서 36.9%로 증가하여, 사례수는 2,539건, 비율은 6% 증가하여, 학대유형별 비율에서 신체학대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성학대와 방임의 경우 사례건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비율은 감소하였다.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2014년 가장 최근 결과(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에 따르면, 성별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신체학대와 방임은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이었으며, 정서학대의 경우 미세하게 여자아동이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여자아동이 88.4%로 11.6%에 불과한 남자아동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201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남자아동의 성학대 비율이 8.4%에서 11.6%로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성학대로 간주하지 않았던 남자아동에 대한 행동들이 새롭게 성학대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가 많아졌기 때문일 수 있어, 그 해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체 성학대에서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남자아동에 대한 성학대 피해실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방안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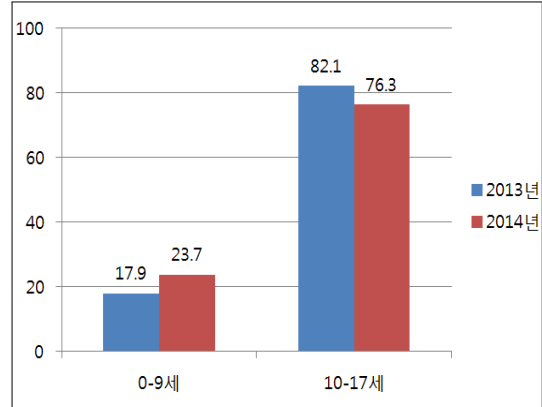
표 III-3-17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 성별, 연령별 구분(2014년) (단위: 건(%))

구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성	남	3,039(53.3)	3,050(49.4)	52(11.6)	1,619(51.6)	7,759(50.2)
	여	2,661(46.7)	3,126(50.6)	395(88.4)	1,517(48.4)	7,699(49.8)
연령	1세미만	43(0.8)	64(1.0)	0(0.0)	212(6.8)	319(2.1)
	1~3세	469(8.2)	655(10.6)	4(0.9)	590(18.8)	1,718(11.1)
	4~6세	652(11.4)	822(13.3)	44(9.8)	500(15.9)	2,018(13.1)
	7~9세	1,091(19.1)	1,128(18.3)	58(13.0)	615(19.6)	2,892(18.7)
	10~12세	1,278(22.4)	1,353(21.9)	113(25.3)	601(19.2)	3,345(21.6)
	13~15세	1,539(27.0)	1,532(24.8)	157(35.1)	470(15.0)	3,698(23.9)
	16~17세	627(11.0)	622(10.1)	71(15.9)	148(4.7)	1,468(9.5)
계		5,699(100.0)	6,176(100.0)	447(100.0)	3,136(100.0)	15,458(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28-129. 표 재구성.



【그림 III-3-14】 성별-연도별 성학대 추이



【그림 III-3-15】 성별-연도별 성학대 추이

연령별로 보면, 10세 이후의 신체학대가 60.5%, 정서학대 56.8%, 성학대 76.3%로 10세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10세 이후의 방임비율만 38.9% 정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14년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10세 미만 아동 대상의 성학대 비율이 2013년의 17.9%보다 5.8% 높은 2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III-3-17>). 저연령 아동의 성학대 비율의 증가 역시 과거에는 어린 아동에 대한 행동으로 단순 치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성적 행동, 나아가 성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제고에 따른 많아진 신고접수 때문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남자아동의 성학대 비율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연령 아동, 그리고 남자 아동의 성학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필요한 대책들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13년과 2014년의 아동학대 유형을 성별,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표 III-3-18>과 같다. 두드러진 점으로는 2013년에는 여자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비율(59.8%)이 남자아동(40.2%)보다 높았으나, 2014년에는 남자아동의 신체학대 비율이 53.3%로 여자아동의 46.7%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방임 역시 2013년에는 여자아동의 방임이 57.5%로 남자아동의 42.5%보다 높았으나, 2014년에는 남자아동의 방임이 51.6%로 여자아동의 48.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비율에서 연령대가 높은(10~17세) 아동·청소년의 사례가 많았고, 방임의 경우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유사한 수준에서 낮은 연령대(0~9세)의 아동의 사례가 많았다.

표 III-3-18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 2014년, 2015년 성별, 연령별 비교 (단위: 건(%))

구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성	2013	남	1,269(40.2)	1,443(37.5)	32(8.4)	1,211(42.5)	3,955(38.7)
		여	1,891(59.8)	2,400(62.5)	348(91.6)	1,637(57.5)	6,276(61.3)
	2014	남	3,039(53.3)	3,050(49.4)	52(11.6)	1,619(51.6)	7,759(50.2)
		여	2,661(46.7)	3,126(50.6)	395(88.4)	1,517(48.4)	7,699(49.8)
연령	2013	0~9세	1,83(40.7)	1,633(42.5)	68(17.9)	1,724(60.6)	4,708(46.0)
		10~17세	1,877(59.3)	2,210(57.5)	312(82.1)	1,124(39.4)	5,523(54.0)
	2014	0~9세	2,255(39.5)	2,669(43.2)	106(23.7)	1,917(61.1)	6,947(54.0)
		10~17세	3,444(60.5)	3,507(56.8)	341(76.3)	1,219(38.9)	8,511(46.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90-91. 표 재구성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28-129. 표 재구성

2014년의 아동학대 비율을 살펴보면(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아동학대 총 발생건수인 10,027건 수 중 ‘거의 매일’ 아동 학대를 받는 경우는 30.6%, ‘2~3일에 한번’은 13.7%, ‘일주일에 한번’은 12.5%로 나타나 3분의 1에 달하는 학대피해아동은 거의 매일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거의 매일’ 학대를 받은 아동의 비율을 보면, 2011년 43.4%, 2012년 40.9%, 2013년 38.7%, 2014년 30.6%로 그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일회성’ 학대 비율은 2011년에는 8.9%였으나, 2014년에는 13.6%로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거의 매일 학대를 받는 매우 심각한 사례만 신고가 되어 그 사례수와 비율이 높았으나, 이제는 일회성의 학대도 점차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례수가 증가한 것일 수 있어, 역시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영향도 일부 설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발생빈도의 심각성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학대를 받는 경우가 56.8%로 여전히 과반수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Ⅲ-3-19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 건(%))

구분	거의 매일	2-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2-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일회성	계
2011	2,624 (43.4)	1,054 (17.7)	785 (13.2)	286 (4.9)	376 (5.4)	233 (3.9)	101 (1.7)	58 (0.9)	541 (8.9)	6,058 (100.0)
2012	2,614 (40.9)	1,054 (16.5)	796 (12.5)	389 (6.0)	438 (6.7)	283 (4.5)	125 (1.9)	66 (1.0)	638 (10.0)	6,403 (100.0)
2013	2,629 (38.7)	1,049 (15.4)	747 (11.0)	311 (4.6)	554 (8.2)	375 (5.5)	146 (2.1)	111 (1.6)	874 (12.9)	6,796 (100.0)
2014	3,073 (30.6)	1,371 (13.7)	1,253 (12.5)	658 (6.6)	1,002 (10.0)	705 (7.0)	366 (3.7)	236 (2.4)	1,363 (13.6)	10,027 (100.0)

* 출처: 통계청 (2013).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J035&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tm_id=&conn_path=E1에서 2015년 5월 인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86.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3.

③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단일 유형의 학대 역시 심각한 문제이지만, 다중유형으로의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클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하고 사례를 관리하는데 있어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을 요한다. 중복학대 사례수와 비율은 2013년도 전체 학대사례 6,796건 중 2,922건으로 43%였으나, 2014년도에는 전체 사례 10,027건 중 4,814건으로 48%를 차지하면서 그 사례수와 비율이 증가하였다. 중복학대 중에서는 신체학대·정서학대가 중복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2013년에는 25.7%였으나, 2014년에는 34.3%로 증가하였다. 특히, 신체 및 정서 중복학대의 비율이 34.3%로 방임(18.6%), 정서학대(15.8%), 신체학대(14.5%), 성학대(3.1%) 단일 학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3분의 1을 훨씬 넘는 학대피해 아동이 중복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복학대와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학대 역시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학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 Ⅲ-3-21>에 따르면, 전체적인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한 만큼, 재학대 비율 역시 2013년 980건에서 2014년 1,027건으로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자아동의 재학대 비율이, 연령별로는 10~15세 아동·청소년의 재학대 비율이, 그리고 학대 유형 중에는 정서 재학대 비율이 높았으나, 신체 재학대 비율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20 중복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단위 : 건(%))

유형		건수(비율)	
		2013년	2014년
신 체 학 대		753(11.1)	1,453(14.5)
정 서 학 대		1,101(16.2)	1,582(15.8)
성 학 대		242(3.6)	308(3.1)
방 임		1,778(26.2)	1,870(18.6)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749(25.7)	3,440(34.3)
	신체학대·성학대	21(0.3)	18(0.2)
	신체학대·방임	153(2.3)	191(1.9)
	정서학대·성학대	29(0.4)	39(0.4)
	정서학대·방임	471(6.9)	513(5.1)
	성학대·방임	6(0.1)	9(0.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53(0.8)	51(0.5)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411(6.0)	531(5.3)
	신체학대·성학대·방임	0(0.0)	2(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9(0.1)	7(0.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20(0.3)	13(0.1)
소계		2,922 (43.0)	4,814 (48.0)
계		6,796 (100.0)	10,027(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88. 표 재구성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5. 표 재구성

표 III-3-21 재학대사례 : 성별, 연령별, 유형별(중복학대 미분류) 구분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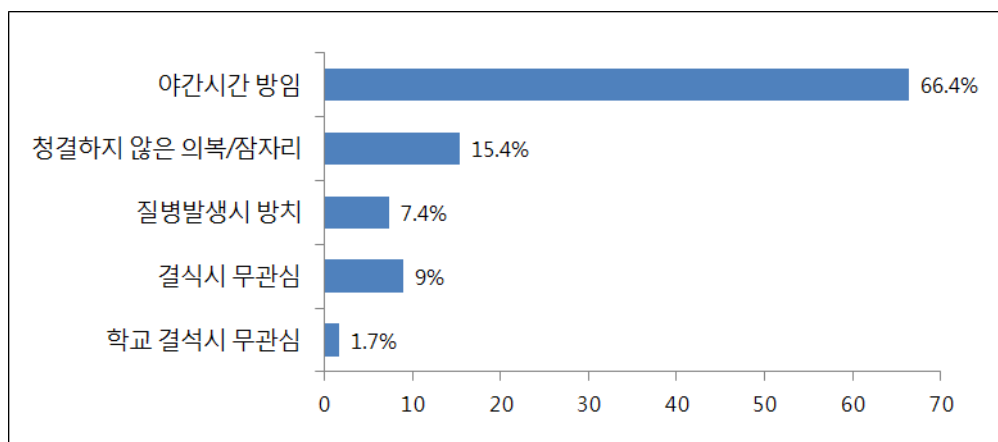
	구분	건수(비율)	
		2013년	2014년
성	계	980(100.0)	1,027(100.0)
	남	303(30.9)	503(47.0)
	여	677(69.1)	524(51.0)
연령	계	980(100.0)	1,027(100.0)
	1세미만	10(1.0)	4(0.4)
	1~3세	43(4.4)	101(9.8)
	4~6세	138(14.1)	135(13.1)
	7~9세	198(20.2)	228(22.2)
	10~12세	236(24.1)	256(24.9)
	13~15세	275(28.1)	241(23.5)
	16~17세	80(8.2)	62(6.0)
유형	계	1,506(100.0)	1,556(100.0)
	신체학대	440(29.2)	515(33.1)
	정서학대	545(36.2)	587(37.7)
	성학대	81(5.4)	61(3.9)
	방임	440(29.2)	393(25.3)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31~132, p.145. 표 재구성.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88~189, p.207. 표 재구성.

④ 방임유형 및 정도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방임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유형별로 실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밤늦게까지 혼자 집에 있는 야간 시간 방임률이 66.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청결하지 않은 의복을 입거나 이부자리에 잠을 잔 경험이 15.4%, 아픈 경우에 부모님(보호자)이 그냥 방치한 경험은 7.4%, 식사를 하지 못해도 부모님(보호자)이 신경쓰지 않은 비율은 9%, 학교에 결석한 경우에도 무관심인 비율은 1.7%로 나타났다.



【그림 Ⅲ-3-16】 2015년 최근 1년간 1회 이상 방임 경험률

밤늦게까지 혼자 집을 보는 ‘야간시간 방임’은 한번도 없다는 비율은 33.5%였으며, 연1~2회 정도는 37.4%, 월1~2회는 17.3%, 주1~2회는 6.5%였으며, 주5회 이상은 5.2%로 나타났다. 학교유형, 가정유형,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 1회 이상 경험은 66.4%였는데, 초등학생은 54.1%로 가장 낮았으며, 중학교와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70.9%,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는 74.4%로 특성화고 학생의 야간시간 방임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양부모 가정에서는 66.3%였으나, 한부모가정에서는 70%로 나타나 다소 경험률이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야간시간 방임경험이 높게 나타났다(연 1회 이상 경험: 상 63.9%, 중 67.8%, 하 72.7%).

표 III-3-22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연1-2회 정도	월1-2회 정도	주1-2회 정도	주3회 이상	연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봄	전체		33.5	37.4	17.3	6.5	5.2	66.4	100.0(10,451)	—
	학교 유형	초등학교	45.9	29.8	13.1	6.2	5.0	54.1	100.0(2,933)	325.660***
		중학교	29.0	39.3	19.8	6.6	5.2	70.9	100.0(3,629)	
		일반/특목/자율고	29.2	42.6	17.0	6.1	5.2	70.9	100.0(3,173)	
		특성화고	25.6	36.0	23.1	9.2	6.1	74.4	100.0(7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7	38.2	17.4	6.2	4.5	66.3	100.0(9,426)	126.742***
		한부모가정	30.1	31.3	17.2	9.6	11.9	70	100.0(865)	
		조손가정	40.9	27.7	11.8	10.7	8.9	59.1	100.0(98)	
		기타	41.9	26.8	15.3	9.2	6.9	58.2	100.0(61)	
	경제적 수준	상	36.1	38.0	16.5	5.2	4.2	63.9	100.0(5,378)	135.989***
		중	32.1	37.9	17.3	7.5	5.1	67.8	100.0(3,744)	
		하	27.3	33.8	20.4	8.9	9.6	72.7	100.0(1,322)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 사용	전체		84.6	9.9	3.5	1.2	0.8	15.4	100.0(10,440)	—
	학교 유형	초등학교	88.2	7.5	2.4	0.8	1.1	11.8	100.0(2,929)	59.291***
		중학교	83.5	10.7	3.8	1.3	0.7	16.5	100.0(3,624)	
		일반/특목/자율고	83.6	10.5	3.7	1.5	0.7	16.4	100.0(3,171)	
		특성화고	79.9	12.9	5.2	1.3	0.7	20.1	100.0(7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5.0	9.8	3.4	1.1	0.8	15.1	100.0(9,417)	34.401***
		한부모가정	80.2	11.7	4.6	2.5	1.0	19.8	100.0(864)	
		조손가정	83.6	9.0	2.6	2.1	2.7	16.4	100.0(98)	
		기타	83.6	6.3	8.2	0.0	2.0	16.5	100.0(61)	
	경제적 수준	상	87.9	8.2	2.3	0.8	0.8	12.1	100.0(5,370)	170.152***
		중	83.4	10.3	4.1	1.5	0.8	16.7	100.0(3,740)	
		하	74.4	15.5	6.5	2.5	1.1	25.6	100.0(1,322)	
아파도 그냥 내버려둠	전체		92.6	5.0	1.5	0.5	0.4	7.4	100.0(10,447)	—
	학교 유형	초등학교	94.7	3.6	0.8	0.4	0.4	5.2	100.0(2,931)	87.277***
		중학교	92.4	4.9	1.8	0.7	0.2	7.6	100.0(3,627)	
		일반/특목/자율고	92.2	5.8	1.2	0.4	0.4	7.8	100.0(3,173)	
		특성화고	86.9	7.6	4.2	0.9	0.4	13.1	100.0(7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9	4.9	1.4	0.5	0.4	7.2	100.0(9,423)	28.194**
		한부모가정	89.1	6.8	2.6	1.3	0.2	10.9	100.0(864)	
		조손가정	94.3	2.4	2.2	1.1	0.0	5.7	100.0(98)	
		기타	94.6	3.3	2.1	0.0	0.0	5.4	100.0(61)	
	경제적 수준	상	94.9	3.7	0.9	0.3	0.2	5.1	100.0(5,376)	124.394***
		중	91.3	6.0	1.7	0.7	0.3	8.7	100.0(3,743)	
		하	86.9	7.9	3.3	1.1	0.9	13.2	100.0(1,321)	

구분		한번도 없음	연1-2회 정도	월1-2회 정도	주1-2회 정도	주3회 이상	연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식사를 못해도 신경 쓰지 않음	전체	91.1	4.7	2.2	1.1	1.0	9	100.0(10,444)	-
	학교 유형	초등학교	93.6	3.5	1.4	0.7	0.8	100.0(2,929)	80.421***
		중학교	90.9	5.1	2.2	1.0	0.8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90.2	5.1	2.5	1.2	1.0	100.0(3,171)	
		특성화고	85.4	5.5	3.6	3.2	2.3	100.0(7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1.6	4.5	2.0	1.0	0.9	100.0(9,421)	47.701***
		한부모가정	85.5	6.7	4.2	2.3	1.4	100.0(863)	
		조손가정	88.9	3.6	4.8	1.1	1.6	100.0(98)	
		기타	88.7	6.5	1.6	2.2	0.9	100.0(61)	
	경제적 수준	상	93.7	3.6	1.3	0.9	0.6	100.0(5,375)	180.007***
		중	90.4	4.9	2.6	1.0	1.1	100.0(3,740)	
		하	82.4	8.6	4.4	2.5	2.1	100.0(1,322)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음	전체	98.4	0.8	0.4	0.2	0.3	1.7	100.0(10,445)	-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3	0.7	0.4	0.2	0.4	100.0(2,928)	16.325
		중학교	98.6	0.7	0.4	0.1	0.2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98.2	1.0	0.5	0.1	0.2	100.0(3,173)	
		특성화고	98.0	0.6	0.3	0.5	0.6	100.0(7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6	0.7	0.3	0.1	0.3	100.0(9,423)	41.027***
		한부모가정	96.3	1.7	1.4	0.3	0.2	100.0(863)	
		조손가정	97.4	1.4	0.0	0.0	1.1	100.0(98)	
		기타	96.4	1.5	2.1	0.0	0.0	100.0(61)	
	경제적 수준	상	98.8	0.6	0.2	0.1	0.2	100.0(5,374)	17.428*
		중	97.8	1.0	0.6	0.2	0.3	100.0(3,742)	
		하	98.0	0.9	0.7	0.1	0.3	100.0(1,322)	

*p<.05, ***p<.001.

청결하지 않은 의복이나 잠자리 경험은 한 번도 없다는 비율은 84.6%로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대부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 정도는 학교유형, 가족유형,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연 1회 이상 경험률에서 초등학생은 11.8%, 중학생과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16.5%, 특성화고 학생은 20.1%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보다 (15.1%), 한부모가정(19.8%)과 조손가정(16.4%)의 연 1회 이상 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청결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비율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연 1회 이상 경험: 상 12.1%, 중 16.7%, 하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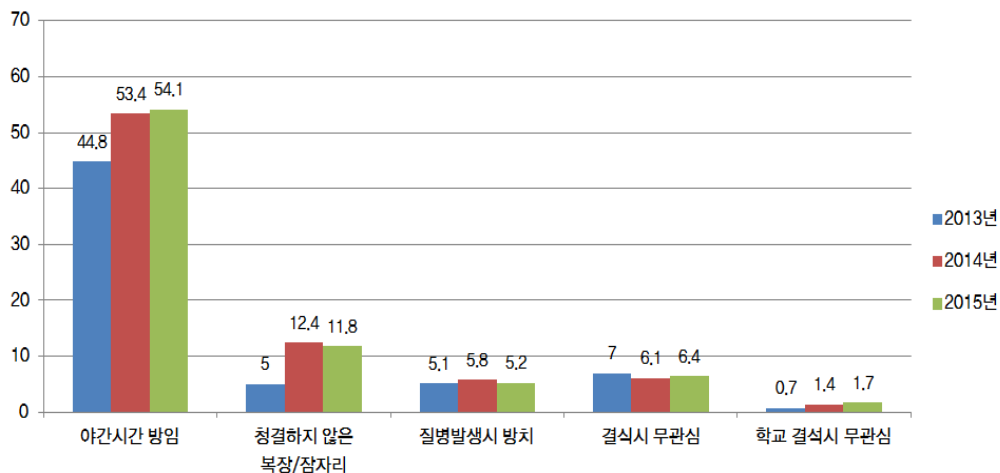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이 질병발생 시 부모(보호자)가 연 1회 이상 방치한 경험은 전체적으로 7.4%였으나,

초등학생은 5.2%, 중학생과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각각 7.6%, 7.8%였으나, 특성화고는 13.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유형별로는 연 1회 이상 경험이 한부모가정이 10.9%로 양부모가정의 7.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역시 연 1회 이상 질병 시 방치된 경험이 높았다(연 1회 이상 경험: 상 5.1%, 중 8.7%, 하 13.2%).

아동청소년 결식 시 부모(보호자)가 무관심한 경험은 연 1회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9%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6.4%, 중학생은 9.1%,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9.8%였으며, 특성화고 학생이 1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부모가정(8.4%)에 비해, 한부모가정이 14.6%, 조손가정이 11.1%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청소년의 결식 시 부모의 무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 1회 이상 경험: 상 6.4%, 중 9.6%, 하: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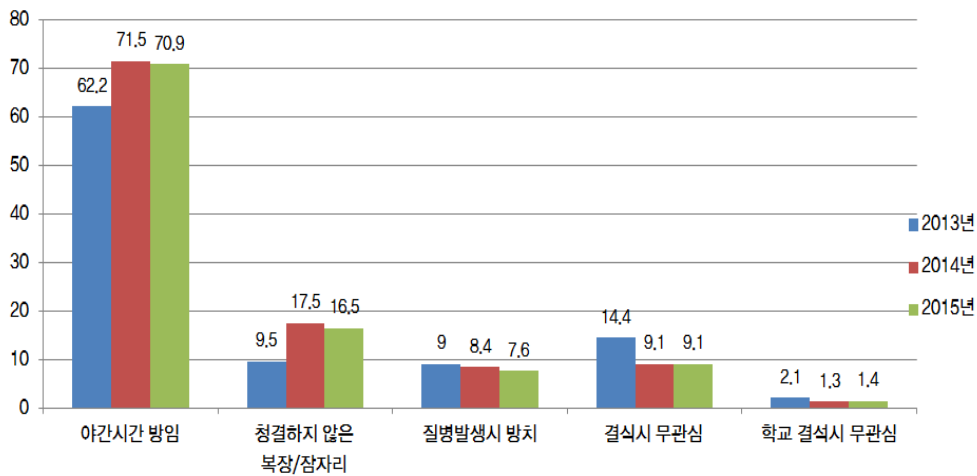
학교를 결석한 경우 부모의 무관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 1회 이상 경험이 1.7%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으며, 배경변인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에서의 연 1회 이상 결석시 무관심 경험이 1.4%인데 비해, 한부모가정은 3.6%, 조손가정은 2.5%, 기타유형 가정에서는 3.6%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방임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야간시간 방임과 결식 및 결석에 대한 무관심이 약간씩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I-3-17). 청결하지 않은 의복/이부자리 경험과 질병발생 시 부모의 무관심한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결식 시 무관심과 학교 결석 시 무관심은 미세하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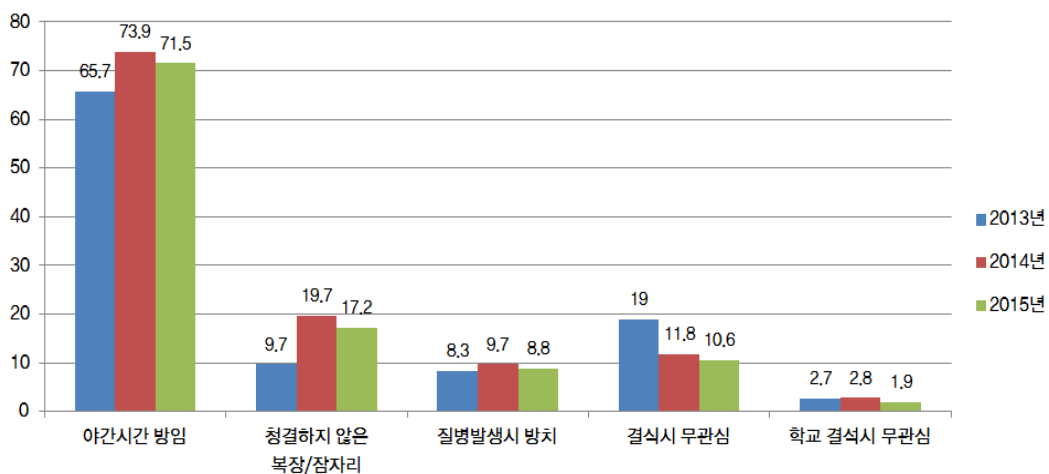
【그림 III-3-17】 연 1회 이상 방임 경험률_3개년 추이(초등학생)

중학생의 연 1회 이상 방임 경험률은 2014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2013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야간시간 방임과 청결하지 않은 복장/이부자리 항목은 2014년보다는 미미하게나마 감소하였으나, 2013년보다는 여전히 상당 수준 높게 나타났다. 결식 시 부모(보호자)의 무관심은 전년도와 동일한 9.1%, 학교 결식 시 무관심은 0.1%p 높은 1.4%수준이었다.



【그림 III-3-18】 연 1회 이상 방임 경험률_3개년 추이(중학생)

고등학생은 모든 방임항목에서 연 1회 이상 경험비율이 2014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 조사결과보다는 야간시간 방임, 청결하지 않은 복장/잠자리, 질병 발생 시 방치 등의 항목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3-19】 연 1회 이상 방임 경험률_3개년 추이(고등학생)

(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수준

①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와 지역별 차이

가.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아동학대신고건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05년에 학대피해 아동보호건수가 4,633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10,027건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2005년 38개소에서 2014년 51개소로 불과 13개소의 증가에 그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에는 2개소, 2013년에는 4개소가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1개소만 개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아동보호기관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III-3-23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5년~2014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	건수(건)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증가율(%)	19.1	12.3	7.3	-0.1	1.9	-0.5	7.1	5.7	6.1	47.5
아동보호 전문기관수	기관수(개소)	38	42	43	43	44	44	44	46	50	51
	증가수(개소)	1	4	1	-	1	-	-	2	4	1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256.

나.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와 신고접수 건수

학대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 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균형있게 설치되었는지도 학대피해아동의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지역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보면(<표 III-3-24>), 기관수와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가 비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역 범위와 지역별 아동 인구 분포, 또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등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울산의 경우 대구와 신고접수 건수는 비슷하지만, 울산은 1개소, 대구는 2개소로 울산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대설치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산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에 신고접수 건수는 700건수로, 비슷한 신고접수 건수를 보이는 인천과 충청북도가 각각

3개소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개소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를 통한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일부에 집중된 아동학대 사례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표 Ⅲ-3-24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와 신고접수 건수(2014년)

(단위 :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관수	8	2	2	3	1	1	1	10	3	3	3	3	3	4	2	2
신고접수 건수(%)	1,637 (10.5)	700 (4.9)	544 (3.8)	724 (4.8)	252 (1.6)	349 (2.4)	514 (3.5)	3,751 (25)	585 (4.0)	626 (4.1)	722 (4.8)	1,288 (8.6)	851 (5.6)	943 (6.2)	989 (6.4)	550 (3.7)

※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합친 건 수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58~63, p.242의 관련 표를 재구성하였음.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사례건수 및 사례관리 기간

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

표 Ⅲ-3-25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

(단위 : 건(%))

업무량		2013년		2014년	
		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상담지원사업	신고접수	13,071	34.9	17,773	48.8
	현장조사	21,319	56.9	61,242	168.2
	서비스제공	449,172	1,197.8	488,326	1,341.6
교육·홍보· 협력사업	교육사업	17,425	46.5	13,831	38.0
	홍보사업	1,794,960	4,786.6	11,254,082	30,917.8
	협력사업	1,441	3.8	1,288	3.5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70.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238.

아동학대신고의 증가에 따라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3년에는 1인당 상담원 업무량이 신고접수의 경우 34.9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48.8건으로 13.9건이 증가하였으며, 현장조사의 경우는 2013년 56.9건에서 2014년 168.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상담원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노력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1인당 상담원 업무량의 증가는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그리고 빠른 소진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나. 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1인당 상담원이 다루는 아동학대 사례 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사례 관리기간에 대한 중요성도 지적되어 이에 대한 부분을 새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최근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아동학대사례의 사례관리 기간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이는 아동학대 사례를 신속하게 종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 사례 담당 전문 인력에게는 업무부담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

표 Ⅲ-3-26 2014년 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단위 : 건(%))

구분		~30일	~60일	~90일	~180일	~1년	1년 이상	계
2013	종결	105 (5.3)	205 (10.3)	288 (14.5)	775 (39.0)	598 (30.1)	18 (0.9)	1,989 (100.0)
	진행 중	545 (9.6)	501 (10.4)	399 (8.3)	1,212 (25.2)	2,149 (44.7)	0 (0.0)	4,806 (100.0)
계		650 (9.6)	706 (10.4)	687 (10.1)	1,987 (29.2)	2,747 (40.4)	48 (0.3)	6,795 (100.0)
2014	종결	81 (2.6)	227 (7.2)	368 (11.7)	1,290 (41.1)	1,129 (36.0)	44 (1.4)	3,139 (100.0)
	진행 중	620 (9.0)	818 (11.9)	708 (10.3)	1,797 (26.1)	2,945 (42.8)	0 (0.0)	6,888 (100.0)
계		701 (10.4)	1,045 (10.4)	1,076 (10.7)	3,087 (30.8)	4,074 (40.6)	44 (0.4)	10,027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24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74.

③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가. 서비스 제공 실적

2014년 인권실태연구에서의 해당지표항목은 서비스제공 정도와 원가정복귀율이었으나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개입과 문제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은 원가정복귀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과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치결과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지표항목이 다소 변경되었다. 또한 통계자료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 실적과 학대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에 더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부분도 새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서비스제공 실적을 살펴보면(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아동학대 신고접수의 급증에 따라 서비스 건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2013년 311,599건에서 2014년 335,424건으로,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는 2013년 63,863건에서 2014년 73,817건으로 증가하였다.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개입 역시 2013년의 58,869건에서 2014년 79,160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서비스와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 및 고발과 같은 사건처리와 같은 서비스도 더욱 강조되었다.

표 Ⅲ-3-27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건)

구분	서비스 건수		서비스 내용
	2013년	2014년	
피해아동	311,599	335,424	○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주변인 상담 ○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입원치료, 통원치료 ○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심리치료 ○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공적자원연결 ○ 일시보호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를 통한 피해아동 일시보호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
학대행위자	63,863	73,817	
부모 또는 가족	58,869	79,160	
계	434,331	488,401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09.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65.

나.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가정복귀 등 예년에 비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의 격리보호 비율은 2012년 30.3%와 2013년 28.6%보다 약간 감소한 27.5% 수준이었으며, 가정복귀는 2011년 6.8%, 2012년 5.9%, 2013년 6.7%, 2014년 7.8%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의미 있는 차이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아동의 성장·발달환경으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격리보호가 필요한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아동의 가정보호와 이후 가정복귀를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또 격리보호 후 가정 복귀에 대한 결정은 가정에 대한 개입과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와 상황에 대한 개선이 전제된 후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원가족복귀율의 증가가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어렵다.

표 III-3-28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단위 : 명(%))

연도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사망	타기관의뢰	가정복귀	계
2011	3,956(65.3)	1,585(26.2)	13(0.2)	91(1.5)	413(6.8)	6,058(100.0%)
2012	4,079(63.7)	1,937(30.3)	10(0.2)	0	377(5.9)	6,403(100.0%)
2013	4,376(64.4)	1,944(28.6)	22(0.3)	0	454(6.7)	6,796(100.0%)
2014	9,969(64.5)	4,256(27.5)	25(0.2)	-	1,208(7.8)	15,458(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는 p.136, 2012년도는 p.110, 2013년도는 p.108, 2014년도 p.144 내용 발췌·정리

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서비스제공정도와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2015년 연구에서 새로 추가되었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가 대부분 가정의 부모와 친인척 등이 90%에 미치는 상황에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이들에 대한 개입은 결국 아동의 성장환경에 대한 개입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아동이 가정보호를 받거나 분리 후 가정복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표 III-3-29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구분	2014년 이전 신고사례		2014년 신고사례	
	회	%	회	%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주변인 상담)	26,594	86.7	36,092	83.7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입원 및 통원 치료)	784	2.6	2,430	5.6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심리치료)	2,131	6.9	3,287	7.6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및 공적지원 연결)	813	2.7	695	1.6
기타	352	1.1	639	1.5
계	30,674	100.0	43,143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68, 발췌·정리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근자료(2014)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14년 이전 신고사례의 경우 30,674회였으나, 2014년에는 43,143회로 만회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상담서비스의 횟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가 2014년 이전 신고사례에서는 2.6%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에는 5.6%로 증가하였고, 또 심리치료서비스 역시

2014년 이전 신고사례에서는 6.9%였으나 이후에는 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기능서비스는 2014년 이전에 813건 2.7%에서 2014년 신고사례에서는 695건 1.6%로 다소 감소하였다.

3) 소결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폭력 및 학대” 영역에는 다시 중분류로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아동 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의 중분류 영역은 다시 청소년폭력 경험률과 체벌 경험률의 소분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폭력 경험률의 소분류 지표영역에는 정서적 학대 경험률, 폭력피해 경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체벌 경험률의 소분류 지표영역에는 체벌 경험률의 세부 지표항목이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의 중분류 영역 전체를 보았을 때에는 모두 4개의 세부 지표항목들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정서적 학대 경험률에서는 주로 가정에서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의 폭력 경험에 관하여 기술되었다. 정서적 학대 피해 경험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들은 부모로부터 29.8%, 교사로부터 18.4%,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14.4%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가정의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의 강화와 확대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폭력피해 경험의 세부 지표항목에서는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받는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성적 희롱이나 추행에 관하여 기술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피해 경험은 각각 5.5%, 5.2%, 3.2%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체벌 24.8%와 교사로부터의 체벌 18.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세부 지표항목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률에서는 심한 모욕이나 욕설, 따돌림, 사생활 침해가 기술되었는데 각각 전체응답자의 15.8%, 1.7%, 5%를 보이고 있어 사이버공간에서는 정서적 학대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가정에서와 학교에서의 폭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고무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대분류 지표영역에 대해서 보면, 아동과 청소년들이 받는 폭력의 피해는 부모나 보호자 및 학교 교사와 같은 성인들로부터의 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학교폭력이 흔히 학생들 간에

있는 폭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학교폭력의 원인은 이미 가정이나 학교의 어른들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인들이 성찰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성인들에 의한 가정과 학교로부터 폭력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이차적 폭력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학생들 간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른들이 인정하고 이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폭력 및 학대”의 대분류는 폭력과 더불어 아동학대와 관련한 지표들이 모두 재분류되어 포함되었다.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와 관련해서는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와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를 보면, 2014년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7,752건으로 2013년의 13,943건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3년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2014년에 제정·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처벌 기준 강화와 같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도 정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인프라의 구축 및 확대에 따른 신고접근성 향상 때문일 수 있어 이러한 급증한 신고건수 원인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3년 기준 51개소, 2015년 현재 54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증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담당인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여전히 관련 기관과 상담원의 수적 증가와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여 상담원의 소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지역별 신고접수 건수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역 범위와 지역별 아동 인구 분포,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등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확대 시 지역별 분포와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대사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례수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서학대에 대한 2014년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사례수는 2,333건, 비율은 2.4% 증가하였으며, 신체학대는 전년도에 비해 사례수는 2,539건, 비율은 6%가 증가하여, 신체학대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남자아동의 성학대와 10대 미만 아동의 성학대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자아동이나 어린 아동에 대한 단순 행동으로 치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성적 행동, 나아가 성학대라는 사회적 인식향상에 따라 신고접수가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저연령 아동, 그리고 남자 아동의 성학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요구되며, 대처방안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복학대와 재학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대 피해로 인해 친가족과 분리된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가정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또 격리보호 후 가정 복귀를 시키는 결정은 가정에 대한 개입과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와 상황에 대한 개선이 전제된 후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1회 이상 야간 시간 방임률이 6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결하지 않은 의복을 입거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은 15.4%, 아픈 경우에 부모님(보호자)이 그냥 방치한 경험은 7.4%, 식사를 하지 못해도 부모님(보호자)이 신경쓰지 않은 비율은 9%, 학교에 결석한 경우에도 무관심인 비율은 1.7%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정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방임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방임경험과 이들에게 결핍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사정(assessment)을 기초로 필요한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가 급증하면서 적시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어서 물리적인 접근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특히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상담원의 소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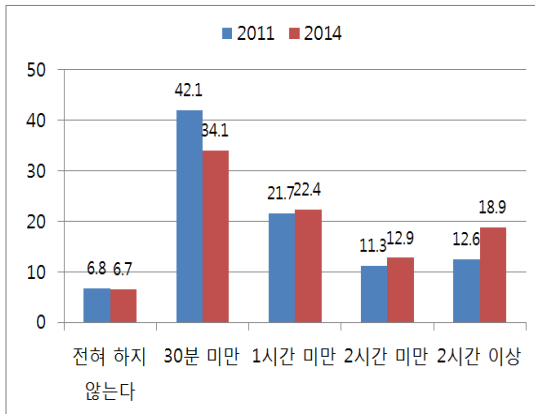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 부모와의 관계

① 부모와의 대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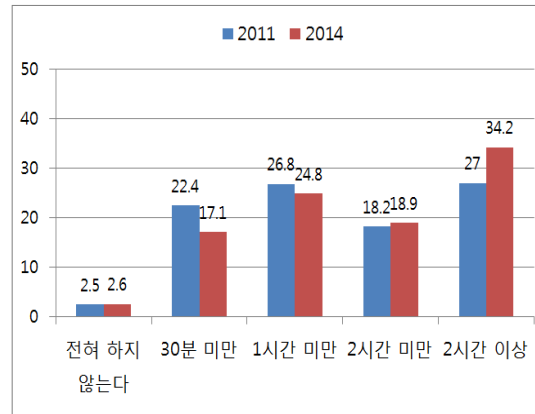
가정에서의 부모-자녀와의 대화와 이를 통한 친밀한 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으로서 가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또 부모의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부모와의 주중 대화시간에 대한 최근 조사결과(여성가족부, 2014c), 아버지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7%였으며, 30분 미만이 34.1%로 나타났고, 주중에 30분 이상 대화한다는 비율은 54.2%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은 이보다 많게 나타나 주중에 30분 이상 대화한다는 비율이 77.9%였다. 2011년 조사에서는 주중 30분 이상 대화 비율이 아버지의 경우 45.6%, 어머니와의 대화는 72%여서, 2011년보다 2014년의 조사결과에서 청소년들의 부모님과의 대화시간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a).

25) 이 절은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 출처: 여성가족부 (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그림 III-4-1】 아버지와의 대화시간(%)



* 출처: 여성가족부 (2014c).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그림 III-4-2】 어머니와 대화시간(%)

<표 III-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별로는 9·12세의 청소년의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13세 이상의 청소년보다 더 많았으며, 2014년의 9·12세의 청소년의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2011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13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미미하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24세 청소년의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주중 2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나, 9·12세의 청소년이 아버지와의 주중 2시간 대화한다는 비율인 25.7%에 비해 많이 낮았다. 이 비율은 9·12세의 어머니와의 주중 2시간 대화한다는 응답률인 46.3%, 13·24세 청소년의 31.4%보다도 낮게 나타난 것이다.

표 III-4-1 부모와의 대화시간(2011년, 2014년 비교)

(단위 : %)

구분		2011년						2014년					
		전혀 하지 않음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전혀 하지 않음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아버지	청소년전체	6.8	42.1	21.7	11.3	12.6	5.5	6.7	34.1	22.4	12.9	18.9	5.0
	9-12세	5.5	33.7	23.7	13.4	19.5	4.1	3.2	34.1	22.3	14.0	25.7	2.9
	13-24세	7.2	44.8	21.0	10.7	10.4	5.9	7.6	34.6	22.5	12.6	17.3	5.4
어머니	청소년전체	2.5	22.4	26.8	18.2	27.0	3.1	2.6	17.1	24.8	18.9	34.2	2.4
	9-12세	3.1	14.0	21.6	19.3	39.1	2.8	1.2	12.9	20.5	17.3	46.3	1.9
	13-24세	2.3	25.1	28.4	17.9	23.1	3.2	2.9	18.1	25.8	19.3	31.4	2.6

* 출처: 여성가족부 (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4c).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68. 표 재구성.

② 부모와의 관계의 질

최근 청소년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따른 부모와의 대화 정도를 보면(여성가족부, 2014a), 월 1회 이상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는 65%였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는 74.6%, 책, TV, 영화관련 대화는 69.8%, 정치, 사회적 주제관련 대화는 39.9%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월 1회 이상 고민에 대한 대화 비율이 59.2%로 여자청소년의 71.6%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남자청소년의 고민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역시 여자청소년의 대화빈도가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9-12세의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책, TV, 영화관련 대화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치, 사회적 주제관련 대화에서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의(13-24세) 부모와의 대화빈도만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4-2 부모와의 대화 주제와 정도(2014년)

(단위 : %)

구분			거의 안함	월1~3회	주1~3회	주4~6회	매일	해당없음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전체		34.7	31.2	18.7	5.5	9.6	0.2
	성별	남	40.6	31.2	17.1	4.0	6.9	0.3
		여	28.2	31.2	20.6	7.2	12.6	0.2
	연령	9~12세	35.1	25.0	18.1	7.6	14.1	0.1
		13~24세	34.6	32.7	18.9	5.0	8.5	0.3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전체		13.6	23.8	23.0	8.8	19.0	11.8
	성별	남	17.1	26.7	23.2	7.1	14.6	11.4
		여	9.8	20.6	22.7	10.8	24.0	12.1
	연령	9~12세	11.9	21.3	23.7	12.0	30.9	0.1
		13~24세	14.1	24.4	22.8	8.1	16.2	14.5
책, TV, 영화관련 대화	전체		29.8	30.0	24.4	6.8	8.6	0.3
	성별	남	33.5	30.6	22.7	5.9	7.0	0.3
		여	25.7	29.3	26.3	7.9	10.5	0.4
	연령	9~12세	25.2	26.5	26.4	9.5	12.3	0.1
		13~24세	30.9	30.8	23.9	6.2	7.8	0.3
정치, 사회적 주제관련 대화	전체		59.8	24.7	9.4	2.4	3.4	0.4
	성별	남	61.1	22.9	10.4	2.5	2.9	0.3
		여	58.3	26.7	8.2	2.3	3.9	0.6
	연령	9~12세	67.7	20.3	6.5	1.6	3.2	0.5
		13~24세	57.9	25.7	10.0	2.6	3.4	0.4

* 출처: 여성가족부 (2014c).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p.64-66. 표 재구성.

(2) 보호, 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①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청소년 비율

2014년 조사에서 평일 방과후에 보호자 없이 아동·청소년이 혼자 있는 정도를 보면(여성가족부, 2014a), ‘거의 없다’의 비율은 64.8%, 1~2일은 15.4%, 3~4일은 8.2%, 거의 매일은 11.6%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에 ‘거의 없다’는 비율이 57.1%인 것을 볼 때, 2014년도의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평일동안 거의 매일 방과후에 보호자 없이 지내는 비율 역시 성별과 연령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두 2011년보다 2014년에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4-3 방과후 아동·청소년이 혼자 있는 정도 (단위 : %)

구분		2011년				2014년			
		거의 없다	1~2일	3~4일	거의 매일	거의 없다	1~2일	3~4일	거의 매일
성별	전 체	57.1	17.8	10.0	15.0	64.8	15.4	8.2	11.6
	남자	58.3	17.8	10.4	13.5	65.6	15.3	8.2	10.9
	여자	55.9	17.9	9.8	16.4	64.0	15.5	8.2	12.3
연령	만9~12세	55.7	17.7	11.3	15.3	67.0	14.7	7.4	10.8
	만13~24세	55.9	17.9	9.8	16.4	64.2	15.5	8.5	11.8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68. 표 재구성
여성가족부(2014c).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81. 표 재구성

②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보육시설의 설치 개소 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보육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육 인프라 확충과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증가가 아동의 권리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이견이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이들 가정의 보육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동의 방임, 방치를 예방하고 아동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보육시설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여, 2004년의 26,903개소에서 2014년의 43,742개소로 확대·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많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가. 보육시설 설립주체별 설치 현황

보육시설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기타 법인·단체, 민간, 부모협동, 직장운영 보육시설로 구분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에 의해,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보호자들이 결성한 조합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곳은 민간 어린이집으로 분류하고 있다(김경준·김희진 외, 2014: 363 재인용).

보건복지부(2014)의 최근 자료에서 운영주체별 개소수를 살펴보면(<표 III-4-4>), 국·공립시설은 2,489개소로 전체의 5.7%수준이었으며,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1,420개소로 3.2%, 법인·단체 시설은 852개소로 약 2%, 민간 어린이집은 14,822개소로 33.9%, 가정 어린이집은 23,318개소로 53.3%, 부모협동 시설은 149개소로 0.3%, 직장 어린이집은 162개소로 1.6%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었으며 민간 어린이집과 더불어 전체 8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증감을 보면, 2014년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가정 어린이집은 감소하였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표 III-4-4>) 2004년 기준 930,252명에서 2014년에는 1,496,67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국공립 시설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이용 아동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는 약간 감소하였다.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2012년까지는 이용아동수가 계속 증가하였으나 이후 미미하게나마 감소하였으며, 부모협동 및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재원아동이 증가하였다.

표 III-4-4 어린이집 연도 및 설립주체별 설치·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연도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 (단위:개소)	2004	1,349	1,537	966	12,225	10,583	미분류	243	26,903
	2005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28,367
	2006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29,233
	2007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30,856
	2008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33,499
	2009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35,550
	2010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38,021
	2011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39,842
	2012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42,527
	2013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43,770
	2014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43,742

구분·연도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단위:명)	2004	107,335	135,531	48,414	507,398	119,787	미분류	11,787	930,252
	2005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989,390
	2006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1,040,361
	2007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1,099,933
	2008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1,135,502
	200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1,175,049
	20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1,279,910
	2011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1,348,729
	2012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1,487,361
	2013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486,980
	2014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1,496,671

* 출처: 보건복지부(2013c). 2013 보육통계. p.2.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통계. p.2.

나. 어린이집 이용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실제 정원과 현원간의 차이, 즉 이용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최근자료(2014)에 따르면(<표 III-4-5>), 2013년에는 전체 정원이 1,782,459명이었으나, 현원이 1,486,980명으로 이용률이 83.4%였는데, 2014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정원 1,800,659명이었으며, 현재 이용 아동수는 1,496,671명으로 전년도 보다 미세하게 줄어든 83.1%의 이용률을 보였다. 운영주체별로 가장 이용률이 높은 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각각 88.5%, 87.1%를 나타냈으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은 각각 76.3%, 76%로 나타나 10%이상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2013년의 운영주체별 이용률을 비교하면, 2014년 이용률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는데, 국공립은 2.3%p,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1.6%p, 법인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2.3%p, 민간과 부모협동, 직장 운영 어린이집은 1%p내외의 미미한 수준으로 이용률 감소를 보였다. 유일하게 가정 어린이집에서만 1.1%p의 이용률 상승을 나타냈다.

표 III-4-5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2013, 2014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13년	정원	170,050	139,669	62,820	937,632	423,533	3,972	44,783	1,782,459
	현원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486,980
	이용률	90.8	77.9	82.3	82.1	86.0	81.2	77.0	83.4
2014년	정원	179,939	137,017	61,483	946,519	419,352	4,682	51,667	1,800,659
	현원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1,496,671
	이용률	88.5	76.3	80.0	81.9	87.1	80.6	76.0	83.1

* 출처: 보건복지부(2013c). 2013 보육통계. p.15. 표 재구성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통계. p.3, p.5. 표 재구성

다.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²⁶⁾

보육시설에 대한 지역별 접근성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 더욱 낮게 나타났다. 2014년의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표 III-4-6>), 2013년과 비교해서 대도시의 어린이집은 다소 증가한 반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시설 수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영유아 및 아동인구의 감소 때문일 수도 있으나, 지역규모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수준과 지역규모별 접근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설립주체별 지역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각각 대도시 106개소, 중소도시 33개소, 농어촌 18개소), 사회복지 법인 시설은 대도시와 농어촌에서는 큰 증감이 없었으나, 농어촌지역에서 다소 감소하였다(16개소). 법인 및 단체운영 어린이집은 대도시에서 15개소 감소하였으며, 민간 어린이집은 대도시에서는 개소수가 감소하였으나(26개소),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증가하였다(각각, 73개소, 24개소). 가정 어린이집은 대도시에서 58개소가 증가하였으나 중소도시에서는 326개소, 농어촌에서는 46개소가 감소하여 증감 폭이 컸으며, 특히 중소도시에서의 개소 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대도시에서는 8개소, 중소도시에서는 9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은 대도시에서 21개소, 중소도시에서는 35개소, 농어촌에서는 17개소가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대도시지역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소도시에서는 민간, 직장 어린이집이 증가하였다. 농어촌에서는 민간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의 개소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아,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와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26)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뿐 아니라 새로운 통계자료원으로서 지역별 영유아수 대비 어린이집현황 자료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단순히 아동수와 보육시설 개소 수만 비교하기 보다는 지역의 크기, 즉 얼마나 지역이 광범위한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보육시설이 아동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넓은 지역의 경우 시설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남아있어, 추후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표 III-4-6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설립주체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3년	전국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대도시	15,852	1,120	383	302	5,746	7,927	56	318
	중소도시	19,649	643	286	204	5,785	12,481	52	198
	농어촌	8,269	569	770	362	3,220	3,224	21	103
2014년	전국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대도시	15,999	1,226	378	287	5,720	7,985	64	339
	중소도시	19,478	676	288	207	5,858	12,155	61	233
	농어촌	8,265	587	754	358	3,244	3,178	24	120

* 출처: 보건복지부(2013c). 2013 보육통계. p.62.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통계. p.81.

라. 어린이집 1개소 및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대면하는 교직원의 업무부담은 결국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 수, 그리고 교직원 1인당 맡고 있는 아동 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14년의 어린이집 1개당 아동수를 보면(<표 III-4-7>), 가장 아동수가 많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의 어린이집은 7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공립시설이 64명, 법인 및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57.7명, 직장 어린이집 56.7명, 민간 어린이집 52.3명, 부모협동 어린이집 25.3명, 가정 어린이집은 15.7명으로 나타나, 시설운영주체에 따라 1개소 당 아동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 2013년과 비교하면 시설 1개소 당 아동수가 34명 정도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시설운영주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2013년에 1개소 당 아동수가 76명에서 2014년에는 73.6명으로, 또 국공립시설에서는 2013년 66명에서 2014년 6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법인·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1개소 당 2013년 60명에서 2014년 57.7명으로 역시 다소 감소하였다. 이외에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1개소당 아동 수는 증가하였으나, 1명 미만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법인·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5.6명,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시설은 5.5명, 부모협동 시설은 4.4명, 직장 어린이집은 4.2명, 가정 어린이집은 3.5명이었으며, 전반적으로 2013년보다 0.1~0.3명 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어린이집 1개소 및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어린이집 1개당 아동수	2013년	66.0	76.0	60.0	52.0	15.0	25.0	56.0	34.0
	2014년	64.0	73.6	57.7	52.3	15.7	25.3	56.7	34.2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	2013년	5.8	5.8	5.9	5.7	3.5	4.4	4.4	4.9
	2014년	5.5	5.5	5.6	5.5	3.5	4.4	4.2	4.8

* 출처: 보건복지부(2013c). 2013 보육통계. p.4. 표 재구성.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통계. p.5. 표 재구성.

특히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를 2007년부터 살펴보면(<표 III-4-8>),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가 9.1명에서 2009년에는 7.8명으로, 그리고 2012년에는 5.2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 현재 기준으로 교사 1인당 4.8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부담이 감소함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4-8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육아동 수	1,099,933	1,135,502	1,175,049	1,279,910	1,348,729	1,487,361	1,486,980	1,496,671
보육교사 수	120,963	139,060	150,477	166,937	180,247	284,237	301,719	311,817
교사 1인당 아동 수	9.1	8.2	7.8	7.7	7.5	5.2	4.9	4.8

* 출처: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통계. pp.4-5. 재구성.

③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시간 돌봄 및 보호와 함께 다양한 학습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에는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포함된다. 각 사업의 운영주체와 재원에 차이가 있으나, 방과후 시간 아동·청소년이 의미있게 구조화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교육 이용이 제한적인 저소득층 가정이나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처럼 자녀의 방과후 시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다양한 학습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더 유의미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가. 방과후학교

학교환경에서 방과후시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참여실태를 보면(<표 Ⅲ-4-9>), 전체적으로 2009년의 51.3%에서 2014년 현재 59.3%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2009년 1.3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다소 증가하여 1.7만원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방과후학교 참여실태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에 43.1%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 50%를 초과하여, 2014년에는 60.9%로 비교적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중학교는 2009년에 역시 43.1%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50.5%까지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45.3%로 다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의 참여율은 2009년에는 80.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73.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시장에 대한 의존이 더 커진 결과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Ⅲ-4-9 방과후학교¹⁾ 참여 실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²⁾		계	
	참여율 ³⁾ (%)	비용 ⁴⁾ (만원)	참여율(%)	비용(만원)	참여율(%)	비용(만원)	참여율(%)	비용(만원)
2009	43.1	1.2	43.1	0.6	80.1	2.6	51.3	1.3
2010	45.0	1.3	50.0	0.7	84.6	2.8	55.6	1.4
2011	50.4	1.6	48.3	0.6	80.9	2.6	56.6	1.5
2012	52.6	1.5	49.4	0.4	77.1	2.2	57.6	1.3
2013	58.2	2.0	50.5	0.4	74.8	2.3	60.2	1.5
2014	60.9	2.3	45.3	0.4	73.1	2.3	59.3	1.7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4.7.10.), 2014 청소년 통계. p.18.

통계청, 여성가족부(2015.4.28.), 2015 청소년 통계. p.23.

* 원자료: 통계청(각 년도), 사교육비조사보고서.

* 주: 1) 방과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포함, 2) 일반고등학교, 3) 참여율은 무상과 유상 합친 비율, 4)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

2014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교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며,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Ⅲ-4-10>).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2010년도의 31.5%에서 2014년 현재 45.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아직 교과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지만, 지속적으로 특기적성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Ⅲ-4-1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2014				2013	2012	2011	2010
		초	중	고	계				
교과	수(개)	78,592	74,531	141,273	294,396	323,888	367,025	355,158	338,891
	비율(%)	31.1	63.3	84.4	54.7	56.8	60.9	66.9	68.5
특기 적성	수(개)	174,482	43,170	26,060	243,712	246,433	235,605	175,492	156,074
	비율(%)	68.9	36.7	15.6	45.3	43.2	39.1	33.1	31.5
계	수(개)	253,074	117,701	167,333	538,108	570,321	602,630	530,650	494,965

* 출처: 교육부(2014c). 2014년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p.1.

교급별로 교과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프로그램의 비율이 31.1%,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68.9%이지만, 중학교에서는 그 반대의 비율로 나타나 교과 프로그램은 63.3%,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36.7%였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교과 프로그램은 84.4%였으나, 특기적성은 15.6%에 불과해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나.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가 운영주체인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04년 법제화되면서 그 수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용아동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조손가정과 같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시간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과제나 학습을 도와주는 것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생활지원 및 보호와 다양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수의 증가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의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4-11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2005년~2014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센터 개소 수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4,059
연인원 (명)	합계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4,982	108,357	109,066
	미취학	1,564	3,023	4,133	4,127	4,585	4,838	4,376	4,578	4,028	3,714
	초	18,348	34,617	25,149	32,867	35,972	39,053	37,865	37,407	38,030	39,293
	저학년			21,426	28,177	33,163	38,032	40,233	42,324	42,396	41,025
	고학년			21,426	28,177	33,163	38,032	40,233	42,324	42,396	41,025
	중학생	2,880	5,129	6,846	9,224	11,380	13,600	15,075	17,374	20,017	20,817
	고등학생	555	958	1,095	1,413	1,862	2,072	2,346	3,014	3,663	4,006
	탈학생	-	-	103	104	133	331	338	285	223	211
	기타	-	22	99	317	196	-	-	-	-	-

*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4),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p.vi.

* 주: 2004년 탈학교/기타, 2005년 탈학교, 2009년부터 기타는 별도 조사되지 않음.

최근 통계에 따르면(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4),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 이용아동 수는 23,347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4,059개소에 108,936명으로 크게 성장·확대되었다. 2013년 4,061개소에 이용 아동 수 109,066명보다는 미미하게나마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로 개소 수는 4천여개, 이용 아동 수는 100,000~110,000명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이용 아동의 교급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108,936명에서 미취학 아동은 3,533명으로 3.2%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40,425명으로 37.1%,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은 40,662명으로 37.3%로 나타나 초등학생 이용자가 전체의 74.4%를 차지하였다. 중학생은 20,121명으로 18.5%, 고등학생은 4,035명으로 3.7% 수준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22.2%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중학생의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고등학생 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정책사업 대상이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운영하면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a: 14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46개소에서 연인원 282,000명을 지원하던 규모에서 2014년 200여개소에서 연인원 2,148,400명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었다(<<표 III-4-12>.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소수와 이용 청소년 수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않은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수요와 지역사회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지역별 안배와 추가 설치 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표 III-4-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소	46	100	151	185	178	171	200	200	200	200
지원인원 (명)	2,350	4,200	6,300	7,680	7,245	6,645	8,000	8,000	8,200	8,200
연인원 (명)	282,000	1,260,000	1,890,000	2,165,760	2,064,825	1,727,700	2,148,400	2,148,400	2,148,400	2,148,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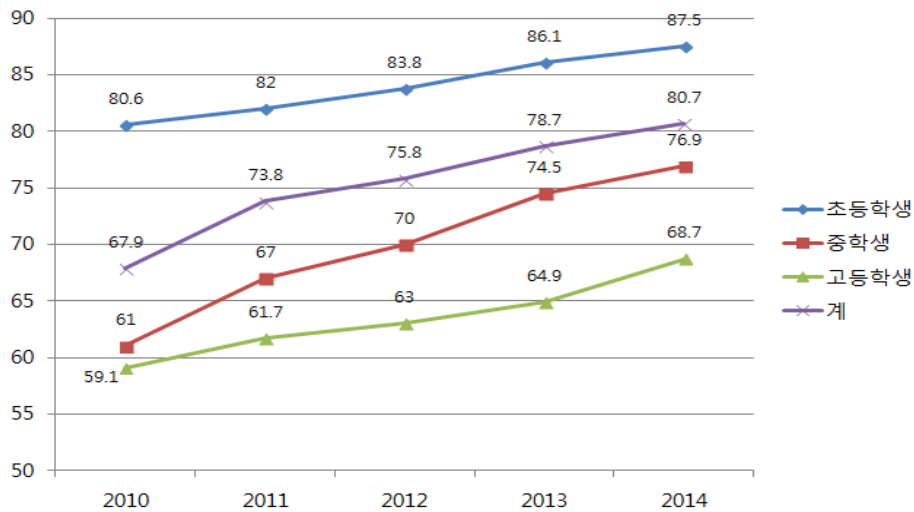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139.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145.

라. 방과후돌봄서비스 만족도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이러한 정책사업에 대해 실제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방과후돌봄서비스 만족도는 2013년 인권치표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후에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하에 새로 포함된 내용으로써, 기존과 같이 단순히 이용 아동 수나 현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정책사업의 질적 수준 담보를 통한 아동·청소년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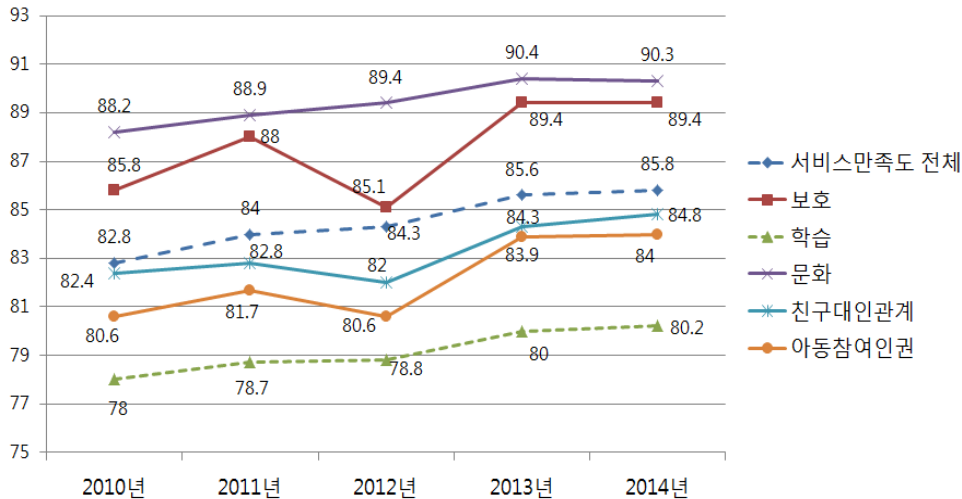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2010-2014) 방과후학교 운영통계/ 단위(%)

【그림 Ⅲ-4-3】 방과후학교 학생만족도(교급별)

먼저,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그림 Ⅲ-4-3】), 2014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80.7%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87.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76.9%, 고등학생은 68.7%로 교급이 높을수록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방과후학교 만족도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교급별로,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만족도가 2010년 67.9%, 2011년 73.8%, 2012년 75.8%, 2013년 78.7%, 2014년 80.7%로 5년간 약 12.8%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다른 교급에 비해 가장 높았는데, 2010년 80.6%의 만족도는 2011년 82%, 2012년 83.8%, 2013년 86.1%였으며, 2014년에는 87.5%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2010년 61%에 불과했던 만족도는 가파른 상승을 보여 2012년에는 70%, 2014년에는 76.9%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2010년에 59.1%였으

며, 2012년에는 63%, 2015년에는 68.7%로 약10%p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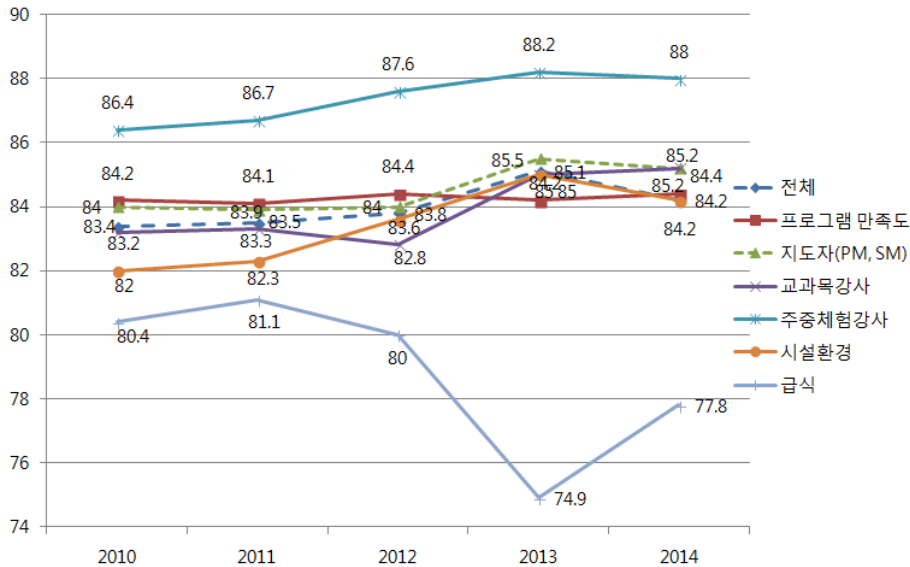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를 이용영역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III-4-4]와 같다.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2010년 82.8%에서 2014년에는 3%p 높은 85.8%로 나타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2012년의 결과를 제외하면, 2013년과 2014년의 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결과, 영역별로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90.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호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89.4%, 친구 및 대인관계 84.8%, 아동참여인권 84%, 학습 8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 영역은 매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만족도 상승폭도 적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 출처: 김미숙, 김정주, 황진구, 하태정(2014).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64/ 단위(%)

【그림 III-4-4】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프로그램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만족도를 살펴보면([그림 III-4-5]), 2014년의 전체 만족도는 84.2%였으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주중체험강사로 8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과목강사는 85.2%, 지도자(PM, SM)는 84.4%, 프로그램과 시설환경만족도는 84.2%, 급식만족도는 77.7%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예외적으로 급식의 경우 2010년 이후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다가 2013년에 74.9%로 떨어졌으나, 2014년에 다소 회복하여 77.8%를 나타냈다.



* 출처: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2010), 양계민, 김승경(2011), 양계민(2012), 양계민(2013), 양계민(2014)의 연구에서 영역별 전체 만족도 평균에 대한 100점 만점 환산 점수를 정리하여 제시/ 단위(%)

【그림 III-4-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만족도(프로그램별)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만족도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개별 프로그램 영역별로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프로그램별 만족도가 제시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개선점을 찾기 어렵다. 방과후에 아동·청소년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을 포함한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방과후 시간에 방임·방치되지 않고, 전문가의 돌봄과 보호 및 감독 하에서 다양한 학습,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조적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역량을 키우고, 특기를 개발할 뿐 아니라, 비행이나 일탈의 위기를 피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그리고 부처 간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1) 입양률

① 국내·외 입양 현황과 추이, 입양기피이유

아동은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가능할 경우 대안양육의 형태로서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에 우리나라의 입양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국외입양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거쳐 그 수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관련법에서 국내입양 우선추진이 포함되면서(입양특례법 제7조: 국내입양우선추진), 상대적으로 국내입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2005년 이전까지 전체 31.8%에 불과했던 국내입양은 2013년 현재 74.4%를 차지하였으며, 국외입양은 반대로 68.2%에서 25.6%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III-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입양아동 수는 2006년 3,231명에서 2013년에는 922명으로 3분의 1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수 있다. 단순히 출생아동수나 입양이 필요한 아동의 수적 감소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 임의로 수행되었던 입양성사가 많았다면, 이제는 합법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통한 입양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 수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다. 이제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 ‘입양숙려제’ 등이 도입되면서 입양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으나, 이로 인해 입양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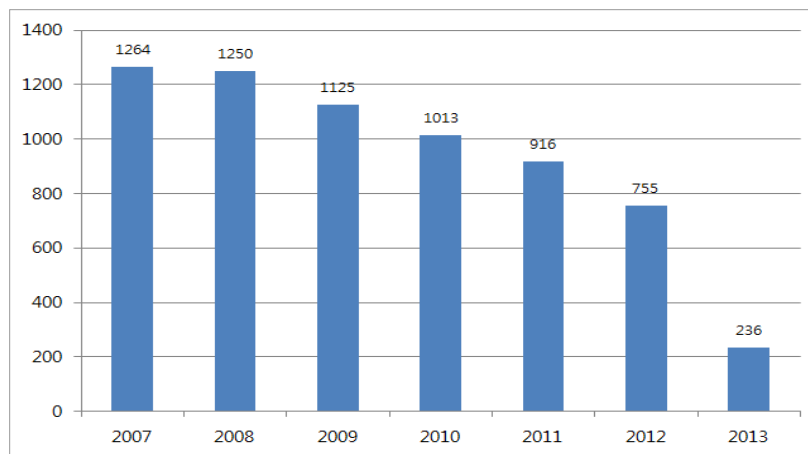
표 III-4-13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단위 : 명(%))

구분		계	2005년 이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계	244,543	224,75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922	1,172
	국내	78,405 (32.1)	67,607 (30.1)	1,332 (41.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국외	166,138 (67.9)	157,145 (69.9)	1,899 (58.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 출처: 보건복지부(2015e), 입양통계²⁷⁾

27) 보건복지부(2015, 5. 8). 보도자료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보건복지부 웹 사이트 http://www.mw.go.kr/front_new/a/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2245&page=1에서 2015년 10월 7일 인출.

특히 국외입양은 2007년 1,264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236명으로 극적인 감소를 보였는데(【그림 Ⅲ-4-6】), 비인권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국외입양은 지양하되 불가피한 국외입양에 대해서는 중앙입양원을 통한 체계적인 입양과 사후관리 등이 전제된다고 하겠다.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p.30, 여성가족부(2014a), 청소년백서, p.163, 표 재구성 / 단위: 명

【그림 Ⅲ-4-6】 연도별 국외입양아동 수(2007-2013)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입양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32.6%, ‘잘 모르겠다’는 30.2%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조사대상자가 입양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보겠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2012년 조사에서는 전체 23.6%가 응답했으나, 그 비율은 2014년도에 21.6%로 2%p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하면 입양을 하고 싶다’는 2012년 조사에서는 18.9%였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15.6%로 나타나 3.3%p가 낮았다.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2012년 조사에서는 32.5%, 2014년 조사에서는 32.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12년에는 25%였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30.2%로 5.2%p높게 나타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14 입양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 보겠다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하면 입양을 하고 싶다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2012년	전체	23.6	18.9	32.5	25.0
	남	23.1	18.1	33.1	25.8
	여	24.1	19.6	32.0	24.3
2014년	전체	21.6	15.6	32.6	30.2
	남	21.0	14.9	32.8	31.2
	여	22.2	16.3	32.8	29.1

* 출처: 통계청(2012, 2014b), 사회조사 입양에 대한 견해(19세 이상 인구).

* 주: 모집단은 전국 만13세 이상 가구원, 표본추출틀은 2010인구주택총조사의 아파트조사구, 보통조사구.
표본규모는 17,664가구의 만13세 이상 가구원

보다 구체적으로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한 2014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통계청, 2014),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57.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가 19.3%,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가 9%,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가 6.3%, ‘입양자녀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가 6.3%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15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입양자녀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타
2008년	전체	62.1	20.1	5.8	8.0	3.0	1.0
2010년	전체	57.9	22.7	5.6	7.5	4.6	1.7
2012년	전체	56.8	21.3	5.7	7.5	4.6	1.7
2014년	전체	57.2	19.3	6.3	9.0	6.3	2.0
	남	58.9	18.9	6.2	9.1	5.6	1.3
	여	55.4	19.7	6.5	8.9	6.9	2.6

* 출처: 통계청(2012, 2014b), 사회조사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19세 이상 인구).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에서 인출.

2008년부터 조사된 결과와 비교해보면, 입양에 대한 필요성이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개인적 선입견(근본을 알 수 없다거나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 등)은 소폭이지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의 날 행사 등 입양문화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양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크게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②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조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입양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됨에 따라 입양기관에서는 국내입양 후 사후관리를 반드시 제공하게 되었다. 입양 사후관리는 1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며, 사후관리 내용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등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5d: 46).

표 III-4-16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구분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내용
국내입양 사후관리	○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사후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음. ○ 입양성립 후, 1년 동안 사후관리 제공(입양기관) ○ 입양정보공개청구(입양인)
국외입양 사후서비스 제공	○ 입양정보공개청구(입양인) ○ 국적취득보고(입양기관) ○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입양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회복지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상담 등의 사후관리 사업 실시(입양기관)

* 출처: 보건복지부(2015d),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 pp.44-47.

국내입양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면서 국외입양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국외입양의 경우에도 ‘국외입양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1년의 사후관리가 의무화되었고 보다 강화된 내용의 국외 입양 사후조치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5e; 연합뉴스, 2015.5.19.)²⁸⁾.

28) 보건복지부(2015.5.8). 보도자료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보건복지부 웹 사이트 http://www.mw.go.kr/frontnew/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2245&page=1에서 2015년 10월 7일 인출.
 연합뉴스(2015.5.19.). ‘입양기관, 해외 입양아동도 적응관찰 등 사후관리 해야’. 연합뉴스 웹 사이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AKR20150519164100017.HTML>에서 2015년 10월 7일 인출.

(2) 대안양육 비율

① 요보호아동 현황

아동이 출생한 원가정에서 성장·발달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아동은 보호대상 아동으로 간주하게 되며, 대안양육을 고려하게 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4항)”을 말하는데, 이러한 아동을 포함해서, 빈곤, 실직, 비행, 가출, 기아 등으로 인해 요보호아동이 발생하게 된다.

통계청의 최근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을 보면(<표 III-4-17>), 점차적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여 2005년의 9,420명에서 2014년에는 4,99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년도인 2013년의 6,020명과 비교해도 천명이 넘는 수가 줄어들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형별로 보면, 이러한 감소는 주로 빈곤, 실직, 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 그리고 미혼모로 인한 요보호아동 수의 감소로, 비행과 가출, 기아에 따른 감소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과 가출의 경우 2013년 512명에서 2014년에는 508명, 기아는 2013년 285명에서 2014년 282명으로 감소폭이 거의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I-4-17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9,420	9,034	8,861	9,284	9,028	8,590	7,483	6,926	6,020	4,994
빈곤·실직·학대	4,877	4,925	5,354	5,876	4,994	4,613	3,928	3,944	3,668	2,965
비행·가출	1,413	802	748	706	707	772	741	708	512	508
미혼모	2,638	3,022	2,417	2,349	3,070	2,084	2,515	1,989	1,534	1,226
기아	429	230	305	202	222	191	218	235	285	282
미아	63	55	37	151	35	210	81	50	21	13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14년 10월 18일 인출.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을 보면(<표 III-4-18>), 시설보호 아동은 2005년 4,818명에서, 2008년에는 4,964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 이후로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2,900명 수준이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357명이 줄어든 것이다. 가정위탁 역시 감소하여 2013년의 2,265명에서 2014년 1,688명으로 577명이 줄어들었으며, 입양 역시 2013년의 478명에서 85명 감소한 393명으로 나타났다. 소년소녀가정은 2005년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정책적으로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보호와

같은 가정위탁보호 위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3d).

표 III-4-18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9,420	9,034	8,861	10,534	10,153	8,590	7,483	6,926	6,020	4,994
시설보호	4,818	4,366	3,245	4,964	4,767	4,842	3,752	3,748	3,257	2,900
가정위탁	2,322	3,101	3,378	2,838	2,734	2,124	2,350	2,289	2,265	1,688
입양	1,873	1,259	1,191	1,304	1,314	1,393	1,253	772	478	393
소년소녀가정	407	308	247	178	213	231	128	117	2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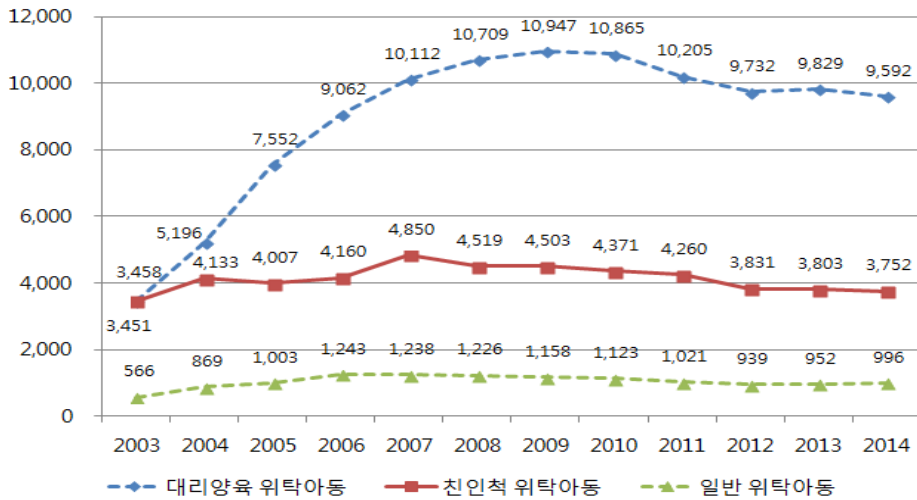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14년 10월 18일 인출.

대안양육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감소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으나, 대안양육이 필요한 아동의 누락, 즉 사각지대에 있는 요보호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사회전반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더욱 면밀히 점검, 발굴하고 대안양육을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②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보호아동이 발생하여 원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이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는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을 우선 조치하고, 이후에 가정위탁을 고려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5e).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 그리고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는 일반 위탁으로 나뉜다. 【그림 III-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정위탁보호건수 14,343사례에서,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약 66.5%), 그 다음의 친인척 위탁도 대리양육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고(25.2%), 일반가정 위탁은 그 수가 매우 적어 약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었는데, 특히 조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이 다소 감소하였고, 일반위탁아동이 약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능한 요보호아동의 연고자를 위주로 위탁하는 것이 아동입장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일반위탁가정을 발굴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일반가정위탁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일반위탁부모의 자격기준 및 사후관리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출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4). 2014년 가정위탁 현황.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웹 사이트 <http://www.fostercare.or.kr/>에서 2015년 10월 인출/ 단위: 명

【그림 III-4-7】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 현황

(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①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경찰청 통계에 따른 가출청소년은 14~19세까지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그 이후는 가출성인으로 구분된다(경찰청, 2013). 이러한 구분은 2005년 12월 1일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 14세 미만아동은 실종아동으로 분류하고,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14세 이상 19세 이하는 가출청소년, 20세 이상은 성인 가출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김지연, 정소연, 2014: 21). 최근 경찰청 자료를 통한 가출청소년 현황을 보면(김지연, 정소연, 2014 재인용), 2013년 기준 전체적으로 11,279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남자청소년은 4,719명, 여자청소년은 6,560명으로 여자청소년의 가출발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3,000명 수준이었던 가출청소년은 2010년 16,000명 수준으로 증가하여 계속 유지되었으나, 2013년에는 11,000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9 가출인 발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가출인(전체)			가출 청소년(14-18세 미만)			18세 이상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2009년	56,324	23,489	32,768	13,210	4,906	8,237	43,114	18,589	24,531
2010년	60,393	18,937	41,370	16,386	5,882	10,418	44,007	18,937	25,070
2011년	65,050	28,442	36,608	16,678	6,259	10,419	48,372	22,183	26,189
2012년	66,457	29,686	36,771	16,457	6,496	9,961	50,000	23,190	26,810
2013년	69,022	32,379	36,639	11,279	4,719	6,560	57,743	27,660	30,079

* 출처: 김지연, 정소연(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p.22.

* 원자료: 경찰청(2014), 가출인 발생 현황, 경찰청 요청자료.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일정기간 보호를 받으면서 숙식, 상담, 학업 및 직업 활동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기관과 연계하여 가출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a). 특히, 청소년쉼터에 대한 가출청소년 및 가출위기청소년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프라구축 및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일시쉼터, 단기쉼터, 및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일시쉼터는 22개소, 단기쉼터는 50개소, 중장기쉼터는 37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4a). 2013년에 비해서는 일시쉼터가 1개소 증가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확대가 요구되던 중장기쉼터가 5개소 증가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 및 장기적인 지원에 있어 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인권실태조사결과, 특히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 부모님과의 문제이고(<표 Ⅲ-4-22> 참조), 이는 원가정 복귀가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할 때, 여전히 중장기쉼터의 접근성 확대와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등이 더욱 요구된다.

표 Ⅲ-4-20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일시쉼터	9	10	10	10	13	21	22
단기쉼터	42	47	49	48	49	50	50
중장기쉼터	25	24	24	25	30	32	37
계	76	81	83	83	92	103	109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140.

② 가출 경험 여부와 가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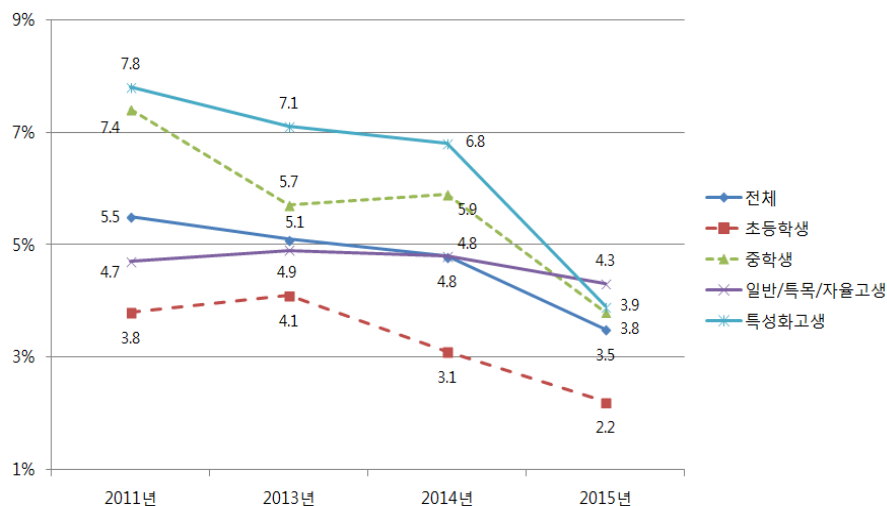
본 인권실태연구의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최근 1년간의 가출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5%만이 가출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험률이 높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남자청소년의 가출경험이 4.5%로 여자청소년의 2.5%보다 높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의 가출경험이 4.3%로 가장 높았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이 6.1%로 양부모가정의 3.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상: 2.5%, 중: 2.8%, 하: 6.1%)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상: 2.9%, 중: 3.8%, 하: 5.3%)이 낮을수록 가출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4-21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단위 : %(명))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3.5	96.5	100.0(10,443)	-
성별	남자	4.5	95.5	100.0(5,445)	30.185***
	여자	2.5	97.5	100.0(4,998)	
학교 유형	초등학교	2.2	97.8	100.0(2,928)	22.271***
	중학교	3.8	96.2	100.0(3,629)	
	일반/특목/자율고	4.3	95.7	100.0(3,170)	
	특성화고	3.9	96.1	100.0(7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	96.7	100.0(9,419)	17.539***
	한부모가정	6.1	93.9	100.0(865)	
	조손가정	3.3	96.7	100.0(98)	
	기타	3.8	96.2	100.0(61)	
학업 성적	상	2.5	97.5	100.0(3,398)	65.318***
	중	2.8	97.2	100.0(4,441)	
	하	6.1	93.9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2.9	97.1	100.0(5,376)	19.597***
	중	3.8	96.2	100.0(3,739)	
	하	5.3	94.7	100.0(1,321)	

*** $p < .001$.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에 대해 2011년부터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출경험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Ⅲ-4-8】). 2015년의 조사를 제외하고 그동안 중학생의 가출 경험률이 높았는데, 2011년에는 7.4%였으나, 2013년에는 5.7%, 2015년에는 3.9%로 크게 낮아졌다.



【그림 Ⅲ-4-8】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4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은 다른 교급에 비해 가장 가출 경험률이 낮았는데, 2011년 3.8%, 2013년 4.1%였으나, 2015년에는 2.2%로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2011년 5.5%에서, 2015년 4.3%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특성화고 학생은 2011년 7.8%에서 2015년 3.9%로 비교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63.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부담과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12.8%와 12.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문제 때문에 가출했다는 응답은 3.6%,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각 가출 이유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이 가출의 이유로 학업부담을 응답한 비율은 15.6%로 여자청소년의 7.2%보다 훨씬 높았으며, 여자청소년이 부모님과의 문제를 가출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71.8%로 남자청소년의 59.4%보다 훨씬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학업부담 때문에 가출했다는 경험은 특성화고 학생이 4.9%인데 비해, 초등학생이 13.6%, 중학생이 12.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출했다는 응답은 특성화고 학생이 17.3%로 나타나 다른 교급의 학생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가족유형과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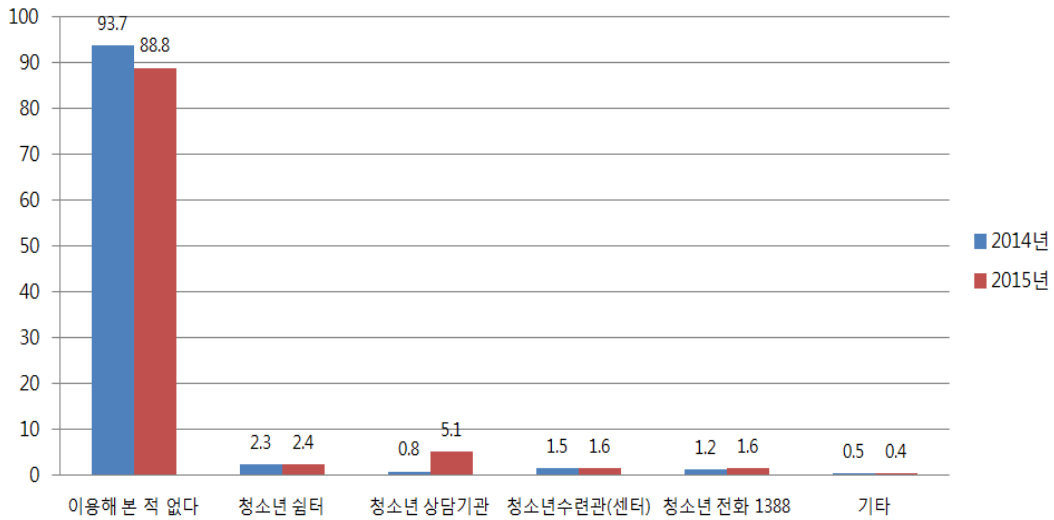
표 III-4-22 가출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부담 때문에	부모님 과의 문제	학교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타	전체(N)
전체		12.8	63.5	3.6	1.4	12.4	6.2	100.0(350)
성별	남자	15.6	59.4	4.1	1.7	13.1	6.1	100.0(233)
	여자	7.2	71.8	2.6	0.9	11.0	6.5	100.0(117)
학교 유형	초등학교	13.6	55.4	4.5	5.8	12.7	8.0	100.0(58)
	중학교	12.4	66.4	3.7	0.7	14.3	2.5	100.0(132)
	일반/특목/자율고	14.5	64.0	2.1	0.5	9.4	9.4	100.0(132)
	특성화고	4.9	64.7	7.6	0.0	17.3	5.4	100.0(2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3.1	64.6	3.0	1.7	11.9	5.7	100.0(297)
	한부모가정	9.9	59.8	5.4	0.0	14.8	10.2	100.0(48)
	조손가정	33.2	66.8	0.0	0.0	0.0	0.0	100.0(3)
	기타	0.0	0.0	47.7	0.0	52.3	0.0	100.0(2)
학업 성적	상	13.5	61.9	0.7	3.4	10.3	10.3	100.0(80)
	중	14.1	65.1	1.8	0.6	14.6	3.8	100.0(120)
	하	11.3	63.2	6.5	1.1	11.9	6.0	100.0(150)

③ 가출 시 서비스 이용

가출 시 아동·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90%에 달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에 비해서는 이용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약 5%정도 감소하였고, 유사한 수준으로 청소년상담기관에 대한 이용률이 2015년에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관련 기관의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가출관련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해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기관에 대한 이용률이 중학생이나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대도시 응답자의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기관의 이용률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그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러한 시설의 지역별 접근성과 시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림 Ⅲ-4-9】가출 시 이용 기관 및 서비스

표 Ⅲ-4-23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2014년	전체	93.7	2.3	0.8	1.5	1.2	0.5	100.0(397)
2015년	전체	88.8	2.4	5.1	1.6	1.6	0.4	100.0(260)
	학교 유형	중학교	87.6	3.5	5.6	2.2	1.1	100.0(119)
		일반/특목/자율고	91.5	0.7	4.2	1.4	0.8	100.0(120)
		특성화고	79.3	6.8	7.2	0.0	6.7	100.0(20)
	지역 규모	대도시	87.5	4.0	4.5	2.4	1.6	100.0(127)
		중소도시	90.3	1.1	4.3	1.2	2.2	100.0(106)
		읍면지역	88.6	0.0	11.4	0.0	0.0	100.0(27)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1)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①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육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평가는 2013년에 이루어진 바 있으며, 현재 2016년도 평가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지표확정 및 평가진행을 위한 공청회 등이 이미 진행된 바 있다²⁹⁾. 2013년에 실시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양육보호서비스에서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평가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평가영역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의 6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는 매우 상세한 해당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김경준·김희진 외, 2014).

2016년에 이루어질 아동복지시설 평가를 위해 공개된 안³⁰⁾을 보면, 2013년의 평가지표의 상당부분을 유지하지만,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또는 삭제되는 지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들 지표들은 논의 중인 지표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현재 아동복지시설 평가 시 어떤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지는 살펴볼 수 있다.

시설 및 환경 영역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에 관한 항목이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또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개별화된 아동기록, 그리고 원가족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단위 프로그램과 영유아 발달수준, 특히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에 대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표 III-4-24>). 또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자립지원 시설 및 영유아 시설에서의 지역사회연계부분이 새로 포함되었다. 전반적으로, 2016년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는 아동안전과 심리상담, 원가족과의 유대강화,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9) 2016년도 아동복지시설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안)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는 2014년 12월에 개최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웹 사이트 https://www.cswe.co.kr/board/notice/view.do?bd_gb=board&bd_cd=1&bd_item=0&po_item_gb=board1&field=searchTC&query=%EC%95%84%EB%8F%99&po_item_cd=&po_no=2915에서 인출.

30)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2014),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공청회 자료집, pp.11-13. 발췌·정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웹 사이트 https://www.cswe.co.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1&bd_item=0&po_item_gb=data1&po_item_cd=&po_no=2916에서 2015년 10월 인출.

표 Ⅲ-4-24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2013년	2016년 변경사항(안)*
시설 및 환경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시설구조, 외관 및 주차장,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추가: 응급상황 안전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심리검사·치료실과 상담실 등 삭제: 상담실 및 사무실,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위생상태의 적절성 등
재정 및 조직운영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사업비·후원금 비율, 법인이사회, 비품관리,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관찰일지, 입·퇴소 관련기록 등	삭제: 기관의 미션과 비전,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인적자원 관리	직원 충원률 및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최고 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직원·신입직원교육, 직원복지 등	삭제: 직원의 이(퇴)직률, 직무분담의 적절성, 직원인사평가, 직원의 고충처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직원 및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자립지원 및 퇴소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아동·가족·연고자 상담, 사례관리, 학습·정서 및 사회성프로그램,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등	일부 수정 추가: 식사문화, 아동 개인별 기록, 가족단위 나들이, 영유아 발달 수준, 학대 피해 아동 개입 삭제: 성교육 프로그램
아동의 권리	아동의 고충처리, 아동의 인권보장 노력,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 교육 및 학교생활 관리, 자치활동 보장, 체벌금지	일부 수정 삭제: 음식제공(이동통합), 아동의 비밀보장
지역사회 관계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관리, 실습교육, 지역사회 연계	일부 수정 추가: 지역사회 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 시설) 삭제: 자원봉사자의 활용,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홍보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2014),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공청회 자료집, pp.11-13 발췌·정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웹 사이트 https://www.cswe.co.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1&bd_item=0&po_item_gb=data1&po_item_cd=&po_no=2916

* 주: 2016년의 변경사항(안)의 경우, 2016년도 평가를 위한 공청회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으로 확정지표로 볼 수 없음.

2016년 평가 시에는 지표내용 뿐 아니라 평가영역별 배점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는 기존의 배점과 차이가 없으나, 아동의 권리부분은 당초 10점에서 15점으로, 그리고 지역사회관계는 10점에서 5점으로 배점이 줄어들어(<표 Ⅲ-4-25>), 아동권리에 대한 배점이 커짐에 따라 직접적으로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과 관련한 평가내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 III-4-25 아동복지시설 평가영역별 배점(2013년, 2016년)

평가영역	배점(%)	
	2013년	2016년(안)*
시설 및 환경	10	10
재정 및 조직운영	15	15
인적자원관리	20	20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35
아동의 권리	10	15
지역사회관계	10	5
총계	100	100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2014).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공청회 자료집. p.9.
발췌·정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웹 사이트 https://www.cswe.co.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1&bd_item=0&po_item_gb=data1&po_item_cd=&po_no=2916에서 인출.

* 주: 2016년의 변경사항의 경우, 2016년도 평가를 위한 공청회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으로 확정내용으로 볼 수 없음.

② 보호·양육시설 예산

아동보호 및 양육시설에 대한 정책사업 예산을 살펴보면(<표 III-4-26>), 아동시설 지원 중 아동시설 기능보강부분과 관련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위탁지원을 제외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은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시설 지원 항목 중 아동시설 기능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201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복권기금으로 이관하여 편성되었다(보건복지부, 2014). 아동시설 기능보강은 “노후 아동시설의 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을 통해 요보호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4: 91)하는 것으로, 2013년에 15,261백만원으로 예산이 두배 이상 높았으나, 이후에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되었다. 이 예산에는 시설 증개축, 노후건물 개보수, 노후장비나 아동안전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가정과 유사한 공동생활시설에서 요보호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하고 사회친화적인 성장 지원”(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4: 89)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해당되는데 적은 수준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역시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는데,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개소수가 전년도에 비해 124개소가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의 지역아동센터 시설 당 월 지원액은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향후에는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더 증액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Ⅲ-4-26 보호양육시설 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12년도 예산	'13년도 예산	'14년도 예산	'15년도 예산
아동시설 지원	아동시설기능보강 ¹⁾	7,600	15,261	7,630	7,63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¹⁾	6,913	7,259	7,407	8,623*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960	1,014	1,024	1,070
가정위탁지원		1,521	1,369	1,232	-
지역아동센터		78,700 (3,500개소, 월 395만원)	90,500 (3,742개소, 월 420만원)	97,900 (3,989개소, 월 433만원)	103,500 (4,113개소, 월 443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3e),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35,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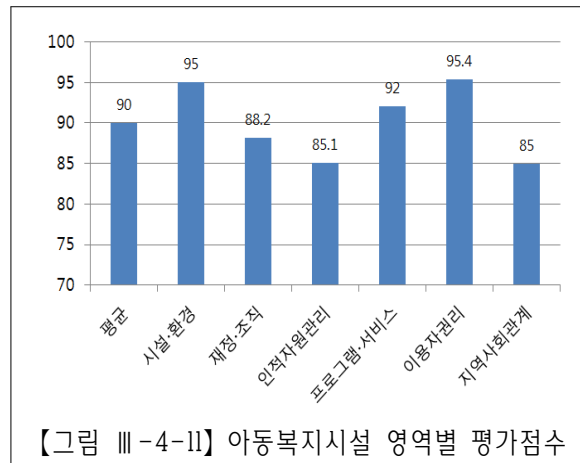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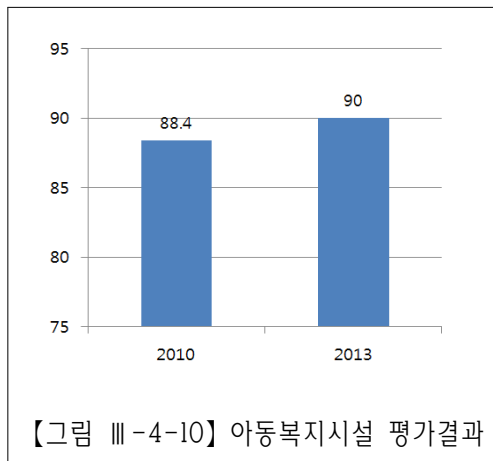
보건복지부(2014b),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9, 114, 116.

보건복지부(2015c),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40.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2014), 201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ILP 웹 사이트 http://www.itpolicy.co.kr/kr/bbs/board.php?bo_table=DATA6&wr_id=18&page=2&listStyle=Webzine에서 2015년 7월 인출.

③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³¹⁾ 및 사후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최근 2013년 평가결과(보건복지부, 2014e), 2010년보다는 미미하게나마 높게 나타났으며, 또 90점이라는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을 볼 때, 아동복지시설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2014e), 보도참고자료: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3년 주기 평가결과), 재구성.

보건복지부 웹 사이트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98285&page=1에서 2015년 11월 10일 인출.

31)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본 보고서의 기본적인 평가결과내용은 2014년도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유사할 수밖에 없으나 제시 방식을 그래프로 변경하고 보다 다각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3년의 아동복지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함께 평가되었는데, 다른 두 시설이 각각 87.9점, 79.1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아동복지시설의 90점은 우수한 점수로 평가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e). 또한 평가영역 중에서도 시설·환경영역이 이용자인 수준과 유사한 95점이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아동복지시설 인프라가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점수는 상향평가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실제 평가결과가 이러한 점수에 상응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평가점수 부여방식에 있어 평가위원들 간 편차를 줄이고, 또 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 평가결과는 시설환경 및 운영개선을 위해 활용됨으로써 결국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과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시설에 통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e). 또한 우수시설뿐 아니라 전년도대비 평가결과가 현저하게 개선된 시설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종사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3). 2009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미흡시설의 경우 시설운영, 조직관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3: 9).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후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과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해 보인다³²⁾.

4) 소결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대분류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의 세가지 중분류로 구분된다. 먼저, 부모의 지도와 책임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2011년 조사결과에 비해 최근

32)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는 경기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평가 이후 실시하는 사후관리사업을 예시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사후관리 사업에서는 시설평가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자문을 실시하며, 각 시설에서는 자문차수별 논의와 진단에 따른 보완을 수행한다(이영미, 2014). 또한 사후관리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보완사항 이행정도를 확인하며, 평가보고서를 비교하고 시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영미, 2014). 경기복지재단은 사후관리사업평가를 위해 시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피 평가시설의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만족정도가 시설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014년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늘어났으나, 13-14세 청소년의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낮게 나타난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화주제별로는 월 1회 이상 청소년의 고민에 대한 대화는 65%,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는 74.6%로 청소년자녀의 고민에 대한 대화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월 1회 이상 고민에 대한 대화의 응답률이 여자청소년보다 12.4%p 낮게 나타나 남자청소년의 고민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은 2004년 26,903개소에서 2014년 43,742개소로 확대·설치되었으며, 이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여 많은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부담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주체별로는 2014년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의 개소수가 약간 증가하였으며, 이용 아동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들 시설의 질적 수준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4년에는 대도시의 어린이집이 다소 증가한 반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의 시설 수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영유아 및 아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이유일 수도 있으나, 지역규모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수준과 지역규모별 접근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아,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와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현재 교사 1인당 4.8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줄어든 업무 부담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를 보면, 2009년 51.3%에서 2014년 현재 59.3%로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보다 교과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조손가정과 같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시간에 생활지원 및 보호와 다양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전년도와 유사한 4,059개소에 이용아동수도 108,936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중학생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고등학생 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4년 200개소에 이용 청소년 수는 연인원 2백만명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수요와 지역사회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지역별 안배와 추가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만족도는 세 개 시설/기관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질적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로그램 영역별로는 제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게 입양은 필요한 대안양육의 한 형태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국외입양은 크게 감소하여 2013년 기준으로 국내입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5.6%로 나타났으며, 대신 국내입양은 크게 증가하여 74.4%에 달했다. 그러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2014년 사회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32.6%, ‘잘 모르겠다’는 30.2%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조사대상자가 입양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을 기피하는 이유는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57.2%,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19.3%,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9.0%,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6.3%, ‘입양자녀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6.3% 순으로 나타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입양특례법을 통해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모두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

대안양육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현황을 보면, 2013년 6,020명에서 2014년 4,994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으나, 대안양육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과 사회전반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자료 분석 결과, 가정위탁보호, 특히 조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일반위탁아동이 약간 증가하였는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일반위탁가정을 발굴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일반가정위탁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반위탁 부모의 자격기준 및 사후관리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은 14~18세 기준으로 2009년 13,210명에서 2013년 11,27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일시보호와 중장기쉼터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 부모와의 문제(63.5%)이고, 이는 원가정 복귀가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할 때, 중장기쉼터의 접근성 확대와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육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써 3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2016년 평가를 준비 중에 있어 지표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아동안전과 심리상담, 원가족과의 유대강화,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이 더욱 강조되고, 아동권리에 대한 평가 점수 배점이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제는 평가실시 자체보다 평가 후 사후조치로서,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활용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과 패널티 처분이 아닌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모든 아동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아동권리보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³³⁾

1) 장애

(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①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2014년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은 총 87,278명으로 2013년보다 645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평균 2,41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래로 올수록 증가폭이 줄어드는 추세이다(교육부, 2014b:2). 그러나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25,827명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는 45,803명, 일반학교 일반학급에는 15,648명이 재학 중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539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장애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만을 살펴보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은 2013년보다 622명 증가하였지만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은 오히려 282명이 감소하였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의 증가폭이 작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 비율의 증가폭도 낮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5-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09	23,801(31.7)	39,380	12,006	51,386(68.3)	75,187(100.0)
2010	23,944(30.0)	42,021	13,746	55,767(70.0)	79,711(100.0)
2011	24,741(29.9)	43,183	14,741	57,924(70.1)	82,665(100.0)
2012	24,932(29.3)	44,433	15,647	60,080(70.7)	85,012(100.0)
2013	25,522(29.5)	45,181	15,930	61,111(70.5)	86,633(100.0)
2014	25,827(29.6)	45,803	15,648	61,451(70.4)	87,278(100.0)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400.
교육부(2014b).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

33) 이 절에서 '1) 장애, 2) 생존 및 발달, 3) 보건서비스'는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가,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은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②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특수학교수와 특수학급 수는 지난 5년간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 특수학교수는 2013년에 비해 4학교가 늘어나 166개의 학교가 운영 중이며, 특수학급수도 274학급이 늘어 9,617개의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증가추이를 보면 연평균 3개 이상의 학교가 증가하였고, 특수학급의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538학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교원도 2013년보다 476명이 증가하였으나 교육부 특수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립 특수교육 교원 확보율은 61%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교육부, 2014b:2).

표 III-5-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단위 : 교, 학급, 명)

연도	특수학교수	특수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09	150	6,924	288	3,303	34,035	17,946	17,553	2,062	75,187	13,997
2010	150	7,792	290	3,225	35,294	19,375	19,111	2,416	79,711	15,244
2011	155	8,415	356	3,367	35,124	20,508	20,439	2,871	82,665	15,934
2012	156	8,927	403	3,675	34,458	21,535	21,649	3,292	85,012	16,727
2013(A)	162	9,343	578	4,190	33,518	22,241	22,466	3,640	86,633	17,446
2014(B)	166	9,617	680	4,219	33,184	22,159	22,973	4,063	87,278	17,922
B - A	4	274	102	29	-334	-82	507	423	645	476

* 출처 : 김경준, 김희진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401.
교육부(2014b).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 p.7.

③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 강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 청소년의 진학률과 취업률은 2013년과 2014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2,615명 중에서 취업을 한 학생은 308명으로, 2013년에 비해 취업률이 12.6% 증가하였다. 그 결과 무직률이 낮아진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진학률과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모두 높이기 위해 장애 청소년이 장애유형 정도와 진로 적성을 고려하여 진학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4b: 95). 장애청소년의 진학과 취업을 위하여 일반학교는 물론 특수학교와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인 고용 지원 기관, 산업체 등과의 민관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 청소년의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실시, 전문가 양성 등도 필요할 것이다.

표 Ⅲ-5-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연도	졸업자(명)	진학률(진학자수) (%, (명))	취업률(취업자수) (%, (명))	무직률(무직자수) (%, (명))
2009	2,231	50.5(1,127)	19.3(430)	30.2(674)
2010	2,301	47.2(1,087)	16.6(383)	36.1(831)
2011	2,428	29.9(726)	14.7(357)	55.4(1,345)
2012	2,537	29.5(748)	15.8(402)	53.9(1,367)
2013	2,536	43.5(1,104)	13.5(343)	42.9(1,089)
2014	2,615	54.8(1,433)	26.1(308)	33.4(874)
2014 ³⁴⁾	8,672	37.6(3,266)	25.2(2,187)	37.1(3,219)

* 출처: 김경준·김희진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402.
교육부(2014b).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p.91-94.

이외에도 2014년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210명 중에서 2,013명이 취업하여 특수학교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훨씬 높은 50.8%의 취업률을 나타내었다.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도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보다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 43.9%에 달했다. 졸업생 1,166명 중에서 249명이 취업하였다. 2014년도 전공과 졸업자 취업률도 37.1%로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2) 생존 및 발달

(1) 사망률

①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보건, 의료정책수립, 장래 인구추계작성, 국가 간 경제, 사회, 보건 수준 비교 등에 사용되는 지표 중의 하나가 기대여명과 평균수명이다. 기대여명이란,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지를 계산한 평균 생존년수를 말하며, 평균수명이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서의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한다(통계청 e-나라지표, 2015c). 한국의 0세의 기대여명, 즉 평균수명은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기대수명인 80.2세 보다 이미 1.1세 높았으며, 2014년 평균수명은 이보다도 늘어나 81.94세이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34)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생, 전공과 졸업자 취업현황을 모두 포함한 경우

풍부한 영양 섭취와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가의 위상에 맞는 보건수준과 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고령사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다.

표 III-5-4

0세의 기대여명

(단위 : 세)

연도	남자	여자	전체
2005	75.14	81.89	78.63
2006	75.74	82.36	79.18
2007	76.13	82.73	79.56
2008	76.54	83.29	80.08
2009	76.99	83.77	80.55
2010	77.20	84.07	80.79
2011	77.65	84.45	81.20
2012	77.95	84.65	81.44
2013	78.51	85.06	81.94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각년도), 생명표,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dx_cd=2758에서 2014년 8월 25일 인출.

* 주: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②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이란, 출생 후 365일 이내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수로 나눈 것으로, 국제적으로 국민 보건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만큼 보건 수준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 2015). 2013년 기준으로 영아사망률이 2012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OECD 34개국의 영아사망률이 평균 4.1명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WHO, 2014).

표 III-5-5

연도별 영아사망률

(단위 : 명/1,000명 당)

	2009			2010			2011			2012			2013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신생아사망률	1.8	1.7	1.7	2.1	1.5	1.8	2.0	1.5	1.7	1.9	1.5	1.7	1.8	1.6	1.7
신생아후기사망률	1.5	1.4	1.5	1.6	1.2	1.4	1.6	1.2	1.3	1.1	1.1	1.2	1.3	1.2	1.3
영아사망률	3.3	3.1	3.2	3.7	2.7	3.2	3.4	2.7	3.0	3.1	2.7	2.9	3.1	2.9	3.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각 연도), 영아사망률,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quick_02에서 2014년 8월 28일 인출.

* 원자료: 보건복지부, 사망원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0154호).

* 주: 1) 영아사망률: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2) 2008년 조사(2005~2006 영아모성사망조사)부터 2년주기 조사로 변경

지난 5년간의 연령별 사망자수와 사망률을 보면 2013년까지는 사망률이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2014년에는 0세 사망률과 15세-19세 사망률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영아사망률이 다소 증가한 것과 0세 사망률의 증가는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만 15세-19세 청소년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질병에 의한 사망보다는 사고나 다른 외인에 의한 사망이 많기 때문이다.

표 Ⅲ-5-6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단위 : 명/10만 명 당 사망자수)

연령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0세	1,506	345.0	1,435	318.9	1,405	306.8	1,305	294.6	1,305	310.2
1-4세	386	20.9	389	20.9	377	20.2	342	18.3	289	15.4
5-9세	277	10.8	239	10.0	268	11.4	253	10.8	204	8.8
10-14세	417	12.7	402	12.6	325	10.7	272	9.5	239	8.7
15-19세	1,034	29.4	1,003	28.3	905	25.8	812	23.6	870	25.9
20-24세	1,411	45.1	1,318	41.7	1,255	38.6	1,217	36.3	1,131	32.9

* 출처: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OTITLE&list_id=MT_CTITLE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K2#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

③ 사고 사망률

2014년 사고사망률은 2013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15세-19세의 경우 증가하였다. 다른 연령대는 모두 사고사망률이 2014년까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15세-19세의 경우 2014년에 사고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인권과 청소년 보호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고 사망이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에 의한 사망을 말한다.

표 Ⅲ-5-7 사고 사망률 (단위 : 명/10만 명 당)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0세	18.6	16.9	16.8	13.8	12.4
1-9세	5.5	4.8	5.4	5.0	4.0
10-19세	12.7	12.7	11.0	10.1	11.3
20-29세	39.0	36.8	31.6	28.7	27.1

* 출처: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웹 사이트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08559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농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표 III-5-8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단위 : 명/10만 명 당)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0	0세	2.1	0.7	0.5	0.2	—	6.0
	1-9세	2.8	0.7	0.4	0.2	0.1	0.6
	10-19세	4.8	0.3	0.9	0.1	0.0	5.2
	20-29세	9.0	0.7	0.8	0.3	0.1	24.4
2011	0세	1.3	0.9	—	—	—	4.4
	1-9세	2.1	0.7	0.7	0.2	—	0.7
	10-19세	4.7	0.2	0.7	0.2	—	5.5
	20-29세	7.9	0.7	0.9	0.1	0.1	24.3
2012	0세	1.3	1.3	0.4	—	—	2.6
	1-9세	2.0	0.6	0.7	0.3	0.0	1.1
	10-19세	3.8	0.3	0.8	0.2	—	5.1
	20-29세	7.7	0.6	0.8	0.3	0.2	19.5
2013	0세	0.5	1.1	0.2	0.2	—	3.4
	1-9세	2.1	0.5	0.7	0.3	0.0	0.8
	10-19세	3.3	0.4	0.7	0.1	0.0	4.9
	20-29세	7.2	0.6	0.5	0.1	0.2	18.0
2014	0세	1.7	1.4	1.0	—	0.0	1.4
	1-9세	1.2	0.6	0.4	0.1	—	0.9
	10-19세	4.8	0.2	0.6	0.2	—	4.5
	20-29세	6.0	0.5	0.5	0.2	0.1	17.8

* 출처: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웹 사이트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08559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주 :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발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2010년 이후 연도별 사고사망의 외인 중 19세 미만의 사망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자살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처음으로 운수사고가 자살률을 넘어섰으며 그 결과 자살률이 2위를 기록하였다. 자살률로만 볼 때 2010년 이후 10세-19세의 자살률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및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운수 사고율은 자살률과 반대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무면허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경각심 제고나 운수사고의 심각성 및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안전에 대한 인식률

① 범죄 피해율

표 Ⅲ-5-9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연도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청소년전체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2003	17,892	2,751,257	6.5	10,858	2,520,331	4.3	28,750	5,271,588	5.5
2004	25,000	2,705,387	9.2	17,038	2,463,396	6.9	42,038	5,168,783	8.1
2005	26,733	2,703,107	9.9	17,116	2,447,997	7.0	43,849	5,151,104	8.5
2006	27,526	2,729,734	10.1	17,355	2,450,374	7.1	44,881	5,180,108	8.7
2007	34,487	2,758,794	12.5	20,280	2,461,537	8.2	54,767	5,220,331	10.5
2008	38,680	2,797,367	13.8	22,580	2,480,493	9.1	61,260	5,277,860	11.6
2009	44,797	2,831,004	15.8	24,895	2,501,424	10.0	69,692	5,332,428	13.1
2010	39,695	2,841,982	14.0	24,363	2,518,442	9.7	64,058	5,360,428	12.0
2011	37,034	2,882,185	12.8	22,786	2,565,557	8.9	59,820	5,447,742	11.0
2012	65,614	2,841,888	23.1	36,657	2,539,523	14.4	102,271	5,381,411	19.0
2013	55,518	2,785,807	20.0	35,070	2,496,525	14.0	90,588	5,282,332	17.1

* 출처: 통계청(각년도).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13501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4년 8월 29일 인출.

* 원자료: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 주: 1) 피해율: 인구 1천 명당 피해건수 추계인구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이용
2) 청소년: 만 13세에서 만 20세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은 2012년에 대폭 증가하였다. 2013년 청소년 범죄 피해율은 2012년보다는 다소 감소하여 청소년 전체 피해율은 17.1%, 이중 남자 청소년은 20.0%, 여자 청소년은 14.0%를 나타내었다. 2012년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2011년 이후와 비교해보면 2012년 이후 청소년의 범죄 피해가 급격하고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범죄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바로 신고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충분한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청소년 시설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② 안전에 대한 인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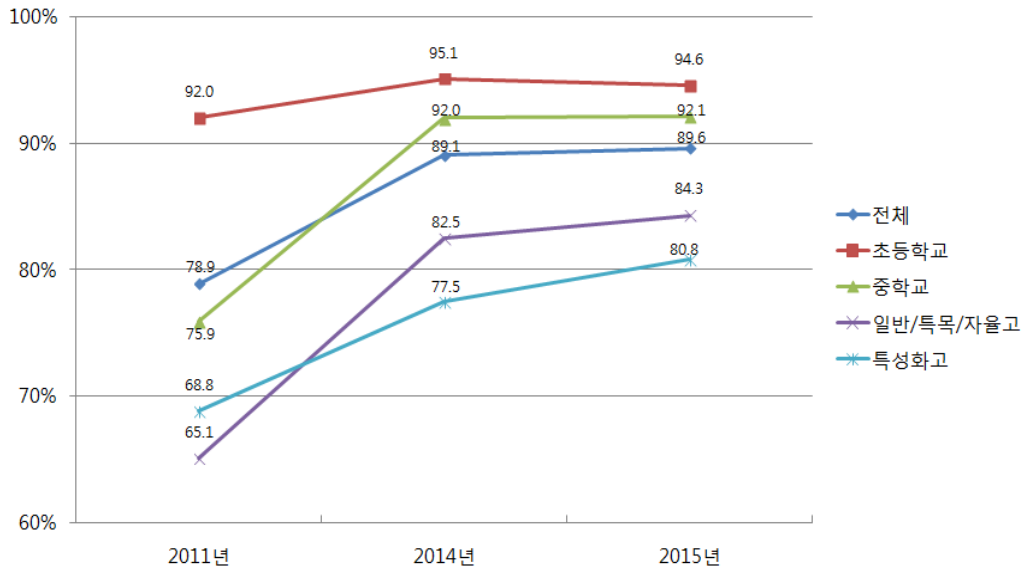
표 Ⅲ-5-10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1	8.2	63.1	26.5	100.0(10,344)	—
성별	남자	2.8	8.7	60.2	28.3	100.0(5,392)	58.910***
	여자	1.3	7.8	66.3	24.6	100.0(4,953)	
학교 유형	초등학교	0.9	4.5	49.1	45.5	100.0(2,918)	1005.329***
	중학교	1.6	6.3	66.8	25.3	100.0(3,590)	
	고등학교	3.4	12.9	70.4	13.3	100.0(3,83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1	8.1	62.8	27.0	100.0(9,327)	18.181*
	한부모가정	2.2	9.4	67.0	21.4	100.0(859)	
	조손가정	2.0	8.3	58.8	30.9	100.0(97)	
	기타	0.0	8.0	74.0	18.0	100.0(61)	
학업 성적	상	1.7	6.6	58.0	33.6	100.0(3,375)	183.648***
	중	2.1	8.1	64.6	25.2	100.0(4,400)	
	하	2.7	10.7	67.7	18.9	100.0(2,538)	
경제적 수준	상	2.0	7.1	59.0	31.9	100.0(5,328)	191.118***
	중	2.0	8.7	66.9	22.4	100.0(3,704)	
	하	2.8	11.4	69.4	16.4	100.0(1,306)	

* $p < .05$, *** $p < .001$.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는 ‘매우 그렇다’가 26.5%, ‘그런 편이다’가 63.1%로 안전에 대해서는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이 높을수록 매우 안전하다는 인식이 줄어드는 반면,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객관적이거나 비판적인 학교급식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유형도 양부모가정의 경우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급식에 대해 ‘그런 편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는 가족과 경제적 수준의 영향과 나이의 성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에서 ‘매우 그렇다’보다는 ‘그런 편이다’의 비율이 높았다.

2011년 이후 학교급식의 안전도는 전체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학교급식에 대해 65.1%만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던 일반/특목/자율고의 경우 2015년 84.3%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여 학교급식의 안전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전체 청소년이 학교급식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5-1】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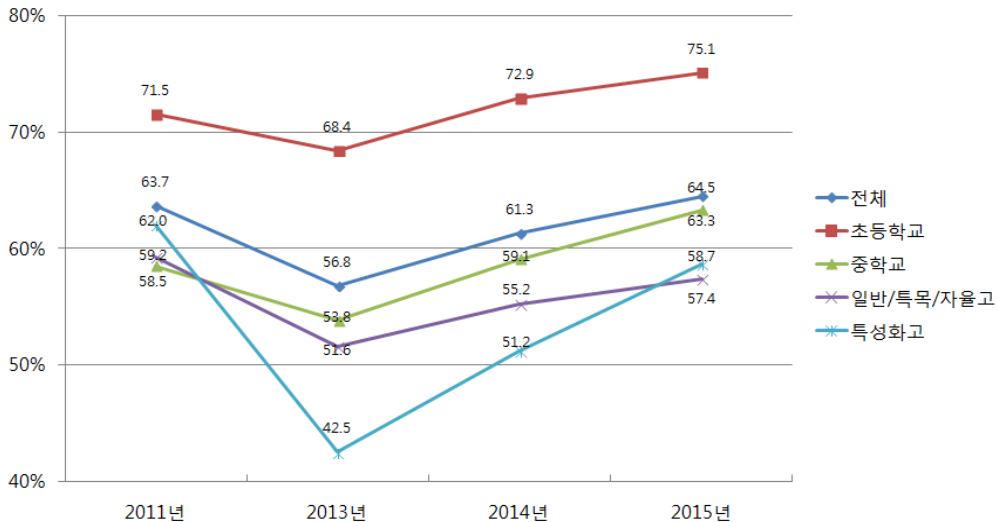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지역의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었다. 지역규모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대한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은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가족유형의 경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경제적 수준과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도 학교 급식과 마찬가지로 가족유형과 경제적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5-1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8.2	27.3	49.9	14.6	100.0(10,436)	-
성별	남자	7.2	20.8	53.2	18.8	100.0(5,443)	353.114***
	여자	9.2	34.5	46.3	10.0	100.0(4,993)	
학교 유형	초등학교	6.2	18.7	49.1	26.0	100.0(2,934)	536.320***
	중학교	7.9	28.9	51.3	12.0	100.0(3,625)	
	고등학교	9.9	32.5	49.2	8.4	100.0(3,877)	
지역 규모	대도시	8.2	27.3	49.8	14.7	100.0(4,561)	16.061*
	중소도시	8.9	27.9	49.4	13.8	100.0(4,267)	
	읍면지역	6.3	26.1	51.4	16.2	100.0(1,60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7	27.1	50.5	14.7	100.0(9,413)	53.750***
	한부모가정	12.1	30.8	44.3	12.7	100.0(864)	
	조손가정	18.1	20.9	38.2	22.8	100.0(98)	
	기타	10.8	25.4	53.3	10.5	100.0(61)	
학업 성적	상	6.8	22.8	51.3	19.1	100.0(3,393)	188.122***
	중	7.8	27.1	51.2	13.9	100.0(4,438)	
	하	10.6	33.6	45.9	9.9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6.4	22.0	52.4	19.2	100.0(5,368)	424.625***
	중	8.8	30.5	49.9	10.9	100.0(3,739)	
	하	13.5	40.3	39.6	6.6	100.0(1,322)	

** $p < .01$, *** $p < .001$.

【그림 Ⅲ-5-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범죄) (연도별 추이)

2011년 이후 거주지역에 대한 범죄로부터 느끼는 안전수준의 변화는 전체 63.7%의 청소년이 안전하다고 느끼던 2011년에 비하여 2014년에는 다소 증가한 64.5%의 청소년이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연령대의 아동과 청소년이 지난 5년 동안 가장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을 낮게 응답한 해는 2013년이며 2014년부터는 점차 안전하게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는 2013년에 62%의 청소년이 자신의 거주지역이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2013년에는 42.5%의 청소년만이 거주지역에 대하여 안전하게 느낀다고 대답하여 약 20%정도가 감소하였다. 2013년에 아동·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안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한 이유에 대한 원인과 사회적 배경은 향후 중요한 논의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 -5-1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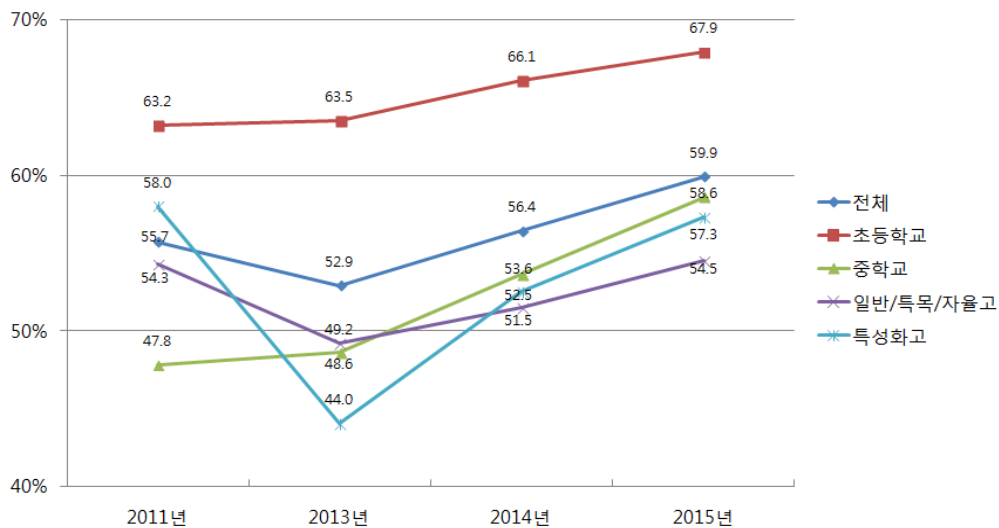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7.9	32.2	48.6	11.3	100.0(10,435)	—
성별	남자	7.7	27.9	49.9	14.5	100.0(5,441)	170.408***
	여자	8.2	36.8	47.1	7.9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6.3	25.8	48.8	19.1	100.0(2,933)	310.912***
	중학교	7.5	33.8	48.6	10.0	100.0(3,625)	
	고등학교	9.5	35.5	48.3	6.7	100.0(3,877)	
지역 규모	대도시	7.9	32.1	48.1	11.8	100.0(4,561)	21.460**
	중소도시	8.3	32.9	48.8	9.9	100.0(4,265)	
	읍면지역	6.9	30.3	49.2	13.6	100.0(1,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6	32.0	48.7	11.7	100.0(9,412)	28.409***
	한부모가정	10.0	35.2	47.2	7.6	100.0(864)	
	조손가정	15.0	28.0	43.4	13.7	100.0(98)	
	기타	8.9	31.5	49.2	10.4	100.0(61)	
학업 성적	상	7.3	28.5	49.7	14.5	100.0(3,392)	116.172***
	중	7.5	31.8	49.9	10.8	100.0(4,438)	
	하	9.5	37.8	44.8	8.0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7.2	27.6	50.3	14.9	100.0(5,369)	255.103***
	중	7.9	35.2	48.5	8.4	100.0(3,738)	
	하	10.9	42.3	41.7	5.2	100.0(1,322)	

** $p < .01$, *** $p < .001$.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동네에 대한 안전수준 인식과 비슷한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가족유형도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인 경우,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교통사고 안전에 대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 다만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인 경우 교통사고에 대하여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통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의 교통사고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정도의 연도별 추이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1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거주지역의 범죄수준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안전수준에 대해서도 역시 2013년에 가장 안전하지 않다(44%)고 느끼고 있었다. 2015년 거주지역의 교통사고 안전수준에 대하여 가정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집단은 일반/특목/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2015년 57.3%로, 2013년에 비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내었다. 2011년 이후 거주지역에 대하여 안전하게 느끼는 것이 감소하다가 2014년 이후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2013년 이후 범죄와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안전정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I-5-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교통사고) (연도별 추이)

거주지역의 음식물에 대한 안전 인식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77%). 동네의 안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인식에 대한 결과와 같이 남학생이 지역의 음식물에 대해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규모에 따른 음식물 안전에 대한 인식은 교통사고 안전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음식물에 대한 안전 인식률이 높았다. 또한 가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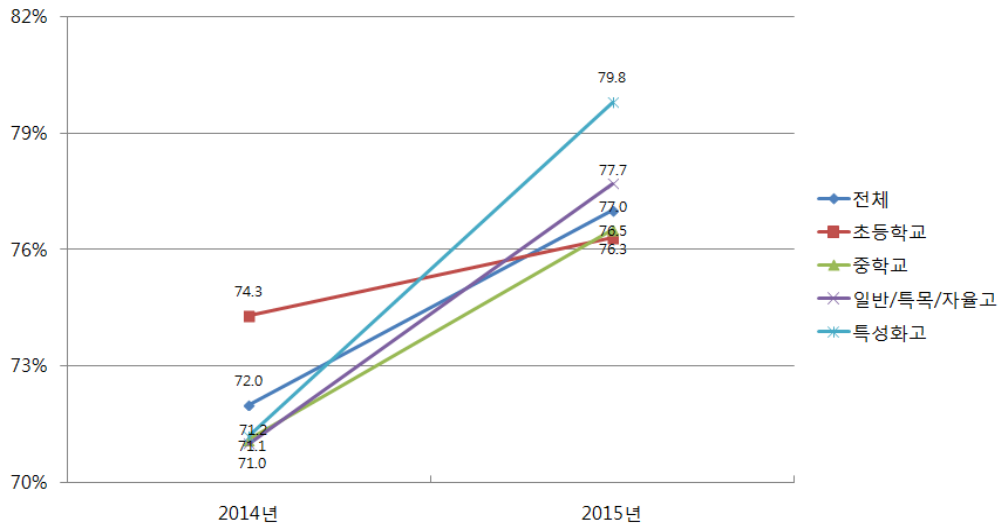
에서는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인 경우 동네의 음식물에 대하여 안전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 높을수록 동네의 음식물이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7	18.3	63.8	13.2	100.0(10,425)	-
성별	남자	5.1	17.1	61.3	16.5	100.0(5,436)	117.954***
	여자	4.1	19.6	66.6	9.6	100.0(4,989)	
학교 유형	초등학교	5.3	18.4	55.3	21.0	100.0(2,930)	268.935***
	중학교	4.5	19.1	64.4	12.1	100.0(3,622)	
	고등학교	4.3	17.6	69.7	8.4	100.0(3,873)	
지역 규모	대도시	4.6	18.1	63.1	14.2	100.0(4,558)	22.781***
	중소도시	4.8	17.8	65.7	11.7	100.0(4,259)	
	읍면지역	4.5	20.2	60.7	14.5	100.0(1,60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6	17.9	64.0	13.4	100.0(9,403)	23.233**
	한부모가정	4.9	21.6	62.5	11.0	100.0(863)	
	조손가정	11.0	23.6	52.3	13.1	100.0(98)	
	기타	3.2	20.4	66.1	10.3	100.0(61)	
학업 성적	상	4.0	16.4	62.5	17.1	100.0(3,390)	96.854***
	중	4.5	18.4	64.9	12.3	100.0(4,434)	
	하	5.8	20.7	63.9	9.5	100.0(2,570)	
경제적 수준	상	4.4	16.3	62.1	17.3	100.0(5,363)	193.530***
	중	4.5	19.3	66.5	9.6	100.0(3,733)	
	하	6.1	23.7	63.3	6.8	100.0(1,321)	

** $p<.01$, *** $p<.001$.

거주지역의 음식물의 안전정도에 대한 인식은 2014년에 비해 2015년 모두 증가추세를 보였다. 다만 거주지역의 범죄와 교통사고에 대해 전체 평균보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것과 달리 음식물 안전에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지 않다(76.3%)고 대답하였다. 이는 2014년과는 다른 결과로 2015년에 중학교, 일반/특목/자율고,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이 거주지역의 음식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상승한 결과인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만이 그 느끼는 정도가 가장 작은 폭(2%)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2014년에는 거주지역 음식물에 대하여 72%가 안전하다고 느꼈으나 2015년에는 77%가 안전하다고 느껴 5%의 증가폭을 보였다.



【그림 III-5-4】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음식물) (연도별 추이)

3) 보건서비스

(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① 보건교사 배치 현황

보건교사 배치현황은 67.6%에 그치고 있으며 중학교가 50.9%로 가장 높았고 특수학교가 83.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 의하면 각 학교에 1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소규모 학교는 보건교사 1명이 두세 곳의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4년의 기준으로는 학교급별 1개교 당 보건교사의 수를 살펴보면 1개교 당 1인의 보건교사 법적 배치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2015년 6월 25일 교육부는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보건교사 배치현황과 학교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현재 낮은 수준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으므로, 보건교사 배치율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5-14 2014년도 보건교사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수	5,978	3,219	2,393	167	11,757
보건교사배치	4,174 (69.8)	1,637 (50.9)	1,583 (66.0)	140 (83.8)	7,534 (67.6)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도 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웹 사이트 http://kess.kedi.re.kr/post/665024?itemCode=03&menuId=m_02_03_02에서 2015년 9월 30일 인출.

학생의 건강과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배치추세는 2012년까지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3년과 2014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2014년 보건교육 관련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미비하지만 보건교사 배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문성빈, 2014).

2015년 봄과 여름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메르스 사태를 생각해 볼 때, 학교는 전염병 예방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지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한 것처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 배치에 있어 지속적인 지원정책과 보건교사 증원 및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사고의 사각지대로 분류되었으므로 보건교사 배치를 현실화하여 학교의 학생건강관리는 물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생존권이자 건강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표 Ⅲ-5-15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보건교사 배치율	64.6	65.4	65.5	64.9	67.6

* 출처: 교육부(2014d).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2014.1.), p.5.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도 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웹 사이트 http://kess.kedi.re.kr/post/665024?itemCode=03&menuId=m_02_03_02에서 2015년 9월 30일 인출.

②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감소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포함한 건강관련 시설의 전체적인 비율은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의 경우는 아주 조금씩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64,137곳의 신체, 정신 건강관련 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5-16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단위 : 개(%))

연도	보건시설			병·의원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결핵	한센	정신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2008	253 (0.4)	1,288 (2.2)	1,907 (3.3)	313 (0.5)	690 (1.2)	1,064 (1.9)	26,581 (46.3)	3 (0.0)	1 (0.0)	118 (0.2)	184 (0.3)	13,618 (23.7)	139 (0.2)	11,248 (19.6)	57,407 (100.0)
2009	253 (0.4)	1,287 (2.2)	1,909 (3.2)	312 (0.5)	762 (1.3)	1,129 (1.9)	27,104 (45.9)	3 (0.0)	1 (0.0)	130 (0.2)	178 (0.3)	14,071 (23.9)	151 (0.3)	11,705 (19.8)	58,995 (100.0)
2010	253 (0.4)	1,294 (2.2)	1,912 (3.2)	312 (0.5)	849 (1.4)	1,154 (1.9)	27,334 (46.0)	3 (0.0)	1 (0.0)	143 (0.2)	188 (0.3)	14,074 (23.7)	159 (0.3)	11,804 (19.8)	59,480 (100.0)
2011	253 (0.4)	1,305 (2.1)	1,908 (3.1)	319 (0.5)	975 (1.6)	1,245 (2.0)	27,909 (45.2)	3 (0.0)	1 (0.0)	144 (0.2)	199 (0.3)	15,002 (24.3)	178 (0.3)	12,305 (19.9)	61,746 (100.0)
2012	254 (0.4)	1,315 (2.1)	1,895 (3.0)	323 (0.5)	1,087 (1.7)	1,327 (2.1)	28,762 (45.8)	3 (0.0)	1 (0.0)	156 (0.2)	202 (0.3)	14,800 (23.6)	199 (0.3)	12,440 (19.8)	62,764 (100.0)
2013	253	1,323	1,900	324	1,228	1,331	28,816	3	1	160	200	15,579	203	12,816	64,137

* 출처: 보건복지부(2014d), 보건복지통계연보, pp.185-187.

③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몇 가지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표는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이다. 2012년까지 국민건강통계는 소아청소년을 2세에서 18세로 보고 2세-5세, 6세-11세, 12세-18세의 연령대로 나누고 이에 대해 정상, 과체중, 비만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지만, 2013년부터는 비만 유병률의 상태만 조사하고, 정상과 과체중의 경우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아청소년 비만유병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아청소년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소아청소년 비만유병률은 전체가 10%로, 남자가 12.2%, 여자가 7.7%로 여자의 소아청소년 비만유병률이 4.5%나 낮았다. 만 6세-11세의 경우는 남자가 5.2%, 여자가 7.2%로 남자가 여자보다 2%p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12세-18세의 경우는 남자의 비만유병률이 높았는데 남자 청소년 17.1%, 여자청소년 8%를 나타내었다.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조사는 18세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정도만 조사를 하고 정상과 과체중에 대한 분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이유에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정상과 과체중보다도 건강상의 지표로서 비만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Ⅲ-5-17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연도	연령	정상 ¹⁾	과체중 ²⁾	비만 ³⁾		전체(N)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2011	전체(2-18세)	82.6(1.1)	7.7(0.8)	9.7(0.9)		1,716
	2-5세	87.8(1.8)	9.4(1.7)	2.8(0.9)		424
	6-11세	80.5(1.8)	11.1(1.5)	8.4(1.4)		632
	12-18세	82.0(1.6)	4.9(1.1)	13.1(1.5)		660
2012	전체(2-18세)	82.7(1.3)	7.8(0.8)	9.6(1.0)		1,530
	2-5세	87.5(2.3)	10.7(2.2)	1.9(1.0)		349
	6-11세	82.7(1.9)	10.3(1.6)	7.1(1.3)		557
	12-18세	80.8(1.9)	5.1(1.0)	14.1(1.7)		624
2013	전체(6-18세)	-	-	-		1,291(10.0%)
	2-5세	-	-	-		-
	6-11세	-	-	남	5.2	633(6.1%)
				여	7.2	
	12-18세	-	-	남	17.1	658(12.7%)
				여	8.0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 통계. p.50, p.566

* 주: 1) 정상: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Kg/m²) 기준 85백분위수 미만

2) 과체중: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이며 체질량지수 25미만

3) 비만: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의하면 비만율은 여학생(6.1%)보다 남학생(13.7%)이 더 높으며, 학교급별로는 특성화계고(남17.4%, 여9.3%), 일반계고(남16.1%, 여6.9%), 중학교(남10.5%, 여4.9%) 순으로 비만율이 더 높았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1). 남녀 모두 2011년부터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 비만은 청소년의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의 향상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 추이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3년간 소아청소년 천식유병률은 1세-11세, 12세-18세에서 증가율과 감소추세가 다르게 나타난다. 1세-11세의 천식유병률은 2012년 감소하였다가 2013년 5.9%로 증가하였다. 12세-18세는 2011년에 3.3%에서 2013년 5%로 증가하였다. 12세-18세의 천식유병률은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예방이 필요해 보인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소득수준이 높거나 낮을수록 천식유병률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가정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소아청소년 천식유병률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5-18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1	천식유병률 ¹⁾	1-11세	8.9(1.5)	606	7.6(1.4)	564	8.3(1.0)	1,170
		12-18세	3.9(1.2)	350	2.7(0.9)	306	3.3(0.7)	656
	소득수준 ²⁾	하	6.9(1.9)	219	7.6(2.2)	213	7.2(1.5)	432
		중하	7.2(2.1)	245	5.6(1.9)	216	6.4(1.4)	461
		중상	5.2(1.7)	246	3.1(1.5)	213	4.2(1.2)	459
		상	5.5(1.8)	239	4.1(1.4)	218	4.9(1.1)	457
2012	천식유병률 ¹⁾	1-11세	6.4(1.2)	560	3.5(1.0)	441	5.0(0.8)	1,001
		12-18세	3.3(1.2)	331	3.7(1.3)	278	3.5(0.9)	609
	소득수준 ²⁾	하	7.2(2.1)	218	5.2(1.9)	172	6.2(1.4)	390
		중하	4.6(1.4)	220	3.0(1.4)	178	3.8(1.0)	398
		중상	3.5(1.4)	222	2.7(1.1)	185	3.1(0.9)	407
		상	4.0(1.4)	226	3.1(1.7)	176	3.6(1.1)	402
2013	천식유병률 ¹⁾	1-11세	7.8(1.3)	581	3.8(0.9)	526	5.9(0.9)	1,107
		12-18세	4.4(1.2)	331	5.8(1.7)*	315	5.0(1.0)	646
	소득수준 ²⁾	하	6.5(1.9)*	228	4.3(1.6)*	209	5.4(1.3)	437
		중하	7.9(2.1)*	224	5.5(1.5)*	206	6.7(1.4)	430
		중상	5.1(1.5)*	243	6.5(2.5)*	211	5.8(1.5)*	454
		상	5.6(1.9)*	210	2.3(1.1)*	210	4.0(1.2)	420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p.50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 통계. p.68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 통계. p.700.

* 주: 1) 천식유병률: 의사로부터 천식 진단을 받은 분을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25~50%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을 질병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1세-11세, 12세-18세의 연령대 모두에서 증가추세에 있어 2013년에는 각 1.7%, 1.3%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도 위의 두 연령대에서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3년을 기준으로 1세-11세, 12세-18세 청소년의 각 19%, 14.4%가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었다. 주의력 결핍장애는 1세-11세의 경우는 2013년으로 올수록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0.6%), 12세-18세의 경우는 2013년으로 올수록 점점 증가하여 2.5%의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로감염의 경우는 2012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2011년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 1세-11세의 경우 5.1%, 12세-18세의 경우 1.5%에 이르기도 하여 이에 대한 의학적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폐렴의 경우 1세-11세의 경우 2013년이 될수록 증가추세를 기록하여 2013년 17.7%를

나타냈고, 12세-18세의 경우 2011년 4.4%에서 2012년 7.4%로 상승한 이후 2013년에도 7.4%의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의료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질환별 유병률은 국제적인 수치와 비교가 필요해 보이며, 질환별로 증가추세에 있는 이유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표 III-5-19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연도	연령		남자		여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1	선천성심장질환 ¹⁾	1-11세	0.6(0.3)	606	1.0(0.5)	564	0.8(0.3)	1,170
		12-18세	0.0(-)	351	0.7(0.4)	306	0.3(0.2)	657
	아토피피부염 ²⁾	1-11세	12.0(1.6)	606	13.4(1.8)	564	12.7(1.2)	1,170
		12-18세	7.0(1.4)	351	13.1(2.0)	306	9.8(1.3)	657
	주의력결핍장애 ³⁾	1-11세	0.9(0.5)	606	0.4(0.3)	564	0.7(0.3)	1,170
		12-18세	0.7(0.4)	351	0.4(0.2)	306	0.5(0.2)	657
	요로감염 ⁴⁾	1-11세	3.3(0.9)	606	2.4(0.7)	564	2.9(0.6)	1,170
		12-18세	1.6(0.8)	351	0.4(0.3)	306	1.0(0.5)	657
	폐렴 ⁵⁾	1-11세	12.1(1.7)	606	11.8(2.0)	564	12.0(1.4)	1,170
		12-18세	4.2(1.2)	351	4.6(1.6)	306	4.4(1.0)	657
2012	선천성심장질환 ¹⁾	1-11세	1.3(0.8)	560	1.0(0.6)	441	1.1(0.5)	1001
		12-18세	0.0(-)	332	1.3(0.8)	278	0.6(0.4)	610
	아토피피부염 ²⁾	1-11세	15.6(2.2)	560	14.1(2.0)	441	14.9(1.6)	1001
		12-18세	8.8(1.9)	332	13.3(2.5)	278	10.9(1.5)	610
	주의력결핍장애 ³⁾	1-11세	0.6(0.4)	560	0.3(0.2)	441	0.5(0.2)	1001
		12-18세	1.4(0.7)	332	0.6(0.4)	278	1.0(0.4)	610
	요로감염 ⁴⁾	1-11세	2.4(0.8)	560	1.6(0.6)	441	2.0(0.5)	1001
		12-18세	1.1(0.8)	332	0.7(0.5)	278	0.9(0.5)	610
	폐렴 ⁵⁾	1-11세	16.2(2.2)	560	15.2(2.4)	441	15.7(1.8)	1001
		12-18세	7.9(2.0)	332	6.8(1.8)	278	7.4(1.4)	610
2013	선천성심장질환 ¹⁾	1-11세	1.4(0.6)*	581	2.1(0.8)*	526	1.7(0.5)*	1,107
		12-18세	0.7(0.5)**	330	1.9(0.8)*	315	1.3(0.5)*	645
	아토피피부염 ²⁾	1-11세	19.1(1.8)	581	18.8(2.1)	526	19.0(1.5)	1,107
		12-18세	10.0(1.9)	331	19.2(2.5)	315	14.4(1.5)	646
	주의력결핍장애 ³⁾	1-11세	1.2(0.5)*	581	0.0(-)6)	526	0.6(0.3)*	1,107
		12-18세	2.7(1.0)	330	2.2(0.9)*	315	2.5(0.7)*	645
	요로감염 ⁴⁾	1-11세	5.3(1.1)	581	4.9(1.1)	526	5.1(0.8)	1,107
		12-18세	1.5(0.5)*	331	1.5(0.7)	315	1.5(0.4)*	646
	폐렴 ⁵⁾	1-11세	17.7(2.1)	581	17.7(1.8)	526	17.7(1.6)	1,107
		12-18세	7.9(1.8)	330	6.9(1.8)*	315	7.4(1.3)	645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 통계. p.51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 통계. p.707.

* 주: 1) 선천성심장질환 유병률: 의사로부터 선천성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을

2)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의사로부터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을

3) 주의력결핍장애 유병률: 의사로부터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은 분을

4) 요로감염 유병률: 의사로부터 요로감염 진단을 받은 분을

5) 폐렴 유병률: 의사로부터 폐렴 진단을 받은 분을

6) 분율 0.1%미만으로 표준오차 비제시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25-50%, **변동계수 50% 이상

(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2012년까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에 관한 지표 중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 통계 지표에서 제외되었는데 추후 보건복지부의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2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접종률이 높았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다음의 표는 2014년 조사된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표 III-5-20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0	2,115	509	516	532	524
	분율 (표준오차)	73.9 (2.2)	57.4 (2.6)	31.7 (3.1)	16.3 (2.5)	45.2 (1.9)	39.3 (3.3)	46.9 (3.2)	49.7 (3.5)	46.1 (3.4)
2011	N	537	631	307	349	1,824	431	461	459	456
	분율 (표준오차)	74.0 (2.7)	56.6 (2.9)	36.0 (3.8)	24.2 (2.7)	47.3 (2.0)	42.4 (3.9)	49.6 (3.6)	49.6 (3.8)	50.1 (3.9)
2012	N	446	550	315	294	1,605	289	298	403	402
	분율 (표준오차)	78.6 (2.9)	59.7 (2.7)	38.3 (4.0)	23.5 (3.0)	49.7 (1.9)	48.0 (3.5)	50.5 (3.8)	51.1 (3.6)	48.4 (3.7)

* 출처: 김경준·김희진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416.

* 주: 1)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원 미치료율은 201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7.4%에 해당하던 미치료율이 2013년에는 5%로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5세-18세의 연간 병원 미치료율이 전체 평균보다 모든 해에서 높았고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미치료율이 낮아졌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연간 미치료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13년 기준으로 소득수준 상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미치료율이 2.3%에 그친 반면, 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7.7%에 이르러 3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표 Ⅲ-5-21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1	2,116	510	516	532	524
	분율 (표준오차)	2.7 (0.6)	5.8 (1.0)	10.1 (1.8)	11.1 (2.1)	7.4 (0.8)	9.1 (1.9)	7.0 (1.4)	5.7 (1.1)	7.2 (1.7)
2011	N	538	632	307	349	1,826	432	461	459	457
	분율 (표준오차)	6.1 (1.5)	4.8 (1.2)	7.3 (1.7)	10.6 (2.0)	7.2 (0.9)	9.4 (2.4)	6.6 (1.6)	4.8 (1.3)	7.9 (1.9)
2012	N	447	554	315	294	1,610	390	398	407	402
	분율 (표준오차)	5.2 (2.0)*	4.8 (1.1)	8.7 (2.0)	12.5 (2.0)	7.8 (0.9)	7.6 (1.6)	9.9 (2.3)	8.1 (1.8)	5.6 (1.6)*
2013	N	485	622	292	353	1,752	437	429	454	420
	분율 (표준오차)	0.8 (0.4)	3.4 (0.9)	3.6 (1.1)	11.2 (1.9)	5.0 (0.7)	7.7 (1.7)	4.7 (1.2)*	4.9 (1.4)	2.3 (0.7)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2010 국민건강통계. p.25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통계. p.23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통계. p.34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p.324.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 25-50%, **: 50% 이상.

2010년 이후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도 병의원 치료율과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인데 전반적으로 치과 미치료율이 병의원 미치료율보다 높다. 2010년 25.3%이던 치과 미치료율이 2013년에는 13.4%로 낮아졌다. 치과 미치료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5세-18세로 나타났으며, 각 년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미치료율을 보여 2013년에는 23.1%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치과 미치료율은 소득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2010년 이후 소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치료율은 낮았으며 소득수준별 미치료율 역시 모든 소득수준에서 감소추세를 보인다. 그러므로 연간 치과 치료율 및 병의원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수준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소득수준 중하, 하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I-5-22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69	359	2,112	510	514	531	523
	분율 (표준오차)	14.5 (1.7)	21.0 (2.4)	26.2 (2.8)	38.6 (3.5)	25.3 (1.5)	33.2 (2.9)	25.3 (3.2)	20.6 (2.2)	19.4 (2.2)
2011	N	538	632	308	347	1,825	433	459	459	457
	분율 (표준오차)	15.2 (2.0)	12.4 (1.8)	16.1 (2.4)	31.9 (2.6)	19.3 (1.1)	22.7 (2.1)	19.1 (2.6)	17.5 (2.3)	16.2 (2.3)
2012	N	447	554	314	294	1,609	389	399	406	402
	분율 (표준오차)	10.6 (1.8)	12.6 (1.8)	18.2 (2.6)	30.4 (2.9)	18.2 (1.3)	21.9 (2.5)	18.2 (2.4)	13.7 (2.7)	18.4 (3.2)
2013	N	485	622	289	349	1,745	436	430	451	416
	분율 (표준오차)	8.6 (1.8)	8.3 (1.5)	13.9 (2.2)	23.1 (2.8)	13.4 (1.1)	19.4 (2.6)	13.7 (2.0)	10.9 (1.8)	9.2 (1.8)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2010 국민건강통계. p.25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통계. p.23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통계. p.34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p.324.

-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 25-50%, **, 50% 이상

아동·청소년의 약국 이용률은 저소득층일수록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병의원이나 치과 치료의 경우 진료비에 대한 부담과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저소득층일수록 병의원이나 치과보다 약국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저소득층일수록 병의원, 치과, 약국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관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소득수준 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2주간 약국 이용률이 27.1%로 소득 수준 상, 중상, 중하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 상의 경우, 소득수준 중상, 중하보다는 높은 수준의 약국 이용률을 나타냈는데 이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약국을 이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2013년을 제외한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소득수준과 약국 이용률이 반드시 비례하거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어서 약국 이용률을 소득수준과 연관지어 판단하기에는 보다 세부적인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연령별 전체 2주간 약국 이용률 역시 연령별로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 2011년에서 2013년에는 연령별로 12세-14세의 2주간 약국 이용률이 가장 낮았고, 1세-5세의 약국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23 아동·청소년 2주간 약국이용률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1	2,116	510	516	532	524
	분율 (표준오차)	43.1 (2.8)	23.3 (2.0)	20.3 (2.7)	14.6 (2.2)	24.8 (1.5)	24.1 (2.5)	26.8 (2.8)	22.0 (2.2)	26.3 (2.6)
2011	N	537	631	308	349	1,825	433	459	459	457
	분율 (표준오차)	42.3 (3.6)	23.5 (1.9)	18.6 (2.8)	25.0 (2.9)	27.1 (1.5)	25.0 (2.6)	26.6 (2.9)	25.8 (2.9)	31.9 (2.5)
2012	N	447	554	315	295	1,611	390	399	407	402
	분율 (표준오차)	48.3 (3.8)	22.6 (2.7)	15.9 (2.5)	20.4 (2.9)	26.6 (1.4)	24.3 (2.9)	28.3 (2.8)	27.2 (2.9)	27.1 (3.0)
2013	N	485	622	293	353	1,753	438	430	453	420
	분율 (표준오차)	39.6 (2.8)	22.8 (1.9)	17.7 (2.4)	22.1 (2.6)	25.8 (1.2)	27.1 (2.5)	25.3 (2.4)	24.9 (2.5)	26.4 (2.5)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2010 국민건강통계. p.27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통계. p.25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통계. p.35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p.337.

* 주: 1) 2주간 약국이용률: 최근 2주간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① 흡연율

2009년 이후 청소년 전체 흡연율은 감소추세이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2014년 중학교의 평균 흡연율은 4.7%, 고등학교의 흡연율은 13.5%를 보인다. 고등학교의 흡연율은 중학교 흡연율보다 거의 3배 이상 높아서,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중학교에서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흡연율이 고등학교에서 높아지는 근본 원인과 배경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III-5-24 현재 흡연을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12.8	8.3	17.5	4.7	8.7	11.3	16.0	17.9	18.6
2010	12.1	8.0	16.2	4.9	8.7	10.4	14.8	15.6	18.1
2011	12.1	8.1	16.1	4.4	8.7	10.9	15.5	16.1	16.9
2012	11.4	7.2	15.4	3.6	6.9	10.9	14.0	15.9	16.3
2013	9.7	5.5	13.8	2.3	5.5	8.6	12.1	14.3	15.0
2014	9.1	4.7(0.2)	13.5(0.5)	1.7(0.2)	4.1(0.2)	7.9(0.3)	11.3(0.5)	13.5(0.6)	15.7(0.6)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4-35.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7.

* 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② 음주율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음주율도 2013년까지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고등학교 음주율이 2013년에 비해 높아져서 전체 평균이 16.4%로 0.1% 높아졌다. 이러한 원인은 중3과 고2, 고3의 음주율이 높아져서 생긴 것으로 흡연율이 감소하였는데 음주율이 낮아진 배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보다 정확한 음주에 대한 추이와 이에 대한 대책이 가능할 것이다.

표 III-5-25 현재 음주율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21.1	13.3	29.1	9.5	13.4	16.8	24.6	31.1	31.8
2010	21.1	13.3	28.9	9.6	12.8	17.3	24.4	30.2	32.1
2011	20.6	12.0	29.0	8.3	11.8	15.6	24.3	30.6	32.3
2012	19.4	10.3	28.2	6.6	9.8	14.3	22.4	30.0	32.2
2013	16.3	8.3	23.8	5.4	7.8	11.7	17.6	26.5	27.3
2014	16.4	8.3	24.6	4.9	7.5	12.2	18.2	25.6	29.8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88-8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97.

* 주: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③ 기타 약물 사용률

평생 약물 경험률은 2013년과 2014년이 전체 평균이 0.5%로 같다. 그러나 남학생이 평생 약물 경험률이 0.5%에서 0.6%로 증가하였고 여학생의 평생 약물 경험률은 2012년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예방교육과 약물사용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같은 서비스가 요구된다.

표 Ⅲ-5-26 평생 약물 경험률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학생	0.9	0.9	0.8	0.6	0.5	0.6
여학생	0.4	0.5	0.5	0.6	0.4	0.3
전 체	0.7	0.7	0.7	0.6	0.5	0.5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56-357.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63.

* 주: 평생 동안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 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④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약물남용 예방 교육 중에서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4년에 57.7%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4년 전체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은 2010년 56.2%, 2011년 54.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 Ⅲ-5-27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56.2	64.8	47.6	67.7	64.4	62.3	56.5	51.0	35.2
2011	54.1	62.6	45.7	64.0	63.2	60.6	54.0	48.4	34.3
2012	61.4	68.3	54.8	67.5	68.9	68.5	59.8	59.2	45.3
2013	61.9	68.7	55.4	67.4	70.0	68.8	60.1	59.2	47.1
2014	57.7	63.5	51.9	63.3	64.0	63.3	55.5	55.1	45.2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 78.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 78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흡연율이 2014년이 될수록 감소함에 따라 흡연예방 교육이 축소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급별로 보다 정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지만, 2014년의 경우 중, 고, 모든 학년에서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예방교육의 축소가 향후 흡연 경험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과 같이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도 2014년에 모든 학교급에서 감소하였다. 2012년 34.3%의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2014년에 흡연예방교육과 음주예방교육이 왜 축소된 것인지, 이에 대한 교육참여율이 왜 낮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흡연예방교육 경험률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 2014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이 57.7%인 반면,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34.4%에 그쳤다. 또 전반적으로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의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예방교육 경험률과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모두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음주 및 흡연 예방교육 실시의 시기는 저학년, 저연령 시기에 이루어 질 때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청소년의 음주율(16.4%)이 흡연율(9.1%)보다 더 높은데 예방교육 경험률은 반대로 나타나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이 57.7%,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이 34.4%였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흡연예방교육을 경험할수록 흡연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므로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이 높아진다면 음주율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II-5-28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36.3	46.6	26.1	53.5	45.8	40.7	33.2	28.5	16.5
2011	35.2	46.0	24.5	50.2	47.3	40.7	30.7	25.7	17.0
2012	34.3	44.3	24.6	47.1	44.6	41.6	29.9	25.9	18.1
2013	38.0	49.2	27.2	51.0	51.3	45.5	33.4	28.9	19.4
2014	34.4	42.0	24.8	45.5	41.5	39.5	30.6	25.3	18.8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18.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32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생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1) 건강에 대한 인식

① 주관적 건강평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85.7%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은 13.2%,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응답은 1%에 불과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는 성별, 학교유형별,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Ⅲ-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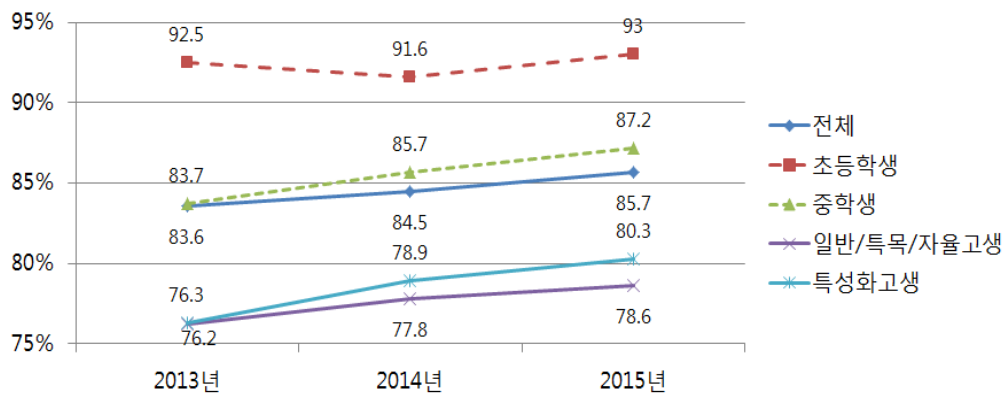
표 Ⅲ-5-29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평균(SD)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 체		3.08(.63)	1.0	13.2	62.3	23.4	100.0(10,435)	—
성별	남자	3.11(.66)	1.4	12.8	59.5	26.3	100.0(5,440)	69.359***
	여자	3.05(.60)	0.7	13.7	65.4	20.2	100.0(4,995)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8(.60)	0.5	6.5	57.4	35.6	100.0(2,927)	570.794***
	중학교	3.08(.62)	1.2	11.6	64.8	22.4	100.0(3,622)	
	일반/특목/자율고	2.93(.64)	1.3	20.1	62.7	15.9	100.0(3,170)	
	특성화고	2.91(.59)	1.1	18.6	68.3	12.0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3.09(.65)	1.1	13.4	60.8	24.6	100.0(4,565)	11.097
	중소도시	3.07(.62)	1.0	12.9	64.1	22.0	100.0(4,266)	
	읍면지역	3.08(.64)	1.1	13.4	62.0	23.6	100.0(1,60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9(.63)	1.0	13.0	62.3	23.7	100.0(9,411)	13.493
	한부모가정	3.02(.65)	1.2	16.3	61.9	20.6	100.0(864)	
	조손가정	3.09(.55)	0.0	10.8	69.2	20.0	100.0(98)	
	기타	3.05(.62)	1.7	11.1	67.6	19.6	100.0(61)	
경제적 수준	상	3.09(.62)	0.8	9.4	60.1	29.7	100.0(5,371)	440.173***
	중	3.01(.61)	1.0	14.6	66.3	18.0	100.0(3,735)	
	하	2.83(.67)	2.4	24.9	59.8	13.0	100.0(1,321)	

*** $p < .001$.

성별차이를 보면, 긍정적인 응답(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간에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매우 건강하다는 항목에서 남자청소년은 26.3%, 여자청소년은 20.2%로 나타나 남자청소년이 스스로를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자청소년보다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은 93%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중학생은 87.2%, 특성화고는 80.3%를 나타냈으며,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78.6%로 가장 낮은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상: 89.8%, 중: 84.3%, 하: 72.8%).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약 1.2%증가를 보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급별 차이는 모든 연도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을 제외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미세하게나마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 그래프의 비율은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를 합친 것임.

【그림 III -5-5】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 신체적 건강

① 운동실천율

아동·청소년이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한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일주일에 1-2회 정도 운동한다는 응답은 27%, 한 달에 1-2회 정도는 20%,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1.1%로 나타나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5명 중 한명은 학교 체육시간외에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0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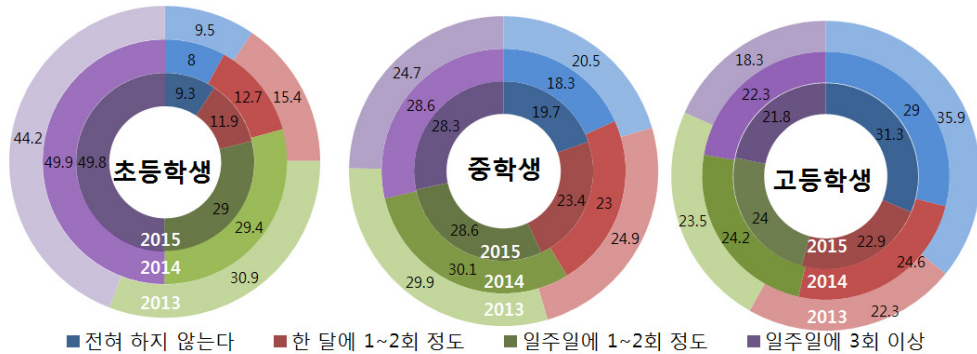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1.1	20.0	27.0	31.9	100.0(10,442)	-
성별	남자	14.9	16.1	27.9	41.0	100.0(5,441)	594.843***
	여자	27.8	24.2	26.1	21.9	100.0(5,001)	
학교 유형	초등학교	9.3	11.9	29.0	49.8	100.0(2,932)	988.423***
	중학교	19.7	23.4	28.6	28.3	100.0(3,625)	
	일반/특목/자율고	32.3	22.5	24.0	21.2	100.0(3,170)	
	특성화고	26.8	24.6	24.4	24.2	100.0(7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6	19.9	27.4	32.2	100.0(9,419)	29.248***
	한부모가정	25.4	22.1	24.1	28.4	100.0(864)	
	조손가정	30.4	16.0	26.0	27.6	100.0(98)	
	기타	13.9	19.1	21.0	46.0	100.0(61)	
경제적 수준	상	16.4	17.8	29.7	36.1	100.0(5,373)	258.432***
	중	24.4	22.4	24.9	28.2	100.0(3,743)	
	하	30.8	22.1	22.1	25.0	100.0(1,319)	

*** $p<.001$.

운동실천율은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주일에 1-2회 이상 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20%이상 더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다른 교급의 청소년보다 20~30%정도 더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일주일에 1-2회 이상 운동한다는 비율이 기타가정의 아동·청소년 67%, 양부모가정 59.6%이었으나, 한부모가정에서는 52.5%, 조손가정에서는 53.6%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운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상’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청소년 중 65.8%, ‘중’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청소년 중에서는 53.1%, ‘하’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에게서는 47.1%로 나타나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운동실천율에 대해 학교유형별로 연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2013년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2014년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3회 이상’운동한다는 비율 역시 2013년보다는 높았으나, 2014년보다는 미미한 수준이나마 낮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운동실천율이 전년대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6】 운동실천율(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② 아침식사 결식률

학교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하는 편이다’는 17.7%로 나타나 ‘거의’ 또는 ‘보통’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은 73%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비율은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먼저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보통’ 또는 ‘거의’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75.4%로 여자청소년의 70.3%보다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3%, 중학생 71.1%, 일반/특목/자율고 학생 69.9%, 특성화고 학생 54.7% 정도가 ‘보통’ 또는 ‘거의’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 학생의 결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에서 ‘거의’ 또는 ‘보통’ 아침식사를 한다는 비율이 74.2%으나, 한부모가정은 60.8%, 조손가정은 69.2%, 기타가정에서는 64.6%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보통’ 또는 ‘거의’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 상: 77.6%, 중: 70.5%, 하: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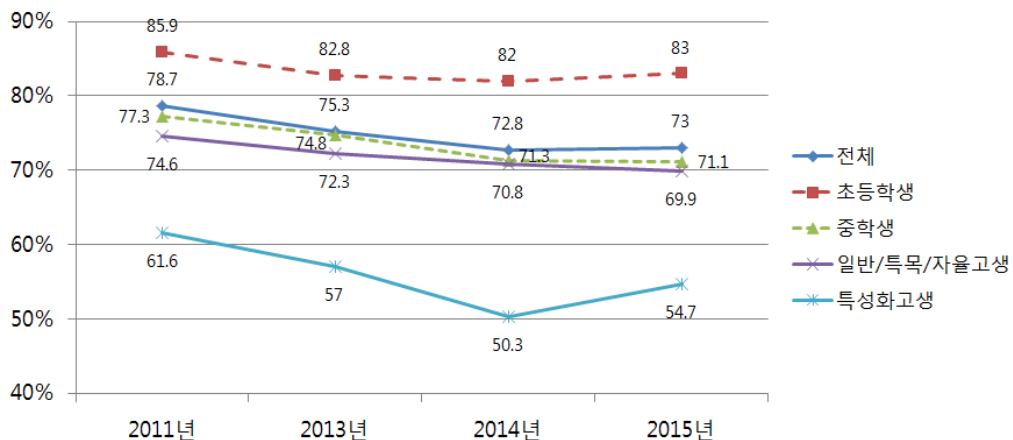
표 Ⅲ-5-31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평균(SD)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는 편이다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	전체(N)	χ^2
전체		3.10(1.16)	18.1	9.0	17.7	55.3	100.0(10,400)	—
성별	남자	3.18(1.13)	16.3	8.3	17.0	58.4	100.0(5,425)	48.850***
	여자	3.02(1.19)	20.0	9.7	18.4	51.9	100.0(4,975)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8(1.00)	10.3	6.7	17.8	65.2	100.0(2,925)	346.147***
	중학교	3.06(1.17)	18.7	10.2	17.8	53.3	100.0(3,613)	
	일반/특목/자율고	3.02(1.21)	21.0	9.1	17.1	52.8	100.0(3,155)	
	특성화고	2.56(1.28)	33.9	11.4	19.2	35.5	100.0(70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4(1.14)	16.9	9.0	17.7	56.5	100.0(9,384)	121.382***
	한부모가정	2.73(1.30)	31.0	8.2	17.9	42.9	100.0(858)	
	조손가정	3.04(1.15)	16.2	14.7	18.0	51.2	100.0(96)	
	기타	2.97(1.26)	22.3	13.1	9.9	54.7	100.0(61)	
경제적 수준	상	3.24(1.09)	13.9	8.5	17.4	60.2	100.0(5,357)	209.513***
	중	3.02(1.19)	20.4	9.1	18.6	51.9	100.0(3,719)	
	하	2.77(1.28)	28.5	10.5	16.4	44.6	100.0(1,316)	

*** $p < .001$.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에 대해 2011년부터 조사된 결과를 비교해보면,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의 조사결과는 전년대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보통 하는 편이다'와 '거의 매일하는 편이다'의 합계 / 단위(%)

【그림 Ⅲ-5-7】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4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급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일반/특목/자율고 학생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특성화고 학생은 2014년에 50.3%가 ‘보통’ 또는 ‘거의’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5년에는 54.7%로 나타나 4.4%의 증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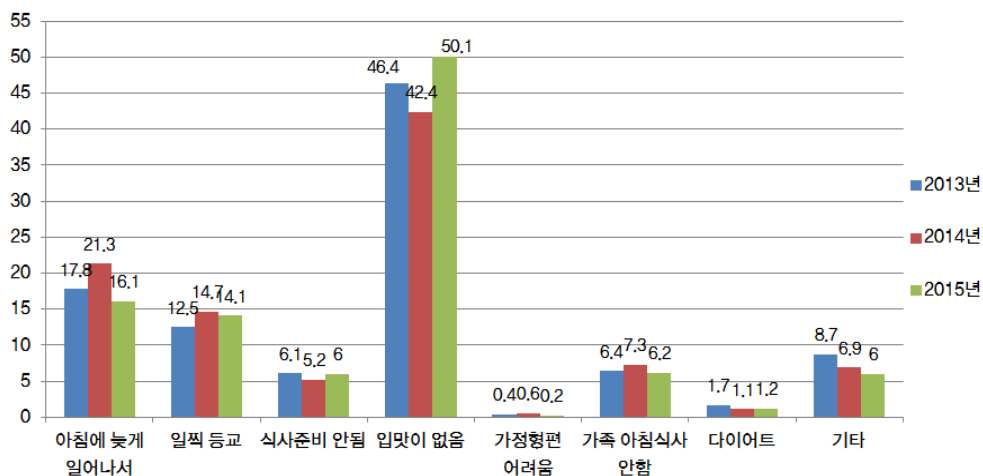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식사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3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리고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22%, 20.6%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아침을 안 먹는 습관때문에’가 7.3%, ‘식사준비가 안되어서’는 6.1% 정도로 나타났다. 아침결식의 이유로 초등학생은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의 항목들이 각각 25%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경우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식사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결식한다는 비율도 다른 가정에서보다 높았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결식한다는 비율이 높았고(상: 41.6%, 중: 35.6%, 하: 26%), 경제적 수준이 ‘하’라고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에게서 ‘식사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의 이유가 다른 경제적 상황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5-32 아침식사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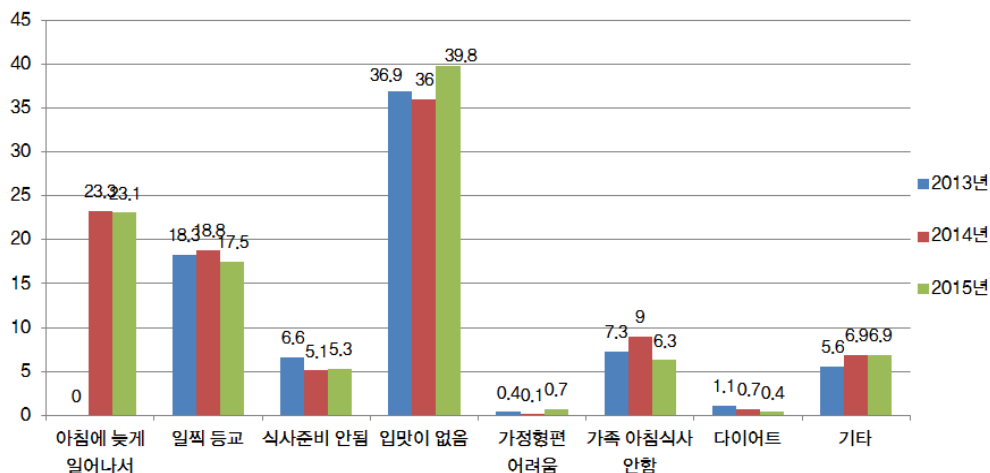
구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	식사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되어서	다이어트 를 위해	기타	전체(N)
전체	22.0	20.6	6.1	36.4	0.4	7.3	0.8	6.4	100.0(2,796)
학교 유형	초등학교	16.1	14.1	6.0	50.1	0.2	6.2	1.2	100.0(498)
	중학교	23.1	17.5	5.3	39.8	0.7	6.3	0.4	100.0(1,034)
	일반/특목/자율고	26.6	24.8	5.7	27.3	0.2	7.9	1.0	100.0(946)
	특성화고	14.1	28.2	10.1	31.2	0.0	10.7	0.6	100.0(318)
	양부모가정	22.6	20.1	5.9	37.4	0.3	6.5	0.9	100.0(2,410)
가족 유형	한부모가정	19.0	24.1	6.6	29.1	1.2	13.6	0.2	100.0(334)
	조손가정	7.1	23.9	13.8	43.0	0.0	3.4	0.0	100.0(30)
	기타	31.8	8.5	5.1	27.8	0.0	11.8	0.0	100.0(22)
	상	19.4	20.2	5.1	41.6	0.0	6.2	1.0	100.0(1,192)
경제적 수준	중	24.3	20.2	4.5	35.6	0.4	7.4	0.5	100.0(1,094)
	하	23.6	22.2	11.9	26.0	1.1	10.0	0.9	100.0(509)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급별로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각각의 이유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2014년에 비해 약 8%p정도 증가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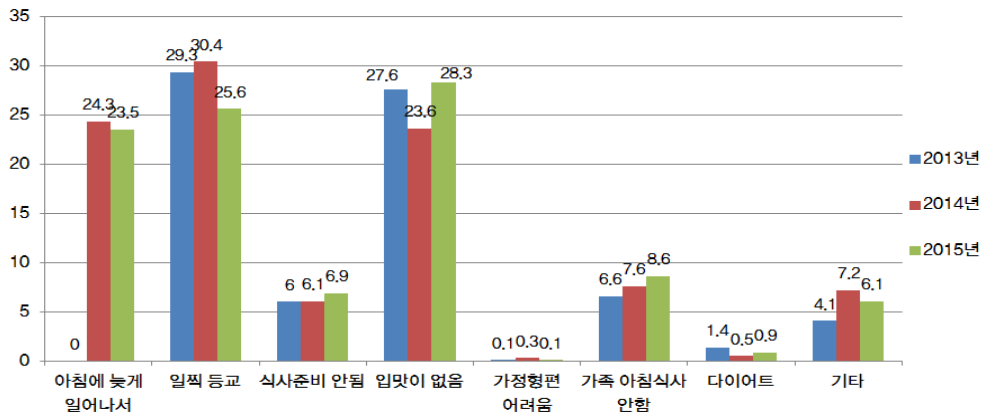
【그림 Ⅲ-5-8】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단위:%

중학생의 경우도 역시 입맛이 없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이전년도 조사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이유들은 이전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Ⅲ-5-9】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중학생)/ 단위:%

고등학생의 아침식사 결식 이유도 입맛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이전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외에도 식사준비가 안돼서, 또는 가족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아서 아침결식을 한다는 이유가 이전조사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5-10】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고등학생)/ 단위:%

③ 수면시간

표 III-5-33

수면시간

(단위 : %(명))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6시간 미만	6시간-7시간 미만	7시간-8시간 미만	8시간-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수면시간	전체(N)
전체		4.1	12.9	20.6	26.0	22.1	14.2	7시 17분	100.0(10,434)
성별	남자	3.5	11.2	18.9	26.1	24.8	15.4	7시 24분	100.0(5,439)
	여자	4.8	14.8	22.4	25.9	19.1	13.0	7시 10분	100.0(4,996)
학교 유형	초등학교	0.2	0.6	3.3	13.8	37.7	44.3	8시 39분	100.0(2,928)
	중학교	1.1	6.6	18.1	41.6	28.0	4.6	7시 23분	100.0(3,625)
	일반/특목/자율고	10.9	31.5	36.1	17.5	3.7	0.4	6시 5분	100.0(3,166)
	특성화고	5.7	12.5	35.4	34.7	10.1	1.6	6시 40분	100.0(71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1	13.1	20.2	25.8	22.4	14.5	7시 18분	100.0(9,411)
	한부모가정	5.1	11.3	26.2	27.2	19.0	11.2	7시 8분	100.0(864)
	조손가정	2.8	8.1	14.3	27.5	24.5	22.8	7시 42분	100.0(98)
	기타	2.0	9.3	21.7	35.7	24.3	7.0	7시 17분	100.0(61)
경제적 수준	상	3.7	10.8	17.6	24.4	25.3	18.2	7시 30분	100.0(5,372)
	중	3.5	13.7	22.4	28.3	20.1	11.9	7시 12분	100.0(3,735)
	하	7.8	19.2	27.8	25.9	14.6	4.8	6시 43분	100.0(1,321)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학교 등교 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조사한 결과로부터 산출되었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은 전체적으로 평균 7시간 17분의 수면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7시간 24분, 여자는 7시간 10분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이 14분 길었다.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39분으로, 9시간 수면시간을 가진 아동이 44.3%, 8시간에서 9시간은 37.7%여서 대부분의 아동이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23분이었으며, 조사대상의 약 70%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5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특히 6시간미만 수면을 취한다는 응답이 42.4%였으며, 5시간 미만인 경우도 10.9%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40분이었으며, 6시간 미만인 경우는 18.2%였다.

가족유형에 따른 수면시간을 보면, 양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은 평균적으로 7시간 18분의 수면을 취하는 것에 비해, 한부모가정에서는 7시간 8분이었으며, 조손가정은 훨씬 많은 7시간 42분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수면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7시간 30분, ‘중’정도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7시간 12분, 그리고 ‘하’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6시간 43분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5-34>와 같다. 최근 3개년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수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에는 7시간 6분, 2014년에는 7시간 8분, 그리고 2015년에는 7시간 17분의 평균 수면시간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학교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초등학교는 20분, 중학생은 11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38분, 그리고 특성화고는 29분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4 평균 수면시간 연도별 추이(학교유형별)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특목/자율고	특성화고
2013	7시 6분	8시 19분	7시 12분	5시 27분	6시 11분
2014	7시 8분	8시 29분	7시 20분	5시 46분	6시 24분
2015	7시 17분	8시 39분	7시 23분	6시 5분	6시 40분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수면부족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과반수정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표 Ⅲ-5-35>). 특히 일반/특목/자율고 재학 청소년에게서는 69.1%로 나타나 수면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 학생 59.9%, 중학생 48.4%, 초등학교 29.4%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수면부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상: 44.2%, 중: 53.9%, 하: 63.6%).

표 III-5-35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전체		50.1	49.9	100.0(10,444)	-
학교 유형	초등학교	29.4	70.6	100.0(2,935)	994.392***
	중학교	48.4	51.6	100.0(3,624)	
	일반/특목/자율고	69.1	30.9	100.0(3,169)	
	특성화고	59.9	40.1	100.0(716)	
	양부모가정	49.9	50.1	100.0(9,421)	
가족 유형	한부모가정	53.6	46.4	100.0(863)	8.153*
	조손가정	42.4	57.6	100.0(98)	
	기타	41.9	58.1	100.0(61)	
	상	44.2	55.8	100.0(5,376)	193.955***
경제적 수준	중	53.9	46.1	100.0(3,741)	
	하	63.6	36.4	100.0(1,320)	

* $p<.05$, *** $p<.001$.

수면이 부족한 첫 번째 이유는, 학원/과외가 20.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가정학습이 17.1%, 야간자율학습이 12.8%여서 학업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넘는 50.8%로 나타났다. 이외의 수면부족 이유로는 드라마/영화 시청, 음악청취와 채팅/문자 메시지 사용 등이 각각 14.7%, 14.6%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게임 때문이라는 응답은 10%수준이었다.

학교유형별로 수면부족 이유를 보면, 초등학생은 학원/과외(26.8%),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21.8%)가 주된 이유였으며, 중학생은 학원/과외(25.6%), 채팅/문자메시지(20.5%)를,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26.5%), 가정학습(19.0%), 특성화고 학생은 채팅/문자 메시지(26.3%),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19.8%)를 주된 이유로 응답했다.

가족유형별로 수면부족 이유를 보면, 양부모가정의 응답자들은 학원/과외(21.6%)를,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응답자는 채팅/문자 메시지(각각 18.1%, 18.5%)가 가장 많았는데, 이외에 게임, 학원/과외,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학원/과외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상’인 응답자는 학원/과외(23.4%), 가정학습(21.2%), ‘중’인 응답자는 학원/과외(20.9%),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15.7%), ‘하’인 응답자는 채팅/문자 메시지(16.9%), 야간자율학습(16.6%)이 주요 수면부족 이유로 나타났다.

표 Ⅲ-5-36 수면부족 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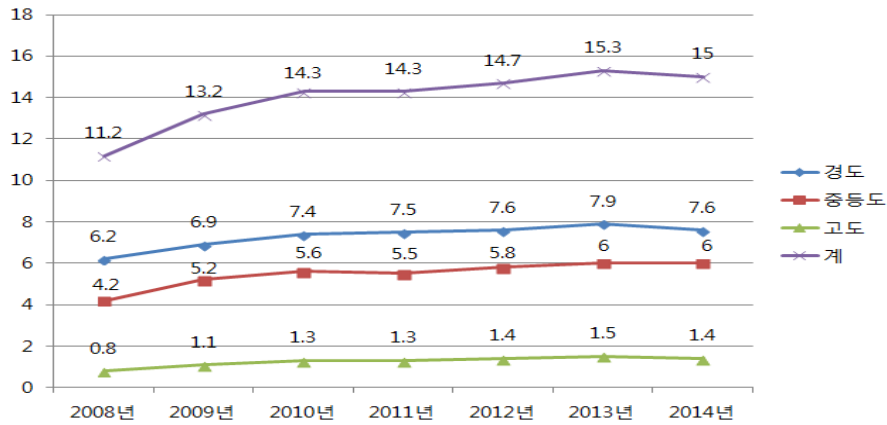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게임	채팅/ 문자 메시지	인터넷 성인 사이트 성인물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12.8	20.9	17.1	10.0	14.6	0.6	14.7	9.3	100.0(5,225)
성별	남자	15.0	20.6	14.4	15.3	10.4	1.1	13.2	9.9	100.0(2,451)
	여자	10.8	21.2	19.5	5.3	18.3	0.3	15.9	8.8	100.0(2,774)
학교 유형	초등학교	0.0	26.8	20.5	14.8	4.1	1.6	21.8	10.3	100.0(859)
	중학교	3.2	25.6	15.6	11.1	20.5	0.6	16.0	7.4	100.0(1,749)
	일반/특목/자율고	26.5	17.8	19.0	5.8	11.7	0.4	9.8	8.9	100.0(2,189)
	특성화고	7.1	5.9	6.9	16.9	26.3	0.1	19.8	17.0	100.0(42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8	21.6	18.0	9.4	14.3	0.6	14.6	8.8	100.0(4,696)
	한부모가정	12.3	14.8	10.3	14.4	18.1	0.7	15.5	13.9	100.0(462)
	조손가정	10.7	16.7	7.5	17.3	18.5	2.6	14.3	12.4	100.0(42)
	기타	18.9	20.8	4.0	21.9	10.8	0.0	16.1	7.6	100.0(26)
경제적 수준	상	12.0	23.4	21.2	9.3	12.2	0.7	13.7	7.5	100.0(2,371)
	중	12.1	20.9	14.3	10.0	16.5	0.5	15.7	9.9	100.0(2,014)
	하	16.6	13.8	12.3	11.9	16.9	0.6	14.7	13.1	100.0(837)

④ 비만율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그동안 다소 상승세였으나 2013년을 정점으로 하여 2014년에는 정체상태이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Ⅲ-5-11】). 그러나 교육부의 최근자료에 따르면(교육부, 2015d),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비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년대비 경도비만율과 고도비만율은 0.1~0.3%p 감소하였고, 중등도 비만율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4년을 기준으로 성별과 교급별로 보면(<표 Ⅲ-5-37>), 전체적으로 남학생의 비만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는데, 특히 초등학생에게서 그 차이가 컸다. 경도비만율은 초등학생 남학생과 고등학생 여학생에게서 모두 8.4%로 가장 높았고, 중등도 비만과 고도비만율은 고등학교 남학생이 각각 7.4%와 2.5%로 가장 높았다. 건강에 가장 해로운 고도비만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입시준비로 인한 운동부족과 불규칙한 식사패턴에 따른 것일 수 있어 심도 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출처: 교육부(2015d), '14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7, p.13 재편집

【그림 III-5-II】 비만을 추이(2008년~2014년)/ 단위(%)

표 III-5-37 최근 5년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을 (단위 : %)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2008			88.8	6.2	4.2	0.8	11.2
2009			86.8	6.9	5.2	1.1	13.2
2010			85.8	7.4	5.6	1.3	14.3
2011			85.7	7.5	5.5	1.3	14.3
2012			85.3	7.6	5.8	1.4	14.7
2013			84.7	7.9	6.0	1.5	15.3
2014	전체		85.0	7.6	6.0	1.4	15.0
	초등학생	전체	86.2	7.5	5.4	0.9	13.8
		남학생	84.1	8.4	6.4	1.1	15.9
		여학생	88.5	6.5	4.3	0.7	11.5
	중학생	전체	85.3	7.3	5.9	1.4	14.7
		남학생	84.2	7.7	6.5	1.6	15.8
		여학생	86.6	6.9	5.3	1.3	13.5
	고등학생	전체	85.0	7.6	6.0	1.4	15.0
		남학생	82.2	7.9	7.4	2.5	17.8
		여학생	83.1	8.4	6.4	2.1	16.9

* 출처: 교육부(2015d), '14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7, p.13 재편집.

교육과학기술부(2012), '12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보도자료,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10501/ko/board/view.do?bbsId=348&boardSeq=51593>에서 2014년 8월 1일 인출.

* 주: 1) 측정 학생의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에 대해서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하여 경도비만(20% 이상~30% 미만), 중등도 비만(30% 이상~50% 미만), 고도비만(50% 이상)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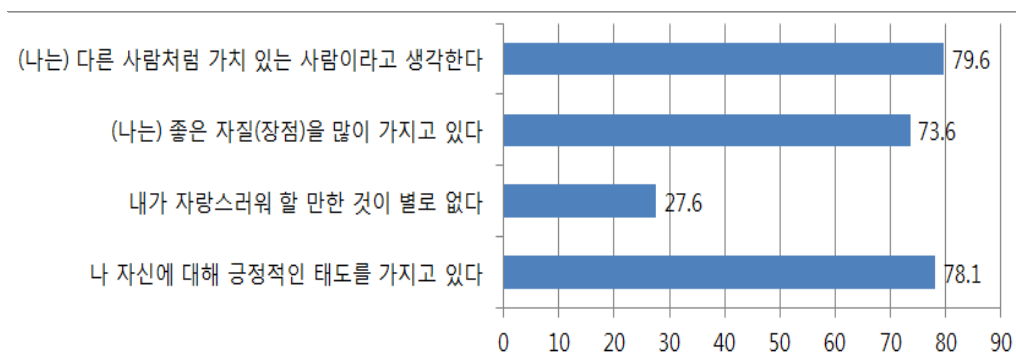
2) 비만도(%) = (측정체중-표준체중)/표준체중×100

3) 표준체중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신체발육 표준치의 성별 표준체중 사용

(3) 정신적 건강

① 자아존중감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정신적인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후 논의될 우울증, 행복감, 그리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도 등과도 매우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먼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네 가지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7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그런편이다 50.5%, 매우 그렇다 29.1%),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73.6%(그런편이다 49.2%, 매우 그렇다 24.4%),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의 부정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27.6%(그런편이다 24.6%, 매우 그렇다 3.0%),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78.1%(그런편이다 50.7%, 매우 그렇다 27.4%)로 나타났다.



주: ‘그런편이다’와 ‘매우그렇다’의 합친 비율(%)

【그림 Ⅲ-5-12】 자아존중감 항목별 비교

자아존중감의 각 항목별로 배경변인별 차이를 긍정적인 응답(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4가지 항목 모두에서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항목에 대해서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 81.2%, 일반/특목/자율교 학생 81.4%로 거의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76%, 특성화고 학생 78.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80.4%였으나, 조손가정은 69.6%로 가장 낮았다.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인 응답자는 87%였으나, ‘하’인 응답자는 69.3%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상’인 응답자는 84.2%였지만,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70.6%로 응답해 그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항목은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의 긍정적인 응답이 80.4%였으나, 특성화고는 66.1%로 가장 낮았으며,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이 74.5%로 그 중 높았고, 한부모가정은 65.5%로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는데, 학업성적이 ‘상’인 청소년은 84.8%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에 비해, ‘하’인 청소년은 58.3%로 나타나 차이가 매우 컸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은 81.4%, 중간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67.7%, ‘하’로 생각하는 청소년 58.6%의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내가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부정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가 15.6%(매우 그렇다, 그런편이다)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35.5%, 특성화고는 34.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부모가정에서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이 낮게 나타나 26.7%정도였고, 한부모가정에서는 35.8%, 조손가정에서는 34.3%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이 낮게 나타나 ‘상’인 응답자는 16.4%에 불과했으나, ‘하’인 응답자는 44.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상’으로 경제적 수준을 보고 있는 청소년의 응답은 19.3%였으나, ‘하’로 응답한 청소년은 44.3%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을(매우 그렇다, 그런편이다) 살펴보면,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80.4%로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 학생이 71.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에서 78.7%로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고, 조손가정에서 가장 낮은 67.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업성적이 ‘상’인 청소년은 85.1%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인 청소년은 67.2%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상’인 청소년은 83.7%, ‘하’인 청소년은 67.1%로 나타나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모두 낮을수록 긍정적인 응답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8

자아존중감

(단위 : %(명))

문항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3.03(.82)	6.0	14.4	50.5	29.1	100.0(10,438)	—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2(1.02)	13.5	10.6	36.5	39.5	100.0(2,935)	758.615***
		중학교	3.05(.75)	3.7	15.2	54.1	27.1	100.0(3,622)	
		일반/특목/자율고	3.03(.70)	2.2	16.4	57.5	23.9	100.0(3,165)	
		특성화고	2.96(.72)	3.4	17.6	58.6	20.3	100.0(7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4(.82)	5.8	13.8	50.7	29.7	100.0(9,416)	48.586***
		한부모가정	2.89(.84)	6.8	20.8	48.8	23.6	100.0(863)	
		조손가정	2.86(.93)	10.2	20.2	43.4	26.2	100.0(97)	
		기타	2.91(.91)	9.4	17.5	45.7	27.4	100.0(61)	
	학업 성적	상	3.24(.81)	5.5	7.6	44.8	42.2	100.0(3,396)	671.065***
		중	2.99(.80)	6.3	13.8	54.1	25.8	100.0(4,439)	
		하	2.81(.79)	6.0	24.7	51.9	17.4	100.0(2,572)	
	경제적 수준	상	3.14(.84)	6.7	9.2	48.1	36.1	100.0(5,373)	460.215***
		중	2.94(.79)	5.5	18.2	53.2	23.1	100.0(3,739)	
		하	2.84(.76)	4.4	25.1	52.5	18.1	100.0(1,319)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2.94(.80)	4.4	22.0	49.2	24.4	100.0(10,427)	—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9(.86)	6.5	13.1	45.4	35.0	100.0(2,927)	430.987***
		중학교	2.90(.78)	4.3	23.0	50.9	21.7	100.0(3,618)	
		일반/특목/자율고	2.87(.74)	2.7	27.2	50.9	19.2	100.0(3,167)	
		특성화고	2.80(.76)	3.4	30.5	48.7	17.4	100.0(7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5(.79)	4.2	21.4	49.5	25.0	100.0(9,405)	47.148***
		한부모가정	2.77(.81)	6.4	28.1	47.7	17.8	100.0(863)	
		조손가정	2.90(.87)	6.9	22.2	45.2	25.8	100.0(98)	
		기타	2.86(.88)	6.2	27.6	40.1	26.0	100.0(61)	
	학업 성적	상	3.20(.77)	3.4	11.8	46.7	38.1	100.0(3,391)	854.065***
		중	2.90(.76)	3.9	22.3	53.6	20.3	100.0(4,436)	
		하	2.65(.79)	6.6	35.1	45.1	13.2	100.0(2,570)	
	경제적 수준	상	3.10(.77)	3.5	15.1	49.7	31.7	100.0(5,364)	551.858***
		중	2.80(.78)	5.2	27.1	50.3	17.4	100.0(3,736)	
		하	2.67(.79)	5.6	35.8	44.2	14.4	100.0(1,320)	
내가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전체		3.00(.82)	30.8	41.6	24.6	3.0	100.0(10,419)	—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2(.80)	50.4	34.0	12.8	2.8	100.0(2,921)	896.267***
		중학교	2.95(.81)	27.6	43.4	25.7	3.3	100.0(3,619)	
		일반/특목/자율고	2.82(.78)	20.1	44.4	32.7	2.8	100.0(3,165)	
		특성화고	2.77(.71)	14.0	51.5	31.9	2.6	100.0(71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2(.82)	31.4	41.9	23.9	2.8	100.0(9,398)	49.320***
		한부모가정	2.83(.84)	23.6	40.6	31.1	4.7	100.0(861)	
		조손가정	2.95(.90)	33.5	32.1	30.1	4.2	100.0(98)	
		기타	3.03(.86)	36.1	32.4	29.9	1.6	100.0(61)	
	학업 성적	상	3.26(.77)	44.7	39.0	14.5	1.9	100.0(3,390)	865.410***
		중	3.00(.78)	28.2	45.6	24.1	2.2	100.0(4,431)	
		하	2.66(.82)	16.7	38.5	39.1	5.8	100.0(2,566)	
	경제적 수준	상	3.19(.78)	39.9	40.8	17.5	1.8	100.0(5,361)	656.295***
		중	2.87(.81)	23.6	42.8	30.1	3.5	100.0(3,735)	
		하	2.63(.80)	14.0	41.7	38.0	6.3	100.0(1,316)	

문항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전체	3.02(.77)	3.3	18.6	50.7	27.4	100.0(10,419)	—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2(.84)	5.2	14.3	43.4	37.0	100.0(2,925)	363.197***
		중학교	3.05(.75)	3.0	16.7	53.0	27.4	100.0(3,617)	
		일반/특목/자율고	2.93(.72)	2.3	22.9	54.6	20.2	100.0(3,160)	
		특성화고	2.91(.72)	1.3	26.9	51.5	20.2	100.0(7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4(.77)	3.2	18.1	50.7	28.0	100.0(9,398)	35.741***
		한부모가정	2.90(.78)	4.1	23.5	50.9	21.5	100.0(861)	
		조손가정	2.87(.90)	7.5	24.6	41.2	26.7	100.0(98)	
		기타	2.94(.76)	3.4	21.4	52.7	22.5	100.0(61)	
	학업 성적	상	3.20(.76)	3.0	11.9	47.6	37.5	100.0(3,385)	457.026***
		중	3.01(.74)	2.9	18.0	54.5	24.5	100.0(4,433)	
		하	2.82(.79)	4.4	28.5	48.2	19.0	100.0(2,570)	
	경제적 수준	상	3.15(.76)	3.1	13.2	49.5	34.2	100.0(5,362)	393.023***
		중	2.93(.75)	3.2	22.8	52.3	21.7	100.0(3,732)	
		하	2.79(.76)	4.3	28.6	51.0	16.1	100.0(1,317)	

*** $p < .001$.

이 자아존중감 측정 척도들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 alpha값이 .796으로 양호하게 나타나, 이 척도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Ⅲ-5-39 자아존중감 하위척도 신뢰도

하위척도	하위척도별 내용	Cronbach's α
자아존중감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96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앞서 항목별 교차분석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평균값 역시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차분석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성별차이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생이 가장 높은 3.39점, 특성화고는 가장 낮은 3.11점을 나타냈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이 3.26점으로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 평균값을 보였으며, 한부모가정은 3.10점이어서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40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자아존중감		
		Mean	SD	t/F(Scheffé)
전체		3.25	.63	—
성별	남	3.27	.64	3.149**
	여	3.23	.62	
학교유형	초등학교	3.39	.65	82.314*** (ab, ac, ad, bc, bd, cd)
	중학교	3.24	.63	
	일반/특목/자율고	3.16	.61	
	특성화고	3.11	.5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3.26	.63	19.203*** (ef)
	한부모가정	3.10	.64	
	조손가정	3.14	.70	
	기타	3.19	.66	
학업성적	상	3.47	.61	486.844*** (ij, ik, jk)
	중	3.23	.58	
	하	2.98	.63	
경제적 수준	상	3.39	.61	335.357*** (lm, ln, mn)
	중	3.13	.61	
	하	2.98	.63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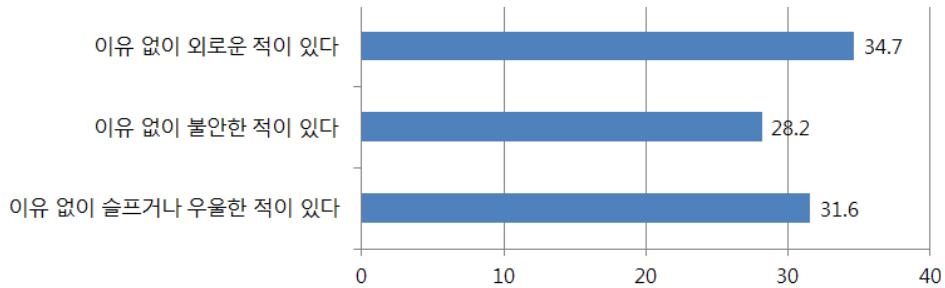
* 주: 학교유형(a=초등학교, b=중학교, c=일반/특목/자율, d=특성화고), 가족유형(e=양부모가정, f=한부모가정, g=조손가정, h=기타), 학업성적(i=상, j=중, k=하), 경제적 수준(l=상, m=중, n=하)

② 우울증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정도를 세가지 항목에 대해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우울증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한 ‘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비율은 34.7%였으며, ‘이유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28.2%,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31.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울증 관련 항목들은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긍정응답(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유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에 대해 남자(27.2%)보다 여자응답자의 응답률이 42.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17.2%인데 비해, 일반/특성/자율고 학생은 48%, 특성화고 학생은 거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매우 컸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 가정이 42.2%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이유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상: 28.4%, 중: 37.4%, 하: 52.8%).



*주: '그런편이다'와 '매우그렇다'의 합친 비율(%)

【그림 Ⅲ-5-13】우울정도 항목별 비교

표 Ⅲ-5-41

우울증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전체		2.03(.93)	36.7	28.6	29.4	5.3	100.0(10,440)	—
	성별	남자	1.87(.90)	43.9	28.9	23.5	3.7	100.0(5,441)	350.732***
		여자	2.21(.94)	28.8	28.3	35.8	7.0	100.0(4,99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59(.86)	61.5	21.3	13.6	3.6	100.0(2,934)	1334.888***
		중학교	2.05(.91)	34.3	31.5	29.2	5.0	100.0(3,624)	
		일반/특목/자율고	2.35(.88)	20.5	31.6	41.0	7.0	100.0(3,166)	
		특성화고	2.37(.87)	19.6	30.5	43.4	6.5	100.0(7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2(.93)	37.2	28.7	29.0	5.1	100.0(9,418)	36.953***
		한부모가정	2.19(.95)	30.5	27.3	34.9	7.3	100.0(864)	
		조손가정	1.87(.89)	41.0	36.2	17.2	5.6	100.0(97)	
		기타	1.97(.95)	43.0	19.5	34.9	2.5	100.0(61)	
	경제적 수준	상	1.88(.92)	44.8	26.8	24.0	4.4	100.0(5,372)	463.653***
		중	2.11(.92)	31.8	30.8	31.9	5.5	100.0(3,740)	
		하	2.44(.88)	17.5	29.7	44.1	8.7	100.0(1,321)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전체		1.90(.91)	42.5	29.3	23.7	4.5	100.0(10,441)	—
	성별	남자	1.77(.88)	48.5	29.0	18.9	3.5	100.0(5,442)	230.888***
		여자	2.04(.93)	35.9	29.6	29.0	5.5	100.0(4,99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9(.79)	67.0	19.5	11.0	2.5	100.0(2,935)	1204.370***
		중학교	1.92(.89)	40.0	32.0	23.9	4.1	100.0(3,624)	
		일반/특목/자율고	2.21(.90)	25.4	34.5	33.4	6.6	100.0(3,166)	
		특성화고	2.12(.90)	30.1	32.6	32.4	4.8	100.0(71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9(.92)	42.8	29.4	23.4	4.3	100.0(9,418)	15.617
		한부모가정	2.00(.94)	38.4	28.9	26.6	6.0	100.0(864)	
		조손가정	1.93(.94)	43.1	25.3	27.3	4.3	100.0(98)	
		기타	1.92(.96)	45.5	21.0	29.4	4.2	100.0(61)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경제적 수준	상	1.77(.89)	50.0	26.4	19.8	3.8	100.0(5,372)	350.927***
		중	1.97(.90)	37.8	32.0	25.9	4.4	100.0(3,741)	
		하	2.24(.91)	25.0	33.7	33.7	7.5	100.0(1,321)	
	전체		1.95(.95)	41.8	26.6	26.2	5.4	100.0(10,435)	-
	성별	남자	1.75(.87)	50.4	27.7	18.6	3.3	100.0(5,439)	
		여자	2.17(.97)	32.4	25.5	34.3	7.8	100.0(4,996)	547.564***
	학교 유형	초등학교	1.53(.84)	66.4	18.2	11.6	3.7	100.0(2,934)	1289.215***
		중학교	1.95(.91)	39.6	30.2	25.6	4.6	100.0(3,622)	
		일반/특목/자율고	2.29(.92)	24.5	29.7	37.9	7.9	100.0(3,164)	
		특성화고	2.19(.91)	28.1	29.8	36.6	5.4	100.0(71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4(.94)	42.2	26.7	25.8	5.2	100.0(9,412)	26.483**
		한부모가정	2.10(.99)	36.3	25.7	30.0	8.1	100.0(864)	
		조손가정	1.85(.92)	46.2	27.0	22.5	4.3	100.0(98)	
		기타	1.86(.90)	45.3	25.4	26.8	2.5	100.0(61)	
	경제적 수준	상	1.81(.92)	49.7	24.1	21.8	4.4	100.0(5,367)	429.133***
		중	2.02(.94)	37.3	29.5	27.5	5.7	100.0(3,740)	
		하	2.36(.92)	22.1	29.0	39.9	9.0	100.0(1,321)	

** $p < .01$, *** $p < .001$.

‘이유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을 배경변인별로 보면, 역시 남자(22.4%)보다 여자응답자의 응답(34.5%)이 더 높았으며, 초등학생이 13.5%인데 비해,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40%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인 청소년이 23.6%로 낮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하’인 청소년은 41.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유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앞선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여자청소년의 응답률이 42.1%로 남자의 21.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은 15.3%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45.8%로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이유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상: 26.2%, 중: 33.2%, 하: 48.9%).

우울증과 관련한 하위항목들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 alpha값이 .883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우울증 평균값을 기준으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의 평균값이 2.14점으로 남자청소년의 1.80점보다 훨씬 높았고, 초등학생이 1.54점의 평균값을 보인 것이 비해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2.28점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과 조손가

정이 각각 1.95점과 1.88점의 평균값을 보인 것이 비해 한부모가정에서는 2.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우울증을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상’인 청소년은 1.85점인데 비해, ‘하’인 청소년의 평균점은 2.18점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상’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1.82점의 평균값을 보였으나, ‘하’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2.35점으로 훨씬 높은 우울증을 나타냈다.

표 III-5-42 우울증의 하위척도 신뢰도

하위척도	하위척도별 내용	Cronbach's α
우울증	이유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883
	이유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표 III-5-43 우울증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우울증		
		Mean	SD	t/F(Scheffé)
전체		1.96	.83	-
성별	남	1.80	.79	-21.346***
	여	2.14	.85	
학교유형	초등학교	1.54	.73	491.295*** (ab, ac, ad, bc, bd)
	중학교	1.97	.81	
	일반/특목/자율고	2.28	.80	
	특성화고	2.23	.80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1.95	.83	8.444*** (ef)
	한부모가정	2.10	.86	
	조손가정	1.88	.83	
	기타	1.92	.84	
학업성적	상	1.85	.83	129.231*** (ij, ik, jk)
	중	1.93	.82	
	하	2.18	.84	
경제적수준	상	1.82	.82	238.383*** (lm, ln, mn)
	중	2.03	.82	
	하	2.35	.79	

*** $p < .001$.

* 주: 학교유형(a=초등학교, b=중학교, c=일반/특목/자율, d=특성화고), 가족유형(e=양부모가정, f=한부모가정, g=조손가정, h=기타), 학업성적(i=상, j=중, k=하), 경제적 수준(l=상, m=중, n=하)

③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에 대한 최근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보건복지부, 2014),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생은 32.3%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1학년생은 36.5%, 고등학교 3학년생은 44.5%로 나타나 스트레스 정도가 교급과 관련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정도는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에 중학교 1학년생은 40.1%였으나, 2014년에는 7.8%p 감소한 32.3%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생은 2009년에 53.4%였던 스트레스 인지율이 2014년에는 44.5%로 8.9%p 감소하였다.

표 Ⅲ-5-44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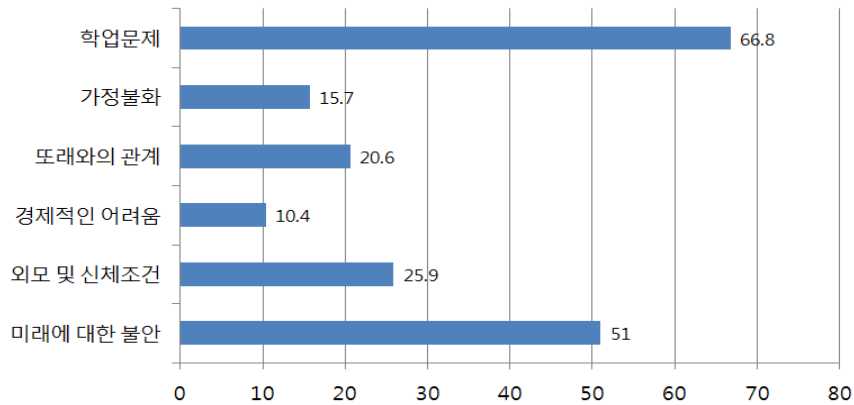
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40.1	39.4	40.5	42.3	44.4	53.4
2010	39.9	40.7	41.7	42.8	44.8	53.2
2011	36.9	39.2	40.8	41.1	43.5	50.5
2012	37.0	38.8	40.7	43.7	44.2	46.3
2013	35.7	40.3	41.2	40.3	44.7	46.1
2014	32.3	32.7	35.1	36.5	39.9	44.5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스트레스 인지율.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67&vw_cd=MT_OTITLE&list_id=117_11758_0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_h=E1에서 2015년 9월 인출.

* 원자료: 보건복지부(201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주: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청소년의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 대한 본 연구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66.8%(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의 스트레스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51%로 나타났으며, 외모 및 신체조건이 25.9%, 또래와의 관계 20.6%, 가정불화 15.7%, 경제적인 어려움이 10.4%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 원인은 학교유형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45>).



* '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비율/ 단위: %

【그림 Ⅲ-5-14】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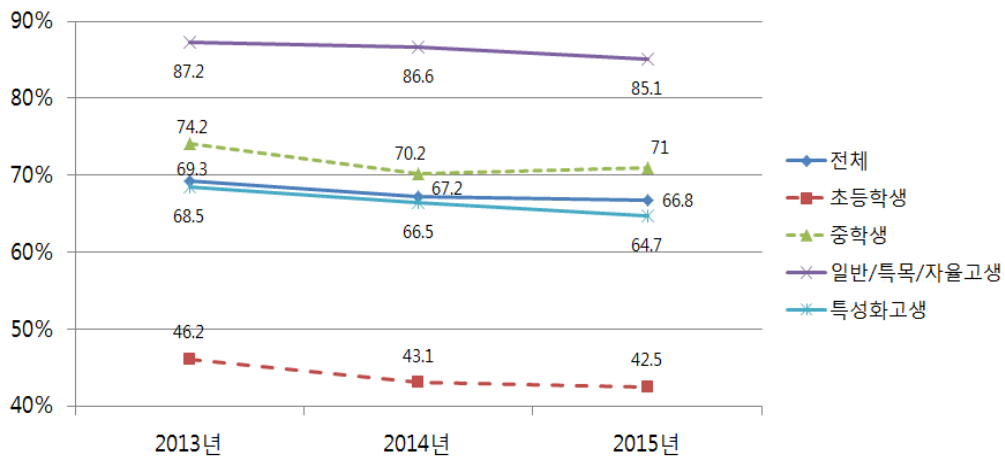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학업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에 대해 학교유형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긍정적인 응답(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보면,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85.1%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생 71%, 특성화고 64.7%, 초등학교 42.5%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원인으로서는 가정불화와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모두 특성화고 학생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가정불화에 대해서는 21.2%,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25.3%, 경제적인 어려움은 25.6%, 외모 및 신체조건으로는 37.3%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77.7%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 학생이 75%, 중학생이 52.1%로 나타났다.

표 Ⅲ-5-45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학교유형별)

(단위 : %(명))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업 문제	전체	2.77(.95)	13.0	20.2	44.0	22.8	100.0(10,435)	1522.200***
	초등학교	2.28(.99)	26.6	30.9	30.6	11.9	100.0(2,935)	
	중학교	2.83(.88)	9.8	19.2	49.5	21.5	100.0(3,621)	
	일반/특목/자율고	3.17(.78)	4.4	10.5	49.2	35.9	100.0(3,165)	
	특성화고	2.69(.88)	11.6	23.7	48.4	16.3	100.0(714)	
가정 불화	전체	1.65(.81)	53.2	31.1	12.9	2.8	100.0(10,320)	166.619***
	초등학교	1.60(.84)	59.5	24.5	12.3	3.7	100.0(2,929)	
	중학교	1.62(.78)	54.4	31.6	11.8	2.2	100.0(3,537)	
	일반/특목/자율고	1.69(.79)	49.2	34.7	13.8	2.3	100.0(3,142)	
	특성화고	1.86(.84)	39.0	39.9	17.2	4.0	100.0(713)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또래와의 관계	전체	1.80(.85)	44.9	34.5	16.8	3.8	100.0(10,437)	277.746***
	초등학교	1.69(.89)	54.9	26.1	14.3	4.8	100.0(2,931)	
	중학교	1.77(.84)	45.9	34.8	15.7	3.6	100.0(3,622)	
	일반/특목/자율고	1.89(.83)	37.0	40.3	19.4	3.3	100.0(3,168)	
	특성화고	1.96(.84)	33.3	41.4	21.3	4.0	100.0(715)	
경제적인 어려움	전체	7.52(.71)	59.2	30.4	9.1	1.3	100.0(10,428)	767.951***
	초등학교	1.31(.60)	75.0	19.3	4.7	0.9	100.0(2,930)	
	중학교	1.48(.69)	61.4	30.3	7.0	1.3	100.0(3,617)	
	일반/특목/자율고	1.67(.74)	48.0	38.4	12.1	1.4	100.0(3,166)	
	특성화고	1.94(.80)	33.3	41.2	23.6	2.0	100.0(715)	
외모 및 신체 조건	전체	1.92(.87)	38.2	35.9	21.7	4.2	100.0(10,433)	932.290***
	초등학교	1.59(.83)	60.0	24.9	11.5	3.6	100.0(2,931)	
	중학교	1.97(.86)	34.3	38.8	22.5	4.4	100.0(3,620)	
	일반/특목/자율고	2.11(.84)	26.1	41.5	27.8	4.6	100.0(3,168)	
	특성화고	2.20(.82)	21.6	41.2	32.9	4.4	100.0(714)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전체	2.40(1.05)	27.2	21.8	34.8	16.2	100.0(10,433)	3367.182***
	초등학교	1.57(.83)	61.4	23.6	11.4	3.6	100.0(2,930)	
	중학교	2.44(.97)	21.3	26.7	38.9	13.2	100.0(3,621)	
	일반/특목/자율고	3.00(.85)	6.8	15.5	48.3	29.4	100.0(3,168)	
	특성화고	2.92(.85)	7.8	17.3	50.4	24.6	100.0(714)	

*** $p < .001$.

* '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비율/ 단위:%

【그림 Ⅲ-5-15】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학업문제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이 지난 3년간 학업문제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추이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소추세여서 2013년에는 69.3%, 2014년 67.2%, 2015년에는 66.8%로 적은 수치나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 일반/특목/자율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 모두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미세하게나마 감소하는 가운데 중학생의 학업문제 스트레스는 전년대비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6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 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성별	남	2.68	.98	1.65	.80	1.66	.80	1.52	.71	1.76	.83	2.30	1.05
	여	2.86	.91	1.66	.81	1.95	.89	1.53	.72	2.10	.89	2.50	1.05
	t	-9.693***		-.617		-17.375***		-.602		-20.266***		-9.685***	
학교 유형	초등학교	2.28	.99	1.60	.84	1.69	.89	1.31	.60	1.59	.83	1.57	.83
	중학교	2.83	.88	1.62	.78	1.77	.84	1.48	.69	1.97	.86	2.44	.97
	일반/특목/자율고	3.17	.78	1.69	.79	1.89	.83	1.67	.74	2.11	.84	3.00	.85
	특성화고	2.69	.88	1.86	.84	1.96	.84	1.94	.80	2.20	.82	2.92	.85
	F(Scheffé)	523.872*** (ab, ac, ad, bc, bd, cd)		24.582*** (ac, ad, bc, bd, cd)		38.341*** (ab, ac, ad, bc, bd, cd)		229.102*** (ab, ac, ad, bc, bd, cd)		234.397*** (ab, ac, ad, bc, bd)		1419.256*** (ab, ac, ad, bc, bd)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7	.94	1.63	.80	1.79	.85	1.49	.69	1.91	.87	2.39	1.05
	한부모가정	2.72	.95	1.90	.85	1.91	.87	1.83	.84	2.04	.90	2.56	1.06
	조손가정	2.59	1.06	1.79	.88	1.71	.75	1.71	.81	1.94	.90	2.30	1.07
	기타	2.46	.92	1.55	.74	1.69	.82	1.60	.81	1.87	.82	2.44	1.06
	F(Scheffé)	3.987		29.698*** (ef, fh)		6.442*** (ef)		62.560*** (ef, eg)		6.390*** (ef)		7.736*** (ef)	
학업 성적	상	2.62	1.01	1.56	.79	1.72	.85	1.39	.63	1.78	.84	2.21	1.05
	중	2.77	.90	1.64	.79	1.80	.83	1.51	.70	1.89	.85	2.36	1.03
	하	2.95	.90	1.81	.85	1.93	.88	1.72	.79	2.17	.91	2.74	1.01
	F(Scheffé)	88.890*** (ij, ik, jk)		70.071*** (ij, ik, jk)		44.886*** (ij, ik, jk)		166.690*** (ij, ik, jk)		157.890*** (ij, ik, jk)		199.940*** (ij, ik, jk)	
경제적 수준	상	2.66	.98	1.51	.75	1.69	.83	1.27	.52	1.77	.84	2.19	1.05
	중	2.82	.90	1.69	.79	1.86	.85	1.60	.67	1.99	.86	2.51	1.01
	하	3.03	.86	2.12	.86	2.04	.87	2.33	.84	2.33	.89	2.95	.93
	F(Scheffé)	90.926*** (lm, ln, mn)		319.787*** (lm, ln, mn)		109.393*** (lm, ln, mn)		1554.030*** (lm, ln, mn)		243.061*** (lm, ln, mn)		325.248*** (lm, ln, mn)	

***p<.001

* 주: 학교유형(a=초등학교, b=중학교, c=일반/특목/자율, d=특성화고), 가족유형(e=양부모가정, f=한부모가정, g=조손가정, h=기타), 학업성적(i=상, j=중, k=하), 경제적 수준(l=상, m=중, n=하)

아동·청소년의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배경변인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업문제는 여자청소년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 중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그리고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하’인 청소년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하위계층인 청소년도 학업문제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른 학교유형에서보다 특성화고 학생에게서, 그리고 다른 가족유형에서보다 한부모가정에서, 또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자청소년, 특성화고 학생, 한부모가정 청소년,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게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배경변인별 차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모 및 신체조건에 따른 스트레스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단,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는 성별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자청소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 한부모가정의 청소년,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하’인 청소년이 더 유의미한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스트레스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청소년, 학교유형 중에서는 특성화고 청소년(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더 스트레스 받음),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 그리고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스트레스 유형이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청소년보다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감을 보였다. 또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도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감을 나타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자아존중감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은 더 높은 우울감을 나타냈다. 또한 외모 및 신체조건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에게서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감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가정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집단이었고, 우울감이 가장 높은 집단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불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이었다.

표 III-5-47 스트레스에 따른 자아존중감, 우울증 차이

스트레스유형과 여부		자아존중감			우울감		
		Mean	SD	t	Mean	SD	t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¹⁾	3.53	.69	8.316***	1.34	.65	-15.470***
	그렇다 ²⁾	3.35	.58		1.70	.72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3.40	.63	22.151***	1.71	.79	-27.032***
	그렇다	3.11	.56		2.18	.77	
또래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3.43	.63	22.473**	1.59	.73	-34.533***
	그렇다	3.14	.55		2.15	.74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3.39	.63	24.835	1.72	.80	-31.558***
	그렇다	3.08	.55		2.25	.76	
외모 및 신체조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3.50	.64	23.826***	1.51	.71	-34.204***
	그렇다	3.18	.53		2.08	.74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3.51	.65	13.207***	1.39	.64	-23.415***
	그렇다	3.28	.57		1.84	.71	

***p<.001

* 주: 1)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④ 행복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의 현재 행복정도를 조사한 결과,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는 긍정응답이 각각 58.7%, 25.6%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84.3%의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의 긍정적인 응답(84.6%)이 남자청소년(83.9%)보다 다소 높았으며, 학교유형 중에서는 초등학생이 91.3%로 가장 높았고,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75.3%로 가장 낮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응답자가 88.3%의 긍정적인 행복감을 보였고, 한부모가정의 응답자는 77.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행복도를 보였다.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인 청소년의 89.6%가 긍정응답을 보인 것이 비해, ‘하’인 청소년은 74.5%수준이었으며, 경제적 수준을 ‘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89.8%가, 그리고 ‘하’인 응답자에게서는 67.1%만이 행복감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표 Ⅲ-5-48

현재 행복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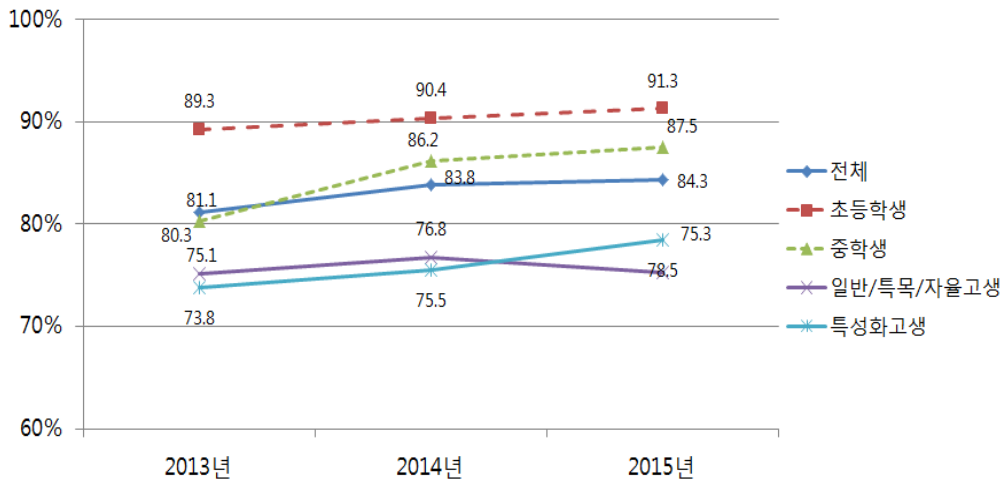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SD)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는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χ^2
전체		3.08(.68)	1.8	14.0	58.7	25.6	100.0(10,427)	—
성별	남자	3.10(.70)	2.1	13.9	56.2	27.7	100.0(5,435)	40.313***
	여자	3.06(.65)	1.4	14.0	61.4	23.2	100.0(4,992)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7(.67)	1.1	7.5	44.7	46.6	100.0(2,924)	1227.574***
	중학교	3.09(.62)	1.3	11.2	64.4	23.1	100.0(3,621)	
	일반/특목/자율고	2.84(.64)	2.6	22.0	63.9	11.4	100.0(3,167)	
	특성화고	2.90(.67)	3.1	18.4	63.8	14.7	100.0(71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0(.68)	1.7	13.4	58.6	26.3	100.0(9,403)	60.306***
	한부모가정	2.91(.69)	2.9	19.9	60.1	17.0	100.0(865)	
	조손가정	3.16(.66)	1.6	10.2	58.7	29.6	100.0(98)	
	기타	3.13(.64)	0.0	14.8	57.9	27.4	100.0(61)	
학업 성적	상	3.23(.66)	1.3	9.2	55.0	34.6	100.0(3,393)	459.554***
	중	3.09(.64)	1.2	12.9	61.5	24.4	100.0(4,432)	
	하	2.87(.70)	3.4	22.1	59.2	15.3	100.0(2,570)	
경제적 수준	상	3.23(.65)	1.1	9.2	55.4	34.4	100.0(5,371)	759.495***
	중	2.99(.65)	1.8	15.8	63.6	18.8	100.0(3,730)	
	하	2.72(.69)	4.5	28.4	58.1	9.0	100.0(1,318)	

*** $p < .001$.

현재 행복 정도에 대해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행복정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행복정도는 2013년 81.1%에서 2015년에는 84.3%로 다소 증가하였는데, 일반/특목/자율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 유형별로 미세한 수준에서 긍정응답이 증가하였다. 초등학생은 2013년의 89.3%에서 2015년 91.3%로 2%p, 중학생은 2013년 80.3%에서 2015년 87.5%로 약 7%p, 특성화고 학생은 2013년 73.8%에서 2015년 78.5%로 4.7%p가 증가하였다.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2013년 75.1%였으나, 2015년에는 75.3%로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위의 조사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행복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 중 31%가 학업부담 때문에, 23.4%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4%,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가 8.4%,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는 7.1% 순으로 나타났다.



* '행복한 편이다' 와 '매우 행복하다' 를 합친 비율/ 단위:%

【그림 III-5-16】 현재 행복 정도(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남자청소년의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여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유형 중에서는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의 경우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도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도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업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상: 35.6%, 중: 33.7%, 하: 21.2%),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20.8%, 중: 23.8%, 하: 26%)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Ⅲ-5-49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부담 때문에	가정이 화목 하지 않아서	친구 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전체(N)	χ^2
전체		31.0	7.1	8.4	3.5	6.3	23.4	14.0	6.3	100.0(1,606)	—
성별	남자	35.3	6.9	5.6	3.8	4.8	24.4	13.8	5.4	100.0(859)	38.505***
	여자	26.1	7.2	11.6	3.3	8.1	22.2	14.2	7.3	100.0(747)	
학교 유형	초등학교	28.7	11.1	16.3	5.1	7.0	5.9	19.4	6.5	100.0(250)	164.108***
	중학교	33.8	8.6	10.0	3.5	8.3	17.8	12.3	5.8	100.0(439)	
	일반/특목/자율고	34.7	4.7	4.8	2.5	5.1	30.4	12.0	5.8	100.0(765)	
	특성화고	8.2	7.6	8.4	6.5	6.3	33.2	20.4	9.5	100.0(1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5	6.3	7.8	2.8	6.4	23.6	14.5	6.0	100.0(1,391)	64.617***
	한부모가정	20.8	12.5	13.1	7.5	5.5	20.5	12.0	8.2	100.0(194)	
	조손가정	27.2	8.3	0.0	13.3	0.0	40.7	0.0	10.4	100.0(12)	
	기타	21.1	0.0	0.0	26.8	22.8	29.3	0.0	0.0	100.0(9)	
경제적 수준	상	35.6	3.9	9.4	0.3	6.7	20.8	15.8	7.5	100.0(541)	122.422***
	중	33.7	7.7	9.6	1.8	6.3	23.8	12.2	4.9	100.0(638)	
	하	21.2	10.1	5.2	10.2	6.0	26.0	14.4	6.8	100.0(426)	

*** $p<.001$.

⑤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

이 지표 항목은 2015년에 신규로 포함된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수준(삶의 만족도)의 상대적인 위치를 국제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국제 비교한 유니세프에서는 주관적 삶의 복지 수준(subjective well-being)의 중요 요소는 삶의 만족도라고 정의하고 있다(Bradshaw, Martorano, Natali, & Neubourg, 2013: 10). 이 조사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용하는 삶의 만족도 척도(0점~10점)를 사용하였는데,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9세~17세)의 평균은 6.10점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미숙, 전진아 외, 2013).³⁵⁾ 본 인권실태조사결과 10점 만점에서 6.75점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만 9세부터 조사되지만, 인권실태연구는 만 10세(초등학교 4학년)부터 조사되고, 또한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 2013년의 조사결과로서 2015년의 조사결과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35) 영문표현으로 0점은 'worst possible life', 10점은 'best possible life'로서 국가마다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김미숙, 전진아 외, 2013)에서 "현재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 개념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문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표 III-5-50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10점 평균	SD	전체(N)
전체		6.75	2.06	10,377
성별	남자	6.88	2.07	5,405
	여자	6.61	2.03	4,972
학교유형	초등학교	7.46	2.06	2,897
	중학교	6.77	1.97	3,613
	일반/특목/자율고	6.24	1.97	3,152
	특성화고	5.96	1.96	715
지역규모	대도시	6.78	2.07	4,526
	중소도시	6.71	2.05	4,252
	읍면지역	6.75	2.03	1,600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6.82	2.03	9,364
	한부모가정	6.02	2.15	859
	조손가정	6.50	2.24	97
	기타	6.39	2.02	57
경제적수준	상	7.47	1.83	5,341
	중	6.23	1.91	3,716
	하	5.27	2.10	1,315

전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세부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자청소년은 6.88점으로 평균인 6.75점보다 다소 높았으나, 여자청소년은 6.6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7.46점, 중학생이 6.77점,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6.24점, 특성화고는 5.96점으로, 고등학생은 모두 평균점수보다 낮았는데, 특히 특성화고 학생의 점수는 6점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6.78점, 읍면지역은 6.75점이었고 중소도시가 6.7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6.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손가정 6.50점, 기타가정 6.39점이었고, 한부모가정에서는 6.0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의 응답은 7.47점, 중간인 경우는 6.23점으로 나타났으나, ‘하’인 경우에는 5.27점으로 전체 배경변인별 차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WHO 유럽사무소에서는 4년마다 학령기 연령대의 아동·청소년(11세, 13세, 15세)의 건강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HBSC(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³⁶⁾.

36) HBSC(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http://www.hbsc.org/> 2015년 11월 10일 검색. HBSC조사는 학령기 연령의 건강행태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로써,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09/2010년에 수집된 것이다. 데이터에 포함된 국가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30여개국이며, 현재 14개 국가가 더 포함되어 44개 국가가 포함됨(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음)

<표 Ⅲ-5-51>의 HBSC 조사에서는 삶의 수준(삶의 만족도) 10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6점 이상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하게 본 인권실태연구의 조사대상인 11세(2004년 출생), 13세(2002년 출생), 15세(2000년 출생) 아동·청소년의 데이터만 별도로 선택하여 6점 이상 응답한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연령대의 남자, 여자 아동·청소년 모두 HBSC 조사에 포함된 30개국³⁷⁾의 평균적인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BSC 조사의 데이터는 5-6년 전에 취합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조사 결과와는 동일한 맥락에서 비교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수준과 만족도가 다른 발전된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표 Ⅲ-5-51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한국과 WHO의 HBSC와의 비교) (단위 : %(명))

구분		11세	13세	15세
2015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전체	79	71	70
	남자	78	77	72
	여자	80	66	68
WHO의 HBSC* (2009/2010 HBSC data)	전체	88	85	83
	남자	88	85	83
	여자	88	83	79

* 주: 출처는 아래의 2013년의 유니세프 보고서(Bradshaw, Martorano, Natali, & Neubourg, 2013: 11)이며, 해당 보고서 역시 HBSC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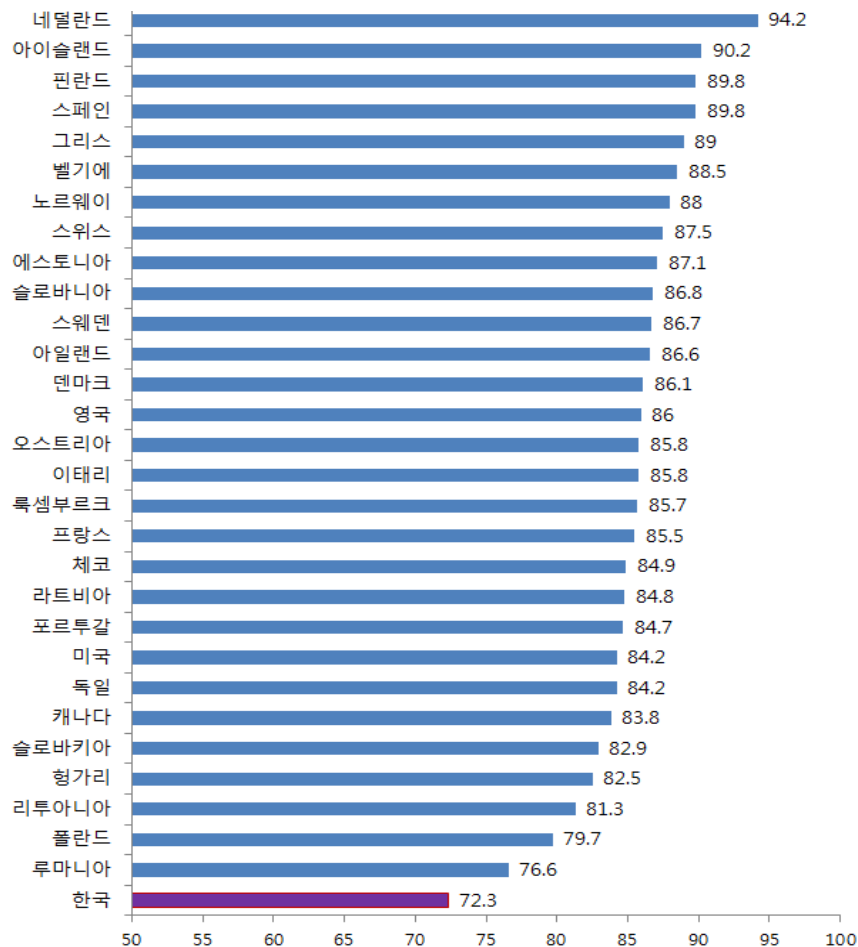
* 출처: Bradshaw, J., B. Martorano, L. Natali, and C. de Neubourg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orking Paper 2013-03, UNICEF Office of Research, Florence, p. 11

* 원자료: Currie C, Zanotti C, Morgan A (2012).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well-being among young people.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9/2010 survey. Copenhagen: World Health Organization.

유니세프에서는 HBSC 조사를 기초로 하여, 11세, 13세,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 데이터 중 10점 기준에서 중간점 이상을 응답한 비율을 의미하는데(Bradshaw, et al., 2013),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니세프 자료에서 네덜란드와 아이슬랜드의 경우는 90%가 넘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의 경우도 우리의 72.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Ⅲ-5-17] 참조).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동일하게 11세, 13세, 15세 아동의 데이터 중 6점 이상 응답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60.3%으로 나타나 30개국 중 최하위를 나타냈는데(김미숙, 전진아 외, 2013), 최하위란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37)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핀란드, 스페인, 그리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위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룩셈부르크, 프랑스, 체코, 라트비아, 포르투갈, 미국, 독일, 캐나다,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본 인권실태조사결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HBSC 조사의 모든 국가보다 아동의 삶의 수준(삶의 만족도)이 낮게 나타났으나,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BSC 조사의 분석 데이터가 2009/2010년에 취합된 5-6년전 데이터를 기초로 한 분석이며, 또한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역시 2013년에 실시된 조사여서 2015년의 본 인권실태연구의 조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제비교가 가능한 최근 데이터가 산출될 경우 비교적 동일조건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 본 그래프의 출처는 유니세프의 보고서(Bradshaw, Martorano, Natali, & Neubourg, 2013: 11)이며, 여기에 본 2015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추가하여 재작성하였음. / 단위: %

【그림 III-5-17】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⑥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27.9%의 아동·청소년이 최근 1년간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응답은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응답자(22.6%)보다는 여자 아동·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33.6%),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교급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29.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26.9%로 특성화고 학생의 24.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는데, 학업성적이 ‘상’인 응답자는 24.1%로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업성적이 ‘하’ 경우는 35.2%로 훨씬 높았다.

표 Ⅲ-5-52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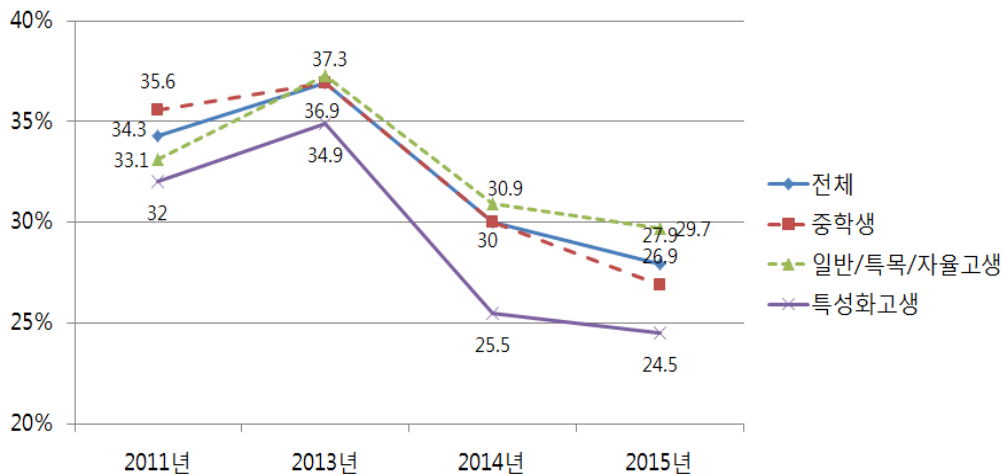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가끔+자주 생각한다 합계	전체(N)	χ^2
전체		72.2	25.1	2.8	27.9	100.0(7,503)	—
성별	남자	77.4	20.2	2.4	22.6	100.0(3,915)	112.69***
	여자	66.4	30.4	3.2	33.6	100.0(3,588)	
학교유형	중학교	73.1	24.3	2.6	26.9	100.0(3,624)	14.950**
	일반/특목/자율고	70.3	26.4	3.3	29.7	100.0(3,164)	
	특성화고	75.5	22.9	1.5	24.4	100.0(71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72.2	25.1	2.7	27.8	100.0(6718)	7.791
	한부모가정	70.9	25.8	3.3	29.1	100.0(674)	
	조손가정	71.5	22.3	6.2	28.5	100.0(57)	
	기타	82.3	17.7	0.0	17.7	100.0(54)	
학업성적	상	75.9	22.3	1.8	24.1	100.0(2070)	107.242***
	중	75.2	22.9	2.0	24.9	100.0(3104)	
	하	64.9	30.5	4.7	35.2	100.0(2324)	
경제적 수준	상	76.0	21.8	2.2	24.0	100.0(3374)	108.021***
	중	72.1	25.7	2.3	28.0	100.0(2924)	
	하	61.7	32.7	5.6	38.3	100.0(1204)	

** $p<.01$, *** $p<.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 중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비율은 24%였으나, ‘중’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28%, ‘하’인 청소년은 38.3%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Ⅲ-5-18]과

같다. 2013년에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36.9%였고, 2014년에는 30%, 2015년에는 더욱 감소하여 27.9%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중학생은 2013년에 36.9%였으나, 2014년에는 30%, 2015년에는 더 감소하여 26.9%였으며,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2013년 37.3%, 2014년 30.9%, 2015년 29.7%로 감소폭이 중학생보다는 다소 낮았다. 특성화고 학생은 2013년에는 34.9%, 2014년 25.5%, 2015년 24.5%로 2013년에 비해서는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있다=가끔 있다+자주 있다 / 2011년 '자살'에서 2013년부터 '죽고 싶다'로 조사문구 변경 / 단위: %

【그림 III-5-18】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4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로는, 학교성적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23.9%,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은 9.5%, 경제적인 어려움은 3.3%로 나타났다. 기타 이유가 19.7%로 많았는데, 이성문제, 심리적인 불안감, 신체적 콤플렉스, 미래에 대한 불안함, 학교가기 싫어서, 학원스트레스, 건강문제, 교사나 부모님과과의 갈등, 의욕상실, 게임 등 매우 다양한 이유가 기타 응답으로 나타났다.

죽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그리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학교성적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은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으로 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 학교성적과 가족 간의 갈등이 대부분의 죽고 싶다는 생각의 이유로 나타났으나,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만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비율(3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학교성적(20.6), 기타(20.3%) 순이어서 가족 간의 불화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경우 학교성적이 가장 높은 비율을(각각 45.2%, 58.6%) 보였으며, 한부모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29.4%)과 학교성적(27.3%), 기타(22.6%)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죽고 싶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상: 22.4%, 중: 22.8%, 하: 28.5%).

표 Ⅲ-5-53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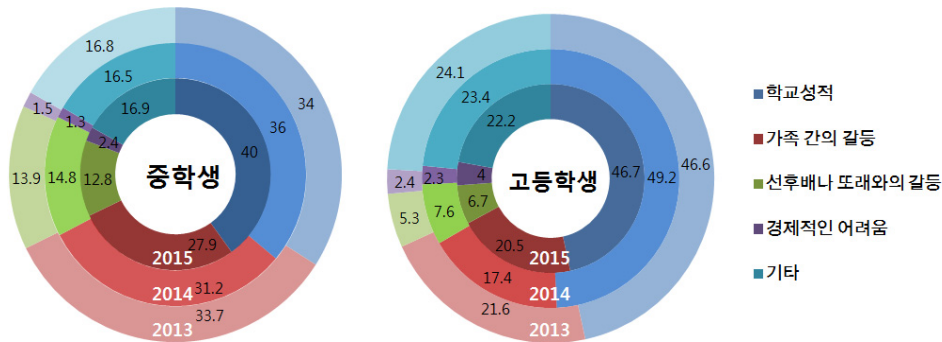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학교 성적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기타	전체(N)	χ^2
전체		43.6	23.9	9.5	3.3	19.7	100.0(2,024)	—
성별	남자	46.1	25.8	6.5	3.6	18.0	100.0(858)	21.068***
	여자	41.7	22.5	11.7	3.0	21.0	100.0(1,166)	
학교 유형	중학교	40.0	27.9	12.8	2.4	16.9	100.0(945)	145.864***
	일반/특목/자율고	51.5	18.2	5.5	2.4	22.5	100.0(913)	
	특성화고	20.6	33.1	13.1	12.9	20.3	100.0(16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5.2	23.3	9.0	2.9	19.6	100.0(1,805)	34.077***
	한부모가정	27.3	29.4	14.9	5.9	22.6	100.0(194)	
	조손가정	58.6	17.4	12.3	5.6	6.1	100.0(16)	
	기타	38.4	37.2	0.0	13.9	10.5	100.0(10)	
학업 성적	상	43.0	25.0	8.3	2.7	21.0	100.0(491)	9.450
	중	43.3	25.0	9.0	2.6	20.2	100.0(749)	
	하	44.4	22.2	10.8	4.2	18.4	100.0(783)	
경제적 수준	상	45.8	22.4	9.5	0.9	21.4	100.0(793)	88.169***
	중	45.8	22.8	11.0	2.1	18.3	100.0(784)	
	하	35.8	28.5	7.0	9.4	19.2	100.0(447)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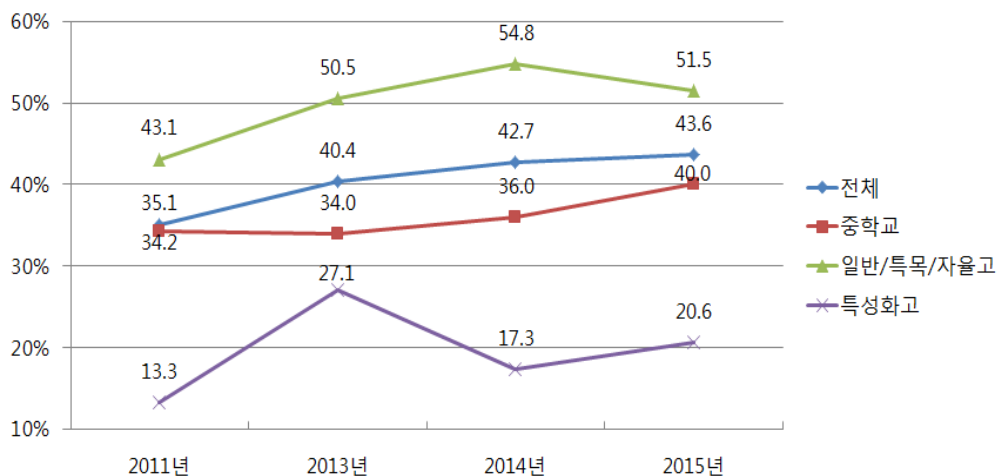
중학생의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의 가장 큰 이유로 학교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가족 간의 갈등 비율이 증가하였다.

죽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의 연도별 차이를 보면, 중학생이 학교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였으며, 가족 간의 갈등과 선후배/또래와의 갈등은 점점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 간의 갈등이 2014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5-19】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단위:%

고등학교를 유형별로 구분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학교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이 중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에게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5-20). 중학생은 2011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34.1%였으나, 2015년에는 40%로 약 6%p 증가하였다. 특성화고 학생은 2011년 13.3%에 불과했던 응답률이 2013년에는 급증하였다가(27.1%), 2014년에는 17.3%로 감소했으나, 2015년에는 20.6%로 증가하여 불안정한 추이를 보였다.



* 주: 있다=가끔 있다+자주 있다 / 2011년 '자살'에서 2013년부터 '죽고 싶다'로 조사문구 변경 / 단위: %

【그림 Ⅲ-5-20】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4개년 추이 : 중학생, 일반/특목/자율고생, 특성화고생)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죽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또는 ‘자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와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의 관련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집단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5-54 스트레스유형에 따른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차이

스트레스 유형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¹⁾		t
	Mean	SD	Mean	SD	
학업문제	2.81	.86	3.32	.73	-25.125***
가정불화	1.53	.71	2.04	.87	-23.492***
또래와의 관계	1.70	.77	2.19	.90	-23.473***
경제적인 어려움	1.52	.68	1.83	.81	-17.012***
외모 및 신체조건	1.92	.81	2.39	.87	-22.184***
미래에 대한 불안	2.60	.94	3.04	.89	-18.701***

*** $p<.001$.

* 주: 1) 가끔 생각한다+자주 생각한다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를 상관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관계에서 유의미한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358, p<.01$), 현재 행복 정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을($r=.476, p<.01$)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현재 행복정도는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각 $r=-.290, p<.01, r=-.349, p<.01$), 자아존중감과 현재 행복정도가 높을수록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은 것과 연관성을 보였다. 우울감은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와 정적 상관을 보여($r=.369, p<.01$), 높은 우울감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Ⅲ-5-55 상관분석: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

	자아존중감	우울감	현재 행복 정도
우울감	-.358**	-	-
현재 행복 정도	.476**	-.448**	-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	-.290**	.369**	-.349**

** $p<.01$

⑦ 고민거리 대화 상대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친구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어머니가 35.2%로 나타났다. 이외에 아버지는 5.9%, 형제/자매는 6% 수준이었으며,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비율도 8.8%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의 이러한 응답은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생이 어머니를 고민 대화상대로 꼽은 비율이 과반수인 것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그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친구라고 응답하였다(중학생: 44.6%, 일반/특목/자율고생: 48.5%, 특성화고: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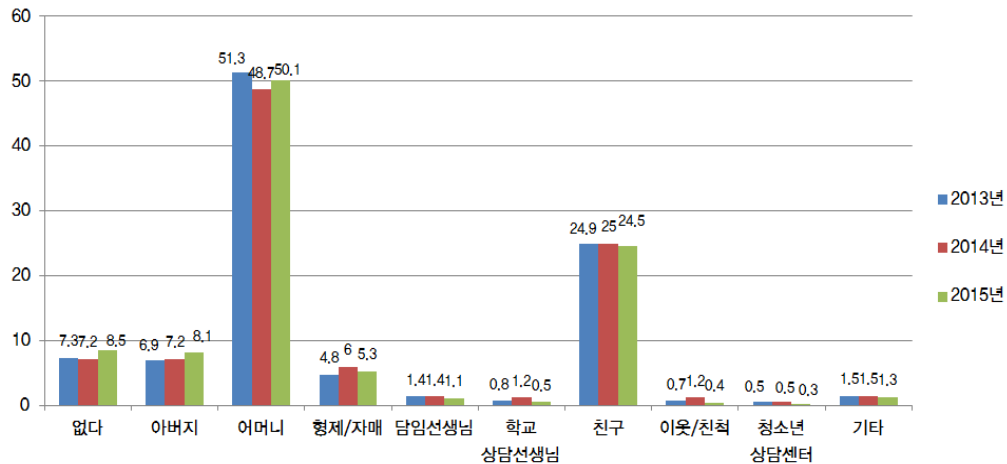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어머니를 고민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친구를 고민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흥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를 고민 대화상대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친구를 고민 대화상대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하’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응답률이 각각 11.7%, 1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5-56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담임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	친구	이웃/ 친척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 선생님	기타	전체(N)	χ^2
전체		8.8	5.9	35.2	6.0	1.2	0.7	40.6	0.5	0.3	1.0	100.0(10,359)	—
학교 유형	초등학교	8.5	8.1	50.1	5.3	1.1	0.5	24.5	0.4	0.3	1.3	100.0(2,917)	611.308***
	중학교	8.9	5.4	31.4	5.6	1.4	0.8	44.6	0.6	0.3	0.9	100.0(3,590)	
	일반/특목/자율고	8.8	4.5	28.5	6.3	0.8	0.6	48.5	0.4	0.3	1.2	100.0(3,141)	
	특성화고	8.7	5.6	22.3	8.7	1.8	1.0	51.2	0.4	0.3	0.0	100.0(710)	
학업 성적	상	7.8	7.3	41.7	5.3	1.0	0.4	34.9	0.3	0.3	1.1	100.0(3,375)	238.523***
	중	7.8	5.8	35.6	6.3	1.1	0.8	40.9	0.5	0.2	0.9	100.0(4,411)	
	하	11.7	4.3	25.8	6.2	1.4	1.0	47.6	0.6	0.5	1.1	100.0(2,544)	
경제적 수준	상	6.9	7.1	40.8	5.2	1.0	0.5	36.8	0.5	0.2	1.0	100.0(5,337)	300.211***
	중	9.5	5.0	31.5	6.3	1.3	0.9	43.7	0.3	0.3	1.2	100.0(3,704)	
	하	14.3	3.7	22.5	8.1	1.4	0.8	47.0	0.8	0.6	0.7	100.0(1,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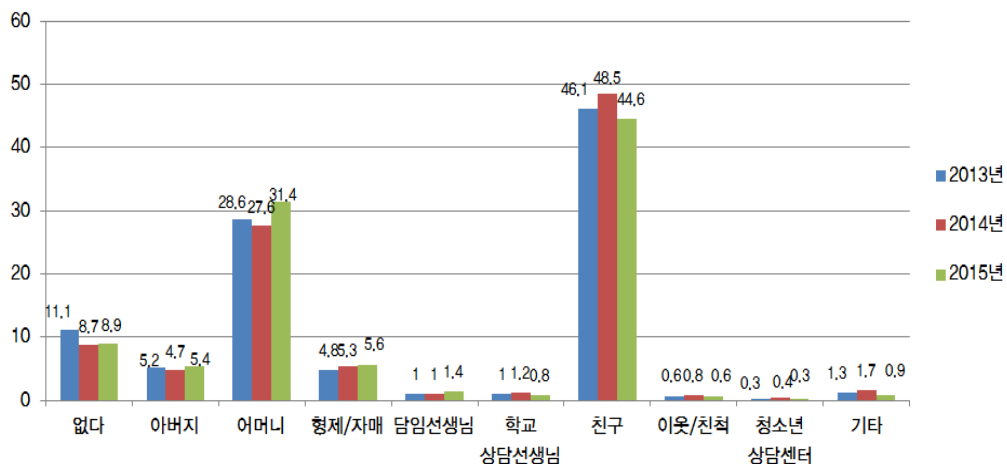
*** $p < .001$.

이러한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 대화상대에 대한 응답의 연도별 추이를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아버지를 고민거리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이 2013년의 6.9%보다 다소 높았으며(8.1%), 어머니인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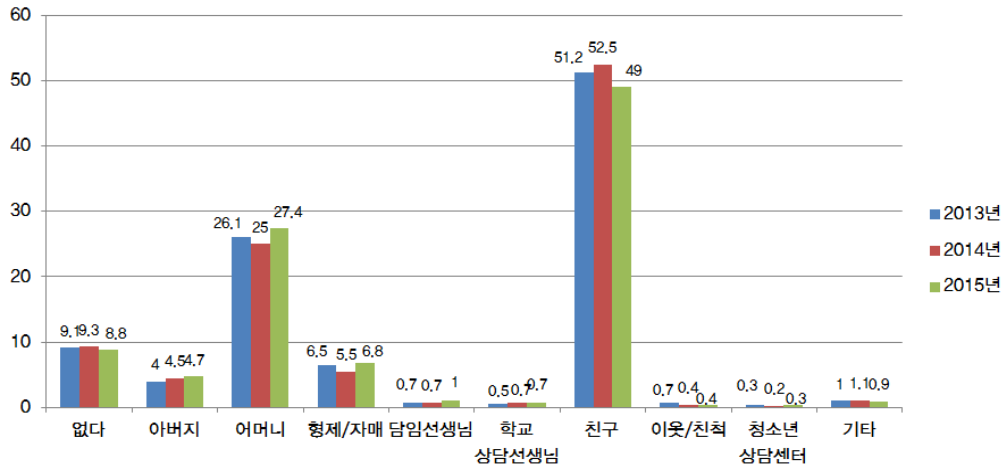
【그림 Ⅲ-5-21】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초등학교)/단위:%

중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고민거리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이 미미하게나마 증가하였는데, 아버지는 전년 대비 0.7%p, 어머니는 3.8%p 증가하였으며, 친구를 고민거리 상대로 응답한 비율은 전년(48.5%) 대비 다소 감소하여 44.6%로 나타났다.



【그림 Ⅲ-5-22】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중학생)/단위:(%)

고등학생이 고민거리를 나눌 대상으로는 친구가 역시 가장 높았으나, 응답률은 전년도에 비해 3.5%p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대한 응답이 전년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2.4%p), 형제/자매를 고민대화 상대로 응답한 비율도 1.3%p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5-23】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고등학생)/단위(%)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님을 응답한 비율이 적게나마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친구라는 응답은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교 상담선생님이나 청소년상담관련기관의 상담원 등을 고민/걱정거리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청소년들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 간 비교

① 아동·청소년 빈곤율

아동·청소년 빈곤율³⁸⁾은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임완섭, 이주미, 2014). <표 III-5-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빈곤율의 경우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모두 전년대비

38) 아동·청소년 빈곤율은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절대적 빈곤개념에서의 빈곤율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와 동일비율의 최저생계비 개념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OECD기준을 따라 가구 중위소득의 50%미만의 소득을 버는 가족의 아동비율을 의미한다(김경준·김희진 외, 2014: 463 재인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를 제외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1인가구를 제외한 절대아동빈곤율을 살펴보면, 시장소득은 2013년 기준 5.3%, 경상소득은 3.6%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동일하게 0.8%p가 하락하였으며, 가처분소득은 4.7%로 나타나 전년대비 1.2%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아동빈곤율 역시 시장소득은 9.1%로 전년대비 1.4%p 감소하였고, 경상소득은 8.5%로 나타나 0.9%p가, 가처분소득은 8.4%로 전년대비 1.8%p가 하락하였다.

표 III-5-57

아동빈곤율

(단위 : %)

구분		절대아동빈곤율			상대아동빈곤율(중위50%기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인가구 제외	2003	6.7	5.6	6.6	11.1	10.4	10.3
	2004	7.0	5.5	6.6	12.4	11.0	11.3
	2005	8.3	5.9	7.9	13.0	11.7	11.9
	2006	8.1	5.9	7.1	12.4	11.1	11.1
	2007	8.2	5.9	7.1	12.9	11.5	11.5
	2008	8.2	5.6	7.1	12.1	10.8	10.8
	2009	8.3	4.9	7.3	12.4	10.2	10.9
	2010	7.5	4.8	6.6	11.3	9.3	10.1
	2011	7.1	4.3	6.5	11.1	9.7	10.3
	2012	6.1	4.4	5.9	10.5	9.4	10.2
	2013	5.3	3.6	4.7	9.1	8.5	8.4
1인가구 포함	2006	8.1	5.9	7.1	12.1	10.5	10.7
	2007	8.2	5.9	7.1	12.3	11.1	11.2
	2008	8.2	5.6	7.0	11.6	10.3	10.3
	2009	8.3	4.9	7.3	11.7	9.2	10.2
	2010	7.5	4.8	6.6	10.8	8.9	9.5
	2011	7.1	4.3	6.5	10.6	9.2	9.9
	2012	6.1	4.4	5.9	9.5	9.0	9.4
	2013	5.3	3.6	4.7	8.4	7.8	7.9

* 출처: 임완섭, 이주미(2014). 빈곤통계연보. p.71, p.75. 표 재구성.

* 원자료: 통계청(각 년도).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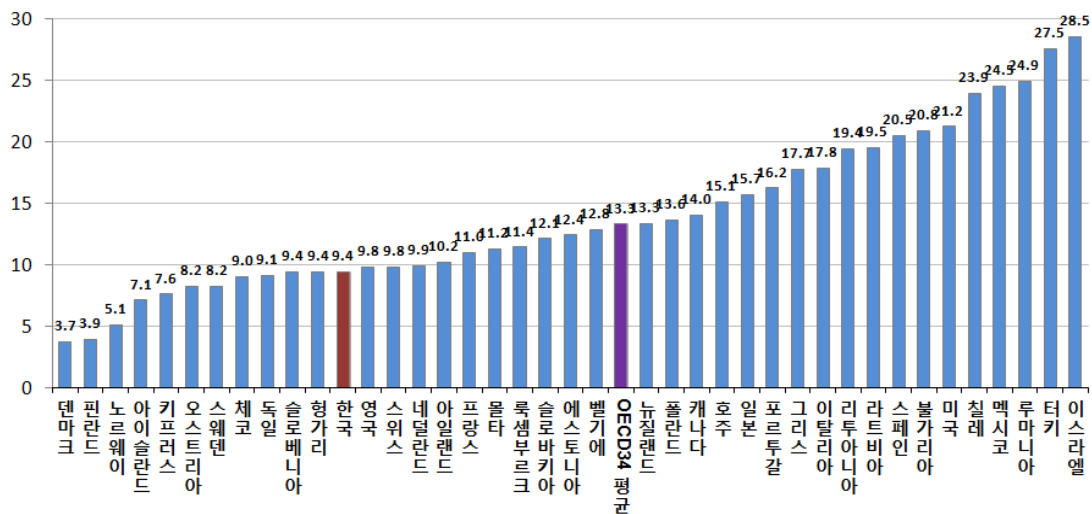
* 주: 1) 전가구 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농어가가구 제외/ 2) 시장소득은 시장(노동, 금융,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연금·정부지원금,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소득

전국단위의 아동가구조사인 가장 최근의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김미숙, 전진아 외, 2013), 아동빈곤율은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은 9.45%, 중위소득의 50%미만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0.62%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아동 중 약 5.6%~6.8%가 빈곤아동으로 추산되고 있어(정은희, 2015), 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규모추정과 사각지대 아동의 발굴과 서비스 지원방안을 더욱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아동빈곤율 국제비교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율을 국제비교하기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이터는 OECD자료이지만, 가장 최근자료인 2012년 OECD 자료에는 한국아동의 빈곤율이 제시되지 않아 최근 데이터를 활용한 국제비교가 어렵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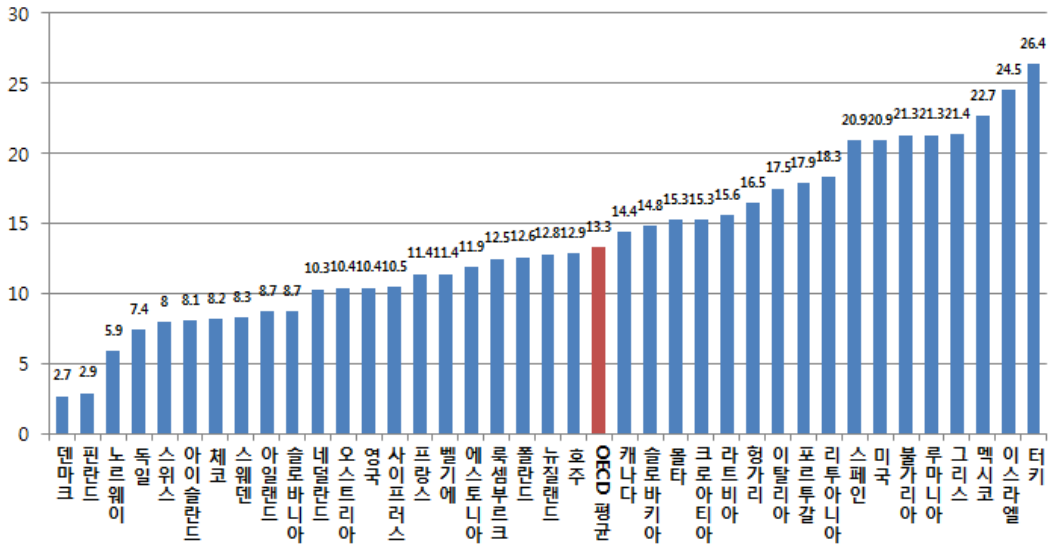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0년동안 빈곤율의 감소폭이 매우 작은 것을 고려할 때(김미숙, 전진아 외, 2013), [그림 III-5-24]의 2010년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의 상대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OECD의 2012년 데이터분석보고서³⁹⁾ 역시 18세 이하 아동의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덴마크와 핀란드의 아동빈곤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오스트리아와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다소 증가하였다. 2010년도 분석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었던 스위스는 아동빈곤율이 감소하였으나, 영국도 미미한 수준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 나라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아동빈곤율에 변화를 보였다.



* 출처: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soc/CO2_2_ChildPoverty_Jan2014.pdf
 김경준·김희진 외(2014),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IV: 총괄보고서, p.464, 재인용.

【그림 III-5-24】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10년, 중위소득 50%)

39) http://www.oecd.org/els/family/CO2_2_Child_Poverty.pdf 한국과 일본, 칠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의 2012년 아동 빈곤율 데이터와 관련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 출처: OECD, Family Database, Retrieved October, 31, 2014, from http://www.oecd.org/els/soc/CO2_2_ChildPovertyJan2014.pdf

한국, 일본, 칠레는 데이터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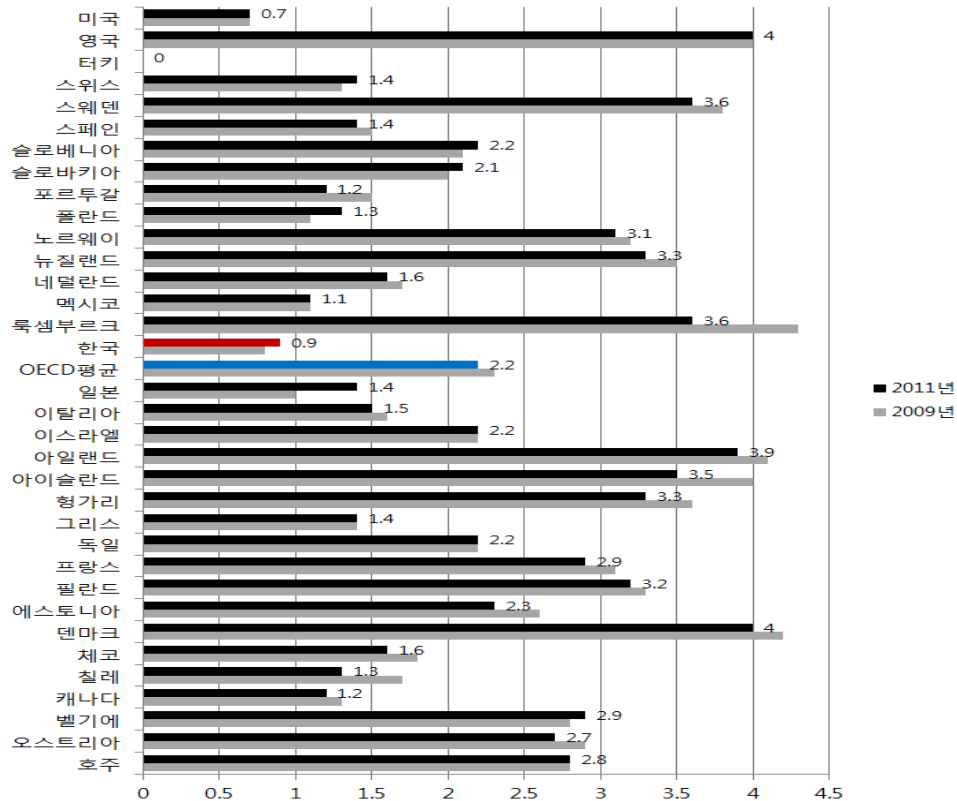
【그림 Ⅲ-5-25】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12년, 중위소득 50%)

(2) 아동·청소년관련 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 자료를 활용하여, OECD국가의 사회 복지지출 중 GDP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을 비교하였다(그림 Ⅲ-5-26). 2014년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에서는 2005년도와 2009년도 데이터를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올해에는 보다 최근 자료가 이용가능하게 되어 2009년도와 2011년도의 데이터를 비교하게 되었다. 2011년도의 한국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은 0.9%로 2009년도의 0.8%에 비해 0.1%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SOCX에 2012년도 자료도 예외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1.2%로 나타나 있다⁴⁰⁾. 그러나 1.2%라고 하더라도 전체 평균 2.2%에는 미치지 못하며, 영국과 덴마크 4%, 스웨덴 3.6%, 룩셈부르크 3.6%, 아일랜드 3.9%, 아이슬란드 3.5%에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기준 포르투갈, 멕시코, 그리스 등의 국가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40)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수 국가들에 대해서만 2012년 데이터가 제공되어 OECD국가의 전체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터키의 경우 최근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그래프에서 제외시켰다.

OECD의 아동가족복지지출에는 현금급여와 현물서비스가 포함되는데, 현금급여에는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 현금급여가, 그리고 현물서비스에는 보육가사서비스와 기타 현물지원이 포함된다(OECD, 2012. 이주연, 김미숙, 2013: 91에서 재인용).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 0.9%는 대부분 현물서비스이며, 현금서비스는 0.1%수준⁴¹⁾으로 그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지출의 규모와 아동빈곤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김미숙, 2011), 아동빈곤율이 낮은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및 덴마크의 경우에는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정은희, 2015). 따라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지출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서비스, 방과후돌봄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현물급여도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김미숙, 2011)



* 출처: OECD, StatExtracts,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EX_AGG

【그림 III-5-26】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2009, 2011)

41)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EX_AGG. 지출유형을 현금으로 지정(cash benefits)할 경우 나타나는 비율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

① 취약계층 아동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는 만 2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수를 연도별로 연령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적으로 0세~24세의 수급자 수는 315,603명으로 전년도인 337,810명보다 22,20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연령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0-4세의 아동은 20,428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으며, 5-9세 아동은 34,928명으로 11.1%를 나타냈다. 10-14세의 아동·청소년은 71,185명으로 약 22.6%의 비율을 보였는데, 2013년의 81,506명보다 약 천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의 청소년은 125,294명으로 39.7%로 나타났는데, 숫자와 비율이 모두 2013년보다는 감소하였다. 예외적으로 20-24세의 청소년은 63,768명으로 유일하게 2013년보다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율도 18.2%에서 20.2%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10-19세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24세 청소년 수급자의 증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 III-5-5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단위 : 명)
연도		0-24세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수급자 전체
2004		432,666	30,641	82,724	127,251	141,729	50,321	1,337,714
2005		464,888	32,015	87,408	143,017	150,698	51,750	1,425,684
2006		471,503	30,757	85,431	147,672	158,400	49,243	1,449,832
2007		468,795	29,405	79,163	144,829	165,833	49,565	1,463,140
2008		457,122	27,073	70,251	138,023	169,986	51,789	1,444,010
2009		466,872	28,338	65,428	135,623	179,584	57,899	1,482,719
2010		445,080	27,106	56,051	124,724	176,277	60,922	1,458,198
2011		407,415	25,104	47,787	109,979	163,648	60,897	1,379,865
2012		364,650	22,412	41,804	93,517	146,939	59,978	1,300,499
2013	명	337,810	20,871	37,804	81,506	136,087	61,542	1,258,582
	%	100.0	6.2	11.2	24.1	40.3	18.2	-
2014	명	315,603	20,428	34,928	71,185	125,294	63,768	1,237,386
	%	100.0	6.5	11.1	22.6	39.7	20.2	-

* 출처: 보건복지부(2015a),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32. 발췌·정리.

* 주: 수급자 전체는 시설수급자(2014년도 91,327명)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를 말함.

전체가구에서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표 III-5-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의 전체가구 수는 18,457천 가구였으며, 그 중 한부모 가구는 1,749천 가구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25천 가구로 나타나 이들 가구들의 꾸준한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I-5-59 한부모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가구(A)	16,543	16,791	17,052	17,339	17,687	17,951	18,206	18,457
한부모가구	1,468	1,509	1,551	1,594	1,639	1,677	1,714	1,749
저소득 한부모가족	148	150	171	185	189	218	222	225
한부모가족(B)*	73	82	94	108	115	131	140	142
비율(B/A)	8.9	9.0	9.1	9.2	9.3	9.3	9.4	9.4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에서 2014년 11월 5일 인출.

* 주: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를 말함.

2013년도의 가구형태별 정부통계에 따르면, 저소득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조손가족의 경우 약간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인 숫자가 217,547명에서 2013년 222,593명으로 증가하였으며(세대원은 578,663명에서 591,818명으로 증가), 모자가족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부자가족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은 숫자이지만 미혼모와 미혼부 가족 역시 다소 증가하여, 부자가족과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족차원에서 경제적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III-5-60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04	109,039	294,648	88,179	238,341	20,860	56,307	-	-	-	-	-	-	
2005	123,666	334,066	99,671	268,945	23,995	65,091	-	-	-	-	-	-	
2006	140,188	374,094	112,347	299,430	27,841	74,664	-	-	-	-	-	-	
2007	147,947	395,335	118,074	315,220	29,873	80,115	-	-	-	-	-	-	
2008	152,853	400,646	118,116	312,718	30,534	82,456	-	-	-	-	2,203	5,472	
2009	170,767	454,742	129,935	347,889	36,847	97,872	1,888	3,926	360	814	1,737	4,241	
2010	184,749	480,999	138,071	361,066	40,759	106,738	2,392	5,033	379	839	3,148	7,323	
2011	188,969	495,703	140,825	370,938	42,519	112,198	3,252	6,823	636	1,404	1,737	4,340	
2012	명	217,547	578,663	163,171	438,365	46,839	124,611	1,782	3,696	208	422	5,547	11,569
	%	100.0	100.0	75.0	75.8	21.5	21.5	0.8	0.6	0.1	0.1	2.6	2.0
2013	명	222,593	591,818	166,152	446,428	48,670	129,266	2,123	4,432	232	479	5,416	11,213
	%	100.0	100.0	74.6	75.4	21.9	21.8	1.0	0.75	0.1	0.08	2.4	1.9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청소년백서, p.126.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p.329.

(※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에는 미혼모가족이 청소년모자가족으로, 미혼부가족이 청소년부자가족으로 바뀜.)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0a).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1).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p.291.

보건복지부(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p.307.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p.309.

* 주: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국가보훈법대상

②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현황수준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형평성과 인적자원개발차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역사회교육공동체 형성을 통해 이들의 학습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14년 현재 전국 1,828개 학교에 1,404억원이 지원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a).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의 대상지역은 144개 교육지원청으로 전년대비 4개 교육청이 감소하였으며, 학교 수도 전년대비 5개 학교가 줄어들었다. 학생 수는 전년대비 8,551명이 증가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 학생 수는 5천명가량 감소하였다. 지금까지 본 사업은 교육취약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해왔으나, 비 사업학교의 저소득학생에 대한 지원이 소외되는 문제, 진로교육 보완 필요성 등과 같은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류방란, 김경애, 김성식, 이윤미, 정연순, 2013; 여성가족부, 2014a).

표 III-5-6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대상 지역	15지역 (기준8, 신규7)	30지역 (기준15, 신규15)	60지역 (기준30, 신규30)	60지역 (기준60)	100지역 (기준60, 신규40)	100지역 (기준60, 신규40)	114개 교육지원청	143개 교육지원청	148개 교육지원청	144개 교육지원청
대상 지역	광역시 이상	인구25만 이상	인구25만 이상	인구25만 이상	모든 市	모든 市	단위학교	단위학교	단위학교	단위학교
학교수 ¹⁾ (초·중·고)	82교 (초50, 중32)	163교 (초99, 중61, 고3)	322교 (초187, 중132, 고3)	322교 (초187, 중132, 고3)	538교 (초304, 중230, 고4)	534교 (초296, 중234, 고3)	1,356교 (초670, 중681, 고5)	1,801교 (초906, 중831, 고64)	1,833교 (초894, 중831, 고63)	1,828교 (초903, 중880, 고65)
학생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수)	75,189명 (9,765명)	153,175명 (16,719명)	326,826명 ²⁾ (35,110명)	304,464명 (27,904명)	490,081명 (40,275명)	452,467명 (35,725명)	1,086,434명 (71,853명)	1,302,250명 (72,881명)	1,247,836명 (65,291명)	1,256,387명 (60,056명)
지원액 (교부금) (대응투자)	160억 원 (110억 원) (50억 원)	359억 원 (209억 원) (150억 원)	642억 원 (374억 원) (268억 원)	514억 원 (248억 원) (266억 원)	866억 원 (504억 원) (282억 원)	810억 원 (310억 원) (417억 원)	1,566억 원 (1,188억 원) (367억 원)	1,663억 원 (1,440억 원) (223억 원)	1,493억 원 (1,172억 원) (321억 원)	1,404억원 (1,297억원) (107억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청소년백서. p.297.

* 주: 1) 유치원 원아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2) 2007년 학생수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수 포함.

나.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Dream Start)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15f). 0세(임산부)에서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정책대상으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f).

표 III-5-62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실시	16	32	75	101	131	181	211	219	229(예정)
사업예산(억 원)	50	98	225	301	372	462	576	632	658
아동 수(명)	3,769	9,901	26,208	32,641	44,651	65,724	95,133	107,127	-
가구 수(가구)	2,465	6,516	17,141	21,699	29,332	42,387	61,630	66,551	-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153.
 보건복지부(2015c).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9.
 보건복지부(2015d). 201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p.21.
 보건복지부(2015f). '2015년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특히, 드림스타트는 인적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와 가정의 욕구 및 문제를 우선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관리하는 것을 주 사업내용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5d, 2015f).

드림스타트는 2007년 16개소로 출발해 2015년 현재 229개소 설치를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표 III-5-62>), 이에 따라 사업예산도 증액된 상태이다. 2007년 서비스 수혜 아동의 수가 3,769명, 수혜가구는 2,465가구 수준에서 2014년 현재 이용아동수가 107,127명에 66,551가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아동복지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보건복지부, 2015f). 전국 시·군·구로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실제 어느 지역까지 효과적으로 관할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드림스타트와 종사자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추후논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취약 아동의 발굴과 의뢰과정, 또 개입에 있어서 다른 아동복지시설과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과 같은 비용의

기초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d).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의 아동,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으로, 후원자나 보호자를 통한 적립 시 월 3만원 내에서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 2015d).

표 Ⅲ-5-63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연도별	가입대상 (명)	가입자(명)	가입률(%)	월평균 적립액(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09	43,143	36,469	84.5	28,184	258	223	481
2010	42,030	40,829	97.1	29,129	377	308	685
2011	45,088	41,180	95.3	30,903	510	409	919
2012	48,788	46,703	88.7	37,792	670	527	1,197
2013	49,481	51,670	87.7	35,172	854	660	1,514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157.

* 원자료: 보건복지부(2014c).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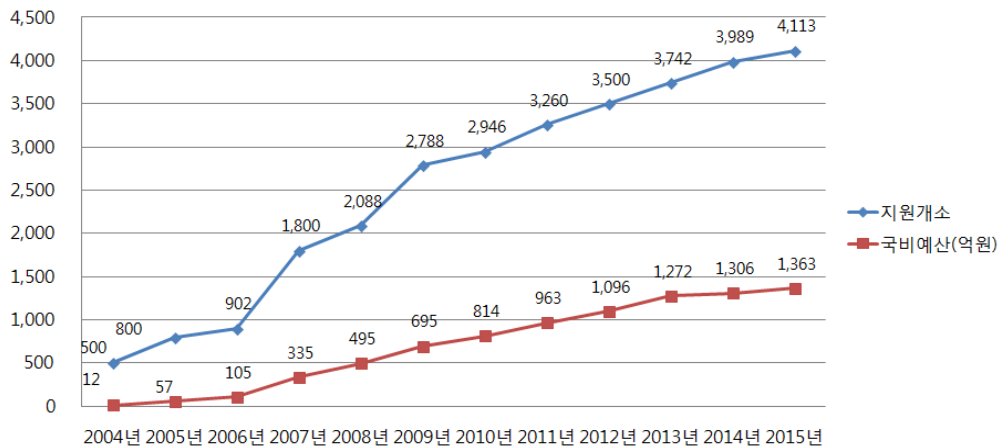
* 주: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포함.

2009년 이후로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정부 적립금 누계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월 3만원 수준의 매칭 적립금으로는 현실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사회진출 시 자립을 위한 기초자금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정부의 매칭적립 금액의 상향조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지원대상 아동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예산 운용과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

라. 지역아동센터

앞서 방과후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루어진 바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급식과 보호, 생활지원 및 학습지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방과후 방치될 수 있는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아동, 또 가정의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2004년 500여 개소였던 지역아동센터는 2015년 4천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그림 Ⅲ-5-27】). 그동안 낮은 수준의 정부지원 금액으로 매우 열악하게 운영된 사례가 많았으나 큰 폭은 아니어도 운영비지원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더 안정적인 시설운동을 위한 재원확보와 질적 수준이 담보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p.5.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

【그림 III-5-27】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지원예산

6) 소결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에서는 중분류로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영역으로 나누어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

장애 영역에서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비율,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를 조사하였다.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현황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숫자는 전체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평균 2,418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25,827명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는 45,803명, 일반학교 일반학급에는 15,648명이 재학 중이다.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추이를 보면 공립 특수교육 교원 확보율은 61%에 그치고 있지만 최근 5년간의 증가추이를 보면 연평균 3개 이상의 학교가 증가하였고, 특수학급의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538학급이 증가하여 미흡하지만 특수학교 수와 특수학급의 수는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을 알기 위해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4년까지 증가와 감소 추세를 반복하고 있어 장애 청소년의 취업률이 증가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진학률에 있어서도 2014년 초까지는 다소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 말을 기준으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무직율도 증가하였다. 장애 청소년의 기본적인 교육권과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요구되며,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장애청소년의 진로지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취업과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발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0세의 기대여명은 2012년을 기준으로 이미 OECD회원국의 평균 기대수명보다 높았으며 2014년에는 더욱 높아져서 81.94세로 나타났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개인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평균수명의 증가는 고령화 사회를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영아사망률 역시 OECD 34개국의 평균 영아 사망률이 4.1명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2013년 기준 3.0명으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0세에서 24세 연령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은 2013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질병에 의한 사망보다는 사고나 다른 외인에 의한 사망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사망률 중 10세에서 19세의 사고사망률은 2013년까지는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4년에는 다소 증가하여 10만 명당 11.3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사고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사망의 원인으로 10세에서 19세의 경우 자살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운수 사고였다. 20세에서 29세까지도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만 명당 17.8명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이 4.5명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4배가 높은 것으로 후기 청소년의 자살원인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안전에 대한 인식률로는 청소년의 범죄피해율과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 거주지역의 안전수준(범죄, 교통사고, 음식물)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범죄피해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2년 남자청소년의 경우 거의 두 배에 가까이 범죄피해율이 증가하였다. 안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90% 정도가 학교급식을 신뢰하고 있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모와 같이 살고 있을수록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통사고로부터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도 학교급식이나 지역의 안전수준과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였는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만 지역규모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읍면도시에 사는 청소년이 대도시 지역보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음식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도시에

거주하고,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거주지역의 음식물이 안전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부모와의 동거여부, 지역의 규모차이에 따라 안전의 정도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추이를 보면, 청소년이 지역의 다양한 안전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학교 급식에 대해 안전하게 느끼고 있는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교통사고로부터 점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음식물에 대한 안전 역시 전년대비 2015년에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보건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는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이용률,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에 의한 세부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학교보건법이 각 학교당 1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교사 배치현황은 2014년에 전체적으로 64.6%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보건교사 배치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중에 있어 보건교사 배치율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지역사회의 보건소, 병·의원, 특수병원 등의 건강관련 시설은 증가추세에 있어 학교를 제외한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지표는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이다.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일반계고 보다 특성화계고 재학 중인 청소년의 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이후 남녀 모두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청소년의 건강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아청소년의 천식유병률은 2011년 이후 12세에서 18세의 경우 2012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소아청소년의 질환별 유병률을 보면 선천성 심장질환이나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의력 결핍장애의 경우 1세에서 11세의 경우는 감소추세, 2세에서 18세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의학적 진단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보건 서비스 이용률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원 미치료율과 치과 미치료율은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어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보다 3배 이상의 미치료율 차이를 나타냈다.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병원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약국 이용률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병의원이나 치과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병의원이나 치과 미치료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약국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건강에 문제를 가질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3년까지 흡연예방 교육율이 증가하던 것과 비례하여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음주율은 감소추세이던 것이 2014년

다소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흡연예방교육율과 음주예방 교육율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흡연과 음주율이 낮아진 것이 교육경험율과 연관이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예방교육은 향후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건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85.7%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 한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높았다. 등교 전에 ‘거의’ 또는 ‘보통’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은 73%수준이었으며, 아침 결식 이유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가 36.4%,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리고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22%, 20.6%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은 평일 평균 7시간 17분이었으며, 연도별 추이를 보면 수면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에 대해 과반수정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수면이 부족한 이유로는 자율학습 등 학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50.8%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그동안 다소 상승세였으나, 2013년을 정점으로 하여 2014년에는 그다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에 가장 해로운 고도비만은 고등학생에게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입시준비로 인한 운동부족과 불규칙한 식사패턴에 따른 것일 수 있어 심도 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배경변인별로는 여자청소년, 한부모가정,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운동실천이나 아침 식사 비율이 낮았으며, 일반/특목/자율고 학생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수면시간이 짧았다.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적으로 70%를 훨씬 넘었으며, 우울감은 약 30%내외의 응답자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아동·청소년 중 66.8%가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의 스트레스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51%), 외모 및 신체조건(25.9%), 또래와의 관계(20.6%), 가정불화(15.7%), 경제적인 어려움(10.4%)순으로 나타났다. 학업문제에 대해서는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85.1%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불화와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관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소 추세였으나, 중학생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은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4.3%의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의 행복도가 가장 낮아 입시로 인한 학업부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한부모가정과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그리고 스트레스와 행복감 등의 세부 지표항목에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수준(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0점~10점 척도에서 평균 6.75점을 나타냈고, 2년 전에 조사된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의 동일문항의 결과인 6.10점보다는 높았으나, 6점 이상 응답한 11세, 13세, 15세 아동의 응답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보다 훨씬 낮은 삶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대상 해외자료의 경우 5~6년 전 것이어서 최근 데이터가 산출되는대로 동일조건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대상 중 27.9%가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응답했고,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의 이유로는 학교성적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23.9%였는데, 특히 중학생이 학교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였다. 또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더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거리 대화상대로는 친구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어머니 35.2%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형제/자매는 6% 내외수준이었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어머니를 고민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친구를 고민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흥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아동·청소년 빈곤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예산규모를 더 확대하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소득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더욱 주목하고, 이들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서비스 누락이 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지원서비스로는 교육기회 형평성을 강조하는 교육복지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의 욕구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으로 개입하는 드림스타트, 생활시설이나 그룹홈 등의 청소년들이 퇴소 후 자립지원의 기초가 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가 있다. 또한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생활·보호·교육·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도 해당된다. 이러한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해야 한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⁴²⁾

1) 교육에의 권리

(1) 교육기회 보장 정도

① 학생 취학률

취학률은 각급학교의 3세~21세까지의 취학 적령에 있는 재적 학생수를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기준의 취학 적령 인구로 나눈 수에 100을 곱한 수치이다. <표 III-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2000년과 2010~2014년 학생 취학률의 추이를 보면 먼저 유치원은 2000년에 26.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3월 1일 현재 47.3%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2014년도 초등학교 취학률이 96.4%, 중학교 취학률이 97.7%로 매우 높은 편이며, 고등학교 취학률은 93.7%, 그리고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68.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99.2%, 99.1%로 거의 100%에 달했던 취학률이 2013년 97.2%, 2014년 96.4%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II-6-1 각급학교의 연도별 취학률 추이(2000, 2010~2014)⁴³⁾ (단위 : %)

구분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유치원	26.2	40.2	40.9	44.9	47.4	47.3
초등학교	97.2	99.2	99.1	98.6	97.2	96.4
중학교	95.0	97.0	96.7	96.1	96.2	97.7
고등학교	89.4	91.5	91.9	92.6	93.6	93.7
전체 고등교육기관	52.5	70.1	71.0	68.4	69.0	68.2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2014.3.1. 기준). p.13.

이와 함께 2010년 OECD에서 발표한 취학률 국제비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체 OECD 국가 평균 취학률보다 대체적으로 초·중·고 연령대에서 3~4% 정도 더 높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42) 이 절은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가 집필하였다.

43)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가 포함되었고,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에는 연도 및 기관에 따라 17세 이하의 학생이 포함되었다.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② 학생 진학률

학생들의 진학률은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전체 진학자를 당해 연도 졸업자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수치이다. <표 III-6-2>에서는 초·중등 교과과정 단계에서의 2000년과 2010~2014년 2월까지의 연도별 진학률 추이를 알아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에 진학하는 비율은 2000년 이후부터 계속 상승하여 99.9%에 이르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의 진학률은 2010년 이래로 계속 99.7%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전체적으로 2000년에 62%에서 2014년 70.9%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2014년만 살펴보면, 일반고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78.7%이고, 전문계 고등학교라 할 수 있는 특성화고에서는 37.9%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 전문계고 진학률이 한 때에 71.1%로 가장 높았으나 점차 낮아져 2013년에는 46.8%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자 대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표 III-6-2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2000, 2010~2014)

(단위 : %)

구 분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초등학교→중학교과정		99.9	99.9	99.9	99.9	99.9	99.9
중학교→고등학교과정		99.6	99.7	99.7	99.7	99.7	99.7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전체	62.0	75.4	72.5	71.3	70.7	70.9
	일반고	—	—	(75.8)	(76.6)	(77.7)	78.7
	특수목적고	—	—	(67.4)	(64.2)	(60.0)	59.6
	특성화고	—	—	(61.0)	(50.0)	(41.7)	37.9
	자율고	—	—	(69.3)	(72.6)	(74.7)	75.7
	일반계고	83.9	81.5	75.2	76.2	77.5	—
	전문계고	42.0	71.1	63.7	54.4	46.8	—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2014.3.1. 기준). p.14.

* 주: 1) ()는 참고 수치로 2014년 4월 현재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진학률임.

2) 일반계·전문계고 진학자는 2010년 이전 대학 합격자 기준, 2011년 이후는 대학등록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

③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표 III-6-3>은 OECD와 대한민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를 비교한 표이다. 여기서 쓰인 단위는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의 환산된 환율로 OECD에서 각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위이다. 구매력지수는 OECD와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지정된 몇 가지 물품에 대한 가격들을 매 3년마다 비교함으로써 산출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각 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산출은 그 나라의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경상비와 자본비를 합한 총 금액을 학생 수와 구매력지수를 곱하여 얻은 수치로 나누어 얻어진다. 따라서 【그림 III-6-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민 1인당 GDP와 대비하여 산출되는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은 학생 1인당 공교육 비용을 국민 1인당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하여 얻어진다.

표 III-6-3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2000, 2007~2011)
(단위 :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

구 분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00	한국	3,155	4,069	6,118
(2003)	OECD 평균	4,381	5,957	9,571
2007	한국	5,437	7,860	8,920
(2010)	OECD 평균	6,741	8,267	12,907
2008	한국	5,420	7,931	9,081
(2011)	OECD 평균	7,153	8,972	13,717
2009	한국	6,658	9,399	9,513
(2012)	OECD 평균	7,719	9,312	13,728
2010	한국	6,601	8,060	9,972
(2013)	OECD 평균	7,974	9,014	13,528
2011	한국	6,976	8,199	9,927
(2014)	OECD 평균	8,296	9,280	13,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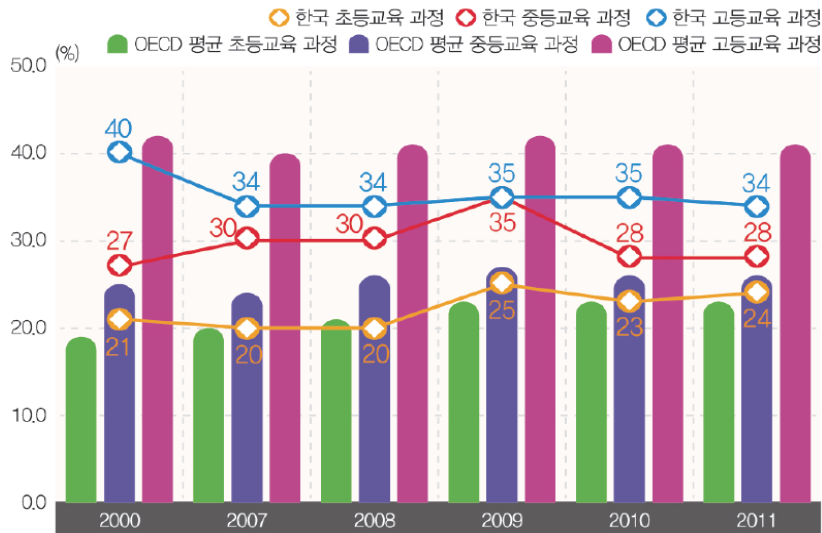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2014.3.1. 기준), p.49.

* 원자료: OECD(해당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주: 구분된 연도는 회계연도이며, 괄호 안의 연도는 자료 발표년도

<표 III-6-3>을 보면 대한민국의 2011년 초등학교과정만 볼 때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6,976 PPP로 OECD 평균 8,296 PPP에는 미치지 못하여 약 84%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의 72%에 비해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이 증가하여 OECD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고무적이다. 중학교과정에서는 OECD와 비교하여 2000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약 68%의 수준이었다가 2009년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다시 OECD 수준의 88%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010년 이후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고등교육과정이 취약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000년에 OECD 평균의 64%이었고 2011년에는 약 71%에 해당해 OECD 수준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World Bank의 2011~2014년 사이의 구매력지수에 따른 1인당 GDP⁴⁴⁾는 34,356 US \$로 세계 29위에 해당하고 있고, 중동국가 카타르가 1위, 6위가 노르웨이, 미국이 9위, 독일이 15위, 핀란드가 23위, 일본이 26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과 관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2014.3.1. 기준), p.49.

【그림 Ⅲ-6-1】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 추이

④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표 Ⅲ-6-4>는 2000년 이후 대한민국 각급학교 및 학교 유형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알아볼 수 있는 표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육기회의 보장 정도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서 학생 수가 적을수록 그만큼 교사가 학생을 돌볼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000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각각 19.5명, 28.7명, 20.1명, 19.9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2014년에는 각각 13.4명, 14.9명, 15.2명, 13.7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공교육비를 늘려 교원을 많이 확보한 결과이지만, 인구의 자연감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감소는 교육기회가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수가 많아 전체적으

44)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에서 2015년 10월 11일 인출.

로 41.6명에 달하고 있다.

표 III-6-4 교원 1인당 학생 수(2000, 2010~2014) (단위 : 명)

구 분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유치원		19.5	14.8	14.6	14.5	14.3	13.4
초등학교		28.7	18.7	17.3	16.3	15.3	14.9
중학교		20.1	18.2	17.3	16.7	16.0	15.2
고등학교	전체	19.9	15.5	14.8	14.4	14.2	13.7
	일반고	-	-	15.8	15.4	15.2	14.6
	특수목적고	-	-	11.0	10.3	10.0	9.7
	특성화고	-	-	12.5	12.1	12.0	11.6
	자율고	-	-	15.2	14.6	14.3	13.9
	일반계고	20.9	16.5	-	-	-	-
	전문계고	18.2	13.1	-	-	-	-
고등교육 기관	전체	58.4	46.9	45.5	43.9	42.8	41.6
		(39.9)	(32.7)	(31.9)	(30.9)	(30.3)	(29.8)
	일반대학	44.4	38.1	37.1	35.4	34.8	34.1
		(31.8)	(27.0)	(26.7)	(25.7)	(25.4)	(25.2)
	전문대학	78.0	61.2	60.3	58.9	58.2	57.3
		(51.2)	(39.4)	(39.1)	(37.7)	(37.2)	(37.1)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2014.3.1. 기준). p.18.

* 주: 1) 유·초·중등학교 교원에는 강사 미포함,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는 조교 및 비전임교원 미포함

2) 고등교육기관 1인당 학생수의 ()안의 값은 재적학생수 중 재학생수로 산출, 일반대학은 대학부설대학원의 교원 및 학생 수를 포함하여 산출함.

<표 III-6-5>에서는 연도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를 볼 수 있다. 2000년에는 한국의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각각 32.1명, 21.5명, 20.9명으로 OECD 평균의 17.7명, 15명, 13.9명과 격차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한국이 18.4명, 18.1명, 15.4명인데 반하여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5.3명, 13.5명, 13.8명으로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는 2000년 한국의 초등학교과정과 중학교과정에서 각각 36.5명과 38.5명에 비하여 OECD 평균은 21.9명과 23.6명으로 약 15명의 차이가 있었는데, 2012년에는 초등학교과정에서는 약 3.9명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어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고, 중학교과정에서는 약 10명의 차이로 그 간격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교육기회의 보장 정도가 과거 10년 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III-6-5 연도별(2000, 2007~2012)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 (단위 : 명)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2000	한국	32.1	21.5	20.9	36.5	38.5
(2002)	OECD 평균	17.7	15.0	13.9	21.9	23.6
2007	한국	25.6	20.5	16.2	31.0	35.6
(2009)	OECD 평균	16.0	13.2	12.5	21.4	23.9
2008	한국	24.1	20.2	16.5	30.0	35.3
(2010)	OECD 평균	16.4	13.7	13.5	21.6	23.9
2009	한국	22.5	19.9	16.7	28.6	35.1
(2011)	OECD 평균	16.0	13.5	13.5	21.4	23.7
2010	한국	21.1	19.7	16.5	27.5	34.7
(2012)	OECD 평균	15.9	13.7	13.8	21.2	23.4
2011	한국	19.6	18.8	15.8	26.3	34.0
(2013)	OECD 평균	15.4	13.3	13.9	21.2	23.3
2012	한국	18.4	18.1	15.4	25.2	33.4
(2014)	OECD평균	15.3	13.5	13.8	21.3	23.5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2014.3.1. 기준), p.46.

* 원자료: OECD(해당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주: 1) 교사는 수업담당교사(교장·교감, 영양·사서·보건·전문상담교사 제외)만 대상

2) 구분된 연도는 회계연도이며, 괄호 안의 연도는 자료 발표년도

(2) 학교 부적응율

① 학업중단율

학업중단율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학교폭력과 함께 사회문제로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수위에 올라와 있어 주목을 받는 지표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매년 6~7만명에 달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표 III-6-6>에서는 2000년 이후 대한민국의 학업중단율 추이를 볼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학업중단자 수를 전년도 재적학생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비율이고,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율 수치는 재적학생 수를 전년도 재적학생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수치이다.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의 경우 2000년에 0.4%이다가 2010년 이후 계속 0.6%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0.1~0.2%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2000년에 2.5%였던 것이 2013년에는 1.6%까지 감소되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는 2000년에 6.1%로 초·중등 교과과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높았는데 오히려 증가하여 2013년에는 6.6%로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어 대한민국의 심각한 청년실업과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추이라 할 수 있다.

표 Ⅲ-6-6 연도별 학업중단을 추이(2000, 2009~2013)

(단위 : %)

구 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초등학교	0.4	0.3	0.6 (0.3)	0.6 (0.3)	0.6 (0.3)	0.6 (0.3)
중학교	1.0	0.8	1.0 (0.8)	0.9 (0.8)	0.9 (0.8)	0.8 (0.7)
고등학교	2.5	1.8	2.0 (1.7)	1.9 (1.7)	1.8 (1.6)	1.6 (1.4)
전체 고등교육기관	6.1	6.5	6.7	6.4	6.7	6.6
일반대학	3.9	4.0	4.0	4.0	4.0	4.0
전문대학	5.5	7.3	7.4	7.1	7.7	7.6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2014.3.1. 기준),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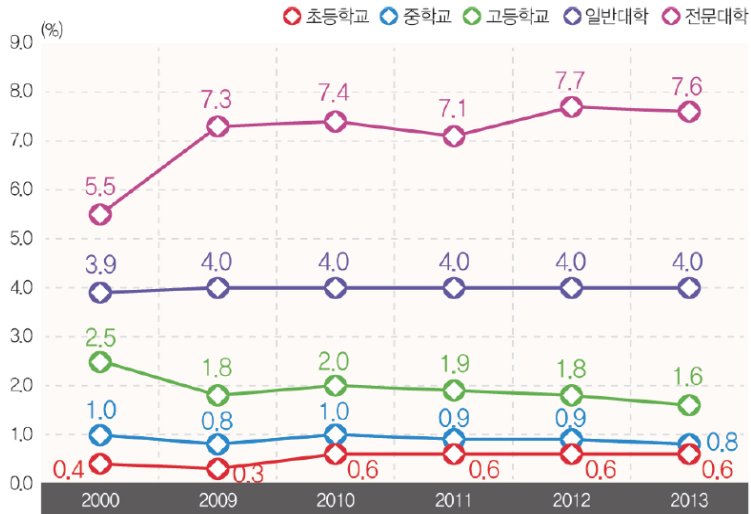
* 주: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유예 및 면제자는 학업중단자에 포함

2)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임.

3)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사망자 미포함

4) 2011년 조사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 2011~2013년의 ()는 2010년 이전 기준(유학·이민 제외)

5) 고등교육기관의 제적학생은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등 기타사유에 의해 학적에서 제외된 학생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2014.3.1. 기준), p.16

【그림 Ⅲ-6-2】 연도별 학업중단을 추이

② 학교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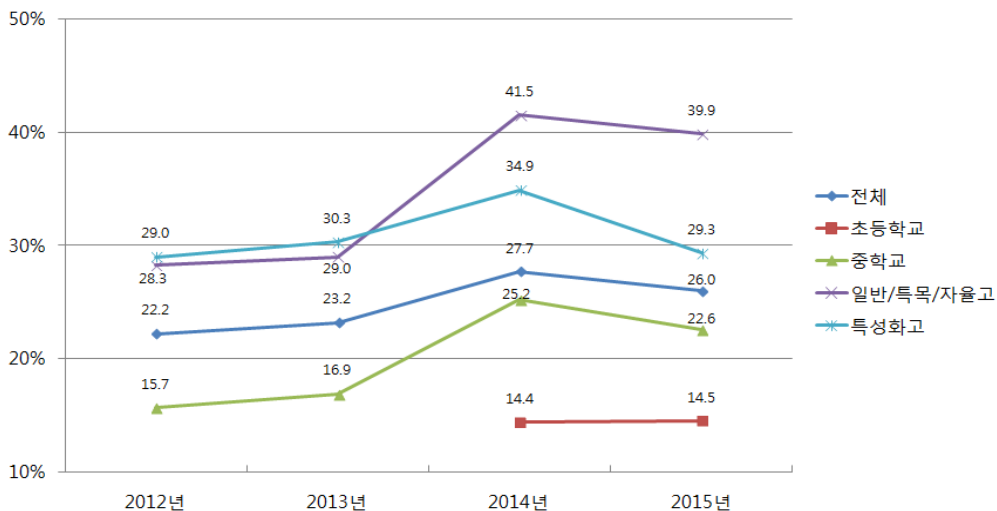
<표 III-6-7>은 자퇴 충동여부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자퇴 충동여부의 조사결과는 학교부적응의 대표적인 사례인 학업중단을 설명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학교적응률 소분류 지표의 학업포기의 결심여부와 이유 지표에 해당되는 조사결과이다. 2015년도 전체 청소년들 10,450명 중에서 2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퇴 충동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4명 중 1명을 넘는 수치여서 위에서 살펴본 학업중단의 현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남자 응답자(24.2%)보다 여자 응답자(28.0%)가 더 자퇴 충동 경험이 많았으며 초등학교(14.5%), 중학교(22.6%), 일반고(40.8%)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자퇴 충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학교유형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고(40.8%)와 자율고(40.1%)가 자퇴 충동이 있다는 응답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업수준이 제일 높은 특수목적고(31.1%)와 학업수준이 제일 낮은 특성화고(29.3%)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온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퇴충동이 큰 폭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7 자퇴 충동여부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26.0	74.0	100.0(10,450)	—
성별	남자	24.2	75.8	100.0(5,448)	19.732***
	여자	28.0	72.0	100.0(5,002)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5	85.5	100.0(2,935)	555.554***
	중학교	22.6	77.4	100.0(3,629)	
	일반고	40.8	59.2	100.0(2,388)	
	특수목적고	31.1	68.9	100.0(258)	
	특성화고	29.3	70.7	100.0(716)	
	자율고	40.1	59.9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26.1	73.9	100.0(4,567)	0.059
	중소도시	26.1	73.9	100.0(4,274)	
	읍면지역	25.8	74.2	100.0(1,610)	
학업 성적	상	15.6	84.4	100.0(3,400)	605.196***
	중	23.9	76.1	100.0(4,444)	
	하	43.4	56.6	100.0(2,576)	
경제적 수준	상	20.3	79.7	100.0(5,378)	280.487***
	중	28.5	71.5	100.0(3,744)	
	하	42.1	57.9	100.0(1,321)	

【그림 Ⅲ-6-3】의 그래프에서는 자퇴충동 여부의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전체 학생들의 자퇴충동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체로 2014년에 전년도에 비해 자퇴충동의 폭이 커졌으며, 다행스럽게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특목/자율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2013년의 자퇴충동이 29.0%였던 것이 2014년에는 41.5%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3명 중 2명이 넘게 자퇴충동을 가지고 있어 놀라운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입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결과여서 획기적인 교육개선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Ⅲ-6-3】 자퇴 충동여부 (연도별 추이)

<표 Ⅲ-6-8>은 자퇴충동 이유의 1순위를 묻은 응답의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공부하기 싫어서’가 압도적으로 많아 응답자 전체 2,709명의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45.6%에 달했으며,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29.6%로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아 학업과 관련된 자퇴충동 이유가 둘을 합하면 75.2%에 해당되어, 자퇴충동의 주된 원인이 자퇴충동 경험 응답자 4명 중 3명에 해당되는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도 조사결과에서 전체 1순위로 ‘공부하기가 싫어서’가 38.6%,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35%로 나타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김경준, 김희진 외, 2014: 490), 성적보다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싫다는 응답이 2015년도에는 7%가 증가한 조사결과로 보아 학업에 많이 지쳐있는 학생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도 학업과 관련한 자퇴충동의

응답이 73.6%로, 2015년도의 조사결과가 조금 높게 나타나 학업중단과 자퇴충동의 원인이 학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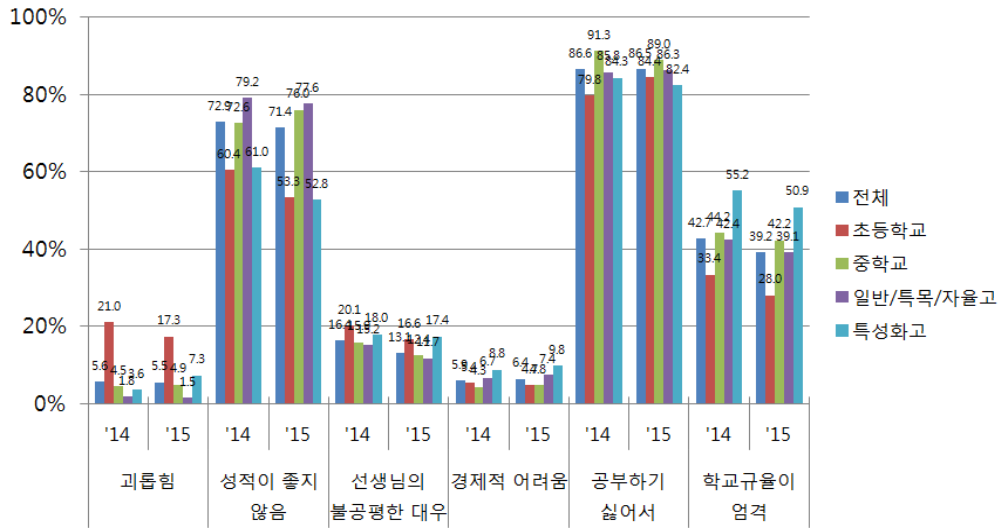
자퇴충동 이유 1순위

(단위 : %)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기타	전체(N)	χ^2
전체	3.0	29.6	3.4	1.2	45.6	6.5	10.7	100.0(2,709)	—
성별	남자	3.0	28.1	4.1	1.0	47.4	6.3	100.0(1,313)	8.581
	여자	3.1	30.9	2.8	1.4	44.0	6.7	100.0(1,395)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11.4	15.2	5.9	1.0	51.9	2.7	100.0(422)	314.388***
	중학교	2.1	29.1	3.0	0.9	51.1	5.6	100.0(818)	
	일반고	0.4	37.9	2.8	1.0	40.5	7.2	100.0(970)	
	특수목적고	0.7	27.7	0.7	2.6	29.3	9.7	100.0(80)	
	특성화고	5.3	12.5	4.7	3.4	47.1	11.3	100.0(210)	
	자율고	0.5	39.7	2.5	1.3	39.8	8.1	100.0(208)	
지역 규모	대도시	2.4	30.5	4.1	1.1	43.2	8.0	100.0(1,185)	26.973**
	중소도시	3.9	29.2	3.2	1.5	45.8	5.8	100.0(1,112)	
	읍면지역	2.4	27.9	1.9	0.7	51.9	4.0	100.0(412)	
학업 성적	상	4.1	16.7	3.2	1.7	51.7	7.3	100.0(527)	85.652***
	중	3.0	28.0	4.3	1.1	46.3	6.8	100.0(1,057)	
	하	2.4	37.3	2.5	1.1	42.1	5.7	100.0(1,117)	
경제적 수준	상	3.3	26.7	3.8	0.4	48.5	7.0	100.0(1,092)	89.373***
	중	2.9	30.9	4.1	0.2	45.1	5.7	100.0(1,062)	
	하	2.7	32.6	1.5	4.7	41.1	6.9	100.0(555)	

** $p<.01$, *** $p<.001$.

【그림 III-6-4】는 응답자들의 자퇴충동 이유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를 복수응답의 결과로서 ‘공부하기 싫어서’의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적으로 2014년 86.6%를 나타냈고, 2015년에는 86.5%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4년에 중학생들은 91.3%로 응답하였고, 2015년에는 89.0%로 응답하여 10명 중 9명이 자퇴충동의 이유가 공부를 하기가 싫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이유가 ‘성적이 좋지 않음’으로 2014년 전체 학생의 72.9%, 2015년에는 71.4%로 나타난 것을 보면 학생들의 자퇴충동 이유는 두말 할 것 없이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교육개혁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Ⅲ-6-4】 자퇴 충동 이유 (연도별 추이)

③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표 Ⅲ-6-9>는 응답자에 대해서 학교의 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는 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가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응답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10,422명 중 90.7%에 해당되어 비교적 또래들로부터는 학교생활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정적인 응답에서는 남자가 10.5%, 여자가 7.8%로 남학생 간에 존중과 배려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친구 간에 존중이나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세부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는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가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보다 상대적으로 친구 간에 존중과 배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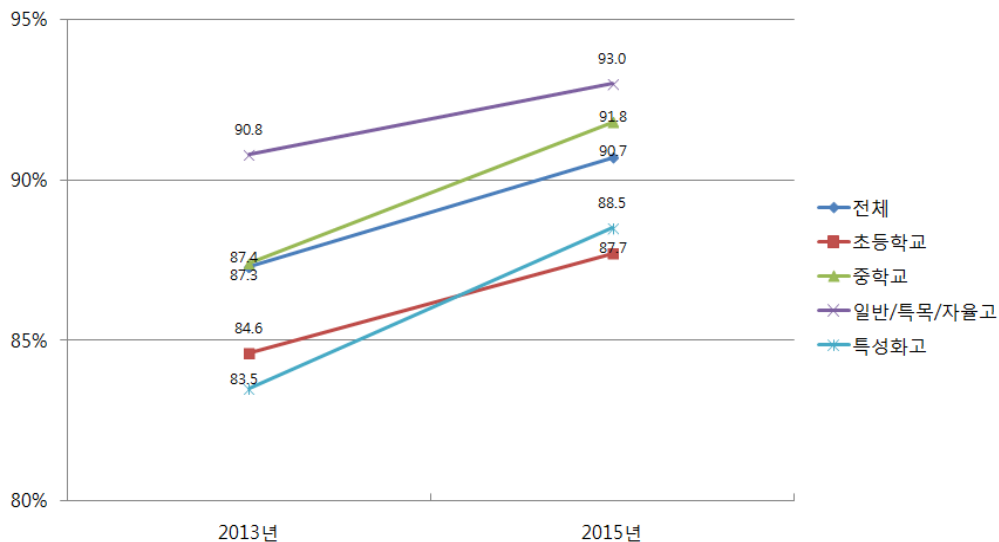
【그림 Ⅲ-6-5】의 그래프에서는 응답자들에 대해서 학교의 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는 가에 대한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있다. 2013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이 학교의 친구들로부터 배려와 존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3년에 전체의 87.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2014년에는 90.7%로 상승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의 문화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 III-6-9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 - 1) 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2	8.0	66.9	23.8	100.0(10,422)	-
성별	남자	1.5	9.0	66.4	23.1	100.0(5,435)	26.561***
	여자	0.8	7.0	67.6	24.6	100.0(4,987)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2.0	10.4	54.9	32.8	100.0(2,933)	361.089***
	중학교	0.8	7.4	68.9	22.9	100.0(3,616)	
	일반고	0.7	5.7	75.4	18.1	100.0(2,379)	
	특수목적고	1.6	10.0	69.5	18.9	100.0(258)	
	특성화고	2.0	9.5	77.2	11.3	100.0(715)	
	자율고	0.2	6.9	67.7	25.2	100.0(520)	
지역 규모	대도시	1.1	8.0	64.5	26.5	100.0(4,556)	33.844***
	중소도시	1.4	8.1	69.0	21.5	100.0(4,260)	
	읍면지역	1.0	8.2	68.4	22.3	100.0(1,606)	
학업 성적	상	0.9	5.4	60.8	33.0	100.0(3,394)	335.626***
	중	1.0	7.8	69.5	21.7	100.0(4,433)	
	하	2.0	12.0	70.8	15.2	100.0(2,563)	
경제적 수준	상	1.0	6.2	62.3	30.4	100.0(5,367)	304.159***
	중	1.3	9.2	71.6	18.0	100.0(3,730)	
	하	1.6	12.3	72.6	13.6	100.0(1,317)	

*** $p < .001$.



【그림 III-6-5】 학교생활에서 친구들의 존중과 배려 (연도별 추이)

<표 Ⅲ-6-10>은 전체 응답학생들이 학교의 선생님께서로부터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들의 10.9%는 조사결과 선생님께서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장 많아 17%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응답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이 6.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선생님께서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 각각 16.7%, 15.7%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에서 보여주었던 응답결과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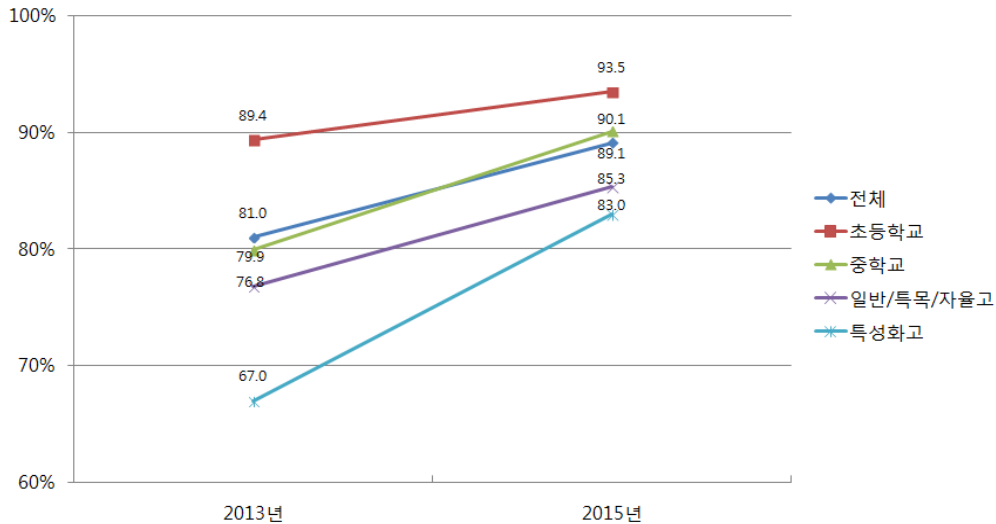
표 Ⅲ-6-10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 -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2	8.7	57.8	31.3	100.0(10,420)	-
성별	남자	2.5	8.9	56.5	32.0	100.0(5,433)	11.477**
	여자	1.8	8.5	59.1	30.6	100.0(4,987)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1.6	4.9	36.1	57.4	100.0(2,933)	1433.559***
	중학교	1.9	8.0	63.3	26.8	100.0(3,615)	
	일반고	3.1	12.5	69.2	15.2	100.0(2,378)	
	특수목적고	1.7	10.8	71.3	16.2	100.0(258)	
	특성화고	3.0	14.0	68.1	14.9	100.0(715)	
	자율고	2.5	9.0	68.8	19.7	100.0(520)	
지역 규모	대도시	2.4	8.6	54.9	34.0	100.0(4,553)	35.936***
	중소도시	2.1	9.1	59.7	29.2	100.0(4,260)	
	읍면지역	1.8	7.8	60.9	29.4	100.0(1,606)	
학업 성적	상	1.3	5.9	51.4	41.3	100.0(3,394)	388.467***
	중	1.9	8.5	59.2	30.4	100.0(4,431)	
	하	3.8	12.9	63.9	19.5	100.0(2,563)	
경제적 수준	상	2.2	6.9	52.3	38.6	100.0(5,365)	320.414***
	중	1.8	10.0	62.7	25.5	100.0(3,731)	
	하	3.2	12.5	66.2	18.1	100.0(1,317)	

** $p < .01$, *** $p < .001$.

【그림 Ⅲ-6-6】 그래프는 응답학생들이 학교의 교사로부터 존중받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 더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3년에 81%였던 것이 2015년에는 89.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2013년에 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67%였던 것이

2015년에는 83%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여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12년 이후 모든 전문계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학교생활에서도 교사와의 갈등이 줄어든 것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 Ⅲ-6-6】 학교생활에서 교사의 학생 존중 여부 (연도별 추이)

다음으로 <표 Ⅲ-6-11>은 실질적인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학교가는 것이 즐겁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 응답학생의 76.5%에 해당되었다. 이는 4명 중 1명은 학교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심각하다 할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남학생이 24.8%로 여학생 22%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학교유형별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 초등학교는 15.4%, 중학교는 21.2%, 일반고는 32.2%로 가장 학교급간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많아지는 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학업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2013년도 조사에서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1.1%로 2015년 보다 조금 낮았고 특성화고 경우에 2013년에 40.9%가 가장 많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2015년에는 31.2%로 낮아져 학교생활 문화가 개선된 것을 간접적

으로 알 수 있다. 특히 학업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의 부정적 응답의 축소 비율이 2013년에 각각 42.6%와 41.7%에서 2015년에는 36.9%와 35.5%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년 사이에 학교문화가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영지, 김정준 외, 2013: 319~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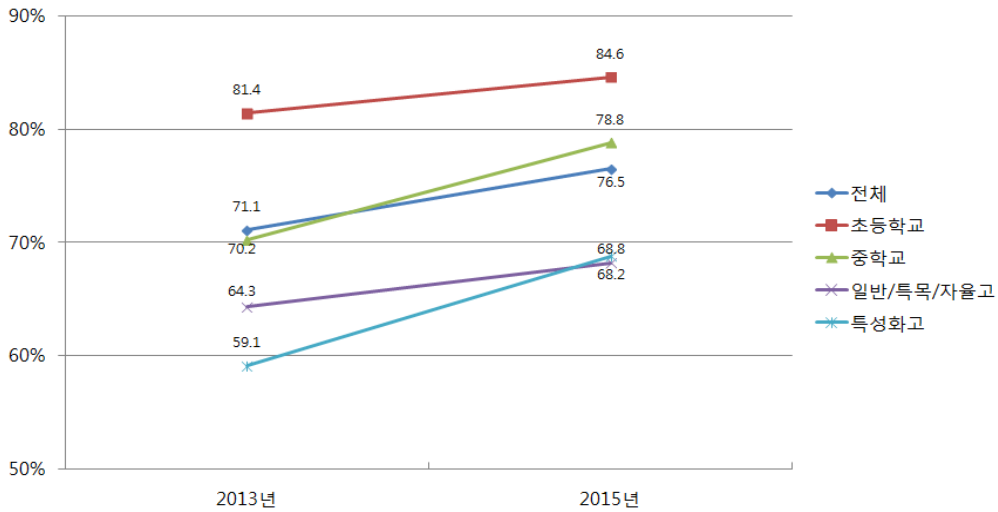
표 Ⅲ-6-11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 - 3)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6	18.9	52.6	23.9	100.0(10,416)	-
성별	남자	5.2	19.6	51.5	23.7	100.0(5,430)	16.539***
	여자	3.8	18.2	53.8	24.2	100.0(4,986)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3.6	11.8	44.5	40.1	100.0(2,933)	806.755***
	중학교	3.7	17.5	55.6	23.2	100.0(3,610)	
	일반고	5.7	26.5	55.6	12.2	100.0(2,380)	
	특수목적고	4.8	26.5	56.3	12.4	100.0(258)	
	특성화고	7.9	23.3	57.4	11.4	100.0(715)	
	자율고	5.8	24.4	55.5	14.4	100.0(520)	
지역 규모	대도시	4.5	18.8	50.9	25.8	100.0(4,554)	17.563**
	중소도시	4.6	19.0	53.5	22.9	100.0(4,256)	
	읍면지역	4.7	19.0	54.9	21.5	100.0(1,606)	
학업 성적	상	2.7	12.3	51.1	33.8	100.0(3,393)	591.461***
	중	3.7	18.5	55.6	22.2	100.0(4,429)	
	하	8.4	28.5	49.5	13.6	100.0(2,562)	
경제적 수준	상	3.3	14.3	50.5	31.9	100.0(5,364)	508.582***
	중	5.0	22.7	55.4	16.8	100.0(3,727)	
	하	8.3	27.2	52.9	11.6	100.0(1,317)	

** $p < .01$, *** $p < .001$.

【그림 Ⅲ-6-7】에서는 응답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 있다. 조사결과에서는 2013년도 전체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71.1%였는데, 2015년에는 76.5%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폭으로 만족도가 상승된 학교유형은 특성화고등학교로 조사되었는데 2013년에 59.1%였던 것이 2015년에는 68.8로 많이 상승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도 역시 2012년 이후 전문계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된 제도적 전환의 결과라 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늘려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Ⅲ-6-7】 학교생활에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움 (연도별 추이)

(3) 대안교육 참여율

① 대안학교 수와 종류

2015년 3월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는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공표하였다(교육부, 2015c). 이 계획의 추진배경으로는 무엇보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최우선이다. 교육부는 공표에서 시인하고 있듯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공교육이 경직되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대안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교육의 제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1,582개교에서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 운영하였고, 같은 기간에 6개 시·도에서 86개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하였으며, 15개 사립 대안학교의 안전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대안교실 담당자, 위탁교육기관 운영자, 공·사립 대안학교 교원 및 시·도 대안교육 업무 담당자 등 총 1,800명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대안교육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외국의 대안교육 성공사례 및 모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대안교육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표 Ⅲ-6-1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경기	두 레 자 연 중 학 교	사립	'03	화성시
	이 우 중 학 교	사립	'03	성남시
	헌 산 중 학 교	사립	'03	용인시
	중 앙 기 독 중 학 교	사립	'06	수원시
	한 겨 레 중 학 교	사립	'06	안성시
강원	팔 렬 중 학 교	사립	'11	홍천군
광주	평 동 중 학 교	공립	'14	광주시
전북	전 북 동 화 중 학 교	공립	'09	정읍시
	지 평 선 중 학 교	사립	'02	김제시
전남	용 정 중 학 교	사립	'03	보성군
	성 지 송 학 중 학 교	사립	'02	영광군
	청 람 중 학 교	공립	'13	강진군

중학교 : 12교(공립3, 사립9)

지역	학교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부산	지 구 촌 고	사립	'02	연제구
대구	달 구 벌 고	사립	'03	동구
인천	산 마 을 고	사립	'00	강화군
광주	동 명 고	사립	'99	광산구
경기	두 레 자 연 고	사립	'99	화성시
	경 기 대 명 고	공립	'02	수원시
	이 우 고	사립	'03	성남시
	한 겨 레 고	사립	'06	안성시
강원	전 인 고	사립	'05	춘천시
	팔 렬 고	사립	'06	홍천군
	현 천 고	공립	'15	횡성군
충남	한 마 음 고	사립	'03	천안시
	공 동 체 비 전 고	사립	'03	서천군
충북	양 업 고	사립	'98	청원군
전북	세 인 고	사립	'99	완주군
	푸 른 꿈 고	사립	'99	무주군
	지 평 선 고	사립	'09	김제시
전남	영 산 성 지 고	사립	'98	영광군
	한 빛 고	사립	'98	담양군
	한 을 고	공립	'12	곡성군
경북	경 주 화 랑 고	사립	'98	경주시
경남	간 디 고	사립	'98	산청군
	원 경 고	사립	'98	합천군
	지 리 산 고	사립	'04	산청군
	태 봉 고	공립	'10	창원시

고등학교 : 25교(공립4, 사립21)

* 출처: 교육부(2015a), 2015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5년 3월 기준).

앞에서 학업중단율과 관련된 지표 부분에서 서술되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6·7만명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로부터 사회로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학벌사회에서 학업적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책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로 쏠아져 나온다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사회진입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인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에서 표류할 때에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입시위주의 공교육 제도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학업중단과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절대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이는 대안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설립되어 있는 대안학교들은 <표 III-6-12>에서 볼 수 있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와 <표 III-6-13>에 제시되어 있는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비(미)인가 대안학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중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1988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미인가로 운영 중이던 대안학교들 가운데에서 6개 학교들을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시키면서 시작되었다. <표 III-6-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전년도에 비해 강원도의 현천고등학교가 추가로 인가되어 2015년 3월 기준 현재 고등학교 25개교, 중학교는 변동 없이 12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는 2013년 공립이 3개교, 사립이 9개교로 11개이었었는데, 2014년 광주시에 평동중학교가 공립으로 추가 설립되어 12개교가 되었다. 대안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총 25개교 중 21개교가 사립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공립은 3개교에 그치고 있다(김경준, 김희진 외, 2014: 493~495).

각종학교는 정규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실시하는 학교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학교를 의미하는데 <표 III-6-13>에는 2015년 현재 8개 시·도에 설립되어 있는 공립 6개교, 사립 18개교의 각종학교로서의 24개 대안학교 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각종학교로서의 특성화 대안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제 60조의 3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립된 학교이다.

각종학교 특성화 대안학교는 처음에는 2008년 경기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립된 TLBU글로벌학교와 2009년 서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립된 서울실용음악학교로 출발하였는데, 2014년에 공립학교 1개교와 사립학교 4개교가 추가되어 현재 총 28개교로 증가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와 충남이 고등학교과정 1개교와 중학교과정 1개교로 각각 1개교가 설립되어 있고, 호남 및 강원, 부산, 울산, 제주 지역에는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경상북도에 사립 대안학교 2개교와, 경상남도에 공립 대안학교와 사립 대안학교가 각각 1개교씩 새롭게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각종학교 특성화 대안학교는 증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각종학교로서 특성화 대안학교들은 현재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 유형으로, 쉼(Shema), 국제화 교육, 자연 및 환경 교육, 폴리텍

(Polytech), 기독교, 실용음악, 음악전문, 예술 등 다양하게 특성화되어 있으면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김경준, 김희진 외, 2014).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된 이후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유형의 대안학교가 늘어나가는 것도 향후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표 Ⅲ-6-13 각종학교로서의 특성화 대안학교 현황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구분	설립연도	소재지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고)	사립	'09	중구 신당동
	여명학교(고)	사립	'10	중구 남산동
	지구촌학교(초)	사립	'12	구로 오류동
	서울다솜학교(고)	공립	'12	중구 흥인동
인천	인천청담학교(고)	사립	'11	연수 동춘동
	인천해밀학교(중·고 통합)	공립	'12	남구 구월동
	인천한누리학교(초·중·고 통합)	공립	'13	남동 논현동
대전	그라시아스음악학교(고)	사립	'12	서구 도마동
경기	새나래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 용인시
	화요일아침예술학교(고)	사립	'11	경기 연천군
	쉐마기독교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 양주시
	TLBU글로벌학교(초·중 통합)	사립	'08	경기 고양시
	경기새울학교(중)	공립	'13	경기 이천시
	광성드림학교(초·중 통합)	사립	'14	경기 고양시
충북	글로벌선진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충북 음성군
	한국폴리텍다솜학교(고)	사립	'12	충북 제천시
충남	여해학교(중)	공립	'13	충남 아산시
경북	한동글로벌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북 포항시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중·고 통합)	사립	'13	경북 문경시
	산자연학교(중)	사립	'14	경북 영천시
	나무와학교(중)	사립	'14	경북 영천시
경남	꿈키움학교(중)	공립	'14	경남 진주시
	어울림학교(중)	사립	'14	경남 하동군
8개 시·도, 24개교(공립6, 사립18)				

* 출처: 교육부(2015a), 2015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5년 3월 기준).

위탁형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의 수는 최근 조사자료 부재로 2009년 실태에 의존하여 언급하면, 먼저 위탁형 대안학교는 13개 시·도에 46개 대안학교들이 있으며, 전체 교원은 675명, 학생은 1,283명으로 조사되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생 모두가 기숙사에 입주하여 생활을 하는 학교가 10개교, 자율적인 선택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가 3개교이며, 나머지는 통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할에 있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2006년 55개교 미인가 대안학교가 처음 선정된 이후부터 2014년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미인가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대략 240개가량 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없어지거나 새로 설립되는 학교들이 있어 현재로는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설립될 당시에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한 형태의 미인가 대학학교들이 많았지만 초등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상급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고, 초등학교 미인가 대안학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추측되고 있다(김경준, 김희진 외, 2014: 495).

② 대안학교 학생 비율⁴⁵⁾

현재 대한민국의 2015년 4월 1일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의 수는 총 6,819,927명(교육부, 2015b)으로 전년도 대비 2.4%가 감소되었다. 2014년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다양한 전국의 초·중·고 대안학교 학생들의 수는 대략 14,935명으로 집계되어(교육부, 2014a) 전체 학생 수의 약 0.22%에 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대안학교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학업중단율과도 관계가 있어 공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대안학교의 유형별로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3월 기준으로 <표 III-6-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개의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총 2,485명으로서, 전체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의 16.6%가 해당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 6개 학교가 설립되어 있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에 4개 학교, 경상북도에는 각종학교로서의 특성화 대안학교들이 4개교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영형태로는 통학형은 6개교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숙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숙형과 통학형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24개교 중 7개교에 해당되고 있다(김경준, 김희진 외, 2014: 496).

45) 대안학교 학생비율은 2014년 3월 1일 기준의 통계 외에 진전된 조사결과가 없어 이 부분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통계수치는 2014년 보고서에 제시된 것임을 밝힌다(김경준·김희진 외, 2014: 496~498).

표 Ⅲ-6-14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학생 현황

시·도	학교명	설립구분	학교급	운영형태	고등학교과정	소계
서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사립	고	통학형	151	151
서울	여명학교	사립	고	기숙·통학 혼합형	68	68
서울	지구촌학교	사립	초	통학형(그룹홈)	—	—
서울	서울다솜학교	공립	고	통학형	98	98
인천	인천청담고등학교	사립	고	통학형	44	44
인천	인천해밀학교	공립	중·고 통합	통학형	55	77
인천	인천한누리학교	공립	초·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	87
					22	22
광주	월광기독교	사립	초	통학형	—	214
대전	그라시아스음악학교	사립	고	기숙·통학 혼합형	62	62
경기	새나래학교	사립	중·고 통합	기숙형	11	11
경기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사립	고	기숙형	6	6
경기	쉐마기독교	사립	초·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78	78
경기	티엘비유글로벌학교	사립	초·중 통합	기숙형	—	90
경기	경기새울학교	공립	중	기숙형	—	38
경기	광성드림학교	사립	초·중 통합	통학형	—	241
충북	한국폴리텍다솜학교	사립	고	기숙형	132	132
충북	음성글로벌선진학교	사립	중·고 통합	기숙형	236	403
충남	여해학교	공립	중	기숙형	—	—
경북	한동글로벌학교	사립	초·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146	146
경북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	사립	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257	475
경북	산자연중학교	사립	중	기숙·통학 혼합형	—	28
경북	나무와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	14
경남	경남꿈키움학교	공립	중	기숙형	—	—
경남	어울림학교	사립	중	기숙형	—	—
계					1,366	2,485

* 출처: 교육부(2014a), 2014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4년 3월 기준).

<표 Ⅲ-6-15>에서는 특성화학교 중 대안학교에 속하는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학생 비율을 살펴볼 수 있는데,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에는 강원도의 현천고등학교가 신설되어 전체 37개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총 3,667명이고 그 중 중학교는 12개교로 학생 수는 1,089명이며 전체의 약 30%에 달하고 있다(김경준, 김희진 외, 2014: 496).

표 III-6-15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시·도	학교명	설립구분	학교급	운영형태	고등학교과정	학생 수 소계
광주	평동중학교	공립	중	통합형	—	47
경기	두레자연중	사립	중	기숙형	—	59
경기	이우중학교	사립	중	통학형	—	164
경기	헌산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	
경기	중앙기독교중학교	사립	중	통학형	—	251
경기	한겨레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51	
강원	팔월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	49
전북	전북동화중학교	공립	중	기숙형	—	78
전북	지평선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	120
전남	용정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	132
전남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	115
전남	청람중학교	공립	중	기숙형	—	74
부산	지구촌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72	72
대구	달구벌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통학 혼합형	121	121
인천	산마을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62	62
광주	동명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통합 혼합형	216	216
경기	두레자연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17	117
경기	경기대명고등학교	공립	고	통학형	110	110
경기	이우고등학교	사립	고	통학형	242	242
경기	한겨레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03	
강원	전인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83	83
강원	팔월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55	55
강원	현천고등학교	공립	고	기숙형	45	45
충북	양업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20	120
충남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10	110
충남	한마음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72	72
전북	세인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82	182
전북	푸른꿈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14	114
전북	지평선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10	110
전남	영산성지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02	102
전남	한빛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218	
전남	한울고등학교	공립	고	기숙형	119	119
경북	경주화랑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24	124
경남	간디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16	116
경남	원경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97	97
경남	지리산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47	47
경남	태봉고등학교	공립	고	기숙형	142	142
계					2,950	3,667

* 출처: 교육부(2014a), 2014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4년 3월 기준).

2) 교육의 목표

(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①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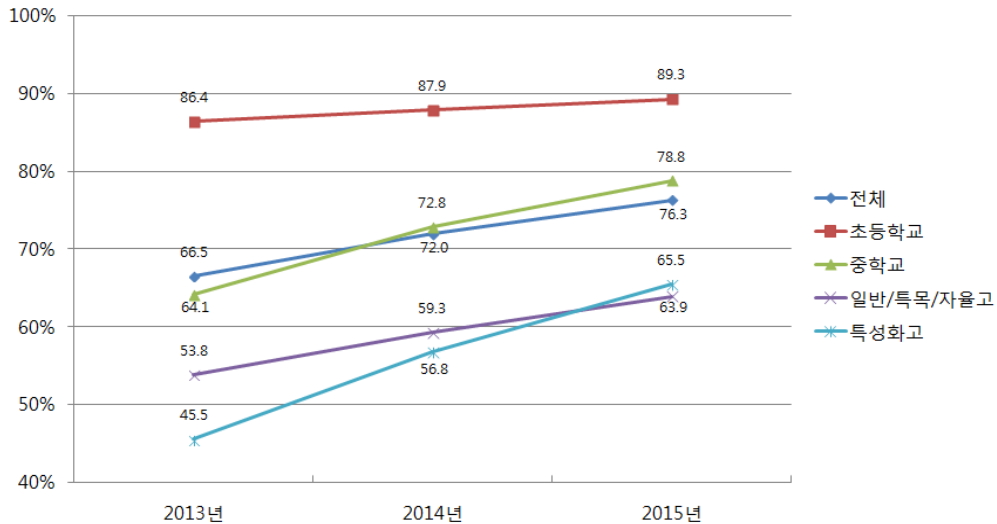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의 지표는 학교가 아동과 청소년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권리에 합당한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표 Ⅲ-6-16>은 학생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자신들의 학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조사결과로, 먼저 ‘학교가 학생 자신들에게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전체 응답학생 10,440명 중 76.3%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3.7%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부정적 응답이 많아 초등학교의 10.6%가 학교가 자신들이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일반고 학생의 37.3%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결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16 학교에 대한 생각_1)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8	18.9	58.9	17.4	100.0(10,440)	-
성별	남자	5.5	17.7	57.5	19.3	100.0(5,438)	46.270***
	여자	4.1	20.1	60.4	15.3	100.0(5,002)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2.1	8.5	54.5	34.8	100.0(2,928)	1292.823***
	중학교	3.8	17.4	64.2	14.6	100.0(3,624)	
	일반고	8.6	28.7	56.3	6.5	100.0(2,390)	
	특수목적고	5.1	23.0	63.2	8.7	100.0(258)	
	특성화고	6.3	28.2	59.7	5.8	100.0(716)	
	자율고	7.5	27.5	55.4	9.6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4.9	18.1	57.0	20.0	100.0(4,565)	40.916***
	중소도시	4.9	19.5	59.9	15.7	100.0(4,267)	
	읍면지역	4.2	19.5	61.6	14.7	100.0(1,608)	
학업 성적	상	3.4	14.1	56.0	26.5	100.0(3,397)	522.659***
	중	4.0	18.2	62.0	15.9	100.0(4,435)	
	하	8.1	26.5	57.6	7.7	100.0(2,576)	
경제적 수준	상	4.2	15.3	57.5	23.0	100.0(5,370)	370.856***
	중	4.9	20.2	62.2	12.8	100.0(3,740)	
	하	7.4	29.7	55.4	7.5	100.0(1,322)	

*** $p < .001$.

【그림 Ⅲ-6-8】에는 ‘학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의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결과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학교들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특성화고는 2013년에 긍정적 응답이 45.5%였는데 2015년도에는 65.5%로 20%가 상승된 것으로 드러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Ⅲ-6-8】 학교에 대한 생각_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연도별 추이)

<표 Ⅲ-6-17>는 <표 Ⅲ-6-16>과 같은 맥락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 가’를 묻는 것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전체 응답학생들의 25.5%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4명 중 1명은 학교가 자신들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부정적 응답이 많아 초등학교에서는 10.7%이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36.1%로 학교가 자신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상급학교로 갈수록 대학입시에 매몰되어 인성교육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부정적 응답 비율의 차이는 작았으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학생에서 각각 35.5%와 40.2%로, 높은 수준의 집단에서는 각각 20.2%와 20.5%로 부정적 응답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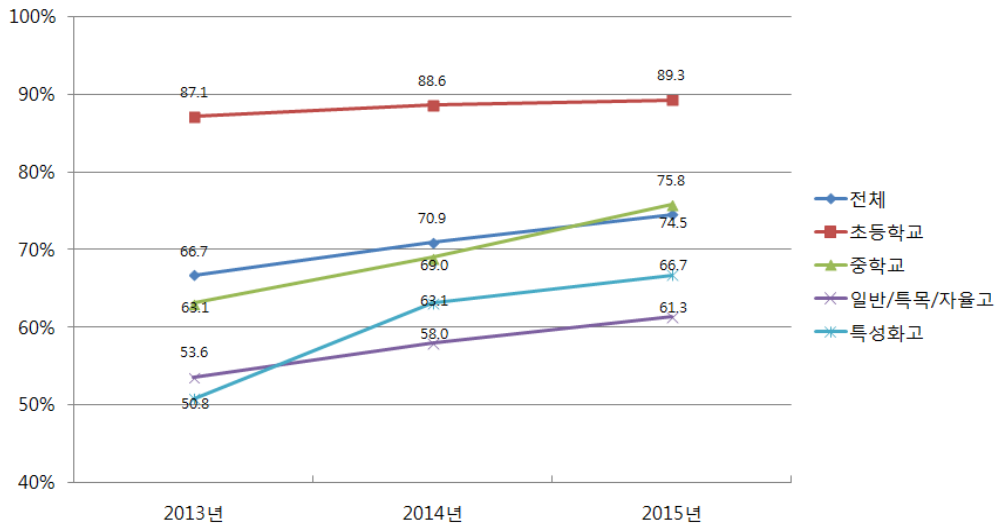
표 Ⅲ-6-17 학교에 대한 생각_2)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단위 : %)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8(0.76)	5.1	20.4	55.6	18.9	100.0(10,433)	—
성별	남자	2.88(0.8)	6.1	20.1	53.5	20.3	100.0(5,432)	43.808***
	여자	2.89(0.73)	4.0	20.7	57.9	17.4	100.0(5,0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7(0.7)	1.8	8.9	49.7	39.6	100.0(2,923)	1518.107***
	중학교	2.86(0.71)	4.3	19.9	61.1	14.7	100.0(3,623)	
	일반/특목/자율고	2.6(0.75)	8.7	30.0	54.2	7.1	100.0(3,172)	
지역 규모	특성화고	2.68(0.71)	6.6	26.8	59.0	7.7	100.0(716)	36.968***
	대도시	2.9(0.79)	5.6	19.8	53.7	20.9	100.0(4,561)	
	중소도시	2.86(0.76)	5.0	21.3	56.0	17.7	100.0(4,264)	
학업 성적	읍면지역	2.89(0.71)	3.8	19.5	60.2	16.4	100.0(1,607)	484.995***
	상	3.04(0.78)	4.0	16.2	51.4	28.5	100.0(3,396)	
	중	2.89(0.73)	4.2	19.6	58.6	17.6	100.0(4,429)	
경제적 수준	하	2.65(0.75)	8.0	27.5	56.0	8.5	100.0(2,576)	437.917***
	상	3(0.77)	4.3	16.2	54.1	25.3	100.0(5,367)	
	중	2.81(0.72)	4.8	22.5	59.3	13.4	100.0(3,737)	
	하	2.6(0.77)	8.8	31.4	51.3	8.5	100.0(1,321)	

*** $p < .001$.

【그림 Ⅲ-6-9】는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 가’에 대한 학생들의 연도별 응답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학교들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2013년에는 66.7%가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2015년에는 74.5%로 상승되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2013년도에는 50.8%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었는데, 2014년에 63.1%의 큰 폭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2012년 이후 전문계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부 통합되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Ⅲ-6-9】 학교에 대한 생각_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연도별 추이)

<표 Ⅲ-6-18>은 ‘학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를 묻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결과이다. 전체 응답학생 10,426명 중 82.5%는 학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자신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다른 응답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상급학교로 갈수록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초등학교에서는 8%가 부정적 응답을 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23.2%가 학교가 자신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각각 24.6%와 25.8%로 부정적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집단의 학생 4명 중 1명은 학교의 교육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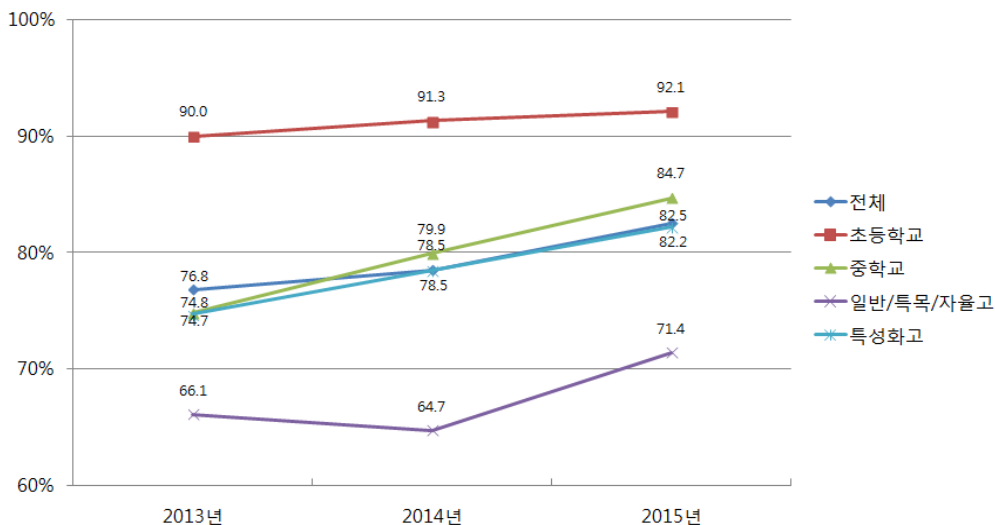
【그림 Ⅲ-6-10】은 ‘학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가’에 대한 학생들의 연도별 응답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학교들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고, 2013년 전체 학생의 76.8%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에 비해 2015년에는 82.5%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은 학교유형은 일반/특목/자율고로, 2013년에 66.1%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2014년에는 64.7%로 긍정적인 응답이 더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 71.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초등학생들의 긍정적 응답은 2013년에 90%에 달했고, 2015년에는 92.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얻는 지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Ⅲ-6-18

학교에 대한 생각_3)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단위 : %)

구분		평균(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2(0.74)	4.4	13.1	58.5	24.0	100.0(10,426)	—
성별	남자	3.03(0.76)	5.2	11.9	57.4	25.4	100.0(5,428)	41.231***
	여자	3.01(0.71)	3.5	14.3	59.7	22.4	100.0(4,997)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7(0.67)	1.5	6.5	45.4	46.7	100.0(2,919)	1451.337***
	중학교	3.01(0.68)	3.7	11.6	64.9	19.8	100.0(3,621)	
	일반/특목/자율고	2.74(0.74)	7.9	20.7	61.3	10.1	100.0(3,170)	
	특성화고	2.92(0.67)	4.3	13.4	67.8	14.4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3.05(0.75)	4.3	12.4	57.0	26.3	100.0(4,557)	33.356***
	중소도시	2.98(0.74)	4.5	14.4	59.3	21.8	100.0(4,262)	
	읍면지역	3.03(0.72)	4.2	11.5	61.1	23.2	100.0(1,607)	
학업 성적	상	3.17(0.74)	3.7	9.5	52.8	34.0	100.0(3,395)	430.767***
	중	3.02(0.7)	3.3	13.5	60.9	22.3	100.0(4,426)	
	하	2.81(0.75)	7.4	17.2	62.0	13.4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3.13(0.74)	3.7	10.8	54.6	30.9	100.0(5,363)	341.738***
	중	2.94(0.7)	4.4	14.4	63.6	17.6	100.0(3,736)	
	하	2.81(0.76)	7.2	18.6	60.1	14.1	100.0(1,320)	

*** $p < .001$.

【그림 Ⅲ-6-10】 학교에 대한 생각_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연도별 추이)

(2) 학교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① 혁신학교 운영수

혁신학교는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가 수요자인 학생들이 대학 입학시험위주의 교육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혁신하여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지가 모아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도화되지 못한 형태로 국지적으로 지속되다가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를 제도화하면서 전국적인 반향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2012년도 ‘혁신학교 이해 자료’에는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자발성, 지역성, 역동성, 공공성’의 4대 이념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2). 먼저 ‘자발성’은 교원의 자발성과 학부모의 참여로 운영되는 학교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성’은 지역사회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한 학교 교육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역동성’은 학교가 소수의 수월성 교육에서 다수를 위한 수월성교육으로의 전환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은 누구든지, 어디서나 만족하는 교육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이다(김성천, 서용선, 홍섭근, 2015: 305). 이러한 기본 철학을 이념으로 하는 혁신학교는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서 교육의 목표를 인권적 차원에서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학교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UN의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서 말하고 있는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혁신학교에서 가장 가깝게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지표의 중분류 ‘교육의 목표’ 영역에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에 ‘혁신학교의 운영 수’와 ‘혁신학교 운영 현황’이 각각 세부 지표항목으로 설정된 것이다.

표 III-6-19 전국 초·중·고 혁신학교 수(2014년 7월)

(단위 : 개교)

시·도 교육청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	합계
혁신학교 수 (2014년 7월 기준)	초	22	165	10	37	44	68	346
	중	13	121	10	21	18	28	211
	고	6	41	3	10	3	5	68
	특수학교	—	—	3	—	—	—	3
	계	41	327	26	68	65	101	628
초·중·고 전체학교 수		682	2,200	299	1,282	830	751	

* 출처: 김성천, 서용선, 홍섭근(2015).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 p.289.

<표 Ⅲ-6-19>는 2014년도 7월 기준 전국의 혁신학교 운영 학교 수이다. 전국에서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 6개 시·도교육청에 총 628개교의 혁신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시·도는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으로, 2014년 지방선거 결과 13개 시·도에서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어 혁신학교의 수는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혁신학교의 수는 경기도가 327개로 2014년 7월 현재 가장 많으며, 경기도 초·중·고 전체 2,200학교 중 약 15%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라북도의 혁신학교 수가 101개로, 전체 초·중·고 751개교 학교 수의 약 1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초·중·고 전체 1,282 학교 중 약 5%가 조금 넘는 68개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아직은 그리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6-20 전국 혁신학교 수 (2015년 7월 현재)

(단위 : 개교)

지 역	시작 연도	지정 현황
서울	2011년	97
부산	2015년	10
인천	2015년	10
광주	2011년	38
세종	2015년	5
경기	2009년	382
강원	2011년	41
경남	2015년	11
전남	2011년	75
전북	2011년	122
충북	2015년	10
제주	2015년	5
합 계		801

* 출처: 김성천, 서용선, 홍섭근(2015).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 p.290.

<표 Ⅲ-6-20>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적인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어 12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전국 혁신학교는 전년도에 비해 73개교가 증가해 801개교에 달하고 있다. 가장 먼저 혁신학교를 운영한 지역은 경기도로, 2009년에 혁신학교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그 수가 382개교에 달해 가장 많았다. 2014년 경기지역에 327개교였던 혁신학교 수가 1년 만에 55개 학교가 더 늘어난 추세로 볼 때,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수는 빠른 기간 내에 1,000개교를 넘을 전망이다. 서울도 2014년에 혁신학교가 68개교 있었는데 1년 만에 29개교가 새롭게 지정되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혁신학교는 공립학교부터 시작되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3년부터 사립학교도 혁신학교 지정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이지만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립학교들도 혁신학교로 전환이 가능하고, 사립학교는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 혁신학교에 공감하는 교사들이 많으면 혁신교육이 지속될 수 있어 공립학교보다 혁신교육의 지속성 면에서는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② 혁신학교 운영 현황⁴⁶⁾

2009년 9월 1일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에서 13개 학교로 출범한 혁신학교는 교육부의 분류에 따라 자율학교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교육의 결정 권한은 궁극적으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시·도교육청이 가지고 있기에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혁신학교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다. 혁신학교의 지정에 있어서도 시·도교육청마다 각기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원의 7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먼저 혁신공감학교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다. <표 III-6-21>에서 볼 수 있는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 지정을 받기 전 단계이다. 즉, 기존학교가 혁신학교로 전환되는 것에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단계의 학교로서 지정일로부터 1년 동안 시험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정된 혁신공감학교들 중에서 우수한 학교들을 발굴하여 혁신학교로 추천하고, 추천된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4년 동안 운영되며, 4년 차 종합평가를 받아 우수한 혁신학교는 모범혁신학교로 선정되고 있다.

표 III-6-21 경기도 혁신공감학교 선정 현황 (2014년 9월 1일 기준)

(단위 : 개교)

지 역	계(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총수	학교 대상수	혁신 공감 학교수	비율 (%)	학교 총수	학교 대상수	혁신 공감 학교수	비율 (%)	학교 총수	학교 대상수	혁신 공감 학교수	비율 (%)	학교 총수	학교 대상수	혁신 공감 학교수	비율 (%)
경기도	2,253	1,594	1,431	89.8	1,196	1,015	978	84.3	606	478	403	84.3	451	101	50	49.5

* 출처 : 김성천, 서용선, 홍섭근(2015),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 p.308.

46) 아래에서 논하는 혁신학교 운영 현황은 가장 최근인 2015년 10월에 발행된 문헌인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김성천, 서용선, 홍섭근, 2015)의 내용들을 주로 참조하여 서술되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서울형혁신학교 공모 지정 계획’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초·중·일반고와 이미 혁신학교로 지정받아 기한이 만료 예정인 학교들을 포함해서 혁신학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공모 신청 요건에는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 동의가 각각 50%이상 되어야 혁신학교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 신청 학교 수는 18개교로 제한되어 있어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한 경쟁이 있으며, 혁신학교로의 지정 기간은 3년 6개월로 되어있다(김성천 외, 2015: 214~215).

혁신학교의 명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달리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혁신학교’, 서울시의 ‘서울형혁신학교’, 인천형 혁신학교는 ‘행복혁신학교’, 충청북도는 ‘행복씨앗학교’, 전라남도는 ‘무지개학교’, 대구는 ‘행복학교’, 경상남도는 ‘꿈나르미학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자율학교’ 등으로 칭하고 있다. 혁신학교 운영의 특징 중 하나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의 권한이 일반학교보다 크다는 것이다. 혁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모 교장의 결정 여부까지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학교행사나 교육과정 프로그램, 학생 체험활동, 학부모회, 학생 봉사활동 등 많은 것들이 학부모들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혁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일반 학부모들도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학교 일들에 대하여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김성천 외, 2015: 255~256).

혁신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국가의 교육과정 안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서 교육과정의 시수를 20% 증감할 수 있는 자율학교로도 지정된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학교의 다양한 행사에서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반학교와 혁신학교가 학교운영에 있어서 가장 다른 점은 수업방식에 있다. 혁신학교는 기존의 학교들이 보여주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공동체 수업, 협동학습, 프로젝트 수업, 토론·토의 방식의 수업 등으로 학습의 문화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혁신학교의 새로운 교육과정의 변화는 교육의 긍정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표 III-6-22>은 2013년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 분석」 결과로, 일반학교와 혁신학교를 각각 15개교를 정하여 학생 1,908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설문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하여 미래 핵심역량, 수업 공동체, 학교생활 만족도 및 행복도에 있어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농어촌 지역, 도시 지역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혁신학교의 가장 고무적인 성과는 혁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이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이다(김성천 외, 2015: 38~40). 이는 인권지표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에 혁신학교가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적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6-22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학생 간의 비교 분석

영역	변인	초등학교		중등학교		농어촌 지역		도시 지역	
		혁신	일반	혁신	일반	혁신	일반	혁신	일반
수업 활동	1. 미래 핵심역량	3.49	3.31	3.01	2.85	3.42	3.16	3.26	3.08
	2. 수업 공동체	3.66	3.44	3.04	2.86	3.44	3.25	3.42	3.15
교육 만족도	3. 학교생활 만족도	3.57	3.30	2.95	2.78	3.42	3.05	3.30	3.07
	4. 학교생활 행복도	4.06	3.08	3.32	3.25	3.79	3.46	3.78	3.61
측정 요인별 평균		3.70	3.46	3.08	2.94	3.52	3.23	3.44	3.23

* 출처: 김성천, 서용선, 홍섭근(2015).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 pp.39~40.

기존 일반학교보다 혁신학교가 더 바람직한 형태의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기는 하나, 재정적인 한계가 따르고 있다. 혁신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자체 교육청의 예산 확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하여 지정기간인 4년 동안에 첫해에 학교별로 4,000~6,000만원을 지원하고, 2년 차부터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발표하였다. 이렇게 지원된 혁신학교 예산은 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여 혁신학교가 다시 기존 일반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것인지 염려되나, 4년 간 학교운영의 문화가 변화되어 잘 정착된다면 혁신학교의 실험은 성공적이라 평가될 수 있다(김성천 외, 2015: 279~284).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

①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아동·청소년들이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을 향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 할 수 있는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는 <표 III-6-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기준으로 2,266개로 2005년에 비해 2배가 증가되었다. 공공도서관 869개, 박물관 749개, 미술관 198개, 문예회관 221개, 지방문화원 22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으로 869개인데 도서관은 엄밀히 말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주로 공부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아동·청소년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지는 못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예회관이나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확대가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누리고, 여가 및 놀이 활동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I-6-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연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2013	2,266	865	754	198	221	229
2012	2,182	828	740	171	214	229
2011	2,072	786	694	154	209	229
2010	1,979	759	655	145	192	228
2005	1,133	526	364	93	150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p.9.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III-6-24>와 같다. 가장 문화예술 시설들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의 431개, 다음으로 서울이 315개, 경북이 176개, 강원이 172개 순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대부분 지역이 이러한 문화시설들 중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문화예술 향수와 관련있는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시·도별	총 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지역1	서울	315	123	116	35	16	25
	부산	77	31	16	5	11	14
	대구	64	28	14	3	11	8
	인천	82	39	23	4	8	8
	광주	46	17	10	7	7	5
	대전	50	23	14	5	3	5
	울산	31	13	9	0	4	5
	세종	8	5	0	1	1	1
	경기	431	194	131	43	32	31
	강원	172	47	76	12	19	18
	충북	111	38	41	7	13	12
	충남	140	55	44	8	17	16
	전북	123	53	34	7	15	14
	전남	167	60	47	19	18	22
	경북	176	63	57	9	24	23
	경남	160	59	54	8	19	20
	제주	106	21	63	18	2	2
	총계	2,266	869	749	198	221	229
지역2	수도권	746(32.9)	317	247	78	48	56
	지방	1,520(67.1)	552	502	120	173	173
	계	2,266(100%)	869	749	198	221	229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p.9.

②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아동 및 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는 <표 III-6-25>에서 볼 수 있다. 2014년도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의 총 수는 781개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도인 2012년보다 28개소 시설이 늘어난 것으로, 781개소 중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505개소, 민간은 276개소로 나타나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은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전국에 230개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186개소, 청소년수련원이 179개소, 유스호스텔이 134개소, 야영장이 43개소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특화시설은 대규모 공공시설로서 대표적으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라남도 고흥군),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전라북도 김제시) 등을 들 수 있다.

표 III-6-2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3.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81	186	230	179	43	134	9
공 공	505	183	225	47	25	16	9
민 간	276	3	5	132	18	118	0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417.

2014년도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을 <표 III-6-26>에서 보면 경기도가 149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강원도가 87개소, 경남이 71개소, 경북이 67개소, 서울이 64개소, 전북이 5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각 지역에서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고, 세월호의 여파로 자연권 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이 가장 어려움을 겪은 흔적이 남아 문을 닫은 민간시설들이 있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수년 간 청소년수련시설은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에서의 청소년지도자의 성추행, 해병대캠프 프로그램에서의 청소년 익사, 세월호 희생자들로 인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의 예약취소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하여 어려웠지만 서서히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I-6-26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3.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81	186	230	179	43	134	9
서울	64	33	18	3	0	4	6
부산	24	8	9	4	2	1	0
대구	14	5	6	2	0	1	0
인천	29	8	6	5	6	4	0
광주	11	5	5	1	0	0	0
대전	13	3	7	2	0	1	0
울산	8	1	6	1	0	0	0
세종	1	0	1	0	0	0	0
경기	149	29	46	46	4	23	1
강원	87	16	29	17	7	17	1
충북	47	8	10	17	1	11	0
충남	48	10	9	13	2	14	0
전북	55	11	19	14	3	7	1
전남	48	13	13	9	7	6	0
경북	67	17	13	15	5	17	0
경남	71	16	14	25	3	13	0
제주	45	3	19	5	3	15	0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418.

아동과 청소년들이 여가 및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설의 형태는 청소년이용시설이다. 청소년이용시설에 관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각 해당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과학시설, 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 시설들의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이용 실태는 <표 III-6-27>에서 볼 수 있다. 전체 응답학생 10,449명 중 공공도서관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학생은 23.4%에 해당되었다. 일 년에 1~2회 사용하는 응답 학생들이 33.6%로 가장 많아 한 번도 없는 학생 23.4%를 합하면 거의 응답자의 반 수 이상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남자(27.1%)가 여자보다(19.5%) 공공도서관의 이용률이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생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공공도서관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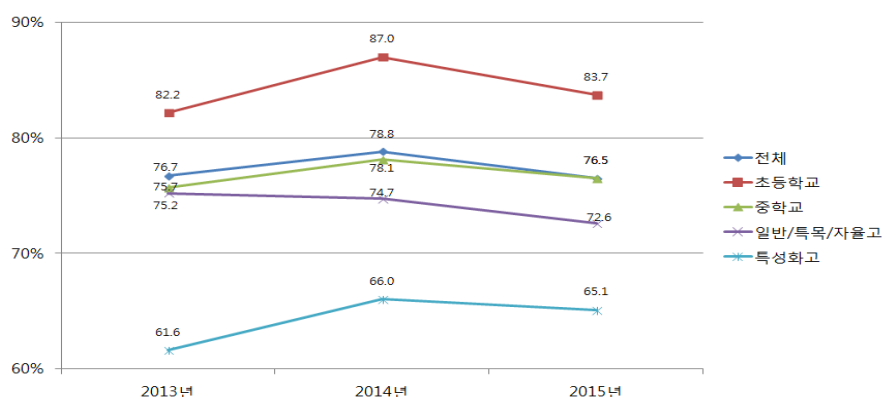
표 III-6-2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1) 공공도서관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전체(N)	χ^2
전체		23.4	33.6	29.8	13.1	100.0(10,449)	-
성별	남자	27.1	32.0	27.8	13.1	100.0(5,445)	88.018***
	여자	19.5	35.4	32.0	13.1	100.0(5,0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16.3	27.0	34.0	22.7	100.0(2,933)	539.023***
	중학교	23.5	37.6	29.8	9.1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27.4	33.6	28.1	10.9	100.0(3,173)	
	특성화고	35.0	40.8	20.1	4.2	100.0(716)	
지역 규모	대도시	25.9	34.3	27.5	12.3	100.0(4,566)	42.854***
	중소도시	22.0	33.2	31.3	13.4	100.0(4,274)	
	읍면지역	20.3	32.8	32.4	14.5	100.0(1,609)	
학업 성적	상	17.8	30.2	34.6	17.4	100.0(3,397)	272.760***
	중	23.0	35.5	29.7	11.9	100.0(4,445)	
	하	31.6	35.0	23.9	9.5	100.0(2,577)	
경제적 수준	상	20.7	32.2	32.3	14.8	100.0(5,376)	97.195***
	중	25.4	35.3	27.8	11.5	100.0(3,744)	
	하	29.1	34.6	25.6	10.7	100.0(1,322)	

*** $p < .001$.

【그림 III-6-11】은 전체 학생들의 공공도서관의 이용 여부에 대한 연도별 응답 추이이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2013년보다 2014년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늘어났다가 2015년에 다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특목/자율고에서만 2013년 이후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2013년에 75.2%였던 것이 2015년에는 72.6%로 내려갔다. 초등학교의 공공도서관의 이용률이 가장 높아 80%대인 것에 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이용률은 60%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11】 공공도서관 이용여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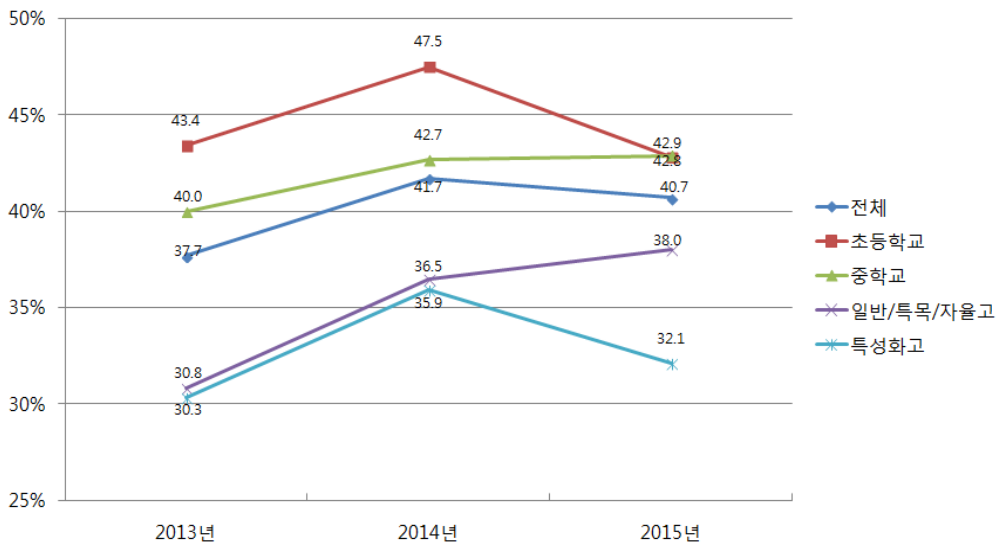
<표 Ⅲ-6-28>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의 이용여부에 관한 응답결과가 나타나 있다. 청소년시설은 위에서 서술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하고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있고, 일 년에 1~2회 정도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30.7%에 해당되어 거의 10명 중 9명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세부학교유형에서 보면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청소년시설을 가장 적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학습에 매몰되어 청소년시설을 통한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할 여유가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소년시설의 이용 동기가 낮거나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부담이 되어 나타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표 Ⅲ-6-28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2) 청소년시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전체(N)	χ^2
전체		59.4	30.7	6.9	3.1	100.0(10,436)	-
성별	남자	60.7	28.7	7.2	3.4	100.0(5,439)	22.609***
	여자	57.9	32.8	6.5	2.8	100.0(4,996)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57.3	27.7	9.7	5.4	100.0(2,929)	189.208***
	중학교	57.1	33.9	6.1	2.9	100.0(3,622)	
	일반고	61.1	30.9	6.1	1.9	100.0(2,387)	
	특수목적고	71.7	26.5	1.0	0.8	100.0(258)	
	특성화고	67.8	25.5	5.4	1.2	100.0(716)	
	자율고	61.1	33.3	4.3	1.2	100.0(524)	
	대도시	59.6	31.9	5.6	2.9	100.0(4,561)	38.511***
지역 규모	중소도시	60.6	28.9	7.6	2.9	100.0(4,267)	
	읍면지역	55.5	31.8	8.5	4.1	100.0(1,607)	
학업 성적	상	54.8	33.4	8.0	3.8	100.0(3,394)	63.998***
	중	59.9	30.8	6.8	2.6	100.0(4,437)	
	하	64.4	27.1	5.6	3.0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56.5	32.5	7.6	3.4	100.0(5,369)	41.588***
	중	62.0	29.3	5.8	2.8	100.0(3,738)	
	하	63.5	27.2	6.5	2.8	100.0(1,320)	

*** $p < .001$.

【그림 III-6-12】는 전체 학생들의 청소년시설의 이용 여부에 대한 연도별 응답추이 결과이다. 2013년에서 2014년에는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2015년에 다시 청소년시설의 이용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요구되는 조사결과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2013년에 전체 학생의 30.3%가 청소년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하였고, 2014년에는 이용률이 35.9%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5년에 다시 32.1%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학교와 일반/특목/자율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시설 이용률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시설의 이용 결과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III-6-12】 청소년시설 이용여부 (연도별 추이)

<표 III-6-29>에서는 청소년이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총 응답학생 10,439명 중 한 번도 문화예술 공간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났고, 일년에 1~2회 정도 이용했다는 응답이 47.3%에 달하여 5명 중에 4명은 1년 동안 문화예술 공간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의 차이가 있어 남자 응답자의 40%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응답자는 27.4%가 문화예술 공간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세부 학교유형에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도가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이용도가 높은 학교유형은 특수목적고로 한 달에 1~2회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30.9%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주일에 1~2회 정도 문화예술 공간을 자주 이용하는 집단은 특성화고 학생들이로서 이들은 대학의 실용음악 관련학과나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1.1%) 나타났다고 추측할 수 있다. 지역규모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학업성적 및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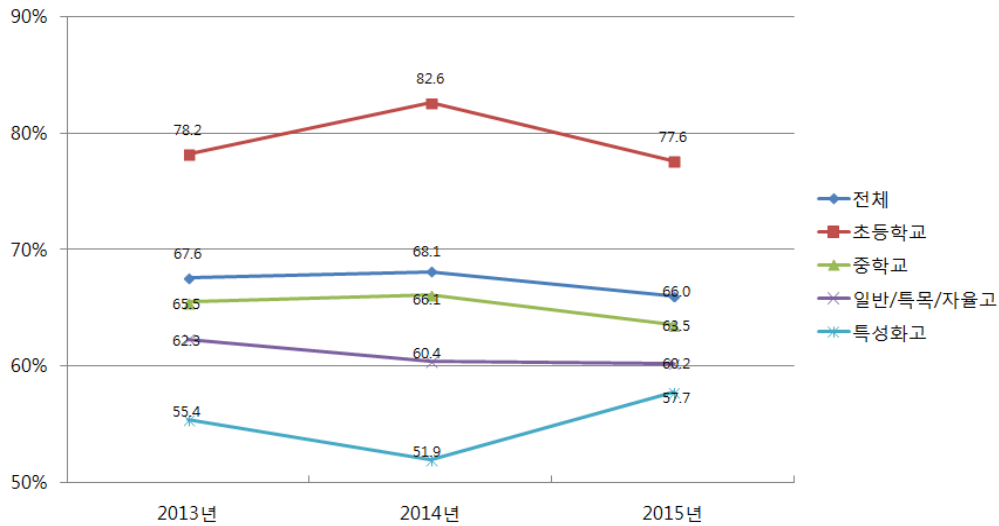
【그림 Ⅲ-6-13】 그래프는 학생들의 문화예술공간 이용 여부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학교들에서 이용률이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학년을 갈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가장 낮은 학교유형은 특성화고로 2013년에 55.4%의 이용률을 보여 같은 해 초등학교의 78.2%에 비해 아주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나 2014년의 51.9%보다 2015년에는 57.7%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29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3) 문화예술 공간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전체(N)	χ^2
전체		34.0	47.3	16.7	2.0	100.0(10,439)	-
성별	남자	40.0	43.4	14.7	1.9	100.0(5,439)	188.616***
	여자	27.4	51.6	18.9	2.1	100.0(5,000)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22.5	47.8	25.6	4.2	100.0(2,928)	543.431***
	중학교	36.5	48.7	13.3	1.5	100.0(3,624)	
	일반고	42.2	45.7	11.3	0.8	100.0(2,389)	
	특수목적고	24.0	44.2	30.9	0.9	100.0(258)	
	특성화고	42.3	45.1	11.5	1.1	100.0(716)	
	자율고	37.0	47.5	14.6	0.9	100.0(524)	
	대도시	32.8	48.0	17.3	2.0	100.0(4,563)	13.874*
지역 규모	중소도시	35.9	46.5	15.8	1.9	100.0(4,272)	
	읍면지역	32.4	47.7	17.6	2.3	100.0(1,605)	
학업 성적	상	25.7	50.1	21.6	2.6	100.0(3,397)	244.215***
	중	35.0	47.2	15.8	1.9	100.0(4,437)	
	하	43.0	43.9	11.6	1.5	100.0(2,575)	
경제적 수준	상	28.8	48.0	20.5	2.7	100.0(5,374)	232.115***
	중	38.0	47.9	12.8	1.2	100.0(3,738)	
	하	43.8	43.0	12.0	1.3	100.0(1,320)	

* $p < .05$, *** $p < .001$.



【그림 III-6-13】 문화예술 공간 이용여부 (연도별 추이)

(2)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①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지난해에는 2013년까지의 청소년이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알아보았으나 2015년 통계에는 해당 통계가 잡히지 않아 <표 III-6-30>에서는 이와 근접한 청소년의 성별·지역별 체험 활동의 참여도 조사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통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제5차년도(2014) 조사 결과(중학교 2학년 연령)들 중에서 따로 청소년의 성별·지역별 체험 활동 참여도를 발췌하여 분석한 것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2~4).

먼저, <표 III-6-30>에서 문화·예술활동 체험만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070명 중 84.2%가 체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여자 응답자는 81.2%, 남자 응답자는 86.9%에 해당되었다.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 문화예술 관람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약 18%에 달했고, 이중 여성 응답자가 22.7%, 남성 응답자가 13.2%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자기개발활동에 있어서는 89.3%가 참여한 것으로 패널조사에서 나타났는데, 2013년에는 15.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조금 자기개발활동에서도 큰 폭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행활동도 비교가 가능했는데 패널조사에서 체험했다는 응답이 여성이 47.4%, 남성이 52.2%로 나와 전체적으로 49.8%가 나온 반면, 2013년 응답에서는 여자가 6.0%, 남자가 5.8%로 여행에의 참여도를

나타내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2013년 조사에서는 주말이나 휴일에의 여가·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도를 측정했으나, 2014년도 패널조사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1년 중의 체험 경험의 유무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방학 등의 경험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온 결과라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조사결과로는 2014년도 수행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는데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9~24세 응답청소년들은 전체 3,000명 중 77.5%가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여성 응답자는 82.8%, 남성 응답자는 72.2%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4: 51).

표 Ⅲ-6-30 청소년의 성별·지역별 체험 활동 참여도

(단위 : %)

구 분		성별·지역별 청소년 체험활동					
		성 별			지 역 별		
		여자	남자	χ^2	동	읍·면	χ^2
건강·보건활동	있다	73.9	75.1	.367	75.4	67.2	8.806**
	없다	26.1	24.9		24.6	32.8	
과학정보활동	있다	87.9	83.6	7.558**	85.9	82.6	2.229
	없다	12.1	16.4		14.1	17.4	
교류활동	있다	94.2	94.6	.142	94.5	93.9	.194
	없다	5.8	5.4		5.5	6.1	
모험개척활동	있다	89.0	88.6	.083	89.6	83.6	8.863***
	없다	11.0	11.4		10.4	16.4	
문화·예술활동	있다	81.2	86.9	12.557***	84.0	85.3	.354
	없다	18.8	13.1		16.0	14.7	
봉사활동	있다	46.6	54.2	11.891***	49.5	53.9	1.930
	없다	53.4	45.8		50.5	46.1	
직업체험활동	있다	59.5	63.9	4.248*	62.4	55.6	4.841*
	없다	40.5	36.1		37.6	44.4	
환경보존활동	있다	91.5	92.9	1.368	92.2	92.8	.150
	없다	8.5	7.1		7.8	7.2	
자기(인성)개발활동	있다	88.6	89.9	.904	89.1	90.1	.258
	없다	11.4	10.1		10.9	9.9	
여행활동	있다	47.4	52.5	4.266*	83.3	14.1	.140
	없다	52.6	47.5		16.7	85.9	

* $p<.05$, ** $p<.01$, *** $p<.001$.

* 출처: 서정아(2015.9.),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NYPI 청소년통계브리프, 24, pp.4-5.

② 아동·청소년 단체 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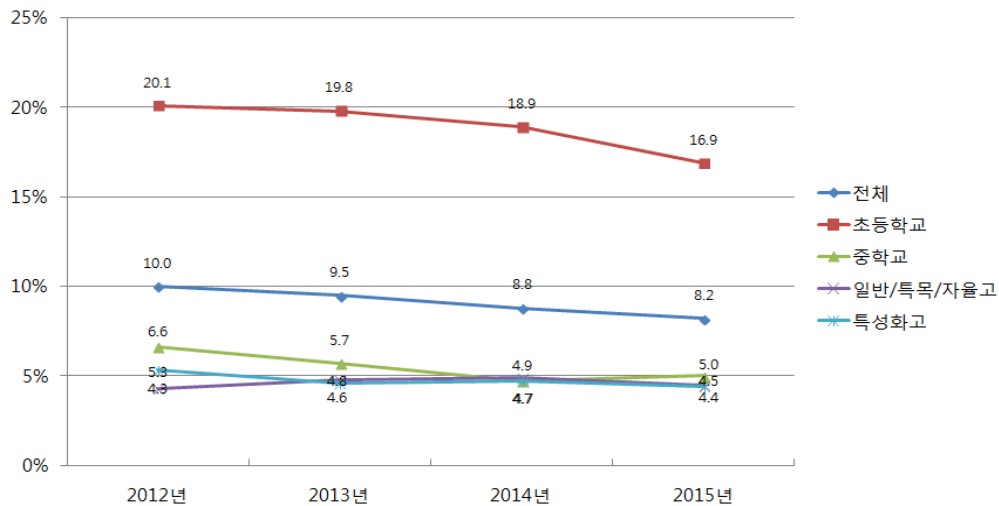
<표 III-6-31>은 청소년들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는 조사결과이다. 전체 10,442명의 응답자 중 84.2%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가입은 했으나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7.7%이었고, 가입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2%로 나타났다. 여자 응답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9.4%로 남자 응답학생들의 7.1%보다 더 많았다. 세부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가장 낮은 청소년단체 가입과 활동을 보이고 있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정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31 청소년 단체 가입 여부

(단위 : %)

구분		가입 X	가입 O, 활동 X	가입 O, 활동 O	전체(N)	χ^2
전체		84.2	7.7	8.2	100.0(10,442)	-
성별	남자	86.4	6.6	7.1	100.0(5,442)	40.746***
	여자	81.8	8.8	9.4	100.0(5,001)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73.5	9.6	16.9	100.0(2,927)	468.146***
	중학교	88.4	6.6	5.0	100.0(3,628)	
	일반고	88.4	7.2	4.4	100.0(2,390)	
	특수목적고	93.7	5.0	1.4	100.0(258)	
	특성화고	87.1	8.5	4.4	100.0(715)	
	자율고	86.5	7.0	6.5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84.8	6.5	8.7	100.0(4,565)	41.186***
	중소도시	85.0	7.6	7.4	100.0(4,267)	
	읍면지역	80.3	11.1	8.6	100.0(1,610)	
학업 성적	상	79.7	9.2	11.1	100.0(3,396)	100.904***
	중	85.0	7.5	7.5	100.0(4,438)	
	하	88.8	6.0	5.2	100.0(2,578)	
경제적 수준	상	81.9	7.8	10.3	100.0(5,372)	73.788***
	중	86.2	7.5	6.3	100.0(3,741)	
	하	87.9	7.5	4.6	100.0(1,322)	

*** $p < .001$.



【그림 Ⅲ-6-14】 청소년 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연도별 추이)

【그림 Ⅲ-6-14】은 최근 1년간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해서 활동한 여부에 관한 2012~2015년의 4년 간 연도별 추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이다. 초등학생에 있어서는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2012년에 20.1%였던 것이 2015년에는 16.9%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소 추이는 초·중·고 학교 유형에 전반적으로 해당되었으나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에서는 2012년 이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와서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③ 동아리활동 참가율

<표 Ⅲ-6-32>은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조사결과이다. 전체 10,429명의 응답학생 중 72.6%가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여자는 73.2%, 남자가 72%로 나타났다. 청소년단체 활동에서와 같이 동아리활동에서도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활동여부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 64.4%로 보였고, 자율고 응답학생들은 78%로 가장 많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사는 응답학생들이 67.3%의 동아리활동 참여 비율을 보여 대도시 응답학생의 77.5%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이 높은 응답학생들의 동아리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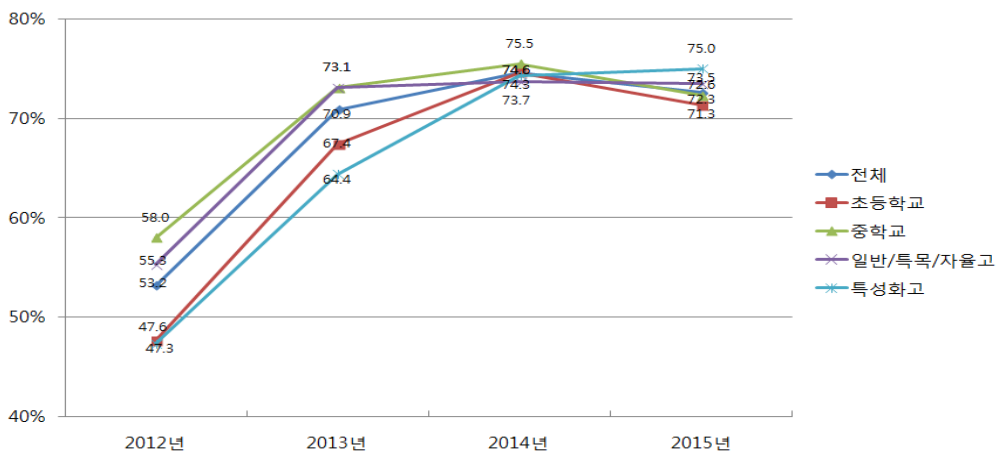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여부에 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그림 Ⅲ-6-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이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초·중·고에서 조금씩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전년도에 비해 단지 특성화고등학교(75.0%)에서만 차이가 비록 미미하지만 근소하게 동아리활동 참여도가

상승하였고 그 밖의 고등학교 유형에서는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보다 그 이후에 동아리활동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6-32 동아리활동 여부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72.6	27.4	100.0(10,429)	-
성별	남자	72.0	28.0	100.0(5,435)	1.896
	여자	73.2	26.8	100.0(4,993)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71.3	28.7	100.0(2,924)	22.092***
	중학교	72.3	27.7	100.0(3,620)	
	일반고	73.5	26.5	100.0(2,389)	
	특수목적고	64.4	35.6	100.0(256)	
	특성화고	75.0	25.0	100.0(715)	
	자율고	78.0	22.0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77.5	22.5	100.0(4,561)	113.363***
	중소도시	67.3	32.7	100.0(4,263)	
	읍면지역	72.4	27.6	100.0(1,605)	
학업 성적	상	77.4	22.6	100.0(3,395)	70.432***
	중	71.5	28.5	100.0(4,434)	
	하	67.9	32.1	100.0(2,568)	
경제적 수준	상	74.7	25.3	100.0(5,369)	25.815***
	중	70.2	29.8	100.0(3,734)	
	하	70.4	29.6	100.0(1,318)	

*** $p<.001$.



【그림 Ⅲ-6-15】 동아리 활동 여부 (연도별 추이)

④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표 III-6-33>에서는 청소년들의 평일 여가시간의 양을 볼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학생 10,440명 중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명 중 1명이 넘어 22.5%에 해당되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평일 여가시간이 1~2시간으로 30.1%로 나타났고, 5시간 이상에 응답한 학생들도 10.2%로 조사되었다. 평일 1시간미만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여자가 24%로 남자의 21.2%보다 조금 많아 여자청소년의 여가시간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평일에 여가시간이 적은 세부 학교유형에는 자율고로 1시간미만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41.1%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특수목적고 38.4%, 일반고 37.6%로 조사된 반면, 특성화고 응답자는 13.9%에 그치고 있어 대학입학 준비에 내몰리는 학교유형일수록 여가시간이 절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에서도 그다지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인 2014년보다 대체로 평일 여가시간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응답되었다(결경준 외, 2014: 520).

표 III-6-33 평일 여가시간

(단위 : %)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22.5	30.1	17.9	12.4	6.9	10.2	100.0(10,440)	-
성별	남자	21.2	29.8	18.9	13.2	6.5	10.4	100.0(5,443)	26.512***
	여자	24.0	30.5	16.8	11.5	7.4	9.9	100.0(4,997)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17.0	23.5	19.3	16.0	10.1	14.1	100.0(2,926)	1185.943***
	중학교	14.9	32.0	20.4	14.8	7.3	10.6	100.0(3,627)	
	일반고	37.6	35.4	13.0	6.1	2.7	5.3	100.0(2,390)	
	특수목적고	38.4	37.3	16.3	4.4	1.5	2.1	100.0(258)	
	특성화고	13.9	21.4	21.6	14.5	10.9	17.6	100.0(716)	
	자율고	41.1	38.7	10.6	4.8	3.1	1.8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22.1	31.0	18.3	12.5	6.8	9.2	100.0(4,563)	16.458
	중소도시	22.3	30.2	17.5	12.1	7.0	10.9	100.0(4,270)	
	읍면지역	24.1	27.5	17.9	12.6	7.0	11.0	100.0(1,607)	
학업 성적	상	22.0	32.7	18.3	12.2	6.6	8.2	100.0(3,396)	60.657***
	중	22.0	30.1	18.7	12.1	6.9	10.2	100.0(4,439)	
	하	24.2	27.0	15.9	12.9	7.3	12.8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21.6	30.7	17.6	12.9	7.1	10.0	100.0(5,371)	24.862**
	중	23.0	29.3	18.4	12.5	7.0	9.8	100.0(3,739)	
	하	24.9	29.9	17.4	9.7	6.1	12.1	100.0(1,322)	

** $p < .01$, *** $p < .001$.

청소년들이 가지는 평일 여가시간에 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표 III-6-3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초·중·고학생의 평일 여가시간이 2012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012년에는 24.9%이었는데 2015년에는 17.0%로 나타났고, 반면에 평일 여가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이 2012년에는 8.1%였는데 2015년에는 14.1%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평일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는데 특히, 특목고와 자율고 학생들은 대학 입학시험 준비로 인해 여가시간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34 평일 여가시간 : 연도별 추이 (단위 : %)

학교유형		연도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초등학교		2012	24.9	28.6	19.8	12.5	6.0	8.1
		2013	22.5	26.8	19.8	11.6	8.2	11.2
		2014	17.6	25.4	19.2	15.3	10.3	12.2
		2015	17.0	23.5	19.3	16.0	10.1	14.1
중학교		2012	21.6	30.7	19.9	11.8	7.2	8.7
		2013	21.8	34.2	19.9	9.7	6.1	8.4
		2014	14.8	27.9	20.7	16.9	9.1	10.5
		2015	14.9	32.0	20.4	14.8	7.3	10.6
고등학교	전체	2012	38.3	27.5	14.8	8.5	4.9	6.0
		2013	43.3	31.0	13.5	5.0	3.3	3.9
		2014	37.9	30.0	12.1	9.4	4.8	5.7
		2015	33.8	33.4	14.5	7.4	4.1	6.9
	일반/특목 /자율고	2012	43.1	30.3	14.0	6.5	3.2	3.0
		2013	48.4	32.3	11.8	3.5	1.8	2.2
		2014	43.1	31.9	11.2	6.9	3.0	3.9
		2015	38.2	36.1	12.9	5.8	2.6	4.4
	특성화고	2012	22.7	18.2	17.5	15.2	10.6	15.9
		2013	20.2	24.8	21.5	11.8	10.2	2.2
		2014	13.9	21.2	16.5	21.1	13.5	13.8
		2015	13.9	21.4	21.6	14.5	10.9	17.6

⑤ 하루 평균 학습시간

<표 III-6-35>는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학습시간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응답자 10,434명 중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2~3시간미만 학습한다는 학생비율은 20.1%였고, 3~4시간미만은 19%로 다음으로 많았다. 1시간미만 학습한다는 학생의 비율은 16.4%에 그쳤고, 5~6시간미만이 8.6%, 6시간 이상 학습한다는 응답도 6.1%에 달했다. 방과 후 학습을 많이 하는 비율은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학교유형별에서는 특수목적고 학생의 응답이 6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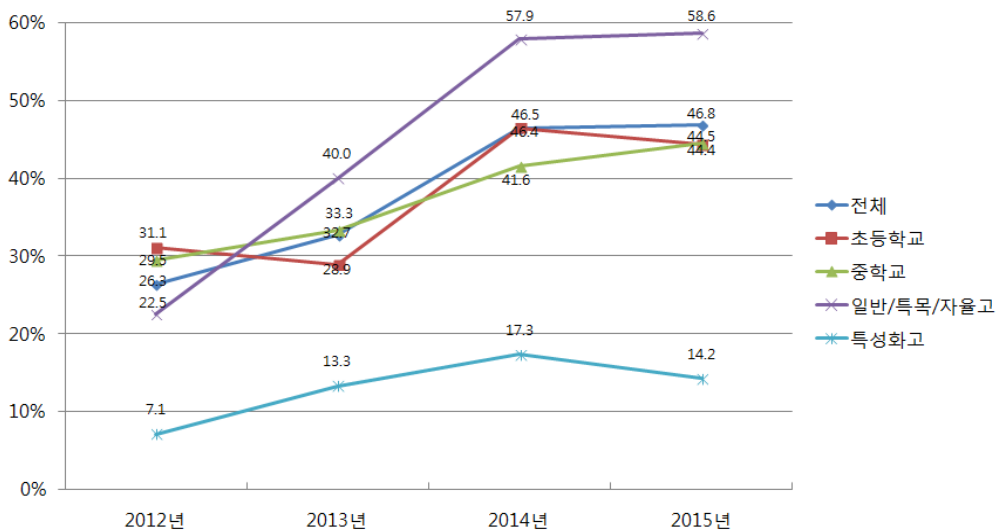
학습에서 17.9%로 다른 학교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자율고 학생이 10.6%로 나타난 반면, 특성화고 학생에게서는 2.1%의 낮은 응답을 보였다. 반대로 1시간미만의 방과 후 학습시간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49.9%로 가장 높았고, 특수목적고 학생이 34.7%로 다음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방과 후 학습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학교의 수업시간 외에 방과 후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여가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시간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해 결과적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한국의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학업시간이 많은 것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이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획기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III-6-35 정규 수업시간 제외 공부시간 (단위 : %)

구 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6.4	16.9	20.1	19.0	13.1	8.6	6.1	100.0(10,434)	-
성별	남자	17.9	17.8	20.6	18.2	11.7	7.7	100.0(5,434)	52.306***
	여자	14.8	15.8	19.5	19.9	14.6	9.4	100.0(4,999)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11.0	20.8	23.7	18.5	11.4	8.2	100.0(2,921)	1370.061***
	중학교	15.6	16.8	23.2	22.1	12.2	6.6	100.0(3,627)	
	일반고	13.9	12.4	16.3	19.3	17.4	12.3	100.0(2,389)	
	특수목적고	34.7	10.2	7.9	14.1	8.4	6.8	100.0(258)	
	특성화고	49.9	24.2	11.7	7.3	4.0	0.8	100.0(716)	
	자율고	7.8	9.3	13.2	17.7	23.5	17.9	100.0(524)	
	대도시	15.2	15.7	19.8	18.8	13.8	9.8	100.0(4,559)	60.696***
지역 규모	중소도시	16.4	18.1	20.2	19.7	12.8	7.7	100.0(4,268)	
	읍면지역	19.6	16.9	20.5	17.6	11.5	7.3	100.0(1,607)	
학업 성적	상	8.0	13.4	19.8	22.0	16.0	11.8	100.0(3,394)	719.414***
	중	15.1	18.5	21.0	19.7	13.0	7.4	100.0(4,434)	
	하	29.8	18.5	18.7	13.7	9.5	6.3	100.0(2,574)	
경제적 수준	상	11.7	16.3	20.8	20.3	14.6	9.6	100.0(5,368)	263.700***
	중	19.3	17.7	20.7	18.0	11.5	7.6	100.0(3,737)	
	하	27.3	16.7	15.4	16.4	11.3	6.9	100.0(1,321)	

*** $p < .001$.

【그림 III-6-16】 그래프는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3시간 이상 학습하는 학생들에 관한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습시간이 늘어나는 추이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학교유형은 일반/특목/자율고로 2012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22.5%만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3시간 이상을 공부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58.6%로 상승하여 거의 3배에 가깝게 공부시간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입학을 앞둔 학생들의 공부시간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단지 초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공부시간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16】 정규 수업시간 제외 평균 학습시간(3시간 이상) (연도별 추이)

(3)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①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지표」에 나타난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여가활동 만족도(통계청, 2014a)를 살펴보면, 2013년에 13~19세의 여가활동 만족도는 만족에 40%, 보통이 43.2%, 불만족이 16.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에 비해 같은 연령대의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아진 결과로 만족이 29.8%, 보통이 45.5%, 불만족이 24.7%에서 만족도가 10% 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의 통계에서 여가활동에 불만족한 13~19세의 청소년들의 이유들로는 시간부족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33.4%, 취미가 없어서가 10.5%, 여가시설의 부족이 4.4%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불만족한 이유로 시간부족이 가장 많은 것은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기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만족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점이다.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복지적 할인혜택을 받아 여가활동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여가활동들에 참여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Ⅲ-6-36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이유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잡	여가 시설 부족	여가 정보 부족	취미 없음	건강 체력 부족	함께할 사람 없음
2011	19.3	48.6	32.1	60.9	23.2	1.0	1.8	1.1	3.4	6.8	1.6
남자	20.6	49.4	30.0	61.0	24.4	1.1	1.8	1.0	3.6	5.5	1.3
여자	17.9	47.9	34.1	60.9	22.1	1.0	1.7	1.1	3.3	7.9	1.8
13~19세	29.8	45.5	24.7	34.2	45.1	1.2	7.0	2.3	7.1	0.7	1.6
20~29세	23.1	51.4	25.5	58.2	27.5	1.8	2.7	1.2	5.4	1.0	2.0
2013	27.1	47.8	25.1	57.7	21.1	1.6	1.8	1.2	4.7	9.3	2.3
남자	28.4	47.9	23.8	59.3	21.5	1.6	1.6	1.1	5.3	6.9	2.4
여자	25.8	47.8	26.4	56.4	20.8	1.7	1.9	1.3	4.2	11.4	2.2
13~19세	40.0	43.2	16.8	33.4	43.7	1.5	4.4	2.4	10.5	0.7	2.0
20~29세	33.9	47.5	18.6	55.9	23.4	1.5	3.7	1.3	7.2	1.9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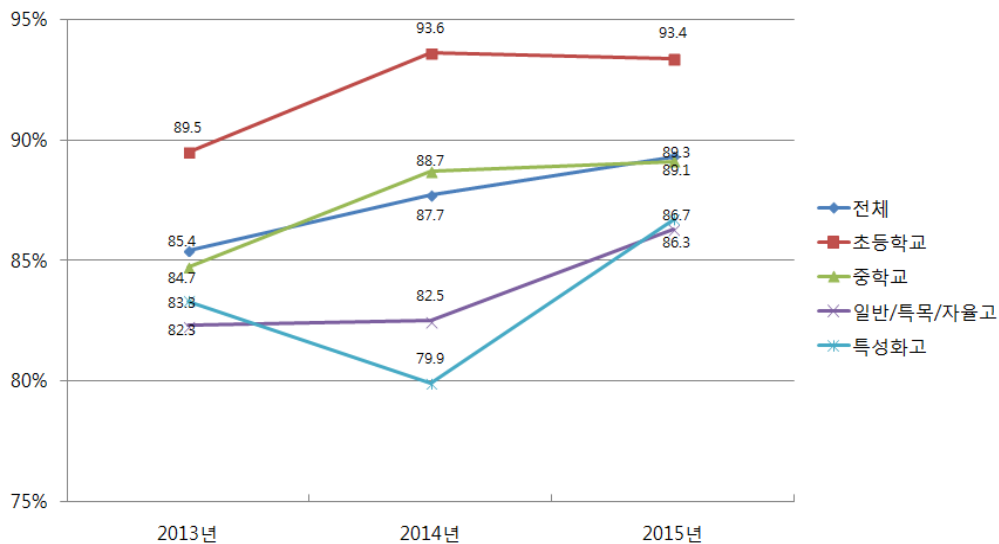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2014a). 2014 한국의 사회지표, p.361.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여가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낸 비율은 4.4%여서 시설에 대한 불만족은 그다지 큰 편이 아님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14a). 2015년에 조사된 <표 Ⅲ-6-37>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청소년 시설 이용에 관한 만족도에 관한 것이다. 응답자의 74%가 청소년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15.3%를 합하면 89.3%로 10명 중 9명은 청소년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성차에 따르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에서 여성 응답자(14.3%)가 남성(16.4%)로, 남자청소년이 청소년 시설 이용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과 지역규모별에서의 차이도 전체적으로 거의 없었으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 시설 이용에 있어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37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

구분	평균(SD)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3.03(0.56)	1.7	8.9	74.0	15.3	100.0(9,270)	—
성별	남자	3.01(0.61)	2.6	10.2	70.8	100.0(4,699)	81.836***
	여자	3.05(0.5)	0.8	7.5	77.4	100.0(4,571)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3(0.61)	1.5	5.1	62.6	100.0(2,689)	771.478***
	중학교	2.99(0.53)	1.9	9.0	77.1	100.0(3,214)	
	일반/특목/자율고	2.91(0.49)	1.8	11.8	80.2	100.0(2,764)	
	특성학교	2.92(0.49)	1.5	11.9	80.1	100.0(603)	
지역 규모	대도시	3.06(0.55)	1.6	7.9	73.6	100.0(4,040)	23.436***
	중소도시	3(0.57)	2.0	9.9	74.0	100.0(3,770)	
	읍면지역	3.03(0.54)	1.4	8.9	75.3	100.0(1,460)	
학업 성적	상	3.12(0.56)	1.2	6.8	71.2	100.0(3,141)	178.418***
	중	3.02(0.54)	1.7	8.7	75.4	100.0(3,920)	
	하	2.92(0.56)	2.5	12.4	75.7	100.0(2,181)	
경제적 수준	상	3.1(0.56)	1.3	7.2	72.0	100.0(4,852)	187.888***
	중	2.98(0.53)	1.8	9.8	76.7	100.0(3,269)	
	하	2.89(0.58)	3.3	13.4	74.9	100.0(1,142)	

** $p<.01$, *** $p<.001$.

【그림 Ⅲ-6-17】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 (연도별 추이)

【그림 Ⅲ-6-17】은 응답학생들의 청소년시설 만족도에 관한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이이다. 2013년에는 전체 학생의 85.4%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였고, 2015년에는 89.3%의 학생이 만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 정도

표 Ⅲ-6-38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1) 가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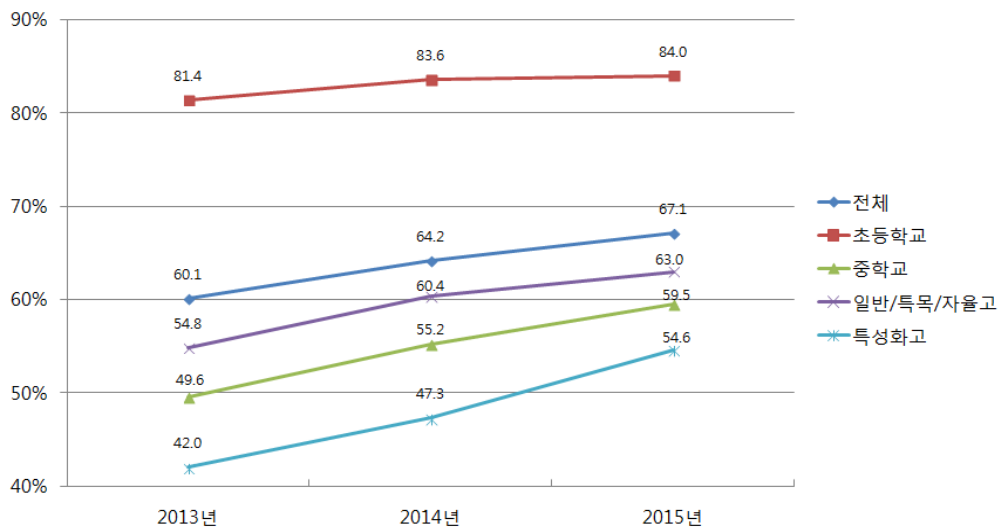
구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전체(N)	χ^2
전체		13.3	19.6	46.1	21.0	100.0(10,427)	-
성별	남자	15.5	19.7	44.3	20.5	100.0(5,436)	51.426***
	여자	10.9	19.6	48.0	21.6	100.0(4,991)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6.4	9.6	36.6	47.4	100.0(2,923)	1879.349***
	중학교	16.6	24.0	47.8	11.7	100.0(3,624)	
	일반고	13.8	24.3	53.4	8.5	100.0(2,385)	
	특수목적고	23.8	23.3	41.2	11.7	100.0(256)	
	특성화고	21.3	24.1	46.0	8.6	100.0(716)	
	자율고	10.8	16.5	56.8	15.9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12.6	18.5	46.1	22.8	100.0(4,561)	21.108**
	중소도시	14.0	20.4	45.8	19.8	100.0(4,264)	
	읍면지역	13.7	20.6	46.7	19.1	100.0(1,603)	
학업 성적	상	8.6	16.3	45.0	30.1	100.0(3,392)	519.817***
	중	12.4	19.2	48.4	20.0	100.0(4,432)	
	하	21.3	24.8	43.5	10.4	100.0(2,572)	
경제적 수준	상	10.8	16.3	44.6	28.3	100.0(5,366)	429.876***
	중	15.1	22.1	48.4	14.4	100.0(3,734)	
	하	18.4	26.2	45.5	9.9	100.0(1,320)	

** $p < .01$, *** $p < .001$.

<표 Ⅲ-6-38>은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가정이 얼마나 지지를 해주고 있는 가를 알아보는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10,427명 중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3.3%,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9.6%로 합해서 32.9%의 청소년은 가정으로부터 자신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을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응답으로 가정이 지지하는 편은 46.1%, 매우 지지하는 비율은 21%로 대체로 3명 중 1명은 청소년 단체활동에 있어서 가정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청소년 단체활동에 있어서 가정으로부터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학교유형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상급학교 응답자들보다 청소년 단체활동에 가정으로부터 더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지역규모별 차이는 거의 없었고,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으로부터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볼 때에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게는 정부로부터 이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III-6-18】의 그래프에는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으로부터의 지지도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있다. 모든 학교의 유형들에서 지지도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의 지지도가 가장 높아 80%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지도가 가장 낮아 2013년에는 42%였다가 2015년에는 54.6%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18】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가정) (연도별 추이)

<표 III-6-39>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한 학교의 지지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가 9.4%, 지지하는 편이다가 14.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24.2%는 학교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응답자 4명 중 3명 정도는 학교가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녀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세부 학교유형별 응답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단체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응답은 다른 고등학교 유형에서의 응답보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규모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가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대하여 지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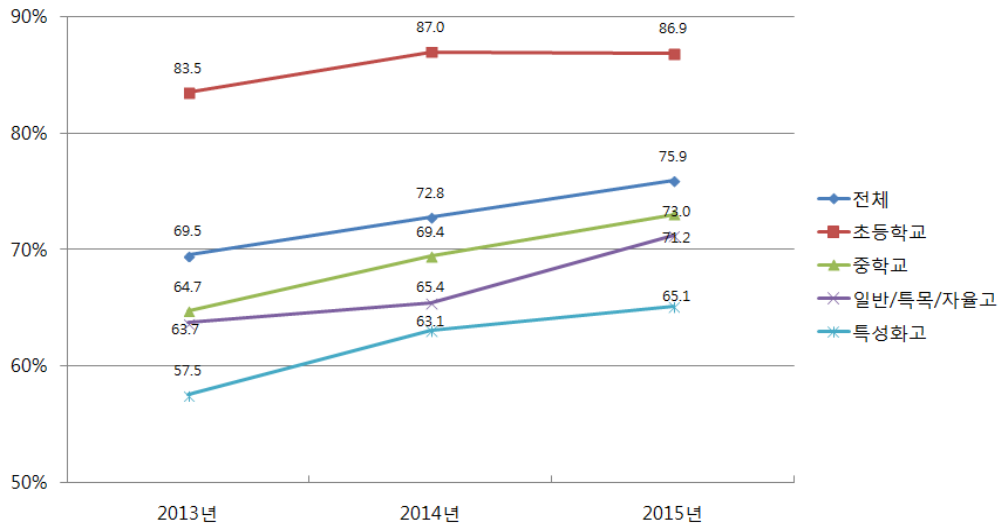
표 Ⅲ-6-39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2) 학교

(단위 : %)

구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전체(N)	χ^2
전체		9.4	14.8	53.7	22.2	100.0(10,425)	-
성별	남자	11.5	15.3	51.0	22.2	100.0(5,429)	69.561***
	여자	7.1	14.3	56.5	22.1	100.0(4,996)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4.4	8.7	43.2	43.7	100.0(2,924)	1237.547***
	중학교	11.7	15.3	58.1	14.9	100.0(3,620)	
	일반고	9.8	19.3	58.8	12.1	100.0(2,385)	
	특수목적고	18.8	24.5	46.8	9.8	100.0(258)	
	특성화고	13.8	21.1	53.0	12.1	100.0(715)	
	자율고	8.6	11.5	62.3	17.5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8.3	13.7	54.0	24.0	100.0(4,560)	39.230***
	중소도시	10.3	16.0	54.1	19.7	100.0(4,261)	
	읍면지역	10.0	14.9	51.7	23.4	100.0(1,605)	
학업 성적	상	6.0	12.7	50.7	30.6	100.0(3,390)	414.514***
	중	8.7	14.3	55.5	21.5	100.0(4,433)	
	하	15.2	18.5	54.5	11.8	100.0(2,571)	
경제적 수준	상	8.1	13.2	50.9	27.8	100.0(5,367)	241.208***
	중	10.1	15.6	57.2	17.1	100.0(3,731)	
	하	12.7	19.3	54.6	13.4	100.0(1,320)	

*** $p < .001$.

【그림 Ⅲ-6-19】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로부터의 지지도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6-18】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모든 학교의 유형들에서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2013년에 전체 학생의 69.5%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해 학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015년에는 75.9%가 지지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19】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시수준(학교) (연도별 추이)

4) 소결

2015년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제6영역으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을 대분류 지표로 하고 있다. 이 대분류 지표는 다시 UN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관련된 내용들에 근거하여 ‘6-1. 교육에의 권리’를 중분류 지표로 하고 있고, ‘6-2. 교육의 목표’는 역시 아동권리협약 제29조의 내용들을 세부 지표들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중분류 지표인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은 아동권리협약의 제31조의 내용들은 담은 3개의 소분류 지표들과 그 하위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6-1. 교육에의 권리’ 중분류 지표는 UN의 아동권리협약 제29조의 내용에 따라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2. 학교 부적응률’, ‘6-1-3. 대안교육 참여율’로 구성되어있고 각각의 세부 하위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아동권리협약 제28조 1호는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로 말하면서 협약국이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주고, 이 교육권이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분류 지표라 할 수 있는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지표에서는 협약국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 보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학생 취학률 및 진학률, GDP 대비 학생 1인당의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가 세부 지표항목들로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장 실태를 2015년 조사결과에 따라 간략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 취학률에서는 2014년도 초등학교 취학률이 96.4%, 중학교 취학률이 97.7%, 고등학교 취학률은 93.7%로 매우 높은 편이나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이래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원인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학생 진학률에 있어서는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고등학교까지의 진학률이 99%를 넘고 있고, 고등교육과정으로의 진학도 2000년에 62%에서 2014년 70.9%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2010년에 전문계고 진학률이 71.1%로 가장 높았으나 점차 낮아져 2013년에는 46.8%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자 고등교육과정으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정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대폭 증설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구매력지수에 따른 1인당 GDP는 세계 29위에 해당하고 있고,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12년도 기준으로 한국이 18.4명, 18.1명, 15.4명인데 반하여,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5.3명, 15.5명, 13.8명으로 과거에 비해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다른 소분류 지표인 ‘6-1-2. 학교부적응률’은 아동권리협약 제29조 2호 “당사국의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와 관련이 있는 지표이다.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학교 규율도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고 교육제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학교 내 학칙들은 넓은 의미의 학교 규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이 소분류 지표에 해당되는 하위 세부지표들 중 가장 심각한 지표인 ‘학업중단율’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여 아동권리협약으로부터 부여된 교육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학업을 중단하려는 이유에서 협약에서 말하는 학교 규율에의 원인은 비록 6.5%로 크지는 않지만, ‘공부하기 싫어서’가 45.6%,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29.6%는 얼마나 대한민국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단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실태조사 결과이다.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조사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3.5%로 거의 4명 중 1명에 해당되는 수치여서 학교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공교육의 부실함으로 소분류 지표 ‘6-1-3. 대안교육 참여율’이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대안교육의 상황도 공교육의 대안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인가된 대안학교의 수는 100개도 채 되지 않으며, 확산의 정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대안교실’과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하여 학업중단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서열화된 대학교 입학 경쟁을 대학교평준화 제도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문제의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중분류 지표 ‘교육의 목표’는 아동권리협약 제29조 1호는 협약국이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등을 존중하는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소분류 지표인 ‘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은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에 관하여 묻고 있는데 건강과 인성 함양에 있어 각각 전체 응답학생의 23.7%와 25.5%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학생 4명 중 1명 정도는 학교가 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17.5%의 학생들은 학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자신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중분류 지표 ‘6-2. 교육의 목표’에 해당되는 또 다른 지표인 ‘6-2-2.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는 최근 앞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공교육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국의 진보적인 교육청들을 중심으로 실험되고 있는 혁신학교에 관한 내용을 세부지표들로 하고 있다. 현재 2014년도 7월 기준 전국의 혁신학교 운영 학교 수는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 6개 시·도교육청에 총 628개교이다. 혁신학교는 기존의 학교들이 보여주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공동체 수업, 협동학습, 프로젝트 수업, 토론·토의 방식의 수업 등으로 학습의 문화를 혁신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수업 공동체, 학교생활 만족도 및 행복도에 있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지표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에 혁신학교가 가장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고무적이다.

마지막으로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중분류 지표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이러한 활동들을 뒷받침 해주는 시설과 이들의 참여율, 만족도,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들이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에서 나타난 실태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2,266개로 2005년에 비해 2배가 증가되어 공공도서관 869개, 박물관 749개, 미술관 198개, 문예회관 221개, 지방문화원 22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많아 경기도의 431개 다음으로 서울이 315개로 전국의 약 33%에 해당되고 있고, 경북이 176개, 강원이 172개 순으로 많았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의 활동시설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의 총 수는 781개로 조사되었다.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은 경기도가 149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강원도가 87개소, 경남이 71개소, 경북이 67개소, 서울이 64개소, 전북이 55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른 소분류 지표 ‘6-3-2.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은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및 예술 활동에의 참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세부지표들로 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및 예술 활동에의 참여율 실태를 보면, 2014년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9~24세의 응답 청소년들 3,000명 중 77.5%인 4명 중 3명 이상이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을 보면 응답학생 중 84.2%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동아리활동 참가율은 72.6%가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의 도입으로 2012년 이후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처음으로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에 있어서는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명 중 1명이 넘어 22.5%나 되었고, 5시간 이상에 응답한 학생들도 10.2%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대학입학 준비에 내몰리는 특수목적고, 자율고 등의 학교유형일수록 여가시간이 절대 부족하고, 전해에 비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응답되었다.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과 상대되는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보면 전체응답자 중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2~3시간미만 학습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였고, 3~4시간미만은 19%, 5~6시간미만이 8.6%, 6시간 이상 학습한다는 응답도 6.1%에 달했다. 세부 학교유형별에서 특수목적고 학생의 17.9%가 6시간 이상한다고 응답해서 다른 학교유형보다 절대적으로 많았다. 결국 학교의 수업시간 외에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 1호에서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 향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마지막 소분류 지표인 ‘6-3-3. 여가·문화·예술 활동의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와 관련해서 2013년 13~19세 청소년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있어서는 응답은 만족에 40%, 보통이 43.2%, 불만족이 16.8%로 나타나 2011년에 비해 10% 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불만족한 청소년들의 이유들로는 시간부족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33.4%, 취미가 없어서가 10.5%, 여가시설의 부족이 4.4% 순으로 나타나 역시 학업에 내몰려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태를 읽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시설 이용 만족도에 있어서는 10명 중 9명이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여가에 있어서 시설 인프라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간과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임이 확인되었다. 소분류 영역의 마지막 세부지표 항목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 정도’에서는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학부모나 교사의 지지 정도가 어떠한 가를 알고자 하는 지표이다. 대체로 3명 중 1명 정도의 청소년은 그들의 단체활동에 있어서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4명 중 3명 정도는 학교로부터 그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롭게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긍정적 영향이라 볼 수 있고, 향후 자유학기제도 제도적으로 자리를 잘 잡으면 학교의 지지 정도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평일 여가시간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단체활동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5년에만 소폭 감소된 것을 나타냈는데,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동아리활동이 최근 하향세를 보여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소년의 단체활동에 대하여 가정과 학교로부터 지지도가 완만하게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7. 특별보호조치⁴⁷⁾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①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2011년을 기준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난민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이하 <표 III-7-1> 참조).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3,213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이중 94명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최근까지 한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총 7,681명으로 이중 408명만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불인정 3,713명, 철회 1,461명으로 집계된다. 2015년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난민 아동·청소년의 수와, 인정이나 불인정, 철회를 받은 공식적인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한국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낮으므로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난민 신청 후 심사대기를 받는 사람이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3,231명이다. 2015년 사유별 난민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적 사유가 8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적인 이유가 772명, 특정 구성원인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가 473명, 인종 105명, 국적 5명, 내전으로 인한 경우가 164명, 가족 결합을 위한 이유가 126명, 기타의 이유가 714명이 있었다(법무부, 2015.8.: 30). 난민 중에서도 특히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며, 난민 신청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인권 수준이 될 수 있도록

47) 이 절은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가 집필하였다.

인도적 차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표 III-7-1>에서 제시된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은 2014년 6월말 기준, 2014년 말 기준, 2015년 8월 기준까지 제시되었으며, 2014년과 2015년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로만 현황을 제시하여 2013년 이전의 난민현황과 모든 지표추이를 비교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난민 신청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는 2013년 23명에서 2014년 13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신 인도적 체류의 경우 2013년까지 10명 미만이던 것이 2013년에 44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 중에서 청소년 비율이 20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지만, 2011년부터 대폭 감소하여 지금 현재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고, 2010년 7.1%이던 것에 비하면 2014년에는 4.5%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0년 난민 신청자가 총 30명이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129명이나 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난민의 증가추세 혹은 감소추세를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인도적 체류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이중 아동·청소년의 인도적 체류 비율은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난민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중 아동·청소년의 난민 지위를 불인정하는 사례는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까지는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아동·청소년 난민 지위 신청에 대한 불인정 숫자와 비율, 철회 숫자와 비율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례는 없으나 지금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불인정의 숫자와 철회 숫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난민의 증가는 세계정세와도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긴 하지만,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 여전히 난민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아동·청소년의 난민 신청과 인정에 있어서도 우호적이거나 친인권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난민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III-7-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연도	구분 (세)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18세 미만 (명)	아동·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청소년 비율 (%)	전체 (명)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4		0	0.0	148	2	11.1	18	0	0.0	1	0	0.0	12	0	0.0	10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2006		7	2.5	278	0	0.0	11	0	0.0	13	2	1.9	108	0	0.0	46
2007		11	1.5	717	5	38.5	13	2	22.2	9	2	2.4	84	1	1.5	67
2008		20	5.5	364	8	22.2	36	0	0.0	14	1	1.3	75	0	0.0	117
2009		20	6.2	324	6	8.6	70	4	18.2	22	15	1.9	804	3	1.5	206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1		29	2.9	1,011	7	16.7	42	4	20.0	20	8	4.0	202	3	3.2	95
2012		38	3.3	1,143	14	23.3	60	7	22.6	31	9	2.0	454	3	1.4	211
2013		69	4.4	1,574	23	40.4	57	2	33.3	6	12	2.3	523	1	0.3	331
2014. 6.		40	3.9	1,038	6	19.4	31	31	10.5	295	14	1.4	1,024	2	0.9	235
2014		129	4.5	2,896	13	13.8	94	44	8.2	539			1,743			331
2015.8.				3,213			51			136			1,783			132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529.

법무부(2014b).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93-104.

법무부(2015.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30.

② 탈북 난민 아동 수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19세 미만의 탈북 아동·청소년의 수는 모두 4,512명이다. 탈북 난민의 전체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탈북 아동·청소년의 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입국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조사 시기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연령대 구분이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나 탈북 아동·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므로 이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의 증대와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표 III-7-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598	1,512	2,258	1,945	1,185	442	312	8,252
여	599	1,803	5,460	6,203	3,314	1,008	880	19,267
합계	1,197	3,315	7,718	8,148	4,499	1,450	1,192	27,519

* 출처: 통일부 정책지원과 (2015.10.3.).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웹 사이트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에서 2015년 10월 3일 인출.

표 Ⅲ-7-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연도 대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전체 (입국자수)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6	2,706	1,502	1,514	1,397	614
6-20세 (입국자수)	60	124	211	220	330	224	336	366	378	656	306	501	253	407 (9세~24세)	19세 미만	

* 출처: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313.

통일부 정착지원과 (2015.10.3.),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웹 사이트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에서 2015년 10월 3일 인출.* 원자료: 통일부 웹 사이트 www.unikorea.go.kr

③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경험에서 우선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침해받은 경험에 대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는 <표 Ⅲ-7-4>와 같다.

표 Ⅲ-7-4 차별받은 경험_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8.9	0.6	0.2	0.1	0.1	100.0(10,452)	-
성별	남자	98.4	0.9	0.4	0.2	100.0(5,448)	29.589***
	여자	99.5	0.3	0.1	0.1	100.0(5,0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99.1	0.4	0.1	0.1	100.0(2,935)	12.579
	중학교	98.7	0.7	0.4	0.2	100.0(3,629)	
	고등학교	98.9	0.7	0.2	0.1	100.0(3,888)	
지역 규모	대도시	98.7	0.7	0.3	0.2	100.0(4,568)	7.170
	중소도시	99.0	0.6	0.2	0.1	100.0(4,274)	
	읍면지역	99.4	0.4	0.1	0.1	100.0(1,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9.0	0.5	0.2	0.1	100.0(9,428)	57.120***
	한부모가정	97.6	1.3	0.5	0.4	100.0(865)	
	조손가정	97.3	0.5	0.0	0.0	100.0(98)	
	기타	98.2	0.9	0.0	0.0	100.0(61)	
경제적 수준	상	99.2	0.6	0.1	0.1	100.0(5,380)	11.420
	중	98.6	0.7	0.4	0.1	100.0(3,743)	
	하	98.6	0.5	0.3	0.3	100.0(1,322)	

*** $p < .001$.

<표 III-7-4>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다가 98.9%에 다다랐는데 학교급별이나,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의한 차이에서 유발된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었으나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차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횟수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것이 일 년에 1-2회 정도로 결과만으로 보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2014년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에서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90.5%가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표 III-7-5>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것으로, 2012년 기준으로 친구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은 다문화가정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는 201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2015년인 현재 다소 실태가 변화되어 차별이나 무시한 사람 또는 내용 등 인권 침해의 종류가 달라졌을 확률이 있다. 3년마다 조사되는 실태조사의 한계로 가장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과 그 자녀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이루어지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족과 자녀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이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표 III-7-5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단위 : %(명))

구분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차별받지 않았다	약간 차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친구	29.2 (2,676)	34.3 (3,147)	27.7 (2,543)	8.7 (801)	100.0 (9,167)
교사	71.6 (5,388)	18.9 (1,419)	8.2 (614)	1.3 (100)	100.0 (7,521)
친척	76.4 (6,804)	18.0 (1,607)	4.2 (378)	1.3 (116)	100.0 (8,905)
이웃	63.6 (5,830)	24.7 (2,267)	9.8 (899)	1.9 (172)	100.0 (9,167)
모르는 사람	58.5 (5,367)	20.7 (1,898)	15.1 (1,381)	5.7 (522)	100.0 (9,167)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532.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3a).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630-638에서 수정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표 III-7-6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단위 : 명, %)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각종 학교	계
한국출생	29,303	8,196	2,541	40,040	32,831	9,174	3,809	45,814	41,575	10,325	5,598	57,498	50,191	11,054	6,688	166	68,099
중도입국	2,676	986	626	4,288	3,065	1,144	713	4,922	3,268	1,389	945	5,602	3,965	1,389	723	184	6,261
외국인자녀	1,813	465	348	2,626	3,534	976	534	5,044	3,454	811	441	4,706	6,006	1,384	735	51	8,176
계	33,792	9,647	3,515	46,954	39,430	11,294	5,056	55,780	48,297	12,525	6,984	67,806	60,162	13,827	8,146	401	82,536
비율	74.1	19.7	6.2	100	70.7	20.3	9.0	100	71.2	18.5	10.3	100	72.9	16.8	9.9	0.4	100

* 출처: 교육부(2013.10.22).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보도자료,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51029&mode=view>에서 2014년 7월 31일 인출.

교육부(2015.8). 교육부 기본통계, p.9. 교육통계서비스 웹 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5년 9월 인출.

* 원자료: 2013년 통계는 교육부 교육통계, 2012년 이후 통계는 시·도 교육청 통계자료 취합.

2015년 교육부 기본통계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수는 총 82,536명으로 전년대비 21.7%가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수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 중인 곳은 초등학교로 현재 2014년보다 11,937명이 증가하여 60,162명에 이른다. 유형별 다문화가정 학생의 구분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82.5%로 68,099명에 이른다. 학교급별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전체 학교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I-7-7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최근 6년)

(단위 : 명)

인원수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다문화 학생 수(A)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전체 학생 수(B)	7,447,159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6,819,927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0.35%	0.44%	0.55%	0.70%	0.86%	1.07%	1.21%

* 출처: 교육부(2015.3). 교육부 보도자료("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5. 교육부 웹 사이트 <http://moe.go.kr/web/106888/ko/board/view.do?bbsId=339&boardSeq=58722&mode=view>에서 인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상태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루어지므로 2012년 실태조사가 현재까지는

가장 공식적인 현황자료이며 <표 Ⅲ-7-8>와 같다.

표 Ⅲ-7-8 2013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대학교, 대학원 재학	학교를 다니지 않음 (중퇴, 미취학, 졸업 등)	합계
성별	여성	67.0	11.2	21.8	100.0
	남성	67.3	11.8	20.9	100.0
연령	9~10세	99.9	0.0	0.1	100.0
	12~14세	99.3	0.0	0.7	100.0
	15~17세	93.7	0.0	6.3	100.0
	18세 이상	8.0	33.3	58.7	100.0
전체		67.2(44,693)	11.5(7,638)	21.3(14,205)	100.0(66,536)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534.

<표 Ⅲ-7-9>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 비록 경기도의 추이이기는 하지만 경기도는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한국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과 그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Ⅲ-7-9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단위 : %, 명)

연도	국제결혼가정(①)				외국인가정(②)				다문화가정(①+②)				전체학생 대비	전년대비 증가율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총계		
2012	6,967	1,855	783	9,605	588	113	61	762	7,555	1,968	844	10,367	0.60	21
2011	5,836	1,498	632	7,966	437	123	52	612	6,273	1,621	684	8,578	0.48	20
2010	5,029	1,144	514	6,687	328	115	46	489	5,357	1,259	560	7,176	0.39	25

* 출처: 최충옥(2013).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p.57.

경기도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재학현황을 보면, 2010년에서 2012년이 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재학률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학이상의 상급학교 재학률을 높이고 학업중단 비율을 낮추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길이자,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탈북학생 2,183명의 학생이 초등학교(1,128명), 중학교(684명), 고등학교(371명)에 나뉘어 재학 중이다.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에도 283명이 재학 중이어서 총 2,466명의 탈북학생들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학생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지원과 한국 학교에서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Ⅲ-7-10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14.4)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14. 4)	575	553	325	359	189	182	283	2,466
	1,128		684		371			
	2,183							

* 출처: 교육부(2015.3.),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 p.8. 교육부 웹 사이트 <http://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33&encodeYn=Y&boardSeq=58634&mode=view>에서 2015년 5월 인출.

연도별로 탈북학생의 재학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는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생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이 2014년을 기준으로 478명이며, 이는 23.6%에 해당한다.

표 Ⅲ-7-11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14.4)

(단위 : 명, %)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	중	고	
2010.4	562(49.2%)	305(26.7%)	276(24.1%)	1,143
2011.4	773(54.5%)	297(21.0%)	347(24.5%)	1,417
2012.4	1,020(60.7%)	288(17.1%)	373(22.2%)	1,681
2013.4	1,204(60.4%)	351(17.6%)	437(21.9%)	1,992
2014.4	1,159(57.3%)	478(23.6%)	385(19.0%)	2,022

* 출처: 교육부(2013.4.), 2014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917>에서 2015년 5월 인출.
교육부(2015.3.),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 p.9. 교육부 웹 사이트 <http://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33&encodeYn=Y&boardSeq=58634&mode=view>에서 2015년 5월 인출.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은 2012년과 2013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수는 2013년에 8,826명이 증가하여 55,780명이 되었으나 학업중단자의 수도 그만큼 증가하여 전체의 비율은 1%로 같은 결과가 나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 비율이 각각 0.1% 증가하였고,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12년과 2013년이 같다. 2015년 여성가족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하여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가 0.6%, 중학교가 0.8%, 고등학교가 1.6%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여성가족부, 2015: 5).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고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기본법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문화가족 자녀가 중도탈락하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권의 보장과도 관련이 있다.

표 III -7-12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초	중	고	계
2012.3.~ 2013.2.	재학생 수	33,792	9,647	3,515	46,954
	학업중단자 수	278	110	73	461
	학업중단율(%)	0.8	1.1	2.1	1.0
2013.3.~ 2014.2.	재학생 수	39,430	11,294	5,056	55,780
	학업중단자 수	328	140	104	572
	학업중단율(%)	0.9	1.2	2.1	1.0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65에서 재구성
여성가족부(2015).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5

* 주: 1) 재학생수는 4월 1일 기준, 학업중단자수는 해당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2) 학업중단자 비율=학업중단 자녀/(현재 재학자녀+현재 학업중단 자녀)×100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의 경우는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2008년 이후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학생과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중도탈락률이 전체적으로는 1% 감소하였지만 고등학교의 중도탈락률은 2014년에 5배 이상 증가하여 탈북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인의 삶으로 안전하게 이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의 학업수준이 탈북청소년에게는 더욱 어려워져 학업을 따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고, 진로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진로선택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재학률을 높여서 대학으로의 진학이나 직업세계로의 안전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표 Ⅲ-7-13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15. 3)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08년도	'07. 4. 재학생 수(명)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명)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11년도	'10. 4. 재학생 수(명)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명)	19	13	35	67
	중도탈락률(%)	2.5	4.4	10.1	4.7
'12년도	'11. 4. 재학생 수(명)	1,021	286	374	1,681
	중도탈락생 수(명)	27	11	18	56
	중도탈락률(%)	2.6	3.8	4.7	3.3
'13년도	'12. 4. 재학생 수(명)	1,204	351	437	1,992
	중도탈락생 수(명)	37	26	7	70
	중도탈락률(%)	3.1	7.4	1.6	3.5
'14년도	'13. 4. 재학생 수(명)	1,159	478	385	2,022
	중도탈락생 수(명)	7	15	29	51
	중도탈락률(%)	0.6	3.1	7.5	2.5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6.),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웹 사이트 <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2013년도 자료는 교육부 요청자료(2014.7.22.)를 토대로 재구성

교육부(2015.3.),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 p.9. 교육부 웹 사이트 <http://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33&encodeYn=Y&boardSeq=58634&mode=view>에서 2015년 5월 인출.

* 주: 중도탈락률 = (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 / 연도별 재학생 총수) × 100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우선 다문화 예비학교가 있다. 다문화 예비학교란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규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다문화 예비학교의 참가율의 증가와 감소에 의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프로그램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의 예비학교 참가 인원수는 2015년 10월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고 2014년까지의 자료는 이미 본 연구의 전신인 2014년도 연구에서 공개된 바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예비학교의 다문화 아동·청소년 참가율 대신, 간접적으로 다문화 예비학교의 증가추세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프로그램이 증가추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에 의하면 한국어 집중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및 외국인 학생 등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문화 예비학교를 2014년 80개에서 2015년 100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였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2012년에 26개, 2013년에 50개, 2014년에 80개가 운영되었다(교육부, 2015.7.: 2). 교육부 지원계획에 의하면, 향후 한국어 성취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한국어 습득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을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의 한국 적응과 학교 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의 확대 운영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내실화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의 확산과 이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세부 지표에는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가 있다. 2014년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사업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전일제와 여름·겨울학교, 방과후학교, 주말·야간학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레인보우스쿨의 참가인원수는 2014년 현재 913명에 이르며 2013년보다 76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참가하는 전일제 유형에는 2014년도에 600명이 참가하여 2013년보다 역시 많은 증가가 있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전체 수의 증가로 프로그램 참가인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7-14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단위 : 명)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전일제	521	512	600
여름학교	286	190	246
방과후학교	14	-	-
주말·야간학교	18	65	50
겨울학교	-	70	17
계	839	837	913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pp.86-88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16-24에서 재구성

②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는 2014년이 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 실시된 심리정서 상담건수에는 온라인 상담, 내방상담, 찾아가는 상담, 심리검사 실시 건수가 포함되었는데 가장 많은 상담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담(1,930건)이며, 그 다음으로는 내방상담(1,473건), 찾아가는 상담(340건)의 순이었다. 심리정서 상담건수 증가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 적응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7-15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 수

(단위 : 건수)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온라인상담	2,195	2,311	1,930
내방상담	340	500	1,473
찾아가는 상담	97	218	340
집단상담	-	248	37(기타, 심리검사 등)
계	2,632	3,277	3,780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p.99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44

③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2012년과 2013년의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인성육성지원을 위한 ‘대학생 지식멘토링 사업’에서 나온 것이다. ‘대학생 지식 멘토링’이란, 학업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대학생들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의 대학생 멘토링 활동의 경우 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 다.⁴⁸⁾ 그러나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멘토링 결연을 맺은 대학의 명단과 숫자만 파악이 가능하였다. 멘토링 활동기간이 매년 4월에서 그 다음해 1월까지이므로 현재 2015년 멘토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각각 4,733명과 4,784명의 다문화가정, 탈북 학생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2015년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에 의하면 2015년에도 4,000명 규모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므로 짐작컨대, 2015년 한국연구재단의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참가율의 변동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대학생 멘토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2014년과 2015년에 예산상의 이유로라도 그 숫자가 크게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4,000여명의 다문화 가정, 탈북 청소년이 참가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Ⅲ-7-16>은 2012년과 2013년의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참가율에 관한 내용으로 2014년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IV-총괄보고서를 참고한 것이다.

48) 한국장학재단(2014.7.31.). 인재육성사업 소개. 한국장학재단 웹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2015년 9월 30일 인출.

표 III-7-16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단위 : 명)

배움지기(멘티)	2012년	2013년
다문화가정 학생	4,626	4,561
탈북 학생	107	223
합계	4,733	4,784

* 출처: 김경준·김희진 외(2014).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IV: 종합보고서. p.540.

* 원자료: 한국장학재단 요청자료(2014.7.29.)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①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2012년에 총 3,211명이던 것이 2013년에는 2,867명으로 감소하였다. 평균수용기간은 2008년 6.9개월에서 2009년 4.93개월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0년, 2011년에는 모두 5.1개월의 평균 수용기간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2012년에 4.6개월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평균수용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보호소년의 총 평균수용기간의 변화에는 일정한 규칙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다만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의 수가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2년에 100명 이상의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207명으로 가장 적은수의 보호소년이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보호소년 중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8호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표 III-7-17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연도	기간	7호(의료) (명(%))	8호(1개월) (명(%))	9호(단기) (명(%))	10호(장기) (명(%))	계(명(%))	평균수용기간 (개월)
2008(08.6.22~)		66(2.6)	895(35.6)	783(30.9)	782(30.9)	2,526(100)	6.9
2009		52(2.0)	1,218(45.6)	684(25.6)	718(26.8)	2,672(100)	4.93
2010		56(2.0)	1,339(48.6)	771(28.0)	589(21.4)	2,755(100)	5.1
2011		69(2.7)	1,329(51.9)	644(25.2)	517(20.2)	2,559(100)	5.1
2012		103(3.2)	1,660(51.7)	792(24.7)	656(20.4)	3,211(100)	4.6
2013		105(3.7)	1,317(45.9)	938(32.7)	507(17.7)	2,867(100)	5.17

* 출처: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385.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99.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 주: 1) 2008.6.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장기과정의 기존 일반A, 일반B, 일반C 과정을 10호 처분으로 통합됨.
2)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 처분(1개월 미만) 인원 증가에 따라 평균 수용기간 단축됨.

②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은 2012년 170명이던 것이 2013년 152명으로 감소하였다.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소년범죄자 중 가장 많은 원인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절도와 강간, 강도 같은 범죄가 주를 이루었다. 범죄 유형별로 2012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30.2%에 해당하는 46명의 강간에 관한 범죄이다. 그 다음으로는 절도가 43명으로 28.3%에 해당한다. 2011년 이후 2013년까지의 변화추이를 보면 범죄유형은 절도보다 강간이 많아졌고 그 전에는 강간이나 강도보다 절도가 더 많았다. 2011년까지 절도는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 42명으로 증가하여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24.7%가 절도가 수용된 이유였다. 2008과 2009년과 비교할 때 2013년에 폭력·상해가 11.2%에 해당하여 2008년 5.8%, 2009년 4.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Ⅲ-7-18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56(100)	169(100)	146(100)	114(100)	170(100)	152(100)
절도	73(46.8)	62(36.7)	45(30.8)	26(22.8)	42(24.7)	43(28.3)
사기·횡령	1(0.6)	3(1.8)	3(2.1)	0(0.0)	2(1.2)	1(0.7)
폭력·상해	9(5.8)	8(4.7)	1(0.7)	5(4.4)	17(10.0)	17(11.2)
강간 등	24(15.4)	44(26.0)	32(21.9)	33(28.9)	54(31.7)	46(30.2)
강도 등	24(15.4)	32(18.9)	33(22.6)	18(15.8)	24(14.1)	16(10.5)
살인	9(5.8)	6(3.6)	11(7.5)	10(8.8)	11(6.5)	7(4.6)
과실범	5(3.2)	2(1.2)	3(2.1)	1(0.9)	2(1.2)	-
기타	11(7.0)	12(7.1)	18(12.3)	21(18.4)	18(10.6)	22(14.5)

* 출처: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391.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405.

* 원자료: 법무부(2013), 교정본부 통계자료.

법무부(2014a), 교정본부 통계자료.

(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①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법률조력인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동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장과 적정한 피해 회복, 2차 피해 방지, 아동이 피해자인 성폭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형사, 민사 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한다(백미순, 김정해, 정유석, 최영지, 2013: 12).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2013년 7월 11명의 변호사를 위촉한 이래 2014년 1월까지 총 15명의 변호사가 2년 임기로 위촉되어 전국의 해바라기 센터 5곳,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10곳에 배치되어 있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2015년 1월까지 총 3,936 명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였다(법무부, 2015.1: 1).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배치 인원수는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2015년 현재까지는 그 숫자가 많다고 할 수 없지만, 2012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 모든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백미순 외, 2013: 4),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대 피해아동에게까지 제도가 확대된 만큼(법무부, 2015.1: 2)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III-7-19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국청 운영 누적 현황(2013.1.1.~12.15.기준) (단위 : 명)

지방검찰청	경찰신청			원스톱센터신청 (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함)			상담소신청			검사지정		누적 합계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접수	지정
서울	1,643	1,417	226	693	560	133	20	20	0	117	112	2,473	2,109
의정부, 고양	78	78	0	191	191	0	4	4	0	27	27	300	300
인천, 부천	106	105	1	865	844	21	4	4	0	74	74	1,049	1,027
경기도	408	388	20	215	213	2	28	28	0	52	52	710	688
강원도	74	74	0	85	85	0	5	5	0	17	17	181	181
대전	75	75	0	194	190	4	3	3	0	27	27	299	295
충청남도	154	150	4	28	26	0	0	0	0	15	15	197	195
충청북도	13	11	2	156	152	4	1	1	0	32	32	202	196
대구, 서부지청	244	188	56	439	370	69	4	4	0	7	7	694	569
경상북도	64	63	1	168	166	2	0	0	0	22	22	254	251
부산, 동부지청	57	57	0	456	456	0	4	4	0	9	9	526	526
울산	13	13	0	193	193	0	6	6	0	11	11	223	223
경상남도	192	182	10	228	165	63	2	2	0	8	8	429	356
광주	93	84	9	489	407	82	1	1	0	8	8	591	500
전라남도	12	11	1	327	313	14	4	4	0	5	5	348	333
전라북도	229	229	0	1	1	0	5	5	0	9	9	244	244
제주도	0	0	0	85	84	1	0	0	0	7	7	92	91

지방검찰청	경찰신청			원스톱센터신청 (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함)			상담소신청			검사지정		누적 합계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접수	지정
총계	3,455	3,127	328	4,813	4,418	395	91	91	0	453	448	8,812	8,084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외(2014).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IV-총괄보고서. p.544.

강동욱(2014).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방안,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자료집: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pp.63-98.

* 주: 중복삭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되거나, 2개 이상의 검찰청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②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제

소년원의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체제는 3단계로 이루어져있으며, 제1단계는 신입자 교육으로 10일 이내에 생활안내, 적응지도 및 상담활동, 체육활동, 분류조사 등이 이루어진다(법무연수원, 2014). 제2단계는 기본교육으로 각 처분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검정고시, 인성교육, 치료·재활교육 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제3단계는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으로 1단계와 마찬가지로 10일 이내로 이루어지며 진로상담, 취업교육, 현장학습, 봉사활동 등이 이루어진다(법무연수원, 2014).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는 그림 【그림 III-7-1】 과 같다.



* 출처: 법무연수원(2014). 2014 범죄백서. p.584.

【그림 III-7-1】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③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현황은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로 나뉘며 2013년에는 청원이 1,071건, 행정심판이 458건, 행정소송이 74건, 고소·고발이 647건이 있었다. 청원, 행정소송과 고소·고발은 2008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행정심판만 201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소년범죄자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처우불복에 관한 신청내용이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도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II-7-20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단위 : 건)

연도	내용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2008년		2,330	309	110	1,205
2009년		2,205	360	91	1,185
2010년		1,573	245	75	801
2011년		1,313	235	75	646
2012년		1,094	253	49	681
2013년		1,071	458	74	647

* 출처: 법무연수원(2013), 2013 범죄백서, p.325.

법무연수원(2014), 2014 범죄백서, p.361.

* 원자료: 법무부(2013, 2014),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내부 통계자료.

(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 비율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에 의해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보호관찰은 소년법 개정이후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부과연령은 10세로 하향조정되었다. 보호관찰대상자 비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다 감소하다를 반복해오고 있는 상황이며, 2011년부터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다. 2013년에는 소년보호관찰인원이 45,040명으로 2012년 47,621명에 비해 2,581명이 감소하였다(<표 III-7-21>).

표 Ⅲ-7-21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비율
2008		95,137	36,099	37.9
2009		115,191	46,686	40.5
2010		86,435	45,990	53.2
2011		121,188	46,336	38.2
2012		108,495	47,621	43.9
2013		105,495	45,040	42.6

* 출처: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 395.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 409.

* 원자료: 법무부(2013, 2014),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내부 통계자료.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교육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소년법에 의해 청소년대상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노인, 장애인 시설 같은 생활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 체험을 하게 된다. 2008년 이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2013년에는 8,857명에 이르렀다.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한 청소년의 수는 1,941명이고 협력기관을 통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한 청소년의 수는 6,916명이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수의 증가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협력기관의 분야는 자연보호 관련, 복지 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Ⅲ-7-22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연도	구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2008		5,726	1,477	4,249	11	3,990	166	17
2009		8,178	1,443	6,735	7	6,429	184	48
2010		7,394	1,324	6,070	2	5,812	157	80
2011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2012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2013		8,857	1,941	6,916	1	6,293	220	314

* 출처: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398.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412.

* 원자료: 법무부(2013, 2014),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내부 통계자료.

사회봉사명령과 달리 수강명령이란, 일정시간 이상 범죄성 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청소년이 가진 잘못된 가치관이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변화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의해 수강명령 부과가 가능한 연령은 12세로 하향조정되었고, 수강명령은 1,0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3년 수강명령을 집행 받은 청소년은 총 7,864명으로 이 중 7,374명은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이 실시되었다. 2009년 이후 수강명령을 집행 받는 청소년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14년 현재는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명령 협력기관에서 집행되는 교육내용은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족폭력과 성폭력에 관한 내용이다.

표 III-7-23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개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08	5,847	5,620	227	—	40	77	—	14	96
2009	10,397	9,954	443	3	—	2	—	46	382
2010	9,779	9,212	567	—	—	78	2	43	444
2011	10,135	9,518	617	—	11	277	—	74	255
2012	10,612	10,026	586	4	8	152	—	63	359
2013	7,864	7,374	490	2	9	240	—	48	191

* 출처: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398.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412.

* 원자료: 법무부(2013),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법무부(2014),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내부통계자료.

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민간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하여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여전히 발달과정에 있으므로 향후 개선과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덕망과 학식을 갖춘 성인에게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게 하는 제도로써 1978년 처음 시작되어 2013년에는 4,548명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2009년 이후 소년범죄의 수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청소년의 수도 각각 감소하고 있다. 소년범죄 중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수가 기소유예의 수보다는 많아서 청소년에게 성인으로부터의 보호와 선도를 통한 보다 긍정적인 개선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청소년은 4,548명으로 2009년과 비교하면 2,556명이 감소하였다.

표 Ⅲ-7-2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연도	구분	소년범죄(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인원(명)	비율(%)
2008		134,992	5,886	4.4
2009		113,022	7,104	6.3
2010		89,776	2,967	3.3
2011		89,068	1,363	1.5
2012		107,490	5,812	5.4
2013		91,633	4,548	5.0

* 출처: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367.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412.

* 원자료: 대검찰청(2014a), 검찰연감, 2007~2014.

대검찰청(2014b), 범죄분석, 2007~2014.

③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은 보호관찰소장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선도 교육, 집단치료나 상담 등의 지도가 이루어지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소년법에 의한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이 주 대상인 것과 달리,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모든 연령의 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2009년 이후 기소유예자의 전체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중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받고 있는 선도대상은 4,495명이다. 선도위탁이 해제된 경우는 2,439명이다.

표 Ⅲ-7-25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07		262,823	5,258(2.0)	12,134	4,218	66
2008		361,907	3,421(0.9)	3,967	2,614	116
2009		467,132	3,807(0.8)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1.2)	34,038	1,915	163
2011		353,564	4,950(1.4)	6,716	2,833	313
2012		348,146	4,976(1.4)	7,423	2,912	408
2013		330,407	4,495	7,900	2,439	269

* 출처: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369.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383.

* 원자료: 대검찰청(2013b),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2014a), 검찰연감, 2007~2014.

3) 경제적 착취

(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①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3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7일이며 근로시간은 175.3시간이다. 연령별로 19세 이하의 청소년보다 20세-24세 청소년의 근로시간이 더 높으며, 여자보다는 남자청소년의 근로시간이 약간 더 길다.

표 III-7-26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연도	연령별	남 자		여 자		전 체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2008	전 체	21.9	191.6	21.8	182.6	21.8	188.7
	19세 이하	21.0	176.8	22.2	192.0	21.7	185.6
	20-24세	22.3	204.6	21.7	181.3	21.9	188.9
2009	전 체	22.7	197.2	22.8	189.6	22.8	194.8
	19세 이하	21.2	186.9	21.2	179.9	21.2	182.1
	20-24세	22.7	205.9	22.6	188.5	22.6	193.9
2010	전 체	22.5	195.7	22.5	186.9	22.5	192.8
	19세 이하	19.7	165.4	19.9	162.2	19.8	163.5
	20-24세	22.6	200.3	22.4	184.9	22.5	189.9
2011	전 체	22.2	192.7	22.2	182.4	22.2	189.3
	19세 이하	20.3	172.6	20.9	172.6	20.7	172.6
	20-24세	22.4	200.0	22.0	181.5	22.1	187.9
2012	전 체	21.4	185.8	21.3	175.7	21.4	182.3
	19세 이하	19.7	166.9	20.4	172.7	20.1	170.5
	20-24세	21.7	194.3	21.1	174.9	21.3	181.6
2013	전 체	20.9	186.2	20.5	169.2	20.7	175.3
	19세 이하	19.9	174.4	19.6	159.5	19.7	165.6
	20-24세	21.0	187.6	20.6	170.1	20.8	1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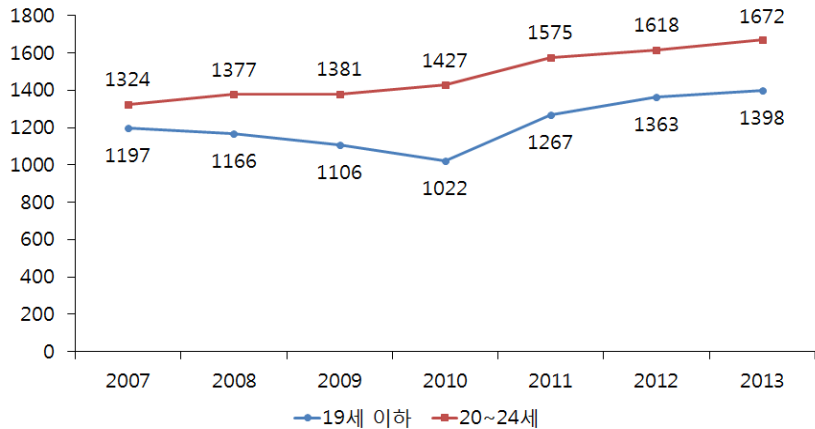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334.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342.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②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점차 증가하여 2013년 19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는 1,398,000원, 20세~24세 청소년은 1,672,000원의 임금을 받았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XII. 발췌.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그림 Ⅲ-7-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은 2013년 다소 증가하여 19세에서 29세의 청소년의 경우, 10,583원으로 전체 평균인 14,587원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 수치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Ⅲ-7-27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 원(%))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15,289	15,001	15,684	9,372(61.3)	11,019(73.5)	11,253(71.7)	13,769	14,075	14,587
19세 이하	8,232	8,358	11,068	5,292(64.3)	6,612(79.1)	8,609(74.2)	5,942	7,006	10,583
20~29세	11,097	11,142		7,691(69.3)	8,854(79.5)		10,070	10,455	
30~39세	15,521	14,903	15,759	11,014(71.0)	13,049(87.6)	13,183(83.7)	14,807	14,659	15,392
40~49세	17,865	16,866	17,703	10,415(58.3)	12,632(74.9)	13,058(73.8)	16,171	16,088	16,803
50~59세	16,672	16,445	16,964	10,014(60.1)	12,143(73.8)	12,308(73.8)	14,638	15,332	15,624
60세 이상	11,292	13,100	13,360	8,464(75.0)	9,777(74.6)	9,777(74.7)	9,978	11,518	11,685

* 출처: 고용노동부(2012.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2.

고용노동부(2013.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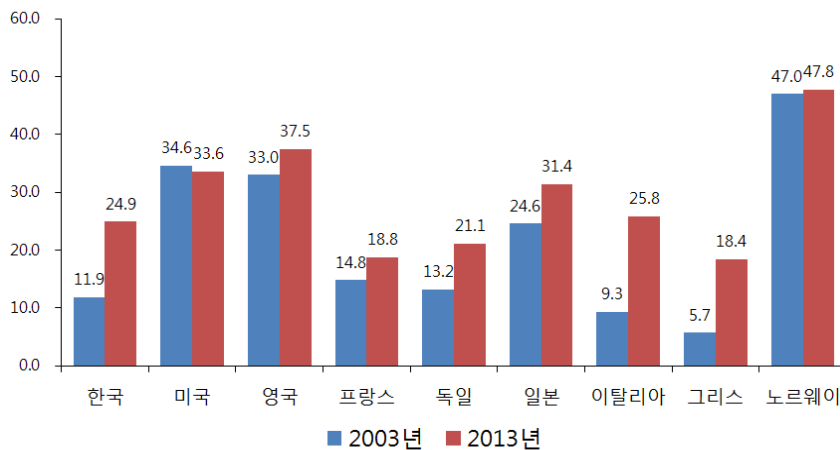
고용노동부(2014b).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18.

* 주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2) 근로 시 청소년 부담처우 경험률

①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2003년 11.9%이던 것이 2013년 24.9%가 되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 VII

* 원자료: OECD(2014). OECD StatExtracts.

【그림 III-7-3】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03/2013)

② 아르바이트 부담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청소년들의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의 12.1%와 여자 청소년의 12.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학교 급이 높고,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경우, 그리고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하였다. 거주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청소년이 13.8%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 유형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한부모 가정, 그리고 경제적 수준으로는 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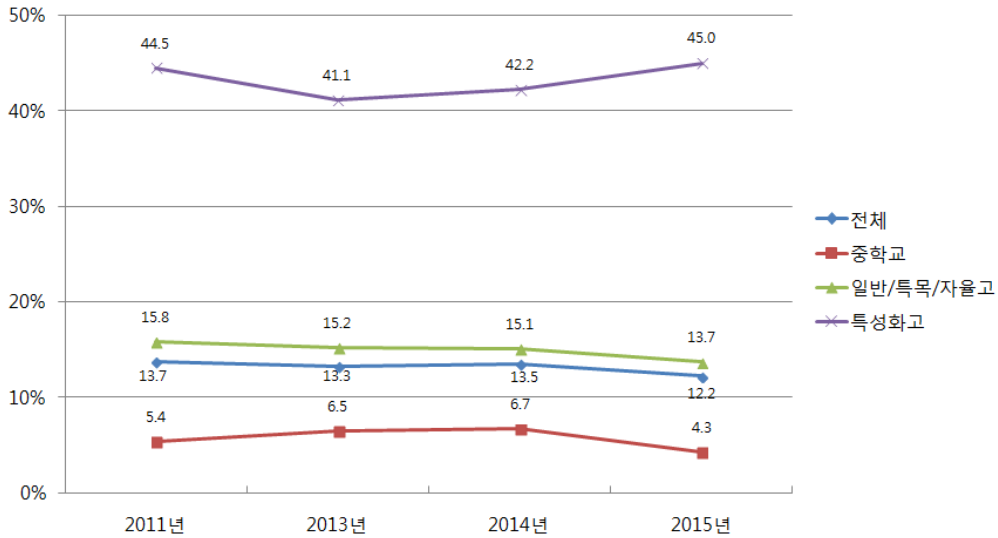
표 Ⅲ-7-28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12.2	87.8	100.0(7,511)	-
성별	남자	12.1	87.9	100.0(3,917)	.108
	여자	12.3	87.7	100.0(3,594)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4.3	95.7	100.0(3,624)	947.645***
	일반고	14.6	85.4	100.0(2,389)	
	특수목적고	14.7	85.3	100.0(258)	
	특성화고	45.0	55.0	100.0(716)	
	자율고	9.4	90.6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10.4	89.6	100.0(3,248)	17.360***
	중소도시	13.8	86.2	100.0(3,025)	
	읍면지역	12.8	87.2	100.0(1,2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1.2	88.8	100.0(6,726)	57.989***
	한부모가정	20.9	79.1	100.0(674)	
	조손가정	19.8	80.2	100.0(57)	
	기타	16.1	83.9	100.0(54)	
학업 성적	상	8.4	91.6	100.0(2,070)	90.145***
	중	10.8	89.2	100.0(3,109)	
	하	17.3	82.7	100.0(2,327)	
경제적 수준	상	9.2	90.8	100.0(3,378)	95.102***
	중	12.4	87.6	100.0(2,925)	
	하	19.9	80.1	100.0(1,207)	

*** $p<.001$.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는 연도별로 크게 변화는 없지만 2011년 전체 13.7%의 아동·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던 것에 비하면 2015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12.2%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비율이 가장 낮는데, 2011년 5.4%, 2013년 6.5%, 2014년 6.7%로 증가하던 것이 2015년에는 4.3%로 감소하였다. 일반/특목/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2011년 15.8%, 2013년 15.2%, 2014년 15.1%, 2015년에는 13.7%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하면 전체 평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재학생을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감소하였다. 특성화고 재학생의 경우, 2011년 44.5%에서 2013년 41.1%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42.2%, 2015년 45.0%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 - 7-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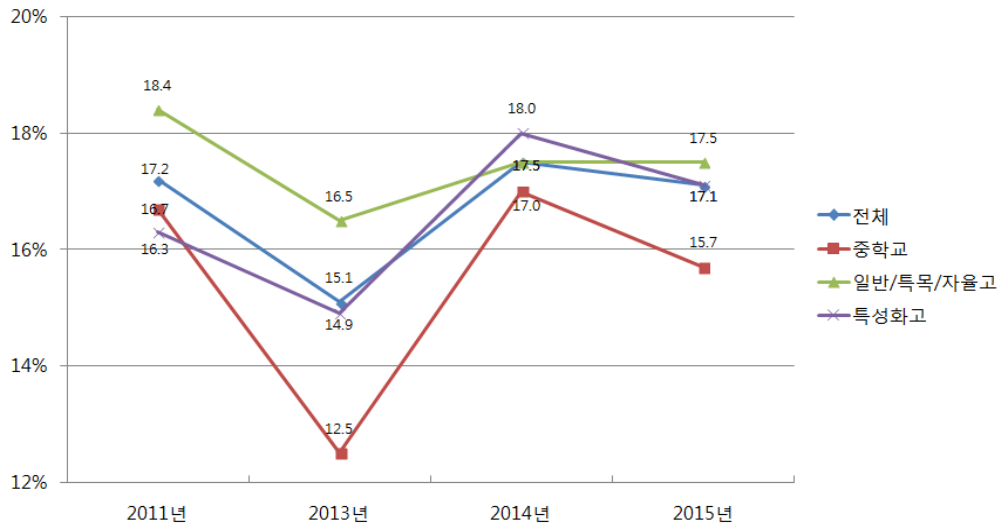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임금을 1-2번 정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남자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17.7%로 많았으며 남자 청소년은 12.2%였다. 그러나 3번 이상의 경우는 남자 청소년 3.4%가 3번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청소년은 0.8%에 그쳤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피해경험은 모든 학교급별, 학업성적과 가족, 경제적 수준에서 1-2회 정도 경험한 비율이 제일 높았다. 학교 유형별로는 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9.8%)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13.7%)보다 오히려 피해경험이 낮아 9.8%의 피해경험이 있으며 가장 높은 피해경험을 한 것은 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17.2%에 해당한다. 임금과 관련한 아르바이트 피해경험은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 가정의 청소년의 피해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표 Ⅲ-7-2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3.0	14.9	2.2	100.0(913)	-
성별	남자	84.3	12.2	3.4	100.0(471)	11.040**
	여자	81.5	17.7	0.8	100.0(442)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84.3	13.7	2.0	100.0(156)	4.518
	일반고	81.5	15.7	2.8	100.0(348)	
	특수목적고	82.8	17.2	0.0	100.0(38)	
	특성화고	82.9	15.0	2.1	100.0(322)	
	자율고	90.2	9.8	0.0	100.0(49)	
지역 규모	대도시	81.8	16.3	1.9	100.0(338)	2.497
	중소도시	82.8	14.9	2.3	100.0(416)	
	읍면지역	86.0	11.6	2.4	100.0(1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2.6	15.5	1.9	100.0(752)	6.903
	한부모가정	85.5	10.4	4.1	100.0(141)	
	조손가정	71.5	28.5	0.0	100.0(11)	
	기타	85.5	14.5	0.0	100.0(9)	
학업 성적	상	86.8	12.1	1.1	100.0(175)	5.085
	중	82.2	14.7	3.2	100.0(335)	
	하	81.9	16.3	1.8	100.0(402)	
경제적 수준	상	84.0	13.9	2.1	100.0(310)	1.466
	중	83.4	14.8	1.8	100.0(363)	
	하	81.0	16.1	2.9	100.0(240)	

** α .0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에 대한 연도별 변화추이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 중 임금과 관련된 피해경험은 2011년 전체 17.2%에서 2015년 17.1%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17.5%로 최근 5년간 가장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지난 2013년 이후 아르바이트 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임금 피해경험은 전체 평균 2014년이 가장 높았으며 2011년과 비교하면 일반/특목/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임금피해율은 18.4%에서 17.5%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연령별, 연도별 규칙적인 변화추이의 특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 임금과 관련한 피해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반적으로 2013년에 아르바이트 임금 피해율이 가장 낮았다가 2014년 높아졌다가 2015년 또 낮아지는 불규칙한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Ⅲ-7-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음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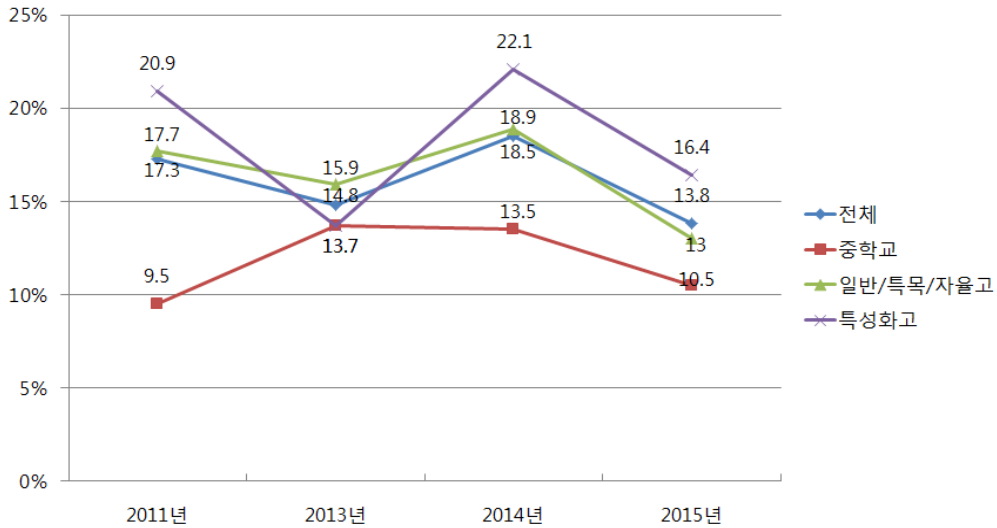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도 1-2번(9.8%)이 3번 이상(4%) 보다 많았다. 1-2번의 피해가 있는 경우는 여자 청소년(7.5%)보다 남자 청소년(12%)이 더 많았고, 3번 이상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자 청소년이 더 많았다(4.5%). 학교급과 유형별로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10.7%로 1-2번 이상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피해경험이 더 적었다. 그 이유는 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적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시간이나 일의 종류와 관련한 피해경험은 대도시에 거주하고 한부모 가정, 학업성적이 낮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표 III-7-3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6.2	9.8	4.0	100.0(912)	-
성별	남자	84.5	12.0	3.5	100.0(470)	5.674
	여자	88.1	7.5	4.5	100.0(442)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89.5	9.9	0.6	100.0(156)	10.891
	일반고	85.7	9.6	4.6	100.0(348)	
	특수목적고	90.9	7.3	1.8	100.0(38)	
	특성화고	83.5	10.7	5.7	100.0(321)	
	자율고	93.7	6.3	0.0	100.0(49)	
지역 규모	대도시	85.1	10.7	4.2	100.0(338)	1.907
	중소도시	85.9	9.8	4.3	100.0(416)	
	읍면지역	89.6	7.9	2.5	100.0(1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7.5	8.4	4.1	100.0(751)	13.938*
	한부모가정	78.2	18.0	3.8	100.0(141)	
	조손가정	91.6	8.4	0.0	100.0(11)	
	기타	100.0	0.0	0.0	100.0(9)	
학업 성적	상	87.0	8.8	4.3	100.0(175)	4.334
	중	88.8	7.7	3.4	100.0(335)	
	하	83.7	12.0	4.3	100.0(401)	
경제적 수준	상	90.5	6.8	2.7	100.0(310)	12.777*
	중	86.3	10.5	3.3	100.0(363)	
	하	80.7	12.7	6.7	100.0(239)	

* $p < .05$.

아르바이트 시간 초과근무 및 전혀 다른 일을 한 경험과 관련한 지난 5년간의 변화추이는 2011년과 비교하면, 중학교에서 9.5%이던 것이 2015년 10.5%로 다소 피해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2011년 17.3%, 2013년 14.8%, 2014년 18.5%, 2015년 13.8%로 피해율이 증가하다 감소하다를 반복하고 있다. 일반/특목/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2011년 17.7%, 2013년 15.9%로 다소 감소하다가 2014년에는 18.9%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시간초과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경험을 가졌으나 2015년에는 피해율이 절반가량 감소하여 13%를 나타내었다.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경우 2011년에 20.9%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경험하였고, 2013년에는 13.7%, 2014년 22.1%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경험하여 2014년과 2015년 전체 청소년 중 가장 높은 피해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들의 시간과 업무와 관련한 아르바이트 피해율은 16.4%나 된다.



【그림 III-7-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함 (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청소년은 전체 71.4%에 해당하며 남자 청소년(70.9%)보다 여자청소년(72%)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91.3%이고 그 다음은 특수목적고(81%)와 자율고(73%)의 순이었다. 대도시보다는 읍면지역으로 거주 지역 규모가 작은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업성적은 중에 해당하는 학생이, 경제수준은 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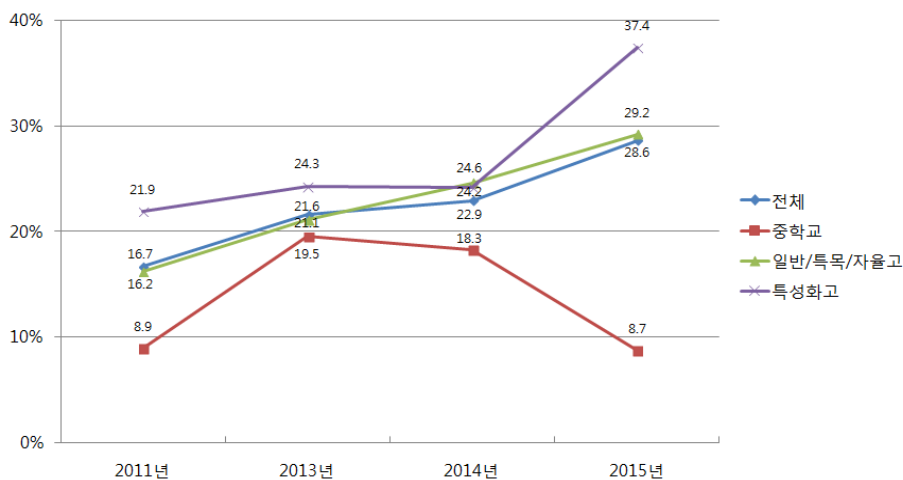
표 III-7-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71.4	23.4	5.2	100.0(912)	-
성별	남자	70.9	21.9	7.2	100.0(471)	9.013*
	여자	72.0	25.0	3.0	100.0(441)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91.3	6.1	2.6	100.0(156)	48.036***
	일반고	69.4	25.6	5.0	100.0(347)	
	특수목적고	81.0	19.0	0.0	100.0(38)	
	특성화고	62.6	29.7	7.7	100.0(322)	
	자율고	73.0	24.2	2.8	100.0(49)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65.5	28.8	5.7	100.0(338)	12.023*
	중소도시	73.2	21.6	5.3	100.0(415)	
	읍면지역	79.4	16.6	3.9	100.0(1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1.9	23.5	4.6	100.0(751)	4.974
	한부모가정	68.3	23.3	8.4	100.0(141)	
	조손가정	83.1	16.9	0.0	100.0(11)	
	기타	63.4	25.7	10.9	100.0(9)	
학업 성적	상	68.2	24.1	7.8	100.0(175)	4.081
	중	73.5	22.3	4.2	100.0(334)	
	하	71.1	24.0	4.9	100.0(402)	
경제적 수준	상	74.5	21.5	4.0	100.0(310)	4.537
	중	71.3	23.7	5.0	100.0(362)	
	하	67.7	25.4	7.0	100.0(240)	

* $p<.05$, *** $p<.001$.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추이는 전체적으로 2011년 16.7%이던 것이 2013년 21.6%, 2014년 24.2%, 2015년 2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청소년의 노동권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저 연령대인 중학생의 경우 2011년 8.9%이던 근로계약서 작성율이 2013년 19.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4년 18.3%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5년 절반도 안 되는 8.7%로 다시 급격히 낮아졌다.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한 보호가 가장 취약한 대상이 가장 어린 중학생 연령대라는 점은 향후 청소년 노동권보호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해 지원해야 할 대상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그림 Ⅲ-7-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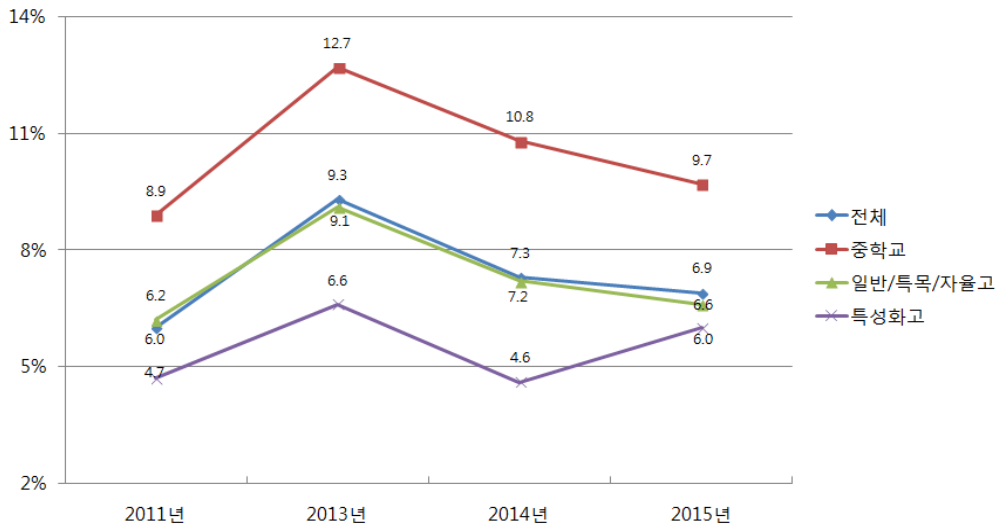
부당한 해고를 1~2번 경험한 청소년은 6.2%이며 여자(5.1%)보다는 남자 청소년(7.3%)이 부당해고를 경험한 적이 많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1~2번의 부당해고 경험이 높았다. 지역규모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유형은 조손가족인 경우,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부당해고 경험이 높았다. 3번이상의 부당해고를 당한 청소년은 전체의 0.7%에 해당하며, 학교급별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7-3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3.1	6.2	0.7	100.0(912)	-
성별	남자	91.8	7.3	100.0(470)	2.197
	여자	94.5	5.1	100.0(442)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90.3	9.1	100.0(156)	6.950
	일반고	92.4	6.8	100.0(348)	
	특수목적고	94.2	5.8	100.0(38)	
	특성화고	94.0	5.2	100.0(321)	
	자율고	100.0	0.0	100.0(49)	
지역 규모	대도시	93.0	6.3	100.0(338)	2.061
	중소도시	92.2	7.1	100.0(416)	
	읍면지역	95.5	3.9	100.0(1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3.1	6.2	100.0(751)	2.059
	한부모가정	93.0	6.7	100.0(141)	
	조손가정	91.6	8.4	100.0(11)	
	기타	100.0	0.0	100.0(9)	
학업 성적	상	90.7	8.9	100.0(175)	5.484
	중	95.2	4.3	100.0(334)	
	하	92.4	6.7	100.0(402)	
경제적 수준	상	95.5	4.0	100.0(309)	4.979
	중	91.3	7.9	100.0(363)	
	하	92.8	6.6	100.0(240)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경험에 대한 변화추이는 2011년 이후 전체적으로는 6%에서 6.9%로 다소 높아졌다. 중학생의 부당해고 경험률은 2011년 8.9%였던 것이 2013년 12.7%로 높아졌다가 2014년 10.8%, 2015년 9.7%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은 아르바이트 피해경험이 지난 5년간 가장 높았던 시기로 전체 9.3%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부당해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중, 2011년이 부당해고 경험이 특성화고(2011년 4.7%, 2013년 6.6%, 2014년 4.6%, 2015년 6%)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부당해고 경험률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부당해고 경험률 자체로만 보면 2011년과 비교할 때 2015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중 부당해고와 관한 사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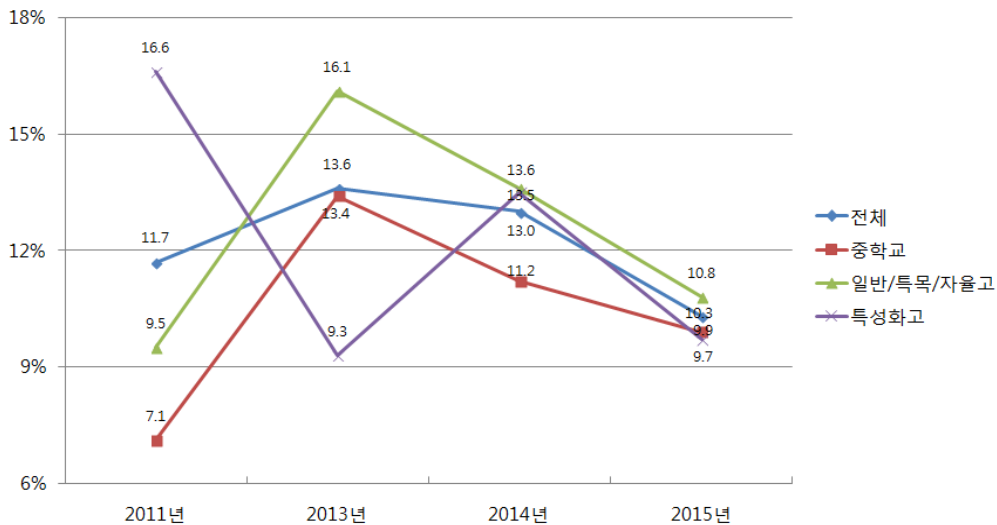
【그림 Ⅲ-7-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부당한 해고 (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직업 환경에 관한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1~2번 정도 직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전체 8.4%에 해당하였다. 여자청소년(7.9%)보다는 남자청소년(8.8%)의 피해경험이 더 많았으며, 자율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피해경험이 12.1%로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11.2%)가,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10.7%)이, 학업성적으로는 하(11%)에 해당하는 청소년, 그리고 경제 수준이 낮은 청소년(13.4%)의 피해경험이 더 높았다.

표 Ⅲ-7-3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9.7	8.4	1.9	100.0(913)	-
성별	남자	88.2	8.8	3.0	100.0(471)	5.419
	여자	91.3	7.9	0.8	100.0(442)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90.1	7.4	2.5	100.0(156)	1.760
	일반고	89.6	8.5	2.0	100.0(348)	
	특수목적고	90.5	7.7	1.8	100.0(38)	
	특성화고	90.2	8.2	1.5	100.0(322)	
	자율고	85.6	12.1	2.2	100.0(49)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88.9	9.1	2.1	100.0(338)	.607
	중소도시	90.2	8.1	1.8	100.0(416)	
	읍면지역	90.3	7.7	2.0	100.0(1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9.3	8.8	1.9	100.0(752)	2.171
	한부모가정	91.3	6.6	2.0	100.0(141)	
	조손가정	91.6	8.4	0.0	100.0(11)	
	기타	100.0	0.0	0.0	100.0(9)	
학업 성적	상	90.3	8.4	1.3	100.0(175)	3.805
	중	90.2	8.7	1.1	100.0(335)	
	하	89.0	8.1	2.9	100.0(402)	
경제적 수준	상	90.0	8.4	1.6	100.0(310)	4.574
	중	91.5	7.0	1.5	100.0(363)	
	하	86.6	10.4	3.0	100.0(240)	



【그림 III -7-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 (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중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한 경험을 한 추이는 2011년 전체 평균(11.7%)보다 2015년에 다소 낮아졌다(10.3%). 2011년에 이러한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16.6%로 가장 많은 경험을 하였는데 2015년에는 9.7%로 가장 적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 청소년의 작업환경 위험에 대한 것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에는 2013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18.5%를 보인바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다. 중학생의 작업환경 안전에 대한 피해경험은 2011년 7.1%에서 2013년 13.4%로 급증하였다가 2014년에 11.2%, 2015년에 9.9%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특목/자율고 청소년의 경우 2011년에 9.5%에서 2013년 16.1%로 2013년에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피해율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에도 13.6%, 2015년에도 10.8%로 전 집단 중에서 가장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상이었다. 특성화고 청소년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피해경험이 2011년(16.6%)과 비교할 때 2015년(9.7%)에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표 Ⅲ-7-3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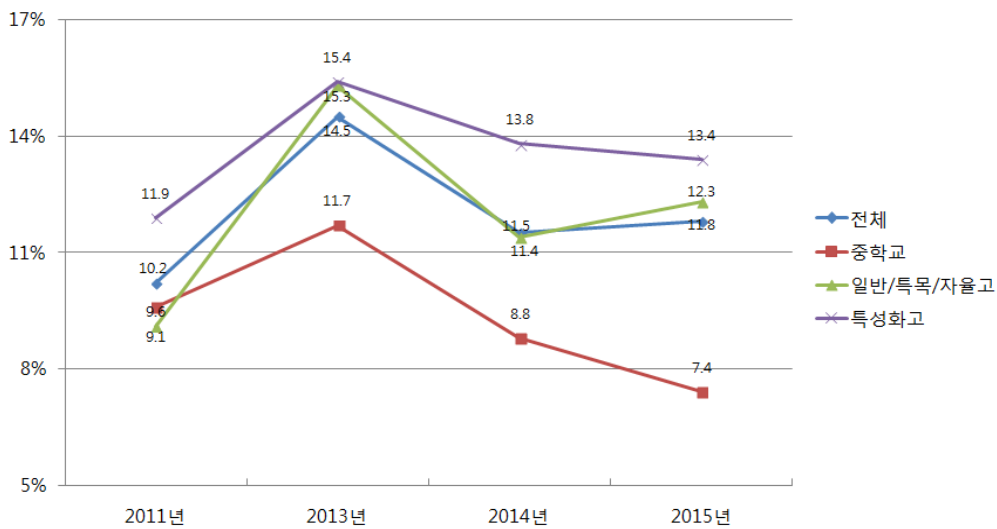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8.2	9.2	2.6	100.0(913)	-
성별	남자	87.2	9.6	3.1	100.0(471)	1.368
	여자	89.2	8.8	2.0	100.0(442)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92.6	6.8	0.6	100.0(156)	6.968
	일반고	87.6	10.1	2.4	100.0(348)	
	특수목적고	90.6	7.7	1.8	100.0(38)	
	특성화고	86.6	9.3	4.1	100.0(322)	
	자율고	86.9	12.0	1.1	100.0(49)	
지역 규모	대도시	85.6	11.3	3.1	100.0(338)	6.532
	중소도시	88.9	9.1	2.0	100.0(416)	
	읍면지역	91.7	5.3	3.0	100.0(1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9.0	8.1	2.9	100.0(752)	12.602*
	한부모가정	83.4	15.7	0.9	100.0(141)	
	조손가정	85.5	8.4	6.1	100.0(11)	
	기타	100.0	0.0	0.0	100.0(9)	
학업 성적	상	86.2	11.4	2.4	100.0(175)	1.666
	중	89.4	8.2	2.5	100.0(335)	
	하	88.0	9.2	2.8	100.0(402)	
경제적 수준	상	91.5	6.2	2.3	100.0(310)	17.904**
	중	90.0	7.4	2.6	100.0(363)	
	하	81.2	15.8	3.0	100.0(240)	

* $p<.05$, ** $p<.001$.

폭언 등의 인격 모욕을 경험한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도 있다. 1-2번 이상의 폭언 같은 인격 모욕을 당한 경우는 남자 청소년 9.6%, 여자 청소년 8.8%가 되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피해경험이 12%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에 거주하고, 한부모가정인 경우,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피해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등 인격모욕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추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경험이 적었다. 이는 아르바이트 참여율 자체가 낮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2011년 9.6%이던

것이 2013년 11.7%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8.8%, 2015년에는 7.4%까지 감소하였다. 가장 많은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성학교 재학생인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높은 피해경험을 가진 집단이었다. 2011년에 11.9%이다가 2013년에는 15.4%로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13.8%, 2015년에는 13.4%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015년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다. 2013년에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폭언 등 인격 모독을 경험하여 중학생은 11.7%, 일반/특목/자율고 15.3%, 특성학교는 15.4%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 모든 연령집단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7-1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폭언 등 인격 모독 (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시 1-2번의 구타나 폭행 같은 심각한 피해 경험을 한 것은 남자 청소년이 4.1%로, 여자청소년이 이러한 심각한 경험을 하지 않은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3번 이상으로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 남자청소년이 0.5%, 여자청소년은 0.2%가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타나 폭행 같은 심각한 아르바이트 피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교급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높으며, 대도시인 경우,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심각한 아르바이트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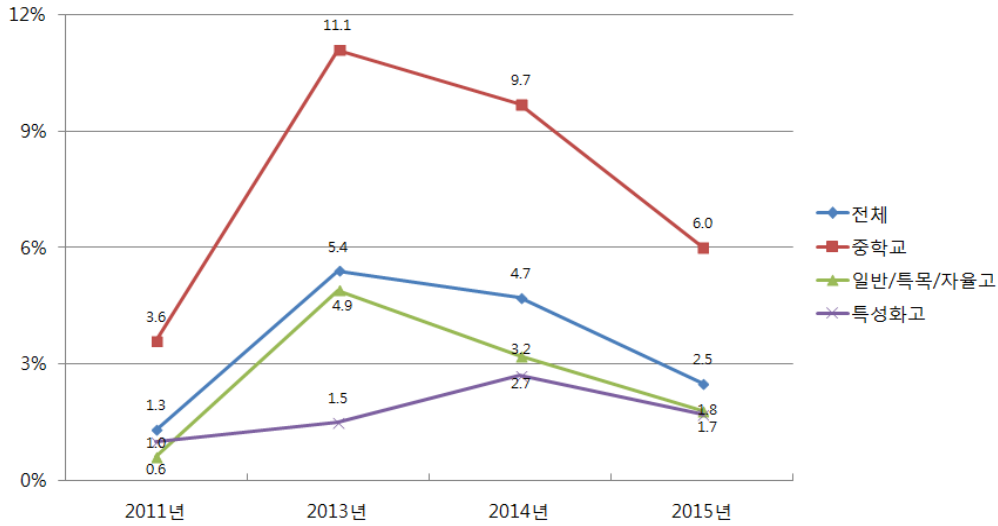
표 Ⅲ-7-3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7.5	2.1	0.4	100.0(913)	-
성별	남자	95.4	4.1	0.5	100.0(471)	19.170***
	여자	99.8	0.0	0.2	100.0(442)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93.9	4.8	1.2	100.0(156)	15.239
	일반고	98.4	1.2	0.3	100.0(348)	
	특수목적고	98.2	1.8	0.0	100.0(38)	
	특성화고	98.3	1.6	0.1	100.0(322)	
	자율고	96.8	3.2	0.0	100.0(49)	
지역 규모	대도시	95.5	4.1	0.4	100.0(338)	10.251*
	중소도시	98.6	1.1	0.3	100.0(416)	
	읍면지역	99.0	0.4	0.6	100.0(1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5	2.1	0.3	100.0(752)	3.497
	한부모가정	97.7	1.6	0.7	100.0(141)	
	조손가정	91.6	8.4	0.0	100.0(11)	
	기타	100.0	0.0	0.0	100.0(9)	
학업 성적	상	98.1	1.9	0.0	100.0(175)	2.381
	중	97.7	1.6	0.7	100.0(335)	
	하	97.3	2.4	0.3	100.0(402)	
경제적 수준	상	98.4	1.3	0.3	100.0(310)	4.047
	중	97.7	2.0	0.3	100.0(363)	
	하	96.1	3.3	0.6	100.0(240)	

* $p<.05$, ** $p<.01$, *** $p<.001$.

구타나 폭행을 경험하는 사례에 대한 추이는 전 연령과 학교급에서 2011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가장 낮은 수준의 구타나 폭행을 경험한 것은 2013년 이후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2013년에 1.5%, 2014년에 2.7%, 2015년에 1.7%에 해당한다. 일반/특목/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구타나 폭언 피해경험이 2011년 0.6%로 가장 낮았으나 2013년 4.9%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3.2%, 2015년에는 1.8%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중학생의 피해경험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6%에서 2013년 11.1%, 2014년 9.7%, 2015년 6.0%로 2013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피해율은 어느 집단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편이다. 중학생은 폭언 등 인격모독에 관한 피해경험은 가장 낮은 편이었는데 구타나 폭행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피해경험을 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1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구타나 폭행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중 가장 심각한 피해경험이라 할 수 있는 성적 피해경험이 경우, 1-2번 이상의 피해경험은 남자 2.8%, 여자 2.1%를 보이고 있으며, 3번 이상의 성적 피해를 경험한 경우도 남자 청소년의 1.4%, 여자 청소년의 0.2%가 해당되었다. 교급이 낮을수록 성적 피해의 경험이 높으며, 한부모가정,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지역규모별 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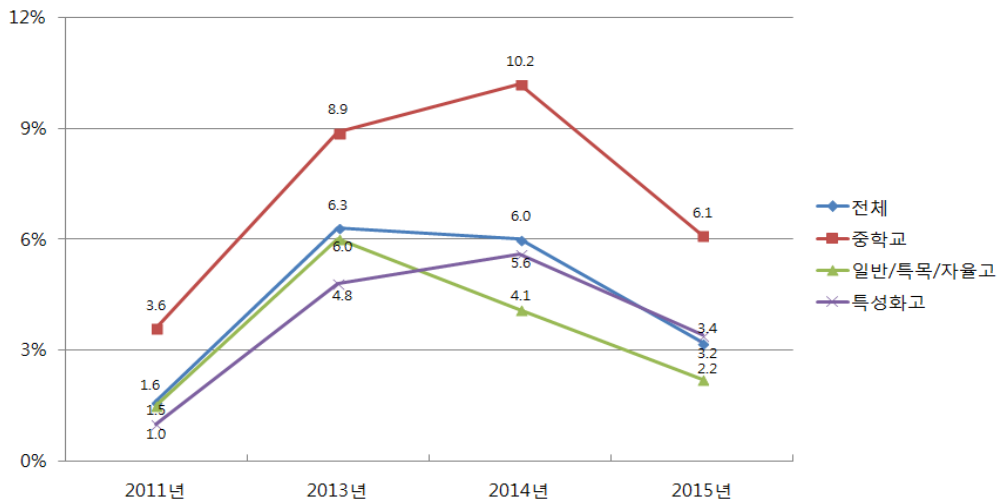
표 III-7-3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6.7	2.4	0.8	100.0(911)	-
성별	남자	95.8	2.8	1.4	100.0(470)	4.739
	여자	97.7	2.1	0.2	100.0(442)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93.9	4.0	2.1	100.0(156)	7.067
	일반고	97.2	2.0	0.8	100.0(347)	
	특수목적고	100.0	0.0	0.0	100.0(38)	
	특성화고	96.6	2.9	0.5	100.0(322)	
	자율고	100.0	0.0	0.0	100.0(49)	
지역 규모	대도시	94.4	4.4	1.2	100.0(338)	10.320*
	중소도시	97.8	1.6	0.7	100.0(414)	
	읍면지역	98.8	0.6	0.6	100.0(159)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0	2.2	0.8	100.0(750)	3.649
	한부모가정	95.3	3.4	1.3	100.0(141)	
	조손가정	91.6	8.4	0.0	100.0(11)	
	기타	100.0	0.0	0.0	100.0(9)	
학업 성적	상	97.9	1.8	0.3	100.0(175)	1.531
	중	96.9	2.1	1.1	100.0(333)	
	하	96.0	3.1	0.9	100.0(402)	
경제적 수준	상	98.5	1.1	0.5	100.0(310)	7.693
	중	96.4	2.6	1.0	100.0(363)	
	하	94.9	4.0	1.1	100.0(238)	

* $p < .05$.

지난 5년간 성적인 피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중학생이 전 해에 걸쳐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하는 집단인데 2011년 3.6%이던 것이 2013년에는 8.9%, 2014년에는 10.2%로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6.1%로 감소하였는데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여전이 피해경험률이 높고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피해경험을 하는 집단은 일반/특목/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앞서 다른 지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13년 이후 가장 피해율이 적다. 2013년 6%이던 것이 2014년 4.1%, 2015년 2.2%로 감소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2013년 4.8%에서 2014년 5.6%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3.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율은 2015년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Ⅲ-7-1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성적 피해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는 피해 횟수가 1-2번 정도가 14.9%, 3번 이상이 10.1%가 되었다. 횟수에 관계없이 여자 청소년의 피해가 더 많았고, 1-2번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가장 높았으며, 3번 이상 장기적인 경우는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더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의 피해경험이 높으며,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피해경험이 더 높았다.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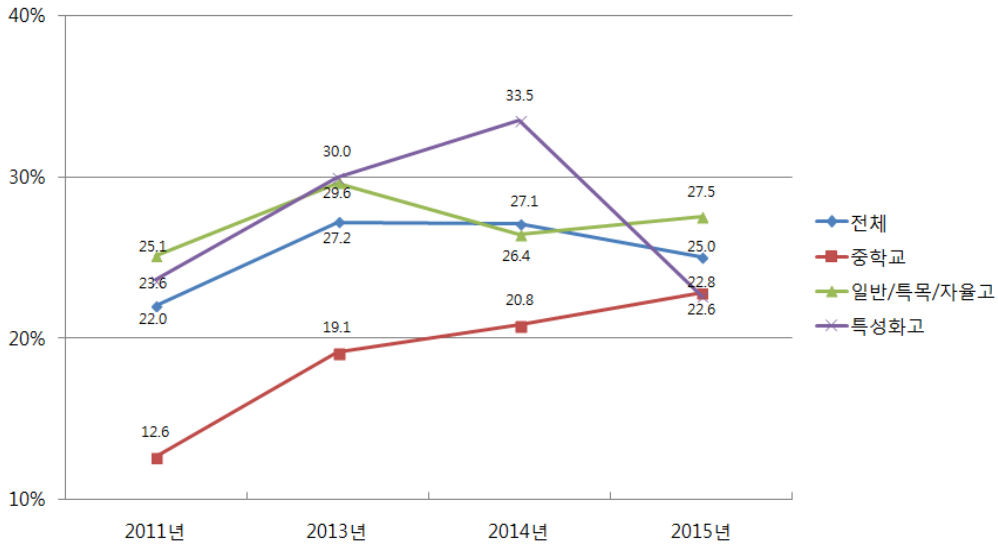
표 III-7-3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75.0	14.9	10.1	100.0(909)	-
성별	남자	79.5	12.6	7.9	100.0(471)	10.589**
	여자	70.3	17.4	12.4	100.0(438)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77.3	15.0	7.8	100.0(156)	8.508
	일반고	72.0	16.9	11.2	100.0(348)	
	특수목적고	81.0	15.4	3.6	100.0(38)	
	특성화고	77.4	11.8	10.8	100.0(318)	
	자율고	70.0	20.3	9.8	100.0(49)	
지역 규모	대도시	79.6	14.2	6.2	100.0(338)	14.410**
	중소도시	70.2	15.8	13.9	100.0(416)	
	읍면지역	77.9	13.9	8.2	100.0(15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4.2	15.2	10.7	100.0(748)	4.866
	한부모가정	78.7	13.0	8.3	100.0(141)	
	조손가정	71.5	28.5	0.0	100.0(11)	
	기타	93.4	6.6	0.0	100.0(9)	
학업 성적	상	70.5	21.2	8.3	100.0(171)	8.643
	중	78.5	11.5	10.0	100.0(335)	
	하	74.0	15.1	10.9	100.0(402)	
경제적 수준	상	76.3	12.1	11.6	100.0(310)	11.596*
	중	78.4	14.1	7.5	100.0(360)	
	하	68.3	19.7	12.0	100.0(240)	

* $p<.05$, ** $p<.01$.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011년에 22%이었던 것이 2015년에 25.0%로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피해율의 증가가 있었던 것은 중학생으로 2011년 12.6%, 2013년 19.1%, 2014년 20.8%, 2015년 22.6%로 유일하게 피해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2011년 23.6%에서 2013년 29.6%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33.5%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 22.8%로 감소하였다. 일반/특목/자율고의 청소년의 경우는 2011년 25.1%에서 2013년 29.6%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27.1%로 감소하

는 듯하였으나 2015년에 다시 27.5%로 증가하였다.



【그림 III-7-1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 함 (연도별 추이)

(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 정도

①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대상 업소 수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에 관한 2014년 고용백서에 의하면, 2013년에 3,057개소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져 이 중 2,572개소에서 8,3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하였다. 그 결과, 2,558개소 8,374건은 시정 완료, 12개소 1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2개소 2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5년간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실시의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수도 증가하고 있다.

표 III-7-38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건))

연도	점검실시	법위반	조 치				
			시정완료	사법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시정중
2008	1,318	1,031 (2,567)	1,017 (2,545)	7 (7)	-	-	-
2009	1,621	1,389 (4,704)	1,389 (4,701)	1 (1)	1 (2)	-	-
2010	1,545	1,300 (4,979)	1,298 (4,977)	2 (2)	-	-	-
2011	2,711	2,384 (9,681)	2,381 (9,676)	3 (5)	-	-	-
2012	1,940	1,780 (7,589)	1,776 (7,581)	3 (7)	1 (1)	-	-
2013	3,057	8,395 (2,572)	8,374 (2,558)	19 (12)	2 (2)		

* 출처: 고용노동부(2009). 노동백서. p.186.
 고용노동부(2010). 고용노동백서. p.233.
 고용노동부(2011). 고용노동백서. p.252.
 고용노동부(2012). 고용노동백서. p.210.
 고용노동부(2013a). 고용노동백서. p.234.
 고용노동부(2014a). 고용노동백서. p.246.

주요 법의 위반내용은 가장 많은 경우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7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488건,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건이 99건, 야간·휴일근로 인가가 35건이다.

표 III-7-39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 법 위반 내용

(단위 : 건)

연도	최저임금 주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미달
		연소자증명서 비치	야간·휴일 근로 인가	근로시간 준수	취직인허증	
2008	314	469	41	86	6	314
2009	76	496	188	63	3	76
2010	885	432	209	61	2	86
2011	1,605	847	401	217	7	296
2012	1,253	431	262	117	4	206
2013		99	35	15		488

* 출처: 고용노동부(2009). 노동백서. p.186.
 고용노동부(2010). 고용노동백서. p.233.
 고용노동부(2011). 고용노동백서. p.253.
 고용노동부(2012). 고용노동백서. p.210.
 고용노동부(2013a). 고용노동백서. p.235.
 고용노동부(2014a). 고용노동백서. p.246.

②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는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결과에 의하면 2014년에는 거의 두 배가 되는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이 점검되었으나, 점검건수에 비례하듯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미 실시 사업장의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하여 43.7%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심상정 의원의 국감자료에서 보도되었다(경원일보, 2015년 9월 13일 보도). 이러한 현황은 노동법 위반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법 준수 확립을 위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Ⅲ-7-40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청소년 고용 점검사업장(건)	2,711	1,940	3,057	6,72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미 실시 사업장(건)	896	718	758	2,934
미 실시 사업장 비율(%)	33.1	37.0	24.8	43.7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외(2014),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IV-총괄보고서, p.544.

* 원자료: 경원일보(2015.9.13). 청소년 알바 청년인턴 다수고용 사업장은 노동법 무풍지대(경원일보 2015년 9월 13일 보도자료). 경원일보 웹 사이트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35216>에서 인출.

4) 성적 착취

(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①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 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세미나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전문강사의 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Ⅲ-7-4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 수

(단위 :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2014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전문강사	55	198	334	412	457	726	722

* 출처: 송인자 (2015). 민간영역의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정책세미나 자료집: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p.5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매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교육 경험률은 지난 5년간 2012년이 가장 낮았다. 2014년의 경우는 중학생의 77.6%와 고등학생의 66.3%가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7-42 연간 성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68.85	76.4	61.3	81.3	75.5	72.7	74.8	65.2	43.8
2011	66.15	74.2	58.1	77.1	74.8	70.9	69.0	61.7	43.1
2012	68.10	73.7	62.5	75.1	74.6	71.5	67.6	67.8	52.0
2013	71.80	78.1	65.5	80.8	78.8	74.8	70.1	70.1	56.3
2014	71.95	77.6	66.3	82.3	76.9	74.1	71.0	69.5	58.5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23.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②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2014년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는 4,161명으로 2013년에 비해 375명이 증가하였다. 신상공개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성범죄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인구가 많은 지역별로 성범죄자 수가 많았다.

표 III-7-43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단위 : 명)

2008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274	96	2,167	151	3,818	1,261	12,652	3,786	22,582	4,161

* 출처: 여성가족부(2009). 2009 청소년백서. p.262.
 여성가족부(2011a). 2011 청소년백서. p.246.
 여성가족부(2012c). 2012 청소년백서. p.248.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256.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268.

* 주: 2011년까지의 신상공개자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이나 2013년 신상공개자는 아동과 성인 대상임.
 2008년, 2010년, 2011년은 12월 31일 기준이며, 2013년도와 2014년도는 11월 30일 기준임.

표 Ⅲ-7-44 지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단위 : 명)

특별시 * 광역시/도	성범죄자 수
서울특별시	751
부산광역시	316
대구광역시	170
인천광역시	258
광주광역시	164
대전광역시	101
울산광역시	80
경기도	1065
강원도	150
충청북도	133
충청남도	256
전라북도	175
전라남도	266
경상북도	287
경상남도	307
제주특별자치도	59
세종특별자치시	5
총 계	4,543

* 출처: 성범죄자 알림e(2015.10.4.) 웹사이트 <http://www.sexoffender.go.kr/>에서 2015년 10월 4일 인출.

* 주: 본 통계자료는 행정동 기준(주민자치센터 관리기준)으로 집계하여 공개한 자료이며, 통계는 실제 거주지 주소 공개자 수임.

(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률

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은 31,764명이고, 7세 미만이 591명 1.9%, 7세-13세 미만이 2,405명으로 7.6%, 13세-19세 미만이 7,866명으로 24.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성폭력 피해율이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이후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어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매우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표 III-7-45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단위 : 명, %)

연도	계(명)	피해자 연령					
		7세 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0세 미만	60세 이상	미상
2009년	전체	33,659	944	4,375	10,287	15,115	2,392
		100%	2.8	13.0	30.6	44.9	7.1
	장애인	4,603	6	228	1,312	2,828	107
		100%	0.1	5.0	28.5	61.4	2.3
2010년	전체	39,299	1,042	5,581	11,761	18,225	2,309
		100%	2.7	14.2	29.9	46.4	5.9
	장애인	1,722	36	189	574	879	35
		100%	2.1	11	33.3	51	2.0
2011년	전체	33,749	786	3,813	9,914	15,927	2,908
		100%	2.3	11.3	29.4	47.2	8.6
	장애인	2,431	7	234	983	1,137	45
		100%	0.3	9.6	40.4	46.8	1.9
2012년	전체	30,642	565	3,088	9,371	15,325	1,888
		100%	1.9	10.1	30.6	50.0	6.2
	장애인	3,449	10	166	1,251	1,681	232
		100%	0.3	4.8	36.3	48.7	6.7
2013년	전체	31,323	600	2,722	7,329	16,664	3,660
		100%	1.9	8.7	23.4	53.2	11.7
	장애인	3,225	57	247	743	1,894	233
		100%	1.8	7.7	23.0	58.7	7.3
2014년	전체	31,764	591	2,405	7,866	16,244	4,175
		100%	1.9	7.6	24.8	51.1	13.1
	장애인	4,965	16	208	1,196	2,680	834
		100%	0.3	4.2	24	54	16.8

* 출처: 여성가족부(2014c).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4. 여성가족부 웹 사이트 http://www.moget.go.kr/korea/view/policy/policy02_05a.jsp?func=view&curren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4592에서 2014년 8월 20일 인출.

②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본 연구에서 성적인 피해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II-7-46>과 같다. 전체 3.9%의 청소년이 성적인 피해경험이 있으며 남자 청소년은 3.9%, 여자 청소년 4.0%가 이에 해당한다.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4.3%, 중학교 3.9%, 고등학교 3.6%로 어릴수록 성적인 피해경험률이 높았다. 지역 규모는 중소도시가, 가족요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성적인 피해경험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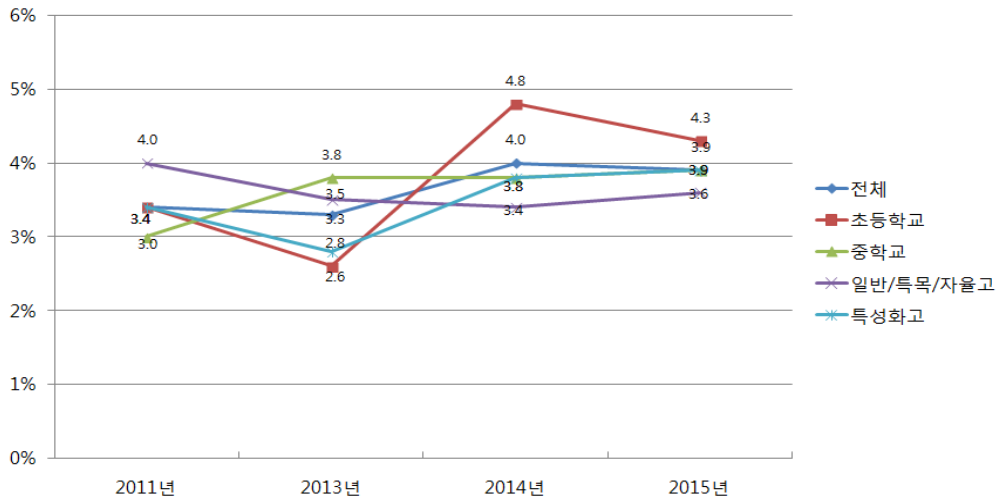
표 Ⅲ-7-46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3.9	96.1	100.0(10,422)	-
성별	남자	3.9	96.1	100.0(5,425)	.086
	여자	4.0	96.0	100.0(4,997)	
학교 유형 ¹	초등학교	4.3	95.7	100.0(2,930)	2.142
	중학교	3.9	96.1	100.0(3,620)	
	고등학교	3.6	96.4	100.0(3,873)	
지역 규모	대도시	3.7	96.3	100.0(4,551)	2.686
	중소도시	4.3	95.7	100.0(4,263)	
	읍면지역	3.6	96.4	100.0(1,60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8	96.2	100.0(9,406)	7.307
	한부모가정	5.3	94.7	100.0(859)	
	조손가정	6.2	93.8	100.0(97)	
	기타	1.7	98.3	100.0(61)	
학업 성적	상	3.3	96.7	100.0(3,395)	10.856**
	중	3.8	96.2	100.0(4,436)	
	하	5.0	95.0	100.0(2,561)	
경제적 수준	상	3.3	96.7	100.0(5,373)	25.574***
	중	4.0	96.0	100.0(3,727)	
	하	6.3	93.7	100.0(1,315)	

** $p < .01$, *** $p < .001$.

연도별 성적인 피해 경험여부는 다소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3.4%에서 2013년 2.6%로 다소 감소하는 듯 하였지만 2014년에 4.8%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3.9%가 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0.5%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경우도 2013년에 다소 감소하다가 2014년에 3.8%에서 2015년 3.9%로 증가하였다. 유일하게 일반/특목/자율고의 경우 2011년 4%, 2013년 3.5%로 다소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3.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 연령과 집단에서 가장 낮은 피해경험이긴 하지만 2015년에 0.2%가 증가하여 3.6%의 일반/특목/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성적인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7-14】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③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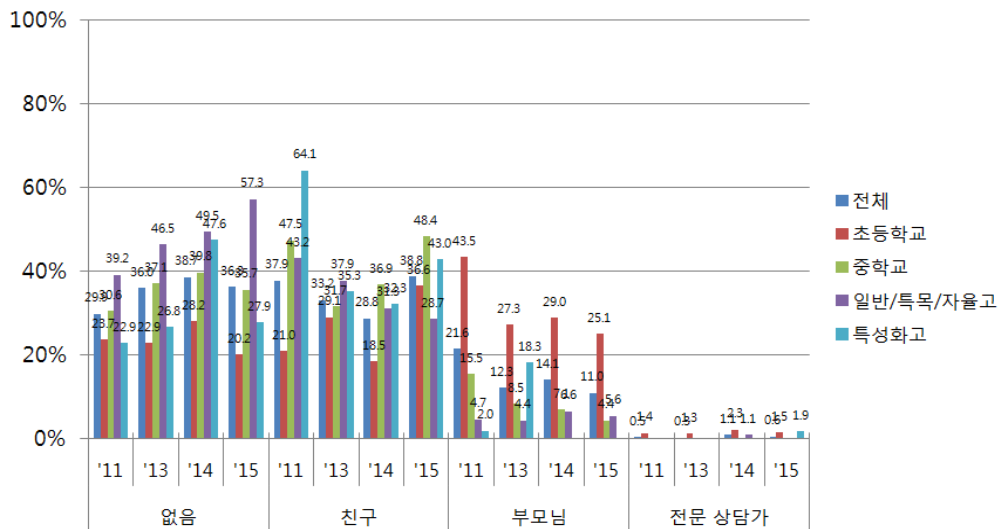
성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도 36.3%에 해당하며, 주로 모든 연령대와 학교급별, 지역규모와 가족유형, 학업수준과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성적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제대로 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구 다음으로는 부모님과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형제자매나 전문상담가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보다 높았다.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의 연도별 추이는 전문 상담가에게서 받은 경우가 2011년부터 2015년 전 기간 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준 사람은 전 기간 동안 친구가 가장 많았다. 2011년 전체 아동·청소년의 37.9%가 2015년에는 38.8%가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이러한 친구로부터의 도움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즉, 2011년에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64.1%가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2015년에는 43.0%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21.1%에서 36.6%로 2011년에 비해 2015년이 증가하였으며 미비하지만 중학생의 경우도 47.7%에서 48.4%로 증가하였다. 일반/특목/자율고의 경우는 2015년이 될수록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2011년 43.2%, 2013년 37.9%, 2014년 31.3%, 2015년에는 28.7%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이한 것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전체 21.6%의 아동·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2013년 12.3%, 2014년 14.1%, 2015년 11.0%로 감소추세에 있다. 초등학생은 2011년 43.5%에서 2013년 27.3%, 2014년 29%, 2015년에는 25.1%로 2011년에 비하면 18.4%나 감소하였다.

표 Ⅲ-7-47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단위 : %(명))

구분		없다	친구	선배	부모님	형제 자매	교사	전문 상담가	경찰	인터넷	기타	전체(N)
전체		36.3	38.8	1.6	11.0	1.6	5.5	0.6	2.8	0.4	1.4	100.0(401)
성별	남자	42.5	39.3	2.2	8.0	0.7	5.4	0.3	0.8	0.4	0.5	100.0(207)
	여자	29.6	38.2	1.0	14.2	2.6	5.6	1.0	4.9	0.5	2.5	100.0(193)
학교 유형 ¹	초등학교	20.2	36.6	2.4	25.1	3.3	8.7	1.5	0.8	0.0	1.5	100.0(127)
	중학교	35.7	48.4	2.1	4.4	1.6	5.6	0.0	0.0	0.7	1.6	100.0(135)
	고등학교	51.5	31.5	0.4	4.5	0.0	2.5	0.4	7.3	0.6	1.2	100.0(139)
지역 규모	대도시	36.1	40.3	3.4	8.7	2.5	5.2	0.6	1.6	0.5	1.2	100.0(164)
	중소도시	36.9	36.9	0.5	12.4	1.3	4.7	0.3	4.4	0.5	2.1	100.0(180)
	읍면지역	35.0	40.3	0.0	13.1	0.0	8.7	1.7	1.2	0.0	0.0	100.0(5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7	41.6	1.9	9.2	1.5	5.1	0.7	2.5	0.5	1.4	100.0(349)
	한부모가정	43.0	18.0	0.0	19.6	2.1	9.4	0.0	5.7	0.0	2.3	100.0(45)
	조손가정	23.9	40.5	0.0	35.6	0.0	0.0	0.0	0.0	0.0	0.0	100.0(6)
	기타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1)
학업 성적	상	34.5	43.0	3.3	10.3	0.0	7.0	0.0	0.9	0.0	1.1	100.0(112)
	중	30.5	37.7	1.2	14.7	2.7	6.0	0.0	5.7	0.5	1.2	100.0(167)
	하	45.8	36.5	0.8	6.6	1.5	3.5	2.0	0.6	0.7	2.1	100.0(122)
경제적 수준	상	32.8	42.9	2.6	8.4	0.4	6.1	0.6	4.6	1.0	0.7	100.0(173)
	중	33.4	38.2	0.7	15.2	2.8	6.9	0.4	1.2	0.0	1.3	100.0(144)
	하	48.5	31.2	1.2	9.2	2.0	1.8	1.1	1.8	0.0	3.2	100.0(83)



【그림 Ⅲ-7-15】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연도별 추이)

(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화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접수 현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처분과 기소 현황도 2013년 4,443명이 처분을 받았으며 1,961명이 기소되었다.

표 III-7-48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08	2,587	2,593	951	198	1,095	349
2009	2,699	2,696	920	167	1,197	412
2010	3,722	3,661	1,312	399	1,253	958
2011	3,978	3,922	1,312	399	1,253	958
2012	4,215	4,147	1,482	388	1,220	1,057
2013	4,431	4,443	1,808	153잘못된 계산식	1,280	1,202

* 출처: 대검찰청(2013a), 검찰연감. p.539.

대검찰청(2014b), 검찰연감. p.492.

* 주: 1) 산출죄명: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

2)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2013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에는 변화가 없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개인적 심각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표 III-7-49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개정 전	개정 후
형법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미만 의제유사강간	-	징역 2년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개정 전	개정 후
			2천만원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작수입수출	5년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영리목적판매· 배포·전시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징역
		전시·상영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알선행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3년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이하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	-	무기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징역

* 출처: 법제처 (201.1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4&nwYn=&query=에서> 2015년 10월 4일 인출.

(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율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4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총 29개로 310명이 입소할 수 있으며 193의 상근 종사자와 14명의 자원봉사자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다.

표 Ⅲ-7-5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 도	개소수	입소정원	종 사 자 수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
2009년	20	214	116	69	47
2010년	19	209	100	72	28
2011년	19	209	90	64	26
2012년	22	249	104	96	8
2013년	23	264	124	104	20
2014년	29	310	153	193	14

* 출처: 여성가족부(2013c).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7.

표 III -7-5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7세미만	7-13세	14-19세	20세이상		
2009년	전체	312	13	33	125	141		
		100%	4.2	10.6	40.1	45.2		
	장애인	90	0	3	33	54		
		100%	0	3.3	36.7	60.0		
2010년	전체	282	10	30	120	122		
		100%	3.5	10.6	42.6	43.3		
	장애인	90	0	5	29	56		
		100%	0	5.6	32.2	62.2		
2011년	전체	226	14	15	88	109		
		100%	6.2	6.6	38.9	48.2		
	장애인	64	－	－	22	42		
		100%	－	－	34.4	65.6		
2012년	전체	236	10	12	108	106		
		100%	4.2	5.1	45.8	44.9		
	장애인	78	1	1	25	51		
		100%	1.3	1.3	32.1	65.4		
연도	구분	계	5세 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3년	전체	238	5	15	113	44	60	1
		100%	2.1	6.3	47.5	18.5	25.2	0.4
	장애인	103	－	3	36	26	37	1
		100%	－	2.9	35.0	25.2	35.9	1.0
2014년	전체	285	2	19	141	59	63	1
		100%	0.7	6.7	49.5	20.7	22.1	0.4
	장애인	167	0	4	66	42	54	1－
		100%	－	2.4	39.5	25.1	32.3	0.6

* 출처: 여성가족부(2013c).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8.

여성가족부(2014d).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0.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은 2014년 5세 미만 0.7%, 5세-12세 이하 6.7%, 13세-18세 이하 49.5%, 19세-24세 이하 20.7%, 25세-64세 이하 22.1%, 65세 이상 0.4%이다.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보호시설 입소 수가 증가하였다.

②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에는 성폭력 상담 전체 횟수 중 1,377건이 여성이다. 19세-14세 여성 청소년은 199건, 남자 청소년은 10건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많아서 남성이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건수는 73건이고 5%에 해당한다.

표 Ⅲ-7-52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성별	연령대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951 (65.6)	199 (13.7)	109 (7.51)	41 (2.82)	77 (5.31)	1,377 (95.0)
남		43 (2.96)	10 (0.69)	13 (0.9)	4 (0.28)	3 (0.20)	73 (5.0)
총계		994 (68.6)	209 (14.4)	122 (8.4)	45 (3.1)	80 (5.5)	1,450 (100.0)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14.8.20.),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pp.2-3.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2006년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어 2012년 355명이 교육을 받았고 2014년에는 257명이 교육을 받았다.

표 Ⅲ-7-53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 실시 인원

(단위 : 명)

연도별	중앙센터	40시간 교육									지적장애	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2006	24	-	20	10	26	-	-	-	-	-	14	94
2007	108	5	58	62	47	-	-	-	-	-	25	305
2008	-	45	47	45	43	-	-	-	-	-	25	205
2009	-	44	43	36	39	34	42	-	-	-	17	255
2010	-	52	60	40	48	29	46	50	18	-	29	372
2011	-	38	46	31	31	31	43	50	18	24	21	333
2012	-	31	44	43	41	31	39	48	24	29	25	355
2013	12	22	30	31	29	27	32	26	16	30	23	278
2014.10.	-	26	24	37	24	34	11	34	8	22	37	257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백서. p.265.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4), 내부통계자료.

③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성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 치료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총 56,960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심리·정서적 지원도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에 26,015건이 이루어졌으며, 수사과 법적인 지원도 2,448건이나 있었다. 의료지원서비스도 7,369건이 이루어졌으며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은 3,425건, 자립을 위한 지원에는 51,444건이 이루어졌다. 성폭력 피해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고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의 질적 양적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표 Ⅲ-7-5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단위 : 건, %)

연도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 지원	기 타
2009년	14,570	8,165	417	2,626	789	401	2,172
	100%	56.0	2.9	18.0	5.4	2.8	14.9
2010년	18,218	12,666	311	2,276	688	868	1,409
	100%	69.5	1.7	12.5	3.8	4.8	7.7
2011년	21,274	15,843	268	2,824	528	453	1,358
	100%	74.5	1.3	13.3	2.5	2.1	6.4
2012년	28,581	15,395	453	3,894	2,096	791	5,952
	100%	53.9	1.6	13.6	7.3	2.8	20.8
2013년	42,678	23,246	1,126	6,021	2,749	2,595	6,941
	100%	54.5	2.6	14.1	6.4	6.1	16.3
2014년	56,960	26,015	2,448	7,369	3,425	5,144	12,559
	100%	45.7	4.3	12.9	6	9	22

* 출처: 여성가족부(2014d).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3.

5) 소결

특별보호조치에서는 중분류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소년사범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로 나누었다. 우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세부적인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율, 교육실태 및 참가율,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여율이 조사되었다. 소년사범아동의 인권실태를 위해서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수용률,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이 조사되었다. 경제적 착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정도가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성적 착취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정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가 조사되었다.

첫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탈북 난민 아동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조사되었다. 우선 2015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3,213명이 난민 신청을 하여 94명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아동 청소년 난민의 숫자는 없지만, 난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난민 아동·청소년의 숫자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 난민 아동의 수도 마찬가지로여서 탈북 청소년의 연도별 입국현황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다문화 가족 자녀라고 차별 받은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긴 하였으나 이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법에 의해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어 내년이나 되어야 더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을 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변화 추이를 보면 2012년에는 21%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경기도는 물론 다문화 가정이 밀집해 있는 곳이므로 예외가 될 수도 있으나 이는 한국사회가 향후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탈북학생의 경우 2014년 4월 기준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 전체 2,183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교육시설에도 283명이 재학하고 있다. 연도별로 전체의 수는 증가하지만, 초등학생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재학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중도탈락률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은 2012년과 2013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상급학교인 고등학교에서의 중도탈락률이 높아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진로발달을 이루는데 문제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심각한 수준인데, 역시 고등학교에서의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아서 이에 대한 개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초기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를 살펴보면 이들의 참가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예비학교는 2014년에 80개가 운영되어 2013년보다 50개가 늘어났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도 상담종류별로 감소와 증가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담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결과이다.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중,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는 2013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평균수용기간은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8호 처분을 받은 경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2012년 170명이던 것이 2013년 152명으로 감소하였고 주로 절도와, 강간, 강도가 범죄의 유형이었다. 2008년과 2009년에 폭력·상해가 5.8%, 4.7%였던 것이 2013년에는 폭력·상해가 11.2%로 증가하기도 하여 청소년 대상의 폭력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2012년에 실시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던 법률조력인 제도가 2013년 6월부터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법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동과 청소년을 전담하여 이들의 피해를 대변할 수 있는 법률조력인의 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체계는 현재 3단계로 이루어져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소년사범 프로그램이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현황은 내용별(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로 증가와 감소가 각각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신청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추후조사가 필요하다. 소년보호관찰인원은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2,581명이 감소하였다.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의 방향으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은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숫자가 감소한 대신 오히려 증가하였다. 청소년 수감명령은 2014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추세 역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제도 전반적인 개선과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성인으로부터의 안전한 보호와 선도를 통하여 보다 긍정적인 개선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은 미비하지만 기소유예자 전체의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 수준에 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의 근로시간이 더 많다.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최저임금의 상향과 더불어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인구 시간당 임금총액의 평균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남자청소년 12.1%, 여자청소년 12.3%가 경험한 적이 있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양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았다.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여자청소년의 경우 17.7%나 되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2011년에 비하여 2015년에 다소 감소하여 12.2%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015년이 되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거나 전혀 다른 일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아르바이트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한 경우,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경우, 구타나 폭행, 심지어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경제적 착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여러 종류의 피해경험이 지난 5년간 눈에 띄게 줄었다거나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연령별로, 또는 학교급별로 피해경험의 종류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지난 5년간 청소년의 경제적 착취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구타나

폭행 같은 피해율은 증가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 중에 여전히 청소년들의 성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집중 단속과 범위반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착취가 청소년의 경제적 환경, 가정환경과 학교유형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바, 이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 실태이다.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예방전문강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적 인프라가 조금씩 갖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교육 경험률은 2012년이 가장 낮았고 2014년에는 중학생 77.6%, 고등학생 66.3%가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성폭력 피해정도를 알 수 있는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제도 마련과 강력한 처벌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도 36.3%에 해당되어 성폭력 예방전문강사의 양성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지원과 치료를 위한 인적 자원의 확보도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검거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성폭력 범죄의 형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형량의 증가와 강력한 처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도 다소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피해의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회복적 처벌이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서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인 발전과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IV 장

요약 및 정책제안

1. 요약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제 IV 장

요약 및 정책제안⁴⁹⁾

1. 요약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 영역의 12개 지표항목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 제정,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재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신설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4.4%, 9.7%, 17.1%로 중요한 인권 규범과 기구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는 74.2%로 2014년도 70.8% 대비 상승하였다. 65.3%만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인권교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70.6%만이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인권교육 내실화 방안이 필요하다. 일 년에 1회 이상 차별한 경험은 성차별(21.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 차별(20.9%), 연령차별(20.8%), 외모·신체조건 차별(20.3%) 순으로, 차별받은 경험은 학업성적 차별(24.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령차별(21.0%), 외모·신체조건 차별(19.6%), 성차별(1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차별경험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도 및 기구 등 인권기반의 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으나 전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만큼의 자원과 기반은

49)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김희진 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가 집필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7개 대분류 영역 기준으로 담당 지표별로 해당 연구요약과 정책제언을 집필하였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대분류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과 '대분류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관련 내용을, 김희진 연구위원은 대분류 3영역의 두번째 중분류 지표인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부분과 '대분류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그리고 '대분류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중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중분류와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중분류를, 이민희 교수는 대분류 3영역의 첫번째 중분류 지표인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대분류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관련 내용을, 박선영 교수는 대분류 5 영역의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등 세 개의 중분류와 '대분류 7. 특별보호조치' 관련 내용을 집필하였다.

아직 부족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부서가 신설된 것은 희망적이나 과업에 비해 조직 규모와 안정성은 미흡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할 전담조직과 기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주요 인권 규범과 기구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낮은 인식은 인권교육 경험 부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권교육은 권리의 하나로 인식되며 의무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 경험율이 낮고 교육을 받은 10명 중 3명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권교육의 시간(양)뿐만 아니라 내용(질)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인권교육의 체계적 실시와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에 더욱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한편 인권존중 정도와 차별 경험이 전년도에 비해 작게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희망적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교육 미흡으로 인권 감수성이 낮아져서 인권 민감성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는지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영역의 24개 지표항목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가정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의견존중도는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학생회의 자율권 보장은 20~30% 내외로 낮게 나타났고 학급회의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4%,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34%나 되었다.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12.6%로 낮은 편이었고 참여기구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는 2.4%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58.1%였으며,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시간부족이 35.2%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1.3%),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부족(15.8%), 참여방법과 기회부족(14%)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은 62.9%였으며, 종교재단 재학 청소년 중 53.9%가 종교행사 선택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문제와 관련한 참여활동으로 경고 및 훈계를 받은 경우는 2.1%로 나타났다. 용모검사, 복장검사, 소지품검사 경험은 50.7%, 43.6%, 17.8% 정도로 나타났으나 용모·복장검사 경험은 2011년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가 학교규칙 변경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는 83%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정책 홍보자료 제공(22.4%),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 제공(15.1%),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25.5%) 등 인권관련 정보를 받은 경험은 2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와 사회의 편견으로, 우리사회에서 참여권은 아동·청소년이 특히 누리기 어려운 권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학교의 학급회의나 학생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는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참여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자치기구는 아예 운영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도 하며, 청소년 참여기구의 경우는 이를 알고 있는 경우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여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교구성원인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3~4명은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절반 정도의 학교는 아직도 용모 및 복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에서의 시민적 권리 수준은 열악하다. 참여권 보장수준이 가장 낮다고 응답한 집단은 일반계 고등학생인 것을 볼 때, 학업부담과 입시문제가 학생들의 참여권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2015년에는 학교규칙 제·개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학칙 조항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는 인식 하에 민간단체의 학칙 조사연구와 이슈화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학교현장을 민주적 소통이 가능한 인권친화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물꼬로서 학생들에게 체감되는 수준이 높은 민주적 학칙 제·개정 및 운영사업을 본격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3) 폭력 및 학대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서는 2014년에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대분류 지표 영역에 속해있던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폭력’ 대분류로 구분하였다. 또한, 2014년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대분류 지표영역에서 중분류 지표로 정해졌던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폭력과 함께 대분류로 구분하여 새롭게 ‘폭력 및 학대’로 대분류 지표영역을 구성했다. 지금까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분류 지표 내용 ‘폭력’에 해당되는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의 중분류 영역에는 2014년도에 체벌 경험률, 정서적 학대 경험률, 청소년폭력 경험률로 소분류 했던 것을 2015년에는 청소년폭력 경험률과 체벌 경험률의 2개 소분류 영역 지표로 구성하였다. 청소년폭력 경험률의 소분류 지표영역에는 2014년도 세부지표였던 폭력피해 경험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지표에 2014년에 중분류화 되었던 정서적 학대 경험률이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정서적 학대 경험률, 폭력피해 경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이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체벌 경험률의 소분류 지표영역에는 2014년과 동일하게 체벌 경험률의 세부 지표항목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의 중분류 영역 전체를 보았을 때에는 2014년에 5개였던 세부지표 항목들이 2015년에는 4개 세부 지표항목들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정서적 학대 경험률에서는 가정, 학교,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의 폭력 경험에 관하여 기술되었다. 정서적 학대 피해 경험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들은 부모로부터 29.8%, 교사로부터 18.3%,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14.4%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폭력피해 경험의 세부 지표항목에서는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받는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성적 희롱이나 추행에 관하여 기술되었는데, 피해 경험은 각각 5.5%, 5.2%, 3.2%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체벌 24.8%와 교사로부터의 체벌 18.4%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세부 지표항목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률에서는 심한 모욕이나 욕설, 따돌림, 사생활 침해가 기술되었는데 각각 전체응답자의 15.8%, 1.7%, 4.9%를 보이고 있어 사이버공간에서는 정서적 학대 피해가 다른 폭력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의 조사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2014년도 최근자료를 보면 신고접수 건수는 17,752건으로 2013년의 13,943건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3년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3년 기준 51개소에서 2015년 현재 54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여 상담원의 소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대사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례수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서학대의 전년대비 사례 수는 2,333건, 비율은 2.4% 증가하였으며, 신체학대의 전년대비 사례수는 2,539건, 비율은 6%가 증가하여 신체학대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남자아동의 성학대와 10대 미만 아동의 성학대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자아동이나 어린 아동에 대한 단순 행동으로 치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성적 행동, 나아가 성학대라는 사회적 인식향상에 따라 신고접수가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어 추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중복학대와 재학대도 증가한 것을 볼 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1회 이상 야간 시간 방입률이 6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결하지 않은 의복을 입거나 이부자리에 잠을 잔 경험은 15.4%, 아픈 경우에 부모님(보호

자)이 그냥 방치한 경험은 7.4%, 식사를 하지 못해도 부모님(보호자)이 신경 쓰지 않는 비율은 9%, 학교에 결석한 경우에도 무관심인 비율은 1.7%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정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방임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방임경험과 이들에게 결핍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사정(assessment)을 기초로 필요한 개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대분류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의 세가지 중분류로 구분된다. 먼저, 부모의 지도와 책임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2011년 조사결과에 비해 최근 2014년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늘어났으며 대화주제별로는 월1회 이상 청소년의 고민에 대한 대화는 65%,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는 74.6%로, 청소년자녀의 고민에 대한 대화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은 2004년의 26,903개소에서 2014년의 43,742개소로 확대·설치되었으며, 운영주체별로는 2014년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약간 증가하였고, 이용 아동수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들 시설의 질적 수준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4년에는 대도시의 어린이집이 다소 증가한 반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시설 수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현재 교사 1인당 4.8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줄어든 부담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방과후학교의 참여 실태를 보면, 참여율이 2009년 51.3%에서 2014년 현재 59.3%로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보다는 교과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지역아동센터는 전년도와 유사한 4,059개소에 이용아동수는 108,936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4년 200개소에 연인원 2백만명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만족도는 세 개 시설/기관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질적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프로그램 영역별로 제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국외입양은 크게 감소하여 2013년 기준으로 국내입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5.6%로 나타났으며, 대신 국내입양은 크게 증가하여 74.4%에 달했다. 그러나

2014년 사회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32.6%, ‘잘 모르겠다’는 30.2%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조사대상자가 입양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양을 기피하는 이유는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57.2%,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19.3%,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9%,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6.3%, ‘입양자녀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6.3%순으로 나타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안양육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현황을 보면, 2013년 6,020명에서 2014년 4,994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료 분석 결과, 가정위탁보호, 특히 조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일반위탁아동이 약간 증가하였는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일반위탁 가정을 발굴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일반가정위탁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반위탁부모의 자격기준 및 사후관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은 14~18세 기준으로 2009년 13,210명에서 2013년 11,27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일시보호와 중장기쉼터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 부모와의 문제(63.5%)이고 이는 원가정 복귀가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할 때, 중장기쉼터의 접근성 확대와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등이 더욱 요구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육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써 3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2016년 평가를 준비 중에 있어 지표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아동안전과 심리상담, 원가족과의 유대강화,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이 더욱 강조되고, 아동권리에 대한 평가 점수 배점이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제는 평가실시 자체보다 평가 후 사후조치로써,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활용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2015년도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대분류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으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3년에는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의 대분류 아래에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청소년의 생식 보건권리’, ‘약물남용방지 대책’, ‘사회 보장 및 아동 보호시설’이라는 중분류로 분류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청소년의 ‘생식 보건권리’, ‘약물남용방지 대책’이라는 중분류가 삭제되었다.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대분류 아래 중분류로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숫자는 전체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평균 2,418명이 증가하였다. 2014년 25,827명은 특수학교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는 45,803명, 일반학교 일반학급에는 15,648명이 재학 중이다. 공립 특수교육 교원 확보율은 61%에 그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3개 이상의 학교가 신설되었고, 지난 5년간 특수학급의 수는 연평균 538학급이 증가하였다.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의 취업률은 2014년까지 증가와 감소추세를 반복하고 있고 진학률에 있어서도 2014년 초까지는 다소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 말을 기준으로 다시 감소하였고, 무직률이 늘어났다. 장애 청소년의 기본적인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며, 특히 진로교육 내실화를 통한 취업과 상급학교로의 진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발달 실태를 대변하는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0세의 기대여명은 이미 OECD회원국의 평균 기대수명보다 높았는데 2014년에는 더욱 높아져서 81.94세로 나타났다. 영아사망률 역시 OECD 34개국의 평균보다 낮다. 0세에서 24세 연령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은 2013년 이후 다소 증가 추세에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질병에 의한 사고보다는 사고나 다른 외인에 의한 사망이 많았다. 10세에서 19세의 사고사망률은 2013년까지는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4년에는 다소 증가하여 10만 명당 11.3명이 사고로 사망하였다. 사망의 원인으로 10세에서 19세의 경우 자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운수 사고였다. 20세에서 29세까지도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만 명당 17.8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는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4배에 이른다. 응답자의 90% 정도가 학교급식을 신뢰하고 있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양부모가정일 경우,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해 안전하다고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부모가정의 청소년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읍면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지난 5년간 학교 급식을 안전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높아졌으며,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교통사고로부터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도 높아졌고, 음식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2015년에 훨씬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보건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보건법이 각 학교당 1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배치현황은 2014년 현재 64.6% 수준이었다.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중에 있으므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사회의 보건소, 병·의원, 특수병원 등의 건강관련 시설은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일반계고 보다 특성화계고 재학생인 청소년의 비만율이 더 높고 2011년 이후 남녀 모두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의 질환별 유병률을 보면 선천성 심장질환이나 아토피 피부염처럼 유병률이 증가하기도 하며, 주의력 결핍장애의 경우 1세에서 11세의 경우는 감소추세, 12세에서 18세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원 미치료와 치과 미치료율은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어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 비해 3배 이상의 미치료를 차이를 나타냈다. 병원이나 치과 미치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약국 이용율 역시 낮게 나타나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흡연율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음주율은 감소추세이던 것이 2014년 다소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흡연예방교육율과 음주예방교육율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흡연과 음주율이 낮아진 것이 교육경험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85.7%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 한다고 응답이 31.9%로 가장 높았다. 등교 전에 ‘거의’ 또는 ‘보통’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은 73%수준이었으며, 아침 결식 이유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가 36.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은 평일 평균 7시간 17분이었고, 과반수정도가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수면이 부족한 이유로는 자율학습 등 학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50.8%로 나타났다. 비만율은 그동안 다소 상승세였으나, 2013년을 정점으로 하여 2014년에는 그다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적으로 70%를 훨씬 넘었으며, 우울감은 약 30%내외의 응답자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6.8%의 응답자가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51%), 외모 및 신체조건(25.9%), 또래와의 관계(20.6%), 가정불화(15.7%), 경제적인 어려움(10.4%)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업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소추세였으나, 중학생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4.3%의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삶의 수준(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0점~10점 척도에서 평균 6.75점을 나타냈고, 6점 이상 응답한 11세, 13세, 15세 아동의 응답에 대한 국제비교결과 대부분의 국가보다 훨씬 낮은 삶의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해외자료는 5~6년 전 것이어서 최근 데이터가 산출 되는대로 동일조건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중 27.9%가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더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민거리 대화상대로는 친구(40.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어머니(35.2%)였다.

아동·청소년 빈곤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예산규모를 더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지원서비스로는 교육복지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역아동센터가 해당되며, 이들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 또 지역사회에서의 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해 최일선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2015년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제6영역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관련된 내용들에 근거하여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을 대분류로 하여 하위 영역에 3개 중분류 지표들과 8개 소분류 지표들 아래 총 21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분류 지표들에는 ‘6-1. 교육에의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29조의 내용들을 세부 지표들로 하고 있는 ‘6-2. 교육의 목표’,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의 제31조의 내용들은 담은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분류 지표들의 구성을 보면, 먼저 ‘6-1. 교육에의 권리’ 중분류 지표는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2. 학교 부적응률’, ‘6-1-3. 대안교육 참여율’로 구성되어있고 각각의 세부 하위지표들로 구성되었다.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의 소분류 지표에는 학생 취학률 및 진학률, GDP 대비 학생 1인당의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가 세부 지표항목들로 정해져 있다. 세부지표들에 대한 2015년도 조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 취학률에서는 2014년도 초등학교 취학률이 96.4%, 중학교 취학률이 97.7%, 고등학교 취학률은 93.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이래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중등 교과과정의 학생 진학률에 있어서는 2010년이래 지속적으로 진학률이 99%를 넘고 있고, 고등교육과정으로의 진학도 2000년에 62%에서 2014년 70.9%로 증가하였다. 이중 2010년에 전문계고 진학률이 71.1%로 가장 높았으나 점차 낮아져 2013년에는 46.8%를 보이고 있어 학생들이 청년실업의 여파로 점차 고등교육과정으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구매력지수에 따른 1인당 GDP는 세계 29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12년도 기준으로 한국이 18.4명, 18.1명, 15.4명인데 반하여,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5.3명, 13.5명, 13.8명으로 과거에 비해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소분류 지표 ‘6-1-2. 학교부적응률’은 학업중단율과 학업포기 결심여부의 이유, 그리고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세부지표로 하고 있다. 먼저, 이 소분류 지표에 해당되는 하위 세부지표들 중 가장 심각한 지표인 ‘학업중단율’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가 0.6%, 중학교 0.8%, 고등학교가 1.6%의 학업중단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단하려는 이유에서는 학교 규율에의 원인은 6.5%로 크지 않지만, ‘공부하기 싫어서’가 45.6%,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29.6%로 나타나 대한민국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단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조사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23.5%로 거의 4명 중 1명에 해당되는 수치로 나타났다.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지와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하는가에 관하여 각각 전체 응답학생의 23.7%와 25.5%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 학생 4명 중 1명 정도는 학교가 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7.5%의 학생들은 학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자신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6-2-2.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의 지표는 전국의 진보적인 교육청들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근접된 노력을 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2014년도 7월 기준 전국의 혁신학교 운영 학교 수는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 6개 시·도교육청에 총 628개교이다. 혁신학교는 기존의 입시위주 수업을 탈피하여 공동체 수업, 협동학습, 프로젝트 수업, 토론·토의 방식의 수업 등의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학습의 문화를 개선하여 일반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미래 핵심역량, 수업 공동체, 학교생활 만족도 및 행복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중분류 지표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시설과 이들의 참여율, 만족도,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들이 지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2,266개의 시설들로 2005년에 비해 2배가 증가되어 공공도서관 869개, 박물관 749개, 미술관 198개, 문예회관 221개, 지방문화원 229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의 활동시설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의 총 수는 781개로 조사되었다. 다른 소분류 지표 ‘6-3-2.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은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및 예술 활동에의 참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세부지표들로 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및 예술 활동에의 참여율 실태를 보면, 2014년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9~24세의 응답청소년들 4명 중 3명 이상이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을 보면 응답학생 중 84.2%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아리활동 참가율은 72.6%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에 있어서는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명 중 1명이 넘어 22.5%나 되었고, 5시간 이상에 응답한 학생들도 10.2%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과 상대되는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보면 전체응답자 중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2~3시간미만 학습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였고, 3~4시간미만은 19%, 5~6시간미만이 8.6%, 6시간 이상 학습한다는 응답도 6.1%에 달했다. ‘6-3-3. 여가·문화·예술 활동의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소분류 지표와 관련해서 2013년 13~19세 청소년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있어서의 응답은 만족에 40%, 보통이 43.2%, 불만족이 16.8%로 나타나 2011년에 비해 10% 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불만족한 청소년들의 이유들로는 시간부족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33.4%, 취미가 없어서가 10.5%, 여가시설의 부족이 4.4%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여가시설 이용 만족도에 있어서도 10명 중 9명이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여가에 있어서 시설 인프라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간과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임이 확인되었다. 소분류 영역의 마지막 세부지표 항목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 정도’에서는 대체로 3명 중 2명 정도는 학부모들로부터, 4명 중 3명 정도는 학교로부터 그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평일 여가시간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체활동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5년에만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청소년의 단체활동에 대해서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지지도가 완만하게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에 관한 인권지표는 2013년 이후 다소 변경되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같은 지표가 사용되었다. 2013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참여율이라는 신규지표는 이들의 인구가 증가면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되었다. 또한 청소년 근로와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 정도는 청소년의 파트타임 취업률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으며 청소년의 근로 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사항은 성적 착취 항목이 아니라 경제적 착취가 그 원인이 되므로 경제적 착취라는 중분류 안에 포함되었다.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 형량에 대한 변화가 지표항목에 포함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별보호조치 대분류에서 조사된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탈북 난민 아동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결과 2015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3,213명이 난민 신청을 하여 94명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아동 청소년 난민의 숫자는 없지만, 난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난민 아동·청소년의 숫자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예측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 조사 결과에서는 대체로 다문화 가족 자녀라고 차별 받은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법에 의해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어 2016년 이후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을 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변화 추이조사를 보면 2012년에는 21%가 증가하였다. 탈북학생의 경우 2014년 4월 기준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 전체 2,183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교육시설에도 283명이 재학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은 2012년과 2013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상급학교인 고등학교에서의 중도탈락률이 높다.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심각한 수준인데 역시 고등학교에서의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초기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예비학교는 2014년에 80개가 운영되어 2013년보다 50개가 늘어났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중, 보호소년의수용인원수는 2013년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평균수용기간은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8호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2012년 170명이던 것이 2013년 152명으로 감소하였고 주로 절도와, 강간, 강도가 범죄의 유형이었으며, 2008년과 2009년에 폭력·상해가 5.8%, 4.7% 이던 것이 2013년에는 폭력·상해가 11.2%로 증가하였다.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체계는 현재 3단계로 이루어져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소년사법 프로그램이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현황은 내용(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별로 증가와 감소가 각각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신청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추후조사가 필요하다. 소년보호관찰인원은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2,581명이 감소하였다.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의 방향으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은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숫자가 감소한 대신 오히려 증가하였다. 청소년 수강명령은 2014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추세 역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은 미비하지만 기소유예자 전체의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상향과 더불어 다소 증가하였지만 전체 인구 시간당 임금총액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남자청소년 12.1%, 여자청소년 12.3%가 경험한 적이 있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양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에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았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여자청소년의 경우 17.7%나 되었고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015년이 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여러 종류의 피해경험이 지난 5년간 눈에 띄게 줄었다거나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거의 없었으며 연령대별로, 또는 학교 급별로 피해경험의 종류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지난 5년간 청소년의 경제적 착취가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구타나 폭행 같은 피해율은 증가추세에 있고 성적인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제적 착취가 청소년의 경제적 환경, 가정환경과 학교유형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적 인프라가 조금씩 갖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성교육 경험율도 증가하여 2012년이 가장 낮았고 2014년에는 중학생 77.6%, 고등학생 66.3%가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도 36.3%에 해당되어 성폭력 예방전문강사와 성폭력 피해 지원과 치료를 위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검거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도 다소 증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긴 하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서치료 서비스의 질적인 발전과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⁵⁰⁾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선정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현황파악,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청소년 대상 정책과제 수요조사,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권고사항 분석 등을 실시하였

50) 이 절에서 ‘2015년도 인권실태조사 결과’로 언급된 자료들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V’의 결과로서, 관련된 세부내용은 본문 III 장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다. 선정된 우선과제에 대해 해당 정책과제의 주요내용과 추진절차, 관련법 개정사항, 소요예산 등을 작성하여 정책개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정책과제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관계자의 검토의견을 받아 수정·보완함으로써 정책활용도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⁵¹⁾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7개 대분류 영역별로 2~4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18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IV-2-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I.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1.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조직·기구 운영 활성화	여론조성 및 예산확보	법 개정	인권사업 확대	인권사업 확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과제2.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여론조성 및 의제화	법 제정	시행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II.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1.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및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확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 교육 및 연수, 우수사례 발굴·보급	모니터링, 교육 및 연수	모니터링, 교육 및 연수	교육부 시·도교육청
과제2. 아동·청소년 참여를 통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모니터링 및 한국아동·청소년보고서 작성	포럼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포럼 운영, 한국청소년 보고서 작성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출	홍보 및 확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자치조직
III. 폭력 및 학대					
과제1. 가정·학교·기타기관에서의 아동폭력 전면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법제도 검토와 사례분석	관련법 개정 및 신설 후 공청회 개최	관련법 최종 확정 공시 및 홍보	실시	교육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
과제2. 성학대 피해아동 특성에 기반한 대책 마련	예방교육 강화	전담 기구 설치 및 전담인력 교육	재활서비스 개입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51) 인권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및 자문을 제공한 전문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구정화 교수(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김영인 교수(한국방송통신대 청소년교육과), 김지혜 교수(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김차연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서여정 선생님(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종섭 연구위원(전북발전연구원).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1. 아동 맞춤형 위탁가정제도 확충 방안 마련	맞춤형 위탁가정 운영모형 개발 연구	위탁부모 발굴 및 역량 강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계속	보건복지부
과제2. 대안양육 아동의 친가정 교류 활성화	친가족교류/복귀 위한 사정도구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친가족 역량강화 개입/지원	계속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과제3.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양육 지원방안 모색	실태조사·육구파악	제도 정비 및 확대	인권의식 및 역량강화	계속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Ⅴ.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1. 장애 아동·청소년 전담 교육지원교사제도 운영	기반조성	학교배치 시범사업	전국의 학교로 운영 확대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 정착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제2.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자립지원 비용 추산 연구	정부마스터 플랜 수립	재정지원과 지원범위 확대	확대	보건복지부
Ⅵ.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과도한 학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평준화특례법 제정	교육평준화 특례법 제정 연구 용역 발주	교육평준화 특례법 제정 및 공청회 개최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의 점진적 폐지	계속	교육부, 시·도교육청,
과제2. 청소년의 여가·문화 향수 권리 회복을 위한 학원법 개정	여론 형성 및 공청회 개최	학원법 개정	시행	시행	교육부, 시·도교육청, 여성가족부
과제3. 특성화고등학교 확대 정책 도입 및 관련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 발주	관련법 개정	시행	시행	교육부
Ⅶ. 특별보호조치					
과제1.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에 대한 외국인 등록 및 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실태조사	사회인식 개선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과제2. 소년사법 절차 및 처우에 관한 법·제도 개선	법·제도 검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확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과제3. 성매매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앱(App)개발·운영	앱(App)개발·운영 제도화	앱(App)개발·운영 제도화 확산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과제4. 농촌지역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례 및 타당성조사	실행방안 마련	전담 의료기관 시범 운영	전담 의료기관 지정 확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및 조정 기구의 필요성과 기능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해왔다. 국내적으로도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인권교육, 청소년인권 모니터링, 인권상담과 옹호,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및 홍보 등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여성가족부는 2011년부터 ‘청소년희망센터’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인권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권리전담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내실화와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부여받은 역할에 비해 예산과 인력여건, 조직 위상 등은 열악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김영지, 모상현 외, 2015: 3-4).

부처 차원에서는 201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인권팀이 신설되어 독립적 인권기구 권한을 가진 아동·청소년 모니터링을 비롯한 본격적인 인권신장 노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제도개선과 구제활동까지 담당해야 하는 업무 대비 인력여건은 부족하고(5명), 사업예산도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현 조직이 2017년까지의 한시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청소년주무부처의 인권전담기구와 부처단위의 아동·청소년 인권전담 조직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인권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활성화

아동·청소년 인권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가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인지도가 매우 낮고 단위사업 수준의 예산규모(2억 이내)로 인권교육, 인권교육 강사양성, 청소년 인권체험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크지 않다. 중앙단위 인권전담기구에 걸맞는 사업예산과 위상마련이 필요하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사업예산 확대 및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에 아동·청소년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었으나 5인의 인력과 2억에도 못미치는 예산으로 전국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진정 및 구제활동과 조사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기는 역부족이다. 또한 한시조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상시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기구·조직 중요성에 대한 여론조성 및 예산확보 작업
아동·청소년 인권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 홍보 활성화 및 2017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등 예산작업을 위한 설득력있는 자료 작성, 청소년과 전문가집단의 여론작업 등을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의 상설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사업을 펼친다.

② 제 2단계(2016년~계속) :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기구·조직 안정화를 위한 법 기반 마련
아동·청소년 인권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상설화하는 직제규정 개정작업을 실행하고 아동·청소년인권팀 인력증원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에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인원과 예산확충 노력을 지속한다.

③ 제 3단계(2017년~계속) : 기반조성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사업 확대 운영
사업예산 확대 및 사업조직 안정화 및 확대에 따라 인권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6년~)	제 2단계 (2016년~계속)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기구·조직 중요성에 대한 여론조성 및 예산확보 작업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기구·조직 안정화를 위한 법 기반 마련	아동·청소년 인권사업 확대 운영

4) 관련 법 개정 사항

청소년기본법에 아동·청소년인권(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을 검토하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상설조직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	워크숍, 정책협의회, 공청회, 국회 공동세미나 등 광범위한 홍보 및 여론 환기	• 워크숍, 세미나 등 10,000,000원 × 5회	50
2단계 (2016~계속)	법 개정 작업	• 비예산	
		총계	50

과제 1-2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은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즉 인권교육 자체가 하나의 권리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폭력과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하며 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인권교육이다. 유엔도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선포하였고 2005년과 2010년 제1, 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등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공무원 및 군대 등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인권교육지원법안 제안이유⁵²⁾). 본 2015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65.3%였고, 초등학생과 특성화고등학생은 인권교육 경험이 줄어들었다.

2014년 10월 10일 유승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의 인권교육 의무화, 체계적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인권교육계획 수립하며, 국가인권위원회

52) 인권교육지원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 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에서 2015년 3월 5일 인출.

에 인권교육원을 설치하며 인권교육 이행을 모니터링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교육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일부 단체의 반대에 의해 2014년 11월 6일에 발의 철회되었다. 아동·청소년기에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것은 인권 선진국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와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해 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인권교육지원법안 입법을 위한 여론조성 및 의제화

인권교육법 입법 자문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등을 구성하여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광범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인권교육법안의 의의에 대한 사회적 환기 및 여론화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도록 한다.

②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인권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하고 19대 국회 내 인권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전국민적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감수성 신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가 구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교육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인권교육 관련 여론조성 및 의제화를 통해 법 제정

인권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광범위한 홍보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권교육지원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킨다. 입법 관계자 대상 여론화를 통해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완료한다.

② 제 2단계(2017년~계속) : 아동·청소년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극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분야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관련 시설·기관 관련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세부 추진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17년~계속) : 청소년분야 인권교육 시행

아동·청소년 인권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분야 인권교육 과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6년~)	제 2단계 (2017년~계속)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인권교육 관련 여론조성 및 의제화를 통해 법 제정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분야 인권교육 시행

4) 관련 법 개정 사항

인권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인권교육 관련 법조항을 구체화하거나 체계화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	법제정 추진단 운영, 정책협의회, 공청회, 국회 공동세미나 등 광범위한 여론화 작업	• 추진단 운영 5,000,000원 • 워크숍, 세미나 등 10,000,000원 × 5회	55
2단계 (2016~계속)	법 제정 작업	• 비예산	
		총계	55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의 규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은 6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나 학생들의 생활에 밀접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학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불량 학칙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한 인권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학교가 학교 규칙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제·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인권침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학교규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인 경우가 많다(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2015).

교육부는 2012년 4월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매뉴얼(‘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발간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였으며, 2014년에는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 전문연수를 통해 담당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시대착오적인 학칙이 존재하고 있다(EBS NEWS(2015.10.14.), 2015년 10월 14일 방송내용 : 교복 위에 외투를 입으면 반성문, 고3 학생이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 자습실에서 남녀 학생 대화 시 벌점 등).

학생들이 오랜 시간 생활하는 학교를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으로 만듦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다. 학교문화와 학교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을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학생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및 지원역할이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 ① 비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 및 비인권적 학교규칙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태파악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전국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내용과 제·개정 절차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을 진단한다. 청소년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거나 시대착오적인 학칙을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및 운영 지원 및 담당자 연수 확대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과 방법에 대한 자료 개발·보급 및 담당자 연수를 확대한다.

③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내용 및 모범 운영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학교규칙 운영 현황 실태 조사

전국 초·중등학교의 학교규칙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규칙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② 제 2단계(2017년~계속)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장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장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③ 제 3단계(2017년~계속)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수

학교현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6년~)	제 2단계 (2017년~계속)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학교규칙 운영 현황 실태 조사	학교장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수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	학교규칙 운영현황 실태조사	• 연구조사비 50,000,000원	50
2단계 (2017~계속)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학교장 연수	• 50,000,000원 × 17개 시·도 = 850,000,000원	850
		총계	90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의 일환으로 2015년에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8.1%에 불과하였다. 매년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있듯이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시간부족’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은 많은 경우 입시위주의 학업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유예기적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청소년 인권 역사에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것은 아동·청소년이 성인의 부속물이자 무능력하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참여’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사와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참여권’의 주창에 있다 하겠다.

유엔은 회원국이 5년마다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과 진전사항들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개선 과제를 권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들은 민간단체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국가보고서가 담지 못한 자국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동권리위원회들과 논의하게 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당사자 또한 회원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며 회원국과 민간단체들이 아동·청소년들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자신들의 의사를 제출하는 데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CRC, 2009: para. 131). 한국정부는 2017년 6월 19일까지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스스로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눈높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담아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아동·청소년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클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인권포럼(가칭)’ 등과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및 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권장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양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와 개인 참가자 등 참여 통로를 다양화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진 집단들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무엇보다 모니터링 과정이 진정한 아동·청소년 참여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 성인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② 모니터링 역량 강화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한국아동·청소년보고서 작성·제출

2017년 6월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1년 이내 정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청소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효과적인 인권모니터링 실시를 위해서는 역량 강화프로그램이 반드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이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 한국의 국가보고서 및 민간보고서뿐만 아니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선진사례에 대한 이해,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인권역량 강화프로그램 이후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따라 실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한국아동·청소년보고서’를 발간하고 영문작업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주체로서 ‘아동·청소년 인권포럼’ 등 다양한 개인과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열린 모니터링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② 제 2단계(2017년~계속) :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역량 개발 및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성인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워크숍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③ 제 3단계(2018년~) :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의 일정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방문 및 회의를 준비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6년~)	제 2단계 (2017년~계속)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역량 개발 및 모니터링 실시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유엔 회의참석 준비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준비위원회 운영(공간·인력, 준비회의 등) 50,000,000원	50
2단계 (2017~계속)	인권모니터링 역량 개발 및 모니터링 실시	•워크숍, 세미나 등 10,000,000원 × 5회 = 50,000,000원 •모니터링 실시(각종 조사, 연구 등) 30,000,000원 × 17개 시·도 = 510,000,000원 •인권모니터링 교육 10,000,000원 × 2회 20,000,000원	580
		총계	630

과제 III-1 가정·학교·기타기관에서의 아동폭력 전면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실태를 살펴보면 본 연구인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과 같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 10,438명 중 29.8%에 해당되어 응답학생 10명 중 3명에 달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과 같은 정서적 학대를 받는 정도는 전체적으로 가정에서보다 11.4%정도 낮고, 전체적으로 가정의 부모나 보호자(29.8%)와 학교의 교사(18.4%)로부터의 정서적 학대가 학교 선배나 또래 친구(14.3%)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응답학생들은 자신들의 동료집단보다는 어른들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아동에 대한 체벌 실태를 보면,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가정의 보호자로부터 경험한 신체적 체벌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10,434명 중 약 25% 즉, 응답자 4명 중 1명이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조사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가정에서보다 적어 전체 응답자의 18.5%가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아동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도한 수위의 간접체벌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에서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만 금지하고 오리걸음이나 팔굽혀 펴기 등의 소위 간접 체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학생의 고통을 유발할 수 있고, 학교 교사들 역시 학생에 대한 간접 체벌을 여전히 교육적 관행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순천 금당고에서는 교사의 과잉체벌로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간접체벌에 대해 모호한 기준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위학교에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하는 것은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몇몇 시·도교육청에서의 학생인권조례와 법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①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직접체벌 및 간접적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선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이 허용(간접적 체벌 :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되고 있으며 간접적 체벌이 학교 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되고 있어 이를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8항에 법제화하고 간접체벌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지시키도록 하는 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②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교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법에 체벌 금지 조항 명확화

가정과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벌 금지를 천명했으나 기합이나 폭력 등 체벌 문제가 발생해 온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교정·보호시설 관련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부재한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의 책무) 제2항에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을 가정 및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의 아동복지시설, 교정시설, 청소년시설에 적용시키도록 관련법을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모든 종류의 아동폭력의 전면금지를 위한 법제도 검토와 사례 분석

학계에 모든 종류의 아동폭력 전면금지를 위하여 관련부처의 관련법들에 대한 검토와 사례분석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한다. 연구 용역 내용에는 위에서 서술한 정책내용들에 관한 것들로서 학교에서의 간접적 체벌과 관련된 법 개정과 「아동복지법」 제5조 2항과 충돌하거나 관련 조항이 부재한 경우 관계부처의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것을 검토한다.

② 제 2단계(2017년 상반기) : 관련법 개정 및 신설 후 공청회를 개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의 관계부처 관련법들의 개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수행하고 새롭게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면 이를 공청회에 부쳐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다.

③ 제 3단계(2017년 하반기) : 관련법 최종 확정 공시 및 홍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의 관계부처에서는 공청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관련법의 개정 및 신설을 확정하고 이를 공시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확정 고시 절차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를 전국의 가정, 관계 기관 및 시설에 홍보하여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계몽한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8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관련법 조항 신설해야 한다. 첫 번째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8항과 관련하여 간접체벌에 관한 내용이 법조항이나 시행령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며, 두 번째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의 책무) 제2항과 관련하여 보호자 처벌에 관한 법조항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소년법」에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의 책무) 제2항과 관련하여 청소년시설 및 교정시설에서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년)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법제도 검토 및 사례분석 연구	• 연구조사비 50,000,000원	50
2단계 (2017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 및 신설 후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비 10,000,000원	10
3단계 (2017년 하반기)	신설 및 개정 관련법들의 확정 고시 및 홍보	• 홍보비 100,000,000원	100
		총계	160

❖ 예산조달방법

법 개정 및 신설 단계에서는 각 관계 중앙부처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법제화 후 홍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매칭펀드 형태로 각 70%, 30%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국비와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한다.

과제 III-2 성학대 피해아동 특성에 기반한 대책 마련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신체적, 심리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보일 수 있으며, 이후 부모역할이나 부부관계 문제 등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재인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성학대의 경우 여자아동이 8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남자아동의 성학대 비율이 8.4%에서 11.6%로, 3.2%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이러한 결과는 실제 남자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증가했다기보다는, 과거 성학대로 간주하지 않았던 남자아동에 대한 행동들이 새롭게 성학대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신고가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10세 미만 아동대상의 성학대 비율 역시 전년대비 5.8% 증가한 23.7%로 나타나 저연령 아동의 성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연령 아동의 성학대 비율의 증가 역시 과거에는

어린 아동에 대한 행동으로 단순 치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성적 행동, 나아가 성학대라는 사회적 인식개선에 따라 신고접수가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남자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전체 성학대에 1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저연령 아동의 성학대는 20%를 넘고 있어 단순히 인식개선에 따른 신고접수의 증가만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성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기반한 특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자아동과 저연령 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데 더욱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서도 남자아동에 대한 성적착취나 학대에 대해 주목하고 이들에게도 여자아동과 마찬가지로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485).

2) 주요 내용

① 아동특성을 고려한 성학대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현재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교육내용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아동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성학대에 대한 교육과 대처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자아동이거나 나이가 어려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지, 고지하지 못할 것을 고려하여 부모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② 아동 성폭력 및 성학대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및 전담 인력 교육 강화

성추행이나 성학대 피해에 대한 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남자아동이나 나이가 어려 상황판단이나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연령 아동, 그리고 장애로 인해 성적학대에 대한 고지가 어려운 장애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담수사기구가 필요하다. 성폭력 및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반응하는 아동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기초로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검사나 담당수사관을 포함한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반드시 실시될 필요가 있다.

③ 아동의 특성에 기반한 전문화된 재활서비스/개입 지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다양한 특성의 성학대 피해 아동에게는 이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면밀한 사정(assessment)을 기초로 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을 뿐 아니라,

학대피해로부터의 보호, 성학대피해 처리과정 등에서의 아동권리에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권리 및 성학대 피해 재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계속) : 아동특성을 고려한 성학대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아동의 성별, 연령, 그리고 장애유무, 지리적 여건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성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성학대를 예방하고 성학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② 제 2단계(2017년) : 아동 성폭력 및 성학대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및 전담 인력 교육 강화

다양한 아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 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아동 성학대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기구의 담당인력(검사, 수사관 등)에 대한 아동과 아동의 성학대피해 영향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반드시 실시될 필요가 있다.

③ 제 3단계(2018년~) : 아동의 특성에 기반한 전문화된 재활서비스/개입 확대

아동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재활서비스나 개입이 지원되어야 한다. 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유무, 처한 상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성학대 피해 아동의 적극적인 재활을 지원할 전문재활서비스와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2016년)	제 2단계(2017년)	제 3단계(2018년)
주요내용	아동특성을 고려한 성학대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아동 성폭력 및 성학대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및 전담 인력 교육 강화	아동의 특성에 기반한 전문화된 재활서비스/개입 지원

4) 관련 법 개정 사항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동복지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더욱 엄격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법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아동복지사업 안내나 시설평가 등에 이러한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6년)에서는 아동특성을 고려한 성학대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2억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7년)에서는 아동 성폭력 및 성학대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및 전담 인력 교육을 위해 1억1천만원이, 그리고 3단계(2018년)에서는 아동의 특성에 기반한 전문화된 재활서비스/개입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이 소요된다. 특별기금을 통해 아동 성폭력 및 성학대 수사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 백만원)
1단계 (2016년)	아동특성을 고려한 성학대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 아동눈높이 성학대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200,000,000원	200
2단계 (2017년)	아동 성폭력 및 성학대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및 전담 인력 교육 강화	• 아동성학대 수사전담기구 설치 100,000,000원 • 전담인력 교육훈련비 10,000,000원	100 10
3단계 (2018년)	아동의 특성에 기반한 전문화된 재활서비스/개입 지원	• 전문화된 재활서비스 50,000,000원	50
		총계	360

과제 IV-1 아동 맞춤형 위탁가정제도 확충 방안 마련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가정위탁은 주로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위탁가정이 대부분으로,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위탁보호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아동이 친가정에서 양육되거나 성장할 수 없다면, 조부모나 친인척가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그 역시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결국 양육시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위탁보호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유기나 방치, 학대나 방임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위탁보호 대상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요보호 아동에게 성공적인 위탁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질병이나 실직, 가정의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아동을 위한 일시보호 위탁가정이 필요하다. 만약 양육시설로 배치될 경우,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기에 더욱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 질 수 있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가정환경에서의 돌봄과 양육이 매우 필수적이지만, 영유아를 전담으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으며(입양을 기다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또한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전문적인 위탁보호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위탁가정제도가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의 특성과 수요 맞춤형 위탁가정운영모형 개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할 때, 일시보호 위탁가정, 영유아전담 위탁가정, 장애아동 전담 위탁가정 등 다양한 위탁가정에 대한 운영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위탁보호 요건, 위탁가정/위탁부모의 자격기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운영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② 맞춤형 위탁가정 발굴 및 위탁부모 역량 강화

위탁보호 및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한 위탁가정을 발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정위탁제도와 가정위탁이 요보호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성공적인 가정위탁 사례 등을 사회전반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가진 아동을 적절히 양육하기 위한 위탁부모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과 상담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③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아동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위탁가정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아동 1인당 월 120,000원 이상의 양육보조금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확대 뿐 아니라 위탁가정/위탁부모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영유아전담 위탁가정의 경우 영유아 발달과 이에 맞춤 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또한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에 따른 기본정보와 또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최신 정보 등 필요한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위탁부모 역할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지로써 상담지원서비스

도 반드시 요청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아동의 특성과 수요 맞춤형 위탁가정운영모형 개발 연구

아동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할 때, 다양한 위탁가정의 유형에 따른 운영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위탁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한 축적된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 등을 발굴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동 맞춤형 위탁가정운영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② 제 2단계(2017년~계속) : 맞춤형 위탁가정 발굴 및 위탁부모 역량 강화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위탁부모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위탁제도를 홍보하고, 긍정적인 사례들은 더욱 강조·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발굴·모집된 위탁부모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③ 제 3단계(2018년~계속) : 위탁가정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확대

위탁가정의 양육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마련이 시급하다. 중앙부처예산만으로 예산편성 및 증액이 어렵다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펀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적 지원확대 뿐 아니라 양육관련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야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2016년)	제 2단계(2017년)	제 3단계(2018년~)
주요내용	아동의 특성과 수요 맞춤형 위탁가정운영모형 개발 연구	맞춤형 위탁가정 발굴 및 위탁부모 역량 강화	위탁가정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확대

4) 관련 법 개정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수준이 아닌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보조금 현실화와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59조의 비용보조와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 부분과 지원 금액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김경준, 김희진 외, 2014).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6~2017년)에서는 위탁가정운영모형 개발 연구로 2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7~계속)에서는 가정위탁제도 홍보와 위탁가정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210백만원이, 그리고 3단계(2018년)에서는 양육보조금 확대를 위해 최소한 월 300,0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 9,000백만 원이 소요된다. 특히,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월 보조금의 예산증액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는 매칭펀드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년)	아동의 특성과 수요 맞춤형 위탁가정운영모형 개발 연구	• 1단계 연구용역비	100,000,000원	100
		• 2단계 연구용역비	100,000,000원	100
2단계 (2017년)	맞춤형 위탁가정 발굴 및 위탁부모 역량 강화	• 위탁부모 모집광고 및 홍보사업	10,000,000원	10
		• 위탁부모 교육훈련비	100,000,000원	100
3단계 (2018년)	위탁가정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확대	• 위탁가정에 대한 보조금 인상 2,500명*×월300,000원×12개월		9,000
		• 위탁부모 상담지원서비스	50,000,000원	50
		총계		9,360

*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가정 위탁받는 아동 수는 2,265명, 2014년에는 1,688명으로 나타나 일단 시범적으로 2,5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음(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통계자료로는 위탁가정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로 산출함).

과제 IV-2 대안양육 아동의 친가족 교류 활성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대안양육 아동의 원가족과의 교류에 대한 부분은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이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안양육시설/기관/종사자가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478)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은 갑작스런 친가족과의 분리 시, 불안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와 부적응행동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정선, 2015). 특히, 친부모의 질병이나 경제적 사정, 학대나 방임과

같은 심리사건을 경험하고 원가족과 분리되어 대안양육을 받게 된 아동은 원가정에 대해 양가감정과 같은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안양육은 입양과 같이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으며,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더이상 친가정과 시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즉, 이들이 대안양육과 위탁보호를 마치고 사회인으로서 자립을 시작하고자 할 때 이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사회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호대상 아동이 부모 및 친인척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동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함에 따라 원가족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정선옥, 2002), 또한, 원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는 성공적인 친가정 복귀와 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Pecora, Whittaker, Maluccio, Barth, Depanfilis, D., & Plotnick, 2006) 더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선부른 원가족과의 교류와 복귀는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개입과 문제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은 원가족 교류와 복귀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가정폭력과 학대피해를 더 경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거나 비행 및 일탈행동을 할 수도 있고 가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 아동의 친가정보호와 이후 가정복귀를 염두에 두고 대안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대피해 아동사례의 경우에는 원가족과의 교류 및 복귀에 대한 결정은 가정에 대한 개입과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와 상황에 대한 개선이 전제된 후 이루어져야 한다.

친가족과의 교류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에서 시작된 시설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원가족 교류에 관한 연구와 시범사업(양정선, 2015)을 우수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친가족과의 교류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의 다양한 대안양육시설/기관/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주요 내용

① 친가족 교류와 복귀를 위한 사정도구 개발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이 친가족과 교류하고, 더 나아가 원가정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가정의 문제상황이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아동 스스로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정(assessment)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사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② 친가족과의 조기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대안양육 초기단계에서부터 친가족과의 교류와 이후 원가정 복귀를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한 준비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아동이 대안양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친가족과의 관계는 요원해지고 점점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학대와 같은 심각한 사유로 친가족과 격리된 상황과는 별개로, 대안양육 초기에서부터 지속적인 친가족과의 교류를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은 시범실시를 통해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친가족 및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입과 지원 확대

자녀 유기 및 방치에 따른 대안양육 서비스의 경우 친부모와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적절한 개입없이 대안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의 친가족과의 교류 및 가정복귀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부모에 대한 개입으로써 부모역할 훈련이나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이외에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량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친가족 교류와 복귀를 위한 사정도구 개발

친가족 교류와 복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정도구 개발을 위해 관련 해외사례 등을 적극 반영하여 종사자와 시설관계자가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정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이 도구에는 아동과 가족구성원의 신체·심리·정서적 측면, 가정의 경제적 상황, 가정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여부 등 아동과 가정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동이 친가족과의 교류와 이후 가정복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만한 객관적인 도구를 개발한다.

② 제 2단계(2017~2018년) : 친가족과의 조기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사업 실시

아동이 대안양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친가족과의 관계유지와 유대감 형성이 어려워지므로, 조기 개입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에 시설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원가족 교류에 관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경기도의 사례⁵³⁾를 참조할 수 있다.

53) 양정선(2015). 경기도 시설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족 교류에 관한 연구. 경기도: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③ 제 3단계(2018년~계속) : 친가족 및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입과 지원 확대

대안양육 아동의 가족과 부모에 대한 개입으로서 부모역할 훈련,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자녀와의 원활한 상호작용기술, 인간관계기술, 문제해결기술을 포함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6년)	제 2단계 (2017~2018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친가족 교류와 복귀를 위한 사정도구 개발	친가족과의 조기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친가족 및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입과 지원 확대

4) 관련 법 개정 사항

아동복지법에 시설보호를 포함한 대안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원가족과의 교류와 장기적으로 가정복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선부른 원가족과의 교류 및 가정복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관련법과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예산과 관련하여 대안양육을 제공하는 일선의 시설이나 위탁가정, 그리고 이들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관의 운영비 등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6년)에서는 친가족 교류와 복귀를 위한 사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5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7~2018년)에서는 친가족과의 조기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80백만원이, 그리고 3단계(2018년)에서는 친가족 및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입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40백만 원이 소요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년)	친가족 교류와 복귀를 위한 사정도구 개발	• 사정도구 개발 용역비 50,000,000원	50
2단계 (2017~ 2018년)	친가족과의 조기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친가족 조기교류 프로그램 개발 50,000,000원 • 시범사업비 30,000,000원	50 30
3단계 (2018년)	친가족 및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입과 지원 확대	• 친가족개입/상담서비스 50,000,000원 • 부모역할 훈련 및 교육 30,000,000원 • 인간관계기술, 문제해결 능력 등 기타 프로그램 300,000원×20명×10회	50 30 60
		총계	27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재 2014년 기준으로, 일시쉼터는 22개소, 단기쉼터는 50개소, 중장기쉼터는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중장기쉼터 5개소가 추가 설치되었다(여성가족부, 2014a). 대부분 쉼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짧은데다가, 가정폭력이나 학대 때문에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로 전국의 쉼터를 떠돌아다니기도 하며 이에 따라 가출팸이 증가되기도 한다(김희진, 2014). 따라서 중장기쉼터의 설치확대의 의의가 크지만, 한편으로 쉼터는 기본적으로 가정복귀를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장기 쉼터의 경우도 2년 이내의 보호기간을 정하고 있어(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여성가족부, 2014a), 그 기간 이상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지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재가출의 비율이 매우 높고 또한 가출의 이유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와의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볼 때(63.5%), 이들이 가정환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쉼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경우, 쉼터에서 나와 다른 가출청소년들과 생활하며 범죄와 비행에 노출될 수 있다. 결국 가출청소년은 원가정으로부터, 또 대안양육체계로부터 모두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기본적인 의식주도 보장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체계로서의 대안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이 결국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또 다른 양육자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유지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대안양육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되, 가능한 시설보호보다는 가정환경에서의 위탁보호가 우선 시 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 새로운 시설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성인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가정환경에서의 돌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정위탁보호와 시설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그룹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①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 파악

가출청소년 중 쉽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가피하게 가정 폭력과 학대 등으로 인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가출청소년의 생존권 보장과 성인이 될 때까지의 돌봄과 보호, 지원에 대한 욕구와 대안양육체계의 효과적인 지원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②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안양육체계 정비 및 확대

대안양육으로서 청소년전담 위탁가정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청소년 그룹홈 확대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일반적인 양육시설에서의 보호도 고려하여 가출청소년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대안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청소년 대안양육자의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위탁가정 부모나 시설의 종사자는 청소년, 특히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의 특성이나 관련 정보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가지고 가출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양육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 파악

가출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의식주 생활실태와 대안양육 욕구를 파악한다. 특히 심층면접을 통해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② 제 2단계(2017년~2018년) :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안양육체계 정비 및 확대

가출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청소년 맞춤형 위탁가정 및 그룹홈의 확대를 위해 위탁가정 발굴 및 교육, 청소년 전담 위탁가정 및 그룹홈 운영 모델 등을 개발한다.

③ 제 3단계(2017년~계속) : 청소년 대안양육자의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위탁가정의 위탁부모와 그룹홈 및 양육시설 종사자들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청소년들과의 갈등 없이 양육·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6년)	제 2단계 (2017년~2018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 파악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안양육체계 정비 및 확대	청소년 대안양육자의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4) 관련 법 개정 사항

대안양육을 통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양육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이나 시행령 등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6년)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1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7~2018년)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안양육체계 정비 및 확대를 위해 100백만 원이, 그리고 3단계(2017년~계속)에서는 청소년 대안양육자의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를 위해 150백만 원이 소요된다. 대안양육체계는 아동복지시설/체계로서 현재와 같이 국고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을 통해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년)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 파악	• 실태조사 용역비 100,000,000원	100
2단계 (2017년~ 2018년)	가출청소년위한 대안양육체계 정비 및 확대	• 가출청소년위한 위탁가정 및 그룹홈 운영모델 개발 50,000,000원	50
		• 위탁부모 모집광고 및 홍보사업 50,000,000원	50
3단계 (2017년~ 계속)	청소년 대안양육자의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 위탁부모 및 시설종사자 교육 훈련비 100,000,000원	100
		• 위탁부모 및 종사자 상담지원서비스 50,000,000원	50
		총계	35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 의하면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요구를 인정하면서 이들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 서비스, 사회복귀 서비스, 취업준비,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제공받도록 명시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9: 623).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위원회와 장애인권 위원회는 차별 없는 인권교육의 실현과 동등한 기회의 보장차원에서 통합교육 체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70.4%만이 해당된다. 이마저도 2014년의 경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 아동·청소년은 45,803명이며 일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은 15,648명으로 이는 전체 장애 아동·청소년(87,278명)의 18%정도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동권리위원회나 장애인권 위원회의 통합교육 체제로의 변화 요구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이 어우러져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의 장애 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이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하게 되었다. 유럽처럼 보조교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의 교실현장에서 교사 한 명이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애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지원교사가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전담 교육지원교사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및 관련 사회적 기반 조성

장애 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이 30%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듯 장애 청소년의 졸업 후 진학률은 2014년 기준으로 37.6%에 해당되고 비슷한 숫자의 무직률(37.1%)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률은 더 낮아서 25.2%에 해당한다. 이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이나 기타 관련교육의 질과 서비스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장애 아동·청소년이 통합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 발달을 이루어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양성되고 있는 특수교사 이외에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과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의 개편 및 신설을 통하여 장애 아동·청소년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특수교사 양성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정과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자격증제도 개편을 통한 사회적 기반조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 시범사업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약 16%(15,648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전담교육지원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학교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교육지원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배출된 전담교육지원교사를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시범 배치하여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효과성 분석, 문제점 파악 및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③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 운영확대 및 제도 정착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시범실시 한 이후, 장애 아동·청소년이 배치되어 있는 모든 일반학급에 전담교육지원교사를 배치한다.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명으로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어 여러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급에도 전담교육지원교사를 배치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여러 수준의 교육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의 운영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운영이 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확보를 위해 정착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2017년) : 전담 교육지원교사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및 관련 사회적 기반 조성
특수교사 양성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자격증과 관련 교과과정을 정비하여 특수교사가 아니더라도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담교육지원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제2단계에서 실시될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인적자원을 확보한다.

② 제 2단계(2018년~2019년) :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 시범사업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의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실화 방안 등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시범사업 운영 기간의 설정과 운영매뉴얼을 동시에 보급하여야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다.

③ 제 3단계(2020년~계속) :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 운영확대 및 제도 정착

사회적 기반 조성 및 시범사업을 통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운영을 모든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에게로 확대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2단계에서 검증된 효과성을 바탕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이 재학 중인 모든 학교에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를 실시하고, 일반학급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확대 적용하여 다양한 장애와 필요를 가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제도의 정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학과의 교육과정개편을 통하여 특수교사의 양성뿐만 아니라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의 양성이 장기적으로 정착되어야 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다.

추진단계	제 1단계(2016~2017년)	제 2단계(2018~2019년)	제 3단계(2020~계속)
주요내용	전담 교육지원교사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및 관련 사회적 기반 조성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 시범사업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 운영확대 및 제도 정착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6년 ~ 2017년)에서는 전담교육지원교사 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비로 100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2단계의 시범단계를 운영할 전담교육지원교사 20명을 양성하기 위하여 50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단계(2018~2019년)에는 전담교육지원교사 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체 20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별로 1명의 전담교육지원교사를 시범과견 하는데, 학교별로 100백만 원씩을 지원한다. 3단계(2020년 ~)에서는 추후에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후에 예산을 반영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2017년)	전담 교육지원교사 제도 운명을 위한 관련 법 제· 개정 및 관련 사회적 기반 조성	• 기초연구 100,000,000원 • 전담교육지원교사 양성 50,000,000원	150
2단계 (2018~2019년)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 시범사업	• 시범학교 운영비 100,000,000×20학교	2,000
3단계 (2020년~)	전담교육지원교사제도 운영확대 및 제도 정착	• 향후 예산 반영	-
		총계	2,150

과제 V-2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디딤씨 앳통장)와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에게 제공되는 자립정착금을 들 수 있다. CDA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의 아동,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으로, 후원자나 보호자를 통해 적립 시 월 3만원 내에서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 2015d).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이 매월 3만원씩 적립하고 국가가 3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하게 되면, 만 18세 이후 1,93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3d). 이 금액이 거의 최대수령금액이라고 할 때, 실제 대학 학자금이나 취업훈련비용, 거주비용으로 지출하기에는 부족한 액수이며, 특히 청소년기에 적립을 시작하게 되면, 이후 훨씬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힘들다(김경준·김희진 외, 2014).

또한 양육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자립정착금 금액은 현실적인 자립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만 18세에 도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들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지자체간 차이가 커서 1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 지역 간 차이가 크다⁵⁴⁾. 이러한 금액은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54) 동아일보(2014.4.7.). 복지시설 출신들의 힘겨운 홀로서기. 동아일보 웹 사이트
<http://news.donga.com/3/all/20140407/62320195/1>에서 2015년 11월 13일 인출.

월세보증금으로 지출하기에도 부족할 수 있으며, 이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어려워 현실적인 자립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정책의 목적이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과 사회인으로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CDA적립금 증액과 자립정착금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취약계층 청소년의 최소 자립지원 비용 추산 연구

원가정에서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또한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최소 자립지원 비용을 추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지역별차이가 커서 이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디딤씨앗통장(CDA)의 적립금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증액 지원 계획 수립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을 증액하거나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증액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부처의 예산이나 지자체의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조달 방법 등 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③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원범위 확대

시설퇴소아동이나 위탁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이 사회에서 자립하기에 필요한 비용을 기초로 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일정기간 동안의 의식주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에서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정책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취약계층 청소년의 최소 자립지원 비용 추산 연구

우리사회에서 부모와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시설퇴소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시아경제(2015.10.5.) 서울시-월드비전, 시설퇴소 아동에 자립기금 지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0509080920041>에서 2015년 11월 13일 인출.

매일일보(2015.4.1.). 경기도,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매일일보 웹 사이트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40>에서 2015년 11월 13일 인출.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최소비용을 추산한다.

② 제 2단계(2017년) : 디딤씨앗통장(CDA)의 적립금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증액 지원 계획 수립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의 실질적인 증액을 위한 현실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재원조달과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부담,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이용 및 생활시설에서의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하여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지원금 증액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③ 제 3단계(2018년~계속) :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원범위 확대
디딤씨앗 통장의 정책대상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의 아동,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그리고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청소년에게도 지원범위를 확대할 것을 고려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2016년)	제 2단계(2017년)	제 3단계(2018년)
주요내용	취약계층 청소년의 최소 자립지원 비용 추산 연구	디딤씨앗통장(CDA)의 적립금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증액 지원 계획 수립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원범위 확대

4) 관련 법 개정 사항

현재 아동복지법에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관련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정책가이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비용이나 재원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에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시행규칙이나 관련 지침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지자체는 그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거주지역의 차이에 따라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과 자립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6년)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최소자립지원 비용 추산 연구를 위해 100백만 원이 소요되

고, 2단계(2017년)에서는 디딤씨앗통장(CDA)의 적립금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증액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50백만원이, 그리고 3단계(2018년)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재정지원과 범위 확대를 위해 40,000백만원이 소요된다. 재원은 특별기금을 포함하여, 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을 부담하는 매칭펀드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년)	취약계층 청소년의 최소 자립지원 비용 추산 연구	• 연구용역비 100,000,000원	100
2단계 (2017년)	디딤씨앗통장(CDA)의 적립금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증액 지원 계획 수립	• CDA적립금과 자립정착금 증액을 위한 마스터플랜계획 수립 50,000,000원	50
3단계 (2018년)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원범위 확대	• CDA 적립금 증액 50,000원×50,000명×12개월 • 자립정착금 증액지원 5,000,000원×2,000명	30,000 10,000
		총계	40,150

과제 VI-1 과도한 학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평준화특례법 제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문제는 과도한 교육 경쟁체제로 인한 학업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본 연구인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죽고 싶은 이유를 물었을 때에 ‘학교성적’이라는 응답이 43.6%에 달했고, 다음으로는 큰 차이로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가족 간 갈등의 원인도 학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면 학업스트레스가 결국 청소년들을 자살로 몰고 있음이 확실하다. 같은 조사의 결과에서는 매년 쏟아져 나오는 6~7만 명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중단하려는 이유를 물었을 때에 ‘공부하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45.6%,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29.6%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이 어느 정도로 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단하고 싶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가를 잘 알 수 있다.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조사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3.5%로 거의 4명 중 1명에 해당되는 수치로 나타났고,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묻는 결과에서는 공부라는 응답이 66.8%로 나타나 결국 학교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요 내용

① 교육평준화특례법 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점진적 철폐

현재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에게 학업스트레스를 과다하게 주는 원인은 진학할 상급학교들이 서열화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므로 학교와 교육이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기능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 한다면 서열화를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일찍부터 어린 아동들의 경쟁을 조장하는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점진적으로 폐지시키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② 교육평준화특별법 제정을 통한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의 전국적 의무화와 대학교 서열 완화 정책 도입 및 공교육 정상화

현재 지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고등학교들은 의무적으로 평준화를 시키고, 고교평준화 제도가 실질적인 교육적, 인권수호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열화된 대학교 입학에서 오는 학업스트레스를 역시 줄여야하므로, 대학교 서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대학교평준화 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목표로 하도록 교육평준화특례법을 제정하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2017년) : 교육평준화특례법 제정 연구 용역 발주

초중등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에서 학교들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는 것보다 이들의 법에 우선하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의 공공성에 입각해서 정부가 범국민적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준화 교육특례법 제정을 위해 우선 충분한 연구·분석 시간을 제공하며 연구용역은 2016년 제1차 연구, 2017년 제2차 연구로 발주한다.

② 제 2단계(2018년) : 중·고등학교 평준화를 위한 교육평준화특별법 제정 및 공청회 개최
현행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학생들에게 심한 경쟁을 조장하여 자살에까지 이르는 학업스트레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관계법에 우선하는 교육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므로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초로 각계의 학자들이 모여 교육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민적 공청회를 개최한다.

③ 제 3단계(2019년) : 교육평준화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의 점진적 폐지
새롭게 제정된 교육평준화특별법에 기초하여 국제중학교,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에 신입생을 받지 않고 일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단계적 전환을 시행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6~2017년)	제 2단계 (2018년)	제 3단계 (2019년)
주요내용	교육평준화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 발주	중·고등학교 평준화를 위한 교육평준화특별법 제정 및 공청회 개최	교육평준화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의 점진적 폐지

4) 관련 법 개정 사항

국제중학교,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심한 경쟁을 통해 아동의 정상적인 교육권과 여가·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교육평준화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경쟁을 조장하는 학교 유형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 2017년)	1차 교사 대상, 2차 학부모와 전문가 대상 조사 연구용역 발주	• 1차 조사 연구용역비 100,000,000원 100 • 2차 조사 연구용역비 100,000,000원 100
2단계 (2018년)	각계 전문가와 법조인 참여하여 교육평준화특별법 제정	• 법 제정 비용 40,000,000원 40
	제정된 법으로 전국 6개 권역별 공청회 개최	• 공청회 비용 60,000,000원 60
	총계	30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한국의 청소년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도한 학업시간으로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평일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명 중 1명이 넘어 22.5%나 되었고, 대학입학 준비에 내몰리는 특수목적고, 자율고 등의 학교유형일수록 여가시간이 절대 부족하고, 전해에 비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응답되었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보면 전체응답자 중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2~3시간미만 학습의 비율은 20.1%였고, 3~4시간미만은 19%, 5시간 이상이 14.7%에 달했고, 특수목적고 학생의 17.9%가 6시간 이상 학습한다고 응답해서 다른 학교유형보다 절대적으로 많았다. 2013년 13~19세 청소년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있어서의 응답은 만족에 40%, 보통이 43.2%, 불만족이 16.8%로 나타났는데, 여가활동에 불만족한 청소년들의 이유로 시간부족이 43.7%로 가장 많이 나타나 역시 학업에 내몰려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원 수강으로 휴일의 여가활동 시간도 부족한 현실이다.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수면부족의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물었을 때에 학원과 과외로 인한다는 응답 비율이 45.3%에 달했고, 야간 자율학습도 22.8%에 달하고 있어 과도한 학업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위에서 서술한 평일의 과도한 정규수업 시간 이외의 학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여기에다 휴일에 학원 수강에까지 내몰려 전혀 여가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일요일에라도 학원 수강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속칭 학원법은 그의 전신인 「시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이미 1961년 제정되어 2001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명칭과 내용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학원법의 내용은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오늘날 학원이 과외교습과 함께 처음에 설립된 취지인 학교수업을 보충하고,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과 기능을 넘어서 전 국민의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과 학교의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입학시험 경쟁을 부추겨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빼앗는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② 최소 일요일 학원 휴무를 통해 아동의 여가 및 문화향수 권리 회복을 위한 학원법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학원은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하고 있다. 학원법에서는 학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시간에 관하여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일부 시·도는 제한시간 기준을 24시로 잡아 시간규제조항을 무력하게 하고 있으므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향수 시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를 국가의 법으로 정해서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 권고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휴식, 여가, 놀이 및 문화 향수 권리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고통을 담보로 학원들로부터의 세수로 경제의 진작을 꾀하지 말고 차라리 교육세를 증세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학원법 개정을 통해 일요일을 학원의 의무적 휴무일로 지정하여 최소한 일요일이라도 아동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며, 학원의 교습시간 또한 조례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학원법 개정을 위한 여론 형성 및 공청회 개최

국가는 학원의 일요일 휴무제로 인한 세수 손실을 보전하는 방편으로 교육세를 증세하는 대신 과도한 학원 수강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려 학원법 개정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야 한다. 2016년 상반기에 학원법 개정을 위한 여론 형성 후 하반기에는 공청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학원법 개정의 여론 형성을 마치고 학원법 개정을 확정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7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개정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서 “30일 이상”의 “일요일을 제외한 일의”로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토록 법을 개정하도록 한다. 또한 학원법에서는 학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시간에 관하여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과 여가 및 문화 향수 시간 확보를 위해 2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법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6년)	제 2단계 (2017년)
주요내용	학원법 개정을 위한 여론 형성 및 공청회 개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개정

4) 관련 법 개정 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호에서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하고 있는 것에서 ‘30일 이상의’를 ‘일요일을 제외한 일의’로 개정하도록 한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제2항에서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교육감이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습시간에 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22:00시까지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년)	학원법 필요성에 관한 여론 형성 및 공청회 개최	• 6개 권역별 공청회 비용 - 10,000,000 x 6회 60,000,000원 - 기타 비용 10,000,000원	70
2단계 (2017년)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및 법 개정 작업	• 전문가 포럼 및 홍보 책자 발간 - 5,000,000 x 4회 20,000,000원 - 홍보 책자 발간 및 배포 10,000,000원	30
		총계	10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한국의 청소년들은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물었을 때에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이 원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1%에 달해 응답학생 2명 중 1명은 자신들의 미래 진로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같은 조사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퇴충동의 1순위 원인이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29.6%, ‘공부가 하기 싫어서’가 45.6%로 나타나 학업과 관련해서 자퇴하고 싶은 이유가 75.2%로 4명 중 3명은 학업의 문제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싶다고 응답하여 학벌사회인 대한민국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이들의 미래 진로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 대한 대안적 정책의 하나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기회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수는 매년 6~7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는 국가적 질병이요,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내에서는 학업에 흥미를 잃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직업을 얻기 위한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해도 과거 직업교육의 학교형태였던 전문계 고등학교가 개칭한 특성화고등학교의 부족으로 인해 이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진학이나 편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이들은 일반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학업성적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므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청소년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확대가 요청된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직업의 기회를 얻고자 해도 입학기준이 높아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게 됨으로써 결국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진로수요에 맞는 질 높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 확대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특성화고등학교의 확대

2014년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진학은 전체 18.3%로 조사되었는데(통계청, 2014a), 2015년 인권실태조사에서 학교 자퇴충동의 이유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29.6%, ‘공부가 하기 싫어서’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실태를 보았을 때에 다수의 학생들이 일반고의 대학진학을 위한 학습위주 수업보다는 자신들의 미래 진로를 고려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수요가 많을 것이므로 수요에 맞도록 특성화고등학교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확대는 학업중단학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중 하나이므로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적인 특성화고등학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통해 일반 고등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폐교를 활용하고 교원 확보와 양성을 병행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와 공급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한다.

② 특성화고등학교의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제1항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고시를 임의조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특성화고등학교 확대를 위한 연구 수행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수요와 현행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실태 및 일반고의 특성화고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② 제 2단계(2017년) :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른 관련법 개정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제1항에 임의조항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고시를 명시하고 있는 것에 제2항을 신설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고시는 지역의 수요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무조항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 관계자와

법 전문가들,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6년)	제 2단계 (2017년)
주요내용	특성화고등학교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4) 관련 법 개정 사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에 제2항을 신설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고시는 지역의 수요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무조항으로 정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년)	특성화고등학교 확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발주	• 연구용역 비용 90,000,000원	90
2단계 (2017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및 법 개정 작업	• 전문가 포럼 및 홍보 책자 발간 - 5,000,000 x 4회 20,000,000원 - 홍보 책자 발간 및 배포 10,000,000원	30
		총계	120

과제 VII-1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에 대한 외국인 등록 및 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한국으로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는 숫자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다가 2015년 8월 기준으로는 2015년에 3,213명이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였고 이들 중 단지 94명만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할 때, 한국사회가 난민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난민이나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외국인 등록 및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이자 한국인이 국제사회와 정세를 이해하고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 실태조사

공식적인 난민현황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해 파악될 수 있으나 이들의 아동·청소년 자녀의 실태는 공개된 자료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난민 아동과 (미등록)이주 아동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기초연구조사를 통해서 이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도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의 외국인 등록 및 의무교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한국은 다문화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탓에 난민과 (미등록)이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이들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발달권과 생존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난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난민 아동과 (미등록)이주 아동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들의 현황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으

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난민 아동과 (미등록)이주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 실태조사

난민 아동과 (미등록) 이주 아동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들의 필요에 대한 기초연구의 단계로 실태조사, 요구분석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이 단계에서 요구된다.

② 제 2단계(2017년) :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의 외국인 등록 및 의무교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영방송을 통한 공익광고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양도서 및 안내책자를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배포한다.

③ 제 3단계(2018년~) :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각급학교와 시민단체,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난민 아동과 (미등록)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실화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6년)	제 2단계 (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 실태조사	•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의 외국인 등록 및 의무교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4) 관련법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개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의 처우 개선과 의무교육 지원, 인권보호에 관한 의무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6년)에는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의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비로 1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년)에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와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경비로 200백만 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8~)에는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비용으로 운영비에 1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년)	난민 및 (미등록)이주 아동 실태조사	• 연구비 100,000,000원 × 1회	100
2단계 (2017)	사회적 인식개선	• 홍보 및 자료 제작비 200,000,000원	200
3단계 (2018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운영비 10,000,000원 × 12개월	120
		총계	420

과제 Ⅶ-2 소년사법 절차 및 처우에 관한 법·제도 개선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소년보호사건 처리 과정에서 형사법상의 여러 원칙들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전문가 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소년사법 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였다. 즉,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징과 발달단계상 특성을 반영하여 소년사법 절차 및 처우에 관한 제도와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소년사법이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되거나 사회복귀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계를 통한 홍보적 성격이 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국내 형사법상의 제원칙을 소년보호사건(비형사사건)처리 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개선과 인권존중에 대한 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소년사법 절차를 소년사법에 도입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아동·청소년 사법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처분 및 선도프로그램의 평가 및 개선도 필요하며 회복적 소년사법제도를 도입하거나 보호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인권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 처우불복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 과제에 목적이다.

2) 주요 내용

① 소년법 절차 및 처우에 관한 법·제도 검토 및 개선

소년법 절차상의 문제와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청소년 인권친화적인 법과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진다. 다양한 분야의 법전문가와의 법·제도 심층 분석과 청소년전문가와의 공동 연구로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소년사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② 보호시설 종사자 인권지침 개발 및 인권 교육

무엇보다도 소년사법이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 종사자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실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지침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실제로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친화적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법·제도 검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년사법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한다.

② 제 2단계(2017년) : 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호시설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지침과 관련 인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년사법이 인권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제 3단계(2018년~) : 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보호시설 종사자, 또는 소년사법과 관련이 있는 모든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법연수원과도 연계하여 연수과정 중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일반과 인권에 대한 지식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처와도 의논할 필요가 있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6~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 법·제도 검토 및 개선	•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실시

4) 관련법 개정사항

「소년법」, 「형사법」의 개정을 통해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에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고 징계나 처벌보다 사회복귀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 보호시설 및 사업연수원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 관련자들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6년)에는 관련 법제도 검토 및 개선비로 1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에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비로 2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에서는 보호시설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인권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는 대상자와 기간, 횟수를 반영하여 추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1, 2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도록 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년)	관련 법·제도 검토	• 기초연구비 100,000,000원 × 1회	100
2단계 (2017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개발비 200,000,000원	200
3단계 (2018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 추후 예산반영	-
		총계	30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 성매매는 가출청소년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가출청소년의 경제적·사회적 보호의 시급성을 알려준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상의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고 이들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각으로 보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성매매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으므로,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과 대책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경제교육, 성인지적 성교육,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가해 성인을 대상으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필요도 있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제도와 관련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버 수사대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많이 접속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조사하여 선제적으로 성매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②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앱(App) 개발·운영

온라인 상에서의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앱(App)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동통신사,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성매매가 감지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③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위반시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위반시의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이러한 법내용을 공익광고와 캠페인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조사하고,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법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 내용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되었을지라도 이들을 피해자의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 2단계(2017년 ~2018년) : 앱(App) 개발·운영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관련 키워드나 내용이 감지되었을 경우 보호자나 관할 경찰서에 곧바로 연락이 갈 수 있는 앱(App)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어느 정도 차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제 3단계(2019년~) : 제도화 및 확산

성매매 방지 앱(App)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의자에게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실시와 관련제도의 운영시기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도 다양한 재활 및 복귀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이들이 다시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6년)	제 2단계 (2017~2018년)	제 3단계 (2019년~계속)
주요내용	•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	• 앱(App) 개발 및 운영	• 제도화 및 확산

4) 관련법 개정사항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위만 자에게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시설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무제한으로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년)	실태 조사	• 기초연구비 100,000,000원 × 1건	100
2단계 (2017년 ~2018년)	성매매 방지 앱(App) 개발·운영	• 어플(App)개발비 50,000,000원 × 1종 • 시스템 구축비 100,000,000원 × 1건 • 관리비 100,000,000원	250
3단계 (2019년~)	성매매 방지 앱(App) 개발·운영 지속	• 관리비 100,000,000원 • 운영비 100,000,000원	200
		총계	550

1단계(2016년)에는 성매매 실태조사로 1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7년 ~2018년)에는 앱(App) 및 시스템 개발비, 시스템 구축비, 관리비로 총 250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3단계(2019년 이후)에는 성매매 방지 앱(App)의 지속적 운영·관리, 제도 확산을 위하여 2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와 2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고, 3단계는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한다.

과제 Ⅶ-4 농촌지역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 지정 운영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여 이주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혜택은 물론 접근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일수록 태어나고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언어와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한창 출산의 시기에 놓여있는

이주여성의 건강은 물론이고 이주아동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의 의료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종합병원급 병원을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여 이주여성은 물론 이주아동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여성의 출산을 위한 정기적 검진과 출산 이후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향후 이주아동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전담 병원을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농촌지역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사례 및 타당성 조사

농촌지역의 이주아동의 건강권 수호를 위하여 우선 기초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한 후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을 반드시 지정하여 이주여성과 이주아동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의료지원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에 필요한 전문 통역서비스 제공

한국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주여성은 병원을 이용함에 있어 언어적 장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여성과 이주아동이 건강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 통역 서비스 제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한국말이 가능한 이주여성을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도록 한다.

③ 농촌지역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 운영 및 전담 의료기관 전국 확산

이주아동과 이주여성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6년) : 농촌지역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 지정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 2단계(2017년) :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에 필요한 전문 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
이주여성과 이주아동이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한 실행방안에는 통역서비스 제공이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주여성과 이주아동에게 적절한 언어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통역서비스를 제공을 실행하기 위해 지역 내 이주여성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통역사를 고용한다.

③ 제 3단계(2018년~) : 농촌지역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 운영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운영을 확대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6년)	제 2단계 (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 전담 의료기관 선정	• 전문 통역서비스 제공	• 전담의료기관 운영 및 전국 확산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년)에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으로 1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년)에는 전문 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150백만 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8~)에서는 전문 의료기관 운영 및 전국적인 확대에 15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단위:백만원)
1단계 (2016년)	전담의료기관 지정	• 기초 연구비 100,000,000원	100
2단계 (2017년)	전문 통역서비스 제공	• 통역 서비스 운영비 30,000,000원 × 50개 지역	150
3단계 (2018년~)	전문의료기관 운영 및 전국 확대	• 통역 서비스 운영비 30,000,000원 × 50개 지역	150
		총계	400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강동욱 (2014).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방안.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자료집: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63-97.
- 경기도교육청(2012). 혁신학교 이해 자료. 경기: 경기도교육청.
- 경원일보 (2015.9.13.). 청소년 알바 청년인턴 다수고용 사업장은 노동법 무풍지대. 경원일보 웹 사이트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35216>에서 인출.
- 경찰청 (2013). **2013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경찰청 (2014). 가출인 발생현황. 경찰청 요청자료.
- 고용노동부 (2009). **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0).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1).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2.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3.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3a).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4a).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4b).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각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서울: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 합동(2015). 제1차(’ 15~’ 19) 아동정책기본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a). 2012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보도자료.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10501/ko/board/view.do?bbsId=348&boardSeq=51593>에서 2014년 8월 1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2012.6.).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웹 사이트 <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2010-2014). 방과후학교 운영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3.4.). 2014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917>에서 2015년 5월 인출.
- 교육부 (2013.10.22.). 다문화학생교육지원강화.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51029&mode=view>에서 2014년 7월 31일 인출.
- 교육부 (2014a). 2014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4년 3월 기준).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4b).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4c). 2014년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4d).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2014.1.).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3.). 2015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교육부 웹 사이트 <http://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33&encodeYn=Y&boardSeq=58634&mode=view>에서 2015년 5월 인출.
- 교육부 (2015.7.).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교육부 웹 사이트 <http://moe.go.kr/web/106888/ko/board/view.do?bbsId=339&boardSeq=58722&mode=view>에서 2015년 9월 인출.
- 교육부 (2015.8.). 교육부 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웹 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5년 9월 인출.
- 교육부 (2015a). 2015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5년 3월 기준).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b). 2015년 교육기본통계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N&boardSeq=60423&mode=view>에서 인출.
- 교육부 (2015c).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특별교부금 운영 계획(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d). '14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세종: 교육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2014.3.1. 기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5년도 교육기본통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웹 사이트 http://kess.kedi.re.kr/post/6650254?itemCode=03&menuId=m_02_03_02에서 2015년 9월 30일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4). 2015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웹 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jsp에서 8월 10일 인출.
- 기획재정부 (2013). 2013 나라살림 예산. 서울: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015). 2015 나라살림 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4). 201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ILP 웹 사이트 <http://www.itpolicy.co.kr/>에서 2015년 7월 인출.
-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4-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준, 이호균, 서여정, 김광혁, 김형욱, 윤상석 외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연구보고 14-R1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숙 (2011).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 *Issue & Focus*, 106, 1-8.
- 김미숙, 김정주, 황진구, 하태정 (2014).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정책보고서 2014-48). 서울: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정책보고서 2013-92).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천, 서용선, 홍섭근 (2015).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 서울: 맘에드림.
- 김승권, 김인숙, 박동은, 이배근, 이용교, 이재연 외 공역 (2009).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김영지, 김정준, 이민희, 김지혜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연구보고 13-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모상현, 이용교 (2015).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청소년 희망센터 발전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연구보고 14-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2014).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 방안**(수시과제 14-R2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2013a).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13b). **마약류 범죄백서**. 서울: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14a).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14b).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대한출판문화협회 (2010~2014). **각년도 출판통계**. <http://www.kpa21.or.kr/>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 동아일보 (2014.4.7.). **복지시설 출신들의 힘겨운 홀로서기**. 동아일보 웹 사이트 <http://www.news.donga.com/3/all/20140407/62320195/1>에서 2015년 11월 13일 인출.
- 류방란, 김경애, 김성식, 이윤미, 정연순 (2013).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복지의 발전 과제**(CR2013-0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매일일보 (2015.4.1.). **경기도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매일일보 웹 사이트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4>에서 2015년 11월 13일 인출.
- 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무지개청소년센터 (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문성빈 (2014). **통계로 본 학교 보건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출판연구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출판연구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백미순, 김정혜, 정유석, 최영지 (2013).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 법무부 (2013). 교정본부 통계자료.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14a). 교정본부 통계자료.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14b).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15.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15.1.6).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 주세요.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15명 위촉. 법무부 웹 사이트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3349&strAnsNo=A&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에서 2015년 7월 10일 인출.
- 법무연수원 (2013). 2013 범죄백서. 서울: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 (2014). 2014 범죄백서. 서울: 법무연수원.
- 법제처 (2015.10.4).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4&nwYn=&query=#Eundefined>에서 2015년 10월 4일 인출.
-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제9조 8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159070>에서 10월 16일 인출.
- 법제처. 다문화가족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undefined>에서 2015년 10월 6일 인출.
- 법제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

- lsSc.do?menuId=0&subMenu=1&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undefined에서 2015년 10월 16일 인출.
- 법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5%84%EB%8F%99%ED%95%99%EB%8C%80%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undefined>에서 2015년 10월 16일 인출.
-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5%99%EA%B5%90%EB%B0%96%20%EC%B2%AD%EC%86%8C%EB%85%84%20#undefined>에서 2015년 10월 16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1).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a). 2012 보건복지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b).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c). 2013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d). 2013 입양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e).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a). 2014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b).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c).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d).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e). 보도참고자료: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3년 주기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298285&SEARCHKEY=TITLE&SEARCHVALUE=%C6%F2%B0%A1에서 2015년 11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5. 5. 8). 보도자료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2245&page=1에서 2015년 10월 7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5a).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b). 2015년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c).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d).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e). 입양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f). '2015년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4).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 2010 국민건강 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2 국민건강 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013 국민건강 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013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2014).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공청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웹 사이트 https://www.cswe.co.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1&bd_item=0&po_item_gb=data1&po_item_cd=&po_no=2916에서 2015년 10월 인출.
- 서정아 (2015.9). 청소년 체협 · 여행 · 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NYPI 청소년통계브리프*, 24, 1-8.
- 성범죄자 알림e (2015.10.4). 웹사이트 <http://www.sexoffender.go.kr/>에서 2015년 10월 4일 인출.
- 성북구청 (20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query=%EC%84%B1>

- %EB%B6%81%EA%B5%AC%20%EC%95%84%EB%8F%99%EC%98%81%ED%96%
%A5%ED%8F%89%EA%B0%80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 송인자 (2015). 민간영역의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정책세미나 자료집: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35-66.
- 아시아경제 (2015.10.5.). 서울시-월드비전, 시설퇴소 아동에 자립기금 지원. 아시아경제 웹 사이트 <http://www.view.asiaw.co.kr/news/view.htm?idxno=2015100509080920041>에서 2015년 11월 13일 인출.
- 양계민 (2012).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2013).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KYWA-2013-0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2014). **20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김승경 (2011).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 (2010).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정선 (2015). **경기도 시설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족 교류에 관한 연구**(정책과제 2015-09).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 (2009). **200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0a). **2010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0b). **2010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a). **201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b).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b).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c).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a).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여성가족부 (2013b).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c).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 웹 사이트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5a.jsp?func=view&curren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4592에서 2014년 8월 20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4a).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정책분석평가센터.
- 여성가족부 (2014b). **2014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c).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연구보고 2014-53).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d).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연합뉴스 (2015.5.19.). ‘입양기관, 해외 입양아동도 적응관찰 등 사후관리 해야’ . 연합뉴스 웹 사이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OAKR20150519164100017.HTML>에서 2015년 10월 7일 인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58차 회기- 2011년 9월 19일~10월 7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정책자료 2011-04) (pp. 465-489). 서울: 보건복지부-한국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5&DocTypeID=11에서 2015년 9월 17일 인출.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 이영미 (2014).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연구기반사업보고 2014-03). 경기: 경기복지재단.
- 이주연, 김미숙 (2013.9).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1: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건복지포럼**, 203, 90-103.
- 인권교육지원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 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에서 2015년 3월 5일 인출.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2015). 학교 안의 악법 뜯어보기 간담회 자료집. 서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임완섭, 이주미 (2014). **빈곤통계연보**(연구보고서 2014-19).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선옥 (2002). 가정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애착유형 및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0, 149-172.
- 정은희 (2015.2.). 아동빈곤 현황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47-55.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4). 2014년 가정위탁 현황.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웹 사이트 <http://www.fostercare.or.kr/>에서 2015년 10월 인출.
- 최창욱, 박영균, 김진호, 임성택, 전성민 (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연구보고 06-R05).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충욱 (2013).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설립과 운영방안. **제23회 경기도문화교육포럼 자료집 :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현황과 발전방안**. 55-86.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입양에 대한 견해(19세 이상 인구).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2FA090R&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에서 2015년 6월4일 인출.
- 통계청 (2013).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J035&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5년 5월 인출.
- 통계청 (2014a). 2014 한국의 사회지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4b). 사회조사 입양에 대한 견해(19세 이상 인구).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4FA090R&vw_cd=MT_OTITLE&list_id=MT_CTITLE_gA_2014&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5년 5월 인출.
- 통계청 (2015). 스트레스 인지율.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67&vw_cd=MT_OTITLE&list_id=117_11758_0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5년 9월 인출.

통계청 (각년도). 가계동향조사. 대전: 통계청.

통계청 (각년도).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13501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4년 8월 29일 인출.

통계청 (각년도). 사고육비 조사. 대전: 통계청.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OTITLE&list_id=MT_CTITLE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K2#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통계청 (각년도). 생명표.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에서 2014년 8월 25일 인출.

통계청 (각년도). 영아사망추이.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quick_02;에서 2014년 8월 28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2015a). 국내총생산.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2015b).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7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2015c).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에서 2015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14년 10월 18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505에서 2014년 10월 18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가구 비율.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

- 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에서 2014년 11월 5일 인출.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5.2.). 2013 청소년 통계.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87091에서 2013년 8월 1일 인출.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7.10.). 2014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여성가족부.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4.28.). 2015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여성가족부.
- 통일부 정착지원과 (2015.10.3.).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웹 사이트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에서 2015년 10월 3일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SM 2012-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8.20.).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한국성폭력 상담소 웹 사이트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1>에서 2014년 8월 20일 인출.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5).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0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 사이트 <http://www.kocconet.or.kr/>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 한국장학재단 (2014.7.31). 인재육성 사업 소개. 한국장학재단 웹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2015년 9월 30일 인출.
- 한국장학재단 (2014.7.29).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한국장학재단 요청자료.
- Bradshaw, J., B. Martorano, L. Natali, and C. de Neubourg. (2013). *Children's Subject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orking Paper 2013-03*. UNICEF Office of Research, Florence.
- Currie, C., Zanotti, C. and Morgan, A. (2012).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Well-being among young people.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9/2010 survey*. Copenhagen: World Health Organization.
- EBS NEWS (2015.10.14.). 상식이하 '불량 학칙' 여전. EBS News 웹 사이트 <http://home.ebs.co.kr/ebsnews/allView/10394770/N>에서 2015년 10월 20일 인출.
- List of countries by GDP (PPP) per capita. Retrieved October, 11, 201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

- Lumos Foundation (2013). *Children's rights to survival and development: Ensuring access to treatment for children with hydrocephalus*. Wales: Lumos Foundation.
- OECD. Family Database. Retrieved October, 31, 2014, from http://www.oecd.org/els/soc/CO2_2_ChidPoverty_Jan2014.pdf.
- Pecora, P. J., Whittaker, J. K., Maluccio, A. N., Barth, R. P., Depanfilis, D., & Plotnick, R. D. (2009).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Transaction.
-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15). Status of Ratification Interactive Dashboard. Retrieved December, 7, 2015, from <http://indicators.ohchr.org>.
- UNICEF (2007). *Law reform and implementation of the CRC*.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Florence.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1996).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6a).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arts. 19; 28, para. 2; and 37, inter alia)(CRC/C/GC/8).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6b).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CRC/C/GC/13).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6c).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art. 31)(CRC/C/GC/17).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9). *The rights of the child to be heard* (CRC/C/GC/12).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0).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Rev.2).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3). *The rights of children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CRC/C/GC/14).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5).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 역(1991). 유엔아동권리협약(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WHO(2014). World Health Statistics.

부 록

1. 설문지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3. 정책과제에 대한 청소년 의견조사
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부 록

1. 설문지

DPID ID - - -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초등학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조사주관기관: 담당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044)415-2136 김희진 연구위원 (044)415-2106	실사진행기관: 조사문의처:	미디어리서치 문화정 부장 (02) 3488-2728



국무총리산하정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학교 및 학년	학교 학년	학교지역	시(도) 구(군) 동(읍/면)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면접날짜	2015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면접원 ID/성명		S/V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 면 ②에, ‘그런 편이다’ 면
③에, ‘매우 그렇다’ 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있다면 「문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있다면 「문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을 모두 표시하여 응답합니다.

문6.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매우 건강하다

문7.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공부하는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①	②	③	④
(2) 가정에서 서로 싸우는 문제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5) 외모·신체조건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문8.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처럼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0.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문10-1'로 가세요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 '문11'로 가세요
 ④ 매우 행복하다

문10-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11. 다음은 삶의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수준을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수준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낮은 삶의 수준			←----- 중간 -----→				-----→ 높은 삶의 수준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2. 평일 학교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하나요?

☞ 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문13. 최근 1년 동안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문13-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14'로 가세요

문13-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14.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문15.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문16.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나요?

☞ 인권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교육으로서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 『문16-1』로 가세요
→ 『문17』로 가세요

문16-1. (문16의 '① 1회' ~ '⑤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16-2. (문16의 '① 1회' ~ '⑤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문17.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학원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18.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19.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가출한 적이 있다 → 「문19-1」로 가세요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문20」으로 가세요

문19-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다툼 때문에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문20.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 깎보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2) 깎보거나 욕하는 말	①	②	③	④	⑤
학교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4) 깎보거나 욕하는 말	①	②	③	④	⑤

문21.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맞아 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몸을 만짐)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7)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문22.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채팅, 게시판 댓글, 페이스북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깎보거나 욕하는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비밀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문23. 다음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시설공간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 시설을 이용해 보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서울**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전시장 등)	①	②	③	④

이용해 본 아동·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문24.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문25. 최근 1년 동안 어린이 단체(예: 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나요

- ① 가입하지 않았다
-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26.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문27.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단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잘 도와주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 편이다	도와주는 편이다	잘 도와준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문28.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급의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은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급 규칙을 알려주고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문29.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나요?

- ① 운영되고 있다 → '문 29-1'로 가세요
② 운영되지 않는다 → '문 30'으로 가세요

문29-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30.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가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31.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학교운영,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어린이를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문32. 다음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나라 사이에 꼭 지켜야 할 약속을 말합니다

내용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문33. 다음은 어린이에게 인권과 관련한 정보를 알리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아니다	그렇다
(1)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쉽게 풀이한 어린이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나의 권리에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문34.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어린이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35. (차별 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경험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내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얼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36.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내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37.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u>가정에서</u>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u>학교에서</u>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u>사회에서</u>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3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① 있다 → 『문38-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39』로 가세요

문38-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⑧ 경찰
⑨ 인터넷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39.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문40.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⑩ 없음

배경문항 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인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3.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①	②
(2) 어머니	①	①	②

배경문항 4. 학생의 학업 성적(2015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 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PID

ID

과제	교급

학교			

학급

설문지연번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조사주관기관:
담당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044)415-2136
김희진 연구위원 (044)415-2106

실사진행기관:
조 사 문의처:

미디어리서치
문희정 부장 (02) 3488-2728



국무총리산하정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학교 및 학년	_____ 학교	학교지역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학년		_____ 동(읍/면)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면접날짜	2015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면접원 ID/성명		S/V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 면 ②에, ‘그런편이다’ 면 ③에, ‘매우 그렇다’ 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있다면 「문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있다면 「문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을 모두 표시하여 응답합니다.

문1.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① 일어나는 시간 보통 시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시 분

문2.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 「문2-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3」으로 가십시오

문2-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3.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합니까?

- ①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 「문3-1」로 가십시오
② 보통 먹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 먹는 편이다 ➡ 「문4」로 가십시오
④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문3-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⑥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⑦ 다이어트를 위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4.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우리학교 급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5.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문6.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매우 건강하다

문7.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①	②	③	④
(2) 가정 불화	①	②	③	④
(3) 또래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5) 외모·신체조건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문8.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문9」로 가십시오
- ② 가끔 생각한다 → 「문8-1」로 가십시오
- ③ 자주 생각한다

문8-1. (위 문항의 ②, ③에 응답한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 성적
- ② 가족 간의 갈등
-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 ④ 경제적인 어려움
-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9.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없다
- ② 아버지
- ③ 어머니
- ④ 형제/자매
- ⑤ 담임선생님
- ⑥ 학교 상담선생님
- ⑦ 친구
- ⑧ 이웃/친척
-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10.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1.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문11-1'로 가십시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 '문12'로 가십시오
 ④ 매우 행복하다

문11-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업 부담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문12. 다음은 삶의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수준을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수준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낮은 삶의 수준 ←----- 중간 -----> 높은 삶의 수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3.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합니까?

☞ 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문14. 최근 1년 동안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4-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15」로 가십시오

문14-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문15.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문16.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문17.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인권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교육으로서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 '문17-1'로 가십시오
- '문18'로 가십시오

문17-1. (위 문항 17번의 '① 1회' ~ '⑤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
-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17-2. (위 문항 17번의 '① 1회' ~ '⑤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문18.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19.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20.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가출한 적이 있다 → 「문20-1」로 가십시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문21」로 가십시오

문20-1. 「문20」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업 부담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20-2. 「문20」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 「문21」로 가십시오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 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문20-3」로 가십시오

문20-3. 「문20-2」의 ②번 ~ ⑥번에 응답한 경우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문21.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2)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4)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문22.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7)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문23.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채팅, 게시판 댓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문24.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전시장 등)	①	②	③	④

문24-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문26.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 ① 가입하지 않았다
-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27.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28.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문29.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용모(머리 모양, 길아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30.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문31.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① 참여할 수 없다
-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문32.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① 운영되고 있다 → 「문 32-1」로 가십시오
- ② 운영되지 않는다 → 「문 33」으로 가십시오

문32-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33.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교복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문34.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 ① 예 → 「문34-1」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 「문35」로 가십시오

문34-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35.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 참여기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문36.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문36-1. (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 ② 경고 및 훈계
-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문37.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 ②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 ③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문38.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39.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 ②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문40.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u>가정에서</u>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u>학교에서</u>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u>사회에서</u>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41.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내용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문42. 다음은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아니다	그렇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문43.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문44.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45.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교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46.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47.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47-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48」로 가십시오

문47-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14년 기준 시간 당 5,210원, 2015년 기준 시간 당 5,58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배경문항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⑩ 없음

배경문항 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①	②
(2) 어머니	①	①	②

배경문항 4. 학생의 학업 성적(2015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 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2-1. 전문가의견조사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및 지표항목 타당도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항목)	타당도	
			M	SD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법제도	4.61	.70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4.67	.59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4.67	.77
	1-1-2. 인권에 대한 인지도	1-1-2-1.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4.56	.51
		1-1-2-2. 인권의 존중정도*(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4.39	.61
		1-1-2-3.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4.39	.70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경험*	4.78	.43
		1-1-3-2. 인권교육 받은 기관*	4.44	.62
		1-1-3-3.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4.28	.83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 가해 경험*	4.67	.49
		1-2-1-2. 차별 피해 경험*	4.78	.43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 노력	4.67	.59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4.50	.71
	2-1-2. 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4.61	.61
		2-1-2-2. 학급회의 운영 여부*	4.33	.59
		2-1-2-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4.22	.65
		2-1-2-4.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4.33	.77
		2-1-2-5.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4.22	.98
	2-1-3. 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4.33	.97
		2-1-3-2.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4.50	.62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4.61	.61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참여 장애 이유*	4.72	.57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3.72	1.13
		2-2-1-2.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4.67	.49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4.44	.78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4.44	.70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	4.56	.62
		2-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4.44	.62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 ·소지품검사 경험률	2-4-1-1.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4.61	.70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4.50	.79
		2-4-2-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4.39	.70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4-2-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4.44	.70
		2-5-1-1. 매체 이용률	4.39	.70
		2-5-1-2. 유해매체 이용률	4.28	1.07
	2-5-2. 정보제공 정도	2-5-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4.33	.69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4.78	.43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4.72	.46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항목)	평균	
			M	SD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제28조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4.00	.91
		3-1-1-2. 폭력피해 경험*	4.48	.65
		3-1-1-3.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4.40	.65
	3-1-2. 체벌경험률	3-1-2-1. 체벌 경험률*	4.36	.64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4.60	.50
		3-2-1-2.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4.20	.65
		3-2-1-3. 방임유형 및 정도*	4.12	.73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아동학대 신고건수	3.72	1.14
		3-2-2-2.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 기관 수	4.04	1.10
		3-2-2-3.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건수	3.84	.90
3-2-2-4. 서비스 제공정도와 원가정 복귀율		3.68	.99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3.96	.79
		4-1-1-2. 부모와의 관계의 질	4.00	.91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4.40	.65
		4-1-2-2. 보육시설 이용률	4.12	.60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제20조)	4-2-1. 입양률	4-1-2-3.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4.32	.56
		4-2-1-1. 국내외 입양현황 및 추이, 입양기피이유	4.04	.93
	4-2-1-2.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4.16	.62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요보호아동 현황	4.28	.79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28	.74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4.12	.88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2-3-2. 가출 경험 여부*, 가출 이유*	4.00	.87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만족도*	4.08	.64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4.40	.58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4.24	.88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4.32	.56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통합교육비율	4.20	.65
		5-1-1-2.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	4.48	.51
		5-1-1-3.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취업을 추이	4.20	.71
5-2. 생존 및 발달(제6조2항)	5-2-1. 사망률	5-2-1-1. 0세의 기대여명	3.84	.75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4.36	.64
		5-2-1-3. 사고 사망률	4.24	.72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건수	3.92	.91
		5-2-2-2. 사고 및 급식 안전 등에 대한 인식률*	4.04	.89
5-3. 보건서비스(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4.12	.73
		5-3-1-2.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4.16	.85
		5-3-1-3.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4.04	.84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항목)	평균	
			M	SD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4.48	.59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4.04	1.06
		5-3-3-2. 음주율	4.00	1.04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3.72	1.02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4.20	.71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1.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4.20	.82
	5-4-2. 신체적 건강	5-4-2-1. 운동 실천율*	4.12	.83
		5-4-2-2. 아침식사 결식률*, 결식이유*	4.24	.78
		5-4-2-3. 수면시간*, 수면부족여부*, 수면부족 이유*	4.36	.64
		5-4-2-4. 비만율	4.36	.64
	5-4-3. 정신적 건강	5-4-3-1. 죽고 싶다는 생각*, 그 이유*	4.16	.90
		5-4-3-2. 우울증 지수*	4.40	.71
		5-4-3-3. 스트레스 인지율*	4.52	.51
		5-4-3-4. 행복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4.20	.76
		5-4-3-5. 삶의 수준*	3.96	1.14
		5-4-3-6. 자아존중감*	4.32	.63
		5-4-3-7. 고민거리대화상대*	4.00	.87
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1-1.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4.16	.99
		5-5-1-2.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4.68	.48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및 지원수준	4.64	.57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4.28	.61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률	4.72	.57
		6-1-1-2. 학생 진학률	4.61	.50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4.67	.49
		6-1-1-4.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4.61	.50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4.61	.98
		6-1-2-2. 학업포기 생각여부*, 이유*	4.61	.61
		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4.56	.62
	6-1-3. 대안교육 참여율	6-1-3-1. 대안학교수와 종류	4.56	.61
6-2. 교육의 목표(제29조)		6-1-3-2. 대안학교 학생 비율	4.50	.62
	6-2-1. 학교 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4.44	.70
	6-2-2.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6-2-2-1. 인성교육 실천학교 운영수	2.89	1.28
		6-2-2-2. 인성교육 연수 참여 교원수	2.83	1.38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제31조)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수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4.28	.89
		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4.33	.77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율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4.56	.70
		6-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4.39	.78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4.56	.62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4.72	.57
		6-3-2-5. 하루평균학습시간*	4.67	.59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항목)	평균	
			M	SD
	6-3-3. 여가·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4.67	.59
		6-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4.39	.61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3.44	1.00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3.80	.87
		7-1-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4.40	.65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4.40	.65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4.32	.56
	7-1-3.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및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	3.84	.90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3.76	.83
		7-1-3-3.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3.68	.90
7-2. 소년사법아동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4.08	.76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4.20	.71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4.32	.48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4.32	.75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3.92	.76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4.28	.68
		7-2-3-2. 선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4.24	.78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4.24	.60
7-3. 경제적 착취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4.28	.79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4.20	.82
	7-3-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4.00	.91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4.60	.58
	7-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노력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 소수	4.32	.75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률	4.60	.71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3.84	.75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3.80	1.08
	7-4-2.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1. 성폭력 피해아동 인구 비율	4.52	.65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4.48	.82
		7-4-2-3.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3.92	.95
	7-4-3.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3-1.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4.32	.75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4.48	.65
	7-4-4. 성폭력 피해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1. 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4.32	.56
		7-4-4-2.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3.88	.83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4.44	.58

2-2. 전문가의견조사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원 타당도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외에 행정통계 등을 통한 자료원 검토

지표(소분류)	지표항목(*설문조사)	통계자료원	타당도	
			M	SD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법제도	- 청소년정책 변천과정	3.83	.00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 2012~2014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인력 및 담당 업무	3.39	1.09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 2011~2014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	4.33	.91
		- 2013 청소년 인권증진 지원 예산 세부내역	3.67	1.19
- 2010~2013 청소년 인권증진 지원 사업 성과지 표 및 성과 달성정도		3.61	1.09	
1-2. 일반원칙(제2조, 3조)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 노력	- 청소년영향평가제 정책 실행 로드맵	3.56	.62
		-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3.28	.89
2. 시민권과 자유				
2-1. 의견표명권(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3.72	1.13
		-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2008~2013)	4.06	.94
		-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지 원 현황(2013)		
		-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4)	3.89	.83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 사업 현황	3.89	.90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비율	3.56	1.04
		- 연도별 병역 거부자 발생 및 처리 현황	3.50	1.10
2-5. 정보접근권(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4.00	.77
		- SNS 이용률	4.17	.71
		-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 현황 및 이용시간	4.11	.76
		- 학생-성인 1년간 1권 이상 독서율	4.33	.69
		- 종이책, 전자책 독서율 변화 추이(성인, 학생)	4.28	.67
	2-5-1-2. 유해매체 이용률	-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	4.28	1.07
		-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4.17	.86

지표(소분류)	지표항목(*설문조사)	통계자료원	타당도	
			M	SD

3. 폭력 및 학대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비율(중복학대 미분류) 및 성별, 연령별 비율	4.12	.73
		- 아동학대 발생빈도	4.28	.68
	3-2-1-2.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 중복아동학대사례 유형별 비율(중복학대 별도분류)	4.12	.73
		- 재학대사례 비율(중복학대 미분류)	4.04	.84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아동학대 신고건수	-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재신고 건수	3.72	1.17
	3-2-2-2.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증가 추이	3.88	.88
	3-2-2-3.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건수	- 2013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아동학대) 업무별 서비스제공 사례건수	3.92	.86
	3-2-2-4. 서비스 제공정도와 원가정복귀율	- 2013년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3.80	.65
		- 학대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	3.72	.84

4.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 부모와의 대화시간	3.92	.70
	4-1-1-2. 부모와의 관계의 질	- 부모와의 충분한 대화 수준	3.84	.69
		- 부모님의 자녀 이해 정도	3.80	.76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4.32	.56
	4-1-2-2. 보육시설 이용률	- 어린이집 연도 및 설립주체별 설치운영 현황	3.64	.64
		-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3.96	.61
		- 어린이집 1개소 및 교직원 1인당 아동수	4.28	.61
		-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3.80	.91
	4-1-2-3.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 초등돌봄교실 운영교실 수 및 참여학생 수	4.12	.73
		- 방과후학교 교급별 참여율 및 참가비용	3.88	.60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3.84	.69
		-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및 이용 아동 추이	4.12	.67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	3.72	.74
		-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연도별 만족도	3.92	.81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 및 추이, 입양기피이유	-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4.32	.75
		-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외입양아동 수	4.20	.82
		-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3.64	1.22
	4-2-1-2.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내용	4.08	.64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요보호아동 현황	- 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모형	3.88	.78
		- 요보호아동 발생 유형 및 현황,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4.12	1.01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4.16	.80

지표(소분류)	지표항목(*설문조사)	통계자료원	타당도	
			M	SD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 가출인 신고 접수 현황	3.88	.88
		- 연도별 청소년쉼터 개소 수	3.92	1.04
4-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3.92	.64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사항	3.60	.82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결과보고 내용	3.56	.96
	4-3-1-2. 보호·양육시설 예산	- 보호양육시설 예산	4.20	.82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및 등급분포	3.80	.76
5. 기초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일반학교	4.24	.60
	5-1-1-2.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	-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4.28	.61
	5-1-1-3.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취업을 추이	- 장애 청소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4.16	.75
5-2.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0세의 기대여명	- 0세의 평균수명	3.92	.76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 연도별 영아사망률	4.40	.65
		-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4.28	.79
	5-2-1-3. 사고 사망률	- 0-29세 사고 사망률 - 0-29세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4.12 4.16	.78 .75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건수	-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4.00	.96
5-3. 보건서비스(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 보건교사 배치현황 및 연도별 배치 추세	4.12	.73
	5-3-1-2.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 관련 시설 비율	-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4.08	.76
		- 소아청소년 연령별 비만 유병률	3.92	.81
	5-3-1-3.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 소아청소년 질환별	3.72 3.92	.84 .86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 소득 수준별 및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4.20	.87
		- 소득 수준별 및 연령별 아동·청소년 연간 병원 미치료율	4.32	.75
		- 소득 수준별 및 연령별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4.32	.75
		- 소득 수준별 및 연령별 아동·청소년 2주간 약국이용률	3.68	.99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 학년별 현재 흡연율 추이(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흡연)	3.96	.98
	5-3-3-2. 음주율	- 학년별 음주 음주율 추이(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음주)	3.96	.93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 약물 경험률	3.80	.96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4.04 3.96	.68 .61

지표(소분류)	지표항목(*설문조사)	통계자료원	타당도	
			M	SD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제24조)				
5-4-2. 신체적 건강	5-4-2-4. 비만을	- 최근 5년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 학생의 비만을 및 추이	4.24	.66
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1-1.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 아동빈곤율 -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	3.92 4.24	.95 .88
	5-5-1-2.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2005, 2009)	4.52	.51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및 지원수준	- 24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4.04	.84
		- 한부모가구 비율	3.88	.78
		-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4.16	.69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3.80	.91
		-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지원예산	3.88	.73
		-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3.88	.88
		-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3.72	.84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4.08	.76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률	- 각급 학교의 연도별 취학률	4.61	.61
	6-1-1-2. 학생 진학률	-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	4.56	.51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 국민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 추이	4.61	.50
		- OECD와 한국의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4.61	.50
	6-1-1-4.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 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4.67	.49
- 한국의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 추이 - 연도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		4.67 4.67	.49 .49	
6-1-2. 학교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	4.50	.99
6-1-3. 대안교육 참여율	6-1-3-1. 대안학교수와 종류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4.56	.51
		-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현황	4.56	.51
	6-1-3-2. 대안학교 학생 비율	-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학생 현황	4.61	.50
		-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학생 현황	4.50	.51
6-2. 교육의 목표(제29조)				
6-2-2.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6-2-2-1. 인성교육 실천학교 운영수	- 각 학교급 별 교육목표에 포함된 인성교육 내용 - 인성교육 실천학교 운영수	2.78 2.78	1.44 1.44
	6-2-2-2. 인성교육 연수 참여 교원수	- 인성교육 관련 연수 경험 및 도움 정도	2.83	1.38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제31조)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수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지역별 현황	4.06	.87
	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4.28	.75

지표(소분류)	지표항목(*설문조사)	통계자료원	타당도	
			M	SD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율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 청소년의 주말이나 휴일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4.33	.69
	6-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4.39	.70
6-3-3. 여가·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 여가활동 만족도	4.39	.61

7. 특별보호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3.44	.92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4.00	.82
	7-1-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무시한 경험 및 차별/무시당한 경험	4.20	.71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학생 증가추이	4.12	.73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4.20	.76
		-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연도별 재학 현황	4.20	.65
7-1-3.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4.16	.69
		-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4.24	.66
	7-1-3-1.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및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	-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참가 인원수	3.72	.84
		-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3.72	.84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	3.72	.84
	7-1-3-3.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3.68	.85

7-2. 소년사범아동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4.20	.71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 청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4.24	.66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국청 운영 누적 현황	4.08	.76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 소년원의 교육체계	3.84	.90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3.92	.76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4.24	.72
		-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4.24	.72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4.36	.64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4.24	.72

7-3. 경제적 착취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근로자 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4.28	.61
		-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하루평균 근로시간	4.24	.60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4.24	.66
		-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4.24	.72

지표(소분류)	지표항목(*설문조사)	통계자료원	타당도	
			M	SD
7-3-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 _OECD평균 및 국가간 비교	3.96	.84
7-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노력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4.20	.76
		-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 법 위반 내용	4.36	.81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4.40	.82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 수	3.76	.66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 (지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수	4.04	.89
7-4-2.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1. 성폭력 피해아동 인구 비율	-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4.48	.71
7-4-3.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3-1.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4.32	.69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4.44	.71
7-4-4. 성폭력 피해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1. 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연령별 입소 현황	4.20	.76
	7-4-4-2.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4.08	.70
		-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4.12	.73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4.20	.91

3. 정책과제에 대한 청소년 의견조사

영역	과제명	필요성	
		M	SD
1. 인권 일반과 일반 원칙	〈과제1-1〉 국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 인권 영향 평가 및 모니터 제도 도입	4.36	0.67
	〈과제1-2〉 지역 내 청소년 시민학교(혹은 인권학교) 운영 모델 개발	3.64	1.21
2. 시민적 권리와 자유권	〈과제2-1〉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정책 모니터 활동 운영	4.36	0.81
	〈과제2-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인권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보급	4.64	0.50
	〈과제2-3〉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권 보장	4.64	0.67
	〈과제2-4〉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및 정보접근권 보장	3.45	1.13
	〈과제2-5〉 사범 및 교육대학 학생 대상 아동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보급/ 아동권리(인권)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4.18	0.98
	〈과제2-6〉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64	0.81
	〈과제2-7〉 아동·청소년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례 개발	4.00	1.00
3. 폭력 및 학대	〈과제3-1〉 체벌 근절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3.73	1.42
	〈과제3-2〉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09	1.04
	〈과제3-3〉 방임 아동·청소년 구제 및 지원	4.45	0.82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4-1〉 복지 전담 공무원, 경찰, 법 관련 공무원 대상 아동인권 교육 프로그램개발·보급	3.91	0.83
	〈과제4-2〉 복지 서비스 전달 과정에 아동 최상의 이익 고려를 위한 제도(매뉴얼) 마련	4.27	0.65
	〈과제4-3〉 일시보호 및 영·유아 전담 위탁가정, 아동의 특성에 기반한 보호를 위한 위탁가정 확충 방안 및 정책개선안 마련	4.55	0.93
	〈과제4-4〉 대안양육 아동의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 개발	4.00	1.00
	〈과제4-5〉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성폭행 실태조사 및 대책	4.73	0.47
	〈과제4-6〉 국공립 방과후 돌봄인프라 구축(돌봄서비스 공공화)	3.82	0.87
	〈과제4-7〉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적정 자립정착금 지원 및 가이드라인 제시)	3.55	1.04
	〈과제4-8〉 가출(가정박) 청소년 옹호체계 구축	3.36	1.29
	〈과제4-9〉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안양육 및 자립체계의 평가와 개선	3.64	1.0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5-1〉 학부모를 위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및 교육 활성화	3.64	1.36
	〈과제5-2〉 장애아동 전담 교육지원교사제도 운영	3.82	1.08
	〈과제5-3〉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4.45	0.82
	〈과제5-4〉 자살발생에 대한 사후대처 및 사인규명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4.18	0.87
	〈과제5-5〉 아동·청소년의 성정체성 발달과 성평등적 관점 등을 포함하여,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성교육 및 보건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평가 및 개선	4.09	1.22

영역	과제명	필요성	
		M	SD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6-1〉 학업 중단 청소년의 숙려기간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진로지원 활성화	4.18	0.75
	〈과제6-2〉 청소년 여가 주간 운영	3.82	1.25
7. 특별보호조치	〈과제7-1〉 소년사법 절차 및 처우에 관한 법·제도 개선	4.18	0.60
	〈과제7-2〉 성매매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4.55	0.52
	〈과제7-3〉 농촌지역 이주아동 전담 의료기관 지정 운영	4.36	0.81
	〈과제7-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접근권 및 학교포용력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	3.82	0.98
	〈과제7-5〉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소년법 규정 검토 및 보호처분의 형평성 개선	4.00	0.89

○ 자유제안

-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권교육
- 아동·청소년 인권 담당 부처 조직 및 지역별 인권센터 구축
- 연령에 따른 청소년참여기구 구분
- 학생들에 의한 학칙
-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화
-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의무화
- 학생회, 학급회의 등 학생 자발적 의사결정 과정 개선
- 방과후 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보건실 운영 개선
- 가출 청소년 보호지원 확대
- 아동학대에 관련된 교육 활성화 방안
- 청소년 진로여행
- 전통교육시설의 확충
- 성매매 청소년 재활프로그램

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¹⁾

아동권리협약 제 44조 1항(b)에 따라 가입국이 제출해야 할 정기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조약 관련 가이드라인

I. 서문 및 보고의 목적

1. 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의거, 각 가입국은 각국이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의 보고서는 가입국에 대해 협약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2년 내, 정기 보고서는 그 후 매 5년마다 제출되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기보고서에 적용된다. 협약에 따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가입국은 최초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야 한다.²⁾
2.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SC)와 아동의 무력 분쟁 개입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AC)는 각 가입국이 각각의 선택의정서 규정들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³⁾ 각 선택의정서에 따른 최초 보고서는 가입국에 대해 각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2년 내 제출되어야 한다. 가입국은 OPSC와 OPAC에 대한 최초 보고서 작성 시 각 선택의정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⁴⁾ 선택의정서들은 승인했으나 아동권리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가입국들은 OPSC와 OPAC에 따른 정기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각 선택의정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3. 선택의정서에 따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가입국은 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에서 선택의정서 이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선택의정서에 관한 항목들은 선택의정서에 따라 최초 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가입국을 위한 것이다.
4. 선택의정서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승인하지 않은 협약 가입국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에 대해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선택의정서에 관한 정보는 무시해야 한다.
5.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은 2009년 개정된 핵심 문서와 조약 관련 문서들(HRI/ GEN/2/Rev.6, chap. 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보고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따라서 통합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공통 핵심 문서의 준비와 제출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이 두 세트의 가이드라인은 함께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에 따른 보고의 기초가

1)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5).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 CRC/C/5.

3) OPSC 제12조와 OPAC 제 8조를 보라.

4) 아동권리위원회는 2006년 9월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물에 관한 의정서(CRC/C/OPSC/2)에 대해 개정된 보고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으며 2007년 9월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개정 보고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 된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보고서는 두 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핵심문서와 조약 관련 문서(“조약 관련 보고서”로 언급된다)가 그것이다. 2014년 1월 31일 채택된 이 가이드라인은 아동권리위원회가 2010년 10월 1일(CRC/C/58/Rev.2)과 2005년 6월 3일(CRC/C/58/Rev.1) 채택한 가이드라인을 대체한다.
6. 가입국은 통합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일반적 지침과 요건을 고려하되 특히 보고 절차(I절), 보고서 형식(II절), 보고서 내용(III절), 국가 단위에서의 보고 절차(45항)에 관한 지침과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II. 공통 핵심 문서

7. 공통 핵심 문서는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보고하는 국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일반적 프레임워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와 비차별, 평등, 효과적 구제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엔총회 결의안 68/268(16항)에 따르면 공통 핵심 문서는 4만2400자를 넘어서는 안 된다.
8. 일반적으로 공통 핵심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는 조약 관련 보고서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가입국은 조약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통 핵심 문서에 있는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통합 가이드라인 27항에 따르면 아동권리위원회는 공통 핵심 문서에 담긴 정보가 오래된 정보라고 판단되면 이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9. 아동권리위원회는 만일 가입국이 공통 핵심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공통 핵심 문서에 있는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정보일 경우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약 관련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을 강조한다.

III. 조약 관련 보고서

A. 형태와 내용

10. 이 가이드라인은 조약 관련 정기 보고서 준비에 관한 것이다. 조약 관련 보고서에는 보고하는 국가에서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련된 정보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선택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엔총회 결의안 68/268(16항)에 따르면 조약 관련 보고서는 2만1200자를 넘어서는 안 되며 MS Word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11.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이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해당되는 경우, 선택의정서의 이행에 관해 제공하는 정보에는 아동권리위원회가 이전에 제안한 관련 권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고들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이행 시 부딪힌 주된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조치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12. 조약 관련 보고서에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general comments*)과 관련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해당될 경우, 선택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하며 또한 법, 법률 체계(*legal systems*), 법 체계(*jurisprudence*), 제도적 틀, 정책, 프로그램이 이른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연령그룹과, 각 연령별 고유한 니드에 따라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성격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일반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핵심 문서에 있는 정보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13. 가입국이 조약 관련 보고서에서 공통 핵심 문서에 있는 정보를 참조할 때는 반드시 그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핵심 문서의 정확한 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4. 일반적인 통계 정보는 공통 핵심 문서에 들어 있어야 하며, 반면, 조약 관련 보고서에는 아동권리협약과, 해당될 경우,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 데이터와 통계가 연령, 성별, 기타 관련된 기준에 따라 세분화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가입국은 본 가이드라인의 부록에 표시된 대로 통계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통계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사용 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별도의 부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자원 제약으로 인해 부록은 번역되지 않을 것이다.
15. 가입국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입법, 사법, 행정 및 기타 관련 문서들을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로 별도 제출할 수 있다. 이 문서들은 번역되거나 분배를 위해 재생산되지 않을 것이지만 위원회의 논의를 위해서는 제공될 것이다.
16. 조약 관련 보고서가 다루어야 할 기간은 가입국의 이전 정기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검토로부터 시작해 현 보고서 제출까지의 기간이다.

B. 보고서에 담겨야 할 주요 정보

17. 조약 관련 보고서에는 아동권리위원회가 수립한 권리 “클러스터”에 따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아래 참조). 가입국은 아동권리협약과, 해당될 경우, 선택의정서를 모두 지키는 데 나타난 진척 사항과 장애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가입국은 아동권리위원회가 각각의 권리 클러스터에 관련해 결론적 고찰에서 제공한 권고안들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선택의정서 이행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⁵⁾

1. 일반이행조치 (아동권리협약 제4조, 42조, 44조 6항)

18.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에 관련된 구체적인 유보나 성명에 대한 정보와 이들을 제한하거나 철회하려는 노력에 대한 정보는 조약 관련 보고서의 이 섹션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이나, 해당될 경우,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관련된 유보나 성명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것을 계속 유지할 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 가입국 중 군대 자원입대 최소 연령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성명에서 18세 미만의 연령을 최소 연령으로 선언한 가입국은 최소 연령을 올렸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
19. 이 섹션에서 가입국은 아동권리협약과, 해당될 경우, 선택의정서에 관한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국내법과 관행이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일치하게 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 OPAC와 OPSC 가입국들은 각 의정서와 관련된 형벌 규정과 기타 법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조약 관련 보고서에서 선택의정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입국은 보고서에 담을 내용에 대한 지침을 선택의정서 보고 가이드라인을 참조해도 된다.

- (b)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과 그에 따른 계획이나 액션 플랜이 채택되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것들이 이행되고 평가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전체 개발 전략과 공공 정책의 일부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분야별 전략과 계획에 연계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연방정부의 경우 아동과 관련된 계획이 연방 혹은 중앙 정부 수준을 넘어 서는지, 넘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넘어 서는지에 대한 정보;
 - (c) 어느 정부 부서가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이행 관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그런 부서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는 지에 대한 정보;
 - (d)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명확히 배분되어 있으며 아동을 위한 포괄적 국가 전략과 관련 계획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
 - (e) 국제적 지원과 개발원조가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관련 국가전략 및 계획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정보;
 - (f)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독립된 국가인권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기관이 아동이나 그들의 대리인으로부터 개별적인 불평을 접수하는지에 대한 정보;
 - (g) 아동권리협약과 그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규정들을 정보 전파, 훈련, 학교 교과과정과의 통합 등을 통해 성인과 아동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
 - (h) 보고서들과 결론적 고찰(concluding observations)을 대중, 시민 사회, 사업체, 노동 조합, 종교 단체, 미디어 및 기타 대상들에게 널리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정보;
 - (i) 비정부기구, 아동 및 청소년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과 그들이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계획과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수준에 대한 정보
20.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아동의 권리 향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발굴업체, 제약회사, 농공업 및 기타)의 활동이 평가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조사, 심사, 보상 및 규율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1.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서 독립된 국가인권기관이 하는 역할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No. 2 (2002)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 조치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No. 5, 비즈니스 분야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 의무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No. 16 (2013)을 고려해야 한다.

2. 아동에 대한 정의 (제1조)

22. 이 섹션에서 가입국은 국내법과 규정에서의 아동에 관한 정의에 대한 아동권리헌장 제 1조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성인 연령이 18세 미만일 경우 가입국은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아동권리협약에 정한 보호와 권리를 어떻게 누리는 지 밝혀야 한다. 가입국은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결혼 최소 연령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3. 일반원칙 (제2조, 3조, 6조, 12조)

23.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비차별 (제2조);
 - (b)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 (제3조);
 - (c) 생명, 생존, 발달에의 권리 (제6조)

(d) 아동의 견해 존중 (제12조)

24. 차별을 예방하고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제2조)에 관해 공통 핵심 문서에 담긴 정보를 보조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적합할 경우, 성(性)에 근거한 차별에 금하는 조치와 장애아동, 소수인종 아동, 원주민 아동이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는 조치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5. 가입국은 실시 중인 법률적, 사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들에 대한 최신 정보와 특히 아동의 최상의 이익(제3조) 원칙과 아동 견해의 존중(제12조) 원칙이 법률, 행정 및 사법 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이행되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6. 생명, 생존, 개발에의 권리(제6조)에 관해서는 아동이 차별 없이 자기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입국은 다음 조치들에 대해 밝혀야 한다:
 - (a) 18세 이하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 (b) 아동의 사망과 불법적인 살해에 대한 정보 등록
 - (c) 아동 자살을 방지하고 유아 살해를 퇴치하며 아동의 생명, 생존, 개발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한 조치들
27.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받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No. 14(2013), 아동의 의견 개진 권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No. 12(2009), 원주민 아동과 아동권리협약에서의 그들의 권리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No. 11을 고려해야 한다.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제7조, 8조, 13-17조)

28.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출생 신고, 이름, 국적 (제7조);
 - (b) ID 보존 (제8조);
 - (c) 표현의 자유와 정보를 찾고 얻고 나눠줄 권리 (제13조);
 - (d) 사고와 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14조);
 - (e) 단체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제15조);
 - (f) 사생활과 이미지 보호 (제16조);
 - (g) 다양한 소스의 정보 이용 권리와 아동의 복지에 유해한 내용으로부터의 보호 (제17조).
29. 적합할 경우,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미디어가 하는 특정한 역할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수 있다.

5. 아동에 대한 폭력 (제19조, 24조 3항, 28조 2항, 34조, 37조(a), 39조)

30.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아동 학대와 유기 (제19조);
 - (b) 여성 성기 절제와 조혼 및 강제혼을 포함한 -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 모든 형태의 유해한 관행의 금지와 제거 조치 (제14조 3항);
 - (c)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제34조)
 - (d) 체벌을 포함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벌 혹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a)와 28조 2항);
 - (e) 아동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요양 및 사회 재통합 조치

(f) 아동을 위한 전화 상담 서비스 유무

31.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차별과 잔인하거나 수치스러운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No. 8(2006);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대한 총평 No. 13(2011), 유해한 관행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No. 18(2014)과 여성차별퇴치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공동 권고안 No. 31을 고려해야 한다.

6. 가족 환경과 대안양육 (제5조, 9-11조, 18조 1항과 2항, 20조, 21조, 25조, 27조 4항)

32.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되어 이미 실시 중인 주요 법률, 사법, 행정 및 기타 조치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아동의 역량 개발 단계에 맞는 가족 환경과 부모의 지도 (제5조);
 - (b) 부모의 일반적 책임,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제18조);
 - (c)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9조);
 - (d) 가족 재회 (제10조);
 - (e) 아동 생계비 회복(recovery of maintenance for the child) (제27조 4항);
 - (f) 가족환경을 강탈당한 아동 (제20조);
 - (g) 거주지에 대한 정기적 점검 (제25조);
 - (h) 입양 (국내 및 해외) (제21조)
 - (i) 불법 인도(illicit transfer)와 non-return (제11조)
 - (j)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옥중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33.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유년기 아동권리 이행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No. 7(2005)과 아동 대안 보호 가이드라인(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을 고려해야 한다.

7.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제6조, 18조 3항, 23조, 24조, 26조, 27조 1-3항, 33조)

34.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교육, 문화 활동과 같은 모든 종류의 서비스, 교통, 제도 등의 활용을 통해 장애 아동의 존엄성, 자족, 커뮤니티에의 적극적 참여를 담보하는 조치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제23조).
35.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생존과 개발 (제6조 2항);
 - (b) 건강과 보건 서비스, 특히 1차 보건 의료 (제24조);
 - (c) 가장 만연된 건강 문제들을 다루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며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는 노력;
 - (d) 청소년의 생식기 건강권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을 위한 조치들;
 - (e) 약물 남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들 (제33조);
36.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a) 사회 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 (제26조와 18조 3항);
 - (b) 생활 수준, 그리고 아동의 신체, 정신, 영성, 도덕, 사회 개발을 도모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물질적 지원과 영양, 의복, 주택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 포함 (제27조 1-3항)

37.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HIV/AIDS와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No. 3(2003), 아동권리 협약의 맥락에서 청소년 보건과 개발에 관한 No. 4(2003),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No. 9(2006), 그리고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려야 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No. 15(2013)를 고려해야 한다.

8. 교육, 여가, 문화 활동 (제28-31조)

38.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아동이 유년기로부터 대학 및 직업 교육 및 훈련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정책, 법과 정책의 이행, 양질의 스탠다드, 재정 및 인적 자원, 기타 조치들과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되 특히 불우하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직업 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 (b) 교육의 질과 함께 교육의 목표 (제29조);
 - (c) 원주민 및 소수 인종 그룹에 속하는 아동의 문화적 권리 (제30조);
 - (d) 인권 교육과 시민 교육;
 - (e) 휴식, 놀이, 여가,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예술 활동 (제31조).
39.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교육의 목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No. 1(2001), 유년기 아동권리에 관한 No. 7(2005),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No. 9(2006), 원주민 아동과 아동권리협약에서의 그들의 권리에 관한 No. 11(2009), 그리고 휴식, 여가, 놀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문화 생활과 예술 (제31조)에 대한 권리에 관한 No. 17(2013)을 고려해야 한다.

9. 특별보호조치 (제22조, 30조, 32조, 33조, 35조, 36조, 37 (b)-(d), 38-40조)

40.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아래 대상의 보호 조치를 위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난민 보호를 신청한 출생지를 떠난 아동 (제22조), 망명 신청을 한 부모 없는 아동, 국내에서 집을 잃은 아동, 이주민 아동, 이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아동;
 - (b) 소수 인종과 원주민 그룹에 속한 아동 (제30조);
 - (c) 길거리 아동;
 - (d) 착취 받는 아동과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 재통합 조치;
 - (i) 최소 연령과 관련해 아동 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제32조);
 - (ii)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의 불법 생산 및 거래에서의 아동 사용 (제33조);
 - (iii)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제34조);
 - (iv) 아동 판매, 불법 거래, 유괴 (제35조)
 - (v) 기타 착취 (제36조);
 - (e) 법에 저촉된 아동, 아동 피해자, 범죄 목격 아동과 청소년범;
 - (i) 청소년 사법 집행 (제40조), 특수 법원의 존재, 형법적 책임에 대한 최소 연령 적용 여부;
 - (ii)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과 아동에 대한 체포, 구금 및 투옥을 반드시 최후 수단으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활용하게 하며 법적 및 기타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게 하는 조치 (제37조 (b)-(d));
 - (iii) 아동에 대한 형 선고, 특히 사형과 무기형 금지 (제37조 (a))와 갇혀있는 접근에 기반한 대안 처벌의 유무;
 - (iv)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 재통합 (제39조);
 - (v)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관여하는 모든 전문가들 - 재판관, 검사, 변호사, 사법권을 가진 행정 지사, 법률 집행관, 이민관, 사회복지사 - 을 위해 개발된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그리고

아동 피해자와 범죄 목격 아동에 관한 사법 처리 가이드라인(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 부록)을 포함한 청소년 사법 분야에 대한 훈련 활동;

(f)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 재통합(제39조)을 포함한 무력 분쟁에 휩싸인 아동 (제38조).

41. 이 클러스터에서 가입국은 출생지를 떠나 보호자가 없고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 No. 6(2005), 청소년 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No. 10(2007), 그리고 원주민 아동과 아동권리협약에서의 그들의 권리에 관한 No. 11(2009)을 고려해야 한다.

10.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에 대한 후속조치

42. 아동 판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가입국은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선택의정서와 관련해 아동권리위원회가 이전에 제출한 결론적 고찰에서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
- (b)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해 취한 법적, 정책적 조치와 관련된 주요한 개발 사항으로 여기에는 제2조와 3조에서 정의된 모든 행동들이 가입국의 형법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범죄에 대한 치외법권이 행사되었는지 여부;
- (c) 선택의정서 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 수립 조치;
- (d) 선택의정서 위반의 유해 효과 인식 증진 및 예방 조치;
- (e) 선택의정서 위반으로 인한 아동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 재통합을 꾀하는 조치와 이런 아동이 보상을 구할 수 있는 절차의 유무;
- (f) 형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선택의정서가 급하고 있는 관행을 목격한 아동과/이나 아동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
- (g) 국가 기관과 지역 및 국제 기구, 국내 및 국제 비정부기구 등에서 선택의정서 위반에 대한 예방, 감시, 조사, 기소, 처벌에 관한 국제협력과 조율을 증진하는 노력;
- (h) 선택의정서 위반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사회 재통합, 본국 송환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양자 원조와 기술 지원, 국제 기관이나 기구의 활동 지원 포함;

11.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에 대한 후속조치

43. 아동의 무력 분쟁 개입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가입국은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선택의정서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가 이 전에 제시한 결론적 고찰에 담긴 권고안의 이행;
- (b) 군대 징발을 위한 최소 연령;
- (c) 자원입대를 위한 최소 연령;
- (d)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해 취해진 법적, 정책적 조치에 관한 주요 개발 사항과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치외법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었는지 여부;
- (e)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
- (f) 기술 협력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적대행위에 모집되었거나 활용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한 조치;
- (g) 아동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중 무력 분쟁에 영향을 받은 아동이 있는 지 식별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와 그렇게 판명된 아동에게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여부;
- (h) 적대행위에 모집되거나 활용된 가운데 전쟁 범죄로 기소된 아동이 있는지 여부.

부 록

아동권리협약 제44조 1항(b)에 따른 가입국 제출 정기 보고서 통계 정보 및 데이터 포함에 관한 가이드라인

I. 서문

1. 정기 보고서를 준비할 때 가입국은 그 형태와 내용에 관해서는 조약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본 부록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연령 혹은 연령 그룹, 성별, 지역(시골 혹은 도시 지역), 소수 인종 혹은 원주민, 인종, 종교, 장애 혹은 기타 필요한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된 통계 정보와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2. 가입국이 제공하는 통계 정보와 데이터는 이전 보고서 이후로부터의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보고 기간 동안의 동향에 대한 테이블 등의 제공을 권하며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큰 변화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설명이나 논평이 제공되어야 한다.

II. 보고서에 제공되어야 할 통계 정보

A. 일반이행조치 (제4조, 42조, 44조 6항)

3. 가입국은 보고 기간 동안의 전체 지출 중 사회 서비스에 배분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가족 그리고/혹은 아동 수당, 조건부 현금 지원 시스템;
 - (b) 1차 보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보건 서비스
 - (c) 유년기 개발 (양육과 교육)
 - (d) 교육(초등, 중·고등), 직업 교육 및 훈련, 특수 교육;
 - (e) 폭력, 아동 노동, 성적 착취,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 조치와 재활 프로그램.
4. 가입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일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훈련에 관한 아래 통계 정보를 - 필요시 다른 정보도 - 제공해야 한다:
 - (a) 사법 직원, 판사와 사법 관료 포함;
 - (b) 법 집행관;
 - (c) 교사;
 - (d) 보건 종사자;
 - (e) 사회 복지사

B. 아동에 대한 정의 (제1조)

5. 가입국은 가입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수와 비율에 대해 1항에 제시된 분류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결혼한 아동의 수에 대한 데이터를 연령과 기타 관련 기준(도시/시골, 인종, 소수인종 혹은 원주민 그룹)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C. 일반원칙 (제2조, 3조, 6조, 12조)

1. 생명, 생존, 발달에의 권리 (제6조)

6. 가입국은 18세 미만 아동의 사망에 대한 데이터를 위 1항에서 분류한 대로 분류해 제공해야 한다:
- (a) 비합법적인 사형, 즉결 사형, 혹은 임의 사형의 결과;
 - (b) 사형의 결과;
 - (c) HIV/AIDS, 말라리아, 결핵, 소아마비, 간염, 급성호흡기감염 등 질환으로;
 - (d)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의 결과;
 - (e) 범죄와 기타 형태의 폭력의 결과;
 - (f) 자살로 인해

2.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제12조)

7. 가입국은 다음 사항의 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아동 및 청소년 단체 및 협회와 각각의 회원 수;
 - (b) 독립적인 학생회가 있는 학교;
 - (c)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 아동과 그들의 연령에 대한 정보

D.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제7조, 8조, 13-17조)

1. 출생 신고 (제7조)

8. 가입국은 출생 신고된 아동의 수와 비율 그리고 출생 신고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적절한 정보 허용 (제17조)

9. 가입국은 모바일 도서관을 포함해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수와 정보 기술 시설을 갖춘 학교의 수에 대한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E. 아동에 대한 폭력 (제19조, 24조 3항, 28조 2항, 34조, 37조(a), 39조)

1. 아동 학대와 유기 (제19조),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 재통합 포함 (제39조)

10. 가입국은 위 1항에서 제시한 분류대로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부모나 친척, 보호자 등에 의한 학대나 유기 피해자로 보고된 아동의 수와 비율;
 - (b)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다른 형태의 후속조치가 취해진 보고 사례의 수와 비율
 - (c) 회복과 사회 재통합과 관련된 특수 보호를 받은 아동의 수와 비율.

2.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a), 제28조 2항)

11. 가입국은 위 1항에서 제시한 분류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고문 피해자로 보고된 아동의 수;

- (b) 강제혼과 여성 성기 절단을 포함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수치스러운 대우나 처벌의 피해자로 보고된 아동의 수;
- (c) 다양한 장소에서의 아동 체벌 건 수(아동 보호 시설, 학교, 가정, 수양가(收養家),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장소)와 단체 폭력 건수;
- (d) 법원결정이나 기타 후속조치가 있었던 위 (a), (b), (c) 상의 폭력 보고 건수와 비율
- (e) 회복과 사회 재통합과 관련된 특별 보호를 받은 아동의 수와 비율
- (f) 기관 폭력의 예방을 위해 이행된 프로그램 수와 이러한 이슈에 대해 기관의 직원에게 제공된 훈련 양.

F.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제5조, 9-11조, 18조 1항과 2항, 20조, 21조, 25조, 27조 4항)

1. 가족 지원 (제5조, 18조 1항과 2항)

12. 가입국은 위 1항에서 제시된 분류대로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부모와 법적 보호자에게 아동양육의 책임 수행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수와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아동과 가족의 수 및 비율;
 - (b) 이용 가능한 아동보호 서비스와 시설 수,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아동 및 가족의 비율

2.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제9조 14항, 21조, 25조)

13.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에 관해 가입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위 1항에서 제시된 분류를 따라 제공해야 한다:
- (a)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원인(무력 분쟁, 빈곤, 차별로 인한 유기 등)별 수;
 - (b) 법원결정에 의해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수(그 중에 부모 학대나 유기, 감금, 수감, 노동 이주, 망명 혹은 추방과 관련한);
 - (c) 이러한 아동을 위한 기관의 지역별 수, 기관별 이용 가능한 장소의 수, 아동과 보호자의 비율, 수양가 수;
 - (d) 기관이나 수양가에 거주하는 부모와 분리된 아동의 수와 비율, 거주 기간과 점점 빈도;
 - (e) 기관 배치 후 부모를 다시 만난 아동의 수와 비율
 - (f) 국내, 국외, 카팔라 입양 프로그램 연령별 참여 아동 수, 그리고 이런 아동의 출생지와 입양국

3. 가족 재결합 (제10조)

14. 가입국은 부모없는 아동 난민과 망명 신청 아동의 수를 포함, 가족 재회의 목적을 위해 가입국에 들어오거나 가입국을 떠난 아동의 수에 대한 연령, 국적, 인종별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4. 불법 이송 및 미귀환 (제11조)

15. 가입국은 위 1항에서 제시된 분류와 국적, 주거지, 가족 상황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가입국에서 유괴되어 나가거나 들어온 아동의 수;
 - (b) 체포된 가해자 수와 그 중 법정에서 처벌 받은 자들의 비율.

5. 수감된 부모의 자녀

16. 가입국은 부모가 수감된 아동과 모와 함께 감옥에서 사는 아동의 수, 그리고 그들의 평균 연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G. 장애, 기초보건 및 보건 (제6조, 18조 3항, 23조, 24조, 26조, 27조 1-3항, 33조)

1. 장애 아동 (제23조)

17. 가입국은 위 1항에서 제시된 분류에 따라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 아동의 수와 비율을 밝혀야 한다.
- (a) 부모가 특수한 물질적, 사회심리적,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 (b) 정신 장애아동 시설을 포함한 시설에 살거나 가정 위탁과 같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아동;
 - (c) 정기 학교를 다니는 아동;
 - (d) 특수 학교를 다니는 아동;
 - (e) 학교나 유사 시설에 전혀 다니지 않는 아동.

2. 건강과 보건 서비스 (제24조)

18. 가입국은 위 1항에서 제시된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영아 사망률과 5세 이하 사망률;
 - (b) 출생시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동의 비율
 - (c) 경미하거나 중증의 저체중, 왜소 및 발육저하를 겪는 아동의 비율;
 - (d) 자살로 인한 아동 사망률;
 - (e) 위생시설과 안전한 식수가 제공되지 않는 가정의 비율;
 - (f)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홍역에 대해 예방접종을 모두 받은 1세 아동의 비율;
 - (g) 모성 사망률과 그 주요 원인;
 - (h) 출산 전과 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혜택을 받는 임산부의 비율
 - (i) 병원에서 출생한 아동의 비율;
 - (j) 병원 의료와 출산 훈련을 받은 직원의 비율;
 - (k) 100퍼센트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어머니의 비율과 그들의 모유 수유 기간.
19. 가입국은 위 1항에 제시된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HIV/AIDS에 감염되고 영향을 받는 아동의 수/비율;
 - (b) 이러한 아동 중 의료적 치료, 상담, 보호 및 기타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받는 아동의 수/비율
 - (c) 이러한 아동 중 친척과 함께 살거나 위탁 보호를 받거나 시설에서 살거나 길거리에서 사는 아동의 수/비율;
 - (d) HIV/AIDS로 아동 가장이 된 아동 수
20. 가입국은 청소년 보건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조기 임신, 성병, 정신보건 문제, 마약 및 알코올 남용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의 수를 위 1항에 제시된 분류에 따라;
 - (b) 청소년 보건 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수.

3. 마약 및 약물 남용 (제33조)

21. 가입국은 마약 및 약물 남용의 아동 피해자 수와 지원 프로그램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H. 교육, 여가, 문화 활동 (제28-31조)

22. 가입국은 위 1항에서 제시된 분류대로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아동과 성인의 가독률;
- (b) 초등, 중·고등학교와 직업훈련 센터의 총 등록 및 출석률과 순(純) 등록 및 출석률;
- (c) 초등, 중·고등학교와 직업훈련 센터의 보유율, 완료율, 전학율과 퇴학율;
- (d) 지역간 혹은 도시/시골간 차이를 표시하는 평균 교사-학생 비율과 훈련받은 교사 비율;
- (e) 자기 언어로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 원주민과 소수 인종 아동의 수;
- (f) 비공식 교육 시스템에서의 아동 수;
- (g) 학령 전 교육과 유년기 개발교육시설에 출석하는 아동의 비율;
- (h)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아동의 수/비율;
- (i) 마을 놀이터(시골/도시 구분) 수;
- (j) 조직된 여가, 스포츠,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수/비율 (시골/도시 지역에 대한 표시와 함께)

I. 특별보호조치 (제22조, 30조, 32조, 33조, 35조, 36조, 37조(b)-(d), 38-40조)

1. 해외에서 난민 보호 신청을 한 아동(제22조)과 국내에서 국내 유랑 아동

23. 가입국은 위 1항에 제시된 분류기준과 출생지, 국적, 부모와 함께 있는 여부 등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국내에서 유랑하는 아동, 망명 신청 아동, 난민 아동의 수;
- (b) 이런 아동 중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직업훈련학교를 다니고 보건 서비스나 기타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수와 비율;
- (c) 신청 아동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심사 후 사라진 아동의 수.

2. 아동 노동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제32조)

24. 특수 보호 조치와 관련해 가입국은 위 1항에 제시된 분류대로 다음 사항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국제노동기구최소연령협약, 1973 (No. 138)과 아동노동의 최악의 유형에 관한 협약 1999 (No. 182)에 따라 정의된 노동 최소 법적 연령보다 어린 아동이 아동 노동에 개입된 수와 비율을 노동 유형에 따라;
- (b) 이러한 아동이 아동 회복 및 재통합 지원을 받은 수와 비율, 무상 기초 교육과/혹은 직업 훈련 포함.
- (c) 길거리 아동의 수.

3. 성적 착취, 학대와 불법 거래 (제34조, 35조)

25. 가입국은 위 1항에 제시된 분류와 보고된 폭력의 유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매춘, 포르노, 불법 거래 등을 포함한 성적 착취에 개입된 아동의 수;
- (b) 이러한 아동 중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아동의 수;

- (c) 보고 기간 내 성적 착취, 성적 학대, 아동 판매, 아동 유괴, 아동에 대한 폭력의 보고 건수;
- (d) 이러한 사례 중 처벌받은 사례의 수와 비율, 가해자의 출생지와 처벌의 성격에 대한 정보 포함.
- (e) 노동 등 다른 목적으로 불법 매매된 아동의 수;
- (f) 아동 매매를 예방하고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목적의 훈련을 받은 국경 수비대 및 법집행관 수.

4. 법과 갈등 관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 사법 집행 (제40조)

26. 가입국은 위 1항에 제시된 분류와 범죄 유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범법 행위가 의심돼 경찰에 체포된 18세 미만의 수;
- (b) 법률 및 기타 지원이 제공된 사례의 수;
- (c) 18세 미만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아동의 수:
 - (i)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회부된 아동;
 - (ii)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거나 자유 박탈 외의 처벌을 받은 아동;
 - (iii) 갇생을 목적으로 한 대안적 처벌을 받은 아동;
 - (iv)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 (d) 재범 사례의 비율.

5.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 구류, 수감, 보호소 보호 등 포함 (제37조 (b)-(d))

27. 가입국은 위 1항에 제시된 분류와 사회적 지위, 범죄의 기원 및 유형에 따라 법과 상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다음 사항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범죄로 기소된 후 경찰서나 구치소에 수감된 18세 미만 아동의 수와 평균 구류 기간;
- (b) 형법을 어겼다고 의심되거나 고소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시설의 수;
- (c) 그러한 시설에 갇힌 18세 미만 아동의 수와 그들의 평균 체류 기간;
- (d) 성인과 분리되지 않는 시설에 구류된 18세 미만 아동의 수;
- (e) 법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18세 미만 아동의 수와 그들의 평균 수감 기간;
- (f) 체포와 구류/수감 중 학대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고 건수.

6. 무력분쟁에 개입한 아동(제38조),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 재통합 포함(제39조)

28. 가입국은 위 1항에 제시된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군대에 모집되거나 자원입대한 18세 미만 아동의 수와 비율, 그리고 그러한 아동 중 적대행위에 가담한 아동의 비율;
- (b) 군대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재통합된 아동의 수와 비율, 그리고 그러한 아동 중 학교로 돌아가고 가족과 재결합된 아동의 비율;
- (c) 군사 분쟁에 의한 아동 사상자의 수와 비율;
- (d)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아동의 수;
- (e) 무력 분쟁에 개입한 후 신체적, 심리적 회복 지원을 받는 아동의 수.

7.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29.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가입국은 성별, 연령, 인종 그룹, 도시 혹은 시골 거주 등의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 아동 섹스 관광의 보고 건수;
- (b) 이러한 사례 중 조사 받고 기소되고 처벌받은 건수;
- (c) 이러한 피해 아동 중 선택의정서 제9조, 3항과 4항에 의거 회복 지원이나 보상을 받은 아동의 수.

8.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30.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가입국은 성별, 연령, 인종 그룹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a) 군사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 수와 군사학교 최소 입학 연령;
- (b) 아동이 적대행위에 모집되거나 활용되었을 수 있는 지역으로부터 가입국에 들어와 망명을 구하거나 난민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
- (c)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재통합 조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의 수.

Abstract

As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t has a duty to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tatus of youth's and children's rights and its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on a regular basis. By June 2017,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submit its 5th and 6th national reports to the UN.

This is the 5th year study of the project planned to be conducted for 6 years (2011~2016) with a purpose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writing a national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for establishing policies on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by building up time-series data to understand the status of and changes in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indicator system' and survey tools to systematically monitor the status of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and has been conducting surveys to four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to third grades in high schools, and its results on being published every year as National Statistics No. 40201. The Korean government is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n the human rights comprehensively using major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statistical material from other fields as complementary data.

In 2015,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classification of the indicators into 7 categories by adding the 'violence and child abuse' area, reflecting the revisions made to the 'Guidelines for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on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CRC/C/58/Rev.3)'.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indicator system of 2015 consists of 148 indicators in seven categories: 'Overall Human Rights and General Principles (12)', 'Civil Rights and Freedom(24)', 'violence and abuse(11)',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16)',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32)',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21)', and 'Special Protection Measures(32)'.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reports: the basic report show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indicator system, the data analysis report includes compilations of papers on human rights and aim to disperse human right data across the society and improve their academic use, and the statistics contains the statistic tables to be registered to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KOSIS) for the users of national statistics.

Lastly, this study has suggested a total of 18 measures to promote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policy tasks in seven catego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opinions gathered from experts and from children, and convention recommendations.

Key Words : Children's rights, youth's rights, human right indicators, status of human right,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언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Ⅶ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Ⅶ : 데이터분석보고서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 · 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할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란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 학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연구자문 및 전문가의견조사 참여 ◆

- 강 지 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 교수)
강 현 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 교수)
구 정 화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 교수)
김 경 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기획조정본부장)
김 광 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김 도 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역량개발본부 · 본부장)
김 미 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위원)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교수)
김 수 정 (법률사무소 지향 · 변호사)
김 영 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 교수)
김 윤 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김 은 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소장)
김 은 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옹호팀 · 팀장)
김 인 숙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권리교육훈련소 · 소장)
김 지 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 교수)
김 진 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김 진 호 (부천실업고등학교 · 교감)
김 진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 교수)
김 차 연 (재단법인 동천 · 변호사)
김 철 홍 (국가인권위원회 전 인권교육과 · 과장)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김 형 욱 (경기도교육청 · 학생인권옹호관)
류 은 숙 (인권연구소'창' · 연구 활동가)

박 병 식 (동국대학교 법학과 · 교수)
박 영 숙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단장)
박 창 남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교수)
방 은 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 교수)
변 창 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난민보호팀 · 담당관)
서 여 정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담당자)
성 종 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팀장)
신 혜 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수)
오 동 석 (아주대 법학부 · 교수)
오 선 영 (한국인권재단 · 사무국장)
유 성 렬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 교수)
윤 상 석 (전 무지개청소년센터 · 부소장)
이 경 립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상임이사)
이 석 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소장)
이 용 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이 은 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이 중 섭 (전북발전연구원 · 연구위원)
이 현 정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교수)
이 호 균 (아동행복포럼 · 고문, 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장)
장 영 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전 경 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실장)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조 금 주 (상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교수)
채 현 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난민보호팀 · 법무관)
천 정 웅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홍 승 애 (숙명여자대학교 · 강사)

연구보고 15-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5. 08. 31 제 301-2012-019호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69-4 94330

979-11-5654-059-5 (세트)